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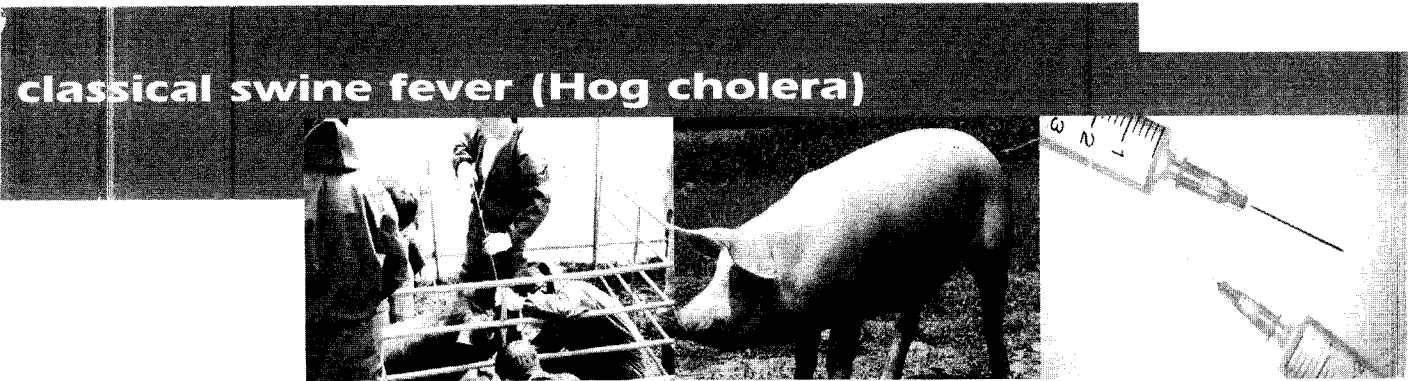
GOVP1200518573

01084284

12  
636.40896  
L-C  
2005

# 돼지콜레라 백서

2005. 2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



## ( 발 간 사 )

돼지콜레라는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고 전파속도가 빨라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히는 악성 가축전염병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발생기록은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돼지콜레라라는 가축질병이 100년 가까이 우리 축산농가를 괴롭혀 온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02년 4월 재발하여 양돈농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부터 전국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발생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등에 애쓰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방역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의 발생사례가 소규모이고 산발적이어서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청정화는 우리의 각오와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등 발생국가와 인접해 있고 교류도 확대되고 있어 청정화를 이루더라도 그 유지가 쉽지 않은 만큼 차단방역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돼지콜레라 발생 역사에서부터 성공적인 방역사례, 그리고 미흡했던 점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백서로 발간하였습니다. 축산농가·생산자단체·관계 공무원 모두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방역능력을 키워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 2.

농림부장관 

# 〈 목 차 〉

<b>제1장 머리글</b> .....	1
<b>제2장 돼지콜레라 개요</b> .....	5
1. 정의 .....	7
2. 병원체 .....	7
3. 전염 및 전파경로 .....	8
4. 임상증상 .....	9
5. 병리학적 소견 .....	10
6. 방역대책 .....	12
7. 사람 콜레라와 차이점 .....	12
<b>제3장 돼지콜레라 발생 및 연구개발 역사</b> .....	13
1. 국내 돼지콜레라 발생사 .....	15
가. 1950년 이전의 발생 .....	15
나. 1950년 이후의 발생 .....	15
다. 1990년대 발생상황 .....	16
라. 2000년대 발생상황 .....	17
2. 진단법 개발 보급 .....	17
가. 항원 진단법 .....	17
나. 항체 진단법 .....	17
다. 유전자진단법 .....	18
3. 예방약 개발 및 활용 .....	18
가. 초기 불활화 백신 .....	18
나. 약독화 백신 .....	18
다. 유전자재조합 백신 .....	19
<b>제4장 1995년 이전 돼지콜레라 방역추진 상황</b> .....	21
1. 발생특성 .....	23
2. 방역추진 상황 .....	24

**제5장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상황('96년 이후 '01년까지).....25**

**1. 근절대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27**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 보고서 : 참고자료 1〉 .....31**

- 1. 현 황 .....32
- 2. 문제점 및 애로요인 .....32
- 3.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33
- 4. 향후 추진계획 .....34
- 5. 추진사항별 조치계획 및 일정 .....46
- 6. 주요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예산지원 계획 .....47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보완 및 홍보행사 개최계획 보고서 : 참고자료 2〉 .....55**

- 1. 근절대책 추진현황 .....56
- 2. 사업추진중 나타난 문제점 .....58
- 3. 향후 보완 발전방안 .....59
- 4. 돼지콜레라 근절결의 및 예방접종 시연회 행사 .....61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대책(안) : 참고자료 3〉 .....72**

- I.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대책의 필요성 .....73
- II. 청정화 세부 추진대책 .....73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대책 보고서 : 참고자료 4〉 .....91**

- I. 현 황 .....92
- II. 청정화 여건조성 .....93
- III. 예방접종 중단시 문제점 .....94
- IV. 청정화 완성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95

**2. 돼지콜레라 발생현황 .....100**

**3. 근절대책 추진 관련 세부 추진사업 .....105**

- 가. 양돈농가 및 돼지사육 통계 정밀 조사 .....105
- 나. 전국 양돈농가 예방접종실시 의무화 .....107

다. 지역담당관제 실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리 .....	107
라. 돼지콜레라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 .....	110
마.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역학조사(99년 경기도 용인 발생) .....	117
바. 돼지콜레라 지역별 근절확인 및 선포(제주도, OIE) .....	123
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공청회 개최 .....	125
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대비 위험도 평가시험 .....	132
자. 돼지콜레라 방역관련 교육 .....	137

## **제6장 2002년 이후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157

1. 2002년 돼지콜레라 발생 개요 .....	159
2. 강원 철원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역학조사 .....	160
3.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역학조사 .....	183
4. 2003년 돼지콜레라 전국적 발생(3~5월) 역학조사.....	224
가. '03년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224
나. '03년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역학조사 개요 .....	226
다. 상원축산 및 분양농장 역학조사 .....	227
라. 상원축산(제1농장) 돼지콜레라 유입요인 및 시기분석 .....	237
1) 상원축산 위탁사육농장 추적조사.....	237
2) 돼지콜레라 유입요인 분석 .....	246
3) 돼지콜레라 유입시기 분석 .....	250
마. 방역조치 사항 .....	254
바. 역학조사 결론 .....	256
사. 평가 및 사후 대책 .....	257
5. 2003년 6월 이후 돼지콜레라 감염농장 역학조사결과 .....	259
6. 종돈장 방역관리대책 발전방향 .....	270
7.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 고발경위 .....	277

**제7장 종합평가 및 사후대책 .....281**

- 1. 돼지콜레라 청정화 성공과 재발생으로 인한 예방접종 과정 .....283
- 2. 종합평가 .....286
- 3. 문제점 .....287
- 4. 향후 돼지콜레라 근절추진 .....288
  - 가. 돼지콜레라 근절 추진계획 .....288
  - 나. 돼지콜레라 근절기반 방역시스템 구축 .....288
  - 다. 역학조사위원회 방역조치 권고사항 .....289
- 5. 맺음말 .....292

**제8장 기관별 돼지콜레라 방역추진사항 .....295**

- 1. 농촌진흥청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상황(1999~2004) .....297
  - 가. 1999년도 .....297
  - 나. 2000년도 .....305
  - 다. 2001년도 .....307
  - 라. 2002년도 .....309
  - 마. 2003년도 .....314
  - 바. 2004년도 .....314
-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활동 .....316
  - 가.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비대본) 설립 .....316
  - 나.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334
  -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방역본부 설립근거 마련 .....344
  - 라.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345
  - 마. 방역본부 방역지원 활동실적 .....349
  - 바. 방역기부금 모금현황 .....350
- 3.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돼지콜레라 방역활동 .....351
  - 가. 돼지콜레라 긴급방역 지원 실적 .....351
  - 나.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조치사항 .....351

4. 대한양돈협회 돼지콜레라 방역활동 .....	352
가. 1999년 .....	352
나. 2000년 .....	353
다. 2001년 .....	355
라. 2002년 .....	355
마. 2003년 .....	357
바. 2004년 .....	359

## 제9장 돼지콜레라 방역추진 미담 사례 등 .....361

1. 돼지콜레라 박멸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김봉환) .....	363
2. 돼지콜레라 근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김봉환) .....	368
3. 무너진 돼지콜레라 청정화 탐-아!(문운경) .....	374
4. 경상북도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조광현) .....	394

## < 부 록 >

I. 방역관련규정.....	421
1.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제정(농림부 고시 제1999-34호) .....	422
2.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1-72호) .....	430
3.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2-23호) .....	444
4.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3-44호) .....	458
5.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명령(농림부 고시 제1998-59호) .....	475
6.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명령(농림부 고시 제1999-8호) .....	479
7.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명령(농림부 고시 제1999-33호) .....	484
8.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1999-15호) .....	491
9.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0-71호) .....	505
10.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2-28호) .....	515
11.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3-26호) .....	516



12.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4-32호) .....	519
13.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5-4호).....	527
14.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955호).....	531
15.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3-3호) .....	535
16. 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1998-5호) .....	553
17.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농림부 고시 제2004-9호).....	557
18. 일본으로 수출되는 육류의 위생조건 개정사항 .....	563
19. 일본의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 .....	569
20. OIE 돼지콜레라 위생규약 및 년도별 변경사항 .....	575

**II. 관련자료** .....602

1. 종돈업의 관리체계와 현행제도 .....	602
2. 종돈업 및 돼지정액처리업의 현황.....	603
3.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 현황 .....	606
4.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내역(2003. 3. 24) .....	608
5.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돼지콜레라 청정화 보고서 .....	609

**III. 돼지콜레라 방역관련 보도자료** .....615

**IV. 돼지콜레라 방역관련 사진 및 홍보자료**.....655

**● 제1장****머 리 글**

# 여 백

# 머 리 글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hog cholera : HC 또는 classical swine fever : CSF)의 발생 역사를 추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그 가능성은 1630년대 만주지역에서 발생한 이 병이 인접지역인 평안도, 함경도 및 황해도 지역에 확산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공식적인 발생 기록은 朝鮮農會가 발간한 朝鮮農業發達史에 수록된 통계자료가 처음이며 1907년부터 주로 이북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국내에서 병성감정으로 돼지콜레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1947년 10 - 11월 서울 서대문 밖 不二農場과 祭基洞이 처음이었으며 여기에서 金永漢, 朴東權, 魚寅植 등이 분리한 돼지콜레라바이러스는 不二株로 현재까지 국내 표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로 활용되고 있다. 이후 1950년대부터는 이 병이 38선 이남지역에서도 매년 발생하여 양돈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양돈농가의 돼지콜레라에 의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52년부터 가토화생독예방약(ROVAC 백신)을 적용하였으며, 이후 1967년부터는 안전성과 면역성이 우수한 조직배양순화생독예방약(LOM 백신)을 야외 방역에 활용함으로써 돼지콜레라의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 중반기까지 야외 농가에서의 백신접종률은 약 60 - 70% 정도로 저조하고 또한 분별없는 돼지의 판매 및 이동 등으로 피해가 반복됨으로써 매년 막대한 방역 예산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한 A급 즉 아주 위험한 돼지 전염병으로 이 병이 발생하는 나라는 비발생국으로 돼지나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없거나 또는 수출하는데 상당한 규제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은 1993년부터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2000년까지 이 병의 근절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 병의 근절로 양돈농가의 피해를 막고 또한 수출 양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996년 6월에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근절대책은 예방접종강화 단계, 청정화 조성단계 및 청정화 확인단계로 구분하여 2001년 말에 청정화를 완성하는 목표 하에 방역당국, 축산업계, 학계 등이 합심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999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 최종 발생한 이후 2001년까지 발생되지 않아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지와 더불어 국제수역사 무국에 우리나라의 돼지콜레라 청정성을 선포하였다. 이는 우리의 방역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획기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2002년 4월에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그리고 10월에는 인천시 강화군에서 이 병이 다시 발생하였다. 특히 강화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경기도 김포와 이천 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또한 김포시 소재 종돈장인 상원축산에서 종돈을 분양, 판매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국으로 전파되어 전국적 백신접종을 다시 시작하는 즉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수립하였던 1996년도로 방역대책이 후퇴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2002년 발생건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분리된 돼지콜레라바이러스는 기존 국내에서 발생하던 유전자형(제3형)이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 지역에 널리 발생되고 있는 유전자형(제2형)으로 동정되어 이 지역에서 유입된 병원체로 확인되었으며, 유입 경로는 해외근로자, 해외여행객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추가 발생농장에 대한 전파요인을 분석한 결과 감염된 농장에서 사람, 차량, 오염물품 및 감염 개체 등에 의하여 전파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번 발간되는 돼지콜레라 백서에는 우리나라에서 ① 돼지콜레라의 발생과 피해 상황, ② 근절대책의 준비과정, 입안내용 및 수행결과, ③ 2002년 이후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특성과 전파 요인에 대한 역학적 분석 및 긴급방역대책 수행내용, ④ 금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진 방역을 위하여 기 실시된 각종 대책의 평가 그리고 도출된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아울러 돼지콜레라 방역활동에 필요한 제도, 표준 기술과 방법, 그리고 각종 교육 및 홍보 자료 등을 부록에 추가하여 차후 방역활동에 참고토록 배려하였다.

그간 “돼지콜레라 근절 없이 양돈산업 미래 없다”란 케치프레이스 아래 이 병의 근절대책과 방역 활동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방역당국, 축산업계, 언론계 및 학계 등 모든 분들의 활동내용을 빠짐없이 이 백서에 담지 못함을 정말 아쉽게 생각하는 바이다. 모쪼록 이분들의 피와 땀이 어린 노고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양돈인의 숙원인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달성하고 또한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백서의 자료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 제2장

# 돼지콜레라 개요

# 여 백

## 1. 정의

돼지콜레라는 고열·식욕결핍·설사나 변비·피부청색증 및 뒷다리를 잘 못쓰거나 비틀거림 및 유사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한번 발생하면 치료방법이 없고 감염된 돼지는 대부분 죽게 되는 돼지질병 중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를 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이다.

## 2. 병원체

### 가. 분류

돼지콜레라 병원체는 Flaviviridae의 Pestivirus에 속하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hog cholera virus : HCV 또는 classical swine fever virus : CSFV)이다.

### 나. 특성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Faviviridae pestivirus속에 속하며 size는 약 40-50nm로 현재까지 1개의 혈청형이 보고 되어 있다. 돼지콜레라 유전자는 positive sense single stranded RNA로 크기는 12.3kb 정도 되며 한 개의 단백질 암호코드로 약 3900 아미노산을 합성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구성한다. 단백질은 Npro, Capsid, Erns, E1, E2, p7, NS2, NS3, NS4A, NS4B, NS5A 및 NS5B로 구성되어 있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5'NCR(non-coding region), E2 및 NS5B유전자 sequence를 비교하여 3가지의 유전자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바이러스 단백질 중 E2 단백질은 CSFV의 외피를 구성하며 바이러스를 중화하는 항체를 생성하는데 관여하는 주요한 방어 항원으로 알려져 있다.

### 다. 환경 저항성

열과 pH에 대한 안정성은 바이러스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 갈수록 빨리 감염력을 상실하게 된다. pH 5~10 사이에서 안정하나 이 범위를 벗어나면 감염력을 빨리 상실하게 되며, 에테르, 클로르포름 같은 지용성 용매에 의해 쉽게 불활화 된다. 아래 표1은 돼지콜레라바이러스의 환경저항성을 요약한 것으로 방역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비교적 열에 안정하여 60℃에서 10분정도 가열해야 불활화 한다. 혈액속에 존재할 때는 37℃에서 7-14일간 생존할수 있다. 또한 고기육즙, 스프 등과 관련된 혈액 또는 조직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66℃에서 60분, 68℃에서 45분, 69℃에서 30분 또는 80℃에서 3분간 가열해야 불활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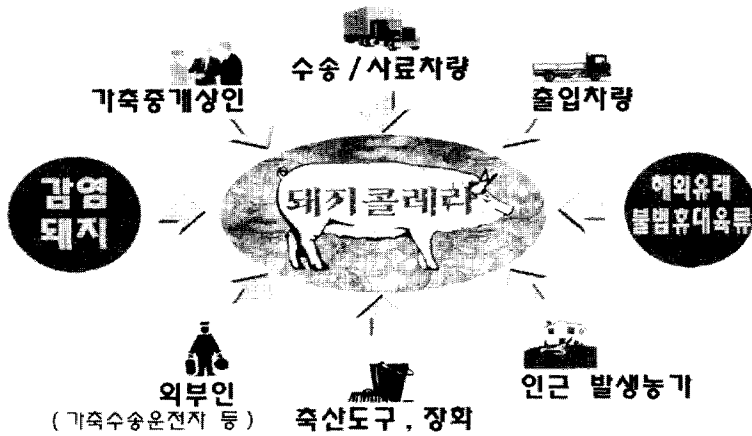


〈표 2-1〉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노출환경에 따른 생존기간

감염장기 및 재료	노출(저장)기간	생존기간
혈액	(-20℃)	270일
	냉장건조상태	180일 이상
	4-8℃	720일 이상
	실온	90일 이상
	자연조건 (37℃, pH 5.2) 부패된 혈액이나 흡속에 매몰된 장기내	8일 7-14일
림프절	동결상태	9년 이상
피부	4℃	33일
골수	3.3℃	55일 이상
부패된 장기	야외조건	4일 미만
눈물 및 콧물	10-18℃	2일 이상
돼지 오줌	실 온	21일 이상
사체	초저온냉동고(-70℃)	226일 이내
	겨울에 매장된 상태	수개월
	냉장고	95일 이내
오염된 축사	여름에 매장된 상태	7일 이내
	더운 날씨 완전하게 청소 및 소독된 상태	1-7일 미만 14일 미만
배설물 및 깔짚	더운 날씨 완전하게 청소 및 소독된 상태	28일 이상
식육(meat)	냉장상태	33일 이상
	-11℃	4년 이상
베이컨	냉장상태	27-57일
햄	염 지	84일 이상
근육	염 지	95일 이하
소시지	냉장상태	180일

### 3. 전염 및 전파경로

잠복기는 보통 6 ~ 11일 정도이나 20 ~ 30일 또는 그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OIE 기준 : 40일). 감염경로는 주로 소화기와 호흡기이며, 침입한 바이러스는 편도, 림프 절, 실질장기의 세포 등에서 증식하며 독혈증을 일으키며, 태반감염도 된다. 또한 병든 돼지의 분변으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된다. 돼지콜레라는 감염돼지의 이동, 차량, 축산도구, 사람(신발·의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된다.



## 4. 임상증상

돼지콜레라는 증상이나 병변과 함께 병력을 참고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돈단독, 살모넬라감염증 등과의 감별진단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병의 증상과 병변은 바이러스주의 독력, 감염돼지의 일령, 개체의 면역 상태 그리고 타 질병과의 혼합감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징적인 임상소견 및 병변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은 급성형과 만성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급성형 돼지콜레라

- 1) 돈군에 돼지콜레라가 처음 발생할 때에는 단지 몇 마리의 돼지에서만 임상증상을 보이며 식욕결핍, 후구마비 등 신경증상 또는 혼수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 2)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6일 이내 체온이 42℃까지 높아지나 독력이 약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의 경우에는 체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
- 3) 초기 증상으로 눈꼽이 끼고 변비증상이 나타난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황회색의 수양성 설사를 하게 된다.
- 4) 감염돈군의 돼지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모여 있거나 포개어 있으며 오한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 5) 백혈구 수는 전형적으로 혈액 mm<sup>3</sup>당 보통 3,000~9,000까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감염후기에 살모넬라 및 파스투렐라가 혼합 감염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날 수 있다.

※ 전형적인 돼지콜레라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험이 없는 생산자나 기타 사람들은 돼지콜레라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형적인 형태의 돼지콜레라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나. 만성형 돼지콜레라

- 1) 만성형 돼지콜레라는 약독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발생되며 흔히 위축돈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 2) 몇주 후 일반적으로 식욕과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경과 할수록 많은 돼지가 병이 재발하거나 폐사한다.
- 3) 약독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중에서는 17주까지 생존하며 어떤 경우는 21주까지도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지속된다. 그러나 다른 세균성 질병 등에 혼합감염되면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난다.
- 4)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돼지는 노란색을 띤 담즙색 액체를 토해내거나 또는 피부의 진전증상이 관찰된다.
- 5) 많은 경우에 흐느적거리거나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특징인 현저한 신경증상을 보인다.
- 6) 수 주 동안 생존한 돼지는 낮은 정도의 발열, 백혈구 감소증과 전반적으로 외관상 일시적인 호전을 보이다가 식욕감소, 침울, 설사, 체온상승 그리고 폐사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만성 돼지콜레라 증상으로 발전된다.

## 5. 병리학적 소견

### 가. 급성형

- 1) 처음 심급성으로 폐사한 돼지에서는 돼지콜레라 병변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2)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임신모돈에서 미이라나 사산이 관찰될 수 있다. 감염 태아는 부종성이며 복수가 차고 두부와 사지기형, 피부 및 각종 장기의 점상출혈, 그리고 폐와 소뇌형성부전 등이 나타난다.
- 3) 귀, 복부 및 서혜부 등의 피부에 자반이 나타나며 이를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자주색 변색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 4) 일반적으로 비장에는 점상·반상출혈 및 출혈성 경색이 관찰된다.
- 5) 각종 림프절은 병리학적 변화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내부 장기이다. 림프절 가장자리 부위에 수종 및 출혈 소견이 관찰된다.
- 6) 종종 관찰되는 병변으로 편도선과 인후두 부위의 괴사 및 출혈, 그리고 심장, 방광 등 각종 장기의 점·반상 출혈과 대장(중중 결장 부위)에서 단추상 궤양이 관찰되기도 한다.

- 7) 신장 출혈은 급성 돼지콜레라의 다른 어떤 병리학적 변화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 8) 이 출혈은 점상 및 반상으로 신장의 피막하 표면에 발생하며 드물게 신추체(pyramid)와 신문(hilus)에도 나타난다.
- 9) 급성 또는 아급성 돼지콜레라에 걸린 일부 돈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폐출혈과 급성 기관지폐렴을 보인다.
- 10) 종종 돼지콜레라 부검소견이 살모넬라증, 독소플라즈마 감염증 및 돈단독 등과 유사하므로 실험실 확진을 받아야 한다.

## 나. 만성형

- 1) 약독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에서 주로 관찰되는 병변은 림프절이 종대되고 창백하며 습윤해 보이는 것이다.
- 2) 신장에 가끔 심한 점상 또는 반상출혈이 나타난다(Turkey Egg Kidney).
- 3) 만성 돼지콜레라 병변은 급성의 경우와 비슷하나 덜 심한 편이다. 만성으로 감염된 돼지는 출혈이 거의 없이 폐사하고 종종 맹장과 결장에 단추상 궤양이 있다. 만성 병변으로 괴사성 장염과 기관지폐렴이 흔히 나타난다.

〈표 2-2〉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감염후 임상증상 및 지속기간

임상증상	최초 발생일	경과
운동감소	2 ~ 6일	폐사까지
발열	2 ~ 6일	폐사 전까지
백혈구감소증	2 ~ 6일	폐사까지 간헐적, 세균감염 시 백혈구증가
결막염	4 ~ 7일	총혈소건과 눈곱이 낀
허들링	4 ~ 7일	폐사까지
구토	4 ~ 8일	폐사까지
호흡곤란	4 ~ 8일	폐사까지
경련	5 ~ 8일	폐사까지
변비	5 ~ 8일	12일 경과 후 거의 볼수 없음
홍반	5 ~ 8일	폐사까지
설사	6 ~ 10일	폐사 전 청색증
운동실조	7 ~ 10일	폐사까지 간헐적
피부출혈	7 ~ 12일	폐사까지
청색증	9 ~ 14일	폐사까지
귀 발적	15 ~ 20일	폐사까지 간헐적
부분적 탈모	25 ~ 30일	폐사까지

## 6. 방역대책

돼지콜레라는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치료법이 없으며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이 병의 발생을 확실히 예방하려면 표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자돈의 경우 생후 40일령(5-6주령)에 1차 접종하고, 생후 60일령(8-9주령)에 반드시 2차 접종해야 한다. 후보돈은 6-7개월령에 보강접종을 실시하며 모돈은 매년 1회 중부 2주전에 접종을 실시한다. 웅돈은 년 1회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병원체가 농장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 백신접종 전 일부 감수성이 있는 자돈이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병원체의 차단은 방역의 기본이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돼지는 믿을 수 있는 양돈장 한·두 농장에서만 구입하여야 하며 절대로 중개상인이나 여러 농장에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수송(특히 도축장출입), 사료운반, 분뇨수거 및 기타 방문객 차량의 출입을 통제(제한)하고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양돈관련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시는 신발과 방역복을 착용한 후 출입해야 하며 축주 본인과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주기적으로 농장내외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하며, 이웃 농장과 같은 일시에 공동으로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위축돈과 병든 개체는 즉시 도태하여 병원체가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양돈장이 밀집되어 있고 돼지의 입식과 판매가 빈번하며 또한 소독 등 위생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일단 병원체가 들어오면 감수성이 있는 개체에 순환 감염이 성립되므로 계속 타 농장에 전파·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돈밀집지역의 양돈농가는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병을 근절한 청정국들은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검역과 차단방역 및 예찰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며, OIE 육상동물 위생법규에서는 청정국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 7. 사람 콜레라와 차이점

사람의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전염병이며, 바이러스에 의한 돼지콜레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표 2-3〉 돼지콜레라와 사람 콜레라와의 차이점

구분	돼지콜레라	사람 콜레라
병인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Flaviviridae의 Pestivirus)	비브리오 콜레라균 (Vibrio Cholerae)
숙주	돼지만 감염	사람(오염된 식수, 어패류를 통해 감염)
법정분류	국제수역사무국(OIE)List A질병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	세계보건기구(WHO)검역전염병 국내 법정 제1군 전염병
감염경로 (잠복기)	주로 소화기로 경구감염, 급성 (보통 6~11일 정도)	주로 소화기내 경구감염, 급성 (대개 24시간 내외)
주요증상	고열, 식욕결핍 후 치사율 높음	극심한 설사로 인한 탈수현상
진단/치료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 없음	격리 및 항생제치료

## ● 제3장

# 돼지콜레라 발생 및 연구개발 역사

여 백

## 1. 국내 돼지콜레라 발생사

### 가. 1950년 이전의 발생

- 1) 기록상으로 확인된 우리나라의 돼지콜레라 최초 발생은 1908년 Tokisige가 일본 농무성의 의뢰로 한국에서 가축전염병발생을 조사한 보고자료(65두 발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후 1946년까지 주로 함경 남·북도 및 평안 남·북도 등 주로 북한지역에서 발생되었다.
- 2)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발생이 확인된 것은 1947년 10월 서울시내 해동공사(不二農園)에서의 발생건으로 이 때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불이주(不二株)로 명명하였고, 최근 이 불이주는 ALD 주와 유사한 것으로 동정된 바 있다. 1948년에는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하였으며, 발생두수는 약 30만두로 추정되었다.

〈표 3-1〉 국내돼지콜레라발생상황(1954~1990)

년 도	발생두수	년 도	발생두수	년 도	발생두수
1907	0	1923	284	1939	105
1908	66	1924	564	1940	11
1909	151	1925	121	1941	12
1910	229	1926	240	1942	0
1911	10	1927	479	1943	0
1912	30	1928	369	1944	0
1913	0	1929	630	1945	0
1914	12	1930	371	1946	0
1915	101	1931	89	1947	-
1916	90	1932	149	1948	-
1917	74	1933	171	1949	-
1918	83	1934	0	1950	52
1919	101	1935	0	1951	2311
1920	88	1936	0	1952	700
1921	242	1937	658	1953	2158
1922	660	1938	636		

※ 조선농업발달사 및 농림통계 년보에서 발췌

※ 1947년부터 1949년까지 발생 통계자료는 농림부청사 화재로 소실되어 통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문헌상에 나타남(자료출처 : 가축방역사 제2집 ; 대한수의사회 1967년 발간)

### 나. 1950년 이후의 발생

- 1) 1952년부터 가토화 약독 바이러스 생백신(ROVAC)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돼지 콜레라 발생은 상당수준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1955년에 다시 전국적으로 13,545두의 폭발적인 발생이 있었다.



- 2) 이후 ROVAC 보다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우수한 LOM-850 백신이 1967년도에 도입되어 돼지 콜레라 방역에 사용됨에 따라 돼지콜레라의 발생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 3) 그러나 이러한 예방약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매년 돼지콜레라의 발생은 지속되었으며, 연평균 돼지 총 사육 두수의 약 0.05%가 돼지콜레라로 폐사되는 등 양돈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표 3-2〉 국내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1954~1990)

년 도	발생두수	년 도	발생두수	년 도	발생두수
1954	7,444	1971	328	1981	357
1955	13,545	1972	271	1982	9,801
1958	349	1973	216	1983	3,436
1962	161	1974	612	1984	1,890
1963	42	1975	105	1985	1,438
1965	1,817	1976	725	1986	2,018
1966	682	1977	1,099	1987	4,644
1967	46	1978	1,593	1988	8,304
1968	604	1979	1,668	1989	10,107
1969	11	1980	1,086	1990	1,284
1970	501				

※ 농림통계 년보에서 발췌

#### 다. 1990년대 발생상황

- 1) 1990년대에도 돼지콜레라 발생은 매년 지속되었고, 돼지콜레라 국가 근절대책이 수립되기 전 6년 동안('92-'96) 146건(11,534두)이 발생하였다.
- 2) 그러나 '96년 6월 돼지콜레라 국가근절대책이 수립되고, 예방접종이 강화됨에 따라 '97년 68.7%였던 항체 양성률이 '99년에는 91.4%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2000년과 2001년은 연속 96% 이상의 높은 항체 양성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항체 양성률에 힘입어 '97년 20건이던 발생율이 '98년 6건 및 '99년 5건으로 감소하였으며, '99년 8월 경기 용인 지역의 발생을 마지막으로 이후 2년 동안 추가발생이 없었다.

〈표 3-3〉 국내 돼지콜레라 발생현황 (1991~2001)

연도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발생건수	26	24	24	19	14	39	20	6	5	-	-
발생두수	1,794	1,327	1,353	1,525	1,037	4,498	1,912	985	1,683	-	-
발생두수/건	69.0	55.3	56.4	80.3	74.1	115.3	95.6	164.2	336.6	-	-
근절대책추진	수립전					수립	예방접종강화				
항체양성률 (%)	약 40 - 60					-	68.7	76.1	91.4	96.1	96.4

※ '01.12.1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

## 라. 2000년대 발생상황

### 1) 강원 철원 인천 및 경기지역 발생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2001.12.1) 5개월 만인 2002년 4월에 철원지역에서 2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고, 6개월 후인 2002년 10월~12월 사이에 인천·경기 지역에서 11건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2002.12.21일 경기 이천(1건) 발생시 제한적으로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행정구역과 그 인접 시·군 지역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 2) 전국적 발생

2003년 3월~5월에 오염된 종돈의 분양과정을 통하여 6개도 25개 시군(구)에 걸쳐 전국적으로 65건의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그간 청정화 선언과 함께 중지하였던 예방접종을 다시 재개하게 되었다.

### 3) 부분적 발생

전국적인 예방접종이 실시된 이후 기존 발생지역에서 예방접종이 안된 돼지를 구입하거나 예방접종 누락으로 인하여 2003년 8월 이후 6건의 돼지콜레라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산발적 발생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진단법 개발 보급

### 가. 항원 진단법

돼지콜레라 항원은 주로 바이러스의 1차 감염기관인 편도를 대상으로 형광항체법(1969년)으로 진단하여 왔으며, 1989년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대한 단클론 항체가 생산되어 간접형광항체법이 적용됨에 따라 진단이 더욱 용이해졌다. 최근에는 항원진단 ELISA법(2000년)이 개발되어 국내 방역기관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나. 항체 진단법

혈청학적 검사법으로는 효소면역중화시험법(NPLA)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1997년 이후 항체진단 ELISA법이 개발되어 산업체에 기술 이전되어 상품화가 되었으며 스크린용으로 방역기관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 다. 유전자진단법

중합효소연쇄반응(PCR)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법 또한 민감도가 높고, 특이성이 뛰어나 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증폭된 유전자의 제한효소처리 또는 유전자염기서열 분석 등을 통하여 야외 바이러스와 백신 바이러스의 감별은 물론 바이러스의 감염원 추적을 위한 분자역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항원, 항체 진단법과 함께 현재 국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 3. 예방약 개발 및 활용

### 가. 초기 불활화 백신

- 1) 전국적으로 발생된 돼지콜레라를 방제하기 위한 예방약의 개발·보급이 절실했기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947년에 포르말린 불활화백신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 2) 1949년에는 이보다 면역원성이 다소 개량된 크리스탈 바이올렛 불활화 백신이 개발되어 잠시 사용되었다.

### 나. 약독화 백신

- 1) 1951년에는 가토화 돼지콜레라바이러스(ROVAC virus)를 도입하여 야외에서 응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1970년대에 ROVAC vaccine virus(290대 계대)를 450대까지 연속 계대하여 추출된 백신주는 신생자돈에서도 접종반응이 없는 안전성이 인정되었으며 면역효과도 우수하여 이 순화된 백신주를 RK주로 명명하였다. 이 개량 백신주는 800대까지 더욱 순화되면서 1980년도 초반까지 야외에서 응용되어 돼지콜레라 방역에 크게 공헌하였다.
- 2) 1967년에는 소 콩팥세포에서 순화하여 개발한 조직배양순화 돼지콜레라바이러스(LOM-850 strain)를 도입하여 국내 돼지에 대한 적용시험을 거친 결과,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명되어 1974년부터 최근까지 조직배양생독백신 생산에 이 LOM-E+ virus가 사용되고 있다.
- 3) 1988년에는 연속 계대한 LOM-E+ 주에서 END 음성인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Suri주로 명명하였으며, 이 LOM-E+ 주는 서부마 뇌척수막염 바이러스를 이용한 간섭법으로 assay할 수 있으며 안전성 및 면역원성에서 기존 LOM-E+ 주보다 다소 개량된 것으로 인정되어 새로운 백신주로 보급하였다.

### 다. 유전자재조합 백신

- 1) 약독화 백신은 야외 바이러스와 혈청학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외바이러스 감염과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를 감별할 수 없는 등 국가적 상황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marker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백신이 세계적으로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개발되어 있다.
- 2) 국내에서도 1998년 김역원 연구진에 의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E2 유전자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한 subunit 백신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백신은 산업체에 기술 이전되어 상품화 과정에 있으며, 국내에서 돼지콜레라가 근절된 이후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 백

## ● 제4장

# 1995년 이전 돼지콜레라 방역추진 상황

여 백

## 1. 발생특성

과거 돼지콜레라 발생은 백신 공급량 및 접종량과 다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불규칙한 주기로 유행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1982년에는 일부 관급백신에 증병원성인 END 조직배양시험용 공격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이로 인하여 폭발적인 발생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었음은 물론 국산 백신의 불신을 자초하였다. 1970년대 초기까지는 가토화백신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점차 안전성과 효과가 우수한 조직배양순화백신으로 대체되었다.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이 조직배양순화백신을 초유 포유전의 신생 자돈에 접종함으로써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병을 근절할 수 있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년도별 발생두수와 돼지콜레라백신 공급 물량은 아래와 같다.

〈표 4-1〉 년도별 돼지콜레라 발생두수와 돼지콜레라백신 공급물량

년 도	공급물량(만두)	발생두수	년 도	공급물량(만두)	발생두수
1954	7	2,444	1974	355	612
1955	60	13,545	1976	452	105
1958	16	349	1977	444	1,099
1962	180	161	1978	414	1,593
1965	180	1,817	1979	936	1,668
1968	230	504	1980	729	1,086
1970	501	292	1981	486	357
1972	232	271	1982	985	9,801

돼지콜레라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장에는 일령과 관계없이 발생하였다. 백신접종이 미흡하거나 접종시기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모체이행항체가 소실 되는 60일 내지 90일령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으로는 발병률과 별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돼지의 판매와 이동이 활발한 하절기에는 전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지역별 발생실태를 살펴보면 양돈밀집 지역에 주로 발생하였으며 도시지역이나 육지와 격리된 제주도에서는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사도별 돼지콜레라 발생현황('90~'94)

(단위: 두수)

구분	'90	'91	'92	'93	'94
서울	-	-	-	-	-
부산	-	267	-	-	-
대구	-	-	-	-	-
인천	-	-	-	-	-
광주	-	-	-	-	-
대전	-	-	-	-	-
경기	327	317	539	799	598
강원	51	472	65	-	110
충북	125	158	40	245	105
충남	66	305	197	60	292
전북	177	-	-	-	-
전남	6	129	401	122	-
경북	40	141	-	-	-
경남	492	5	85	127	420
제주	-	-	-	-	-
계	1,284	1,794	1,327	1,353	1,525

## 2. 방역추진 상황

1948년 돼지콜레라의 전국적인 대유행함에 따라 동 질병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위생연구소에서 포르말린 불활화예방약을 비상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나 그 수요가 부응하지 못해 당시 돼지콜레라 다발지역인 전북지역의 이리농과대학 수의학과내에 현지 제조시설을 보강하여 한시적으로 야외 돼지콜레라 이환돈의 장기재료를 사용하여 예방약을 제조한 바 있다. 1952년도에는 가토화약독바이러스 생백신(ROVAC)이 개발됨에 따라 면역효과를 높이고 대량생산도 가능하게 되었고 예방약의 획기적이고 원활한 공급으로 발생이 크게 감소하여 돼지콜레라 방역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1967년 조직배양순화바이러스 생백신(LOM)의 개발과 아울러 예방약 공급이 활성화되어 50두 미만의 영세 양돈농가에 대하여 국가에서 지원하고 50두 이상 사육농가에서 자율방역으로 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1954년부터 1980년에 이르는 동안 돼지콜레라는 1955년 폭발적인 발생(13,545두)를 제외하고는 1,000두 내외의 일정수준의 발생이 지속되었으나 1982년과 1983년에는 전국적으로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3년부터는 이환돈의 살처분 보상정책(시가의 50%)이 시행함과 아울러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1987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1988년부터는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하여 50%에서 80%로 인상하고, 1989년도에는 30두 미만 사육농가는 국가방역 차원에서 이환돈의 보상 살처분제도를 시행하고 30두 이상 사육농가는 자율방역으로 이환돈의 무보상 살처분하는 등 강력한 방역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은 지속되었다.

## ○ 제5장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상황

여 백

## 1. 근절대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 가. 배경

우리나라는 UR 협상타결에 따른 수입 개방화 및 자유화로 농축산물 역시 교역이 다변화되고 또한 활성화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WTO/SPS 협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과 축산물위생에 대한 교역기준이 강화되었고, OIE 국제법규에 의거 돼지콜레라 청정국은 자국의 양돈산업 보호를 위하여 발생국의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96년부터 돼지콜레라 박멸대책을 구체적으로 입안·추진하여 '00년 10월 이후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01년 10월에는 청정국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국내 양돈업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대 일본 돈육수출이 중단될 경우 가격 폭락 등으로 양돈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양돈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수출 양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근절대책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돼지콜레라 박멸계획 실패시 국내 양돈산업계는 약 8~9조원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되었다. 한국농어민신문이 1999년 5월 8일자 분석자료에 의하면 총 9조2,645억원으로 손실이 추정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5-1 참조)

- 양돈농가 시장규모 : 2조 8,750억원
- 관련산업 시장규모 : 2조 2,410억원 <사료업계 1조 7,410억원 동물약품업계 2,500억원, 축산기자재업계 2,500억원>
- 유통업계 시장규모 : 3조 2,220억원<운송업계 380억원, 도축업계 1,900억원, 가공업계 3,160억원 등>
- 수출업계 시장규모 : 3,825억원<부분육 3,750억원, 부산물 75억원 등>

또한, 돼지콜레라 박멸계획이 실패할 경우 국내양돈산업계의 손실액에 대한 농진청의 추정액(1999년 자료)은 총 8조 2,10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 농가 조수익 감소 : 2조 3,400억원
- 사료 생산액 감소 : 1조 5천억원
- 돈사폐쇄손실 : 1조 4,400억원
- 도축장폐쇄손실 : 4,300억원
- 돼지고기외화소요 손실 : 2조 5천억 원

〈표 5-1〉 돼지콜레라 박멸실패 시 추정손실액(수출중단 시 경제적 손실)

(단위: 억원)

구 분		경제적 손실비용(%)				
		100	80	60	40	20
양돈 농가	비육돈	2조 8,000	2조 2,400	1조 6,800	1조 1,200	5,600
	종 돈	750	600	450	300	150
	소 계	2조 8,750	2조 3,000	1조 7,250	1조 1,500	5,750
관련 업계	사료업계	1조 7,410	1조 3,928	1조 446	6,964	3,482
	동물약품업계	2,500	2,000	1,500	1,000	500
	축산기자재업계	2,500	2,000	1,500	1,000	500
	소 계	2조 2,410	1조 7,928	1조 4,526	8,964	4,482
유통 업계	운송업계	380	312	228	156	76
	도축업계	1,900	1,520	1,140	760	380
	가공업계	3,160	2,528	1,896	1,264	632
	유통업계	3조 2,220	3조 5,776	1조 9,332	1조 2,888	6,444
	소 계	3조 7,660	3조 128	2조 2,596	1조 5,064	7,532
수출 업계	부분정육	3,750	3,000	2,250	1,500	750
	부 산 물	75	60	45	30	15
	소 계	3,825	3,060	2,295	1,530	765
합 계		9조 2,645	7조 4,116	5조 5,479	3조 7,058	1조 8,529

## 나. 근절대책 개요

'96년부터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은 3단계 계획(5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으며, 단계별 주요 내용으로는 제1단계(2년 ; '96. 7 ~ '98. 6)는 피해최소화 단계로서 주로 방역교육, 신문, 잡지 등 각종매체를 통한 근절정책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계몽하고,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하여 예방접종, 의심축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등 공동방역 활동을 펼쳤다. 생독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여 예방접종율을 55%에서 100%까지 향상하도록 계도하고, 질병 발생신고 시 보상금을 조기에 지급하여 조기신고를 유도하고, 발생시 발병농장 및 인근지역에 대한 집중방역관리를 실시하여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였다. 제2단계(2년 ; '98. 7 ~ '99)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단계로 비발생 시·도별로 예방약 사용을 금지하고, 도축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발병농장을 추적하고 집중 관리하였으며, 감염 돈군 살처분, 인근 농장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였다. 제3단계로는 근절을 확인하는 단계(1년 ; '00년)로 '01년도부터는 청정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청정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표로 삼았다. 제주도에서는 별도의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98년 2월1일부터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99. 12. 18일 청정화를 선포하였다.

## 다. 근절대책 주요 추진사항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돼지사육 통계를 정밀 조사하였으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실시방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예방접종 의무화를 추진하였다.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돼지와 양돈농가 사육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정부에서 공급하는 돼지콜레라 예방약을 농가에 직접 나눠주는 대신에 쿠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99.3). 아울러 근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 기능을 시장·군수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기관별 역할분담을 재정립하였으며, 지역담당관제를 도입하여 발생위험성이 있는 지역중심으로 집중 운영하였다. 혈청검사용 시료채취를 도축장에서 농장채혈검사로 전환하여 더욱 철저한 농가검사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민간단체의 방역보조원 제도를 도입하고, 농장채혈 등 일선 방역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토록 운영하였으며, 민간인 주도의 방역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으로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를 설립('99.4)하여 돼지콜레라 방역 및 혈청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이후 돼지콜레라비상대책본부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확대 개편(2000.6)하여 돼지콜레라 등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방역기구의 발족 계기를 마련하였다.

## 라. 제도 개선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하여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및 방역조치 위반농가의 처벌을 강화하고, 생산자단체의 공동방역사업 실시 및 지원근거를 설정하였다.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하여 “돼지콜레라예방접종실시명령”고시를 제정('98. 9. 5)하여 예방접종을 의무화하였으며, 도축 시 예방접종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미첨부 시 도축제한을 실시하고, 혈청검사 결과 80% 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예방접종률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방접종 강화에 이은 예방접종 중단시의 방역상황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역상황별로 방역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을 제정('99.6)하여 운용함으로써 체계적인 방역관리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또한 돼지콜레라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조기 도태를 유도하였으며, 예방접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개정(법 : '00. 1. 28, 시행령 : '00. 3. 28, 시행규칙 : '00. 7. 27)하여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농장폐쇄 및 사육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농장·도축장 등의 차량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와 소독실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 마. 청정화 추진 경과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의 철저한 추진으로 '99년 8월 경기도 용인지역 발생이후 '01. 12월 1일 청정화 선포 이전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00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대일본 돈육수출이 중단되었으나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돼지콜레라 청정화 목표를 '00년 10월에서 '01. 3월로 수정하였으며, 양돈관련단체, 지자체, 학계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단시기를 다시 '01. 5월 이후로 연기하였다. 지역별 청정화를 추진하여 제주도에서는 '98. 2. 1일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99. 12. 18일 청정화를 선언하였고, 울릉군에서는 '99. 12. 10일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01. 2. 1 청정화 선언하였으며, 강원도는 '01. 1. 1일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01. 7. 1일 전면적으로 청정화를 선포하였다.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단과 청정화 선포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두 차례의 공청회 개최를 통해 축산관련 단체, 양축가, 국가 방역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시기를 '01년 10월로 잠정 연기하였다. 그리고 '01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299개 농장(4,788두)을 대상으로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청정농장을 확인하여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청정화를 선포하게 되었다.

< 참고자료 1 >

#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 대책 보고서

1996. 6. 8

농림수산부



## 1. 현황

### 가. 가축전염병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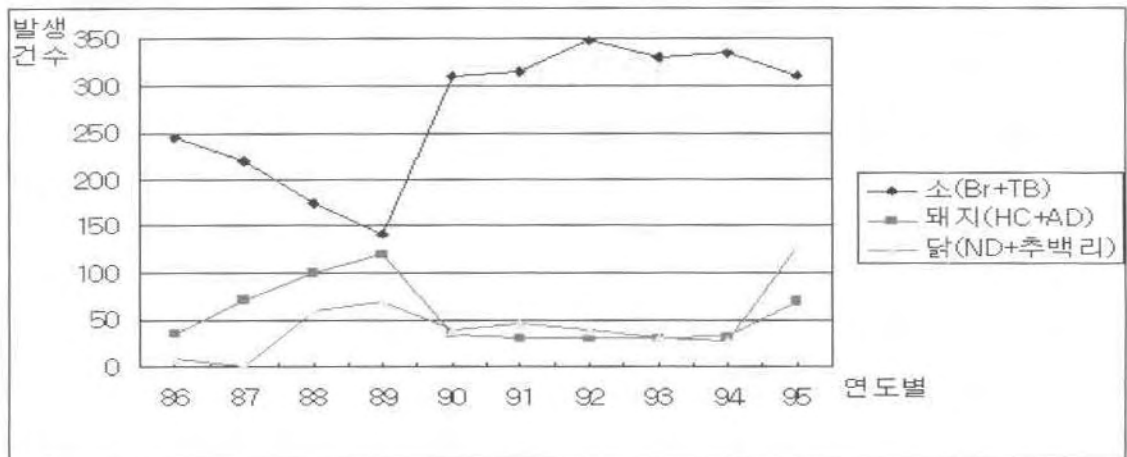
- 국제수역사무국(OIE)등록 질병 : 137종
  - List A : 15종, List B : 90종, List C : 32종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정전염병 : 51종
  - 제1종 : 26종, 제2종 : 25종

### 나. 주요전염병 발생동향

(단위: 두)

축종	병명	'91	'92	'93	'94	'95	'96. 4
소	탄저균	-	-	-	-	-	-
	결핵	63	82	146	257	308	53
	부루세라	438	451	428	501	322	87
돼지	돼지콜레라	1,794	1,327	1,353	1,525	1,037	1,733
	오제스키병	-	2	-	482	2,016	465
닭	뉴캐슬병	125,356	411,270	56,835	41,920	510,193	227,630
	추백리	7,818	39,715	11,317	42,250	324,111	74,400
개·소등	광견병	-	-	1	29	7	5

#### ○ 연도별('86 ~ '95) 가축전염병 발생추이



## 2. 문제점 및 애로요인

- 가축의 위생사육시설(채광, 환기 등)이 미비하고, 사육규모가 다두화·집단화 및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확산 및 질병피해 대형화

# 1. 현황

## 가. 가축전염병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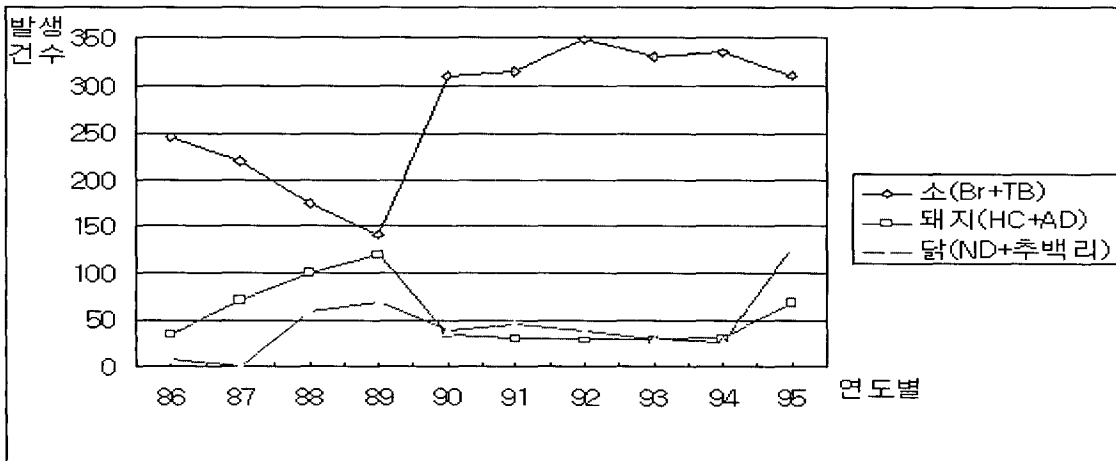
- 국제수역사무국(OIE)등록 질병 : 137종
  - List A : 15종, List B : 90종, List C : 32종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법정전염병 : 51종
  - 제1종 : 26종, 제2종 : 25종

## 나. 주요전염병 발생동향

(단위: 두)

축종	병명	'91	'92	'93	'94	'95	'96. 4
소	탄저핵	-	-	-	-	-	-
	부루세라	63	82	146	257	308	53
	돼지콜레라	438	451	428	501	322	87
돼지	돼지콜레라	1,794	1,327	1,353	1,525	1,037	1,733
	오제스키병	-	2	-	482	2,016	465
닭	뉴캐슬병	125,356	411,270	56,835	41,920	510,193	227,630
	추백리	7,818	39,715	11,317	42,250	324,111	74,400
개·소등	광견병	-	-	1	29	7	5

### ○ 연도별('86 ~ '95) 가축전염병 발생추이



# 2. 문제점 및 애로요인

- 가축의 위생사육시설(채광, 환기 등)이 미비하고, 사육규모가 다두화·집단화 및 밀집사육으로 인한 질병확산 및 질병피해 대형화

- 중돈장증계장에 대한 방역 및 위생관리 소홀
  - 자체 정기검진 및 가축위생시험소의 확인검사 불철저
- 가축전염병 발생사실 은폐 및 신고 기피로 피해 확산
  - 발생신고시 이동제한, 살처분 등 불이익 초래
  - 이동통제, 강제 살처분 등 방역 행정업무 수행의 어려움
- 수입개방에 따른 해외 악성전염병 국내유입 기회 증대
  - WTO/SPS 협정에 따라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비발생에 대한 국제 기준 권장
  - EU·남미·중국 등으로 부터 축산물 수입제한 해제 요청
- 가축방역 행정체제 분산
  - 방역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기동방역 업무수행이 어려움
  - (예)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 시·도 가축위생시험소(50개소)

### 3.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 가. 추진배경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집단폐사, 유사산, 신자수의 감소, 증체율·산란율·산유량 감소 등 사료효율 저하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막대
  - UN산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축산업 생산액의 약 20%로 보고
- 매년 가축전염병 피해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는 계속발생
  - 특히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뉴캐슬병 등으로 국내 축산업계에불안감 고조
  -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비 절감이 필수적임
- 가축전염병 근절은 생산비 절감외에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획기적인 방안임
  -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장·단기 계획 수립

#### 나. 축종별 주요 전염병 박멸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 가축전염병 박멸대책위원회 설치 운영('96. 2. 1~4. 20)
  - 위원회 구성 : 양축농가, 관련단체, 하계, 수의과학연구소등 51명·축종별 분과위원회 : 돼지 23명, 닭 12명, 소 14명
  -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협조를 받아 주요 가축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장·단기 계획수립

○ 대상질병

- 돼지 :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전염성위장염
- 닭 : 뉴캐슬병, 추백리, 가금티프스
- 소 : 우결핵, 부루세라, 탄저병

○ 추진경과

- 1차회의 (2.27) : 대책안 초안작성 및 협의
- 2차회의(3. 12) : 장관주재 가축질병대책회의
- '96. 4. 20 : 박멸대책 최종안 작성, 농림수산부에 건의
- 박멸대책 제출안을 기본으로 주요 전염병 근절대책 수립

4. 향후 추진계획

중점 추진방향

- 주요가축전염병근절 목표설정 - 중장기 단계별 대책 추진
  - 예방접종, 검진사업 확대 실시 및 질병진단기능 강화
- 양축농가와 생산단체 중심의 지역별 공동방역 실시
  - 공동방역 실시반 : 시·군별·축종별 운영

가.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목표 년도설정

구 분	'96	'97	'98	'99	2000	2001	2002	비 고
돼지콜레라	[Progress bar from '96 to '99]				↔			<1단계> [Progress bar from '96 to '99] 피해최소화단계
오제스키병	[Progress bar from '96 to '99]				↔			
뉴캐슬병		[Progress bar from '97 to '99]				↔		<2단계> [Progress bar from '97 to '99] 청정화 실시단계
추백리· 가금티프스		[Progress bar from '97 to '99]				↔		
우결핵· 부루세라		[Progress bar from '97 to '99]				↔		종계장(GGP, GP) 청정화 <3단계> [Progress bar from '97 to '99] 근절확인 단계
		[Progress bar from '97 to '99]				↔		

## 나.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 단계별 추진목표

- 돼지플레라 : 2001년 청정화 선포(5개년 계획)
  - 피해 최소화단계 : 2년('96.7~'98.6) : 생독백신 접종확대(접종율 55% →100%)
  - 청정화 실시단계 : 2년('98.7~'99) : 유전자재조합 백신접종
  - 근절 확인단계 : 1년(2000) : 백신사용금지, 청정농장 유지
- 오제스키병 : 2003년 청정화 선포(6개년 계획)
  - 피해 최소화단계 : 3년('96.7~'99) : 감염율 1%이하로 감축
  - 청정화 실시단계 : 2년(2000~2001) : 감염둔군 전두수 도태
  - 근절 확인단계 : 1년(2002) : 백신사용금지, 검사강화 → 근절선포
- 뉴캐슬병 : 2002년까지 청정화(5개년 계획)
  - 피해 최소화단계 : 2년('97~'98) : 백신접종 의무화, 차단방역
  - 청정화 실시단계 : 2년('99~2000) : 청정농장 인증제 도입
  - 근절 확인단계 : 1년(2001) : 백신사용 중단, 도태보상금 지급
- 추백라기금티프스 : 2002년까지 5년 기한내에 근절추진
  - 피해 최소화단계 : 2년('97~'98) : 원종계, 종계 중점 청정화
  - 청정화 실시단계 : 2년('99~2000) : 종계장, 청정화 정착
  - 근절 확인단계 : 1년(2001) : 사료위생, 양계장, 도계 위생강화
- 우결핵부루세리병 : 2004년까지 검진 확대 실시로 대폭 감축
  - 피해 최소화단계 : 2년('97~'98) : 검진 확대 실시, 살처분 실시
  - 청정화 실시단계 : 2년('99~2000) : 검진방법개선, 지역별 차등방역
  - 근절 확인단계 : 2년(2001~2002) : 감시지역, 오염지역 집중확인

### 주요 추진과제

#### 가축방역 체계 구축

- 가축전염병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방역체계 확립
- 전염병 발생 조기신고체제 확립
- 병성감정, 검진업무 기능강화
-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방역 조치

#### 가축방역 관련 제도개선

- 종돈장·종계장 위생·방역관리 우수농장인증제 시행
- 도축장·도계장에 차량세척·소독시설 지원 및 가축 수송차량 소독 실시 의무화

## 다. 세부 추진대책

### 가) 가축방역 체계 구축

#### (1) 가축전염병 피해예방을 위한 공동방역체계 확립

##### (가)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 설치운영

###### □ 목적

- 생산자가 주도하는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체제 확립으로 지역단위 양축농가 자율방역 정착 및 방역효과 거양
- 양축농가와 방역관련 조직간 유기적 협조 지원체계 강화로 공동방역 필요성 인식제고

###### □ 공동방역사업단 구성

###### ○ 중앙공동방역사업단

- 축협중앙회에 가축방역 지원 전담부서 설치 운영
  - 축협 조직체계를 활용하여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지도 업무 추진
  -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기술교육, 지역 공동방역, 방역 홍보 및 예방약, 소독약품 지원
- 기술지원 : 수의과학연구소
- 방역홍보지원 : 양돈협회, 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 대한수의사회등 축산관련단체

###### ○ 시·도 공동방역사업단

- 축협 시·도지회가 주관
  - 시도 축정과, 가축위생시험소, 양돈협회·양계협회 도지부, 수의사회 시·도지부 등과 협의 운영
- 기술지원 : 수의과대학, 병성감정 실시지정기관(민간연구소)

###### ○ 시·군지역 공동방역사업단

- 시·군 지역축협이 주관하여 축종별(돼지, 닭, 소)로 운영
  - 시·군 축산과, 양돈협회지부, 종돈장, 종계장, 계열주체 농가, 전기업 양축농가, 읍·면별 양축농가 대표, 공·개업수 의사가 참여하여 지역별 협의체 구성 운영
- 공수의 제도개선으로 방역업무 활용 극대화
  - 읍·면별 방역관리 책임지역 지정·운영
  - 공수의 활동이 미약한 자는 해촉하고 적극 참여자로 교체
  - 공수의 수당지급 : 지역축협조합장이 지역공동방역사업단에 수의 협조여부 및 책임지역의 방역관리 실태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시·군에서 공수의 수당지급
  - 주요 전염병 발병농장의 방역관리 요원으로 활용

#### □ 공동방역사업단 담당업무

- 예방접종 자율방역 확대실시 추진
  - 돼지 콜레라 접종율 : (현행) 55% → 90%이상 실시
  - 뉴캐슬 예방접종 : (현행) 45% → 90%이상 실시
- 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농장소독, 이동제한, 농장출입통제등 지역단위 공동방역 실시
- 검진 확대 및 질병검색 업무협조로 자율방역 정착
- 전염병 예찰업무, 가검물채취, 검사의뢰 등에 공동 참여하여 질병발생 조기발견을 위한 업무협조

#### □ 지역별 공동방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지역별 공동방역 활동을 평가하여 양축자금등 정책자금을 시·도, 시·군별로 차등지원
  - 시·도별 공동방역 실적 평가시 우수시·도에 정책자금, 방역비 지원 확대
    - 인센티브사업비 지원을 위한 시·도 평가시 축산분야는 지역 공동방역 사업 활동을 평가대상으로 함
  - 시·군별 공동방역 평가시 우수시·군에 자금지원 확대
    - 공동방역 참여도가 높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시·군은 정책 자금, 방역비 지원을 확대하여 차등지원
- 지역공동방역 참여능가에 대한 지원
  - 경쟁력제고사업, 양축자금등 각종 정책자금 우선지원
    - 시·군 축협장이 지역 공동방역사업단에 적극 참여하는 양축농가를 확인한 후 자금지원하고, 비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조치
    - 공동방역 적극 참여능가에 예방주사, 소독약품 우선지원
    - 지역 공동방역 운영 지역에 방역비 우선지원 및 공수의순회진료 월 2회이상 실시
    - 가축계통 출하시 공동방역 참여능가 우선선정
  - ※ 공동방역사업단 세부운영지침을 별도마련·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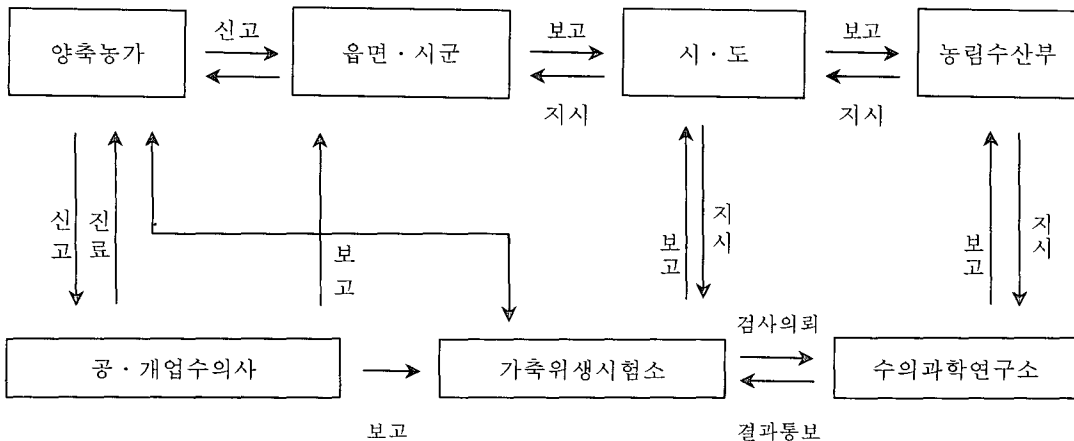
#### (나) 질병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 교육 실시 및 홍보강화

- 방역기술교육실시
  - 주요 질병별 예방방법, 발생시 대책, 지역공동방역의 필요성 등을 교육
  - 교육주관 : 축협, 양돈협회, 양돈산학연구회, 양계협회, 수의과학연구소, 백신제조업체별 년 2회이상 실시
  - 방역홍보매체 : 축협, 양계협회, 양돈협회 월간지, 축산신문지, 농가방송(TV)
  - 예산지원 : 생산자 단체가 교육주관시 소요예산 지원(축발기금방역홍보비)
- 가축방역 홍보
  - 주요 전염병 예방기술 홍보를 위한 방역홍보 리후렛 및 Video-Tape 제작 배포('93~'95 : 14종 제작)
    - 주관 : 수의과학연구소, 축협주관으로 매년실시
    - 소요예산 : ('96) 축발기금 40백만원
  - 가축전염병 병성감정 기술향상을 위한 가축질병 편람 제작 배포
    - ※ 편람제작 : 한국 수의병리학회(회장 : 경북대 이차수교수)
    - 배포기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공수의, 동물검역소, 시·도

- 소요예산 : '96) 촉발기금 30백만원
- 사육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개선 지원
  - 환기시설, 가축분뇨 처리 시설비 지원
- 질병예방을 위한 사양기술교육 실시
  - 투약조기이유(MEW), 격리조기이유(SEW), 다단계 농장 사육방법(2-Site, 3-Site)등에 대한 시설관리 및 사양기술 교육
  - 교육주체 : 수의과학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축협, 시범농장
  - 예산지원 : 사양기술 교육 소요예산 지원(촉발기금)

**(2) 가축전염병 발생 조기신고 체제 확립**

(가) 가축전염병 발생신고 및 보고 체계



(나) 가축전염병 발생시 자발적인 신고분위기 조성

□ 살처분보상금 지급제도 개선 : 시가의 80% → 차등 지급

- 조기신고농가 : 전염병에 걸린 가축(죽은가축 포함)을 발견한 때에 그 소유자·관리자가 지체없이 신고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의사에게 진단·검안을 의뢰한 자
  - 살처분보상시 가산액을 추가하여 보상(시장가의 100% 지급)
  - 종축(종모우, 종돈, 종계) 보상금은 평가기준액에 종축가격 산정 적용
- 지체신고자 : 병든 가축 또는 죽은 가축을 발견하고도 시일을 지체하여 피해가 더 발생한 후 신고한 자
  - 살처분보상금은 시가의 80% 지급하되 과태료 부과
- 미신고자·검사거부자 : 병든 가축·죽은 가축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안하거나 검사를 못하도록 거부·방해한 자
  - 살처분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및 과태료 부과
  - 병든 가축의 진료 또는 죽은 가축을 검안한 수의사가 이를 신고 안한 자는 형사고발조치(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상기 3개 유형에 대한 구체적 판별기준, 판정 및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규정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

#### □ 전염병 발생시 자발적인 조기신고 유도

- 전염병 발생 또는 증상이 의심되는 환축을 즉시 신고한 농가
  - 해당농장에 공수의 무료진료 지원 및 검사 우선 실시
  - 소독약품과 예방약 지원 조치
- 전염병 발생신고시 방역조치의 보완
  - 발생신고 농장 및 조기신고자에게 불이익 해소방안 추진
    - 가축위생시험소의 방역지도 및 예방접종 우선 지원
    - 가축 이동제한, 격리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
- 전염병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양축농가는 축산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방역지원 제외, 계통출하대상에서 제외, 각종 축산행정지원 중단
- 축산단지 등 집단사육농장에 방역기술 지원
  - 영농조합, 양돈단지, 양계단지등에 대한 수의과학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의 정기 및 수시 방역지도
  - 방역 담당자에게 백신접종, 가검물 채취·송부요령 등 기술교육
-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용 활성화로 질병피해 확산 방지
  - 가축위생시험소별 예찰반 운영 → 발병사실을 신속히 홍보
  - 공·개업수의사, 사료 판매업소, 동물약품 판매업소 및 병성감정지정 민간연구소의 질병발생 정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 (3) 병성감정 및 검진업무 기능 강화

#### (가) 수의과학연구소에 병성감정 전담반 구성운영

- 신속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반(Diagnostic Lab. System) 운영
  - 진단 소요기간 단축 : (현행) 10~15일 → 2~7일로 단축
- 질병진단용 특수차량(D. Lab. Car) 운영
  - 질병의 신속 정확한 진단에 필요한 정밀장비를 특수차량에 적재하고 현지 출동하여 가검물 채취 후 현지에서 진단 및 방역지도
  - 질병 발생지역 및 해외악성전염병 발생시 신속히 현지 출동
  - 현지 가검물 검사로 질병예방 및 치료방법 등 농가지도·홍보 실시
  - 특수차량 확보계획 : ('96) 1대, ('97) 1대
  - 소요예산 : ('96) 38백만원, ('97) 41백만원

#### (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확대

- 민간 병성감정기관(현행 7개소) :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부설연구소 지정 확대
- 전국 수의과대학(10개 대학 병리실험실·부속동물병원)을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양축농가가 수시

## 이용토록 편의 도모

- 수의과대학 병리실험실에 검사장비 지원 방안 추진
- 수의과학연구소에서 진단액 생산, 배정
- 임상병리학, 미생물학, 전염병학 등 전문교수의 신속한 진단 실시

## (다)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기능강화 대책

##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인력 보강 추진

- 시험소 50개소 : (현재) 수의직 609명 → 822명(증 213명)
  - '96. 4. 3 : 내무부에 시도 가축방역조직 보강 협조 요청
  - 담당업무 : 검진업무, 병성감정, 혈청검사, 전염병 조사 및 긴급방역 업무
  - 문제점 : 검사담당 인력 부족으로 방역업무 처리 지연  
(시험소당 방역담당 3명이 4~5개군 담당)
- 개선방안 : 인력증원 전까지 검사보조원(일용직) 활용
  - 소요인력 : 시험소당 5명×50개소 = 250명
  - 소요예산(지방비) : 25천원(일당)×250명×120일 = 750백만원

## □ 특수 소각로 시설 설치지원

- 용도 : 살처분 가축, 폐사축 소각처리용(살처분 가축의 지하 매몰시 인근주민이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매몰 처리 지난)
- 9개도에 소각로 2기씩 설치 지원
  - 설치장소 : 각도별 가축위생시험소 2개소에 배치
- 소요예산 : 200백만원×18기×50% = 1,800백만원(국비)

## □ 기동방역 진료차량 및 전염병 검사장비 지원

- 기동방역 진료차량 : 시도 시험소당 1대씩 지원(50대)
  - 용도 : 발생신고서 현지 긴급조사, 발생정보 확인, 긴급방역 조치 등 방역업무 신속 처리
  - 소요 예산(국비) : 15백만원×50대×50% = 375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전염병 검사장비 지원(15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검사장비 1대씩 구입비 매년 지원
  - 소요예산 : 28백만원×15대×50% = 210백만원(국비)

## □ 가축위생시험소의 진단기능 보강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 병성감정 전담반 설치
  - 전담인원 확보 및 장비보강으로 병성감정 1차실시기관 육성
- 병성감정, 진단기술 교육 강화
  - 교육주관 : 수의과학연구소에서 병성감정 기술 및 유전공학적 진단기법 교육
  - 교육대상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 담당자

## (라) 도축장·도계장 출하가축에 대한 검사 확대 실시

## □ 현행 혈청검사 방법

- 종돈장·종계장에 출입하여 채혈, 검사 실시
  - 농장출입이 어렵고 인력소요 과다로 도축장 출하축 검사확대 필요

## □ 도축장 출하가축 검사시 문제점

- 출하가축의 사육농장 기록미비로 농장추적검사 실시가 어려움
  - 농장소재지, 축주성명의 허위 기재가 많음
- 검사인력 부족으로 도축과정 중 채혈 검사가 어려움
- 타 시·도 소재 출하농장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에 장기간 소요

## □ 개선방안 추진

- 도축검사신청서에 출하농장(구입선) 기재 의무화 조치
  - 출하농장 소재지, 농장명, 축주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토록 하고, 이 사항을 작업장 경영자와 축산물검사원이 반드시 확인토록 행정지시
    - 축산물위생처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작업장 경영자 준수사항)
  - 출하농장이 정확히 기재된 신청분에 한하여 도축검사 실시
  - 출하농장 허위기재 사실 확인시에는 축산물검사원이 도축불허 및 해당도축신청인에게 3개월간 도축장 이용 금지토록 조치
  - 출하농장 가축중 전염병 양성발생 통보시에는 해당도에서 즉시 해당농장 추적검사하여 결과조치 및 통보
- 기동방역요원 확보로 도축장 출하가축 검사확대 실시
  - 국방부와 협의 공익근무요원 또는 병역 특례보충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동방역요원 확보방안 추진
    - 대상 : 수의과대학 또는 축산대학 졸업·재학중인자
    - 소요인력 : 20명 × 9개도 = 180명
  - 교육훈련 : 수의과학연구소 및 수의과대학에서 실시
  - 배치기관 : 교육훈련 실시 후 도 가축위생시험소에 배치
  - 담당업무 : 도축장 출하가축 검사 보조업무 및 출하농장 추적조사, 지역별 공동방역 지원을 위한 기동방역업무, 전염병 발생농장 긴급방역 조치 시행등

## (4)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방역 대책

## (가) 피해가 심한 가축전염병 발생시 조치사항

- 발생농장 가축의 이동제한 및 출입자 통제
- 발생농장과 인근지역의 축사소독 실시
- 이환축 살처분 매물, 오염물건 소각·매물
- 인근지역 가축에 긴급 예방접종 실시

## (나) 해외악성전염병 발생시 방역대책

-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훈령)에 의한 방역조치
- 오염지역(발생지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 조치
  - 감수성 동물은 이동을 제한
  - 도축장, 가축시장 등 가축집합시설 폐쇄
  - 인공수정금지 및 원유는 오염물로 인정하여 조치
  - 축사내에 소독, 출입자 통제
  - 사용한 가축 관리용구, 사료, 분뇨의 이동을 금지
- 경계지역(발생지 중심으로 반경 10km에서 20km 이내 지역)
  - 감수성 동물은 경계지역 이외의 장소로 이동을 금지
  - 가축시장에는 도축용이외의 가축 출입금지
  - 축사내·외 소독, 출입자 통제
- 시·도지사의 긴급 방역조치
  - 오염지역의 살처분 대상동물에 살처분 조치
    - 환축과 동거하였거나 동거하는 가축
    - 환축과 동일 축사, 동일 시설내에 있거나 동일관리인이 사양하는 감수성 동물
    - 기타 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감수성 동물
  - 축사 입구에 전염병 발생사실과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 방역 CPX 훈련 실시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가상하여 관련기관간 도상연습을 연 1회 실시
  - 방역관련 기관·단체·학계·업계 등의 참여하여 실제와 같은 상황부여 및 대비능력 숙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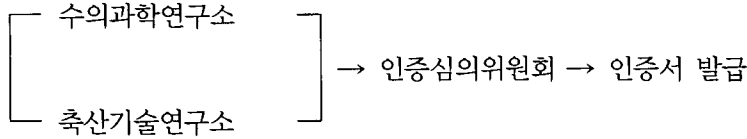
## 나) 가축방역 관련 제도개선

## (1) 종돈장·종계장 위생·방역관리우수농장인증제 실시

- 목적 : 위생·방역관리 상태가 우수한 종축농장(종돈장, 종계장)을 인증함으로써 종축을 통하여 전파되는 질병을 차단하고 양축농가 보호
- 인증대상 : 종축업 등록을 한 농장(종돈장, 종계장)
- 검사기관 : (1차검사)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확인검사) 수의과학연구소
- 검사대상 질병 : 종돈 - 오제스키병, 돼지위축성비염, 돼지적리, 특소플라즈마, 유행성페렴  
종계 - 추백리, 가금티프스, 닭마이크로플라즈마

○ 인증절차

가축위생시험소 검사합격 → 인증신청 → 시·도 → 농림수산부



○ 인증기관

- 우수농장인증심의위원회 구성 : 인증대상농장 검사성적등 심의
- 정부에서 관장, 정착 후 생산자단체로 업무이관

○ 시행준비 : 종돈장, 종계장 우수농장인증제 고시제정 추진

- '96. 6월중 고시 제정

**(2) 도축장·도계장의 가축수송차량 소독시설비 지원 및 소독실시 의무화**

○ 목적 : 가축의 수송차량이 질병전파 요인이므로 도축장·도계장에 수송차량 소독실시 의무화를 위한 시설비 용자 지원

- 3개년 계획으로 추진(도축장 118개소, 도계장 55개소)

○ 지원대상

- 도축장·도계장의 출하가축 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 도계장의 닭 운반용기 : 닭 어리상자(목재) → 플라스틱상자로 대체

○ 용자지원 소요예산('97)

- 도축장 차량 소독시설 : 1,056백만원
  - 44백만원 × 30기 × 80% = 1,056백만원
- 도계장 차량 소독시설·운반용기 소독 : 3,160백만원
  - 395백만원 × 10개 × 80% = 3,160백만원
- 지원조건 : 용자 80%, 자부담 20%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기타 민간융자금)

○ 가축수송차량 소독실시 의무화 추진절차

- 세척·소독 장소 : 도축장, 도계장 세척·소독시설 이용
- 세척·소독 확인 : 축산물검사원 또는 작업장 경영자가 차량소독시 확인하고 차량 세척·소독확인서 발급
- 농장의 출입차량 확인 : 농장관리자가 차량의 소독여부를 확인 후 농장출입 허용하여 농장 질병 전파 차단
- ※ 도축장·도계장의 차량소독시설 의무화 실시 조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7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설비명령) 및 제16조(축사등의 소독)에 의한 소독시설 설치 명령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조(검사원 업무), 제41조(작업경영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가축수송차량 세척·소독 실시토록 조치

### (3) 도계장 위생검사 강화

- 현행 : 도계장(64개소) 소속 자체검사원(수의사)이 검사 실시
- 개선 필요성
  - 종전에는 대부분 야간 도계였으나 현재 주간도계는 약 60%임
  - 닭 전염병 전파요인 차단을 위해 도계검사 철저 필요
- 개선방안 : 가축위생시험소 인력보강시 축산물검사원(가축위생시험소 소속)이 검사담당 추진
  - 시행시기 : 주간도계율이 80%이상으로 전환된 후 검사체계 개선

### (4) 부화장 및 미등록 종계장 위생관리 강화

- 미등록부화장·종계장이 많아 닭질병 전파요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허가 종계장, 부화장 단속·고발 안하고 있음
- 부화장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검사 실시
  - 검사담당 : 관할 가축위생시험소 및 시·군
  - 위생관리가 불량한 부화장은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
- 미등록 종계장 정비 추진
  - 등록된 종계장에 대하여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한도액(2억원) 증액지원으로 시설 개선
  - 종계장에서 미등록 종계장에 병아리 분양 중단토록 행정지도
  - 병아리 입식농장의 전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미등록 종계장 정비
  - 미등록 종계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96. 6. 1 ~ 6. 30
    - 실태조사를 토대로 종계업 관리 및 육성방안 수립
    - 종계장 등록토록 유도 및 단속방안 마련

### (5) 가축질병 방제 통합정보시스템 추진

- 초고속망에 의한 가축방역 관련기관간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구축
  - 용역사업기간 : '96. 5 ~ '97. 10(정보통신부산하 한국전산원)
- 다원화된 가축방역 조직을 전산/정보시스템으로 통합운영
  - 농림수산부, 동검, 수의과학연구소, 시·도가축위생시험소, 수의과대학, 관련단체, 양축농가 등
- 기대효과
  -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하게 진단, 방역관련기관간 방제체계 강화
  - 가축질병예찰방제업무 행정체계의 낭비요인과 비효율성 제거
  - 신속한 방역조치, 질병발생의 피해 최소화 및 확산방지
  - 축종별 원인체별 병력, 병성감정 결과의 종합 DB구축으로 가축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 방제에 대한 관측 가능
  - 축산농가가 직접 공중통신망을 통해 가축질병 정보 활용

### (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검역업무 강화

- 동물검역기능강화 제2단계 발전대책 : ('96~'98) 25,300백만원
- WTO체제에 맞는 동물·축산물의 검역제도 개선

- 검역관련규정 보완 및 수입위생조건 제정·개정
- 수출입 검역물량 증가에 따른 검역조직 확대 및 기술인력 보강 추진
  - 검역시설·장비 현대화 등 : ('96) 56억 → ('98) 84억
  - 검역인력 증원 : 현 241명 → ('98) 448명(증원 207명)
- 전염병검사 및 잔류물질검사 강화
  - 수입동물의 전염병검사항목 확대 : ('96) 58종 → ('98) 98종
  - 수입육류의 위생검사항목 확대 : ('96) 65종 → ('98) 142종
- 해외악성전염병연구센터 개설운동 : 수의과학연구소
  -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시험 및 연구장비 확보
  - 구제역, 우역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약 상시 비축

### (7) 가축방역담당 행정조직 개편보강

- 국립동물검역소, 농촌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와 사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체계 일원화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 현행 : 방역관련 행정조직의 다원화로 신속조치 지남
      - 농림수산부 : 동물검역소
      - 농 진 청 : 수의과학연구소
      - 시 도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지소포함 : 50개소)
    - 추진방안 : 농림수산부 산하에 중앙수의검사소(동검 본소개편)를 1차관서로, 가축위생시험소를 2차관서로 개편 조정
  - 가축위생과를 축산물위생과, 가축방역과로 개편 추진
    - 방역계(3명)만으로는 가축방역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방역과 국제검역업무를 전담하는 가축방역과 편성 시급
    - 가축위생과와 동물검역소 국제검역정보과(9명)를 통합하여 축산물위생과, 가축방역과로 분과 개편
      - 축산물위생과 : 축산물위생종합대책 수립 추진
        -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감독
        - 축산물위생검사 및 위생관리 업무
        - 축산물내 유해물질 잔류검사 업무
        - 축산업과 관련한 환경오염 방지대책
        - 축산분뇨 처리대책 관련업무 등
      - 가축방역과 :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추진
        - 가축질병 예방·검진·혈청검사
        - 가축전염병 예방약, 진단액 개발·수급 조절
        - 가축전염병 시험조사 및 공수의 운영
        - 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역 및 위생검사 업무
        - 수출입위생조건 제정·개정
        - 해외악성전염병 발생정보 수집 및 동향 분석
- ※ 조직개편에 의한 가축방역과 설치이전까지의 가축방역업무 원활을 위하여 동물검역소에서 수의주사 2명 파견조치

### 5. 추진사항별 조치계획 및 일정

업 무 내 역	세 부 조 치 내 용	추진일정 (담당부서)
① 주유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절대책 추진내용 및 홍보·협조강화를 위한 시도 축산과장, 축산단체장 회의</li> <li>- 장소 : 대회의실</li> </ul>	'96.6월하순 (가축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공동방역사업단 구성운영 방안 추진</li> <li>○ 지역별 공동방역사업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개최</li> <li>○ 공동방역사업단 세부운영 지침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협조직을 주관으로 한 지역별 공동방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li> <li>- 장소 : 축협회의실</li> <li>- 참석대상 : 축종별 생산자단체, 지역축협장 및 양축농가 대표, 관계기관, 대학교수등</li> <li>○ 참여주체별 세부 담당업무 : 지역별·축종별 공동방역사업단 구성, 운영방법, 지원방안 등</li> </ul>	'96.7월상순 (가축위생과, 축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가축전염병 조기신고체제 확립</li> <li>○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을 위한 세부 시행지침 작성</li> <li>○ 자발적인 조기신고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기신고자, 지체신고자, 미신고 및 검사 거부자에 대한 판별기준, 지급절차 등 규정</li> <li>○ 조기신고농가, 공동방역참여농가에 대한 지원계획('97 통합실시요령의 경쟁력제고사업에 반영)</li> </ul>	'96.8월말까지 (가축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가축방역관련 제도 개선</li> <li>○ 도축장 출하가축 검사확대 실시</li> <li>○ 방역 CPX훈련</li> <li>○ 종돈장·종계장우수농장 인증제</li> <li>○ 부화장·미등록종계장 위생 관리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축장·도계장의 혈청검사 확대실시를 위해 도축검사신청서에 출하농장(구입선) 기재 의무화 조치</li> <li>○ 기동방역요원 확보방안을 국방부·병무청과 협의 추진</li> <li>○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가상한 관련기관간 도상연습 실시</li> <li>○ 우수농장인증제 고시 제정</li> <li>○ 미등록종계장 실태 조사</li> <li>○ 종계장 등록 유도 및 단속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6.7월중 (가축위생과)</li> <li>'96.12월말까지 (가축위생과)</li> <li>'96.10월중 실시 (가축위생과)</li> <li>'96.6월말까지 (가축위생과)</li> <li>'96.6.1~6.30 (축산정책과)</li> <li>'96.7.30까지 (축산정책과)</li> </ul>



## 6. 주YG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예산지원 계획

### 가. 년도별 투자 계획

(단위: 억원)

구 분	'96	'97 ~ 2002							
		'97	'98	'99	2000	2001	2002	'97-2002 합계	
계	○ 방역재료비	41	86	150	180	210	220	220	1,066
	○ 공수의수당, 수의사보수교육	(7)	10	15	18	21	25	28	117
	○ 살처분보상금	13	50	70	80	90	100	100	490
	○ 가축위생시험소 장비지원 - 검사장비·방역차량, 대형소각로설치	3	24	20	10	15	15	16	100
	○ 도축·도계장 소독시설 (민간용자금)		42	42	40	-	-	-	124
	계	57	212	297	328	336	360	364	1,897
지방비	21	70	95	104	118	130	130	647	
합계	78	282	392	432	454	490	494	2,544	

- 소요예산 확보계획 : 국비예산을 최대한 확보
  - 방역재료비 : 국비 70%, 지방비 30%
  - 공수의수당, 가축위생시험소 장비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나. '97 가축방역 예산(안) : 재경원 요청

(단위: 백만원)

구 분	'96 예산(A)	'97 예산안(B)	증감(B-A)
합계	5,684	21,236	15,552
○ 방역재료비	3,923	8,645	4,722
- 예방주사	2,020	2,753	733
- 검진	1,079	3,549	2,470
- 진단액 구입	334	512	178
- 기생충구제	440	1,730	1,290
- 방역복 등	50	101	51
○ 배상금 (살처분보상금)	1,348	4,996	3,648
○ 자치단체 경상보조	161	-	△ 161
- 진도건 방역	21	-	방역재료비로 전환
- 제주도 부루세라	140	-	방역재료비로 전환
○ 자치단체 자본보조	252	2,385	2,138
- 시험소 장비구입	172	210	38
- 소각로 설치	80	1,800	1,720
- 기동방역 진료차량 구입	-	375	375
○ 민간용자금	-	4,214	4,214
- 도축장 소독시설	-	1,050	1,050
- 도계장 소독시설	-	3,164	3,164
○ 공수의 수당	(727)	908	908
○ 수의사 보수교육	(40)	88	88

※ ( ) : '96 일반회계 예산

## 〈별첨 1〉

## 박멸대책위원회의 대책방안 건의내용 요약

### 1. 주요전염병 박멸목표 설정 - 중장기 단계별 추진

- 돼지콜레라 : 5개년 계획('96~2000년) - 2001년 청정화 선포
- 오제스키병 : 6개년 계획('96~2001년) - 2002년까지 박멸
- 돼지전염성위장염 : 5년내 피해대폭 감축
- 뉴캐슬병 : 5개년 계획('96~2000년) - 2001년까지 청정화
- 추백리·가금티프스 : 5개년 계획('96~2000년) - 2001년까지 박멸
- 우결핵·부루세라 : 7개년 계획('96~2002년)으로 피해 대폭 감축
- 탄저병 : 예방접종 확대 실시로 5년내 감염원 차단

### 2. 축종별 대책추진 1차년도('96) 소요예산 확보 건의

(단위: 억원)

구 분	돼지	닭	소	계
인건비·여비	81	68	16	165
예방약·검사비 등	65	81	10	156
살처분보상금	43	186	121	350
방역차량, 전산장비	31	2	14	47
시설장비구입지원	86	49	100	235
방역전담조직 운영	127			127
계	433	386	261	1,080

### 3.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 방역사업단 설치·운영
  - 지역별 방역위생책임제 정착 : 중앙 및 지역 방역사업단
  - 생산자 주도형의 지역별 상설 방역전담기구 육성
    - 전문방역요원에 의한 예방접종, 소독, 역학조사 실시
- 전염병 검색, 역학조사 강화를 위한 기동방역차량 지원
  -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49개소)에 1대씩 확보
- 도태·살처분시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한 지원대책 확립
  - 살처분보상금 현실화 : 현행 80% → 상향지급으로 자진신고 유도
  - 도태보상금 : 종돈·종계 도태시 일정액 지원금 지급
- 종돈장·종계장 위생등급제 실시
  - 종축 유래전염병의 근원적 차단 및 청정종돈 생산
- 도축장·도계장 소독·세척시설 및 장비보강 : 소요자금 용자지원
  - 닭 수송용기 개선을 위한 도계장시설개선비 지원
- 도축장·도계장을 통한 신속한 질병검색 및 방역지도 강화
  - 도축·도계신청서에 출하농장증명서 첨부제도 시행
- 가축방역지원 확대 및 자조금 확보
  - 국가방역사업비 대폭증액 및 양돈·양계산업 자조금제도 시행

## 〈별첨 2〉

## 주요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 돼지콜레라

## 1. 목표 : 돼지 콜레라 근절 3단계 계획(5년) 추진

-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양돈산업 육성 - 대일돈육수출 확대
  - 2001년 청정화 목표(일본의 박멸대책 목표연도와 동일)
  - '89년 이후 발생이 없는 제주도는 별도의 근절대책 추진

## 2. 단계별 추진계획

- 제1단계(피해최소화단계) : 2년('96. 7 ~ '98. 6)
    - 근절정책의 중요성 적극홍보 : 방역교육, 신문, 잡지 등 각종매체
    -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 구성 : 백신접종, 의심축 신고, 검사의뢰
    - 생독백신 접종 확대실시 : 접종율 55% → 100%
    - 질병발생신고서 보상금 조기지급으로 조기신고 유도
    - 발병농장 및 인근지역 집중방역관리
    - 백신접종 상황 점검 - 도축장 출하돈 채혈 항체검사 강화
  - 제2단계(청정화실시단계) : 2년('98. 7 ~ '99)
    - 생독백신 사용금지 - 비발생시도별 우선실시
    - 유전자재조합 백신 접종 의무화 - 감별진단법으로 발생확인
    - 도축장 검사 강화로 발병농장 추적 및 집중관리
    - 감염돈군 살처분, 인근농장 검사강화
  - 제3단계(근절확인단계) : 1년(2000년)
    - 백신접종금지, 검색강화로 청정화 유지 → 2001년 청정화 선포
    - 돼지콜레라 발생국으로 부터 종돈·돼지고기 수입금지
- ※ 제주도 지역 : '98년까지 돼지 콜레라 청정화 목표
- 반입종돈, 모돈, 자돈에 대한 검사 및 백신접종

## 돼지오제스키병

## 1. 목표 : 오제스키병 근절 3단계계획(6년) 추진

- 감염지역인 경기도, 충청남도 집중방역실시 및 검색실시 강화
- 경남북, 전남북, 제주도 : 비발생지역 검색강화로 청정농장 유지

## 2. 단계별 추진계획

- 제1단계(피해 최소화단계) : 3년('96. 7~ '99)
  - 박멸계획 홍보·교육 강화 : 양돈농가, 방역요원
  -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 : 발병지역에 백신접종 확대실시, 의심축 검색, 공동방역실시
  -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살처분 메몰
  - 임상증상축 살처분
  - 도축장에 가축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설치 - 운송차량 소독의무화
  - 모돈·옹돈의 채혈 : 도축장, 농장, 종돈능력검정소
  - ※ 감염농장 색출 및 조기 도태로 지역별 돈군 감염율 1%이하로 감소
- 제2단계(청정화 실시단계) : 2년(2000 ~ 2001년)
  - 감염돈군의 의무적인 살처분 또는 도태로 청정돈군 조성
  - 감염농장 반경 2km이내의 모든 농장 검사 및 백신접종 실시
  - 지역내 농장의 번식돈 10%이상 매년검사
  - 항체양성돈군은 의무적으로 전돈군 도태
- 제3단계(근절 확인단계) : 1년(2002년)
  - 백신 접종금지
  - 발생지역 돼지는 비발생지역으로 이동금지
  - 비발생지역 확인시까지 역학조사 계속 → 청정화 선포

### 돼지전염병 설사병(TGE, PED)

#### 1. 목표 : 3단계 박멸계획(5년)으로 자돈폐사 방지

- 양돈산업의 고질적인 자돈폐사 최소화
- 이유산자수 증가로 양돈농가 소득 증대

#### 2. 추진계획 : 근원적인 근절은 어려우나 피해 최소화 추진

- 기동방역반 운영 - 초동방역실시, 질병확산방지
- 백신접종확대 - 임신돈에 2회 의무적 실시, 홍보강화
- 돈사시설·위생관리개선, 차단방역, 출입차량 통제
- 방어효과 높은 복합백신 개발 공급

### 뉴캐슬병

#### 1. 목표 : 3단계 근절대책으로 양계산업을 수출지향산업 전환

- 축산선진국 대부분이 뉴캐슬 비발생국임 - 계육수출 애로
- 방역전담조직 정비 - 전문방역요원, 지역별 방역책임제
- 방역지원 대폭 확대 - 양계산업자조금 확보

## 2. 추진계획

- 제1단계(피해 최소화단계) : 2년('97 ~ '98)
  - 근거리농장, 계열화, 단지화농장 공동방역실시
  - 농장출입 소독시설 설치의무화 : 원종계 → 종계 → 실용화농장
  - 수송차량, 난좌, 닭운반용기 소독시설 : 도계장, 계란집하장
  - 육계 : 생독백신접종의무화 - 부화장에서 분무접종실시
  - 중추 : 생독백신 및 단미사독백신 접종의무화
    - 중추판매시 백신접종필증 및 방역관리일지 제시
  - 종계 · 산란계 : 초생추 분양시 백신접종필증 및 종계군 혈청검사 성적서 제시
  - 뉴캐슬병 발생미신고시 행정조치 철저이행
  - 뉴캐슬병 발생시 백신접종 · 방역관리실체에 대한점검결과에 따라 살처분보상금 차등 지급
  - 신종 백신개발 및 진단방법개선
- 제2단계(청정화 실시단계) : 2년('99 ~ 2000)
  - 전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위생설비 시설자금 지원확대
    - 사료공장, 계란집하장, 도계장의 출입차량등 소독시설완비
  - 기존 생독 · 사독백신을 신종개발백신(마커백신)으로 단계적 대체
  - 뉴캐슬병 청정농장인증제 도입 : 자금지원, 방역지원
  - 근절계획 적극참여유도 : 교육확대실시, 홍보강화
- 제3단계(근절확인단계) : 1년 (2001)
  - 차단방역 및 검사확인
  - 기존생독 · 사독 백신 사용중단
  - 새로운 개발백신(마커백신)으로 전면대체 사용

## 추백리, 가금티프스

### 1. 목표 : 종계장의 청정화로 질병전파 차단

- 종계장 위생관리 인증제도 정착
- 부화장, 사료공장, 도계장 : 위생검사강화

### 2. 추진계획

- 제1단계 (피해 최소화단계) : 2년 ('97 ~ '98)
  - 원종계 (GP)청정화 : 추백리 부재농장 품질인정서 교부
    - 청정화 농장에 대한 홍보 적극 강화
  - 종계(PS)청정화 : 추백리 항체양성을 1%미만 종계군 유도
- 제2단계 (청정화 실시단계) : 2년('99 ~ 2000)
  -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색강화
  - 종계에 추백리 청정화 정책
  - 양성계 도태보상금 지급
  - 원종계, 종계에는 살모넬라백신 사용금지 의무화

- 사료 생산증정별 위생점검 제도화
- 제3단계 (근절확인단계) : 1년 (2001)
  - 양성계 검색농장 : 종계장 품질인정 취소, 종계수입·종계등록 제한
  - 공급사료에 대한 위생관리, 양계장과 도계위생 강화
  - 실용계 : 티푸스 예방백신 접종

## 우결핵, 부루세라병

### 1. 목표

-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3단계 근절계획(6년) 추진하여 피해 최소화 → 국내 사육젖소의 청정화

### 2. 추진계획

- 피해최소화단계(2년) → 청정화실시단계(3년) → 근절확인단계(1년)
- 지역별 차등방역
  - 무발생지역, 감시지역, 오염지역으로 구분하여 우군별 검진
  - 지역별 공동방역 책임제 정착 → 오염지역 농장 검진 강화
- 검진대상축 : 젖소 → 젖소, 한우종목우
- 양성발생 농장의 관리강화
  - 30일~60일, 6개월이후, 1년후 재검사 실시
- 개체별 질병 동시 검색 체계 개선 : 부루세라병, 결핵, 요네병등
- 소의 바코드(bar code) 및 전산화 : 개체별 검진확인 및 이동파악
- 감염축 특수처리시설 확보
  - 양성축 소각로 시설 : 각도에 2개소씩 설치 지원

## 탄저병

### 1. 목표 : 예방접종 확대로 감염원 차단

### 2.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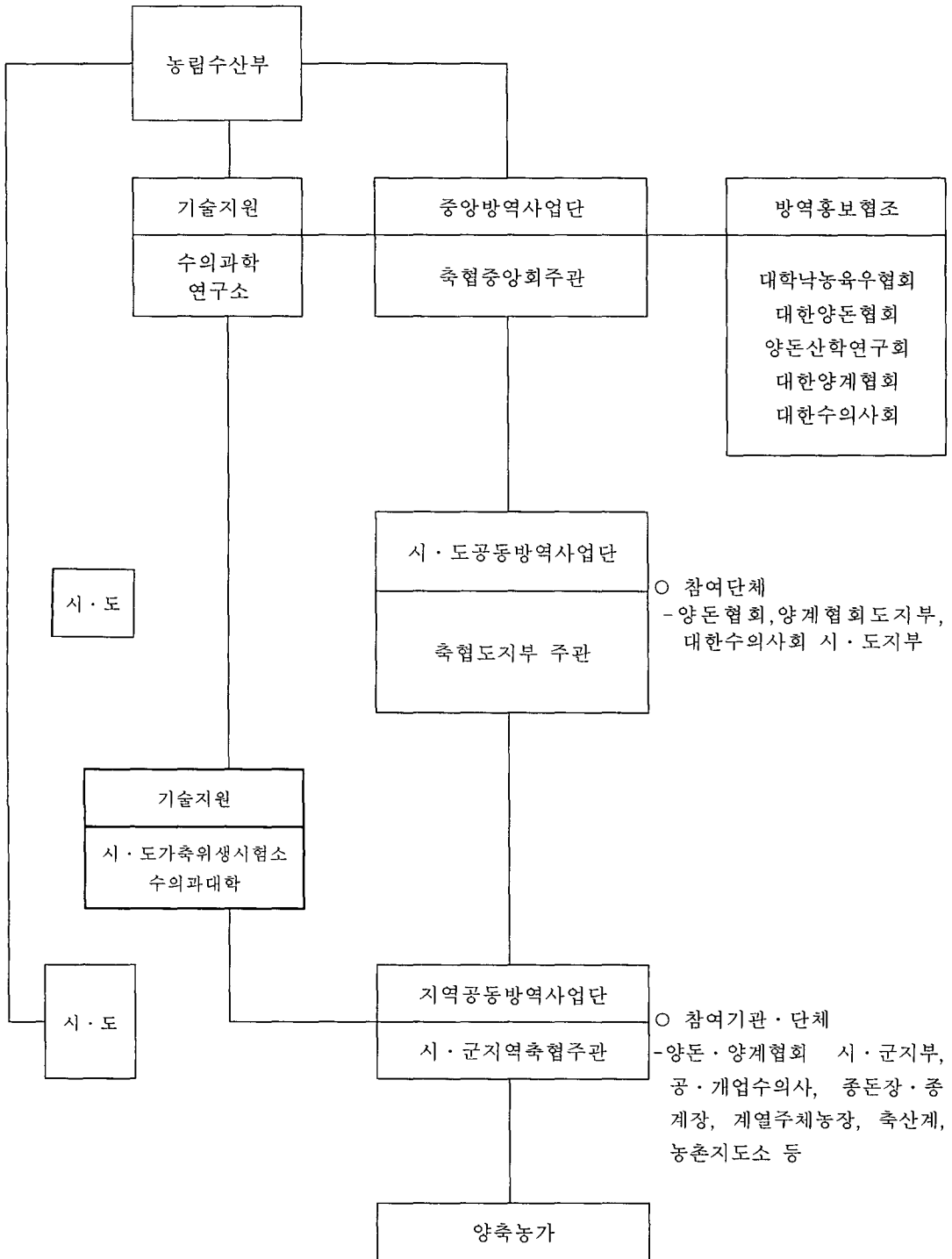
- 피해최소화단계(2년) :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 확대실시
  - 절박 도살우, 토양, 폐사축매립지, 축산 등에 대한 역학조사
- 청정화단계(3년) : 오염원 제거, 과거 발생지역 정기소독
  - 오염지역 및 과거 발생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실시
  - 소 전두수 예방접종 실시(한우, 비육우)

## 〈별첨 3〉

## 공동방역 사업단 운영방안

구 분	주 요 업 무	담당기관 · 단체별 업무수행 내용
가축방역업무 총괄	가축방역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지원	○ 담당기관 : 농림수산부 ○ 업무수행 : 주요전염병별 장·단기 계획과 연도별 사업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중앙공동방역 사업단	공동방역사업 총괄	○ 담당기관 : 축협중앙회 ○ 업무수행 : · 지역별 공동방역 추진체계 확립 ·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기술교육 대폭 강화 · 공동방역 중요성 홍보 및 자율 방역 정착 - 기술지원 : 수의과학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 방역홍보협조 : 양돈협회, 양계협회, 낙농육우협회, 수의사회 등 축산관련단체 - 소요예산 : 축협 자체예산 및 축발기금
시도공동방역 사업단	시·도 지역 공동 방역 사업 추진	○ 담당기관 : 축협 시·도지회 ○ 업무수행 : 축종별 지역공동방역 업무지원양축농가 방역지도 및 방역홍보 ○ 협조기관·단체 : 시도 축산과, 가축위생시험소, 양돈·양계협회지부, 수의사회 지부등 ○ 기술지원 : 수의과대학, 동물약품업체·사료업체의 민간연구소
시군지역공동 방역사업단	시·군 지역별 공동방역 실시 *축종별, 읍면별, 주체 농장별 공동방역 실시	○ 담당기관 : 시·군지역 축협이 주관 ○ 업무수행 : 시·군지역 공동방역 실시 - 축종별 운영 : 돼지, 닭, 소 - 지역별 운영 : 시·군단위 및 읍·면별 소단위로 운영 - 주체별 운영 : 종돈장, 종계장, 계열주체농장, 전기업 양축농가 주축으로 인근지역 농가 공동방역 ○ 기술지원 : 가축위생시험소, 농장소속 수의사 ○ 업무협조 : 시·군축산과(축산계), 양돈협회지부, 읍면별 양축농가 대표, 종돈장·종계장, 공개업 수의사

### 공동방역사업단 구성 운영추진 체계





< 참고자료 2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보완 및  
홍보행사 개최계획 보고서

2000. 2. 29

농 립 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 1. 근절대책 추진현황

### 중점추진방향

- 예방접종 100% 실시 및 현장 확인체계의 강화
  - 농가현지확인·위반농가 처벌·홍보·일본동향파악 등
- 소규모 사육농가 방역지원, 발생우려지역 점검, 차단방역강화, 제도보완 및 사업비 지원
  - ⇒ 긴장감을 유지, 예방접종중지·청정화목표달성에 총력

#### □ 기본 방침

- 예방주사 100% 실시('00.9.30까지)
  - 100두 미만 사육농가 : 예방약 공급 및 예방접종 실시 지원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예방약 공급 및 농가 자율접종
- 예방주사 실시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
  - 농장 및 도축장 혈청검사 실시, 미접종 농가 과태료 처분  
[면역형성율] ('99.1) 74.6%, ('00.1)95.8% [과태료처분농가] 196호
  -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돼지의 이동 및 도축제한
- 돼지콜레라 발생시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수출금지 및 이동제한 실시 등

#### □ 업무추진 체계 및 역할분담 (세부내역 : 별첨 1, 2)

- 시장·군수 책임하에 시·군별 행정 및 민간단체 기능을 총괄추진
  - 예방주사, 농장채혈, 차단방역, 농가 행정처분, 교육·홍보실시 등
  - 민간단체(비상대책본부 시군지부, 공동방역사업단, 공수의, 수출업체, 농가대표 등) 방역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추진
- 농림부, 검역원, 시·도(가축위생시험소)와 돼지콜레라방역비상대책본부 등 민간단체는 시군중심 업무지원과 추진실태를 점검
  - 검역원은 대책추진상황실 운영 및 지역담당관제 시행, 농진청(축산기술연구소)은 양돈단지 및 멧돼지 예방 접종 지도

#### □ 제도개선 추진 및 사업지원

##### 1) 제도개선 추진 현황

###### < 1차 : '99. 3 >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법:3.31, 시행령:7.16, 시행규칙:9.7)
  - 예방접종 미실시농가 및 방역조치 위반농가 처벌강화
  - 생산자단체의 공동방역사업 실시 및 지원근거 설정
- 돼지콜레라예방약 공급 쿠폰제 도입 ('99.3.12)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고시제정 ('99. 6.28)

- '99.6.2 확정된 일본국의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한 방역제도 적용
- 돼지콜레라예방접종실시명령 고시 개정('99.3/6)
  - 접종증명서 미제출 돼지 도축제한 시행 및 과태료 세부기준 설정

< 2차 : '99. 10 >

- 사업추진 기능을 시장·군수 중심체제로 전환, 기관별 역할분담 재정립
- 수의과학검역원 지역담당관제를 발생우려 지역중심으로 운영강화
- 혈청검사용 시료채취를 도축장에서 농장채혈 검사체제로 전환
  - 검사누락농가 우선실시, 면역형성률이 높은 전·기업농가는 최소화

< 3차 : '00.1~2 >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법:1.28,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
  - 방역조치 위반농가 농장폐쇄 및 사육제한 규정 신설
  - 농장·도축장 등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 의무화 조치
  - 민간단체의 방역보조원 제도 및 농장채혈 등 업무위탁 규정 등
- 가축방역관(570명)에게 사법경찰권 부여('00.6 시행)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개정('99.12.28)

2) 2000년도 사업비 지원계획 : 168억원 (세부내역 : 별첨 3)

- '00.1.21 전국 시군관계관 및 관련단체 사업설명회 실시 -

① 직접 지원사업 : 13,752백만원

- 예방약 100% 공급 및 소규모 농가(15천호) 예방접종 지원
- 농장 및 도축장 채혈·혈청검사 : 560천건(농장채혈 신규)
- 전 양돈농가 소독약 공급(신규)
- 검역원 지역담당제 실시 : 농가 방역점검 및 전산화 보완
- 예방접종 미실시농가 등 위반농가 신고포상금지급(신규)
- 돼지콜레라 발생농가 전두수 살처분 보상
- 교육·홍보

② 간접 지원사업 : 3,095 백만원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신규) 및 방역차량 지원
- 시군 공동방역사업단 장비 및 운영비 지원

□ 기타사업 추진상황

-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운영
  - 위원구성 : 위원장(차관보), 위원 16명
  - 개최시기 및 안건 : 월 1회,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사항 협의
-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운영
  - '99.5.13 사단법인 설립허가, 9.27 공익성 기부금단체 지정
  - 주요사업 : 농가방역실태 조사·지도(농장채혈 등), 교육·홍보

- 일본국과의 협력사항(검역원내 일본동향조사반 운영)
  - 일본 관계기관 방문 실태조사, 정보수집·분석 등 교류확대
  - ※ 일본 예방접종 중지상황
- 47개 도도부현중 23개현 확정('99년도 : 6, '00.4 : 17)
  - 중지율 : 농가수 대비 32.7%, 사육두수 대비 34.5%
- '00. 10 전국적으로 접종중지 계획

## 2. 사업추진중 나타난 문제점

- 농가 및 관련단체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되고 차단방역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
  - 아직도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떨어뜨린 것을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농가가 있음
    - '00. 1월중 1,362농가 혈청검사결과 67농가가 부적합
  - 근절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농가의 의지가 약해짐
  - 도축장·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로 병원체 확산(유입) 위험상존
    - 도축장 경영자의 무관심 및 차량운전자 의식결여
    - 중소규모 농가의 경우 소독의식 결여 및 자체 소독시설(장비) 미비
  - 사료·동물약품 영업사원 및 사설접종반에 대한 출입통제 소홀
    - 전염병 감염의심 가축 발견시 신고 기피
  - 전염병 발생시 이동제한 등 통제기능과 규제장치가 위약
- 예방접종 중지이후 방역대책이 불투명하여 '00.10.예방접종 중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음
  - 예방접종 중지후 야외바이러스로 인한 재발생시 방어능력이 없어 피해규모가 커짐
    - 야생멧돼지 등의 포획이 어려워 조사실적이 부진
  - 재발생시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 피해 보상대책이 미비
    - 도축장 출하지연, 종돈·자돈 매매 통제, 감염시 살처분 등
  - 예방약 비축과 사용통제 계획이 없음
  - 접종중지 이후 타지역 반출입 돼지에 대한 검사·통제장치 미비
  - 접종중지 이후 야외바이러스 감염돼지와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보유 돼지의 신속감별을 위한 진단기술의 보급이 미흡
- 일선 방역기관 공무원 및 비대본 방역요원들의 사기저하
  - 강도 높은 대책추진에 일부지역 공무원의 방역업무 담당기피
    - 자치단체 구조조정으로 기술직렬 공무원의 감소 추세
  - 비대본 요원(114명)의 근무여건 열악과 장래 보장이 불투명
    - 돼지플레라 근절시까지 한시적 직업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음

- 양돈관련업체의 기부금 납부 저조로 비대본 운영에로 예상
  - '99 국회예결위에서 거론된 민간방역단체 지원(방역요원 채혈사업비)문제는 2000년 촉발기금예산에 14억원을 반영하여 해결하였으나
  - 금년도 총사업비 25억원중 기금지원분의 관련업체 등의 예상 기부금 11억원의 모금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사 무국 운영이 어려울 전망
    - '99년 기부금 납부업체 대부분이 금년도 2차납부에 미온적인 상태임

### 3. 향후 보완 발전방안

- 홍보교육 강화로 농가 및 단체 분위기 쇄신

#### 1) 홍보물 제작배포

- 돼지콜레라 근절홍보 탁상용 카렌다 제작
- 내용 : 월별로 홍보문안 및 방역방법 등 표시
- 제작부수 및 배포처 : 10천부/ 홍보행사 참석자· 양돈농가 등
- 사업비 : 25백만원(재원 : 2000년 촉발기금, 돼지콜레라 홍보비)

#### 2) 전문지 홍보광고 게재 방법 개선

- 대상 : 농수축산, 한국농어민, 농민, 한국영농 등 6개 신문사
- 광고방법 : 월별 중점 광고전략을 수립, 추진
  - 예 : 예방접종/신고포상/일본동향/위반농가· 업체 명단공표 등
- 게재기간 : '00.1~12 (전문지별 월 1~3회)

#### 3) 정부 합동담화문 발표 및 장관님 농가친서 발송

- 시기 : (담화문)'00. 3~4월중, (친서) '00. 6월
- 내용 : 근절목표 달성을 위한 농가 및 국민 협조 등 당부
- 담화문은 행자부와 합동발표, 친서는 양돈농가 전산화 자료활용

- 도축장농장 등 돼지 이동간의 차단방역 강화

#### 1) 차량세척·소독시설 미설치 도축장과 소독 미 실시 업소(도축장, 농가, 운송업자)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 조치

-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방법령에 의한 “차량소독실시요령고시”를개정하여 점검 및 과태료 처분 강화(3월중)
  - 도축장 : (현재) 경고 또는 50만원→(개정) 300만원
  - 농가 : (신설) 100~200만원, 가축운송업자 : (신설) 200만원
    - ※ 도축장은 개정중인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에 의거 영업정지 2회
-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한 축산물검사원의 지도·단속강화
- 점검 및 행정처분을 미온적으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는 농림부(검역원)에서 집중관리

## 2) 소독실시증명서 및 예방접종증명서 未所持 운송차량 단속강화

- 경찰청에 돼지수송차량 일제단속 요청,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도축장 주변도로를 중점으로 단속 실시
- 기간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후 15일간

## 3) 차단방역 강화내용에 대한 사전예고 및 교육홍보 조치(4월중)

- 비대면 방역요원 및 축산물검사원(검역관)을 통한 홍보전단 배포
- 도축장 영업자로 하여금 낡은 돼지콜레라 弘報懸垂幕 교체 및 차량 소독 실시사항 안내문 게시 협조 조치

## □ 예방접종 금지기준 補強 및 접종중지이후 방역관리

## 1)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고시)”에 규정된 예방접종 금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4월중)

- 금지기준 : 면역형성률·야외바이러스 확인, 진단기술, 살처분 돼지 처리 방안 등(기준안 “별첨 4”)
- 예방약 수급 : 민간업체의 예방약 생산을 통제, 정부구입·비축분을 제외한 예방약의 시중판매 금지
  - 야외바이러스와 감별진단이 가능한 사독 예방약 생산·비축검토
- 예방접종 금지지역과 접종지역간 돼지의 이동 통제방법 등

## 2) 예방접종 금지이후 재발생시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피해 보상방안 등 대책 수립(4월중)

- 기본방안 (일본과 제주도 사례를 참조, 시안작성)
  -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 및 처리비용은 현행대로 정부가 부담
  - 이동제한 기간중 도축장 출하지연, 자돈·종돈 판매제한, 살처분 농장의 보상차액·재 입식기간까지 손실 보전 등 금액은 농가가 조성한 가칭 “청정화 기금”으로 충당토록 하되,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 (일본의 정부 부담율 : 50%)
  - 청정화기금은 시군 또는 시도의 양돈단체(양돈축협, 양돈협회)가 관리
- 예방접종 중지후 방역관리 행동지침(안) : “별첨 5”
- 보상방안 및 행동지침은 전문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

## □ 축산종합시상제 도입시행 등 관련 공무원 사기진작

- 축산종합시상제 평가대상 사업(6개)중 돼지콜레라근절대책사업의 평가비율을 높혀 시행
  - 평가항목중 “예방접종 중지” 및 “청정화 준비” 점수를 높힘
  - 지방자치단체 시상금은 수상기관의 돼지콜레라 담당부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
- 돼지콜레라 담당 공무원의 일본국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 '00. 4월중 6일간
  - 조사반 구성 : 농림부·검역원·시도 공무원 15명 이내
  - 경비부담 : 출장자 소속 기관 부담
- 대책추진 유공자 장관 표창 확대 : ('99) 30 → ('00) 50명

□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운영활성화

1)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근거한 민간단체 방역업무 지원

- 비대본 시군 방역요원을 “가축방역보조원”으로 委囑하여 독자적 업무수행 권한 부여
- 비대본에 정부의 방역사업중 예방주사, 농장채혈 등 사업을 위탁하고 농가로부터 接種手數料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
- 장기적으로 비대본을 모델로 하여 외국과 같이 민간 방역사업실시기관으로 전환, 방역사업을 정부와 분담하여 실시유도

2) 양돈관련 업체의 박멸기부금 모금을 위한 측면지원

- 사료·동물약품·양돈업체가 자발적으로 2차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모금 분위기 조성
- 아직까지 기부금을 출연하지 아니한 사료업체, 돼지고기 수출업체 등도 기부금 납부 등 근절사업대책사업에 동참토록 유도

## 4. 돼지콜레라 근절결의 및 예방접종 시연회 행사

### 가. 행사개요

□ 목 적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강화를 위한 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근절분위기 쇄신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00. 3.15(수) 10:30~12:10
- 장 소 : 정부과천청사앞 운동장

□ 행사운영

- 주 최 : 농림부(축산국)
- 주 관 :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협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참석대상 : 약 1,000명

대 상	인 원	비 고
○ 공 무 원	600	농림부, 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 중 앙	200	시도, 시군, 시형소, 농업기술센터
- 지 방	400	※ 시도 농정국장 참석 유도
○ 관련단체 및 농가	400	
- 양돈농가 대표	100	
- 비대본 방역요원	100	
- 공동방역사업단	50	양돈사업단
- 축산단체 등	150	

※ 축산단체 등 : 양돈협회, 축협중앙회, 한국육류수출입협회, 대한수의사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및 육류수출업체 등

## 〈별첨 1〉

## 1. 행사 세부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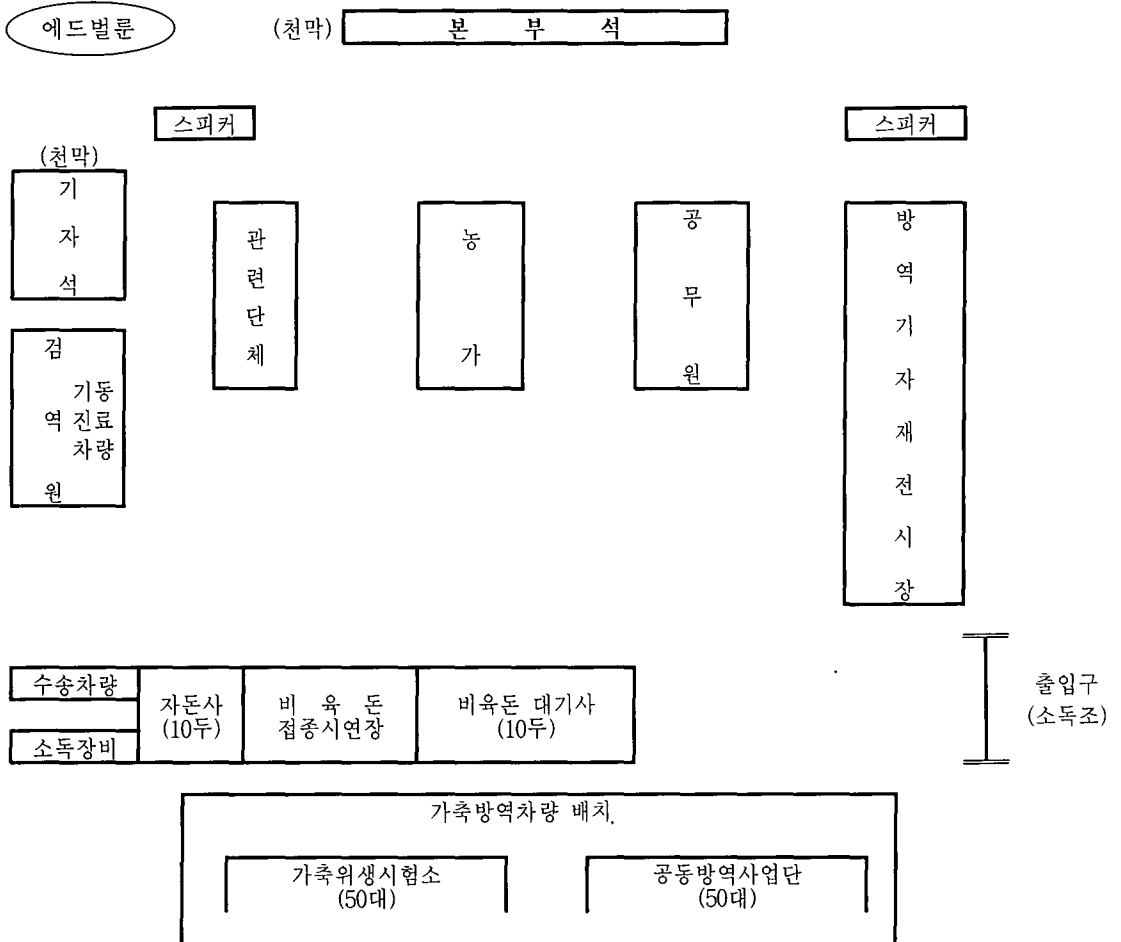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1:00	참석자 등록	홍보물 배부
11:00~11:0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검역원 질병연구부장
11:05~11:10	경과보고	축산국장
11:10~11:20	대 회 사	농림부장관
11:20~11:25	청정화 사례 발표	제주도 농수축산국장
11:25~11:35	직능별 대표 결의문 낭독	농가·단체·공무원대표
11:35~11:55	예방접종 및 채혈시연	축산기술연구소 관계관 등
11:55~12:00	돈사 연막소독	비대본 방역요원
12:00~12:10	방역기자재 전시물 참관	한국동물약품협회

□ 사업비 : 18백만원 (자원 : 축발기금중 가축방역 교육홍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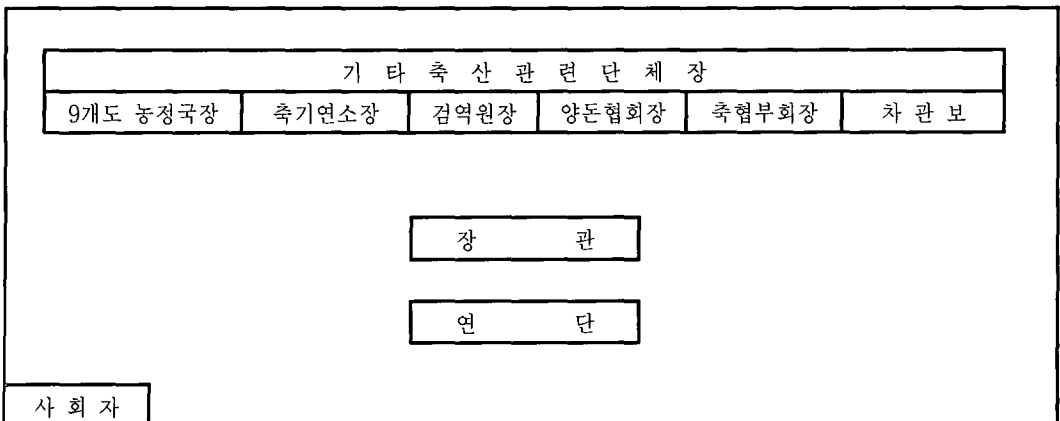
- 행사시설(돈사, 연단 등) 설치비 : 6,000천원
- 기자재(앰프, 천막, 에드벌론 등) 임대비 : 1,400
- 행사비품(모자, 어깨띠, 현수막, 방역복 등)구입비 : 6,455
- 돼지 구입 및 관리 : 2,650
- 급식비 : 400
- 기타 사무용품 등 : 1,095



2. 행사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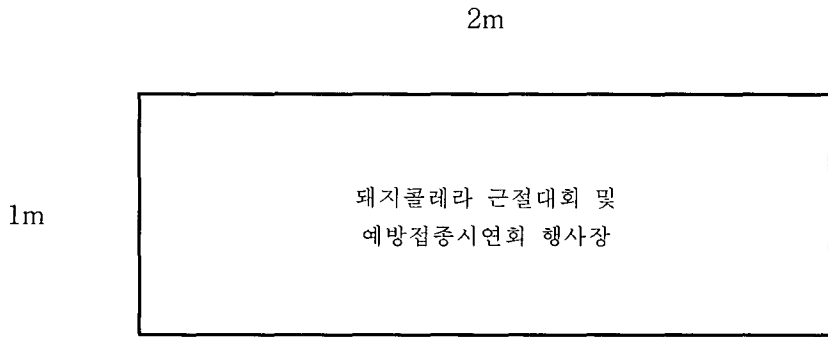
□ 본부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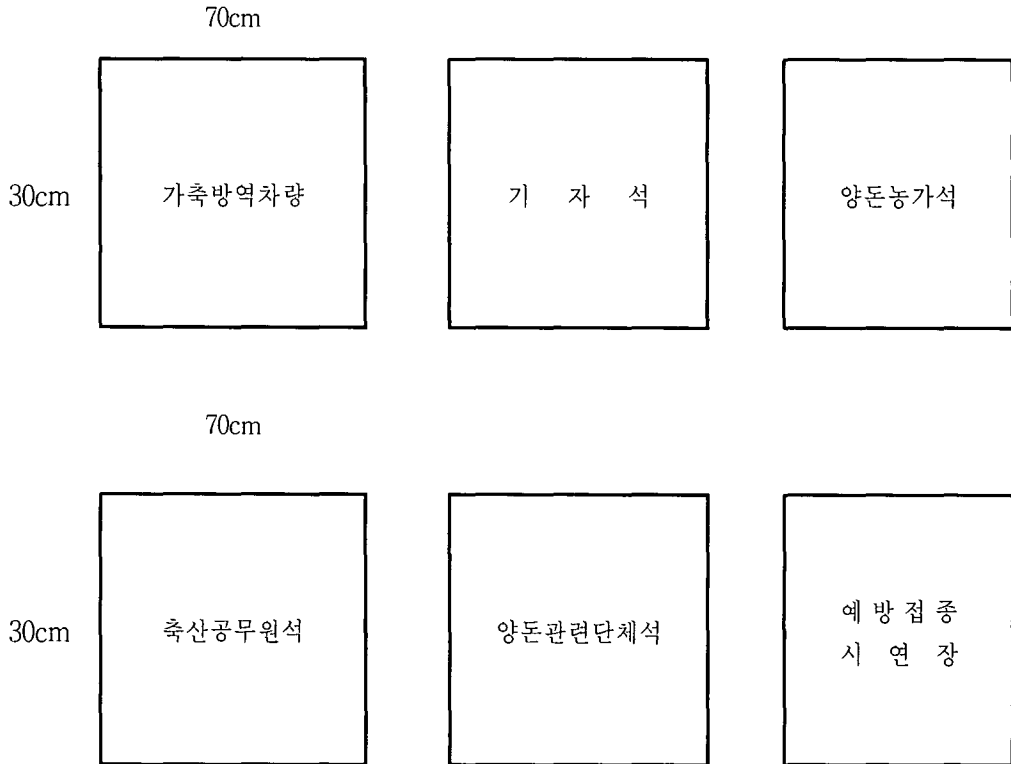
※ 본부석은 연단 설치

### 3. 안내판 및 현수막 설치

- 출입구(1m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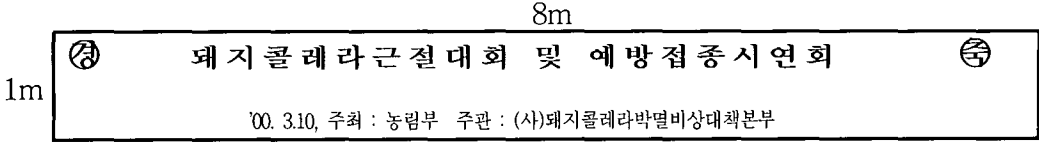


- 행사장 내부(70cm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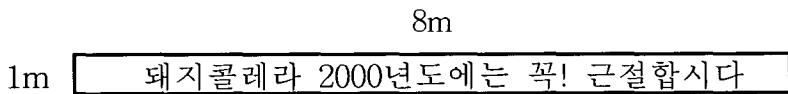


□ 현수막설치

- 행사장 본부석 상단



- 행사장 좌우



□ 행사참석자 표식 등

- 모 자 : 검정색, 적색차양, 노랑글씨(돼지콜레라 근절)
- 어깨띠 : “돼지콜레라 근절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  
(노랑,초록,흰색, 3종 제작)
- 방역복 : 예방집중시연 및 연막소독 실시자
- 조끼 : 비대본 방역요원

〈별첨 2〉

정부기관 · 단체인 역할분담 세부내역

구분	추진업무
농림부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수립 및 정책 총괄 - 제도개선 및 사업비 등 지원 - 검역원, 시·도 지도감독 및 민간단체 역할조정
검역원	○ 기본계획에 의한 혈청검사, 바이러스검사 등 실시 ○ 시·도, 시·군의 추진실태 점검 및 기술지원 - 특별관리지역 집중관리 및 시군 추진상황 평가 ○ 돼지콜레라 예방약·진단 기술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청	○ 종돈장, 양돈단지 방역실태 점검 ○ 옛돼지 사육농가 예방집중 지원 및 채혈실시
시·도	○ 관할지역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 지방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설치·운영 ○ 시·군 및 가축위생시험소의 추진실태 점검·평가 ○ 예방집중 금지 조치, 청정화 선포 및 유지 등
시·군	○ 방역행정 및 민간단체 기능 총괄 - 예방약공급, 소규모 예방주사 및 중소규모 채혈실시 ○ 시·군 돼지콜레라 방역추진협의회 설치운영 ○ 방역조치 위반농가에 대한 행정 처분 등
가축위생시험소	○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등 실시 ○ 도축검사시 예방집중 증명서 첨부 및 출하 농가 확인 ○ 도축장의 차량소독시설 운영실태 점검 등
비상대책본부	○ 양돈농가 교육·홍보 및 캠페인 전개 ○ 소규모농가 예방집중 지원 및 양돈농가 채혈실시 ○ 양돈장 방역실태 감시 및 위반농가 고발 등
지역축협등 축산단체	○ 방역조치 위반농가 신고 및 인력지원 ○ 교육홍보 협조 및 약품·사료·가축수송차량 소독실시 등
양돈농가	○ 예방주사 실시(금지) 및 점종확인서 발급 ○ 전염병 발생신고, 출입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 관리 및 방역조치이행

## 〈별첨 3〉

## 돼지콜레라 관련 사업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99 실적				2000 계획				비고
	국비	지방비	축발기금	계	국비	지방비	축발기금	계	
예 방 주 사	1,784	2,181	-	3,965	1,645	1,645	-	3,290	
혈청 항원 검사	278	-	240	518	877	-	-	877	
살 처 분 보 상	2,900	-	-	2,900	3,552	-	-	3,552	
공 수 의 수 당	760	760	-	1,520	-	(760)	-	(760)	국비중단
방 역 차 량	142.5	142.5	-	285	82.5	82.5	-	165	
지 역 담 당 제	447	-	577	1,024	453	-	-	453	
소규모 예방접종	-	-	1,959	1,959	-	-	2,756	2,756	
공동방역사업단	-	-	1,750	1,750	-	-	2,050	2,050	
도축장 소독시설	-	-	3,040	3,040	-	-	-	-	종료
교 육 · 홍 보	-	-	59	59	-	-	280	280	
방 역 보 조 원	-	-	-	-	440	440	-	880	신설
간 급 방 역 비	-	-	-	-	363	-	-	363	
농장 채혈 사업등	-	-	-	-	-	-	2,060	2,060	신설
신 고 포 상 금	-	-	-	-	-	-	100	100	신설
계	6,311.5	3,083.5	7,625	17,020	7,412.5	2,188.5	7,246	16,847	

## 〈별첨 4〉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기준(안)

1. 최소 1년간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어야 할 것
2. 돼지콜레라 항체양성율(면역형성율)이 최소 6개월간 95%이상 또는 12개월간 93%이상 유지되어야 할 것
3.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
  - 각 시·도의 2000년도 항원검사 물량기준(농장검사 물량이 도축장 검사물량의 20%이상이어야 하며, 과거 2년간 발병 농장과 인근 3km이내 농장을 포함하여야 함)
  - 야생 멧돼지 확인은 수의과학검역원의 실시결과에 의함.
4. 예방접종 금지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방역당국(사도, 사군, 가축위생시험소 등)은 경찰과 협조하여 이동제한 및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전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을 것
5. 각 사도 가축방역검사기관 등의 진단능력이 환축 또는 가검재료 접수 후 24 ~ 36시간내 진단이 가능할 것
6. 사도별 폐사축 운반 전용차량, 매물장소소각장 또는 렌더링 처리시설 등 살처분 돼지 처리방안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을 것
7. 전두수 살처분 보상, 돼지 재입식 및 폐업에 따른 생계유지 자금의 지원 등 발생농가 지원대책과 발생농가 인근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통제에 따른 피해 보상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것
8. 사도 또는 사군별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농가대표와의 방역협의체 운영이 활성화 되고 농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것
9. 예방약 판매금지 및 비상용 물량의 비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 지역별 예방접종 금지결정은 공청회를 통하여 협의·결정

## 〈별첨 5〉

## 예방접종 중지후 방역관리지침(안)

## 1. 재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주체별 역할분담

## 가. 양돈농장(사육 멧돼지 농장 포함)

- 차량·출입자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 돼지 이동, 사람·차량의 출입을 기록하는 농장별 위생관리대장 비치
- 잔반 급여시 최소한 70℃에서 30분이상 끓여서 급여

## 나. 도축장

- 출입차량 소독(도축장 경영자 및 출입차량 소유자)
- 출하돼지의 하역장소 및 계류장에 대한 소독(도축장 경영자)
- 도축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철저(검사원)
  - 이상돈 발견시 정밀검사 의뢰 및 출하농장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 돼지 출하농장 등 확인 및 소독실시 기록유지 철저(도축장 경영자)

## 다. 동물약품사료업체 등(기자재 및 컨설팅 업체 포함)

- 출입차량 등 소독 및 차량운행 기록유지

## 라. 병성감정기관, 공개업 수의사, 동물약품사료판매자

- 돼지콜레라 발생정보를 입수한 경우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발열, 식욕감퇴, 변비에 이은 설사, 결막염, 보행곤란, 후구마비, 경련, 귀 또는 하복부의 자색반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농장 출입시 일회용 방역복 착용, 차량소독 등 철저 이행

## 마. 양돈관련 생산자단체 및 협회

- 돼지콜레라 발생정보를 입수한 경우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청정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회원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감시
- 청정화 상태 유지 확인을 위한 가축방역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

## 바. 사도(가축방역검사기관)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청정성 유지 확인을 위한 철저한 검사실시
  -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사육 멧돼지농장 포함)
    - 전 농가를 방문하여 임상검사 실시(년 2회)
    - 이상돈(위축돈 등)에 대한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 등 실시
  - 항체보유상황조사(도축장)
    - 조사비율 : 도축두수의 1/100이상(출하농가가 균등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

- 이상돈(위축돈 등)에 대한 농장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검사 등 실시
- 예방접종중지 6개월 이후부터는 항체양성 개체를 출하한 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 실시
- 지역별 위생관리상황 등 정보수집·분석
  - 발생신고 또는 정보가 있을 경우 신속한 추적조사 등 실시

**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도축장 출하돈에 대한 주기적인 항체 및 병원체 검사실시
- 야생 멧돼지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여부 조사
- 재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방역관리
- 지역별 방역대책 지원 및 기술교육 실시
- 지역별 근절대책 결과 평가·분석 및 개선대책 강구

**자. 농림부**

-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대책 수립 및 시행(관련부처 협조)
- 청정화 선포후 국제수역사무국 등 국제적 인증절차 수행
- 청정화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 민간단체 방역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
- 방역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
- 긴급예방약 비축
- 수입검역 강화대책 수립 시행

**2. 재발생시 조치**

**가. 발생농장**

- 의사 돼지콜레라 발생시 긴급방역 조치 철저 이행
  -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 이동금지 및 소독강화
- 확진시 신속한 전두수 살처분 실시 등 방역당국 조치에 적극 협조

**나. 오염지역(반경 3km 이내)**

- 40일간 이동금지 및 소독 강화
- 오염지역 설정 후 7일내 전 농가 돼지의 임상검사 실시, 이상이 있는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방역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및 방역전문가와 협의하여 발병농장 반경 50m이내 농장 돼지의 살처분 또는 긴급 예방접종 여부 결정(예방접종돼지는 일정기간 경과후 살처분 또는 도태처분)
- 가축을 집합시키는 행사 개최 금지
- 예방약 미접종돈에 대하여, 이동금지 실시 21일 이후, 임상 및 항체검사 등 필요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도축장 출하 허용 여부를 결정(농림부와 협의)
- 이동제한 기간 동안 자연교배 금지

- 감수성 개체의 증가요인 억제
- 임신 후 태반감염 자돈에 의한 지속적 병원체 전파 방지

#### 다. 경계지역 (반경 3km ~ 10km 이내)

- 경계지역 설정 후 즉시 전 농가 돼지의 임상검사 실시, 이상이 있는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 15일간 이동통제 및 소독강화
- 이동금지 7일 이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등 필요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도축장 출하 허용여부 결정(농림부와 협의)
- 가축을 집합시키는 행사 개최 금지

#### 라. 추적조사 등

- 발병 확진 이전 과거 14일간 발생농장과 관련이 있었던 농장에 대한 검사 및 방역조치 강구
  - 발생농장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
    - 전두수 이동제한
    - 전두수 임상검사(2주간) 및 이상증상이 관찰되는 개체의 정밀검사
    - 정밀검사결과 감염사실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입식한 농장
    - 전두수 이동금지
    - 입식한 돼지는 의사환축으로 취급하여 살처분
    - 살처분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판정시는 발생농장에 준하여 조치하고 음성 판정시에는 입식한 돼지와 동거한 돼지에 대하여 격리조치(21일간)
    - 전두수 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 감염사실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 발생농장에서 정액을 구입한 농장
    - 전두수 이동금지
    - 종부돼지는 의사환축으로 취급하여 살처분
    - 살처분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판정시는 발생농장에 준하여 조치하고 음성 판정시에는 살처분한 돼지와 동거한 돼지에 대하여 처리조치(21일간)
      - 발생농장에 정액을 판매한 농장
    - 전두수 이동제한
    - 전두수 임상검사(2주간) 및 이상증상이 관찰되는 개체의 정밀검사
    - 정밀검사결과 감염사실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 위에서 언급한 판매 또는 입식농장과 관련이 있는 제3의 농장
  - 전두수 임상검사(2주간) 및 이상증상이 관찰되는 개체의 정밀검사 실시
  - 필요시 이동제한(14일간)
  - 정밀검사 결과 감염사실이 없을 경우 도축장 출하 가능(농림부와 협의)

마. 오염지역, 경계지역 및 추적조사 대상농장중 검사결과 감염사실이 확인된 농장은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준하여 방역조치 실시



## 〈별첨 6〉

## 돼지콜레라 근절결의행사 및 이동장관실 운영

## 가. 돼지콜레라 근절 결의대회

##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00. 3. 15(수) 10:30 ~ 12:10
- 장 소 : 정부과천청사앞 운동장

## □ 행사운영

- 주 최 : 농림부(축산국)
- 주 관 :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협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참석대상 : 약 1,000명

대 상	인원	비 고
○ 공 무 원	600	농림부, 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시도, 시군, 시험소, 농업기술센터 ※ 시도 농정국장 참석유도
- 중 앙	200	
- 지 방	400	
○ 관련단체 및 농가	400	양돈사업단
- 양돈농가 대표	100	
- 비대본 방역요원	100	
- 공동방역사업단	50	
- 축산단체 등	150	

## □ 행사내용

- 경과보고, 장관님 대회사, 제주도 청정화사례발표, 농가·단체·공무원 결의문 낭독
- 돼지 예방접종, 채혈, 소독 시연 및 방역기자재 전시 등

## 나. 돼지콜레라 이동장관실 운영

##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00. 3. 15(수) 14:00 ~ 15:30
- 장 소 : 농림부 대회의실

## □ 참석자 : 양돈농가 등 20명 내외

- 농가 4, 단체 10, 업계 2, 학계 1, 기타 3

## □ 안 건 : 돼지콜레라 근절관련 현안사항 협의 및 건의

- 근절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청정화 유지대책

< 참고자료 3 >

#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대책(안)

2001. 9. 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대책(안)

### I.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대책의 필요성

-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시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역활동이 중요
  - 100% 예방접종, 항체 및 항원검사, 도축검사 및 가축수송차량 소독 철저 등
- 예방접종 중지에 대비하여 사후관리를 차질없도록 수행하기 위하여 사전 준비가 중요함
  - 예방접종 중지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근절 추진에 막대한 지장초래
- 예방접종 중지후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방역대책 수립이 필요
- 따라서, 예방접종 중지시까지 및 중지후를 대비한 전반적인 청정화 추진대책 마련이 필요

### II. 청정화 세부 추진대책

#### 1)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시까지 방역대책

- 지역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지도점검 강화
  - 시·도(시·군)에서는 지역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 검역원에서는 방역추진 협의회 운영사항을 지도점검하여 돼지콜레라 근절 긴장감을 유지토록 함
    - 시·군의 경우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도 평가 시험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군을 우선적으로 점검
- 100% 예방접종 및 전농가 임상검사 실시
  - 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금년도 가축방역 사업계획에 의거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되, 100%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제 접종기간을 정하여 시행
  - 일제 접종과 병행하여 전양돈농가 임상관찰 실시, 돼지콜레라 의심축 발견 시 해당 시·군에 즉시 보고

#### 〈일제 예방접종 기본모델 ; 10. 1일 예방접종 중지시의 기준〉

- 일제 접종기간 : '01. 9. 1 ~ 9. 30
- 시·군별 양돈농가 및 사육두수, 양돈 밀집지역 등을 감안 일제 접종팀을 편성 운영
  - 일제 접종팀 : 가축방역관, 공개업수의사, 민간방역요원 등으로 구성
- 일제 접종대상 및 접종요령
  - 모든 및 옹돈 : 예방접종 유무에 관계없이 일제 접종실시
  - 2차 접종을 마친 비육·육성돈(출하 대기돈 제외) : 3차 보강접종 실시
  - '01. 9. 1일 이전 출생자돈 : 미접종돈의 1차 예방접종 실시, 1차 접종돈의 2차 보강접종 실시
  - '01. 9. 1일 이후 출생자돈 : 포유전 접종실시 가능
- 혈청검사 및 항원검사 집중실시
  - 검역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양돈농가 현황을 시·도(시·군), 시험소에 송부
  - 시·군에서는 누락된 농가를 보완하고, 관할 가축방역기관과 협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를 파악

- 시·군에서는 가축방역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 및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와 위축돈 중심으로 채혈하여 검사 의뢰토록 조치
- 병성감정기관 의뢰 가검물에 대한 항원검사 및 항체 고역가 농가 검사는 검역원에서 집중 검사계획을 별도 수립 시행조치
  - ※ 사육 멧돼지 및 흑돼지, 야생 멧돼지에 대한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 실시

#### □ 도축검사 강화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철저

- 시·도별로 축산물검사원·도축장 영업자 및 가축수집(중개)상인에 대한 일제 소집교육 실시(9월중)
- 주요 교육내용
  - 축산물검사원은 도축검사신청서의 예방접종증명서 첨부 철저확인,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철저, 검사보조원 적극활용
  - 도축장 영업자는 도축검사신청서 기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철저 등
  - 도축장 영업자로 하여금 도축장 입구에 가축운송차량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현수막 설치
  - 가축수집(중개)상인은 예방접종확인서 및 소독실시증명서 휴대철저
- 검역원에서는 도축검사 및 도축장에서의 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불시 단속 실시

#### □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등 현장 방역지도 강화

-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현황 : 378농가, 139,859두
- 검역원에서 남은 음식물 및 도축 부산물 급여농가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여 홍보·교육 실시
  - 관할 시·군에서는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시·도에서는 소속 가축방역기관, 시·군, 민간방역요원으로 하여금 농가내의 위축돈은 과감하게 도태하도록 방역지도 조치

#### □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도 평가 시험사업 차질 없이 수행

- 위험도 평가 농가 및 두수 : 299농가, 4,788두
- 시·도에서는 위험도 평가 시험사업 지침에 의거 평가단 운영 및 감시돈 관리철저
- 검역원 및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감시돈의 항체 및 항원검사 철저
- 시험사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대외 신뢰도 제고 및 농가 불안심리 해소

## 2)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방안 검토

#### □ 예방접종 중지시기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일정의 빈번한 변경('00. 10. 1 → '01. 3. 1 → '01. 10. 1)에 따라 일선 양돈농가에서는 정부의 돼지콜레라 근절정책 일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전국적 예방접종 시기를 또다시 연기할 경우 일선 양돈농가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는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도 평가 시험사업”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한 양돈농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10월중에 전국적 예방접종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 예방접종 중지범위

〈제 1 안 ; 현재까지의 농림부 정책〉

- 전면 예방접종 중지후 희망 농가에 한하여 예방접종 허용
  - 장점 : 예방접종 중지농가와 희망농가의 의견을 반영
  - 단점 : 예방접종 희망농가가 많을 경우 예방접종 중지의 의미가 상실되며, 예방접종 농가에 대한 특별관리 행정력 필요
- ※ 예방접종 농가는 생독 예방약 또는 유전자재조합 예방약 사용

〈제 2 안〉

- 전면 예방접종을 중지하는 방안, 예방접종 희망농가 불허
  - 장점 : 예방접종 중지의 명료성 확보, OIE 청정국 인정 및 수출 협상에 유리
  - 단점 : 계속적으로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만 소지

〈제 3 안〉

- 전면 예방접종 중지후 희망 농가의 종돈 및 번식돈에 한하여 예방접종 허용
  - 장점 : 종돈 및 번식돈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유전자원 보호 및 희망농가 의견수렴
  - 단점 : 예방접종 농가에 대한 특별관리 행정력 필요
- ※ 예방접종 농가는 생독 예방약 또는 유전자재조합 예방약 사용

### 3)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를 대비한 방역대책 준비계획

#### 방역상황의 변화

- 예방접종 단계에서는 예방접종에 의하여 모든 돼지가 면역항체를 보유하여 야외 바이러스에 방어능력이 있으나, 예방접종 중지 이후에 태어나는 돼지는 모체의 이행항체에 의해서 생후 약 60일간은 방어능력을 보유하게 되나 그 이후에는 이행항체 소실로 야외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게 됨
- 예방접종 중지 이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예방접종 가축의 도축 출하로 전체적인 방어항체 수준이 계속 떨어질 것이고, 면역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돼지의 수가 증가할 것임
- 예방접종 중지 이후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개체별 방어능력이 점차 소실되므로 폭발적인 전파에 의한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방역대책 사전준비 검토항목〉

- 이동통제 및 원산지 관리
- 예방약 수급조절 · 예방접종 승인 및 실시와 표시, 유통금지 및 수거조치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 관리방안
- 병성감정기관의 돼지콜레라 가검물 관리방안
- 신속진단 및 병성감정 체계구축
- 예방접종 중지후 발생시 살처분 및 긴급 예방접종 실시범위
- 돼지콜레라 예방약 비축방안

- 예방접종 중지후 발생시 보상 및 재할대책
- 홍보·교육계획

#### 가) 이동통제 및 원산지 관리

##### 필요성

- 예방접종 중지후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대한 철저한 이동통제가 필요하고, 돼지콜레라 발생시 원산지 역추적 등으로 피해 최소화

##### □ 기본방향

- 양돈농가들은 현재의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에 익숙해져 있으므로 농가 스스로 이동통제 [임상검사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발급]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예방접종 중지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조치
- 예방접종 중지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수출 재개를 위해서는 지역개념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는 완벽한 이동통제가 필요함

##### □ 이동통제 및 원산지 관리방안

- 출하 및 매매등 모든 이동돼지에 대하여 검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 발급주체 : 출하(매매)농장 축주 또는 관리인
  - 주요내용 : 축주, 농장 소재지, 출하(매매)두수, 성별, 일령, 주요증상,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임상검사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양식 ; 별첨 1, 이하 "검사증명서"라 함]
  - 검사증명서 기재요령 : 별첨 검사증명서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
  - 검사증명서 발급요령
    - 도축장 출하돈 : 원본은 농장에 보관하고 매입자(운송업자)에게 1매를 발급
    - 농장 매매돈 : 원본은 농장에 보관하고 매입자(운송업자)에게 2매를 발급
  - 검사증명서 처리절차 및 관리

##### <도축장 출하돈>

- 축주 또는 관리인이 돼지 매입자에게 검사증명서 발급
- 매입자는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
- 도축장 영업자는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축산물검사원은 도축검사신청서 및 첨부 검사증명서를 확인 및 도축검사 수행

##### <농장 매매돈>

- 축주 또는 관리인이 돼지 매입자에게 검사증명서 2매 발급
- 매입자는 검사증명서 1매는 농장에 보관하고, 1매는 입식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읍·면·동에서는 지체없이 시·군에 제출
- 입식지 관할 시·군에서는 가축방역관, 민간방역요원 등으로 하여금 임상검사를 실시토록 조치
- 가축방역관 및 민간방역요원은 임상검사 결과를 시·군에 보고

## 나) 예방약 수급조절 · 예방접종 승인 및 실시와 표시, 유통금지 및 수거조치

**필요성**

C 예방접종 희망 농가에 대한 예방약 수급계획이 필요함

C 전국적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 이후에도 예방약이 불법 유통되어 음성적으로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할 경우에는 혈청 검사 결과 양성으로 검출되어 해당농장 추적조사 등 불필요한 인력 및 시간낭비

## □ 예방접종 중지예 따른 예방약 생산물량 조정(희망농가 예방접종 허용시)

○ 100% 2회 예방접종시 연간 소요물량 : 3,280만두분

- 산출근거 :  $[800,000\text{두(모돈)} \times 10\text{두(1회 출산두수)} \times 2\text{회(연간 산차수)} \times 2\text{회(2차 접종)}] + 800,000\text{두} = 3,280\text{만두분}$

○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예 따른 예방접종 희망농가 소요물량 : 656만두분

- 산출근거 :  $4,000\text{만두분} \times 20\%(\text{예방접종 희망농가 } 20\% \text{ 추정}) = 656\text{만두분}$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물량 감소에 따라 제조 업체에 대한 조치가 필요

- 돼지콜레라 예방약 제조 업체의 생산량 조정에 대한 협의회 개최 필요

-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제조 업체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중단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 조치 필요

**참고 : 종돈 및 번식돈 예방접종 허용시 ; 20만두분**

○ 산출근거 :  $800,000\text{두(모돈)} \times 20\%(\text{예방접종 희망모돈 } 20\% \text{ 추정}) \times \text{년 } 1\text{회} + 4\text{만두(예비)} = 20\text{만두분}$

## □ 예방접종 승인 및 실시와 표시

○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후 예방접종 희망 농가는 관할 시 · 군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 예방접종을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예방접종은 관할 시장 · 군수가 지정한 자가 실시하며, 접종 돼지에 대하여는 귀에 이표를 부착하여야 함

## □ 예방접종 희망 농가에 대한 예방약 수급

○ 예방접종 희망 농가에 대한 예방약 유통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함

○ 예방약 제조 업체에서는 일정 물량을 항시 생산

- 농림부에서는 전국적 예방접종 희망 농가를 파악, 예상 소요량을 제조 업체에 통보

○ 예방약은 관할 시 · 군에서 보관관리

**<예방약 수급절차>**

→ 농가에서는 분기별 예상 소요량을 관할 시 · 군에 분기 시작 전월 5일까지 신고

→ 시 · 군에서는 당월 10일까지 시 · 도에 보고

→ 시 · 도에서는 당월 15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에서는 시·도, 시·군별 소요량을 제조 업체에 통보
- 제조 업체에서는 시·도, 시·군별 소요량을 배부하고, 그 내역을 농림부, 검역원 및 시·도에 보고
-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에 배부내역을 통보
- 시·군에서는 예방약 도착 확인후 농가별 소요량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지부에 통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지부에서는 예방접종 및 표시 실시
- 시·군에서는 예방약 수불사항을 주기적으로 지도감독

#### □ 돼지콜레라 예방약 유통금지 및 수거조치

-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소 허가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전국적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 직후 판매업소에 대하여 판매금지 조치
- 시·도에서는 사용하다 남은 돼지콜레라 예방약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 시·군에서는 수거반을 편성하여 판매업소 및 농장에 대하여 수거 실시

#### 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 관리방안

##### 필요성

- 시·도가축방역기관, 수의과대학, 민간연구소 등의 병성감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청정화 이후 잘못 관리할 경우 돼지콜레라 발생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 관리계획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 국내 보관실태 파악
- 돼지콜레라 예방약 제조업체의 예방약 제조주를 제외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 전량 수거 및 폐기
- 돼지콜레라 예방약 제조업체의 예방약 제조주에 대하여는 별도 특별관리방안을 수립시행
- 검역원 보유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는 균독주관리요령에 의거 특별관리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주의 수거, 반출 등 특별관리를 위하여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에 관련내용을 보완

#### 라) 병성감정기관의 돼지콜레라 가검물 관리

##### 필요성

- 돼지콜레라 100% 예방접종 실시로 실제 농장에서는 돼지콜레라가 박멸되고 있으나, 기존에 돼지콜레라 의심축으로 검사 의뢰되어 시·도가축방역기관, 수의과대학, 민간연구소 등 병성감정기관에 보관중인 가검물로 인하여 전파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함

#### □ 돼지콜레라 병성감정 가검물에 대한 조치계획

- 돼지콜레라 의심축 보관 가검물을 폐기토록 조치한 바 있음
  - 각병성감정기관에 보관중인 돼지콜레라 의심축 및 '99년 이전 돼지 가검물은 폐기토록 추가 공문조치
- 가검물 폐기 현지 확인점검 실시
  - 점검시기 :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 1~2개월전



- 점검대상 : 시·도가축방역기관은 자체 점검하여 폐기토록 하고, 수의과대학 및 민간병성감정기관에 대하여는 검역원에서 점검반 편성 운영
- 점검요령 및 폐기조치
  - 병성감정대장을 상세하게 열람하여 의심 가검물 파악
  - 의심 가검물은 외부에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현지에서 소각 또는 매몰처리
  - 의심 가검물 취급자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

#### 마) 신속진단 및 병성감정 체계구축

##### 필요성

- 예방접종 중지후 돼지콜레라 의심축 발생시 초동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신속진단이 필요하고, 청정화 이후에는 해외전염병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구제역에 준하여 특별 시설내에서 정밀진단 등 병성감정 체계개선이 필요함

##### □ 신속진단 체계구축

-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신고하도록 양축농가 홍보강화(홍보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의심축 신고시 초동방역을 위한 신속진단반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
  - 신속진단반 : 병리진단과, 바이러스과 및 해외전염병과 직원으로 구성하여 신속진단 완료, 시·도가축방역기관에 진단기술 지원
  - 역학조사반 : 방역과 역학조사팀으로 구성하여 현지 역학조사 실시, 필요시 확대 편성운영

##### □ 병성감정 체계개선

- 청정화 이후에는 해외전염병으로 관리되어야 함
- 의심축의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업무는 최소한 준차폐시설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함
  - 돼지콜레라 병성감정은 국가 방역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일반 병성감정지정기관은 돼지콜레라 의심 가검물 접수시에는 즉시 국가 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 실시, 돼지콜레라로 의심될 경우에는 검역원에 즉시 정밀검사 의뢰
- 검역원의 병성감정 담당부서 조정
  - 담당부서 : (현행) 병리진단과 → (개선) 해외전염병과
  - 조정시기 : OIE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인정 이후

#### 바) 예방접종 중지후 발생시 살처분 및 긴급 예방접종 실시범위

##### 필요성

- 예방접종 중지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살처분 범위, 예방접종 실시여부 및 실시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1) 살처분 범위****□ 예방접종 중지후부터 청정화 선포시까지**

- 돼지플레라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항체 양성율이 떨어지는 상황 및 발생 역학을 감안하여 인근농가의 살처분 범위를 결정

**□ 청정화 선포이후**

- 발생농장 전두수 즉시 살처분
- 발생농장의 인근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의 밀집정도, 산이나 강 등 지리적 여건, 질병 확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발생농장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
  -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의 생산농장
  -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구입하여 입식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산 돼지를 입식한 농장은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을 사용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은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발생농장 종사자, 진료 수의사 등(환측과 직접 접촉한 자)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자가 방문한 타농장은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타농장에 출입하였을 경우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타농장은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발생농장에서 도축용으로 출하된 돼지 및 도축장 출입차량과 사람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돼지는 살처분, 도축된 지육 및 부산물은 폐기
  - 도축장이 최초 오염된 날을 기준으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타 농장에 대하여는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도대책 강구

**(2) 긴급 예방접종 실시여부 및 범위****□ 예방접종 실시여부 결정**

- 발생일을 기준으로 오염 및 경계지역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임상관찰을 완료

하고 3농장 이상에서 추가로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고려함

- 예방접종 중지후 발생시의 예방접종 결정은 발생실태, 전파양상 등 역학상황과 예방접종 가속의 처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되, 최종 결정은 중앙돼지 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에서 정함
- 오염지역에 한하여 예방접종 실시

#### 사) 돼지콜레라 예방약 비축방안

##### 필요성

-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후 발생시를 대비하여 긴급 방역용 예방약 비축이 필요함

#### (1)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및 문제점

- 예방접종 중지후 긴급 방역용 예방약은 시·도에서 구입, 관리토록 농림부에서 지시
- '01. 5. 21 ~ 6. 9일 사이에 시·도의 돼지콜레라 근절 추진실태 점검시 각시·도에서는 중앙차원에서 비축하는 방안을 요구하였음
- 시·도에서 긴급 방역용 예방약을 비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제역 예방약 비축과 같이 중앙차원에서 비축·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 국가 비상 방역용 예방약을 시·도별 분산·비축하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시·도의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에는 보관 냉장고 등 별도 장비 구입이 필요함
  - 제조업체에 위탁 관리할 경우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음

#### (2) 예방약 비축방안(청정화 이후 대비)

##### □ 예방약의 종류

- 예방접종 중지후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방역 추진을 위하여 긴급 예방접종용 예방약 종류의 선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생독예방약 및 유전자재조합 예방약의 장·단점 비교

구 분	장 점	단 점
생독 예방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약 접종후 면역형성기간이 빠름(약 7일)</li> <li>○ 면역형성율이 높아 야외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능력이 좋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와 야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항체가 감별되지 않음</li> <li>○ 예방접종 가속의 사후관리가 필요함</li> </ul>
유전자재조합 예방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와 야외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항체가 감별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방접종후 면역형성기간이 다소 소요됨(약 2주)</li> <li>○ 면역형성율이 다소 떨어짐</li> </ul>

### 〈검토의견〉

- 예방약의 종류는 돼지콜레라 발생시 긴급 예방접종으로 전파·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생독예방약(반경 1km 이내)과 야외 바이러스와 감별되는 유전자재조합 예방약(반경 1km ~ 3km 이내)을 병행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생독 예방약 접종 돼지는 전두수 도태
- 예방약의 비축물량
  - 비축물량 산정기준
    - 과거 돼지콜레라 발생빈도가 높은 용인시와 홍성군에서 발생을 가정하여 두 지역의 평균농가수 및 평균사육두수
    - 반경 3km 이내(오염지역) 전두수 예방접종 실시
    - 4개 지역에서 동시 발생을 가정
  - 오염지역내 사육현황('01. 8월 현재)
    - 오염지역 1km 이내 : 44농가 27,678두
    - 오염지역 1 ~ 3km 이내 : 106농가 31,312두
  - 비축물량 : 520천두분
    - 오염지역 1km 이내 : 30,000두×2회×4지역=240천두(생독)
    - 오염지역 1 ~ 3km 이내 : 35,000두×2회×4지역=280천두(유전자재조합)
    - ※ 감별 진단키트 비축필요 : 140천두분(35천두 × 4지역)
- 예방약 비축방법
  - 1차년도는 청정화 선포후 초기인 점을 감안 비상시를 대비하여 완제품으로 비축
  - 2차년도는 청정화 유지상황 및 예산운용 절감을 고려하여 유전자재조합 예방약은 항원뱅크 구축으로 검토
- 예방약 보관장소 및 관리
  - 검역원에서 예방약(감별 진단키트 포함) 비축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에서 예산지원 조치 필요
  - 예방약 생산 제조업체와 계약생산 후 검역원 냉장시설내 보관
- 예방약 비축 소요예산 : 656,400천원
  - 생독예방약 : 26,400천원(30천두 × 110원 × 2회 × 4지역)
  - 유전자재조합예방약 : 420,000천원(35천두 × 1,500원 × 2회 × 4 지역)
  - 감별진단키트 : 210,000천원(35천두 × 1,500원 × 4지역)
- 아) 예방접종 중지후 발생시 보상대책
  -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은 현행과 같이 정부에서 전액 지원
  -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 부분은 정부 및 농가의 공동분담을 원칙
  - 농협으로 하여금 돼지질병을 담보로한 보험상품을 개발, 보급유도

- 간접손실 부분은 농협이 돼지질병을 담보로한 보험에 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가입을 적극 유도
- 농협 중앙회에 대하여는 돼지질병을 담보로한 보험상품을 조속 개발토록 협조요청
- 이와 병행하여 농가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하도록 시·도에 촉구

#### 자) 홍보교육계획

- 방역대책 확정후 별도 홍보계획 수립시행
  - 예방접종 중지시까지의 방역대책
  - 예방접종 중지후의 방역요령
  - 돼지콜레라 의심축 발생시 신고 및 방역조치 요령 등
- 농가별 방역관리의 중요성을 감안 음성자동전화홍보시스템 구축방안(농가별 전화홍보)을 검토
  - 음성자동전화홍보시스템에 농가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홍보·교육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화, E-mail, FAX 등으로 양축농가에게 직접 알려주는 첨단시스템입(방역정책의 신속성·정확성·대중성 등의 다원적인 홍보 효과 기대)

#### 차) 관련제도 보완계획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및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고시를 통합하여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으로 개정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에 보완되어야 할 주요내용
  - 임상검사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첨부 의무화
  - 예방접종 희망 농가의 신고 및 승인, 예방접종 실시, 표시 등 관련사항
  - 예방접종시 수수료 징수 관련사항
  - 예방약 유통금지 등 관련사항
  - 수거 예방약에 대한 대금 지급
  - 기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

#### 4) 예방접종 중지후 방역대책

##### 가) 예방접종 중지후 청정화 선포시까지 방역대책

###### 필요성

-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던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중지하게 되므로써 방역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됨
  - 예방접종 돼지와 미예방접종 돼지가 혼재 사육됨
  - 예방접종 돼지의 출하·도축으로 미예방접종 돼지가 점차 많아질 것임
- 예방접종 중지와 예방접종 실시 농가가 혼재
- 예방접종 중지 이후의 방역수단은 출하·매매 돼지의 이동통제, 농장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야 함

##### (1) 기본방향

- 기본적으로 현행 방역체계를 유지
- 이동통제, 농장소독 강화, 도축검사 등 기본적인 방역활동 강화

##### (2) 방역대책

-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

- 예방접종 증지후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에서는 상황실을 설치운영
  -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과 병행 운영
- 지역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주기적 개최
  - 시·도(시·군)단위 방역추진협의회 주기적 개최로 긴장감 유지
  - 예방접종 증지후 방역추진의 문제점 발굴 및 보완대책 수립
  - 관할 지역내 혈청검사 결과 분석
  -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 출하 및 매매돈의 이동통제 강화
  - 출하 및 매매돈 등 모든 이동돼지에 대한 검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 시·도(시·군)는 검사증명서 발급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농장 방역실태 점검 및 일제 임상검사시 농장에서의 발급사항 점검 및 지도
    - 도축검사신청서에 검사증명서 첨부사항 주기적 단속
  - 검역원에서는 시·도(시·군)의 관리실태를 점검
    - ※ 돼지콜레라 청정화와 관련하여 이동통제의 조기 정착이 중요함
- 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 및 임상검사 실시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돈농가의 방역수단은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임
  - 양돈농가에서 차단방역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의심증상 환축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는 시·도(시·군)에서 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임상검사)을 실시
    - 시·군에서는 가축방역관, 공수의, 민간방역요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영
    - 시·군에서는 별첨 농가별 점검표를 작성 관리(돼지콜레라 방역실태 농장 일제점검표 ; 별첨 2)
    - 농장 방역실태 일제점검(임상검사) 실시주기 : 2개월에 1회 이상
    - 점검시 위축돈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도태하도록 방역지도
    -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과감하게 행정조치
    - 임상검사 결과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이동제한 조치후 관할 시·군에 보고
    - 시·도에서는 방역실태 일제점검 및 임상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농림부에 보고 및 검역원 통보
  -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방역지도 및 점검 실시
    - ※ 일제점검시 검사증명서 발급사항, 음성적 사용하는 예방약 수거 병행 실시
- 예방약 수급 및 유통금지
  - 〈예방약 수급〉
    - 시·군에서는 예방접종 희망 농가 승인 및 분기별 예방약 소요량 파악 보고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지부의 예방약 수불관리 지도감독 강화
  - 〈예방약 유통금지 및 수거조치〉
    - 예방접종 증지후 음성적으로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할 경우 항체검사 에서 양성으로 나오므로 돼지콜레라 발생여부, 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불필요한 시간, 인력 등을 낭비하게 되므로 확실한 조치가 필요함
    -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소 허가권자(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전국적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증지 직후 판매

업소에 대하여 판매금지 조치

- 시·도에서는 사용하다 남은 돼지콜레라 예방약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전달
- 시·군에서는 수거반을 편성하여 판매업소 및 농장에 대하여 수거 실시
  - 수거기간 설정운용 및 수거기간중에 반납된 물량에 대하여는 보상대금 지급(농림부에서 예산지원 검토 필요)
- 도축검사 강화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철저
  - 도축장은 여러농장의 돼지가 집합되고, 많은 가축운송차량이 출입하므로 도축장에서의 방역관리가 중요함
  - 도축장 영업자의 준수 및 협조사항
    - 검사증명서 제출 및 기재내용 확인철저
    - 검사증명서 미제출 및 허위기재 도축의뢰분에 대하여는 도축거부
    - 가축운송차량에 대하여는 철저한 세척 및 소독실시,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도 소독지도 강화
    - “○월 ○일부터 돼지임상검사증명서(돼지콜레라예방접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도축을 할 수 없다” 라는 플래카드를 도축장 입구 잘 보이는 곳에 설치·홍보
    - 관할 축산기업조합 및 가축수집상에 대하여도 이러한 내용을 홍보
  - 축산물검사원이 지켜야 할 사항
    - 도축검사신청서에 돼지검사증명서 첨부여부 및 기재내용 확인철저(수시로 출하농장 전화 확인)
    -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강화, 의심축 발견시 즉시 보고
    - 도축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관리감독 철저
  - 시·도지사는 도축장의 방역실태를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법령에 의거 과감하게 행정조치
  - 검역원에서는 중앙차원에서 도축장의 방역실태를 불시점검
-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실시
 

〈항체검사〉

  - 항체검사는 기본적으로 현행체계를 유지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시행
    - 예방접종 중지후 3개월까지 : 현행과 같이 무작위 시료채취 검사
    - 예방접종 중지후 3개월 이후부터 6개월까지 : 전국의 농가대상 일제 항체검사 실시(별도계획 수립시행)
  - 항체검사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농림부에서 확보 배정

〈항원검사〉

  - 항원검사는 현행체계를 유지
  - 수의과대학 등 병성감정기관에 의뢰되는 가검물에 대하여 적극 검사실시
  - 위축돈 발생농가 및 농장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는 농가를 우선 검사실시
    - 도축검사시 위축돈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료채취 및 검사실시
- 돼지콜레라 유입방지 검역강화
  - 해외여행객에 대한 방문국가의 농장방문 자제 등 홍보강화
  - 해외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강화, 밀수단속 등 공·항만 검역강화
  -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현장검사 등 검역강화
  - 돼지콜레라 발생국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검토

- WTO에 예방접종 중지 진행사항 통보
- 선·기내 남은 음식물 세부 처리규정 마련 필요
- 해외 돼지콜레라 발생동향 지속 파악 및 대응조치 강구

#### 나) 청정화 선포 이후 방역대책

##### 필요성

- 모든 돼지가 돼지콜레라 항체 음성돈이 되므로 야외 바이러스가 있다면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발생시 빠른 속도로 전파될 것임

##### □ 방역대책상황실 존치

-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후 2개월 이후까지 상황실 설치운영으로 비상 방역태세 유지

##### □ 출하 및 매매돈 이동통제

- 청정화 선포 이후에는 대부분의 개체가 항체 음성돈이므로 한번 발생시 쉽게 감염되고 전파속도가 빨라 이동하는 돼지에 대한 이동통제(원산지 관리)가 중요함
- 검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제도 운영실태 주기적 점검 실시

##### □ 농장 예찰활동 및 방역지도 강화

- 농장에서 출입통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시에는 신속히 신고하도록 방역지도 강화

##### □ 도축검사 강화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철저

- 축산물검사원은 생체 및 해체검사 철저
- 의심축 발견시에는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즉보, 농장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요구
  - 해당 개체에 대한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 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관리감독 강화

##### □ 예방약 수급 및 유통금지

- 청정화 이후 발생시를 대비한 예방약 52만두분(생독예방약 24만두분, 유전자재조합 예방약 28만두분) 및 감별진단키트 14만두분 항시 비축
- 완전한 예방접종 중지로 예방약 유통금지 및 단속 실시

##### □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실시

###### <항체검사>

- 검사대상 : 도축장 출하 돼지
- 청정화 선포일 이후에는 분기별로 년간 도축두수의 1/1,000 이상을 검사
- 항체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때에는 출하 양돈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추적조사, 전두수 임상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 <항원검사>

- 검사대상 : 도축장 출하 돼지, 농장 위축돈, 항체 양성돈, 병성감정기관 의뢰 가검물
-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검사대상 돼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항원검사 실시

##### □ 돼지콜레라 병성감정

- 청정화 이후에는 해외전염병으로 관리되어야 함



- 의심축의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업무는 최소한 준차폐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돼지콜레라 병성감정은 국가 방역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일반 병성감정지정기관은 돼지콜레라 의심 가검물 접수시에는 즉시 국가 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 실시, 돼지콜레라로 의심될 경우에는 검역원에 즉시 정밀검사 의뢰
  - 검역원에서는 신속한 정밀검사 실시
- 돼지콜레라 유입방지 검역강화
  - 해외여행객에 대한 방문국가의 농장방문 자제 등 홍보강화
  - 해외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강화, 밀수단속 등 공·항만 검역강화
  -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현장검사 등 검역강화
  - 돼지콜레라 발생국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추진 및 운용철저
  - 선·기내 남은 음식물 안전관리 강화
  - 해외 돼지콜레라 발생동향 지속 파악 및 대응조치 강구

5) 예방접종 중지 후 발생시 방역대책

**발생상황**

- 예방접종 중지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발생
- 돼지콜레라 의심축 조기발견, 신속진단, 초동방역이 피해 최소화의 관건임

□ 발생시 방역대책 주요내용

- 신고 접수에 따른 초기 조치사항
-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
- 발생 확진시 긴급 조치사항
- 발생 장소에서의 방역요령
- 긴급 예방접종 및 도축장 운용
- 살처분 요령
- 소각 및 매몰요령
- 세척 및 소독요령
- 사후조치와 돼지의 재입식
- 도축장·가축시장·가축품평회 등에서의 조치
- 기타 방역 조치사항

□ 초동방역 조치계획

- 돼지콜레라 의심축 신고 접수를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농장에 대하여 가축·물건·사람의 이동통제와 소독실시, 방역대 설정을 대비한 돼지 사육현황 사전파악
- 돼지콜레라 확진시 관할 시·도지사는 방역대(오염 및 경계지역) 설정 및 운용

- 관할 시·도지사는 오염 및 경계지역의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운영
  - 오염지역 : 최종 발생후 40일 이상 이동통제
  - 경계지역 : 최종 발생후 15일 이상 이동통제
- 관할 시·도지사는 기동방역반을 편성하여 오염 및 경계지역내 사육하고 있는 전두수에 대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농가에 추적조사 실시

#### □ 살처분 범위결정

- “Ⅲ. 청정화 세부 추진대책”, “3.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를 대비한 방역대책 준비 계획”, “바. 예방접종 중지 후 발생시 살처분 및 긴급 예방접종 실시범위”, “1) 살처분 범위”의 내용과 같음

#### □ 예방접종 실시여부 결정

- “Ⅲ. 청정화 세부 추진대책”, “3.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를 대비한 방역대책 준비 계획”, “바. 예방접종 중지 후 발생시 살처분 및 긴급 예방접종 실시범위”, “2) 긴급 예방접종 실시여부 및 범위”의 내용과 같음

#### □ 보상 및 재활대책

- 살처분 보상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살처분등보상금지급요령에의거)
-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 부분은 정부 및 농가에서 50%씩 공동분담
  - 농가에서는 자조금 또는 보험상품 적극 활용

## [별첨 1]

제 호									
돼지임상검사증명서(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상 검사	<input type="checkbox"/> 식욕결핍 <input type="checkbox"/> 변비 <input type="checkbox"/>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input type="checkbox"/> 비틀거림 <input type="checkbox"/> 뒷다리마비 <input type="checkbox"/> 최근 15일 이내 폐사두수( )								
예방 접종	예방약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1차 예방 접종일자				2차 예방 접종일자				
매매 출하	농장매 두 수		구 매 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농 출하두수		출 하 처		전화번호				
	가족수집 (중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상기 가족은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input type="checkbox"/> 임상검사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증명(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확 인 자 :                                  년          월          일 (인)</div>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 V표시를 하고, 예방접종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절 ----- 취 ----- 선 -----

제 호									
돼지임상검사증명서(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상 검사	<input type="checkbox"/> 식욕결핍 <input type="checkbox"/> 변비 <input type="checkbox"/>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input type="checkbox"/> 비틀거림 <input type="checkbox"/> 뒷다리마비 <input type="checkbox"/> 최근 15일 이내 폐사두수( )								
예방 접종	예방약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1차 예방 접종일자				2차 예방 접종일자				
매매 출하	농장매 두 수		구 매 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농 출하두수		출 하 처		전화번호				
	가족수집 (중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상기 가족은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input type="checkbox"/> 임상검사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증명(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확 인 자 :                                  년          월          일 (인)</div>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 V표시를 하고, 예방접종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절 ----- 취 ----- 선 -----

제 호									
돼지임상검사증명서(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상 검사	<input type="checkbox"/> 식욕결핍 <input type="checkbox"/> 변비 <input type="checkbox"/>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input type="checkbox"/> 비틀거림 <input type="checkbox"/> 뒷다리마비 <input type="checkbox"/> 최근 15일 이내 폐사두수( )								
예방 접종	예방약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1차 예방 접종일자				2차 예방 접종일자				
매매 출하	농장매 두 수		구 매 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농 출하두수		출 하 처		전화번호				
	가족수집 (중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상기 가족은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 조의 규정에 의한 <input type="checkbox"/> 임상검사 <input type="checkbox"/>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증명(확인)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확 인 자 :                                  년          월          일 (인)</div>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 V표시를 하고, 예방접종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별첨 2]

## 돼지콜레라 방역실태 농장 일제 점검표

농장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점검일자	예방접종 농가여부	임상검사증명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사항	소독 실시사항	임상 검사결과	예방약 수거	점검자

<특기사항>

< 참고자료 4 >

##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대책 보고서

2001.11.23

농 립 부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 대책

### 추진목적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후 청정화 목표 달성 및 유지
- '00.3월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돼지고기 수출 재개

## I. 현 황

### 1.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기본방향

#### □ 근절목표

- 1단계('96.7~'98.6 : 2년) : 발생 최소화
  - 예방접종 확대 실시, 피해최소화, 감염돼지 살처분
- 2단계('98.7~'00.9 : 2년) : 청정화 준비
  - 예방접종 100% 실시,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 혈청검사 확대 및 예방접종 미 실시 농가 중점관리
- 3단계('00.10~'01 : 1년) : 근절확인
  - 예방접종 중지후 청정화 선언

#### □ 기본 방향

- 예방주사 100% 실시 후 접종중단
  - 100두 미만 사육농가 : 예방약 공급 및 예방접종 실시 지원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예방약 공급 및 농가 자율접종
- 예방주사 실시여부 확인 및 기술지원
  - 농장 및 도축장 혈청검사 실시, 미접종 농가 과태료(3백만원이하) 처분
  -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는 돼지의 이동 및 도축제한
- 돼지콜레라 발생시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수출금지 및 이동제한 실시 등
- '01.11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 후 근절확인 및 청정화 선언 계획

### 2. 예방접종 중단일정 추진 경위 및 의견

- '00.9.23 : 예방접종 중단시기 '00.10월에서 '01.3월로 연기
  -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화 목표 수정
- '01.1.29 : 시·도, 양돈관련단체, 학계 등 의견조회
  - 중단시기를 '01년 5월 이후로 연기 의견
- '01.2.10 :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한 예방접종 중단 설문조사
  - 참여자 1,023명중 559명(54.6%) 중단반대

- '01.2.20 : 공청회 개최, '01.10월 이전에 단계적 접종 중단 결정
- '01.5.24 : 협의회 개최
  - 야외 병원성 바이러스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평가사업 실시 결정
  - 302농가 4,800두 자돈을 예방접종하지 않고 5회 혈청검사
- '01.8.17 : 시도별 자체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 결과 '01.10월 예
  - ~9.14 방접종 중단 원칙적 찬성
- '01.9.20 : 공청회 개최
  - 예방접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희망농가 접종 허용 요구
- '01.9.28 : 협의회 개최, '01.11월말 예방접종 접종중단 찬성
- '01.10.24 : 돼지고기 수출대책 회의 개최
  - 예방접종 중단은 11월말로 하되, 일본의 요구대로 전면 중단 여부는 대한양돈협회가 주축이 되어 농가설득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
    - ※ 정부는 지속적인 협의, 일본이 주장하는 요건완화 교섭
  - 돼지콜레라 재발생시 직접보상은 어려움 없음, 간접지원은 농가자체 방역기금 조성시 그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전면 수출재개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제주도산 돼지고기를 우선 수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 수출 협상 추진
  - 일본에 우리 돼지고기의 안전성 및 품질홍보 강화
- '01.6~10 :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평가시험 결과
  - 국내에는 야외 돼지콜레라바이러스가 없음을 확인

## II. 청정화 여건조성

### 1. 구제역 청정국 인증

- 우리나라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파리, 9.17 ~ 21)" 의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총회에서 청정국 인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 국제 규정에 의한 방역상황의 성실한 보고, 예찰·소독·혈청검사 등 방역조치 사항이 높히 평가되어 예상보다 8개월 앞당겨 위원회에서 지난 9.19일 청정국인증을 받은 최초의 국가임
  - ※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같이 받은 프랑스, 아일랜드는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을 한 국가이며, 화란은 예방접종 가속을 전두수 살처분을 하였음

### 2. 돼지콜레라 근절

#### □ 연도별 발생상황

구분	'96	'97	'98	'99	'00~'01.8
두 수	4,498두	1,912	985	1,683	0
건 수	39건	20	6	5	0

※ '99년도 5건은 모두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

## 〈지역별 청정화 추진현황〉

- 제주도 : '98.2.1 예방접종 중지, '99.12.18 청정화 선언
- 울릉군 : '99.12.10 예방접종 중지, '01.2.1 청정화 선언
- 강원도 : '01.1.1 예방접종 중지, '01.7.1 청정화 선언

## □ 면역형성률(혈청검사에 의한 예방주사 항체반응 비율)

구분	'97년말	'98	'99	'00	'01.9
면역형성률	68.7%	76.1	95.5	96.1	96.8

- 예방약 공급 : '99년도부터 100%(년 30백만두분) 정부지원
- 혈청검사 : ('98) 56천건, ('99) 571, ('00) 568, ('01계획) 287천건
  - 혈청검사는 '99. 11부터 도축장 출하돼지 검사를 농장방문 채혈검사 중심으로 전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요원 채혈 실시

## □ 멧돼지 검사결과 :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01. 6 ~ 10월) 결과

- 채혈 검사결과

구분	항체검사					항원검사		
	농가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양성율%	항체역가범위	농가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계획	302	4,800	-	-	-	302	4,800	-
1차	299	4,766	3,201	67.2	16~32	299	4,765	0
2차	297	4,712	1,472	31.2	2~8	297	4,743	0
3차	293	4,590	563	12.3	2~8	293	4,590	0
4차	273	4,254	287	6.7	2~8	290	4,480	0
5차	261	4,940	90	2.3	2~8	272	4,075	0

- 결과분석
  - 시험돼지는 예방접종을 한 모돈에서 태어난 30~40일령의 자돈으로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출하 시까지 사육한 바 항체양성률과 역가범위가 정상으로 감소하고, 돼지콜레라바이러스 항원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음



현재까지 시험농장내에 아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Ⅲ. 예방접종 중단시 문제점

## □ 11월말 전면중단에 따른 접종 희망농가 설득 난항

- 한·일 실무협의시(10.14~17) 일본은 한국이 예방접종 일부 허용시 수입이 어렵다는 입장에 따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나, 수출을 하지 않는 농가의 반발 설득에 어려움 상존



□ 예방접종 중단후 재 발생시 정부의 지원요구 과다

- 양돈농가는 **중돈 가격인정**· 살처분 보상범위에 **폐사돈 포함** 및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경영손실 등 간접피해에 대한 정부지원을 과다하게 요구

〈농가 요구사항〉

- 살처분시 : 모돈 500천원, 웅돈 600천원, 자돈 80천원, 육성비육돈 160천원
- 폐사돼지 : 살처분 돼지의 50%, 매몰비용(두당) : 번식돈 50천원, 비육돈 30천원
- 방역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비율 : ('02~'04) 100%, ('05년 이후) 50%

□ 예방접종 중단후 발생농장에 대한 보험제도(가축공제 등) 활용 지난

- 농가는 간접피해에 대비, 공제제도 활용을 원하고 있으나 농협은 가축전염병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며 미온적 태도 표명

## IV. 청정화 완성을 위한 세부 추진대책

### 추진방안

- 지난 10.24일 돼지고기 수출대책 회의시 일본이 한국에서 예방접종 일부 허용시 수입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논의 후
- **대한양돈협회를 중심으로 농가에서 돼지고기 조기 수출을 위해 예방접종 전면중단을 건의(11.2)함에 따라 12.1부터 예방접종 전면중단 실시**
- ※ 동 추진방안에 대한 홍보추진(리후렛 배포)

### 1. 예방접종 전면중단 전 방역대책

- 예방접종 중단 후 재발생 대비 돼지콜레라 생독 예방약 **비축·관리 방안**
  - '02년에는 **완제품 비축**, 청정화 유지상황에 따라 **항원뱅크** 구축 검토
  - 예방약 제조업체와 계약생산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냉장 보관**

### 비축·관리 투수

- 예방약 비축 투수 : 5,150천두
- '02년 예산확보 : **721백만원**(5,150천두×140원)
- ※ 예산확보 비율(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약 생산량 조정을 위한 예방약 제조업체와 협의회 개최

□ 균독주 관리

- 예방접종 중단 이후 시·도 가축방역기관, 수의과대학, 민간연구소 등 **병성감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균독주 관리 철저**

- 균독주 국내 보관실태 파악 및 예방약 제조주를 제외한 균독주 전량 수거 및 폐기
- 검역원 및 제조업체 보유 바이러스 균독주 특별관리

#### □ 신속진단 및 병성감정 체계구축

- 예방접종 중단 후 돼지콜레라 의심축 발생시 초동방역·신속진단 수행
- 청정화 이후에는 해외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의심축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및 정밀검사는 준차폐시설에서 실시
  - 일반 병성감정지정기관에서 의심축 접수시 즉시 방역기관에 검사 의뢰
  -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 실시, 돼지콜레라로 의심될 경우에는 검역원에 즉시 정밀검사 의뢰

## 2. 예방접종 전면중단 후 차단 방역대책

### 〈국내방역〉

#### □ 시중 유통중인 돼지콜레라 예방약 유통금지 및 수거조치

- 동물용의약품판매업소 신고관리자인(시·도지사)은 예방접종 중단 직후 예방약 판매금지 조치
  - 시·군은 수거반을 편성하여 판매업소 및 농장에 대하여 재고량 수거 조치
  - ※ 단일예방약은 대부분 정부지원용이므로 무상으로 수거하고 혼합예방약(돼지콜레라 + 단독)은 실비보상 후 수거·폐기 실시

#### □ 농장 임상검사 및 도축장 검사강화

- 점검반 편성 : 가축방역관, 공수의사, 방역요원, 농촌지도직
- 기 간 : '01.12.1~'02.5.31

### (농 장)

- 시·군은 농가별 점검표(별첨1)를 작성 관리
- 항체검사는 예방접종 중단 후 6개월까지는 무작위 시료채취 검사
  - 6개월 이후부터 표본채취 항체검사 계획수립 실시
- 항원검사는 위축돈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
-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는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및 제조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지도 및 점검실시

### (도축장)

-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 강화, 의심축 발견시 즉시 조치
- 항체·항원검사는 지속적으로 실시
  - 항체검사 : 연간 도축두수의 1/1000이상 실시, 양성 확인시 출하 양돈장을 추적 조사하여 이동제한 및 전두수 임상·항체검사 실시

- 항원검사 : 도축시 위축돈 검사외
- 가축운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실시, 운전자에 대한 소독지도 강화
- 시·도지사는 도축장의 방역실태를 수시로 점검

#### □ 재발생시 살처분 범위 및 예방접종 실시기준 설정

- 살처분 범위
  -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인근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의 밀집정도, 산이나 강 등 지리적 여건, 질병 확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별첨 2)
- 예방접종 실시기준
  - 발생일을 기준으로 오염 및 경계지역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임상관찰 완료
  - 3개 농장 이상에서 추가로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예방접종 고려

#### 〈국경검역〉

##### □ 돼지콜레라 유입방지 검역강화

- 해외여행객에 대한 방문국가의 농장방문 자제 등 홍보강화
- 해외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강화, 밀수단속 등 공·항만 검역강화
-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현장검사 등 검역강화
- 돼지콜레라 발생국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검토
- WTO에 예방접종 중단 진행사항 통보
- 해외 돼지콜레라 발생동향 지속 파악 및 대응조치 강구

##### □ 돼지콜레라 근절 홍보 및 돼지고기 수출재개 협의

-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 2.1.13.2에 의거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후 청정국 선언
  - OIE에 우리나라가 지난 2년 동안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고 금년 12.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전면 중단하였음을 통보
  - WTO/S.PS위원회 및 교역상대국에 '02.6.1부터 돼지콜레라 발생 국가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할 것임을 통보
-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협의 추진 실무 협상단 파견(5명)
  - 출장시기 : '01년 12월중
  - 출 장 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의 2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안수환 부장의 1명
  - 협의사항 : 협상단을 일본에 파견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전면중단 상황 등을 설명하고 돼지고기 조기 수출재개를 협의

### 3. 제도개선

####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7장 28조) 개정 (표 61)

- 돼지콜레라 발생시 조치, 예방접종 강화단계, 예방접종 금지 및 지역별 청정화 확인단계, 비발생국 인증 및 전국적 청정화 유지단계로 구분

개 선 내 용	세 부 사 항
○정의	○발생농장을 기점으로 위험지역(3km이내), 경계지역(3~10km) 구분
○돼지콜레라 발생시 조치(개선 및 신설)	○발생농장에 반입된 돼지 및 정액 등의 생산농장 추적 및 이동제한 규정 신설 ○긴급 임상관찰·혈청검사 및 예방접종 규정 신설
○예방접종 승인 및 표시(신설)	○예방접종 금지 이후 예방접종 희망농가에 대하여 승인 제도 및 예방접종 돼지 표시 ※ 표시방법 : (모든) 귀에 천공, (육성돈)페인팅
○예방약 수급 및 관리(신설)	○농림부장관이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국내 판매금지조치 및 동 질병 발생시를 대비 예방약 비축 ○광역원장이 국내 돼지콜레라 균독주 보관실태 파악, 제조용 균주 특별관리, 가검물 관리
○예방접종 중단후 방역 관리(개선)	○농장 임상검사, 소독 실시, 도축검사 강화, 예방약 판매·유통 금지와 판매, 항체항원검사 ○예방접종 확인, 구입돼지 격리사육, 남은음식물 가열처리 급여 등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개정 추진

□ 돼지콜레라 발생시 대비 “방역실시요령(SOP)” 보완

#### 4. 돼지콜레라 재발 시 지원대책

□ 직접보상 및 지원

- **직접보상** : 발생농장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02년 국비확보(45.5억원)
  - 그간 보상금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살처분보상금 종돈 가격인정(관련고시 개정 추진)
- **이동제한에 따른 도축장 출하돼지를 수매하여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
  - 재원 : **축산발전기금**, 예상수매비용 : 최저 282~ 최고 4,257백만원
  - ※ 종전 돼지콜레라 발생지역(20개소)을 대상으로 최저·최고 수매비용 산출

#### 수매 예상 비용산출

- **홍성** : 4,257백만원(29,981두×142천원/10월 중순 기준)
  - 출하 예정두수 : 312,847두 × 2회/년 ÷ 360일 = 1,738두/일
  - 3km지역내 : 1,738두×9%×40일 = 6,257두
  - 3 ~ 10km : 1,738두×91%×15일 = 23,724두
- **보은** : 282백만원(1,984두×142천원)
  - 출하 예정두수 : 20,778두 × 2회/년 ÷ 360일 = 115두/일
  - 3km지역내 : 115두×9%×40일 = 414두
  - 3 ~ 10km : 115두×91%×15일 = 1,570두
- ※ 사육두수('00.12) : 홍성 312,847두, 보은 20,778두

- 폐사돈은 살처분 가격의 50%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
  - 법적근거 : 축산법 제38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가축위생 및 방역)

#### □ 간접지원

- 돼지콜레라 재발시 이동통제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 대한양돈협회를 운영주최로 하는 등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기금을 조성해놓은 금액에 비례하여 연차적으로 차등지원
    - 재원 : 축산발전기금, ('02) 90%, ('03) 70%, ('04이후) 50%
    - 법적근거 : 축산법 제38조(기금의 용도) 제1항 제5호(가축위생 및 방역)
  - ※ 대한양돈협회에서 정부의 지원비율을 초년도부터 3년간 100%, 4년째부터 50%로 요구하였으나, 농가자체 방역기금 조기 모금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04년 이후부터 일본 수준인 50% 적용코자함
- 운영주체,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한양돈협회와 협의 추진
  - 시도별 공청회(8.17~9.18)에서 출하돼지 두당 300~500원 적립방안 공론화
  - 방역기금 조성 : 원주 50백만원(45호), 제주 1억원
  - ※ 현재 가축전염병은 공제제도 대상이 아니나 적용방안 여부를 농협(공제보험업무부)·대한양돈협회와 협의 추진

#### □ 일본 가축방역보조기금 제도 개요

- 적용 범위
    - 도태 및 도태 비용, 소각·매몰 비용, 경영중단에 따른 손실 보전(입식비)
  - 비용부담 : 비용은 국가 50%, 농가 50% 부담
    - 양돈농가 적립금(두/년) : 종돈 1,250엔, 비육돈 80엔
- 표 66. 일본 호조금의 종류

종 류	교부단가(두당)
1. 도태 호조금	
① 번식용 종돈(암)	81,000엔
② 번식용 종돈(수)	149,000엔
③ 비육돈(약3개월령 이상의 것)	22,000엔
④ 비육돈(약3개월령 미만의 것)	11,000엔
2. 도입 호조금	
① 번식용 종돈	28,000엔
② 비육돈	4,000엔
3. 소각·매몰 등 호조금	4,000엔

## 2. 돼지콜레라 발생현황

'96~'99년 사이 국내 돼지콜레라 발생양상은 예방접종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이 시행되면서 발생건수도 점진적으로 줄었으며,('96년 39건 → '97년 20건 → '98년 6건 → '99년 5건) '99년 8월 경기도 용인지역 발생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99년부터는 전국적인 예방접종, 항체검사와 농가점검 및 질병예찰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돼지콜레라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97년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효소면역법진단키트(ELISA kit)를 이용하여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980농가 22,725두를 검사한 결과 68.7%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였으며, '98년에는 1,650농가 10,697두를 검사했을 때 양성률이 76.1%로 상당히 향상되었다. 또한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한 '99년 1월에는 항체양성률이 74.6%이었으나 12월에는 95.3%로 현저히 상승하였으며, 연간 평균 항체양성률이 91.4%였다. '99년은 돼지콜레라 근절의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한해였다. 예방접종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고 도축장에서는 예방접종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도축을 제한하였으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는 혈청검사결과 항체양성률 80%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근절정책을 실시한 결과 항체양성률이 획기적으로 상승하였다.

〈표 5-2〉 연도별 돼지콜레라 발생현황

년 도	'96	'97	'98	'99	'00	'01
건 수	39	20	6	5	-	-
두 수	4,498	1,912	985	1,683	-	-

〈표 5-3〉 연도별 돼지콜레라 항체형성을

년도	'96	'97	'98	'99	'00	'01
항체형성률(%)	-	68.7	76.1	91.4	96.1	96.4

〈표 5-4〉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 및 도살처분내역

년도	발생건수	발생두수	폐사두수	도살두수	보상금지급(단위: 천원)
'96	39	4,498	3,099	174	10,070
'97	20	1,912	799	1,337	68,177
'98	6	985	509	2,234	188,354
'99	5	1,683	404	2,783	317,732
'00~'01	-	-	-	-	-

〈표 5-5〉 년도별 돼지클레라 발생농가 현황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내역

## □ '96년 발생현황

발생 년월일	지역 (시도, 시군, 읍면)	사육 두수	발생 두수	폐사 두수	살처분 두수	보상금 (단위:천원)
'96. 1. 12	경기 양주군 백석면 방성2리 124번지	300	150	40		
'96. 2. 29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789	500	36	36		
'96. 3. 1	경북 칠곡군 북삼면 오평2리	600	150	120		
'96. 3. 1	경북 칠곡군 북삼면 오평2리	500	100	70		
'96. 3. 1	경북 칠곡군 약목면 덕산2리	200	80	50		
'96. 3. 1	경북 칠곡군 약목면 덕산2리	500	80	50		
'96. 3. 1	경북 칠곡군 약목면 덕산2리	1,200	100	70		
'96. 3. 4	충남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2구	95	30	23	72	4,908
'96. 3. 4	경기 용인군 포곡면 신원3리	600	100	20	80	3,890
'96. 3. 10	강원 철원군 갈말읍 문혜4리	610	280	230		
'96. 3. 20	충남 서산시 팔봉면 덕송리 299	90	90	90		
'96. 3. 20	경기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162	300	100	100		
'96. 3. 25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913	2,500	250	250		
'96. 3. 27	경북 칠곡군 약목면 덕산 2리	84	37	15	22	1,272
'96. 4. 17	경기 평택시 송북동 197	300	150	150		
'96. 4. 17	경기 평택시 송북동 197	2,600	150	150		
'96. 5. 23	경기 화성군 정남면 내리1리 188	150	90	55		
'96. 5. 23	경기 화성군 정남면 내리리 188	135	90	85		
'96. 5. 27	경기 고양시 일산구 고봉동 42	1,000	100	20		
'96. 5. 27	전북 정읍시 웅동면 칠석 328	331	150	40		
'96. 6. 3	경남 함안군 함안면 북촌리 160	800	80	20		
'96. 6. 10	전북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250	45	45		
'96. 6. 11	전남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767	800	48	20		
'96. 7. 5	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994	72	25	23		
'96. 7. 9	충북 음성군 상성을 용성리 396	734	132	95		
'96. 7. 13	전북 익산시 망성면 신작리	600	75	41		
'96. 8. 20	경기 이천시 설성면 지식2리 산26-1	2,000	200	100		
'96. 9. 24	전북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620	35	15		
'96. 10. 1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347-4	500	80	5		
'96. 10. 1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347-4	100	50	30		
'96. 10.11	경기 파주시 파평면 마산리 366	80	10	10		
'96. 11. 8	경남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593	800	100	50		
'96. 11. 9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250	20	11		
'96. 12.13	충남 연기군 전의면 동교리 127-1	300	125	100		
'96. 12.16	경남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1081	4,000	90	90		
'96. 12.24	경기 용인시 포곡면 신원2리	1,300	350	300		
'96. 12.24	경기 용인시 포곡면 신원2리	1,000	500	400		
'97. 1. 4	경기 용인시 백암면 백봉리 438-2	1,800	120	60		
'97. 1. 7	경기 안성군 일죽면 신흥리 451-2	1,000	100	20		
합 계	39개 농가		4,498	3,099	174	10,070

## □ '97년 발생현황

발생 년월일	지역 (시도, 시군, 읍면)	사육 두수	발생 두수	폐사 두수	살처분두수	보상금 (단위:천원)
'97. 1. 11	경남마산시 합포면 진동요장리 373-3	600	150	60	194	8,696
'97. 1. 27	경기 용인시 백암면 고안리 168	100	64	53		
'97. 3. 23	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지리 57	1,100	100	70	39	1,109
'97. 4. 29	전북 익산시 춘포면 상평리 엽동	1,000	48	20	15	557
'97. 6. 19	경기 안성군 일죽면 신흥리	2,500	15	15		
'97. 6. 20	경기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1,000	10	3		
'97. 7. 4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02	485	140	55	203	4,517
'97. 7. 4	경남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610	47	44		
'97. 7. 4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02	575	23	19	15	348
'97. 7. 4	경남 하동군 황천면 화리	100	30	30		
'97. 7. 29	경남 하동군 황천면 여의리 632	300	39	0	39	2,103
'97. 8. 9	경남 하동군 황천면 학리 1063	1,200	450	50	497	24,384
'97. 9. 5	인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531-1	800	40	5		
'97. 9. 20	경기 안성군 일죽면 신흥리 43	1,500	100	30		
'97. 9. 23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314	200	13	305	25,201
'97. 9. 25	충북 단양군 가곡 대재리	100	1	1		
'97. 10.18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교리 158	1,479	12	3		
'97. 11.24	경기 용인시 모현면 초무리 16	560	40	25		
'97. 11.28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4리 516	500	400	300		
'97. 12.19	경기 아천시 부발읍 신원리 227	18,000	3	3	30	1,262
합 계	20개 농가		1912	799	1,337	68,177



## □ '98년 발생현황

발 생 년월일	지역(시도, 시군, 읍면)	사육 두수	발생 두수	폐사 두수	살처분 두수	보상금 (단위:천원)
'98. 2. 28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443-2	500	450	280	170	8,792
'98. 3. 5	경기 양주군 운현면 도하리 20-2	700	80	10		
'98. 3. 5	경기 양주군 남면 상수리 225	2,000	150	100		
'98. 7. 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633	43	22	21	22	819
'98. 11.18	제주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1065	1,313	13	8	1,305	138,687
'98. 12. 8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5리 1128	862	270	90	737	40,056
합 계	6개 농가		985	509	2,234	188,354

## □ '99.8월 현재 발생현황

발 생 년월일	지역(시도, 시군, 읍면)	사육 두수	발생 두수	폐사 두수	살처분두 수	보상금 (단위:천원)
'99. 2. 8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2리 456-2	1,000	440	40	400	43,843
'99. 2.24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212	713	256	56	657	67,680
'99. 3. 2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유운1리 325	900	635	229	406	52,096 (582두)
'99. 3. 2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유운1리 345-1	800	222	29	193	1,054 (17두)
'99. 8. 2 *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2리 481-2	1,013	130	50	1,127	153,059
합 계	5개 농가		1,683	404	2,783	317,732

\*살처분 일자의 지연으로 그동안 태어난 자돈까지 살처분 함.

## &lt; 참고자료 5 &gt;

## □ 국내 돼지사육 규모별 가구 수

사육 규모	가구 수 (%)	누 계 (%)
10 두 이하	10,568 (39.1)	
10-50 두	3,689 (13.7)	14,257 (52.8)
50-500 두	8,129 (30.1)	22,386 (82.9)
500- 1,000 두	2,684 (9.9)	25,072 (92.7)
1,000-5,000 두	1,843 (6.8)	26,915 (99.7)
5,000 두 이상	89 (0.3)	27,004 (100)

※ '98. 12 월간양돈 자료

## □ 국내 돼지사육 규모별 두 수

사육규모	두 수 (%)	누 계 (%)
10 두 이하	25,263 (0.3)	
10-50 두	86,274 (1.1)	111,537 (1.5)
50-500 두	1,627,288 (21.6)	1,738,825 (23.1)
500- 1,000 두	1,897,396 (25.2)	3,636,221 (48.2)
1,000-5,000 두	3,019,803 (41.1)	6,736,024 (89.3)
5,000 두 이상	807,753 (10.7)	7,543,777 (100)

※ '98. 12 월간양돈 자료

## □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현황

년 도	냉동돈육 (단위: ton)	냉장돈육 (단위: ton)	총 수출량 (단위: ton)	총 수출금액 (단위: 천\$)
1992	7,664	829	8,493	43,848(≒51,302 백\$)
1993	9,898	1,427	11,325	63,304(≒74,066 백\$)
1994	8,944	2,185	11,129	65,271(≒76,367 백\$)
1995	11,162	3,107	14,269	89,136(≒104,289 백\$)
1996	30,220	4,310	34,530	186,572(≒233,671 백\$)
1997	38,919	10,453	49,372	235,860(≒290,428 백\$)
1998	65,593	17,776	83,369	294,941(≒365,603 백\$)

※ 자료출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월간양돈('99.2 ; 수출금액) 자료

### 3. 근절대책 추진 관련 세부 추진사업

#### 가. 양돈농가 및 돼지사육 통계 정밀 조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사육현황 파악이 중요하였다. 양돈농가수 및 사육두수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예방약 공급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지도의 인력 조정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99년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100% 달성을 위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지역담당관제」를 편성·운영하면서 전국의 양돈농가 및 돼지사육 통계에 대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80권역의 각 지역담당관의 현지 농가 방문 조사자료와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시·군 소규모 농가 명단을 종합한 결과 전국 22,159호에서 8,211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시·도별 사육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이 돼지콜레라 방역용 통계는 농림부 공식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농림부 통계관실과 약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였다.

〈표 5-6〉 시도별 양돈농가 현황

(조사기간 : '99.3.~8월)

도	실제 조사통계				농림부 통계 (농가수 : '99.6월)
	농가수	사육두수	농가비율(%)	사육비율(%)	
서울특별시	23	1658	0.10	0.02	18
부산광역시	148	32,777	0.67	0.40	153
대구광역시	129	38,140	0.58	0.46	136
인천광역시	578	88,729	2.61	1.08	626
광주광역시	65	11,245	0.29	0.14	51
대전광역시	20	5,636	0.09	0.07	36
울산광역시	113	49,663	0.51	0.60	113
경기도	2,687	1,944,438	12.13	23.68	3,345
강원도	810	372,323	3.66	4.53	865
충청북도	822	441,080	3.71	5.37	714
충청남도	3,792	1,408,302	17.11	17.15	4,624
전라북도	3,349	793,121	15.11	9.66	3,260
전라남도	3,747	740,775	16.91	9.02	4,628
경상북도	2,237	1,030,190	10.10	12.55	2,197
경상남도	3,305	898,072	14.91	10.94	3,290
제주도	334	355,338	1.51	4.33	325
계	22,159	8,211,487	100	100	24,381

이 통계조사 항목에는 축주의 인적사항, 사육현황, 사료구입, 진료 및약품구입, 인공수정, 분뇨처리 및 반출, 돼지 구입 및 출하, 질병발생 사항, 백신접종 사항, 기타 농장의 경영사항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엑셀화일로 정리하여 전국 가축위생시험소 및 도, 시·군의 축산담당부서 등에 배부하여 효과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자료는 해당 시·군에서 격무를 무릅쓰고 정기적으로 보완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근절대책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방역 족보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오제스키병, 구제역 등 돼지전염병 방역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표 5-7〉 일령별 돼지 사육 현황('00. 12월)

구분		2개월 미만	2~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계	암컷	숫컷
계	8,214,369	2,412,920	4,909,636	891,813	850,211	41,602
서울	2,034	646	1,166	222	201	21
부산	39,535	10,742	24,175	4,618	4,257	361
대구	38,824	11,053	23,692	4,079	3,766	313
인천	100,367	28,330	60,991	11,046	10,573	473
관주	11,266	3,412	6,510	1,344	1,248	96
대전	5,821	1,069	3,055	1,697	1,567	130
울산	37,325	10,212	23,030	4,083	3,825	258
경기	1,967,773	558,687	1,208,670	200,416	192,864	7,552
강원	357,998	98,731	219,094	40,173	38,132	2,041
충북	392,261	117,772	228,264	46,225	44,622	1,603
충남	1,320,661	395,174	781,515	143,972	137,899	6,073
전북	889,920	248,820	542,658	98,442	93,901	4,541
전남	780,375	246,190	444,450	89,735	84,480	5,255
경북	986,102	292,274	585,180	108,648	102,905	5,743
경남	948,462	286,776	560,588	101,098	95,982	5,116
제주	335,645	103,032	196,598	36,015	33,989	2,026

## 나. 전국 양돈농가 예방접종실시 의무화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은 '96.6월 수립된 이후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병원성대장균 O157사건, 리스테리아 오염건 등 대외관계의 빈번한 현안사항 발생과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구조조정에 따른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의 통합으로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하였고, 근절대책관련 방역예산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부루세라 백신 사건 등으로 '98년까지 사실상 근절대책의 후속조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돼지콜레라를 근절하기 위한 기본전략은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개체별 방어능력을 높이고, 설사 감염축이 있다고 치더라도 전파를 제한시켜 그 개체가 죽거나 도태시킴으로써 자연적으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사멸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방접종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접종시기, 접종주체, 접종사실의 증명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양돈농가와 관계전문가들의 논의와 공청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라고만 했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양돈농가에서는 농가 나름대로 예방접종시기(일령)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예방접종은 열심히 하였지만 효과가 적은 비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가 적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농림부 고시 제1998-59호 : '98.9.5.) 고시를 제정·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돼지콜레라 근절의 세부규정이 처음 마련되었으며, 양돈농가에게 예방접종 의무화가 부과되었다.

## 다. 지역담당관제 실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리

### □ 지역담당관제 실시

국내 돼지콜레라 발생은 1단계 근절대책(발생최소화, '96.7.~'98.6월) 추진으로 발생건수는 줄었으나, 일부 양돈농가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소홀 또는 기피로 항체 양성율은 여전히 60~70%에 머물고 있었고, 무절제한 돼지 구입과 농장 출입시 소독 등 차단방역 또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농장 단위 방역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양돈농가에 지역담당관을 지정하여 특별 방역관리에 들어갔다.

'99년의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점검 지역담당제는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의 16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돼지 사육농가가 많은 시·군은 2-3개 구역으로 구분, 전국을 180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1개구역당 사육농가수는 150농가 내외가 되도록 하였다.

1개 구역당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협, 양돈협회(또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양돈분과위) 관계자 각 1명씩 3명이 1조로 편성되어 1개 양돈농가에 최소 년 2회이상 방문하여 돼지콜레라 근절 필요성 등 홍보와 함께 예방접종 여부를 점검하고 기타 질병예찰, 방역기술 등 방역지도 업무를 수행하였다.

〈표 5-8〉 시도별 지역담당제 편성현황

구분	시·군수	담당구역수	비고
합계	162	180	
경기	33	25	
강원	18	9	
충북	12	6	
충남	17	28	
전북	14	28	
전남	23	33	
경북	24	19	
경남	21	32	

〈표 5-9〉 '99년도 지역담당제 추진실적

구분	1차 점검	2차 점검
점검기간	3-8월	10-12월
점검방법	-전 시·군 양돈농가 개별방문 및 교육실시	-특별관리지역 : 전 농가 개별 방문 및 임상검사 실시 -일반관리지역 : 농가 소집교육
점검대상 시·군 및 점검인원	-전국 163개 시·군 -검역원 직원 : 180명	-전국 140개 시·군(농가수 20개 미만인 시·군 제외) · 특별관리지역 : 20개 시·군 · 일반관리지역 : 120개 시·군 -검역원 직원 : 171명 · 특별관리지역 : 107명 · 일반관리지역 : 64명
점검결과	-돼지콜레라 근절인지도 : 상 81.5%, 중 12.7%, 하 5.8%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횟수 : 2회접종 61.1%, 1회접종 25.1%, 미접종 13.8%	-돼지콜레라 근절인지도 : 상 96.6%, 중 2.7%, 하 0.7%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횟수 : 2회접종 85.9%, 1회접종 11.4%, 미접종 2.7%
양돈농가 현황 파악	-22,159농가	-22,612농가 (제주 : 334농가, 울릉 : 5농가 제외)

'99년 상반기에 지역담당관이 전국 양돈농가에 대해 개별방문하여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에 따른 교육·홍보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돼지콜레라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방역관리를 시작하였다. 과거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및 양돈밀집지역 20개소를 선정하여 개별 농가 방문 및 임상검사 등 밀착 방역관리를 실시하였다.

'00년에는 140개지역에 167명이 배치되었으며 특별관리지역 20개소에 105명, 일반관리지역 120개소에 62명이 배치되어 지역별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의 지속적인 교육·점검과 함께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검사 및 방역관리로 청정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는 양돈농가 개별방문을 통한 임상검사와 함께 위축돈, 이상돈에 대한 조기검출로 질병발생을 조기에 방지토록 했으며, 일반관리지역에 대하여는 농가 소집교육을 실시토록 하였다.

그러나 '00년 3.24일 66년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인해 모든 역량은 구제역 긴급방역에 집중되었다. 또한 각 지역담당관의 농가 방문으로 인한 구제역 전파 우려로 '00년 전반기는 지역담당관 운영이 잠정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구제역 방역에 치우치는 동안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이 밀려나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속에 돼지콜레라 근절사업단내 일부 인원을 동원하여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각 도별 방역취약 시·군에 대해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추진상황 및 방역취약농가(항체양성을 80%미만)에 개별 방문하여 중점 홍보·지도를 실시하였다

〈표 5-10〉 '00년도 지역담당제 추진실적

구분	1차 점검	2차 점검
점검기간	6.7-6.30	10.1-11.11
점검방법	-시·도, 시·군의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방역취약농가(항체양성을 80%미만) 개별 방문, 중점 교육·점검	-시·도, 시·군의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방역취약농가(항체양성을 80%미만) 개별 방문, 중점 교육·점검
점검대상 시·군 및 점검인원	-[1회] 점검대상 140개지역중 79개 지역 완료(검역원 인력 106명) ·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중단 -[2회] 5개도, 24개 시·군 (구제역 발생 시·도, 시·군 제외)  -검역원 직원 : 16명	-29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등 중점관리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점검시·군 및 구제역 점검대상 시·군 제외)  -검역원 직원 : 13명
점검결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추진이 미흡	-예방접종 중지 및 청정화 달성을 위한 일선 지자체의 준비 소홀

'00년은 전국 항체양성율이 평균 96.1%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지속적인 발생억제를 위해서는 지역차별화 집중관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01년은 구제역 사후관리와 돼지콜레라 근절을 동시에 병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감안하여 전국을 특별관리지역, 방역취약지역, 항체고역가 지역으로 분류한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방역관리에 들어갔다. 또한 '02년에는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특별 관리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지 추진상황 및 소독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리

〈표 5-11〉 특별관리지역 현황

구분	특별관리지역 현황	비 고
경기도(5개 시·군)	파주, 양주, 포천, 연천, 용인	
강원도(2개 시·군)	홍천, 철원	
충청북도(5개 시·군)	보은, 청원, 당진, 홍성, 논산	
전라북도(2개 시·군)	익산, 김제	
전라남도(2개 시·군)	순천, 나주	
경상북도(2개 시·군)	영천, 칠곡	
경상남도(2개 시·군)	김해, 하동	

- 지정기준 : 과거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및 양돈밀집지역
- 관리방법 : 지역담당관제 운용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개별 양돈농가를 방문하여 임상 검사 및 위축돈 등 이상축에 대한 정밀검사 및 중점 교육·홍보 실시
  - ※ 일반관리지역은 양돈농가 집합교육으로 대체
- 특별관리지역을 포함한 중점관리지역을 선정 집중 방역관리
  - '00년 : 방역취약시군(향체양성율이 2월이상 낮은 시·군)
  - '01년 : 방역취약시군(향체검사결과 80%미만 양돈농가수가 월에 2개 이상인 시·군), 향체고역가시군('00년 고역가로 '01년 재검한 양돈농가수가 2개 이상인 시·군)

라. 돼지콜레라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

1)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면역형성률)

□ 돼지콜레라 면역형성률 추이

○ 면역형성률 : ('98) 76.1% → ('99) 91.4% → ('00) 96.1% → ('01.4) 95.9%

〈표 5-12〉 연도별·월별 비육돈 항체양성률(총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평균)	
검사 두수	'99	1,849	8,533	22,783	40,628	60,620	74,717	39,045	53,948	74,408	52,887	73,395	54,816	557,629
	'00	14,763	34,324	53,319	30,802	40,790	54,005	44,595	50,720	49,592	55,202	41,844	71,782	541,738
	'01	12,799	18,656	22,160	20,253	22,228	19,963	19,734	22,466	22,370	24,166	19,409	8,373	232,577
양 성 률 (%)	'99	74.6	75.7	83.0	81.5	86.9	89.7	93.3	95.7	95.4	94.7	93.7	95.4	91.4
	'00	95.8	95.8	95.4	96.1	96.5	96.5	96.2	96.2	96.0	96.6	96.4	95.4	96.1
	'01	96.7	96.5	95.0	95.7	96.4	97.0	96.7	97.2	96.8	96.5	97.3	91.8	96.4

※ 2000년 제주도, 2001년 제주도 및 강원도 검사실적 제외



□ 양돈농가 사육돈 및 도축장 출하돈의 항체검사와 과태료 부과

정부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향상을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여 예방접종 미 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력하게 시행기로 하였다. 이에 농림부에서 '99. 3. 2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실시명령” 고시를 개정하여 돼지콜레라 미접종축의 도축제한 및 미접종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는 등 돼지콜레라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경우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의 예방접종 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었으므로 각 시·도에서는 도축장 및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강화하면서 항체양성을 80%미만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예방접종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5-13〉 연도별 과태료 처분 실적

시/도별	1999년		2000년		2001년		
	과태료처분 농가수	경고처리	과태료처분 농가수	경고처리	과태료 처분	과태료 절차중	미처분
서울	-	-	-	-	0	0	0
부산	1	0	0	0	0	0	0
대구	3	0	0	0	0	0	0
인천	6	0	2	0	0	0	0
광주	0	0	1	0	1	0	0
대전	0	0	0	0	0	0	0
울산	2	0	1	0	0	0	3
경기	57	0	14	0	41	30	20
강원	6	12	1	0	0	0	0
충북	12	0	2	0	2	3	14
충남	11	0	14	0	19	71	0
전북	5	0	4	0	6	14	0
전남	10	2	3	0	1	2	2
경북	34	0	4	0	2	0	0
경남	34	0	7	0	4	0	4
전체	181	14	53	0	76	120	43

〈표 5-14〉 '00년, '01년 11월(예방접종 중지전)사도별 비육돈 향체검사 결과 양성율

시/도	2000년			2001년 11월(예방접종 중지전)		
	검사두수	양성두수	양성율(%)	검사두수	양성두수	양성율(%)
서울	152	151	99.3	313	303	96.8
부산	3,196	3,074	96.2	1,390	1,329	95.6
대구	4,379	4,186	95.6	2,207	2,172	98.4
인천	9,429	9,069	96.2	3,092	2,943	95.2
광주	1,226	1,184	96.6	149	137	91.9
대전	522	493	94.4	389	369	94.9
울산	2,185	2,132	97.6	935	896	95.8
경기	82,951	79,856	96.3	47,453	45,459	95.8
강원	21,908	20,913	95.5	-	-	-
충북	22,022	20,929	95.0	11,888	11,523	96.9
충남	67,786	64,776	95.6	34,605	33,260	96.1
전북	74,671	71,662	96.0	20,286	19,592	96.6
전남	101,470	97,442	96.0	24,317	23,683	97.4
경북	69,351	67,029	96.7	45,986	44,406	96.6
경남	80,490	77,535	96.3	31,194	30,346	97.3
계	541,738	520,431	96.1	224,204	216,418	96.5
제주	10,043	8	0.1	7,814	4	0.1
강원	-	-	-	11,187	5,044	45.1

※ 농장 주소지 기준임

〈표 5-15〉 '00년 농가수 및 사육두수와 혈청검사 실적 비교

시/도	농가수	사육두수	혈청검사실적 ('00)	
			농가수(%)	검사두수(%)
서울	15	2,034	16(106.7)	152(7.5)
부산	96	39,535	114(118.8)	3,196(8.1)
대구	134	38,824	150(111.9)	4,379(11.3)
인천	550	100,367	423(77.0)	9,429(9.4)
광주	58	11,266	49(84.5)	1,226(10.9)
대전	50	5,821	23(46.0)	522(9.0)
울산	97	37,325	86(88.7)	2,185(5.9)
경기	2,985	1,967,773	3,057(102.4)	82,951(4.2)
강원	873	357,998	801(91.8)	21,908(6.1)
충북	751	392,261	766(102.0)	22,022(5.6)
충남	4,193	1,320,661	2,485(59.3)	67,786(5.1)
전북	3,151	889,920	2,115(67.1)	74,671(8.4)
전남	5,127	780,375	2,546(49.7)	101,470(13.0)
경북	2,108	986,102	1,876(89.0)	69,351(7.0)
경남	3,363	948,462	2,233(66.4)	80,490(8.5)
계	23,551	7,878,724	16,740(71.1)	541,738(6.9)

※ 비교기준 : '00. 12월 가축통계, 검사실적의 농가수는 1회이상 검사한 농가수임, 제주도 제외

〈표 5-16〉 2000년, 2001년 특별관리지역 항체 양성율

구분		2000년	2001년
경기	양주군	96.1	97.2
	연천군	97.5	98.3
	용인시	97.1	96.4
	파주시	94.3	96.6
	포천군	96.3	94.2
충북	보은군	98.7	96.4
	청원군	94.0	96.8
충남	논산시	95.6	97.0
	당진군	95.6	96.1
	홍성군	93.4	94.1
전북	김제시	97.3	96.3
	익산시	97.0	96.6
전남	나주시	96.3	97.8
	순천시	96.8	96.9
경북	영천시	97.1	97.6
	칠곡군	97.3	97.9
경남	김해시	96.6	97.4
	하동군	96.5	95.3
누계	검사농가수	13,227	6,067
	검사두수	157,458	60,030
	양성두수	151,458	57,924
	양성률(%)	96.2	96.5
강원	철원군	95.8	49.5
	홍천군	91.4	46.4

〈표 5-17〉 연도별 항원검사 현황

년도	검사농가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비고
1999	2,313	27,739	15	'99.3. 경기 용인(4농가, 10두) '99.8. 경기 용인(1농가, 5두)
2000	4,041	31,650	0	
2001	3,409	44,825	0	

※ 제주도, 강원도 실적포함

〈표 5-18〉 2000년, 2001년 시도별 항원검사 내역

시/도	2000년	2001년	검사결과
서울	170	243	전두수 음성
부산	317	285	"
대구	471	238	"
인천	608	513	"
광주	246	323	"
대전	407	154	"
울산	12	99	"
경기	5,230	9,541	"
강원	1,752	2,688	"
충북	1,233	2,289	"
충남	4,200	6,196	"
전북	3,531	3,068	"
전남	2,229	2,888	"
경북	2,738	5,989	"
경남	2,376	3,552	"
제주	6,130	6,759	"
계	31,650	44,825	"

〈표 5-19〉 2000년 농가수 및 사육두수와 항원검사 실적 비교

시/도	농가수	사육두수	항원검사 실적 ('00)	
			농가수(%)	검사두수(%)
서울	15	2,034	16(106.7)	170(8.4)
부산	96	39,535	27(28.1)	317(0.8)
대구	134	38,824	73(54.5)	471(1.2)
인천	550	100,367	130(23.6)	608(0.6)
광주	58	11,266	18(31.0)	246(2.2)
대전	50	5,821	21(42.0)	407(7.0)
울산	97	37,325	3(3.1)	12(0.03)
경기	2,985	1,967,773	739(24.8)	5,230(0.3)
강원	873	357,998	189(21.6)	1,752(0.5)
충북	751	392,261	162(21.6)	1,233(0.3)
충남	4,193	1,320,661	566(13.5)	4,200(0.3)
전북	3,151	889,920	462(14.7)	3,531(0.4)
전남	5,127	780,375	339(6.6)	2,229(0.3)
경북	2,108	986,102	150(7.1)	2,738(0.3)
경남	3,363	948,462	348(10.3)	2,376(0.3)
계	23,551	7,878,724	3,243(13.8)	25,520(0.3)

※ 비교기준 : '00. 12월 가축통계, 검사실적의 농가수는 1회이상 검사한 농가수임, 제주도 제외

## □ 사육멧돼지 및 흑돼지, 야생멧돼지 항체 및 항원검사

## ○ 항체검사

〈표 5-20〉 연도별 항체검사 결과(면역형성을)

구분	'99	'00	'01
사육멧돼지	70.4%	90.4%	95.4%
사육흑돼지	83.5%	91.4%	97.8%
야생멧돼지	0.0%	0.0%	0.0%

〈표 5-21〉 '99~ '01년 시도별 항체검사 양성율(사육멧돼지)

시/도	'99		'00		'01	
	검사두수	양성두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서울	-	-	6	6(100.0)	-	-
부산	17	12(70.6)	3	2(66.7)	-	-
대구	4	4(100.0)	1	0(0.0)	-	-
인천	-	-	-	-	-	-
광주	10	5(50.0)	-	-	-	-
대전	-	-	-	-	5	5(100)
울산	31	12(38.7)	-	-	-	-
경기	85	65(76.5)	15	15(100.0)	14	13(93.3)
강원	155	125(80.6)	-	-	11	11(100)
충북	88	61(69.3)	87	80(92.0)	26	24(93.3)
충남	-	-	3	2(66.7)	-	-
전북	200	141(70.5)	7	7(100.0)	-	-
전남	107	58(54.2)	-	-	19	18(95.8)
경북	157	100(63.7)	285	258(90.5)	141	133(92.5)
경남	201	160(79.6)	11	8(72.7)	62	61(99.4)
제주	-	-	-	-	-	-
계	1,055	743(70.4)	418	378(90.4)	278	265(95.4)

〈표 5-22〉 '99 ~ '01년 시·도별 항체검사 양성율(사육흑돼지)

시/도	'99		'00		'01	
	검사두수	양성두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서울	-	-	10	10(100.0)	-	-
부산	-	-	-	-	15	15(100.0)
대구	4	4(100.0)	-	-	-	-
인천	10	6(60.0)	-	-	-	-
광주	-	-	-	-	-	-
대전	-	-	-	-	31	31(100)
울산	-	-	-	-	-	-
경기	42	35(83.3)	58	55(94.8)	98	91(92.8)
강원	131	100(76.3)	-	-	-	-
충북	52	48(92.3)	331	290(87.6)	79	72(93.1)
충남	58	33(56.9)	-	-	16	15(97.8)
전북	189	163(86.2)	-	-	-	-
전남	103	94(91.3)	-	-	373	371(99.8)
경북	111	86(77.5)	198	187(94.4)	146	143(95.8)
경남	544	470(86.4)	43	43(100.0)	240	238(99.6)
제주	-	-	-	-	-	-
계	1,244	1,039(83.5)	640	585(91.4)	998	976(97.8)

〈표 5-23〉 '99 ~ '01년 시도별 항체검사 양성율(야생멧돼지)

시/도	'99		'00		'01	
	검사두수	양성두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서울	-	-	-	-	-	-
부산	-	-	-	-	-	-
대구	-	-	-	-	-	-
인천	-	-	8	0(0.0)	-	-
광주	-	-	-	-	-	-
대전	-	-	-	-	-	-
울산	-	-	-	-	-	-
경기	-	-	4	0(0.0)	-	-
강원	6	0(0.0)	8	0(0.0)	1	0(0.0)
충북	16	0(0.0)	2	0(0.0)	-	-
충남	-	-	-	-	-	-
전북	2	0(0.0)	19	0(0.0)	11	0(0.0)
전남	-	-	14	0(0.0)	34	0(0.0)
경북	2	0(0.0)	13	0(0.0)	-	-
경남	2	0(0.0)	3	0(0.0)	11	0(0.0)
제주	-	-	-	-	-	-
계	28	0(0.0)	71	0(0.0)	58	0(0.0)

〈표 5-24〉 연도별/사육멧돼지, 흑돼지 및 야생멧돼지 항원검사 현황

구분	'99		'00		'01		계		검사결과
	검사 농가수	검사 두수	검사 농가수	검사 두수	검사 농가수	검사 두수	검사 농가수	검사 두수	
사육멧돼지	155	731	32	62	-	-	187	793	전두수음성
사육흑돼지	161	828	73	288	9	35	234	1,151	"
야생멧돼지	-	28	-	71	-	58	-	157	"

※ 비교기준 : 농가수 및 사육두수는 00년 조사자료, 검사실적의 농가수는 1회이상 농가수임, 제주도 제외.

### 마.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역학조사('99년 경기도 용인 발생)

'99.2.2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2개 양돈장에서 병성감정 의뢰된 가검물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자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경기도에서는 즉각 이동제한, 살처분, 소독 등과 함께 인근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와 예방접종 등 긴급방역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였다.

역학조사 결과 마성농장에 자돈을 분양한 삼죽영농조합에서 분양한 돼지를 입식한 2개 농장(경기 용인 포곡면 유운리 소재)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확인되었다.('99.3.2.)

이에 농림부에서는 경기도와 검역원 합동으로 “용인지역 돼지콜레라 임시 특별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게하고, 용인지역 전 양돈농가(370농가)에 대해 특별점검반(10개반)을 편성하여 '99.3.8~3.13(6일간)동안 전 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정밀검사, 예방접종 및 실시상황 점검 등 특별방역활동을 펼친 결과 돼지콜레라 확산 및 추가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99.8월에 경기도 용인에서 또다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크게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 1) '99년 용인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사항

〈표 5-25〉 용인지역 발생상황

성명 (농장명)	주 소	발생일 (진단일)	사육 규모	발병 두수	폐사 두수	백신접종 여부
조성삼 (마성농장)	경기 용인시 포곡면 신원2리 465-2	99.2.26	1,000	400	40	불확실
정용현 (준원농장)	경기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212	99.2.26	713	200	56	불확실
이영상	경기 용인시 포곡면 유운1리 325	99.3.2	500	415	265	알수없음
정명훈	경기 용인시 포곡면 유운1리 345-2	99.3.2	750	100	50	알수없음
김용기	경기 용인시 포곡면 신원2리 481-2	99.8.2	913	130	50	

※ 용인시 양돈현황 : 377농가, 251,578('98.12월말 기준)

## 2) 돼지콜레라 발생농장별 역학조사 내용

## 〈 준원농장(정용현) 〉

## □ 발생농장 현황

농장명	축주명	주소	사육 두수	발생두수		발병일	예방 접종	비 고
				이환 두수	폐사 두수			
준원농장	정용현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348-1	713 (비육돈)	200	56	'99. 2. 8	불확실	비 육 돈 위탁사육

## ※ 위탁 사육인

- 축주 : 유창주(울곡농장), 주소 : 안성 삼죽 울곡 산 16-1

## □ 농장환경

- 주거지와 떨어져 있고 지방도와 인접한곳에 위치
- 돈사내 환기불량
- 인접 양돈농가 : 1km 이내 3개농가 5,000두
- 농장주위 수시 소독실시

## □ 발생 현황

- 2돈사 : 현재 빈돈사
  - '98.11.13일 700두(27.57kg) 입식
  - '99. 1. 8일경부터 위축돈 발생
  - '99. 1.25일경 : 고열, 변비, 설사, 호흡곤란 등의 임상 증상을 수반
  - '99. 2. 9일까지 폐사 87두 발생하여 매몰
  - 613두 출하(규격돈 385두, 위축돈 228두 : 대한인티, 동구축산
  - '99.2.10일 축산위생연구소에 가검물의뢰 : 파스류렐라성 폐렴진단(콜레라음성)
- 1돈사 : 발생돈사
  - '99. 1. 19일 713두 (34.85kg)입식
  - '99. 2. 8일 변비, 설사, 호흡곤란, 후구마비, 흥반점 등 5두 발견
  - '99. 2. 24일 환돈 2두 검역원 병리진단과에 의뢰
  - '99. 2. 26일 돼지콜레라 진단(수의과학검역원)



### □ 긴급방역 실시

- 차량출입통제 및 가축 이동제한
- 분뇨, 사료 소각 및 매몰
- 농장주변, 축사입구 생석회 도포(연구소 지원)
- 축사내외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 실시(용인시, 연구소 지원)
- 발생농장 반경 2km 인근농장의 백신실시여부 및 추가백신 홍보
- 발생농장 반경 2km 인근 수출 농장의 수출돈 내수로 전환지시
- 발생돈 및 이환의심돈에 대한 살처분 실시 예정
- 축산위생연구소, 수의과학검역원, 용인시청 합동조사

〈표 5-26〉 위탁 농장 조사('99.2.26일)

농장명	축주명	주 소	사육두수				예방 접종	비고
			계	웅돈	모·후보돈	비육·자돈		
울곡	유창주	안성시 삼죽면 울곡리 산 16-1	5,448	9	839	4,600	1,2차 접종	

- 2개 위탁농장 관리
  - 정용현(준원)
    - '99.1.19. 713두(34.85kg) 90일령 입식(콜레라발생)
  - 조남철 : 백암면 근삼리 817
    - '98.12.16. 579두(34.84kg) 94일령 입식, 상태양호, '99.3월초 출하 예정
- 조사내용
  - 백신 접종(1, 2차)후 위탁농장 출하주장(백신접종기록대장 없음)
  - 분양과 동일 연령 추후 혈청검사 예정

### 〈 발생농장(준원마성농장) 관련 농장 역학조사 )

#### □ 조사 대상농장

- 울곡농장
  - '99.2.26일 발생농장인 용인시 백암면 소재 준원농장(정용현)에 '99.1.19일 713두(34.85kg) 입식
- 삼죽영농조합
  - '99.2.26일 발생농장인 용인시 포곡면 소재 마성농장(조성삼)에 '98.12.5일 200두(14kg)입식

## □ 역학조사 내용

### ○ 울곡농장

- 주소 및 축주 : 안성군 삼죽면 울곡리 산1601(유 창주)
- 사육현황

구 분	웅 돈	모 · 후보돈	비육 · 자돈	계
두수	9	839	4,600	5,448

- 자돈분양 사항
  - 용인시 백암면 근삼리 817번지 소재 조남철 농가에 '98.12.16일 579두(38.84kg : 94일령)를 입식
- 혈액채취
  - 준원농장 발생돼지 일령과 비슷한 돈군 : 41두('98. 10월초 분만)
  - 준원농장 발생돼지보다 조금 지난 출생돈군 : 24두('98. 12. 20일경 분만)
- 기타 조사내용
  - 사양관리 일지에는 백신 접종사항 등의 기록이 미흡하였음
  - 농장 대표자(유 장추)는 농장관리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농장관리인은 '99. 2.8일부터 근무하였다 하므로 질병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됨

### ○ 삼죽영농조합

- 주소 및 축주 : 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788-1번지(한 흥식)
- 사육현황

구 분	웅 돈	모 돈	후보돈	자 돈	계
두수	22	530	70	1,500	2,122

- 혈액채취 : 20두('99. 1월중순 분만)
- 자돈분양 사항
  - 조성삼(마성농장) : '98. 12. 5일 200두 입식('99. 2월초 발병)
  - 이영상 : '98. 12. 28일 100두 입식('99. 1. 20일 모두 발병)
  - 정명훈 : '98. 1. 28일 200두 입식('99. 2. 20일경 발병)
  - 이정찬(안성군 보계면) : '98. 12. 15일 300두 입식,
  - 김학균(안성군 일죽면 장암리) : '98. 11. 23일 100두 입식  
'99. 1. 4일 100두 입식  
'99. 2. 2일 80두 입식

※ 수송방법은 삼죽영농조합 차량 1대를 사용,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차량 사용

## □ 조치사항

- 울곡농장에서 자돈을 분양한 조남칠 농가, 삼죽영농조합에서 분양하였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2개 농가(이정찬, 김학균)에 대하여 추가 추적 역학조사 및 혈청검사용 혈액채취 지시
  - 경기도 축산위생 연구소 남부 축산위생팀에서는 직원들의 살처분 등 오염지역 왕래로 동농장 방문시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수의나 타지소 직원을 동원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 김용기 발생농장 〉

- 주소 및 축주 :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신원2리 481-2, 김용기

## □ 발생현황

축종	사육두수	발생두수	폐사두수	비고
돼지	913	130	50	모든 100

※ '99.7.20일경 이유자돈(30~35일령)에서 이상증상 발견

## □ 사육형태

- 축사 ; 350평 규모의 6개동(모돈사 1, 분만사 1, 자돈사 1, 비육돈사 3)으로 개방형 축사임
- 사료 : 선진사료(포대 및 벌크)
- 음수 : 지하수를 통한 급수
- 동물약품거래 : 용인시 소재 용가축약품(바이엘 대리점), 시장가축약품

## □ 농장 방역관리

- 농장주 부부가 관리
- 외부 도로와 접해있고, 울타리 및 농장입구 차량소독조 미설치
- 바이엘에서 제조한 백신을 구입하여 축주가 직접 주사
  - 백신접종대장 비치 및 접종사항 기록 정리

## □ 역학조사내용

- 주변환경
  - 20 - 30m 범위내의 바로 인접 지역에 3개 농가가 있음
    - 이중 1개 농가는 '99.2.26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바 있는 조성삼씨의 마성농장임
  - 3Km 범위내(오염지역) : 160농가, 96,000여두 사육
  - 3 ~ 10Km 범위내(경계지역) ; 30농가, 13,000여두 사육

## ○ 농장 이전사항

- '98. 1월경 포곡면 유우리 소재 조봉희 농장을 임대하여 돼지 사육
- '99. 4월말경 사육하는 돼지를 가지고 현위치(포곡면 신원2리 481-2)의 박재규(신원2리 이장) 농장을 임대하여 이전
  - 이전사유 : 돼지 시세가 좋은 점을 감안 당초 사육지의 축사 주인인 조봉희가 직접 돼지를 사육하기 위하여 김용기를 내보냈다 함.

## ○ 돼지구입 및 출하사항

- '98.1월 용인시 구성면 중리 어정마을의 황씨(이름 불상)로부터 모돈 180두 구입
- '99.7월 초순경 포곡면 유우리 한대동 농장에서 모돈 5두, 옹돈 1두 구입
  - 한대동은 용인시 운학동 진위농장(김재욱)에서 11두(모돈10두, 옹돈1두)를 구입하여 김용기(6두) 및 최종옥(5두)에게 판매
- '99.5.2일경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바 있는 조성삼 농가 옆집 농장으로부터 육성돈(80Kg 정도)을 구입하여 1개월 정도 비육후 출하한 바 있음.
- 출하는 일정한 거래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간상인(포곡면 전대리 조종성, 포곡면 신원리 이진선)을 통하여 거래

## ○ 농장 출입상황

사람	출입차량			
	사료	동물약품	가축수송	분뇨
2명(축주부부)	1회/주	3회/주	5회/월	3회/월

## ○ 농장 방역관리 사항

- 예방접종 프로그램
  - 자돈 : 1차 (35-40일령), 2차(70-75일령)
  - 모돈 : 이유 1-2주전(이유시기 : 25일령)
- ※ 축주의 진술로는 25일령에 접종한 것은 그런대로 양호하다고 하고, 35-40일령에 접종한 것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함
  - ⇒ 동 내용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동 농장에서 문제시 되었던 질병은 TGE, PED로 최근에도(3-4월경) 겪었다 함.

## ○ 발생경위

- '99.7월 초순경 용가축약품 직원이 농장 방문시 호흡기 증상이 있어 치료한 바, 효과가 있었다 함
- '99.7.20일경 이유자돈(30-35일령)에서 이상증상 발견
  - 절식, 설사, 변비, 원기소실, 몇 마리씩 구석에 포개어 있음 등
  - 일반 대장균성 설사로 추정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었다 함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1차 시기로 질병과 무관하게 예방접종
- '99.7.28일 동물약품 거래 수의사에게 질병상담 결과 돼지콜레라로 의심
- '99.7.29일 오후 축주가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및 용인시청에 유선 신고
  - 동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긴급 방역 현지 출장하여 현장조사, 가검물 채취 및 부검후 일부 환돈 검역원에 정밀검사 의뢰
- '99.7.29일 19:00경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역원에 가검물 검사 의뢰

## 바. 돼지콜레라 지역별 근절확인 및 선포(제주도, OIE)

### 1) 제주도

#### □ 청정화 추진개요

- 예방접종 중지 : '98.2.1.
- 청정화 선포 : '99.12.18

#### □ 청정화 추진경위

- '99까지 돼지전염병 청정화 추진목표로 근절대책 수립 : '97.3월
- 단계별 추진대책 및 실적
  - 제1단계('97) : 기초 조사
    - 돼지콜레라 및 오제스키병 항원검사 : 302호, 전 농가 항원 음성
  - 제2단계('98) : 예방접종 금지 및 확인검사
    - 타 시·도산 가축반입제한 고시('98.1.10) : 계류장에서 15일간 검사후 반입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98.2.1부터) : 예방약 판매 금지
    -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후속조치 시행으로 조기 근절
    - ※ 발생 : '98.11.23일 1개농장(북제주군 고두홍 농장), 13두(사육 1,305두)
    - 조치 : 전두수 살처분, 이동·출하금지, 인근지역 역학조사 및 교육 등
    - ※ '98 항원검사 : 246호, 전 농가 항원 음성, 돼지콜레라 항체양성을 11%
  - 제3단계('99) : 확인검사 및 청정화 선언
    - 타 시도 반출입 가축수송차량 소독 실시 의무화 : '99.5.1부터
    -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참석 청정화 계획 보고 : '99.5.17
    - 청정화를 위한 질병 모니터링 검사(제주대학교 등) : '99.9.1
    - '99 항원검사 : 334호, 전 농가 항원 음성, 돼지콜레라 항체양성을 1%

⇒ 혈청검사결과, '97부터 전두수 항원 음성이고 항체양성은 예방약 접종반응에 의한 것으로 야외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증명, 청정화를 선포('99.12.18)

## 2) 강원도

## □ 청정화 추진개요

- 예방접종 중지 : '01.1.1.
- 청정화 선포 : '01.7.1.

## □ 청정화 추진사항

## 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전

- 돼지콜레라 청정화 기본계획 수립('00.2.10)
- 돼지콜레라 예방약 공급(1,507천두)
  -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지원(19개반 57명) : 1,401농가 45천두
- 혈청검사 : 2,121농가 18천두(년 면역형성을 95.7% 유지)
- 강원도 돼지콜레라 방역추진협의회 개최('00.12.18)
  - 참석위원 : 18명(학계, 생산자단체, 축산관련업체, 행정 등)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관련 공청회 개최('00.12.21)
  - 개최결과 : 도의 청정화 계획 타당성 및 시행시기에 동의
- 돼지콜레라 일제 예방접종 실시('00.12.28-29) : 839농가 334천두

## 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이후

- 예방약 회수 및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미실시 각서 징구
- 가축질병예찰 : 예찰의무요원 201명 동원 주1회 이상 질병예찰 실시
- 타 시·도 및 중앙기관 등에 협조 요청
  - 강원도 유입돼지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비발생 확인 서류 첨부
  - 강원도 돼지 도축 출하시 예방접종증명서 미첨부하여도 도축 허용
-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 지시('01.3.7)
  - 돼지콜레라 항체검사결과 면역형성을 80%미만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이후 방역관리 상황 보고('01.5.24, 검역원)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을 위한 협의회시 그간의 추진상황 보고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도예비비 128,510천원)
  - 생활안정자금 : 26,000천원, 긴급방역비 : 102,510천원
- 혈청검사 실시
  - 항체검사 : 275농가 2,991두 검사(양성율 84.3%)
    - 면역형성을 하락추세 : 1월(99.3%) → 4월(78.7%)

- 항원검사 : 28농가 183두 검사결과 전건 음성

#### 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 고시('01.7.1)

-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관리지침 수립·시행
  - 야외바이러스 존재여부 역학조사, 혈청검사, 외부 돼지반입 양돈장 지정·특별관리, 타도산 돼지반입시 임상검사 등

### 3) 울릉군

- 1999. 12. 10. : 백신접종 중지
- 2001. 2. 1. : 청정화 선언

## 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공청회 개최

### 1) 제 1차 공청회 개최

#### □ 공청회 개요

- 일시 : '01.2.20(화), 14:00~16:00
- 장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
- 참석대상 : 양돈농가,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253명
- 회의주관 : 농림부
  - 협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공청회 진행
  - 주제발표(농림부), 지정자토론(학계·농가대표 등), 참석자 건의 등
  - 의견종합 및 결론 <김봉환 교수(좌장) 및 검역원장>
- 회의결과 요지
  - '01.3.1부터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는 구체적 재발가능성과 청정화 일정을 감안 연기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임
    - 구체적 중단일정은 정부, 생산자단체, 방역본부와 협의 확정
  - 예방접종 중단 후 재발생에 대비한 구체적 정책방안 제시 요망
    - 특히, 발생농장 등에 대한 살처분보상 이외 입식비 등 지원대책 제시

## □ 공청회 결과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보완 보고내용

- 예방접종 중단일정 조정
  - 잠정적으로 '01.10.1. 전국적 예방접종 중단 목표 추진
  - 시·도별 공청회 개최후 '01.10 이전에 단계적 접종중단 조치
- 예방접종 중단후 정부의 사후관리대책(안)제시
  - 농가지원부분은 일본의 “방역호조기금” 제도와 제주도 추진사례를 모델로 농가와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추진
  - 가칭 “방역지원기금”은 전국규모 보다 읍·면, 시·군 단위로 조성토록 하여 납부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고 모금주체는 지역의 생산자 단체중 농가 자율로 정하도록 추진
- 중단일정 조정에 따른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보완 조치
  - '01.9월말까지 예방접종 등 근절사업 지속 추진
    - 예방접종 100% 실시추진('01.9월까지 소요사업비는 기 확보)
  - 방역요원의 농장채혈(20만건) 및 농가 방역실태 점검(연 90천호)
  - 방역조치 위반농가 신고포상·소독미실시 농가처분도 지속 실시
- '01.10월 이전 접종을 중단하는 시·도에 대한 조치
  - 접종 중단후 농가공급 예방약은 시·도에서 구입, 비축관리
    - 비축관리방안은 시·도와 예방약 생산(판매)업체 협의 추진
  -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중단, 타 방역사업 전환 검토
  - 예방접종 미실시농가(중단지역은 접종농가)의 과태료 계속 처분
    - 항원·항체 검사목적의 농장채혈사업은 예방접종 중단조치와 관계없이 지속 실시
  - ※ 예방접종을 중지한 “강원도”의 방역상황을 중점 관리
  - 항원검사 확대 실시 및 예찰활동 강화로 재발가능성 관찰
  - 접종돼지와 미접종 돼지의 사육·이동·도축 등 유통단계별 감시 강화
- 일본의 돼지콜레라 방역동향 파악으로 국내 방역정책 보완
  - 예방접종 허용농가의 동향 및 관리 실태
  - 멕시코 등 돼지고기 수입상대국에 대한 위생조건 등 여건 변화



## 〈별첨〉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간 : ' 01. 2.10 ~ 2.18

□ 조사대상 : 농림부 홈페이지 이용 양돈농가(관련단체 및 공무원도 참여)

□ 조사결과 <총 설문참여자수 : 1023명>

1. 금년 3월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계획에 찬성하십니까?

답	투표수	그래프	비율
1)예	458명	<input type="text"/>	44.77%
2)아니오	559명	<input type="text"/>	54.64%

2. 찬성하지 않으신다면 예방접종 중단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투표수	그래프	비율
1)2001년 5월 1일	75명	<input type="text"/>	13.56%
2)2001년 10월 1일	134명	<input type="text"/>	24.23%
3)2002년 1월 1일 이후	253명	<input type="text"/>	45.75%
4)잘 모르겠다	91명	<input type="text"/>	16.46%

3. 예방접종 중단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투표수	그래프	비율
1) 예방접종율이 아직은 미흡해서	20명	<input type="text"/>	3.70%
2) 돼지콜레라 재발 가능성이 높아서	154명	<input type="text"/>	28.52%
3) 예방접종 중단후 사후관리 방안이 불확실해서	172명	<input type="text"/>	31.85%
4) 돼지콜레라 재발생시 정부의 농가 지원대책이 미흡해서	194명	<input type="text"/>	35.93%

## 〈별첨〉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관련 협의자료

##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관련 협의회 개최 개요

- 일시 : '01.5.24. 14:00
- 장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참석대상 : 시·도, 시·도가축방역기관, 관련단체·협회 관계관
- 협의안건
  - 예방접종 중단을 위한 시험사업 실시방안
  - 예방접종 중단 이후 사후관리 방안 등
- 협의회 결과
  -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 시험사업 실시 합의
    - 시험사업의 주체는 각 시·도에서 하되, 농장 선정 및 검사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립·시달
  - 돼지콜레라 재발생시 지원대책 수립 추진(농림부)

##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관련 협의회 자료

## I.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현황

- 돼지콜레라 예찰동향('98 ~ '01. 4)
    - '99. 8월 경기도 용인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별첨 참조)
  - 전국적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일정 조정
    - 공청회 개최 등에 의한 여론수렴,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등 현안사항을 감안 예방접종 중지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당초 '00. 10. 1 → '01. 3. 1 → '01. 10. 1)
    - ※ 2회에 걸쳐 예방접종 중지일정 조정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 근절정책에 대한 불신감 초래 및 혼란 야기
  - 지역별 청정화 추진상황
    - 제주도 : '98. 2. 1일 예방접종 중지 → '99. 12. 18일 청정화 선포
    - 경상북도 울릉군 : '99. 12. 10일 예방접종 중지 → '01. 2. 1일 청정화 선포
    - 강원도 : '01. 1. 1일 예방접종 중지 → '01. 7월 청정화 선포계획
-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현황〉
- '00. 10. 1일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 다만, 계속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도도부현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예방접종축에는 표시를 함(3월말 ; 47개현중 18개현의 646농가에서 예방접종 실시)

- 예방접종을 완전 중지하는 시점에 대하여는 일본 정부에서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
- 일본은 멕시코산 돼지고기에 대하여 예방접종 미 실시 지역에 한하여 수입허용

## II.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시까지 방역 추진계획

- '01. 9월까지 100% 예방접종 실시
  - 시·도별 일제 예방접종 실시시간을 정하여 시행
  - 시·도에서는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시·군 독려 및 수시점검
  - 검역원에서는 특별관리지역(20개지역) 등에 대한 근절대책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 혈청검사 및 항원검사 집중실시
  -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는 농장채혈 철저
    -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나 소규모 농가 등 방역 취약지역 위주로 채혈
  - 사육멧돼지 및 흑돼지, 야생멧돼지에 대한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실시
    - 검사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시·도에서는 적극 추진
  -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시·군별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를 분석활용, 시·군(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서는 읍·면별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미검사 농가 및 방역 취약지역을 파악하여 방역관리 철저(별첨 자료 참조)
- 시·도(시·군)단위 돼지콜레라 방역 추진협의회 정례적 개최
  - 관할 지역내 대학교수, 생산자 단체, 개업수의사, 민간 방역요원, 동물약품 및 사료판매 관계자, 농가대표 등으로 돼지콜레라 근절 공감대 형성 및 긴장감 유지
  -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나 예찰의무요원 등을 통한 예찰활동 강화
- 도축검사 강화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철저
  - 도축검사시 철저한 생체검사로 위축돈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료채취
  - 가축운송차량의 소독 철저 및 관리감독 강화

## III. 예방접종 중지에 대비한 방역대책

### 1. 예방접종 중지시 방역상황 변화

- 예방접종 단계에서는 예방접종에 의하여 모든 돼지가 면역항체를 보유하여 야외 바이러스에 방어능력이 있으나, 예방접종 중지 이후에 태어나는 돼지는 모체 이행항체에 의해 일정기간(40 ~ 60일) 경과 후 야외 바이러스에 방어능력이 없게됨
- 예방접종 중지 이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예방접종 가축의 도축 출하로 전체적인 면역형성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고, 면역항체를 보유하지 않은 돼지의 수가 증가할 것임
- ☞ 예방접종 중지 이후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개별 방어능력이 없으므로 폭발적인 전파에 의한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됨

2. 예방접종 중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 및 예방접종 중지방안 검토

○ 안전성 확인 방안별 장·단점 분석

구 분	장 점	단 점
전두수 일제 임상검사(6월, 8월 2회), 위축돈 도태 및 항원검사를 집중 실시하는 방안	○ 전두수에 대한 이상유무 임상관찰 ○ 위축돈 등 위험요인 근원적 제거 ○ 위축돈에 대한 항원검사 집중 실시로 아외 바이러스 존재여부 확인 가능 ○ 현행 방역체계 유지 가능	○ 일제 임상검사에 필요한 인원 동원 필요 ○ 일제 임상검사 및 위축돈 도태에 따른 예산 확보 필요
전농가(또는 일부농가)를 대상으로 모든만 예방 접종, 자돈은 예방접종 중단하는 방안	○ 전반적 아외 바이러스 존재여부 확인 가능 ○ 별도 예산 필요 없음	○ 자돈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지난 ○ 전농가(또는 일부농가) 대상으로 다소 위험성 존재 ○ 사실상 전반적인 예방접종 중지 상태로 농가 수용여부 불투명 ○ 발생시 보상금 지원
도별 일부 농가를 선정하여 농가단위 전체를 예방접종 중지하는 방안	○ 아외 바이러스 존재여부 확인 가능	○ 농가의 협조 필요 ○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분야의 평가단 필요 ○ 발생시 보상금 지원
농장별 감시 돈군을 이용한 위험도평가 실시방안	○ 아외 바이러스 존재여부 확인 가능	○ 시험사업 협조농가 필요 ○ 객관성 확보를 위한 관련분야의 평가단 필요 ○ 시험사업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 필요 ○ 발생시 보상금 지원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안)〉

- 시험 대상농장 : 1개시·군당 1000두 규모 농장 2 ~ 3개소(특별시·광역시·강원도·제주도 제외)
- 감시두수 : 1개농장당 20 ~ 30두(40일령 자돈)
  - 농장 자체생산 자돈중에서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자돈을 이용
- 시험 관리주체 : 관할 시·군
- 시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 각도별로 수의과대학, 개업수의사, 대한양돈협회·양돈연구회 등 생산자 단체, 가축위생시험소 등으로 구성(7개 평가단)
  - 운영 : 검역원에서 제시하는 입식시험 관리지침에 따라 각 도별로 평가단 운영
- 감시돈 관리 : 3개월간 정기적 임상관찰(월 2회), 항체 및 항원검사 실시(월 1회)
- 농림부에서 관련 예산을 해당도에 배정
- 평가 결과보고 : 평가단에서 입식시험 완료후 평가 결과를 해당 도를 경유하여 농림부 및 검역원에 제출
- 시험 관리지침은 검역원에서 각계 의견 수렴 및 작성하여 해당 도에 송부
- 안전성 확인후 '01. 10월 예방접종 중지방안별 검토

구 분	장 점	단 점
전면 예방접종 중지 및 희망농가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허용하는 방안(일본체계)	○ 농가 의견수렴	○ 농가의 불안심으로 다수 농가 희망시 예방접종 중지의 의미가 상실됨 ○ 예방접종 농가가 많을 경우 특별관리에 따른 행정력 투입 필요
금년 10월 이전 희망도 예방접종 중지후 전면 중지하는 방안	○ 농가의 불안심리 다소 완화	○ 사전 예방접종 중지 희망도 불투명
전면 예방접종을 중지하는 방안	○ 예방접종 중지의 명료성 ○ OIE 청정국 인정 및 수출유리	○ 예방접종 희망농가의 불안정기 소지

#### IV. 예방접종 중지 이후 사후관리 방안

##### □ 이동통제 및 원산지 관리

- 도축장 출하돈 및 농장 매매돈 등 모든 이동돼지에 대하여 검사증명서 첨부 의무화
  - 발급주체 : 출하(매매)농장 축주 또는 관리인
  - 주요내용 : 축주, 농장 소재지, 품종, 두수, 성별, 일령, 주요증상,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검사증명서 관리
    - 도축장 출하돈에 대하여는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
    - 농장 매매돈에 대하여는 입식지 농장에서 보관
- ☞ 예방접종 중지후 효과적인 이동통제가 청정화 성패를 좌우, 돼지콜레라 발생시 역추적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 자조금 등 예산확보

- 예방접종 중지후 발생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로 농가 불안심리 해소
  - 살처분 보상금 등 직접 피해액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 마련
  - 생계비, 재입식 자금 등 간접경비는 농가 자조금 조성

##### □ 예방약 비축

- 예방접종 중지후 비상시를 대비한 예방약(생독 및 유전자재조합 백신) 비축은 농림부 지침에 의거 시·도에서 예방약 제조업체와 협의 추진

##### □ 비상방역계획 수립

- 시·도에서는 예방접종 중지후 발생시를 대비한 인력 및 장비동원, 살처분 매몰지 확보, 인근농가 수매도 축, 이동통제 방안, 관련예산 확보 등 비상방역계획 사전수립

##### □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실시

- 지속적인 항체 및 항원검사 실시로 예방접종 중지이후 방역관리 철저

##### □ 예찰활동 및 도축검사, 소독실시는 현행 방역체계 강화 유지

- 도축검사 보조원 제도 운영강화

#### V. 향후 추진계획

- 검사증명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개정
  -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고시는 돼지콜레라 부분삭제
- 돼지콜레라 방역 지침서 확정 배포
- 감시둔군을 이용한 안전성 시험사업을 실시할 경우 관리지침 마련
- 예방접종 중지 일정이 확정되면 사전 홍보계획 수립추진

## 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대비 위험도 평가시험

###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예방접종 중지 이후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면역항체 소실에 따른 개체별 방어능력이 없어 확산속도가 빠르고 피해규모가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
- 양돈단체, 농가 등의 예방접종 중단에 대비한 시험사업 필요성 제기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회 개최(2001.5.24)
  - 시험방법, 기준, 절차 등을 협의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험사업 계획서(안) 작성
-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위험도 평가시험을 함으로써 안전성 확인과 농가의 불안요인을 해소

### 2) 사업개요

#### □ 시험방법 및 기간

- 시험방법 : 시·군별로 시험농장을 선정한 후 해당농장의 신생자돈중 일부를 예방접종 중지, 도축 출하전까지 주기적 검사
- 시험대상 : 299개 농장, 4,788두(농장당 11~22두)
  - ※ 당초 302개농가, 4,800두 계획 : 돼지 사육두수가 적은 서울특별시와 예방접종을 중지한 강원도, 제주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기간 : 2001. 6. ~ 2001. 10.
- 사업주관 : 시·도지사(가축위생시험소)
  - 협조 : 수의과학검역원, 대한양돈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 농장선정

- 시험농장 및 마리수 기준 : Garner의 표본 추출법('97)
  - 시험농장수 : 299개
  - 시험마리수 : 시험농장별 11~22두
- 시험농장 선정시 착안사항
  - 과거 돼지콜레라 발생 시·군
  - 과거 발생비율이 높은 사육규모 500~4,999두 양돈장 밀집 시·군
  - 외부에서 자돈을 구입하여 사육하는 농가
  - 각 평가단별 자체 평가 및 면역형성률이 낮은 방역취약 지역
- 평가단이 대한양돈협회 시·도지회, 가축위생지원본부 도본부 등 관할지역내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지사가 대상 농장을 확정된 후 시군에 통보

## ○ 시·도별 농가 및 두수 선정기준

도/광역시	선정농가수 및 선정두수	
	선정농가수	선정두수
부산광역시	1	15
대구광역시	1	20
인천광역시	3	45
광주광역시	1	15
대전광역시	1	15
울산광역시	1	15
경기	82	1,343
충북	17	270
충남	52	830
전북	32	510
전남	33	520
경북	38	600
경남	37	590
총합계	299농가	4,788두

## □ 관리체계

- 시·도별로 수의과학대학 교수, 생산자 단체, 관계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돼지콜레라발생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
- 시·도별 평가단은 시험사업 중간 및 시험사업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10일 이내)

## □ 시험사업 선정농장에 대한 조치

- 감시돈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시 조치
  - 해당농가 전두수 살처분 실시 및 보상금 100% 지급
  -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의 농장에 대하여는 시험사업임을 감안,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의 이동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시험사업 농가에 대하여는 채혈 등 검사에 따른 발육지연, 위험부담 등 요인을 감안, 일정액의 사례비를 지급하여 사업협조 유도

## □ 시험사업비

- 신규사업비 : 144백만원('01 축산발전기금 및 농특회계)
  - 시험농가 사례비(축발기금) : 96백만원 (4,800두×20천원)
  - 항체역가 검사시약(농특회계 재료비) : 48백만원(4,800두×5회×2천원)
- 항원·항체검사용 진단키트 등 재료비와 농장채혈 비용은 금년도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사업비에서 사용(447백만원)

### 3) 시험사업결과

#### □ 항체검사

- 총 299농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5차검사까지 261개 농가에서 정상적으로 시험완료
- 항체양성율은 1차 67.2% → 2차 31.2% → 3차 12.3% → 4차 6.7% → 5차 2.3%로 감소하였음(표 1)
- 항체양성돈의 항체역가 범위는 1차 16~32배 → 5차 2~8배로 정상적인 모체이행항체로 확인됨
- 시험완료 261농가의 3,940두 중 90두가 8배이하의 낮은 항체가로 확인

#### □ 항원검사

- 항원검사결과 1차 299농가 4,765두 → 2차 297농가 4,743두 → 3차 293농가 4,590두 → 4차 290농가 4,480두 → 5차 272농가 4,075두 모두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되었음(표 1)
- 항체 및 항원검사 총괄표

구분	항체검사					항원검사		
	농가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양성율(%)	항체역가 범위	농가수	검사두수	양성율(%)
계획	302	4,800	-	-	-	-	-	-
선정	299	4,788	-	-	-	-	-	-
1차	299	4,766	3,201	67.2	16-32	299	4,765	0
2차	297	4,712	1,472	31.2	2-8	297	4,743	0
3차	293	4,590	563	12.3	2-8	293	4,590	0
4차	273	4,254	287	6.7	2-8	290	4,480	0
5차	261	3,940	90	2.3	2-8	272	4,075	0
누계		22,262	5,613				22,653	

#### □ 5차 검사결과 분석

- 총 261농가 3,940두 검사결과 3,724두(94.5%)가 항체 및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됨(표 2)
- 항체가 8배이하 개체 90두(2.3%)는 정상적인 모체 이행항체로 판단됨
- 항체가 16배이상 개체 126두(3.2%)는 백신접종항체가 수준(16-256배)이며, 이 돈군에 대한 항원 및 임상검사결과 돼지콜레라 음성으로 확인됨
  - 이는 시험기간 중 시험돈에 백신접종, 관리 소홀, 불완전한 이각표시에 의하여 다른 돈군의 백신접종개체가 섞인 것으로 판단되어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항원검사결과 전두수 음성



## ○ 5차 검사결과 분석

검사농가수	검사두수	항체역가검사결과		
		음성두수	양성두수(8배이하)	양성두수(16배이상)
261	3,940	3,724	90	126(51농가)
			-매우낮은 역가 :모체이행항체가	-항체역가 범위는 16-256배 :백신접종항체가임 -항원검사결과: 음성 -임상검사결과: 음성

## 4) 종합결론

- 최종 5차검사에서 항체 양성 90두(2.3%)는 항체역가 8배이하로 모체이행항체로 확인됨
  - 항원검사는 시험기간내(1-5차) 총 22,653두 검사결과 전두수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됨
  - 시험돈에 대한 백신접종 및 관리소홀 등으로 시험기간내(1-5차) 총 43농가(15%), 848두(17.7%)가 검사에서 제외됨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대비 위험도 평가시험 분석결과 전국에 분포한 299개 시험농가에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청정농장으로 확인됨
  - 시험농장내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요인 (돼지이동, 사료운반차, 분뇨운반차, 출하차량, 농장방문자 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시험농장 및 주변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각 채혈차수별 검사 제외농가별 원인분석
- 1차에서 5차검사까지 검사에 누락된 농가수는 총 43농가(15%)였다(표 3)
  - 원인별로 살펴보면 시험돈에 백신접종에 의한 17농가(39.5%)였고 이각표시 불완전과 관리소홀로 인한 합사로 인한 12농가(27.9%)가 주요 원인이었음
  - 그밖에 시험돈군을 출하시킨 7농가(16.3%), 농가가 채혈거부한 4농가(9.3%), 채혈누락된 1농가(2.3%), 폐업인 1농가(2.3%) 등이 검사에서 제외되었음

○ 각 채혈차수별 검사 제외농가 원인분석

구분	검사 농가수	제외 농가수	시험실시 제외농가수 원인별 분류					
			백신접종	백신돈군 합사	출하	채혈거부	채혈누락	폐업
1차	299	-	-	-	-	-	-	-
2차	297	2	2	-	-	-	-	-
3차	293	4	3	-	-	-	-	1
4차	273	20	10	8	1	-	1	-
5차	261*	17	2	4	6	4	-	1
계(%)		43	17(39.5)	12(27.9)	7(16.3)	4(9.3)	1(2.3)	1(2.3)

\* 4차검사에서 누락된 5농가가 5차에서는 추가검사를 실시하여 검사농가수에 포함됨

□ 검사 제외 시험돈 개체별 원인 분석

- 5차까지 검사과정에서 최초 시험두수 4,788두 중 849두 (17.7%)가 검사에서 제외되었다
- 원인별로 살펴보면 검사에서 제외된 농가의 원인과 유사하게 예방 접종 293두(34.6%), 예방접종돈과의 혼사 173두(20.4%), 시험돈의 출하 134두(15.8%)가 주요 원인이었음
- 그밖에 채혈거부, 위축폐사, 폐업, 폐렴폐사, 장염폐사, 사고사, 기타 채혈누락 등의 원인으로 시험돈 검사(284두)에서 제외되었음
- 검사제외 시험돈에 대한 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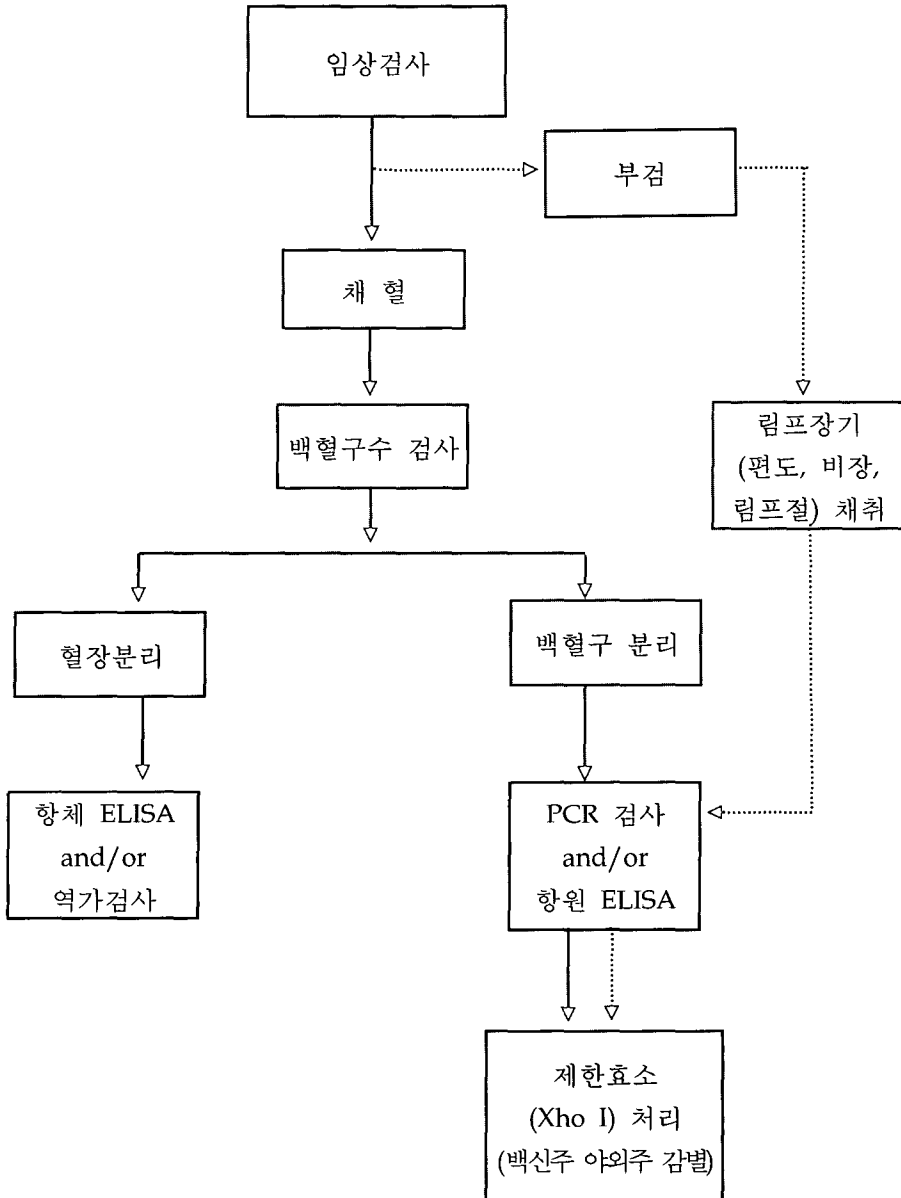
시도	선정 두수	제외원인										계(%)
		백신접종	백신돈군 합사	출하	채혈거부	위축폐사	폐업	폐렴폐사	장염폐사	사고사	기타*	
부산	15											
대구	20	1									5	6 (0.7)
인천	45											
광주	15					1						1 (0.1)
대전	15											
울산	15											
경기	1,343	98	98	94	54	24	15	8	5	1	8	405 (47.8)
충북	270	20				4		5	1			30 (3.5)
충남	830		72	40		12				3	15	142 (16.7)
전북	510	105				9						116 (13.7)
전남	520	39				16		1				56 (6.6)
경북	600	15	3			1	18	5		2	1	45 (5.3)
경남	590	15	0		20			11	1			47 (5.6)
계(%)	4,788	293 (34.6)	173 (20.4)	134 (15.8)	74 (8.7)	66 (7.8)	33 (3.9)	30 (3.5)	7 (0.8)	6 (0.7)	32 (3.8)	848 (17.7)

※ 채혈 누락 등

## 자. 돼지콜레라 방역관련 교육

### 1) 돼지콜레라 검사체계

〈그림 5-1〉 국내 돼지콜레라 검사체계



고열, 식욕결핍, 포개짐, 피부청색증, 후지마비 등 돼지콜레라 의사환축을 발견한 축주(관리인 포함)나 수의사는 방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제11조). 이러한 의사 환축에 대한 발생신고를 받았거나 이를 발견한 가축방역관은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돼지콜레라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상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감염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긴급 방역조치를 해제한다. 그러나 감염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긴급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시키는 동시에 감염 의심축 또는 폐사체를 대상으로 정밀검사 시료(바이러스 분리용 : 편도선, 인후두 림프절, 림프절, 비장, 혈액, 병리조직 검사용 : 편도선, 악하 림프선, 폐장, 비장, 신장, 대장, 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제 감염되었다라도 돼지콜레라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아 임상검사만으로는 진단이 곤란하며, 농장 수준에서는 면역수준이 낮은 일부 돼지에서만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돼지콜레라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판단하고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돼지콜레라의 발생 사실이 은폐될 수 있으며,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조사 시에도 최초 발생농장이나 감염의 고리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돼지전신소모성증후군(porcine multi-systemic wasting syndrome), 돼지 피부염 신증 증후군(porcine dermatitis and nephropathy syndrome) 등 돼지콜레라와 임상증상이 유사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돼지콜레라 진단에 혼돈을 주기도 한다.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은 특이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험실 진단을 통한 확진이 필요하며, 이는 2차 발생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인 실험실적 진단방법은 바이러스의 분리동정과 냉동조직 절편에서의 바이러스 항원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ELISA 및 RT-PCR을 이용한 항원 탐지법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ELISA는 검사과정이 비교적 간단하며, 신속하며, 대량의 시료를 동시에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돼지콜레라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법으로 적합하다. RT-PCR은 검사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이 방법 역시 신속하며 ELISA보다 민감도와 특이성이 더 높기 때문에 확진이 가능한 방법이다. 또한 높은 민감도로 인해 다두 혼합시료(pooled sample)를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전 사전 진단에 이용할 수 있다. 육즙(meat-juice)에 대한 RT-PCR법은 혈액시료의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검사법이지만 육즙내에 포함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검사에 필요한 고기의 양이 매우 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대량 규모의 혈청학적 검사가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ELISA kit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절대적으로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만 특이하지는 않는데 이는 다른 pestivirus에 의해 형성된 항체도 탐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LISA 결과 양성으로 나온 것은 보충적으로 중화시험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더 걸린다.

## 2) 신속진단법

### 가) 백혈구수 측정

실험방법은 현미경적 계수 방법 및 자동계수방법의 2가지가 있으며, 자동화기계가 셋팅되어 있으면 전기적 감지로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자동화기계가 없을 경우 현미경적 계수방법을 사용한다.

백혈구수 측정은 초기 돼지콜레라 감염의 진단에 용이하며 급성형일 경우 빠르게 백혈구 감소증을 일으키며 만성형일 경우 백혈구 감소증에 이어 백혈구 증가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감염 4일째부터 백혈구 감소증이 보일 수 있다. 정상돼지는 혈액 $\text{mm}^3$ 당 10,000~25,000이나 돼지콜레라 감염의심돈은 혈액 $\text{mm}^3$ 당 9,000이하로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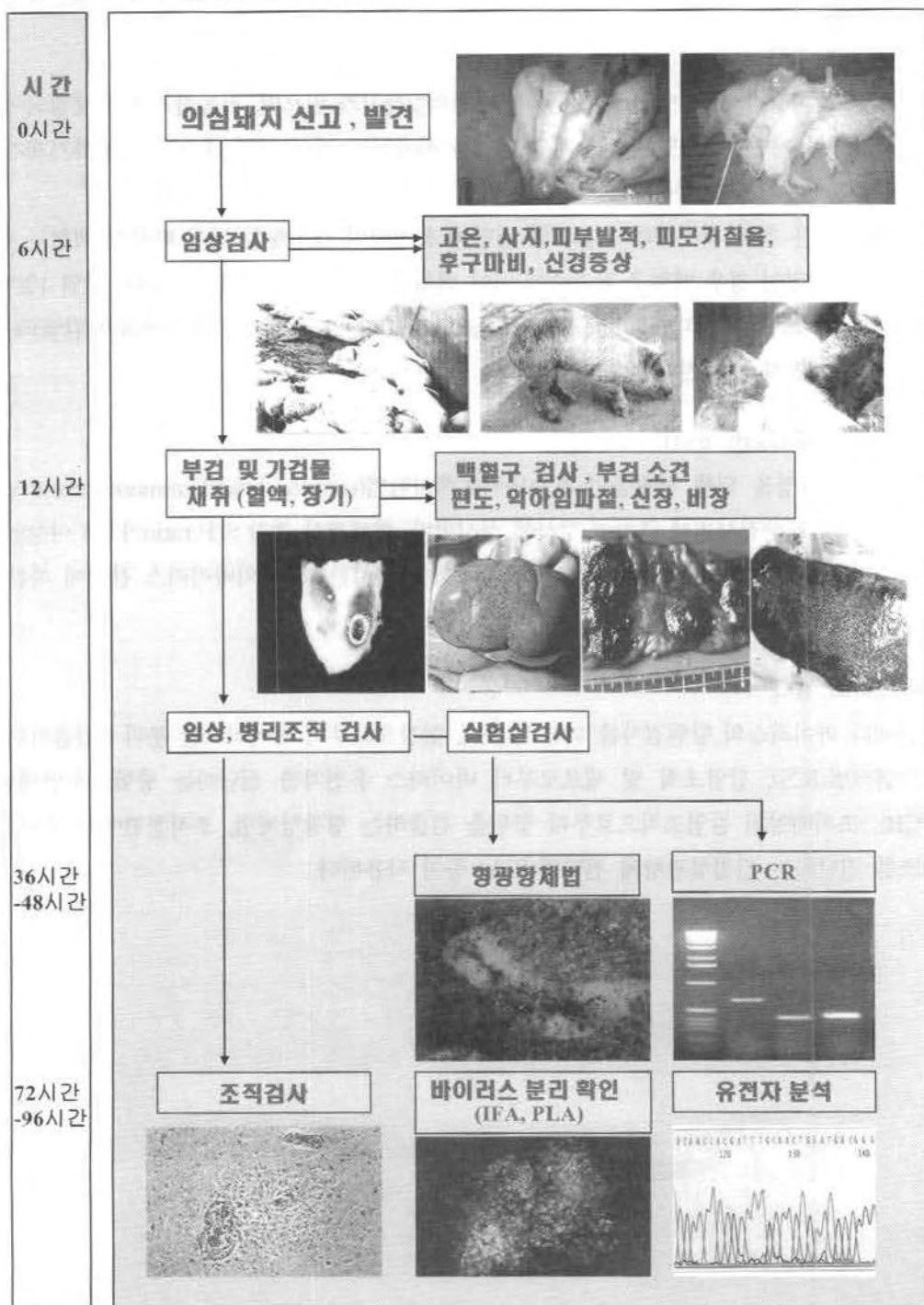
### 나) 항체검사(Antibody test)

혈중 항체가 측정을 위해 시판중인 효소면역흡착시험법(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키트를 이용하여 표준검사법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항체검사 결과 S/P ratio가 0.3 이상인 개체인 경우 혈청을 1/2,000로 희석하여 고역가 항체검사를 실시한 후 야외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항체 형성 유무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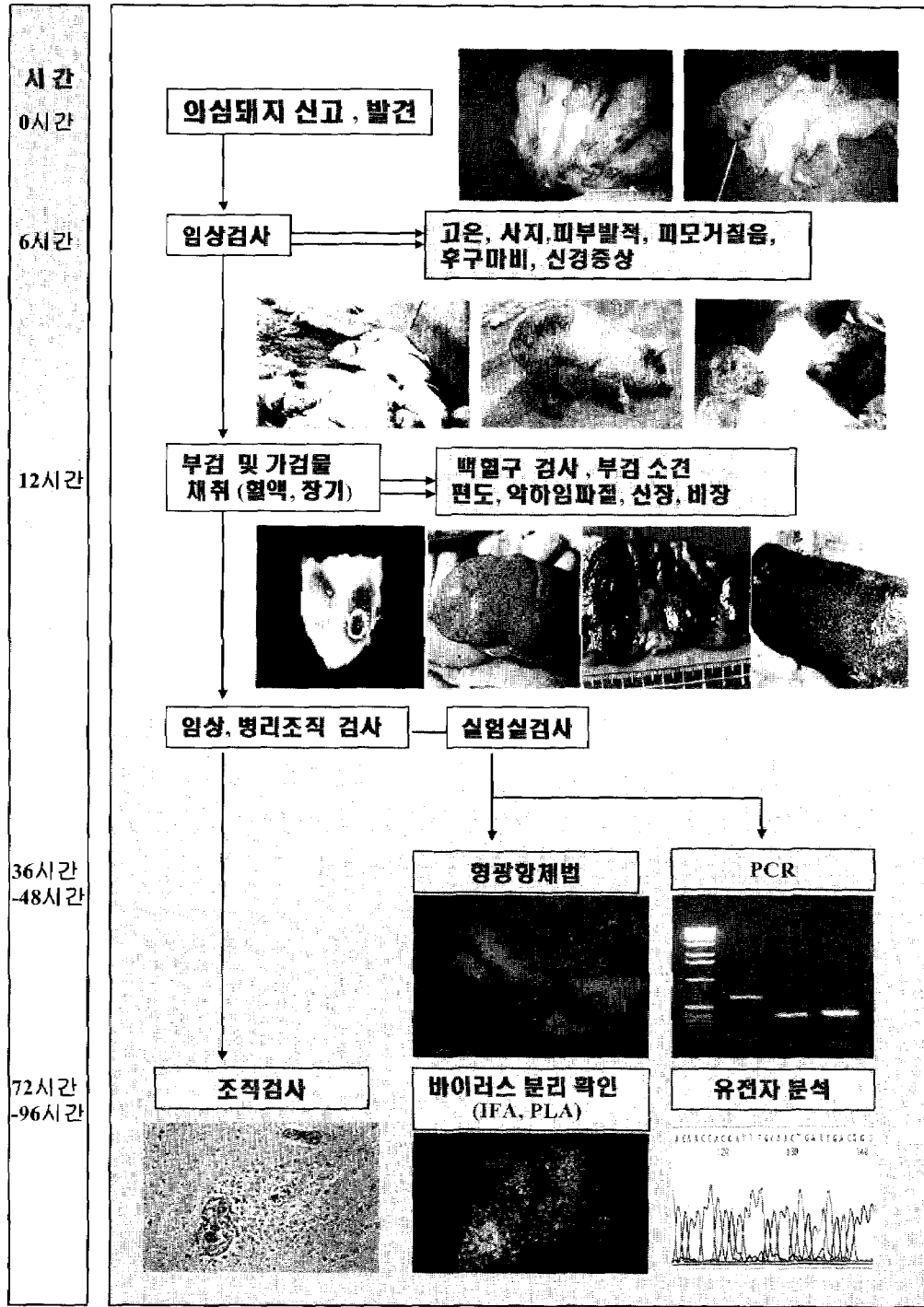
### 다) 바이러스 검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항원검사를 위한 ELISA, 혈장으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검출하는 면역화학조직염색법(ICS), 감염조직 및 세포로부터 바이러스 유전자를 진단하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 조직배양된 감염조직으로부터 항원을 검출하는 형광항체법, 조직절편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간접형광항체 진단법(IFA) 등이 사용된다.

〈그림 5-2〉 국내 돼지콜레라 진단체계



〈그림 5-2〉 국내 돼지클레라 진단체계



## 3) 임상 및 병리검사

## 가) 임상소견 관찰요령

## □ 백신접종 시 이행항체의 소멸시기

모체 이행항체는 초유를 통해 전달되며, 생후 6시간부터 포유자돈에 돼지콜레라 항체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개체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생후 86일 이후에는 최저 방어항체가인 8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나 모돈의 항체수준 등에 따라 개체마다 차이가 있다.

〈표 5-26〉 예방접종 미접종 시 관찰요령

연령	모든 백신접종시	모든 백신 미접종시
모든	무증상	CSF 임상증상 발현
포유자돈	무증상	CSF 임상증상 발현
이유자돈	무증상 또는 CSF 임상증상 발현	CSF 임상증상 발현
비육·육성돈	CSF 임상증상 발현	CSF 임상증상 발현

※ 모돈의 돼지콜레라 항체수준에 따라 이행항체의 반감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체가 8 이하일 경우, 모돈을 제외한 어느 연령에나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이 발현할 수 있다.

〈표 5-27〉 발병양상에 따른 임상증상

구분	급성형	만성형	지발형(Late-Onset)
바이러스독력	강함	중간	약함
감염시기	출생후 감염	출생후 감염	태반감염
병증의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잠복기 : 짧다,</li> <li>심한 침울, 고열, 식욕 감퇴, 결막염, 변비, 설사, 경련, 운동실조, 피부출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잠복기 : 짧다</li> <li>질병경과의 3단계 침울, 고열, 식욕감퇴, 임상증상이 호전됨</li> <li>말기에 병세 악화로 위축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잠복기 : 길다.</li> <li>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침울상태와 식욕감퇴, 정상이거나 약간 높은 체온, 결막염, 피부염, 보행장애</li> </ul>
폐사	10~20일	1~3개월	2~11개월
혈중바이러스농도	높은 수준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소실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
백혈구감소증	급속히 발생하며 심함	급속히 발생하나 감염 후기에 백혈구증기증을 수반	감염이 있는 동안 지속
면역반응	없음	있음	없음
육반병변	다발성 출혈 (특히 림프절과 신장), 비장경색	맹장과 결장에 궤양, 비장경색, 피부 및 늑골병변	림프절 부종, 흉선 위축
현미경적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피세포변성</li> <li>세망세포증식</li> <li>뇌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피세포변성</li> <li>심한 림프구감소</li> <li>조직세포증식</li> <li>사구체신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피세포변성</li> <li>심한 림프구감소</li> <li>조직세포증식</li> </ul>



## 나) 육안병변 관찰요령

□ 돼지콜레라 육안병변 : 심급성의 경우 병변이 거의 없음

## ○ 전반적인 병변 양상

- 다발성 점상출혈(petechiae:1~2mm) : 림프절, 위, 폐, 심외막, 인두, 후두개, 신장, 방광, 장점막, 피부(청색증)
- 카타르성, 섬유소성, 출혈성 염증 : 소화기, 호흡기, 비뇨기
- 경색 : 비장, 폐(내피세포의 변성과 적혈구의 sludging(비화, 모세혈관벽에 적혈구가 부착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 혈전이 모세혈관 폐색)

## ○ 각 장기별 병변

- 사 체 : 마르고 지저분하고, 복강, 안다리 등 피부의 발적(청색증)
- 안 검 : 점조한 물질이 부착
- 림프절 : 종대 및 주연성 출혈
- 위 : 보통 비어 있으며 위저부(fundus)의 충·출혈
- 대 장 : 단추양 궤양, 카타르성, 괴사성 장염
- 심 장 : 약간의 투명한 심낭수, 심외막의 출혈
- 편 도 : 괴사
- 비 장 : 종대 및 경색
- 신 장 : 출혈 크기가 다양, 피질부에 많음
- 폐 : 출혈, 경색, 2차 세균감염으로 기관지 폐렴

## ○ 번식장애 관련

- 미이라나 사산태아 : 피하직의 부종, 복수 및 흉수 저류, 머리와 다리의 기형, 소뇌와 폐의 형성부전
- 허약축으로 태어나는 경우 생후 즉시 폐사하며 피부와 내부장기의 출혈소견이 관찰됨

□ 채취할 시료

## ○ 병리조직 검사용 시료채취 요령

- 뇌 : 가장 중요한 장기로 대뇌 및 소뇌를 이등분하여 절반을 포르말린에 고정
- 림프기관 : 편도, 림프절 및 비장
- 기타 장기 : 폐, 소장, 대장, 간 등 육안병변이 있는 부위

※ 기타 장기는 돼지콜레라 진단보다는 다른 질병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필요

## ○ 혈액검사용 시료

- 발병돈방, 발병돈방 좌우돈방, 건강돈방의 돼지 각 10두씩에서 혈액을 채취
- 전혈로는 백혈구수 계산을 통해 백혈구감소증 관찰 및 혈청으로 항체검사 실시

〈표 5-28〉 육안적으로 감별해야 할 질병 및 감별진단 요령

구분	돼지콜레라	Aujeszky	PRRS	PMWS	PDNS	PED	
역학조사	연령무관 계절무관 고발병율 고폐사율	자돈~성돈 일령에 따라	모든 연령 신생자 폐사	5~8주령	이유자돈~ 육성돈	1주령 이하 겨울호발 고발병율(자돈) 고폐사율(자돈)	
임상 검사	피부	청색증 (복부,허리, 대퇴부)	귀 외음부 적색이나 청색	창백, 황달	자적색 반 점(후지, 허 리, 귀, 음 낭)		
	체온	발 열	발 열	발 열	발열(초기)	발 열	
	호흡기	기침, 재채기	기침, 재채기	기침, 재채기	가 끔		
	소화기	구토, 변비 후 설사	구 토	설 사	설사(가끔)	설 사	구토, 급성 수양성 설사
	행동	신경증상 침울, 포개짐, 후마비	선회, 근경련		선 회		
	자돈	구토,오한,설사 웅크림, 선회, 결막염,오열, 급사,경련	재채기, 선회, 폐사율높다	설사, 생존자돈 감소, 다른 호 흡기질환 호발		거의 없음	수양성 설사, 탈수, 폐사
	육성돈	외톨이, 식욕 저 하, 오 한, 웅크림, 눈곱, 고열, 신경증상, 피부청색	재채기, 폐렴, 낮은 폐사율	기침, 거친피모, 식욕저하	수척, 거친피 모, 창백, 급사, 말초임 파절종창	피부 반점, 식욕저하, 체 중 감 소, 무기력, 다 리 종 창, 파행	수양성 설사, 고이환율- 저폐사율
	모돈	고열, 식욕저 하, 신경증상, 유 산, 사 산, 미이라화, 경련,견좌자세	번식장애 (유,사산, 미이라화)	발열(39~40℃), 유 산 ( 말 기 ), 귀부위청색화, 분만율감소,기 침,호흡기증상		거의 없음	무른 변
	공돈			식욕저하, 발열, 무기력, 성충동없음, 수태감소, 정액량감소, 산자수감소		거의 없음	

구분	돼지콜레라		Aujeszky	PRRS	PMWS	PDNS	PED
혈액	백혈구 감소		백혈구 감소				
주요 병변 장기	비장, 뇌, 편도, 임파절, 대장, 신장, 방광, 피부		뇌, 간, 비장, 폐	폐, 간, 임파절, 뇌, 심장	폐, 비장, 임파절, 신장, 피부	피부, 신장	소장
부검 소견	위	위저부충출혈, 미란			궤양, 부종	궤양	
	흉 선	위축, lpc소실					
	뇌	뇌영(PVC)					
	편 도	괴사성편도염	괴사성편도염				
	방 광	점(반)상 출혈					
	심 장	투명한 심낭수		투명한심낭수			
	인후두	점(반)상출혈	점막출혈				
	신 장	점(반)상출혈	정상출혈		부 종	정상출혈	
	비 장	경색, 출혈, 종대	괴사소	종 대	종 대	피 질	
	소 장	점(장)막출혈	점막출혈, 괴사		벽이 얇다		벽이 얇다
	대 장	맹결장 - 단추상 궤양					
	임파절	소절주위충출혈 종창, 수종		경부, 서혜종대	종대, 종창 미만성충출	종대, 출혈	
	폐	경색, 출혈 가능		간질성폐렴	퇴축불량	퇴축불량	
	간		황백색괴사소		황-오렌지색		
	관 절						

구분	돼지단독	살모넬라병	대장균증	연쇄상구균병	톡소플라즈마	
역학조사	8주령 이상 여름호발 급성폐사	자돈~성돈	자돈~육성돈 계절무관	포유자돈 한배 새끼에 고폐사율	모든 연령 고폐사율	
임상 검사	피부	사지말단, 등 두드러기	말단, 하복부 자낭색반점 (귀, 주둥이, 꼬리)		체표가 붉다 귀, 코끝, 하지, 복부 - 자적색 반점	
	체온	발 열	발 열		발 열	
	호흡기				호흡곤란 호흡 촉박없다	
	소화기		수양성 변	산취가 있는 회황색 수양성 설사		
	행동	신경증상없음 파행	신경증상	신경증상 (부종병)	신경증상, 파행	보행실조
	자돈	의식정상 다리를 전다	3주령이후 설사	패혈증, 설사, 탈수		유약, 무기력, 설사
	육성돈	급사, 발열, 다이 아몬드 피부병변, 관절염, 파행	패혈증, 폐렴→식욕 절폐, 침울, 호흡기문 제(기침, 발적), 사지 말단피부: 청색, 악취 수양성변, 황달(간), 파행(관절염), 신경 증상(수막염)	설사 부종병 (8~12주령)		식욕감퇴, 비증, 결막충 혈, 눈곱, 기침, 호흡곤 란, 설사, 변비, 신경증 상(진전, 마비)
	모든 돈	<(심)급성> 급사, 고열(40℃), 번식장애 <아급성> 식욕절폐, 번식장애 <만성> 파행, 위상심내막염	침울, 식욕절폐, 폐 렴, 기침, 신경증상, 혈 액변, 폐사			유산(임신6~8주 감염) 사산(그 이후 감염) 미숙, 유약자돈 출산
유태	정자이상	침울, 식욕절폐, 폐렴, 기침, 신경증상, 혈액 변, 폐사				

구분	돼지콜레라		돼지단독	살모넬라병	대장균증	연쇄상구균병	톡소플라즈마
혈액	백혈구 감소		백혈구 증가				
주요 병변 장기	비장, 뇌, 편도, 임파절, 대장, 신장, 방광, 피부		심장, 피부, 관절	대장, 간	장	폐, 뇌, 관절, 심장	장, 임파절, 폐
부검 소견	위	위저부충출혈, 미란	출혈(정, 장막)				
	흉선	위축, Ipc소실					
	뇌	뇌염(PVC)				뇌수막염	
	편도	괴사성편도염					
	방광	점(반)상 출혈	충혈	정상출혈			
	심장	투명한 심낭수	점(반)상출혈	정상출혈		심외막염	
	인후두	점(반)상출혈		정상출혈			
	신장	점(반)상출혈	정상출혈	종대			정상출혈
	비장	경색, 출혈, 종대	종대, 정상출혈			종대	
	소장	점(장)막출혈			점막탈락	충혈	점막출혈
	대장	맹결장 - 단추상 궤양		단추상궤양 장-충출혈 종창, 종대	벽이 얇다		
	임파절	소절주위충 출혈, 종창, 수종	Peyer's patch 종대, 피막하출혈		피막하충 출혈	종대	종대, 괴사, 출혈, RES증식
	폐	경색, 출혈 가능		부종, 출혈		폐렴	간질성폐렴 (표면출혈반, 괴사소)
간		충혈	종창, 종대, 황달			혼탁종창, 괴사소	
관절		관절염				관절염	

4) 야외분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특성조사

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플레비비리데과(Flaviviridae family), 페스티바이러스속(Pestivirus genus)에 속하는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약 12,300개의 단일가닥의 염기로 이루어진 RNA이며, 외피 당단백질 유전자인 E2 단백질을 포함한 약 3,900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하여 바이러스 단백질을 구성한다. 유전자의 양쪽 끝에는 비전사 부위(non-translated region) 즉, 약 400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진 5'NTR과 약 200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진 3'NTR이 위치하고 있다. 비구조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들은 주로 유전자의 3'말단 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핵산중합효소 유전자 NS5B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E2, 5'NTR, 3'NTR 및 NS5B 유전자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전자형 분류에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 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 감별(Genetic typing)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낮은 변이빈도를 가지기 때문에 경미한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에도 분자역학 연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기간 동안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예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들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면, 기존 발생하고 있던 바이러스에 의한 2차 발생인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한 신규 발생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분리주간의 감별은 비교에 사용되는 특정 유전자부위의 다양성과 길이에 근거하여 실시하는데 바이러스 유전자의 어느 부위를 비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교방법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 유전자를 한정하고 분석과 비교에 사용되는 방법이 표준화되어야 여러 실험실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형 감별을 표준화하기 위한 시도로 과거와 최근 분리주의 유전자염기서열과 역학정보를 수집한 일종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데이터베이스가 독일 하노버의 돼지콜레라 공통표준연구실(community reference laboratory for CSF)에 유지되고 있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분리주들은 유전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그룹(group)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을 기술하기 위한 명명법으로는 Lowings 등(1996)의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Lowings 등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2개의 주요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명명법에 따라 확보된 전세계의 분리주를 분류한 결과, 대부분의 과거 분리주는 제 1그룹에 포함되며, 최근의 대부분의 분리주는 제2 그룹에 포함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Paton 등(2000)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기존의 바이러스와는 유전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분류하기 위한 새로운 유전자 그룹 즉, 제 3그룹(group 3)의 추가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군을 3개 그룹 즉, 제 1, 제 2 및 제 3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 다) 유전형 감별(Genetic typing)과 역학

유전형 감별은 각기 다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분리주간에 유전적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바이러스를 분류하고 국가간 또는 지역간 전파·확산경로를 추적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하는 데 응용할 수 있다.

- 가) 어떤 지역(유입원)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 여부
- 나) 사육돼지와 야생돼지간의 전염 여부
- 다) 국가간 국경을 통한 전염 여부

- 라) 매우 밀접한 바이러스들과 관련된 독력을 달리하는 발생 여부
- 마) 어떤 지역의 특정 변이주 존속 여부(야생 멧돼지 등)
- 사) 야외바이러스와 백신 바이러스간의 감별 여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추적하는데 유전자형 감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적 다양성이 파악된 다음, 이들 바이러스들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대표 바이러스와 해당 발생건에 대한 역학정보가 전세계의 다양한 지역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학정보를 통하여 바이러스가 존속·확산되는 원인을 추정하기 위한 가설이 설정되고 이를 유전형감별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미 연관성이 밝혀져 있는 일련의 발생예에서 확보된 분리주들의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유전형 감별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다.

#### 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다양성과 지리적 분포

이 내용은 Patron 등(2000)이 그들이 확보한 100개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분리주를 대상으로 유전자염기서열을 분석하고 유전자 수형분석을 실시한 결과로서 지역별, 시기별 유전자형의 분포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유럽

1920년과 1970년 사이에 확보된 소수의 분리주들은 1960년대 영국에서 분리된 분리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 1그룹에 속한다. 1970년 이후 일부 예외적인 예가 있지만 유럽에서는 제 1그룹의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빈도가 매우 낮아졌다. 1989년 벨기에 분리주(Basabelde 분리주)와 1990년대 우크라이나 분리주는 각각 제 1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그 예외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분리된 대부분의 분리주들은 제 2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 1982년 독일에서 제 2그룹의 바이러스가 가장 처음 출현하였다. 이어서 이들 바이러스들은 최근까지 이탈리아, 살디니아, 프랑스, 벨기에, 영국,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어 왔다. 제 2그룹의 바이러스는 주로 1985년 이후에 중부유럽,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독일 루마니아, 헝가리 등지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제 2그룹의 바이러스들은 유럽 각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반복적으로 분리되어 왔다. 제 2그룹의 바이러스는 1989년 독일에서 보고되었고 이후 네덜란드(1992)와 스위스(1993)에서 분리 보고되었다. 또한 제 2그룹의 바이러스는 1993년 중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수입된 야생멧돼지의 고기에 오염되어 있음이 발견된 바 있다. 1997년과 1998년 동안에 이 바이러스가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유입되었고, 이후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등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 아메리카

현재까지 제 1그룹의 바이러스만 보고되어 있다. 과거 분리주들은 북미지역에서만 확보되어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분리된 북미 분리주들과 영국 분리주들은 서로 유사한 제 1그룹의 바이러스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 1그룹의 분리주들은 1980년대 브라질과 1990년대 초 멕시코에서도 동정된 바 있다. 제 1그룹으로 임시 분류된 온두라스의 분리주는 다른 제 1그룹의 바이러스들과는 연관성이 상당히 먼 것으로 밝혀졌고, 최근 쿠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도 제 1그룹과 연관성이 있다.

## □ 아시아

아시아지역에서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모든 주요한 유전자 그룹이 동정되어 왔다. 확보된 과거의 분리주는 일본에서 분리된 것으로 1966년 일본의 Hokkaido 분리주는 제 1그룹인 반면에 1971년 Osaka 분리주와 1974년 Kanakawa 분리주는 각각 가장 초기 제 2그룹 및 제 3그룹의 대표바이러스이다. 1980년대에 제 1그룹의 바이러스가 태국에서 발견되었으며, 동시에 말레이시아 양국에서 발견되었다. 1980년대 말레이시아에서는 제 2그룹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제 2그룹의 바이러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오스트리아로 수입된 야생멧돼지 고기에서 분리된 바 있다. 제 2그룹의 바이러스는 1990년대에 태국에서 발견되었다. 제 3그룹 등 새로운 군의 바이러스들은 한국과 태국에서 각각 발견된 바 있다.

Paton 등(2000)의 보고내용은 과거와 최근에 발생한 모든 나라로부터 돼지콜레라 분리주를 확보하여 분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전세계적인 근원과 다양한 변이주들의 확산에 대한 결론은 아직 임시적인 것이긴 하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대표적인 변이주들 간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1970년 이전의 제 1그룹의 바이러스들이 이후 제 2그룹의 바이러스로 갑자기 변경되었는데, 이는 돼지콜레라를 근절, 방제하려는 노력들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됨으로 인해 좌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가장 최근에 유입된 모든 바이러스들이 제 2그룹의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그러나 수집된 과거 발생 분리주들의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제 2그룹의 바이러스들이 유럽지역에 존재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할 수는 없다. 중부 아메리카와 같은 타 지역에서는 제 1그룹의 바이러스들이 수년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분리주의 염기서열이 보고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하지만 분리주들의 다양성이 가장 큰 지역은 아시아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제 3그룹의 바이러스들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변이주들이다.



## □ 우리나라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바이러스의 유전형 분석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백신주(LOM)와 강독주(ALD)는 제 1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이다. 또한 야외 발생 바이러스들의 경우 2000년 이전에 발생하였던 모든 분리주는 1999년 용인 발생 분리주와 마찬가지로 제 3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밝혀져 있다.

최근 2002년 강원 철원, 인천 강화 및 경기지역에 발생하였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와 2003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들은 모두 기존에 국내에 발생하던 바이러스의 유전형(제 3그룹)과는 다른 제 2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원지역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돼지콜레라 유전자분석에 따른 분류에서 기존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속하는 제 3그룹과 다른 제 2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최초 발생농장(신흥농장)과 추가 발생농장(임송농장)의 분리 바이러스는 유전자가 100%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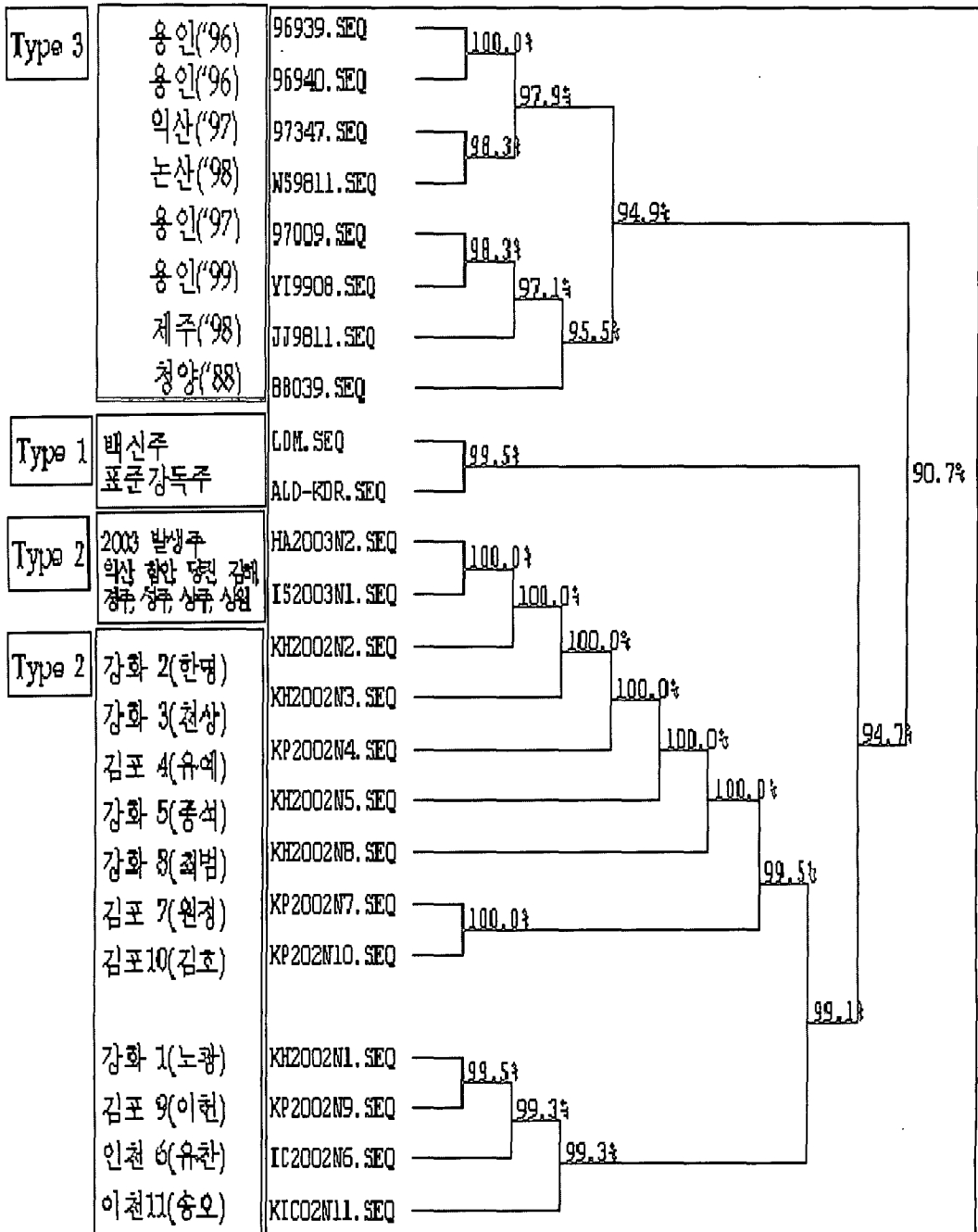
인천, 강화지역의 최초 발생농장(노광우)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와 추가 발생농장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결과, 일부 농장에서 1개~3개의 염기서열 차이가 있는 것 외에는 거의 100% 일치하였으며, 역시 제 2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분석되었다.

2003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경우 상원축산(제1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상원축산에서 후보돈을 분양한 익산, 함안, 당진, 김해, 경주, 성주, 상주지역 등 63개 농장(시료접수 65개 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였으며, 동 바이러스는 2002년 발생한 강화(한명섭, 천상열, 종석출, 최범식)와 김포(유예근)농가와 유전자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는 등 역시 동일한 제 2그룹의 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전자 분석결과로 보아 기존에 국내에 발생하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제 3그룹)는 양돈농가와 방역당국의 청정화 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근절되었으나, 2002년 해외로부터 새로운 유전형(제 2그룹)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어 발생,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 바이러스는 유전자 은행(Gene bank)에 등록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과의 일치율 조사결과 중국 간서성 등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제 2그룹)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95% 이상으로 가장 일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3> 국내 분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5' NCR 유전자 Phylogenetic tree

국내분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5'NCR 유전자 Phylogenetic tree



## 5) 아외분리 돼지콜레라바이러스의 병원성 조사

### 가) '01년 이전 국내분리 돼지콜레라바이러스(유전자형 : Type 3)의 병원성 조사

1998.12월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Nonsan주) 및 1999년 3월, 8월에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2주(Yongin 1,2주)를 포함하여 3종을 실험에 공하였다.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돼지에서 병원성 유무를 알아보고자 Table 1과 같은 실험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였다. 바이러스역가는 4.0~5.0 logTCID<sub>50</sub>/ml의 바이러스를 각각의 후지근육에 1 ml씩 2ml을 근육접종하였다. 접종전 8-64배(평균 16배)의 모체이행항체(중화항체)를 갖는 돼지를 선정하여 접종후 어느 수준의 모체이행항체에 의하여 방어가 될 수 있는지, 감염 후 회복되는 지 또한 바이러스 배출, 임상증상, 체온, 백혈구, 항체변화를 비롯한 각종 장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PBS접종군은 동거군으로 옆 돈군에서 돼지콜레라 감염시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서 되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면서 양돈장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이 group을 먼저 채혈 및 가검물 채취를 실시하였으며 소독도 2-3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별도의 격리돈사에 사육하였으며 접종 후에는 실험자가 접근하지 않고 비 실험자가 관찰 및 가검물 채취를 실시하였다.

#### □ 접종후의 체온변화

Yongin 1주의 접종군에서는 1마리가 8일만에 41.8℃를 기록하였고, Yongin 2주에서는 1마리가 역시 13일에 41.0℃를 기록하였으며, Nonsan주는 13일에 4마리 모두가 41℃를 넘었다. 특이한 사항은 41℃가 넘는 돼지는 돼지콜레라 증상으로 모두 폐사하였다. 일부 돼지에서는 폐사 1일전에 33-35℃의 저체온증을 보였다.

#### □ 접종후 백혈구수의 변화

접종 후 4일 부터 백혈구 감소증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최소 2800의 수치를 보였다. 폐사 직전에 심한 백혈구 감소증을 보이다 일부돼지(31번 돼지)에서는 2차 세균감염증에 의한 미약한 백혈구증가증을 보였다.

#### □ 접종 후의 혈청중의 항체반응

접종전에 항체가 8-64배(평균 16배)의 중화항체를 가지고 있었으며 접종 후 약 11일째 부터 4-16배로 낮아지다가 20일 넘어가면서 다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부돼지(6두)는 바이러스혈증 때문에 중화항체 수준을 검출하지 못하였다(Table 4, Figure 3). ELISA항체를 조사한 바 전체적으로 중화항체 추이와 비슷하였고 바이러스 혈증이 있는 돼지의 ELISA항체 역

가는 S/P ratio가 0.000~0.325의 수준을 유지하여 비교적 낮은 ELISA항체 수준을 보여 고도의 바이러스 혈증과 높은 항체수준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 임상증상

임상증상은 약 1-7일경에는 이상증상은 없었고 8일에 1두가 전신반점(청색증), 피모거침 증상을 보이고 설사, 진전, 신경증상, 마비, 저체온증 등으로 나타났고 15일에 Nonsan주를 접종한 군에서 폐사가 시작되었고, 접종 후 23일까지 모두 폐사하였다. Yongin 1주를 접종한 군에서는 1마리가 19일 부터 온몸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다가 32일째 폐사하였다. Yongin 2는 22일째 1두가 폐사하였다.

#### □ 바이러스 분리

바이러스 분리는 접종 후 8일부터 혈장 및 혈청에서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혈청보다는 혈장에서 분리율이 더 높았다. 또한 비즙 및 침, 분변도 조사하여 본 바 비즙에서만 분리되었으며, 접종 후 11일~13일에 확인되었다. 백혈구 수치로 보아선 접종 후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질병을 내과하여 채취된 시료에서 바이러스 분리가 되지 않은 돼지도 있었다. PBS 접종군(동거군)에서 2두도 감염되었는데 그 중 1두는 실험 20일째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것으로 보아 접종 군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하기 시작한 8~13일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기전파 등으로 감염되기 보다는 감염군에서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시작한 이후 실험자에 의한 접촉감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 □ 부검, 육안소견 및 장기에서 바이러스 분리

Yongin 1, 2, Nonsan주 모두 폐사돼지에서는 전형적인 돼지콜레라 증상을 보였으며, 채취 장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증상이 미약한 돈군을 부검하여 본 바 돼지콜레라 전형적 부검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고, 바이러스 검출도 없었으나, 약간의 비장종대만이 관찰되었다

#### □ 병리조직학적 소견

뇌, 림프절, 신장, 비장, 편도, 방광, 맹장, 간 등의 장기를 채취하여 병리조직학적 병소를 확인하여 본 바 Yongin 2주는 뇌, 림프절, 신장, 방광, 맹장, 간 등에서 소견을 보였고, Nonsan주에서는 뇌, 림프절, 편도, 방광, 맹장에서 돼지콜레라 병변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다.

## 나) '01년 이후 국내에 유입된 돼지콜레라바이러스(유전자형 : Type 2)의 병원성 조사

1999년까지 국내에서 유행했던 돼지콜레라의 임상형은 급성형, 만성형 등 여러가지 임상형이 보고된 바 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이후 2002년에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발생농장에서 관찰된 임상형으로 보아 전형적인 급성형 돼지콜레라로 확인되었으며, 유전자분석에 의한 분자역학적인 분류에서 유전자형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그룹 2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이 없던 유전자형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철원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바이러스의 병원성을 과학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분리된 바이러스를 돼지콜레라 항체음성돼지에 접종하여 임상증상, 바이러스 배출시기, 백혈구 감소, 항체 생성 등의 특성을 관찰하여 철원분리주의 임상형을 확인하였다.

### □ 바이러스 접종군의 백혈구 감소 및 발열, 폐사

돼지콜레라 항체음성의 60일령 육성돈에 돼지콜레라 철원 분리주를 공격접종 후 접종군(10두) 및 접촉군(5두)에 대한 백혈구 감소(Leukopenia), 체온 상승(발열), 폐사를 관찰하였다. 백혈구수는 10,000개/mm<sup>3</sup> 이하, 발열은 41.0℃ 이상을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임상증상으로 판단하였다. 공격 접종군에서는 접종후 3일째에 10두 중 8두에서 백혈구 감소가 관찰되었으며, 5일째부터 20일까지 생존된 개체 모두에서 지속적인 백혈구 감소가 관찰되었다. 발열도 접종 3일째부터 관찰되었으나 17일 이후부터는 발열을 관찰할 수 없었다. 폐사는 공격접종 후 7일째에 시작하여 20일째에는 90%가 폐사하였고, 1두는 빈사기 안락사 하였다.

바이러스를 접종한 돼지와 동거사육한 접촉군의 경우 공격접종 후 10일째부터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났으며 20일째에는 생존한 돼지 모두에서 백혈구 감소가 관찰되었다. 발열도 백혈구 감소증과 동일한 시기에 나타났으나 20일째에는 발열을 관찰할 수 없었다. 접촉군의 폐사는 공격접종 후 13일째부터 나타났으며 20일째에는 60%의 폐사율을 보였다. 대조군의 경우에는 모두 정상이었다.

### □ 접종돈 및 접촉돈에서의 바이러스 배출

공격접종 후 0, 3, 5, 7, 10, 13, 17, 20일에 공격접종돈, 접촉돈 및 대조돈으로부터 혈액, 비즙, 타액, 분변등을 채취하여 바이러스 배출 여부를 RT-PCR로 확인하였다. 접종군에서 혈액내 바이러스 유전자 접종 후 5일부터 접종군 중 30%에서 검출되기 시작하였고, 7일부터는 접종군 전체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비강삼출물에서는 접종 3일째부터 바이러스가 검출(80%)되기 시작하였고, 7일째에 전 돈군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20일째까지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타액에서는 접종 3일째부터 검출되기 시작하였지만 다른 것에 비

해 검출율이 낮았으며, 접종 17일째부터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할 수 없었다. 분변에서는 3일째부터 바이러스가 검출(20%)되면서 10일째에 전 돈군에서 검출 되었고, 접종 20일째 까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 되었다.

접촉돈의 경우 접종돈에 바이러스를 접종한 후 17일째부터 바이러스가 혈액에서 검출(100%) 되었다. 그러나, 비강삼출물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은 10일째부터 시작되었으며 20일째까지 지속되었다. 타액의 경우 접종 13일째에 한 개체에서 잠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그 이후 20일째까지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분변에서는 접종 7일째부터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었으며 접종 후 20일째 까지 전 돈군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대조군에서는 실험 기간 동안 바이러스를 검출되지 않았다.

#### □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접종돈 및 접촉돈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혈청 중화시험을 통해 돼지콜레라 항체형성을 관찰하였다. 실험 결과 접종 17일째에 접종군 중 1마리에서 2배의 혈청중화항체가 검출되었으나, 나머지 접종돈, 접촉돈, 대조돈에서는 돼지콜레라 항체의 형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철원에서 분리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접종한 후 3일째부터 접종군에서는 백혈구 감소와 체온상승(발열)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7일째부터는 폐사가 발생하여 접종 후 20일째 까지 90%의 폐사율을 보였다. 접종군에서의 바이러스 배출은 접종 후 3일째부터 비즙, 침, 분변 등에서 관찰되었으며, 바이러스 혈증은 5일째부터 관찰되었다. 접종돈과 한 돈방에서 동거 사육한 접촉돈은 접종돈의 비즙, 침,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된지 7일만(접종 10일째)에 백혈구 감소와 발열이 관찰되었고, 폐사는 10일 째(접종 13일째)에 발생하였다. 폐사율은 실험종료일까지 60%였다. 접촉돈에서의 바이러스 배출은 접종군이 바이러스를 배출한 4일째(접종 7일째)에 분변에서 관찰되었으며, 7일째 (접종 10일째)에 비즙에서, 14일째(접종 17일째)에 바이러스를 확인하였다.

접종돈의 바이러스 배출에 의해 동거 사육한 접촉돈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접촉돈의 돼지콜레라 증상 발현 및 바이러스 배출은 접종돈보다 2-3일 정도 지연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접종돈 및 접촉돈에 감염된 바이러스의 양적 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항체 생성은 공격접종 후 17일만에 생존한 돼지 4마리중 1마리에서 2배의 혈청중화항체를 나타내었으며, 20일 이후에야 다소 뚜렷한 항체형성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의 실험을 종합하여 보면 2002년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유전자 2형)는 기존의 국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유전자 3형)의 유전자형과 다를지라도 병원

성은 과거에 분리된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동일한 급성형의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나타내었다.

## 6) 시·도 가축위생방역기관 전문교육 및 훈련

돼지콜레라 항체 및 항원검사법에 대한 시·도 가축위생방역기관에 대한 돼지콜레라 항체 및 항원검사법에 대한 교육은 1996년 돼지콜레라 근절사업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다. 우선 돼지콜레라 항체 검사법은 ELISA kit가 개발됨에 따라 기존 조직배양을 이용한 바이러스 중화항체 검사법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1997년 이후 매년 각 시·도 가축위생 시험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농업연수부에서 실시하는 가축질병 전문가반 교육을 통해 매년 새로운 진단 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항원검사법은 1997년 이후 조직배양을 이용한 바이러스분리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일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조직배양법으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직접 검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주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주로 검사를 담당하였다. 이후 유전자 검사법으로 역전사효소 유전자증폭법(RT-PCR)을 도입하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특히 이는 폐사축 가검물에서 소량의 감염장기(편도, 비장, 임파절 등)를 채취하여 직접 바이러스 유전자를 추출하여 증폭확인 함으로써 5시간 이내로 매우 신속하게 감염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99년 부터는 감염이 의심되는 생돈의 혈액을 채취하여 백혈구를 분리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감염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각 시·도 시험소에 보급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더욱 발전하여 RT-PCR법으로 증폭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비교함으로써 백신주 및 야외감염주인지를 감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과 비교분석 함으로써 역학적으로 감염원 및 전파경로를 추적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유전자 검출법은 매우 민감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각 시·도 시험소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검출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 ● 제6장

# 2002년 이후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여 백

## 1. 2002년 돼지콜레라 발생 개요

### 가. 지역(시·군)별 발생상황

2002년 돼지콜레라 발생은 총 13건으로 2002년 4월에 강원도 철원군에서 2건이 발생한 이후, 동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인천광역시의 서구와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와 이천시 등 2개 도 4개 시·군(구)에서 총 11건의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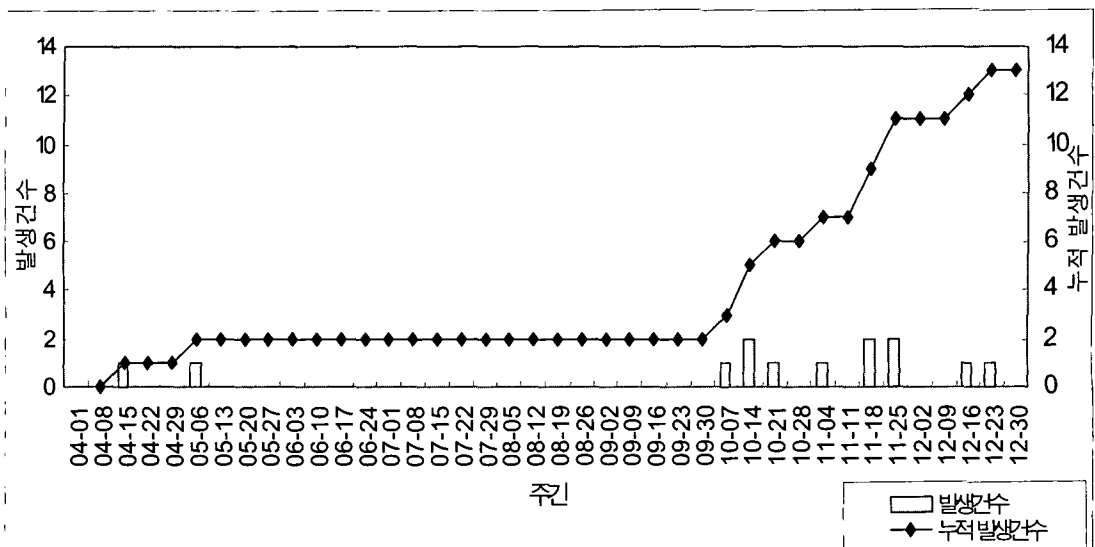
〈표 6-1〉 2002년도 지역별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건수)

합계	강원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철원군	강화군	서구	김포시	이천시
13	2	5	1	4	1

### 나. 시기별 발생 상황

시기별로는 2002년 4월 16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최초 신고되어, 4월 30일 인근 농장에서 1건이 추가 신고되어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철원군 발생 이후 약 6개월 동안 추가발생이 없었으나 2002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발생을 시작으로 12월 21일까지 총 11개 농장에서 추가 발생하였다.

(그림 6-1) 2002년 돼지콜레라 주간별 발생 상황



〈표 6-2〉 2002년도 돼지콜레라 발생 세부 내역

번호	축 주	주 소	사육규모 (두수)	진단일	비 고 (신고일)
1	신흥열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1리 668	354	4.18	4.16
2	송윤복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4리 262-7	2,131	5. 1	4.30
3	노광우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854	1,323	10. 8	10. 7
4	한명섭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4리 847-5	1,371	10.13	10.13
5	천상열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987	143	10.15	10.14
6	유예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405	889	10.22	10.21
7	종석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1리629	371	11. 2	11. 1
8	유찬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3	1,160	11.16	11.14
9	원정식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1,158	11.16	11.16
10	최범식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111	1,544	11.26	11.25
11	이현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귀전리 483	1,510	11.27	11.26
12	김호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5	1,520	12.15	12.15
13	송오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32-2	1,786	12.22	12.21

## 2. 강원 철원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역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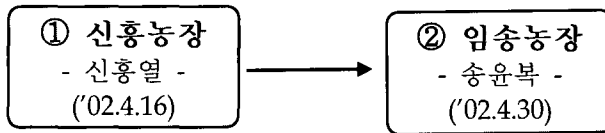
### 가. 발생역학 개요

- 1) 발생기간 : 2002. 4.16 ~ 4.30 (15일간)
- 2) 총 발생농장: 2개 농장
- 3) 최초 발생농장 : 1개 농장(신흥농장)
- 4) 추가 발생농장 : 1개 농장(임송농장)
- 5) 최초 발생농장 발생요인 : 발생농장 인근농장에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중국교포)에 의해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

※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기존 국내에서 발생하던 바이러스(type 3)와 다른 유전형(type 2)으로 밝혀져 해외에서 새로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

- 6) 추가발생·확산요인 : 인근전파(방문객 또는 차량)
  - 가) 최초 발생농장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였으며,
  - 나) 최초 발생농장과 추가 발생농장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농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사람과 차량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7) 발생 및 확산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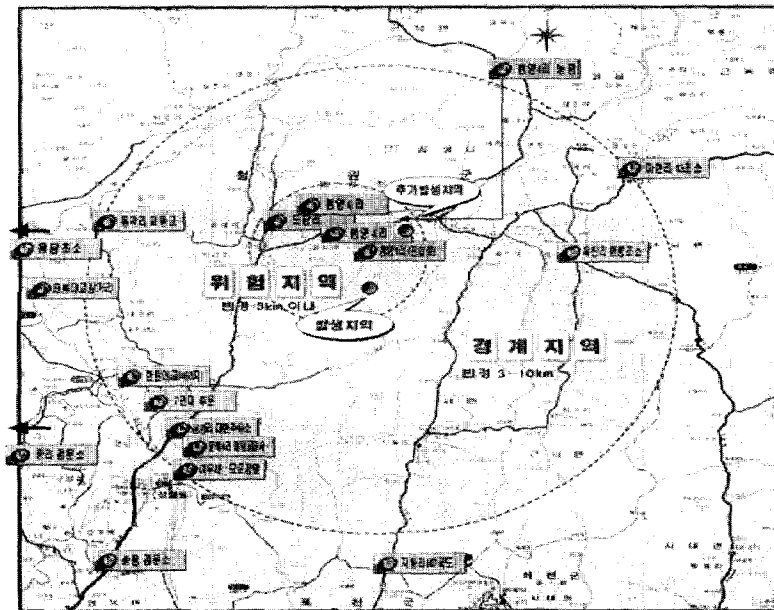


**나. 발생농장 역학조사**

1) 발생지역 개요

가) '02년 4.16일 신고된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흥농장에서 최초 발생이 확인된 이후 '02년 4.30 일 신고된 농장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총 2건이 발생하였으며, 추가 발생된 농장은 최초발생농장 인근이었다.

(그림 6-2) 2002년 강원도 철원군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지도



2) 역학조사반 구성 및 활동내역

가) 2002년 4월 16일 돼지콜레라 의심축 신고에 따라 검역원의 『돼지콜레라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운용계획』에 의거 역학조사반 (반장 : 역학조사과장)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과 (9명)와 정밀진단과 (2명)의 직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현장 역학조사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 (1) 역학조사 활동기간 : 2002.4.17일 ~ 5.3일
- (2) 동원된 연인원 : 115명
- ※ 5.3일 이후는 필요시 부분적으로 보완조사 추진

### 3) 역학조사 추진내용

가) “돼지콜레라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질병현지조사표를 기준으로 한 “긴급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농장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역학내용을 조사·기록하였다 (표 3).

나) 현지조사 점검 내용

- (1) 농가현황, 사육규모, 질병발생 경위, 인근농가 현황
- (2) 돼지의 구입·위탁(분양), 돼지 출하 관련(운반인, 차량, 중개인 등)
- (3) 동물약품 구입현황, 사료 구입현황, 출입수의사 등 출입자 현황
- (4) 분뇨처리, 잔반처리, 폐사축 처리
- (5)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 여행사실, 야생동물 출몰현황
- (6) 농장 기왕력, 농장 근무자 등

### 4) 농장별 발생 현황 및 역학조사

가) 농장별 돼지콜레라 발생현황 및 역학조사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 (그림 6-3) 역학조사반 활동 현황



<강원 철원지역 역학조사팀 현지 활동>



<발생지역 인근농장에 대한 탐문조사>

〈표 6-3〉 돼지클레라 긴급 역학조사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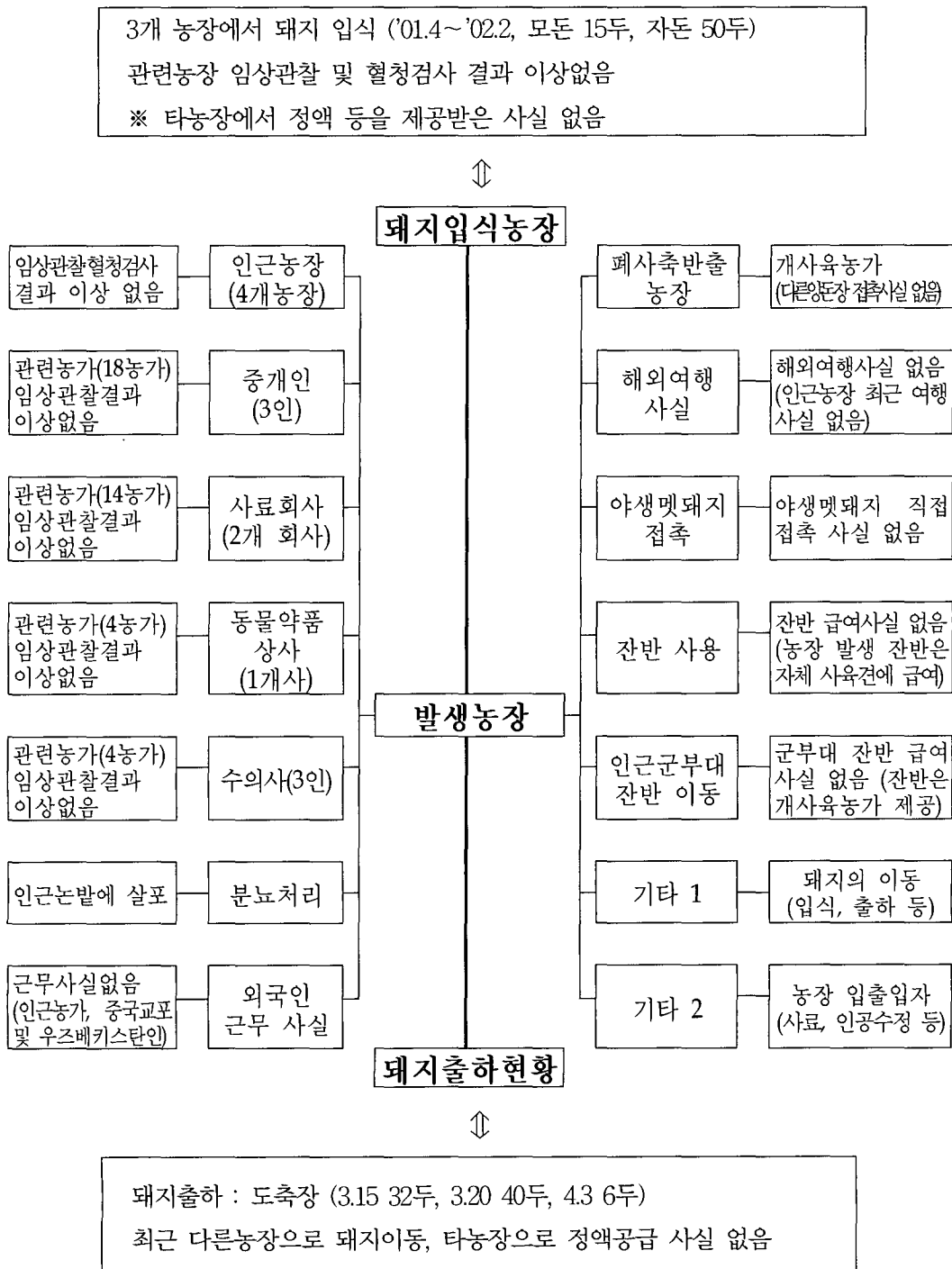
긴급 역학조사서					
<input type="checkbox"/> 주 소					
<input type="checkbox"/>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농장명	회사명	기관명			
<input type="checkbox"/> 농장일 경우					
◦ 사육규모	사육경력 :				
◦ 축 종					
◦ 발생두수	폐사두수 :				
◦ 주요 임상증상					
◦ 기타 사항					
◦ 사료구입현황					
◦ 외부 입식돈 현황					
◦ 출하현황					
- 도축 출하현황 : 중개인	도축장명				
- 분양 출하현황 : 중개인	농장명				
◦ 내·외국인 방문자 현황					
- 농장 방문자					
- 외국인 농장 거주자					
- 외국 방문(여행)					
◦ 분노 처리현황					
◦ 예방백신 접종현황					
<input type="checkbox"/> 주요 임상증상					
◦ 피부병변 (	귀	복부	등부위	서혜부(사타구니)	발적
	청자색	사지	결막염	안구충혈 )	
◦ 발열					
◦ 한 곳에 포개져 모여 있음					
◦ 견좌자세					
◦ 후구마비(다리가 심하게 절음)					
◦ 설사					
◦ 변비					
◦ 기침					
◦ 복식호흡					
◦ 기타 증상					

〈표 6-4〉 농장별 돼지클레라 발생현황 및 역학조사 내용 요약

구 분	① 신흥농장(신흥렬)	② 임송농장(송운복)
주 소	강원 철원	강원 철원
신고일(진단일)	'02.4.16(4.18)	'02.4.30(5.1)
축종, 사육두수 (발생두수)	돼지, 354두 (108)	돼지, 2,131두 (8)
임상증상	발열, 기침, 설사, 피부 자적색 반점, 견좌자세, 후구마비	사료섭취 감소, 위축돈 폐사
발생농장 살처분두수	354두	2,131두
사육형태	일 괄	일 괄
분양(도축) 및 입식	3.15, 20, 4.3 도축출하 2월 모든 입식	4.25, 26 도축출하 3.20 모든 입식
출하자 및 중개인	철원도축, P씨, L(2)씨	철원도축, J씨
사료회사	K사료, P사료, J사료	M사료
동물약품	P동물약품	P동물약품
진료수의사(컨설팅)	A, K, J원장	없 음
분뇨처리	자가처리 (논밭살포)	정화조 차량 수거
야생동물	야생멧돼지	없 음
해외여행	없 음	없 음
외국 인근로자	없 음	없 음
인공수정 관련	자연종부	K사
기타 특기사항	인근농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흥농장과 직선거리 1Km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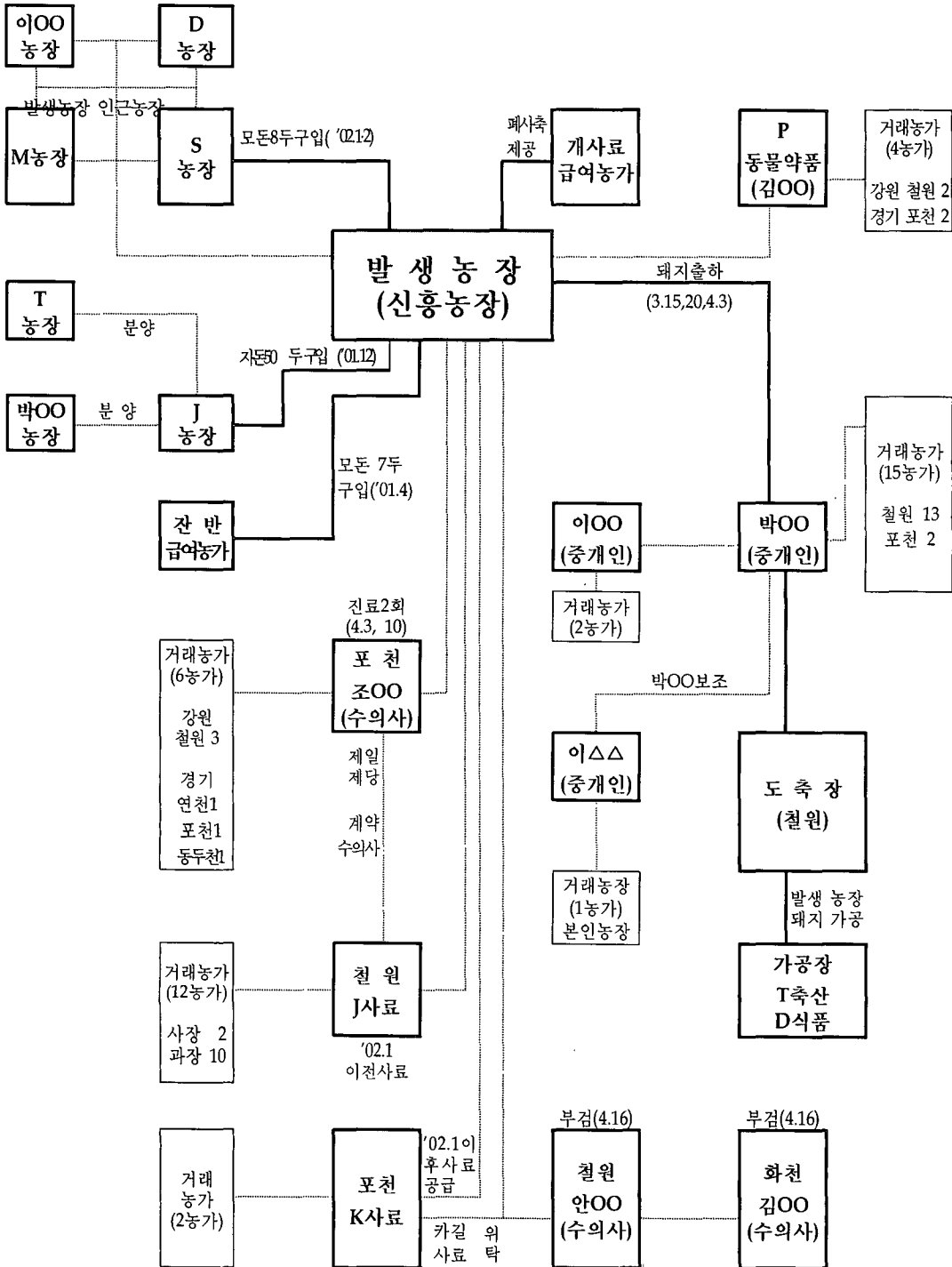
2) 이러한 기초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장의 방역, 위생관리 상황, 동물과 사람 등의 출입현황 및 다른 양돈장 또는 축산 관련시설과 역학적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그림 4, 5 및 표 4 와 같다.

(그림 6-4) 최초 발생농장(신흥농장)에 대한 돼지클레라 발생역학 및 위험도 분석





(그림 6-5) 최초발생농장(신흥농장)의 출입차량 및 출입자 관련 추적조사 현황



※ 발생농가 출입자 : 18명, 출입자와 역학적으로 관련되는 농가 : 51농가

〈표 6-5〉 최초발생농장(신흥농장)의 일자별 출입자(차량)현황 및 처리상황

농장 방문자	월·일	농장 처리상황
	13	13
	14	14
박OO (중간상) : 출하돼지 인수	15	15 32두 출하
	16~18	16~18
	19	19
박OO (중간상) : 출하돼지 인수	20	20 40두 출하
	21~24	21~24
	25	25 J 사료 질병컨설팅 요청 (사료교체 검토)
	26	26
	27	27
J사료 업OO과장 농가방문	28	28
	29	29
	30	30
	31	31
	1	1
박OO (중간상) : 출하돼지 인수	2	2 6두 출하
J사료 업OO + 조OO(계약수의사); 단독의심 → 설사사료 채취 검사의회 (서울대 채OO교수)	3	3
	4	4
(결장염통보, 4.8 FAX 받음)	5	5
	6	6 S농장(이OO사장, 김OO농장장) 질병 자문
K사료차량 출입 ?	7	7 P동물약품 (김OO) 린스마이신 구입요청
P동물약품 김OO약품 전달 (길에서 전달)	8	8
	9	9
J사료 업OO + 조OO 재방문; 살모넬라 처방지시(돼지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의회 권유)	10	10
개사육농가(박OO) : 폐사축 가져옴(비육돈 6두)	11	11
	12	12
돼지돈 급여 개사육농가(박OO) : 어린 육성돈 5~6두 가져옴 ※ 발생농장에서 총5회 약 30두 반출	13	13
	14	14
J사료 업OO 재방문(4.18일쯤 강원대 한OO교수에게 가검물 의뢰할 계획)	15	15
개사육농가(박OO) : 폐사돈 7~8두 가져옴 ※ 4.17 방역요원들이 폐사돈 모두 수거 K사료 김OO+안OO(수의사) + 김OO(수의사) 부검실시(안OO) 결과 돼지콜레라 의심 부검재료 서울대 채OO교수에게 병성감정 의뢰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발생현장 긴급 출동	16	16 K사료 문제제기, K사료 관계자 방문 요구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관계관 긴급 출동	17	17 발생지역 긴급 차단방역 실시(가축위생시험소)

## 다. 발생농장 정밀검사 결과

〈표 6-6〉 항원항체검사 결과

농장명	항원 PCR		항체 ELISA			비 고
	검사두수	양성두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양성율(%)	
신흥농장	16	12	28	24	85.7	장기포함
임송농장	40	40	35	5	14.3	"

### 1)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 가) 최초 발생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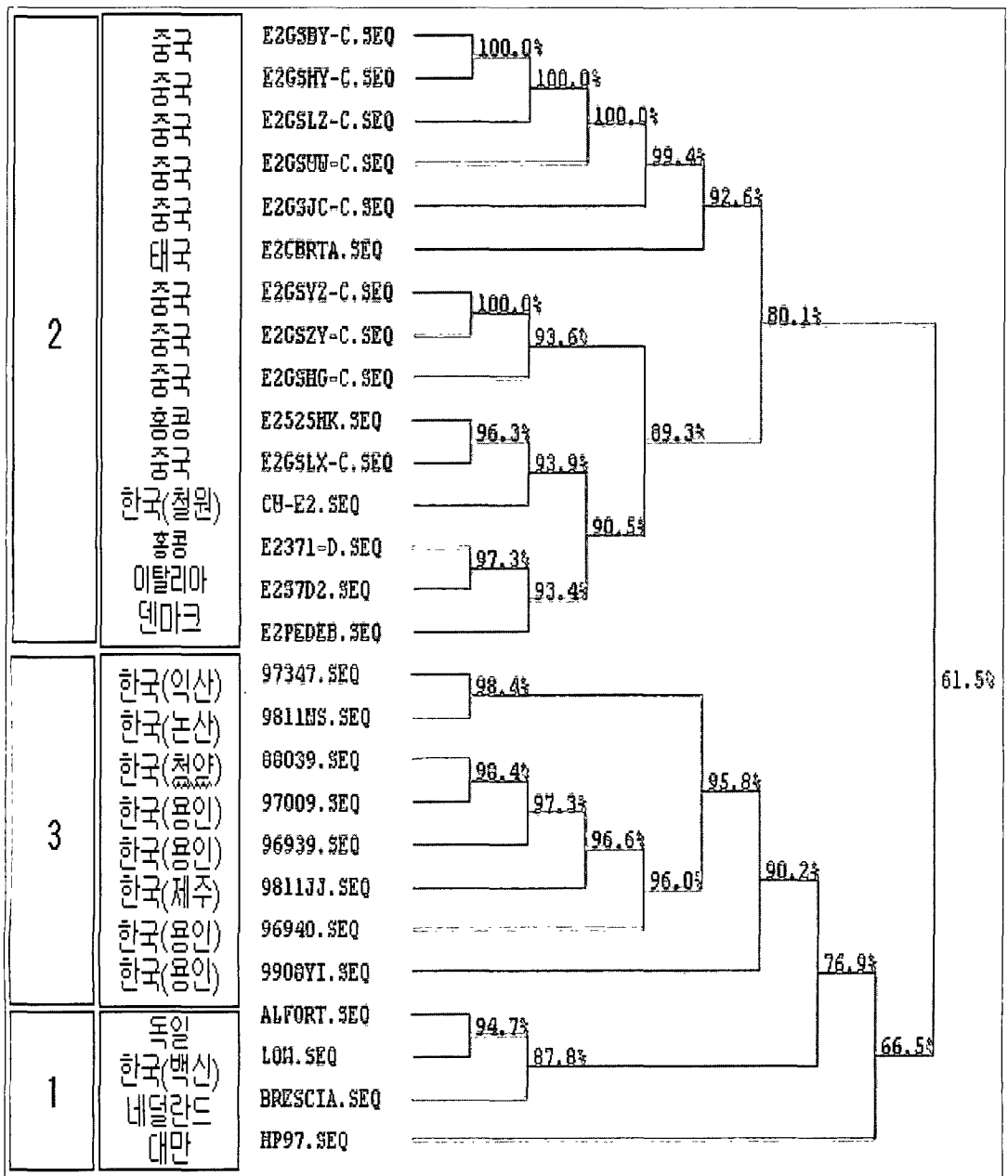
- (1) 최초 발생농장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기존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Group 3)와는 다른 유전자형 (Group 2)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기존 국내 분리주 ('99년 용인 분리주)와 백신주 (LOM)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전자 염기서열 일치율이 각각 87.5%와 84.3%로 과거 국내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다른 바이러스로 분류되었으며,
- (3) 유전자 은행(Gene bank)에 등록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일치율을 조사한 결과, 중국 간서성 등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Group 2)의 염기서열과 95% 이상으로 일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

※ 지금까지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은 "Group 3"에 속하며, 기존의 국내 분리주들은 유전자 염기서열 비교 결과 94.2% 이상 일치하고 있다.

### 2) 추가 발생농장

- 가) 최초 발생농장(신흥농장)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와 추가 발생농장(임송농장)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두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100%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그림 6-6) 철원에서 분리된 돼지클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E2 region) 염기서열 분석 결과



라. 최초 발생농장 발생원인 분석

최초 발생농장의 발생 원인 분석은 국내 잠복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과 해외에서 새로 유입한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가능성으로 대별하여 분석하였다.

## 1) 국내 잠복된 바이러스에 의한 재발 가능성

발생농장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와 최근 국내 발생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잠복해 있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의해 재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가) 최초 발생농장에서 분리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1999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유전형(Group 3) 과는 다른 유전형(Group 2)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나) 국내 돼지콜레라 청정화 계획에 따라 3년('97~'01) 동안 집중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체 돼지의 돼지콜레라에 대한 면역형성율이 '99.12월부터 95%이상 23개월 동안 높게 유지되었고, 1999년 8월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2년 동안 국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다.
- 다) '99.8월 이후 전국에 사육되는 돼지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항원검사 결과 '02.4월 현재까지 모두 음성이었다.

## 2) 외부 유입에 의한 가능성

### 가) 발생농장 인근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중국교포)

- 발생 농장 인근 농장 (M 농장)에서 최근 외국인 근로자가 한달 근무 이후('01.11~'01.12, 중국교포) 퇴사한 사실이 있었다.
- ※ M 농장은 모돈만 위탁 사육하는 농장으로 대부분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인근 신흥농장은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가 없어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때 바로 발병 될 수 있다.
- ※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인근농장(M 농장, 이 OO) 출입 중국교포에 대해 추적 협조 요청 (2002.4.27) 하여 조사였으나 추가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표 6-7〉 추적대상자 인적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성 명	김 OO	- 2001년 11월 6개월 비자로 입국
신분증번호	2321 311 9410 7291 ××××	
생년월일	1941.7.29	
여권번호	G 0199××××	
거 주 지	흑룡강성	
입 국 일	2001년 11월 28일	
출입국신고서상 연락처	011-234-084 * (끝자리 모름)	

- ▷ 상기 김 OO는 발생농장 인근 M 농장(축주 이 OO)의 농장관리인으로 2001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1개월 근무한 사실이 있음
- ▷ 조사협조 내용 : 상기 김 OO의 현재 소재지, 중국에서의 양돈장 출입 등 돼지콜레라 관련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M 농장에서 근무하기까지의 경로 등에 대한 관련기관 조사 협조요청
- ▷ 그러나, 상기인에 대한 추적조사 불가

#### 나) 야생 멧돼지를 통한 질병 발생 가능성

탐문조사 결과 신흥농장의 인근농장 및 주변에서 야생멧돼지가 자주 출몰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국내 야생 멧돼지에 대한 검사결과, 아직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검색된 적은 없었다 (표 8).

〈표 6-8〉 야생멧돼지에 대한 돼지콜레라 항원검사 실시 현황 ('99~'02)

연도	지역별 검사두수								합 계	비 고
	강원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1999	6			2	2		2	16	28	*전두수 돼지콜레라 음성 판정
2000	8	4	8	3	13	14	19	2	71	
2001	1			11	1	34	11		58	
2002	30	5		9	10	4	1	1	60	
계	45	9	8	25	26	52	33	19	217	

(그림 6-7) 돼지콜레라 발생전후 야생멧돼지 항원검사 현황 (2002)



※ 외국의 경우 돼지콜레라가 전파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야생멧돼지가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DMZ 지역 인근의 야생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잠복감염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독일에서 발생하는 돼지콜레라의 약 10%가 야생멧돼지에 의한 것이나, 실제 야생멧돼지의 항체 양성율은 1.8%임
- 프랑스에서도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야생멧돼지의 항체 양성율은 0.5% 정도임

- ▷ 상기 김 OO는 발생농장 인근 M 농장(축주 이 OO)의 농장관리인으로 2001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1개월 근무한 사실이 있음
- ▷ 조사협조 내용 : 상기 김 OO의 현재 소재지, 중국에서의 양돈장 출입 등 돼지콜레라 관련 역학조사에 필요한 사항 및 M 농장에서 근무하기까지의 경로 등에 대한 관련기관 조사 협조요청
- ▷ 그러나, 상기인에 대한 추적조사 불가

**나) 야생 멧돼지를 통한 질병 발생 가능성**

탐문조사 결과 신흥농장의 인근농장 및 주변에서 야생멧돼지가 자주 출몰하였음이 확인되었으나, 국내 야생 멧돼지에 대한 검사결과, 아직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검색된 적은 없었다 (표 8).

**〈표 6-8〉 야생멧돼지에 대한 돼지콜레라 항원검사 실시 현황 ('99~'02)**

연도	지역별 검사두수								합 계	비 고
	강원	경기	인천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북		
1999	6			2	2		2	16	28	*전두수 돼지콜레라 음성 판정
2000	8	4	8	3	13	14	19	2	71	
2001	1			11	1	34	11		58	
2002	30	5		9	10	4	1	1	60	
계	45	9	8	25	26	52	33	19	217	

**(그림 6-7) 돼지콜레라 발생전후 야생멧돼지 항원검사 현황 (2002)**



※ 외국의 경우 돼지콜레라가 전파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야생멧돼지가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DMZ 지역 인근의 야생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잠복감염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독일에서 발생하는 돼지콜레라의 약 10%가 야생멧돼지에 의한 것이나, 실제 야생멧돼지의 항체 양성율은 1.8%임
- 프랑스에서도 야생멧돼지에 의한 전파가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야생멧돼지의 항체 양성율은 0.5% 정도임

### 다) 잔반(남은 음식물)을 통한 전파 가능성

인근 군부대에서 잔반을 배출하고 있기는 하나 그 잔반은 개 사육농가로 전량 운반되고 있고, 발생농가에서는 잔반 급여사실이 없어 잔반을 통한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3) 원발농장의 돼지콜레라 발생 유력요인

발생농장 인근농장의 외국인 근로자(중국교포)를 통한 기계적인 전파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신흥농장의 인근농장 및 주변에서 출몰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마. 인근농장 전파양상 및 요인분석

1) 철원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은 2개 농장에 국한되어 소규모로 발생하였으며 최초 발생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행정구역상 서로 다른 부락에 위치하고 있으나, 농로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어, 두 농장을 오가는 사람(차량)들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 2) 질병전파 추정 요인

- 발생농가 출입자를 통한 전파 : 최초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축주 자신, 동네사람, 사료차량, 출하차량 등)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3) 타 지역 전파 가능성

가)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 돼지에 대한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 및 매몰조치(10농가, 8,853두)로 다른 지역으로의 질병 전파가 효율적으로 차단되었다.

#### 나) 추적조사 및 예찰 활동

-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전파위험도에 따라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검역원 및 강원도 합동으로 특별 임상관찰팀을 편성·운영하였으며,
- 발생농장과 관련된 농가에 대한 목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 ▷ 긴급 예찰 농가는 104개 농장(강원 47농장, 경기 57농장)으로 임상관찰 결과 돼지콜레라 감염 의심농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 다) 혈청학적 예찰 활동

-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혈청학적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총 50개 농장 2,045두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 경계지역 : 47농가, 1,815두, 위험지역: 3농가, 230두



## 바. 철원분리주의 병원성 시험결과

### 1) 병원성 시험 경위

'99년까지 국내에서 유행했던 돼지콜레라는 급성형, 만성형 등 여러 가지 임상형이 보고된 바 있다. '02년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경우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이 없었던 유전자형으로 확인됨에 따라 철원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병원성을 과학적으로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동물접종 시험을 실시하여 그 임상형을 확인하였다.

### 2) 실험재료 및 방법

가) 실험장소 : 검역원 해외전염병과 차폐실험실

나) 공격접종 바이러스 :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철원돼지의 장기유제액

다) 접종동물 : 총 20두(접종군 10두, 동거군 5두, 대조군 5두)

라) 접종경로 : 근육접종

마) 관찰사항 : 임상관찰, 체온측정, 백혈구계수, 바이러스항원·항체검사, 병리해부학적 검사 등

### 3) 실험결과(임상증상 및 병리해부소견)

가) 주요 임상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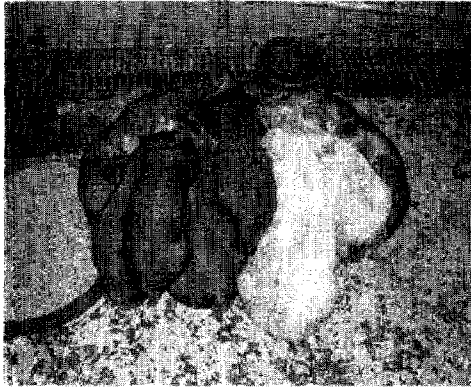
#### (1) 접종군

- 접종 3일째부터 백혈구 감소와 체온상승(발열)이 관찰되었으며, 접종 7일째부터 폐사가 발생하여 접종 20일째까지 90%가 폐사하였다.
- 접종 후 3일째부터 비즙, 침, 분변 등으로 바이러스 배출이 확인되었으며, 5일째부터 바이러스 혈증이 시작되었다.

#### (2) 동거군

- 접종돈의 비즙, 침,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가 배출된 지 7일째(접종 후 10일)에 백혈구 감소와 발열이 관찰되었고, 폐사는 10일째(접종 후 13일)에 발생하여 실험 종료일까지 60%가 폐사하였다.
- 접종군이 바이러스를 배출한지 4일째(접종 후 7일)에 분변에서, 7일째(접종 후 10일)에 비즙에서, 14일째(접종 후 17일)에는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었다.

(그림 6-8) 2002년 돼지클레라 절원분리주를 접종한 돼지의 임상증상 및 해부병변



(1) 고열로 인한 포개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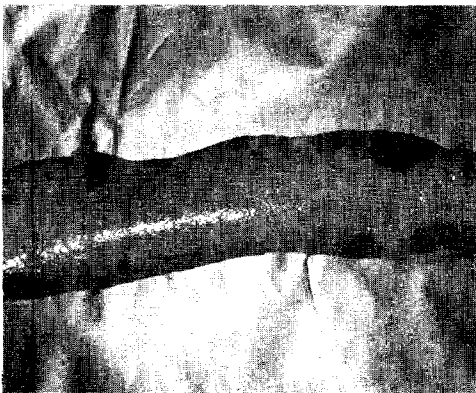
(2) 피부 청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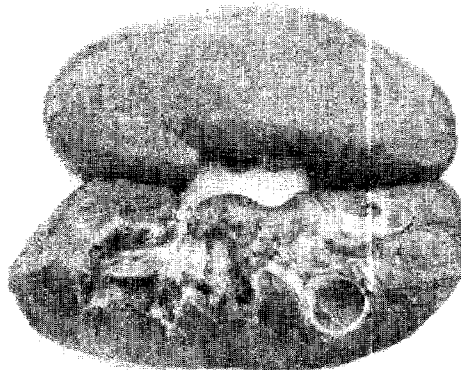
(3) 후지마비



(4) 악하림프절의 출혈종대



(5) 비장변연부의 출혈성 경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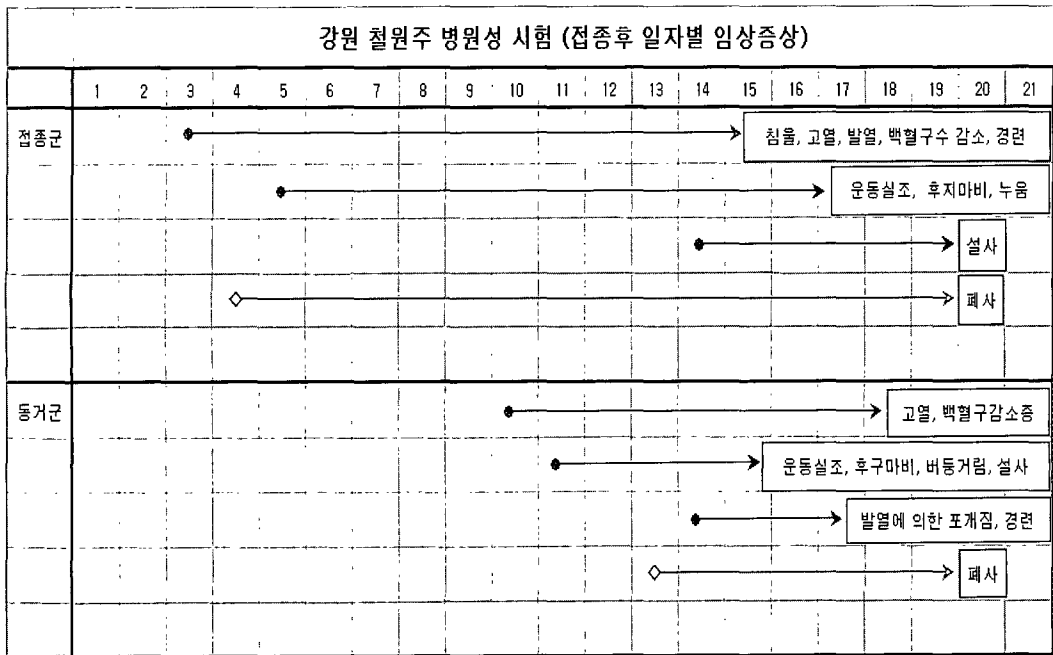


(6) 신장의 점상출혈

2) 병리해부소견(폐사돈)

가) 피부청색증과 림프절의 주연성출혈, 비장의 출혈성 경색 및 신장의 점상출혈, 대장의 단추양 궤양 등 접종군과 동거군에서 모두 돼지 콜레라의 전형적인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림 6-9) 돼지콜레라 철원분리주의 병원성 시험결과



4) 실험결과 종합

'02년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유전자형 : Group 2)는 기존의 국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유전자형 : Group 3)의 유전자형과 다를지라도 병원성은 과거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동일한 급성형의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나타냈다.

사. 긴급 방역추진 상황

<표 6-9> 발생현황

축주	주소	축종	사육규모	신고일	양성판정일
신흥열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 1리 668	돼지	354	4. 16	4. 18
송윤복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 4리 262-7	돼지	2,131	4. 30	5. 1

## 1)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농장에 대한 가축 살처분매물(총 10농가 8,815두)

- 신흥농장의 잔여돼지(246두)를 전부 살처분·매물(4.18~19)
  - 300m이내 인근 4농가 4,040두도 모두 살처분·매물(5.3~4)
- 추가발생된 임상농장 잔여돼지(2,115두) 전부 살처분·매물(5.1~2)
  - 300m이내 인근 4농가 2,414두도 모두 살처분·매물(5.2~3)

## 2) 오염우려 물품 등 폐기 조치

- 발생농장 및 인근 농장의 사용하다 남은 사료 등 폐기 조치
- 발생농장산 출하·도축 물량 등의 폐기(20,195Kg : 6개업체 보관분)

## 3) 가축의 이동제한 및 사람차량 등의 출입 통제

- 군경·공무원·축협 합동으로 이동통제 철저
  - 위험지역(반경 3Km이내)은 6.11일(40일간)까지, 경계지역(반경 3~10Km)은 5.17(15일간)까지 생축 이동통제
  - 이동통제 초소( 17개소 : 위험지역 7개소 + 경계지역 10개소, 149명 : 군·경 23 포함)에 통제(소독) 초소를 운영하면서 민·관·군·경 합동근무로 불법 이동가축 감시와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다.
  - 이동제한 지역내 사육돼지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실시

## 4) 특별 임상관찰 실시

## 〈표 6-10〉 임상관찰 대상농가

구분	위험지역(3km내)	경계지역(3~10km사이)	계
농가수	11	47	58

## 가) 임상관찰 실시

- 특별 임상관찰 기간 : '02. 5. 1~ 5. 15
- 특별 임상관찰 주기 : 2일마다 담당 농가를 방문하여 임상관찰 실시
  - 임상관찰 일자 : 5월 1일, 3일, 5일, 7일, 9일, 11일, 13일, 15일
  - ※ 임상관찰을 실시하지 않는 날은 전화로써 이상유무를 확인
- 검역원 및 강원도 합동으로 특별 임상관찰팀을 편성하여 운영
- 특별 임상관찰팀 : 2인 1조로 20개팀을 편성(검역원 10, 강원도 10)

- 1개 팀당 2~3개 농가를 전담하여 담당 농가만 방문하여 임상관찰
- 시료채취 전담팀 운영

나)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62농가, 7,239두)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해제 실시

- 지역별 이동제한 해제 : 경계지역(02.5.19), 위험지역(02.6.12)

#### 5) 추가발생 및 확산 위험 제거를 위한 예찰 활동

가) 예찰 목적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청정국 복귀를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
-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의 사전 차단

나) 예찰 방법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돼지콜레라 전파 위험도가 높은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검역원과 강원도 합동 특별 임상관찰팀에 의한 지속적인 목적예찰을 실시하였다.

다) 예찰 대상

-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의 축주가 만난 축산농가
- 발생농가를 출입한 사료·동물약품·인공수정 관련자(차량)등이 방문한 축산농가

라) 예찰 결과

- 예찰 실적 : 104농가
- 긴급예찰(목적예찰)농가 : 강원 47농가, 경기 57농가
- 예찰 결과 :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음

#### 6)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보고

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하여 경계지역 47농가 1,815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 두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2002년 5.19일 경계지역을 해제하였고,

나)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완료(5.2일)후 40일이 경과한 다음 추가 발생이 없고, 경계 및 위험지역 돼지에 대한 역학·혈청·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 감염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2002년 6.12일자로 돼지콜레라 발생 종식 보고를 하였다.

#### 7) 보상금, 지원대책 등

#### 8) 유전학적 역학분석

가) 철원지역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국내 분리주와는 구별되며, 동북아시아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유전자 분석 및 기존 국내분리주(용인 분리주) 및 백신주(LOM)와 비교결과 각각 87.5% 및

84.3%로 기존의 국내에서 분리 보고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와 차이가 있음.

- 중국 간서성 등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염기서열과 95%이상 일치

9) 역학조사 결론

가) 역학조사 결과 2002년 강원 철원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Genotype이 Group 2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리 (Group 3)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로 밝혀져 국내 재발이 아닌 동북아 등지에서 유입·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유전자 은행에 등록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일치율 조사결과Group 2에 속 하며 중국 간서성 등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염기서열과 가장 일치율(95% 이상) 이 높았으며,
- 국내의 유입 요인은 발생농장 인근농장 외국인 근로자(중국교포)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높았다.

나) 추가 발생농장의 전파요인은 최초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축주 자신, 동네사람 등) 및 차량(사료차량, 출하차량 등)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발생농가 주변 감수성 동물의 신속한 살처분 조치로 다른 지역으로의 질병전파가 효율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 입식시험 결과

<표 6-11> 돼지콜레라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 가축 입식시험 실시

입식 농가	시험입식전 진행사항							시험입식후 진행사항						재입식일
	입식전 농가 정검 (일시)	시험가축						입식일	축종	두수	입식후 검사현황			
		축종	두수	혈청검사			입식제외 가축				의뢰일	완료일	검사 결과	
				의뢰일	완료일	검사 결과								
신흥열	8.21	돼지	4	8.22	8.22	음성		8.26	돼지	4	9.16	9.16	음성	10.26
송운복	8.21	돼지	12	8.22	8.22	음성		8.26	돼지	12	9.16	9.16	음성	10.12
이흥재	8.21	돼지	4	8.22	8.22	음성		8.26	돼지	4	9.16	9.16	음성	
조성은	8.21	돼지	16	8.22	8.22	음성		8.26	돼지	16	9.16	9.16	음성	10.24

-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및 인근농가 포함 4개 농장(36두)에 대하여 입식시험 결과 이상이 없었음.

## 자. 평가 및 사후 대책

### 1)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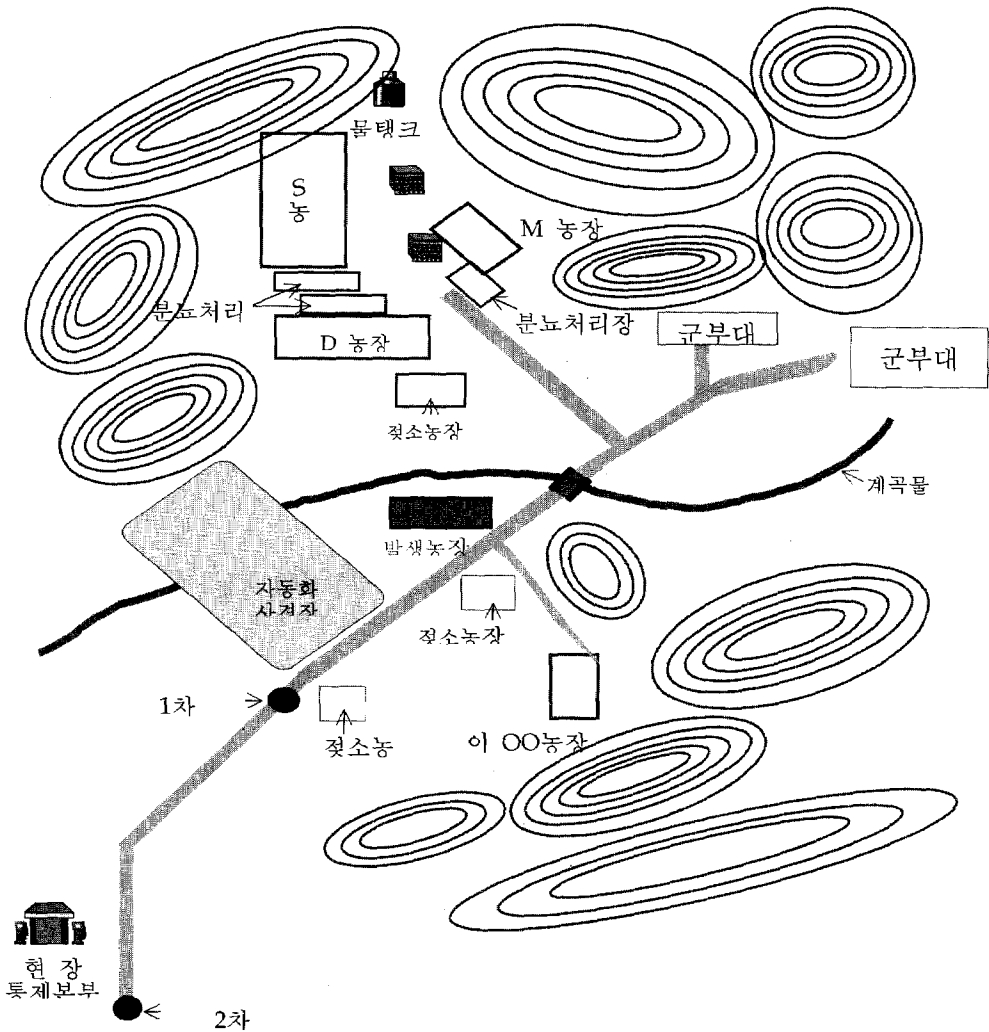
- 가) 예방접종 중단 후 8개월까지는 항체가 유지되고 구제역 특별방역기간(2~6월)에는 소독 강화로 돼지콜레라 재발 위험이 적으나 항체가 소실된 후에는 소독 등 방역 소홀시 발생위험이 상존
- 나) 돼지콜레라· 구제역 발생사례를 보더라도 소규모 농가(300두 미만)는 정부에서 소독약 공급 및 소독을 실시해 줌으로써 어느정도 방역관리가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율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 대규모농장에서 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음.
- 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이후 양돈농가 및 국민적 관심이 저조
  - 철원 발생농가를 보더라도 소독· 차단방역 등이 소홀하고 신고의식도 부족한 상태임.
  - 일부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약 수거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강제 수거 지난

### 2) 향후 대책

- 가) 돼지콜레라 재발 가능성이 높은 연말까지 양돈농가 “특별방역 대책” 추진
  - 농장 소독· 예찰활동· 혈청검사 강화
    -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강화, 가축· 사료· 약품수송 차량의 소독관리 강화, 혈청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항체보유 모돈 등 조기도태 추진
  - 과거 발생지역과 항체가가 낮은 지역을 우선한 방역추진
  - 질병발생 조기신고 체제 보강
    - 익명신고제 운영, 지역담당관제 재정비, 명예 가축방역감시원 임명· 위촉, 양돈농가 전염병 신고방법 등 홍보· 교육 강화
  - 방역규정 위반자 등 법적 처분 철저 -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
  - 돼지콜레라 예방약 수급 등 관리 강화
    - 예방접종 중단후 재발생 대비 돼지콜레라 생독 예방약 비축· 관리
    - 시중 유통· 보관중인 돼지콜레라 예방약 유통금지 및 수거조치
    - 약사감시 강화 : 제조업체 및 판매업소, 양돈농가
  - 정부· 단체· 농가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 정부 : 위험지역 항원· 항체검사, 방역규정 위반자 처분 등
    - 단체 : 농가홍보, 공공지역· 시설의 소독지원 등
  -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결과 인터넷 공개

- 남은 음식물 급여에 대한 점검 강화
- 관련 제도 개선 등 검토
  - “돼지클레라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보완·개정
    - 이동제한지역 돼지 도축 출하시 임상검사, 정밀검사 기준 및 이동통제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
    - 혈청검사 등에 의한 예방접종 실시농가 적발기준 등 보강
    - 신고시점에 따라 살처분·예방접종·이동제한·도축출하 기준 조정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운영규정(농림부고시)” 제정

(그림 6-10) 철원 돼지클레라 최초 발생농장 및 인근 지역 현황





〈표 6-12-1〉 발생농장 인근주민 대상 설문 결과

조사 대상자					마을 출입 차량	야생동물			
일자	구분	직업	나이	축종		유무	종류	멧돼지 출몰지	계절
4.28	1	농업	58	개1	×	유	노루 꿩 고라니 멧돼지	사격장 뒷편 야산 옥수수, 수박 밭	가을-봄
	2	농업	60	흑돼지	사료차	유	노루 꿩 고라니 멧돼지	사격장 뒷편 야산 옥수수, 수박 밭	가을-봄
	3	상업	58	×	모름	유	멧돼지	사격장 뒷편 야산	겨울, 초봄
	4	설비업	57	개6	모름	유	멧돼지	발생농장 인근	가을, 겨울
	5	버섯농업	54	개4	모름	유	야생 고양이	없음	없음
	6	농업	44	개6	모름	유	멧돼지	옥수수밭	가을 겨울
	7	농업	63	개2	모름	유	멧돼지	신흥농장에 많음 초전산 탕크부대	봄
	8	농업	72	×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9	축산	30	젖소40 개3	모름	유	멧돼지	사격장 뒷편 야산	모름
	10	무직	76	개2	모름	유	멧돼지	사격장 뒷편 야산	가을이후
	11	농업	65	×	모름	유	멧돼지 고라니 오소리	사격장 뒷편 야산	봄
	12	축산	43	젖소60	집유차	유	멧돼지	모름	모름
	13	건축업	51	×	분변차	유	멧돼지	옥수수 감자밭	겨울-초봄
	14	상업	45	×	모름	유	멧돼지	사격장 뒷편 야산	겨울
4.29	15	축산	48	젖소70	모름	유	멧돼지	사격장뒷편산, 농공단지 논, 발생농장 인근	모름
	16	모름	69	×	모름	유	너구리, 노루, 멧돼지	산 주변	자주
	17	축산	7~8 0	젖소	?	유	멧돼지	야산(사격장 산)	모름
	18	낙우회회 장	?	젖소60	납골당	유	멧돼지, 너구리, 고라니	옥수수밭	많음
	19	축산	56	160	모름	유	멧돼지	주변 옥수수밭	자주
	20	농업	65	×	모름	유	멧돼지	집 뒤	몇년전까지
	21	농업	66	×	모름	유	멧돼지	산 주변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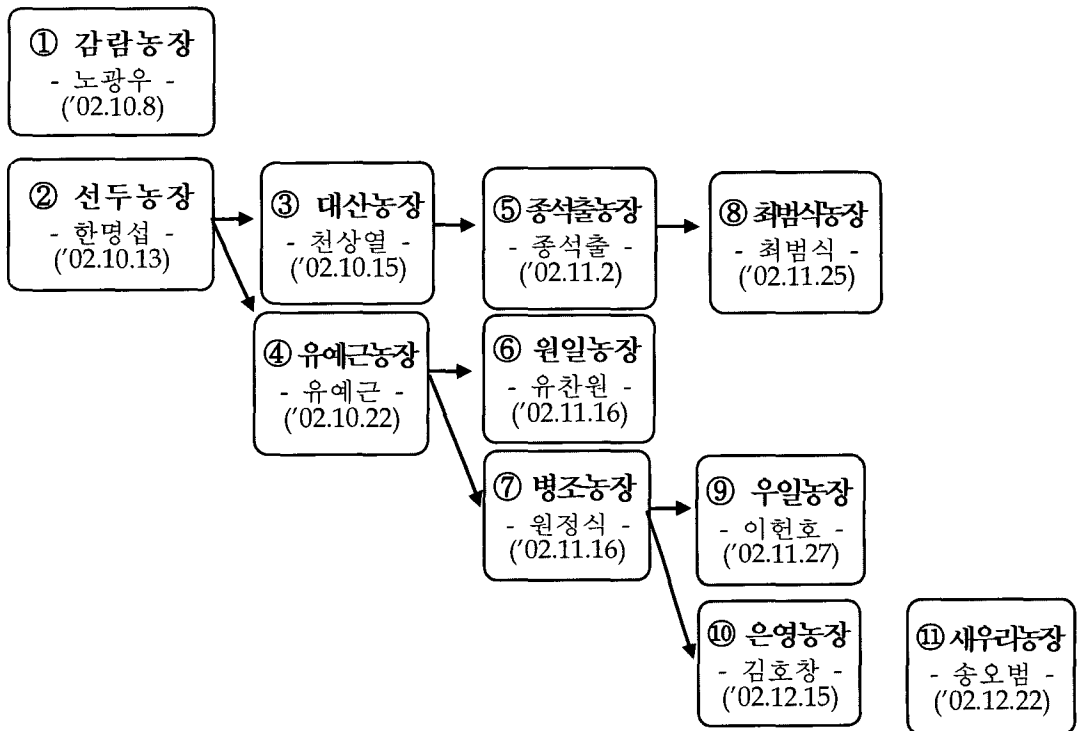
〈표 6-12-2〉 발생농장 인근주민 대상 설문 결과 (계속)

조사대상자	외국인 유무					해외여행 현황				잔반급여사항			외 부 출입자
	일자	구분	유무	국적	근무지 역	시기	본인	인근	여행지	시기	유무	축종	
4.28	1	유	모름	삼성	3-4년 전	×	×	×	×	유	개, 닭	×	남골당 관련차량
"	2	모름	×	×	×	×	모름	×	×	모름	모름	모름	모름
"	3	모름	×	×	×	×	청양4리 낙우회	모름	올3-4 월	×	×	×	×
"	4	유	모름	삼성	모름	×	모름	모름	모름	유	개	×	남골당
"	5	유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농공단 지	모름	×	×	모름	모름	무	×	×	남골당
"	6	유	파키스탄?	발생 인근농 장	작년가 을	×	×	×	×	유	개	×	모름
"	7	유	확인	모름	작년	×	모름	모름	모름	×	×	×	모름
"	8	유	까만사람	모름	해마다	×	모름	모름	모름	×	×	×	모름
"	9	×	×	×	×	×	모름	모름	모름	유	개	×	3월부터 외부차량 출입통제
"	10	유	모름	이OO (소)	몇년전	×	×	×	×	유	개	×	남골당
"	11	유	모름	발생농 장인근	작년 겨울	×	×	×	×	×	×	×	×
"	12	유	모름	모름	3-4년 전	×	모름	모름	모름	유	개	×	남골당
"	13	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소농가	2년전	×	모름	모름	모름	유	개	×	×
"	14	×	×	×	×	×	×	×		유	개	×	모름
4.29	15	유	파키스탄	송OO (양 돈)	작년 초까지	×	유	모름	2월	모름	모름	모름	모름
"	16	유	동남아시아	돼지 농장	작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모름
"	17	모름	모름	모름	모름	×	유	중국 동남아	몇년전	×	×	×	모름
"	18	유	파키스탄	송OO	재작년	유	유	캐나다	2월말	모름	모름	모름	모름
"	19	유	동남아	송OO	작년	유	유	중국, 동남아	'01.11	유	개	×	모름
"	20	유	모름	소농가	2~3년 전	×	×	×	×	모름	모름	모름	모름
"	21	모름	모름	모름	모름	×	×	×	×	모름	모름	모름	모름

### 3.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역학조사

#### 가. 발생역학 개요

- 1) 발생기간 : 2002. 10.8 ~ 12.22
- 2) 총 발생농장 : 11개 농장(인천강화5, 경기김포4, 인천서구1, 경기이천1)
- 3) 원발농장 : 2개농장(인천강화 : 노광우, 한명섭)
- 4) 2차 발생농장 : 9개농장(천상열, 유예근, 종석출, 유찬원, 원정식, 이현호, 최범식, 김호창, 송오범)
- 5) 최초발생요인 : 해외여행객
- 6) 2차 확산요인 : 오염된 사람, 차량, 물품의 이동
- 7) 발생 및 확산경로



\* ( )는 발생일(진단일) 표시

## 나. 발생농장 역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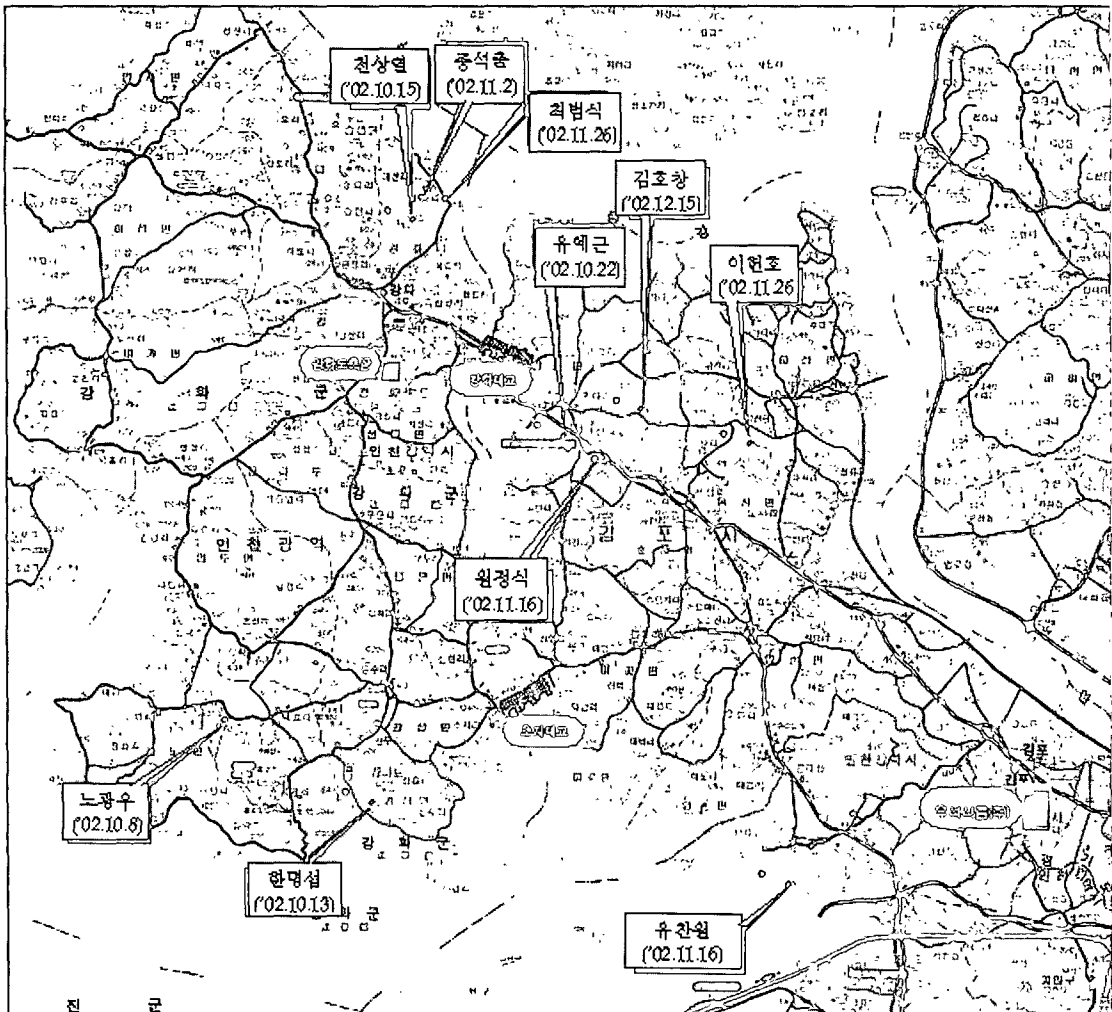
### 1) 발생지역 개요

가) 2002년 10.8일 최초 농가(노광우; '02.10.7 신고)에서 발생이 확인된 이후 2002년 12.22일까지 총 11건이 발생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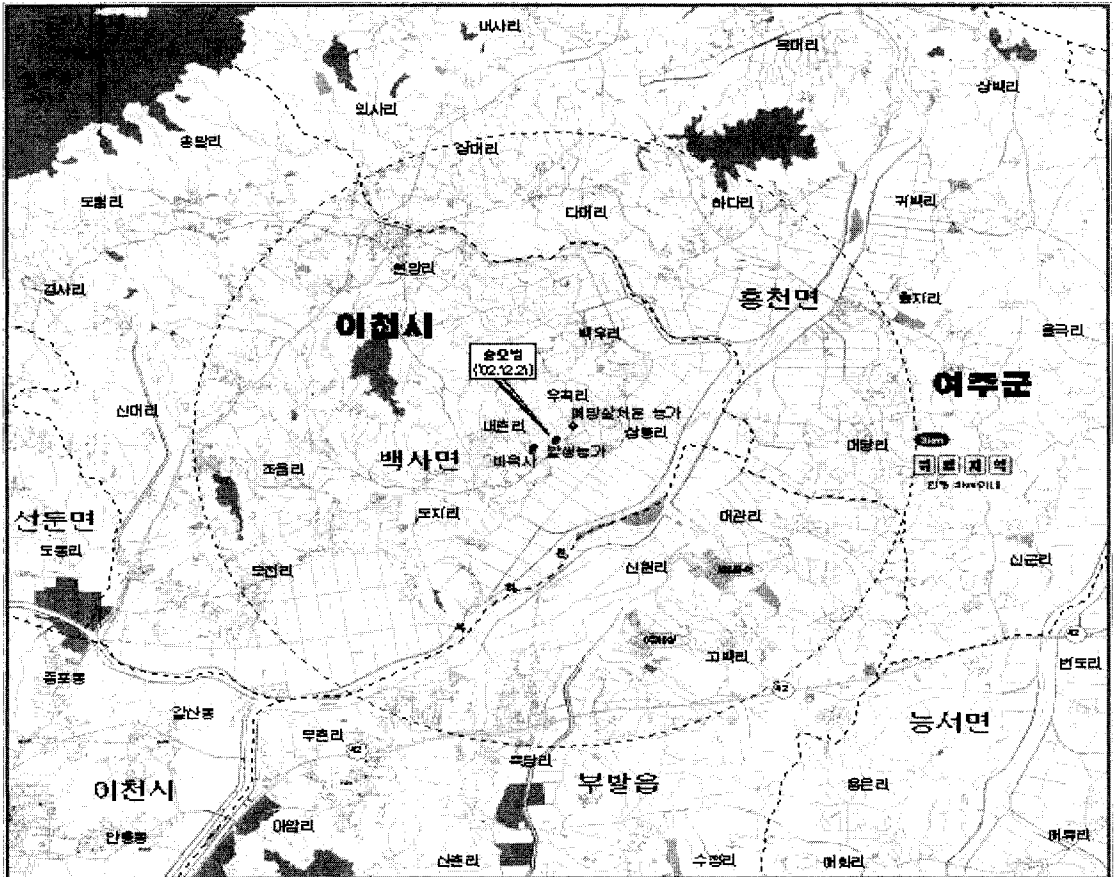
나) 주로 2개 지역(강화, 김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고, 인천 서구 및 경기 이천지역에 산발적으로 각 1농가씩 발생하였다.

※ 강화(5농가), 김포(4농가), 인천 서구(1농가), 경기 이천(1농가)

(그림 6-11) 인천광역시(서구강화)와 경기도(김포) 지역 돼지클레라 발생 분포



(그림 6-12) 경기 이천지역 돼지콜레라 발생 지도



## 2) 발생농장 역학조사

가) 신고된 의심축이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진단됨에 따라 역학조사반이 발생농장에 2인 1조로 긴급 투입되었고, “돼지콜레라긴급행동지침”에 의거, 질병현지조사표를 기준으로 하여 농장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역학내용을 조사하고 기록하였다.

### 나) 현지조사 내역

- (1) 농장의 일반 현황 : 농가현황, 인근농가 현황 등
- (2) 질병 발생 관련자료
  - 임상증상의 경과, 발생축종, 발생두수, 환축의 나이, 사육규모 등
- (3) 가축 사양 관련자료
  - 돼지의 구입·위탁(분양), 돼지 출하 관련(운반인, 차량, 중개인 등)
  - 동물약품 구입현황, 사료 구입현황, 출입수의사 등 출입자 현황

- 분노처리, 잔반처리, 폐사축 처리

(4) 기타 관련 사항

- 축주, 농장 관련자 및 가족, 친지, 이웃주민 관련자료 (평소 생활 습관, 외출사항 등)
-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 여행사실, 야생동물 출몰 현황
- 농장 기왕력, 농장 근무자 등

다) 1차 현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관련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자료(사료, 동물약품, 인공수정 등의 차량운행 일지, 배달일자, 판매대장 등)를 확보하여 조사내용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발생 농장의 1차 현지 조사내용은 주로 축주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으므로 각종 관련 기록을 이용하여 조사내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라) 발생농장간의 역학적 연관성 분석

- (1) 11개 발생농장의 역학조사내용을 토대로 발생농장간 역학적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유입·전파 위험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 분석하였다(표 13, 14).
- (2) 각 발생농장간의 역학적 연관성과 발병돼지의 임상증상 등 농장상황을 종합하여 감염농장간의 전파경로를 구명하였다(그림 15).

〈표 6-13-1〉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농장별 역학조사 내역

농장명	축주명	발생(신고)일자	농장소재지(주소)
감람농장	노광우	2002. 10. 8(10. 7)	인천 강화 화도면 문산리
《 역학조사 주요내용(요약) 》			
<p>◇ 사육규모 : 1,323두(모돈 124두, 비육육성돈 823두, 자돈 376두)</p> <p>◇ 돼지 입식          ▷ 광주광역시 소재 G 월드(GGP)의 H 제네틱GP(전남 영암소재)에서 9월 17일 17~18시경 구입(후보돈 4두)</p> <p>◇ 돼지 출하 및 이동 (출하운반자 : 김 OO, 인천85바 ****)          ▷ 9.1 46두(우석), 9.16 43두(우석), 9.18 40두(가락동), 9.24 42두(우석), 10.4 48두(우석)</p> <p>◇ 돼지 위탁 및 분양 : 없음</p> <p>◇ 동물약품 구입          ▷ H 동물약품(강화읍 소재) : 축주가 직접 구입(9.3, 9.6, 9.7, 9.10, 9.27)          ▷ H 양돈개발원(의정부대리점, 9.27 이 OO 배달)</p> <p>◇ 사료 구입 현황          ▷ B 사료(벌크 : 인천공장 공급 ▶ 9.25, 9.30, 10.1, 10.7)          ▷ B 사료(지대 : B 사료 강화대리점 ▶ 9.25, 9.28, 10.1, 10.4)          ▷ S 축협사료(벌크 : 송탄공장 공급 ▶ 9.30)</p> <p>◇ 출입수의사 없음</p> <p>◇ 분노처리(툽밥) : 개인(김 OO, 발농사)에게 판매</p> <p>◇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인근 주변사람 포함) 해외여행 사항          ▷ 축주의 해외여행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실 없음          ▷ 7월말~8.25, 홈스테이 교환학생(필리핀, 아라울루대학생) 축주 집에서 거주          ▷ 문산교회 집사(허OO, 937-1xxx) 내외가 태국 푸켓시 방문(9.23~9.27)          ▷ 강화군 화도면 및 길상면 17개 교회 목사부부 중국 방문(7.1~7.6)</p> <p>◇ 잔반 처리 : 잔반 급여 사실 없음</p> <p>◇ 종부 관련 : B AI센터(9.24, 9.25, 9.26, 9.30, 10.1, 10.2, 10.3, 10.4, 10.7)          ▷ 배달경로 : B AI센터 → K 양돈협회 → H 동물약품 → 농장          ▷ 임신진단 : 9.25일경 B 사료 강화대리점 과장 이OO</p> <p>◇ 야생동물 출현 : 너구리, 족제비, 노루 등</p> <p>◇ 농장 기왕력 : 특이질병 없음</p>			

〈표 6-13-2〉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농장별 역학조사 내역(계속)

농장명	축주명	발생(신고)일자	농장소재지(주소)
선두농장	한명섭	2002. 10.13	인천 강화 길상면 선두4리
《 역학조사 주요내용(요약) 》			
<p>◇ 사육규모 : 1,371여두(모돈 161두, 비육육성돈 759두, 자돈 451두)</p> <p>◇ 돼지 입식 ▷ 8월경 G 월드에서 후보돈 8두, 옹돈 1두 구입</p> <p>◇ 돼지 출하 및 이동 ▷ 9.25 36두(우석), 9.28 15두(강화도축장), 10.7 30두(부천공판장) ※ 출하운반자 : 9.25 10.7 황OO, 서울88다****, 9.28 이OO, 인천94가****</p> <p>◇ 돼지 위탁 및 분양 : 없음</p> <p>◇ 동물약품 구입 ▷ H 동물약품(강화읍 소재) : 10.8, 10.9, 10.10, 10.11</p> <p>◇ 사료 구입 현황 ▷ B 축협사료공장(벌크) : 9.20, 9.27, 9.30, 10.4, 10.8</p> <p>◇ 출입수의사 : 없음</p> <p>◇ 분노처리(툽밥) : ▷ I 거름 : 9.24일 퇴비 100포 반출(서울81사****호) ▷ 툽밥구입 : 10.1일 K 자원재생에서 5톤 구입(인천 서구 만전동)</p> <p>◇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사항 ▷ 농장인부 중국여행(7.20 ~ 22)</p> <p>◇ 잔반 처리 : 잔반 급여 사실 없음</p> <p>◇ 종부 관련 : 자연종부</p> <p>◇ 야생동물 출현 : 없음</p> <p>◇ 농장 기왕력 : 특이질병 없음</p> <p>◇ 기타 특기사항 ▷ 종사자 박 OO(40세) : 8.27 ~ 10.11일까지 근무 ▷ 축주 : 9.28일, 10.9일 B 사료대리점 방문 (단순 방문)</p>			



〈표 6-13-3〉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농장별 역학조사 내역(계속)

농장명	축주명	발생(신고)일자	농장소재지(주소)
대산농장	천상열	2002.10.15 (10.14)	인천 강화 강화읍 대산리
《 역학조사 주요내용(요약) 》			
<p>◇ 사육규모 : 143두(모돈 23두, 육상·비육돈 25두, 자돈 95두)</p> <p>◇ 돼지 입식 : 최근 없음</p> <p>◇ 돼지 출하 및 이동</p> <p>▷ 9.28 1두(강화도축장), 10.1 24두(가락동), 10.2 1두 (강화도축장)</p> <p>※ 출하운반자 : 9.28(1두), 10.2(1두) 축주 직접 출하, 10.2 (24두) 강OO(인천 94바 ****)</p> <p>▷ 돼지콜레라 발생농장(한명섭)의 돼지가 9.28일 강화도축장으로 17두가 출하되었으며 이후 천상열 농장 돼지가 도축됨</p> <p>◇ 돼지 위탁 및 분양 : 없음</p> <p>◇ 동물약품 구입 : C 가축약품(8.20, 9.23. 축주가 직접 구입)</p> <p>◇ 사료 구입 현황</p> <p>▷ B 사료 강화대리점</p> <p>▷ 인천 94가 ****호 차량 : 9.25, 9.30, 10.2 구OO 배달</p> <p>▷ ****호 승용차량 : 10.5(이OO), 10.12(이OO) 공급</p> <p>◇ 출입수의사 : 출입 수의사 없었음</p> <p>◇ 분노처리(툽밥)</p> <p>▷ 주로 채소농가로 판매 : 9.5일 마지막 판매</p> <p>▷ 툽밥구입 : D 상사(인천 소재)에서 9.14 구입</p> <p>◇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사항 : 해당 사실 없음</p> <p>◇ 잔반 처리 : 급여 사실 없음</p> <p>◇ 종부 관련 : 자연종부</p> <p>◇ 야생동물 출현 : 없음</p> <p>◇ 농장 기왕력 : 특이질병 없음</p> <p>◇ 기타 특기사항</p> <p>▷ 농장의 돈사 양옆으로 마을 도로가 있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음</p>			

〈표 6-13-4〉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농장별 역학조사 내역(계속)

농장명	축주명	발생(신고)일자	농장소재지(주소)
유예근농장	유예근	2002.10.22(10.21)	경기 김포 월곶면 군하리
《 역학조사 주요내용(요약) 》			
<p>◇ 사육규모 : 889두(모돈75, 웅돈4, 포유자돈 169두, 이유자돈 140, 비육돈 501두)</p> <p>◇ 돼지 입식 ▷ 9.17일 김포 대곶면 S 축산(985-4221)에서 F1 7두(100kg) 구입</p> <p>◇ 돼지 출하 및 이동 ▷ 9.9 48두(삼성), 9.11 18두(삼성), 9.30 56두(삼성), 10.19 20두(삼성) ※ 출하기사 : 권OO(경기93자****) ▷ 돼지콜레라 발생농가(한명섭) 돼지를 출하(9.28 ; 강화도축장)한 이OO 기사가 타농장 돼지를 10.1, 10.4, 10.7, 10.8일 돼지를 삼성도축장(032-578-4039)에 출하한 사실이 있음</p> <p>◇ 돼지 위탁 및 분양 : 없음</p> <p>◇ 동물약품 구입 ▷ C 축산약품 : 10.11, 10.17, 10.18 김OO 배달 ▷ H 동물약품 : 10.10 H 사장 직접 배달</p> <p>◇ 사료 구입 현황 ▷ M 사료: 벌크(10.17, 10.19 인천공장, 박OO) 지대(10.19 김OO 공급)</p> <p>◇ 출입수의사 : 없음</p> <p>◇ 분뇨처리(톱밥) : ▷ 톱밥 : D 톱밥(인천)에서 구입 ▷ 비료는 개인(최OO)이 가져감</p> <p>◇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사항 : 해당 사항 없음</p> <p>◇ 잔반 처리 : 잔반 급여 없음</p> <p>◇ 종부 : B AI센터(9.28, 10.21 M 사료대리점에서 종부, 임신 진단) ▷ 주로 자연종부, 9.3일 1두, 10.14일 1두 인공수정실시 ※ 배달경로 : B AI센터 → K 양돈협회(보관) → M 사료 김포대리점 (월곶면 양돈인들 이용) → 농장(유예근) 배달</p> <p>◇ 야생동물 출현 : 없음</p> <p>◇ 농장 기왕력 : 2002.2 TGE 발생으로 자돈 50여두 폐사한 사실 있음</p>			

〈표 6-13-5〉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농장별 역학조사 내역(계속)

농장명	축주명	발생(신고)일자	농장소재지(주소)
종석출농장	종석출	2002.11.2 (11.1)	인천 강화 강화읍 대신1리
《 역학조사 주요내용(요약) 》			
<p>◇ 사육규모 : 371두(모돈37, 비육육성돈196, 자돈 138두)</p> <p>◇ 돼지 입식 ▷ 최근 없음</p> <p>◇ 돼지 출하 및 이동 ▷ 9.13 29두(가락동), 10.1 29두(가락동) ※ 출하기사 : 강OO ▷ 돼지콜레라 발생농가(천상열)의 돼지를 10.1일 10~11시경 출하(가락동 도축장)후 10.1일 18시경 종석출 농가에서 돼지를 출하하여 10.2일 2시경 가락동 도축장으로 운반</p> <p>◇ 돼지 위탁 및 분양 : 없음</p> <p>◇ 동물약품 구입 ▷ H 동물약품 : 9월경 축주가 직접구입, 10.31일 종석출 아들이 직접 구입</p> <p>◇ 사료 구입 현황 ▷ D 사료(지대: 9.7, 9.17, 강화대리점 ) ▷ B 사료(지대 : 9.18, 9.25, 10.4, 10.12, 10.21, 10.29일, 흥OO 배달)</p> <p>◇ 출입수의사 : D 사료 강화지역 담당수의사 (조OO)가 9.28일 임신진단차 방문</p> <p>◇ 분노처리(툽밥) : 없음</p> <p>◇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사항 : 해당 사항 없음</p> <p>◇ 잔반 처리 : 잔반 급여 없음</p> <p>◇ 종부 관련 : 자연종부</p> <p>◇ 야생동물 출현 : 없음</p> <p>◇ 농장 기왕력 : 특이질병 없음</p> <p>◇ 기타 특이사항 : 없음</p>			

〈표 6-13-6〉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농장별 역학조사 내역(계속)

농장명	축주명	발생(신고)일자	농장소재지(주소)
원일농장	유찬원	2002.11.16 (11.14)	인천 서구 오류동
《 역학조사 주요내용(요약) 》			
<p>◇ 사육규모 : 1,180여두(모돈79, 후보돈14, 웅돈6, 비육149, 육성402, 자돈 540)</p> <p>◇ 돼지 입식 : 최근 없음</p> <p>◇ 돼지 출하 및 이동          ▷ 10.2 34두(삼성), 10.14 34두(삼성), 10.21 35두(삼성), 11.10 33두(삼성)          ※ 출하운반자 : 10.2(34두), 10.14(34두) 김OO          10.21(35두), 11.10(33두) 안OO</p> <p>◇ 돼지 위탁 및 분양 : 없음</p> <p>◇ 동물약품 구입          ▷ C 축산약품 : 이OO 대리 배달 → 9.30, 10.11, 11.9, 11.11          ※ 이OO 대리는 돼지콜레라 발생농가(유예근) 돼지치료차 돈사내에 10.21 출입          ▷ D 가축약품 : 축주 부인이 직접 구입 → 10.22, 11.9, 11.11, 11.14</p> <p>◇ 사료 구입 현황          ▷ (주)D 사료공업(지대)          - 정OO(****) : 10.7일, 10.24일          - 김OO(****) : 10.14일          - 송OO(****) : 10.16일, 11.2일, 11.5일, 11.9일, 11.13일</p> <p>◇ 출입수의사 : 없음</p> <p>◇ 분뇨처리(톱밥) : 없음          ▷ 톱밥 : 백OO → 10.12, 11.4 인천 검단공단에서 공급          ▷ 분뇨 : 김OO → 11.12</p> <p>◇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사항 : 해당 사항 없음</p> <p>◇ 잔반 처리 : 잔반 급여 없음</p> <p>◇ 종부 관련 : 자연종부</p> <p>◇ 야생동물 출현 : 없음</p> <p>◇ 농장 기왕력 : 특이질병 없음</p> <p>◇ 기타 특이사항 : 없음</p>			

〈표 6-13-7〉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농장별 역학조사 내역(계속)

농장명	축주명	발생(신고)일자	농장소재지(주소)
병조농장	원정식	2002. 11. 16	경기 김포 월곶면 군하리
《 역학조사 주요내용(요약) 》			
<p>◇ 사육규모 : 1,152여두(모돈85, 웅돈7, 비육318, 육성300, 자돈 342, 포유자돈 100)</p> <p>◇ 돼지 입식 : 최근 없음</p> <p>◇ 돼지 출하 및 이동                      ▷ 인근 유예군 농장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이후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 (10.21 이후)</p> <p>◇ 돼지 위탁 및 분양 : 없음</p> <p>◇ 동물약품 구입                      ▷ C 축산약품 : 김OO 대리 배달                      - 10.14, 10.21, 10.23, 10.30, 11.9, 11.12, 11.15</p> <p>◇ 사료 구입 현황                      ▷ S 사료(벌크 : 인천공장)                      - 10.2, 10.4, 10.9, 10.14, 10.16, 10.23, 10.29, 10.30, 11.4. 11.9, 11.11                      ▷ S 사료(지대 : 인천공장)                      - 10.9, 10.16, 10.19, 10.31, 11.9</p> <p>◇ 출입수의사 : 없음</p> <p>◇ 분뇨처리(톱밥) :                      ▷ 톱밥 : 양OO ▶ 10월중순, 11.13 인천 가구공단에서 공급                      ▷ 분뇨 : 김OO ▶ 11.5, 11.10 김포에 있는 하우스(상추등 농작물)에 살포</p> <p>◇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사항 : 해당 사항 없음</p> <p>◇ 잔반 처리 : 잔반 급여 없음</p> <p>◇ 중부 관련 : 자연중부</p> <p>◇ 야생동물 출현 : 없음</p> <p>◇ 농장 기왕력 : 특이질병 없음</p> <p>◇ 기타 특이사항                      ※ 소독약 수령을 위해 10.16, 11.5 월곶면사무소 방문</p>			

〈표 6-13-8〉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농장별 역학조사 내역(계속)

농장명	축주명	발생(신고)일자	농장소재지(주소)
최범식농장	최범식	2002.11.26 (11.25)	인천 강화 강화읍 월곶리
《 역학조사 주요내용(요약) 》			
◇ 사육규모 : 1,544두 (모돈 122두, 육성비육돈 1,053두, 자돈 369두)			
◇ 돼지 입식 : 9월경 M 농장 웅돈 1두 입식			
◇ 돼지 출하 및 이동			
▷ 10.7 1두 출하(강OO, 천상열 농장 출하자 : 10.1)			
※ 자가차량에 돼지를 싣고 강OO과 만나서 강OO 차에 돼지를 옮겨 싣고 출하			
◇ 돼지 위탁 및 분양 : 없음			
◇ 동물약품 구입			
▷ H 동물약품 : 축주가 주로 직접 구입하거나 배달 시 통제초소 수령			
- 11.2, 11.4, 11.6, 11.8, 11.14, 11.18, 11.25			
◇ 사료 구입 현황			
▷ B 사료(벌크)			
- 11.4, 11.6, 11.9, 11.11, 11.13, 11.15, 11.16, 11.20, 11.21, 11.23, 11.25일			
▷ D 사료(지대) : 11.9, 11.19일			
◇ 출입수의사 : 없음			
◇ 분노처리(툽밥)			
▷ 툽밥 : 김OO ▶ 10.24, 11.25			
▷ 분노 : 최근 처리 없음			
◇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잔반 처리 : 잔반 급여 없음			
◇ 종부 관련 : B AI센터(H 가축약품에 보관, 직접 수령)			
▷ 11.4, 11.8, 11.14, 11.18, 11.22, 11.23, 11.25)			
◇ 야생동물 출현 : 없음			
◇ 농장 기왕력 : 특이질병 없음			
◇ 기타 특이사항			
※ 10.28 종석출(돼지콜레라 발생농장)과의 만남			

〈표 6-13-9〉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농장별 역학조사 내역(계속)

농장명	축주명	발생(신고)일자	농장소재지(주소)
우일농장	이현호	2002.11.27 (11.26)	경기 김포 통진면 귀전리
《 역학조사 주요내용(요약) 》			
<p>◇ 사육규모 : 총 1,510두(모돈124, 웅돈2, 육성·비육 1,157, 자돈 227)</p> <p>◇ 돼지 입식 : 7월경 김OO(충남 부여) 모돈 15두 입식</p> <p>◇ 돼지 출하 및 이동 ▷ 11.11 3두(삼성, 김OO), 11.13 80두(우석 흥OO) : 수매도축</p> <p>◇ 돼지 위탁 및 분양 : 없음</p> <p>◇ 동물약품 구입 ▷ C 축산약품 : 축주가 직접 구입 - 10.22, 10.25, 10.30, 10.31, 11.2, 11.5, 11.6, 11.8, 11.19, 11.26</p> <p>◇ 사료 구입 현황 ▷ B 축협사료공장(벌크) - 11.11, 11.12, 11.18, 11.19, 11.25, 11.26일 ▷ S 사료(지대) : 11.11, 11.14, 11.15, 11.20, 11.21, 11.23, 11.25</p> <p>◇ 출입수의사 : 없음</p> <p>◇ 분뇨처리(톱밥) ▷ 톱밥 : 장OO ▶ 11.12 ▷ 분뇨 : 김OO, 이OO ▶ 11.12</p> <p>◇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사항 : 조OO(중국교포)</p> <p>◇ 잔반 처리 : 잔반 급여 없음</p> <p>◇ 종부 관련 : B AI센터 - 11.5, 11.6, 11.8, 11.9, 11.11, 11.12, 11.19, 11.20, 11.22, 11.26</p> <p>◇ 야생동물 출현 : 없음</p> <p>◇ 농장 기왕력 : Glässer 병이 농장에 상재</p> <p>◇ 기타 특이사항 ※ 발생농장 출입자와의 잦은 만남 : 11.5~6일경 김OO, 이OO, 민OO</p>			

〈표 6-13-10〉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농장별 역학조사 내역(계속)

농장명	축주명	발생(신고)일자	농장소재지(주소)
은영농장	김호창	2002. 12. 15	경기 김포 월곶면 갈산리
《 역학조사 주요내용(요약) 》			
<p>◇ 사육규모 : 1,520두(모돈90, 옹돈1, 비육돈 1,109, 자돈 320)</p> <p>◇ 돼지 입식 : 2002. 8월 충북 J 축산에서 23두 모돈 구입</p> <p>◇ 돼지 출하 및 이동 ▷ 인근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었음</p> <p>◇ 돼지 위탁 및 분양 : 없음</p> <p>◇ 동물약품 구입 ▷ C 축산약품 : 축주가 직접 구입 - 11.1, 11.7, 11.13, 11.13, 11.15, 11.19, 11.23, 11.27, 12.5, 12.9</p> <p>◇ 사료 구입 현황 ▷ D 사료(벌크) - 11.1, 11.6, 11.7, 11.12, 11.17, 11.25, 12.2, 12.8, 12.13, 12.14 ▷ D 사료(지대) : - 11.1, 11.6, 11.15, 11.18, 11.23, 11.26, 11.28, 11.30, 12.3, 12.6, 12.10, 12.13</p> <p>◇ 출입수의사 : 없음</p> <p>◇ 분뇨처리(톱밥) ▷ 톱밥 : 최근 없음 ▷ 분뇨 : D 화학(이 OO) ▶ 11.9, 11.16, 11.23, 11.30, 12.7, 12.14 ※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원정식) 옆 농장(임OO)의 분뇨처리박스(압물박스)의 수거·이동 위해 11.16, 11.20, 11.22 출입</p> <p>◇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사항 : 없음</p> <p>◇ 잔반 처리 : 잔반 급여 없음</p> <p>◇ 종부 관련 : 자연종부 및 인공수정(부족분 S 축산서 수령)</p> <p>◇ 야생동물 출현 : 없음</p> <p>◇ 농장 기왕력 : 없음</p> <p>◇ 기타 특이사항 ※ 발생 인접농장(임 OO)과 같은 사료 사용</p>			



〈표 6-13-11〉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농장별 역학조사 내역(계속)

농장명	축주명	발생(신고)일자	농장소재지(주소)
새우리농장	송오범	2002.12.22 (12.21)	경기 이천 백사면 내촌리
《 역학조사 주요내용(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규모 : 1,786두(모돈219, 후보돈34, 웅돈4, 비육돈 311, 육성돈 764, 자돈 454)</li> <li>◇ 돼지 입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 11.28 후보돈 11두 (T 종돈, 충남 서산)</li> <li>▷ '02. 12.12 웅돈 1두 (D 인티, 경기 일죽)</li> </ul> </li> <li>◇ 돼지 출하 및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락동 도축장 : 11.16(1두), 11.17(29두), 11.25(1두), 11.26(2두), 12.16(2두)</li> <li>▷ 후레쉬 미트 : 11.26(48두)</li> <li>▷ 신영축산 : 11.27(27두), 12.14(50두), 12.16(46두)</li> <li>▷ 안성축산 : 11.16(24두)</li> </ul> </li> <li>◇ 돼지 위탁 및 분양 : 없음</li> <li>◇ 동물약품 구입 : 동물약품은 농장입구에서 교환, 또는 축주가 직접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 동물약품, T 동물약품, I 축협</li> </ul> </li> <li>◇ 사료 구입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 조합사료(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16, 11.19, 11.22, 11.25, 12.2, 12.7, 12.10, 12.11, 12.14, 12.16, 12.21</li> </ul> </li> <li>▷ P 사료(벌크) : 11.19</li> <li>▷ H 사료(지대) : 11.18, 11.29, 12.12</li> <li>※ 지대사료는 돈사밖에 내려놓음</li> </ul> </li> <li>◇ 출입수의사 :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OO(M 코리아) : 12.5, 12.13, 12.20</li> <li>▷ 양OO(T 동물약품 사장) : 12.5, 12.11, 12.16</li> <li>▷ 김OO(B 제약) : 12.3</li> </ul> </li> <li>◇ 분뇨처리(톱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톱밥구입 : S 자원 (11.20, 11.23, 12.10, 12.21)</li> <li>▷ 돈분처리 : 거름은 축주가 인근 논밭으로 직접 배달</li> <li>※ 돈분처리장 생균제 사용 업자 출입 (Y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22, 11.25, 11.27, 11.29, 12.2, 12.6, 12.11, 12.14</li> </ul> </li> </ul> </li> <li>◇ 외국인 고용 및 관련자 해외여행 사항 : 없음</li> <li>◇ 잔반 처리 : 잔반 급여 없음</li> <li>◇ 종부 관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액공급 : D AI (축주집 반지하에 있는 정액보관고에 넣음)</li> <li>※ 정액공급일 : 11.18, 11.19, 11.21, 11.30, 12.2, 12.3, 12.4, 12.11, 12.17, 12.18</li> <li>▷ 임신진단 : 배OO (11.25, 12.10)</li> </ul> </li> <li>◇ 야생동물 출현 : 없음</li> <li>◇ 농장 기왕력 : 특이질병 없음</li> </ul>			

<표 6-14-1>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의 농장별 역학조사내역 요약 및 비교

구분	① 갑곶농장 (노광우, 10.8)	② 선두농장 (한명섭, 10.13)	③ 대산농장 (천상열, 10.15)	④ 유예근농장 (유예근, 10.22)
주소	인천 강화	인천 강화	인천 강화	경기 김포
사육두수	1,323두	1,371두	143두	889두
발생/폐사두수	30두/3두	40두/3두	15두/10두	50두/5두
입근농가 (살처분)	2농가 (13두)	3농가 (2,874두)	1농가 (307두)	1농가 (14두)
임상증상	식욕부진, 포개짐, 복식 호흡, 후구 마비, 폐사	호흡기증상, 포개짐 설사, 후구 마비, 청색 증, 폐사	원기소실, 설사, 후구 마비, 청색증, 폐사	떨면서 못 일어남, 견 좌자세, 청색증, 폐사
분양 및 입식	분양 : 없음 입식 : G 월드(9.17)	분양 : 없음 입식 : G 월드(8월)	분양 : 없음 입식 : 없음	분양 : 없음 입식 : S 죽산(9.17)
출하	도축장	9.25(우석) 9.28(강화도축) 10.7(부천)	9.28(강화도축) 10.1(강화도축) 10.1(가락동)	9.9(삼성) 9.11(삼성) 9.27(삼성) 9.30(삼성/우석) 10.19(삼성)
	출하기사 (중개인)	김OO(1***)	9.25, 10.7 : 황OO (9***) 9.28 : 이OO(2***)	9.28, 10.1 : 천상열 (5***) 10.1 : 강OO(1***)
사료회사	B (벌·지) -벌: 9.25, 30, 10.1, 7 -지: 9.25·28, 10.1·4 (3***) 이OO) S 축협사료 (벌) : 9.30(1***)	B 축협사료(벌·지) -벌: 9.20, 27, 30, 10.4, 10.8, 9. -지: 벌크 차량에 소량 공급	B 사료(지) 9.25, 9.30, 10.2 (1***, 구OO) 10.5(6***, 이OO) 10.12(6***, 이OO)	M 사료(벌·지) -벌: 9.26, 30, 10.5, 10.9, 18, 21 -지: 9.26, 9.27, 10.4, 10.12·19(4***)
약품회사	H 동물약품 9.3, 9.6, 9.7, 9.10, 9.27 (축주 직접 구입) H 양돈개발원 (9.27, 이OO)	H 동물약품 10.8·10: 황OO(4***) 10.9·10·11: 장OO (9***)	J 가축약품(9.23) (축주 직접 구입)	C 축산약품 10.17, 10.18(김OO) 10.21(이OO, 돈사) H 동물약품 10.10(김OO)
임신진단	9.25 B 사료(이OO)	-	-	9.28, 10.21 M 사료(민OO)
분뇨처리	톱밥 : 인천구입 (추석전) 돈분 : 발 판매(주변)	톱밥 : 박OO (10.1) 돈분 : 한OO 수거 (9.24:6***)	톱밥 : D 상사 (9.14) 돈분 : 채소농가 판 매 (9.5)	톱밥 : 민OO(월 1회) 돈분 : 최OO 수거
야생동물	너구리, 족제비	x	x	x
해외여행(외국근로 자)	x	x	x	x
인공수정 관련	B AI센터 (9.24, 25, 26, 30, 10.1, 2, 3, 4, 7)	자연종부	자연종부	B AI센터 (9.3, 10.14 인공수정; M 사료, 김OO)
기타 특기사항	- 필리핀 홈스테이 학생 거주(7월말~8.25) - 교회집사 태국방문 (9.23~27) - 교회목사 중국여행(7. 1~6) - 축주동서 중국 등 물 건 취급(인천항) - 돈분처리 : 조OO	- 교회목사 중국여행 (7.1~6) - 농장인부 중국여행 (7.20~22) - 농장근로자 박 OO(8.27~10.11근 무)	-	- 9.29 강화국제마라톤 대회 참가

〈표 6-14-2〉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의 농장별 역학조사내역 요약 및 비교(계속)

구 분		⑤ 종석출농장 (종석출, 11.2)	⑥ 원일농장 (유찬원, 11.16)	⑦ 병조농장 (원정식, 11.16)	⑧ 최범식농장 (최범식, 11.26)
주 소		인천 강화	인천 서구	경기 김포	인천 강화
사육두수		371두	1,160두	1,158두	1,544두
발생/폐사두수		6두/ -	3두/ -	5두/ -	2두/ -
인근농가(살처분)		-	-	2농가(2,291두)	-
임상증상		발열, 설사, 포개짐, 원기소실, 피부 발적, 진전, 후구마비	사료급여 저하, 피부 반점	다리 절음, 사료 급여 저하	사료 급여 저하, 후구마비, 발적
분양 및 입식		- 분양 : 없음 - 입식 : 없음	- 분양 : 없음 - 입식 : 최근 없음	- 분양 : 없음 - 입식 : 없음	- 분양 : 없음 - 입식 : 없음
출하	도축장	9.13(가락동) 10.1(가락동)	10.2(삼성) 10.14(삼성) 10.21(삼성) 11.10(삼성)	10.1(삼성) 10.2(삼성) 10.7(삼성) 10.11(삼성) 10.16(부천삼성)	10.7(삼성)
	출하기사 (중개인)	9.13, 10.1 : 강OO (1***)	10.2, 14 : 김OO(5***) 10.21, 11.10 : 안OO(7***)	10.1.16 : 권OO/ 이OO(2***, 5***) 10.27.11.박OO (5***)	10.7 : 축주차량(1***)으로 강OO 전달
사료회사		D 사료(지대) -자: 9.7, 16  B 사료(지대) -자: 9.25, 10.4, 12.29 (8***) 9.25(4***) 9.25(1***) 10.4(5***)	D 사료(지대) -자: 11.25, 9.13 (8***)	S 사료(발지) -발: 11.9 (4***) 10.30, 11.4, 11.11 (4***)  -자: 10.31 (3***) 11.9 (1***)	B 사료(벌) 벌: 11.6-9-11-13, 16-21-23-25(6***) 11.4, 11.15, 20(5***)  D 사료(지) 자: 11.9, 19(3***)
약품회사		H 동물약품 9월중, 10.31 (축주 직접 구입)	C 축산약품 10.11, 11.9-11.15 (이OO)  D 가축약품 11.9-11.14(직접 구입)	C 축산약품 10.21-23(축주구입) 11.9-12.15(김OO)	H 동물약품 11.2, 4, 6, 8, 14, 18, 25(김OO 및 직접 구입)
임신진단		8.30, 9.28 D 사료(조OO)	-	-	-
분뇨처리		최근 없음	톱밥 : 백OO (10.12, 11.4) 돈분 : 김OO(11.12)	톱밥 : 양OO (10월 중순, 11.13) 돈분 : 김OO(11.5, 10)	톱밥 : 김OO (10.24, 10.25) 돈분 : 최근 없음
야생동물		×	×	×	×
해외여행(외국근로자)		×	×	×	×
인공수정 관련		자연 종부	자연 종부	자연 종부	자연 종부 B AI센터 (11.4, 8, 14, 18, 22, 23, 25)
기타 특기사항		- 천상열 농장에서 700~800m 거리 (동일 생활권)	-	- 유예군 농장에서 1.3km거리 (동일 생활권)	- 종석출농장에서 1km 거리 (동일 생활권) - 종석출과 만남(10.28)

<표 6-14-3>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의 농장별 역학조사내역 요약 및 비교(계속)

구 분		㉑ 우일농장 (이현호, 11.27)	㉒ 은영농장 (김호창, 12.15)	㉓ 새우리농장 (송오범, 12.22)
주 소		경기 김포	경기 김포	경기 이천
사육두수		1,510두	1,520두	1,786두
발생/폐사두수		5두/ 5두	7두/ -	120두/ 2두
인근농가(살처분)		-	-	1농가 (800두)
임상증상		폐 사	사료급여저하, 고열, 원기소실	청색증, 폐사
분양 및 입식		- 분양 : 없음 - 입식 : 없음	- 분양 : 없음 - 입식 : J 축산(8월)	- 분양 : 없음 - 입식 · T 종돈장(11.28, 20두, 3***) · D 육종(12.14, 1두, 1***)
출 하	도축장	11.11(삼성) 11.13(우석)	10.7(부천·삼성) 10.11(부천·삼성)	11.12/11.17/11.25/12.6(가락동) 11.16(안성, 가락동) 11.26(후레쉬, 가락동) 11.27/12.14/12.16(신영)
	출하기사 (중개인)	11.11:김OO(1***) 11.13:홍OO(2**), 양OO(7***)	10.7·11 : 권OO(2***) 이OO(5***)	11.12,17,26,12.14,12.16 : 성OO(2***) 11.16,27:유OO(5***) 11.16,25,12.6,26:김OO (3***)
사료회사		B 축협사료(벌) 벌:11.11,18, 19(1***) 11.12, 26(7***)/ 11.25(4***) S 사료(벌·지) 벌:11.16,23, 25(7***) 지:11.11·14·15·20·21· 23·25(1***)	D 사료(벌·지) 벌:11.25, 12.14(3***) 12.13(4***) , 12.2,8(6***) 지:11.23, 26, 28, 30, 12.3, 6, 10, 13 (2***)	D 사료(벌·지) 벌 :11.16,19,22,25,29,12.2,7,10,11,14, 16,21(5***) 지:11.18,29,12.12(4***) P 사료 벌:11.19(5***)
약품회사		C 축산약품 11.2·5·6·8·19·26 (축주 구입)	C 축산약품 11.1,7,13,15, 11.19·23·27, 12.5·9(축주구입)	B 동물약품, 11.25,12.4,21(길OO) T 동물약품 11.19,20,26,30,12.4,5,6,7,9,10,11,13,1 4,16,17,20(김OO) I 축협:12.6(직접)
임신진단		-	-	배OO(11.25,12.10)
분뇨처리		톱밥 : 장OO(11.12) 돈분 : 김OO, 이OO(11.12)	톱밥 : 최근 없음 돈분 : D 화학 (11.9·16·23·30, 12.7·14)	톱밥 : 이OO(11.20,23,12.10,21) 분뇨 : 인근 살포
야생동물		x	x	x
해외여행(외국근로 자)		x(중국교포 1)	x	x
인공수정 관련		자연 중부, B AI센터 (B; 11.5,6,8,9,11,12,19,20,22,26)	자연 중부 S 축산(인근농장 : 부족분 수령)	D AI센터 11월(18,19,21,30) 12월(2,3,4,10,11,17,18)
기타 특기사항		- 발생농장 출입자와의 잦 은 만남	- 돈분수거자 이OO 임OO (원정식 옆 5m거리) 농장 출입(11.16, 20, 22) - 임OO과 같은 사료 사용	- 수의사 임OO(M 코리아) ; 12.5, 13, 20 양OO(T 약품) ; 12.5, 11.16 김OO(B 제약) ; 12.3

### 다. 발생농장 정밀검사 결과

#### 1) 항원항체 검사 결과

가) 발생농장에 대한 돼지콜레라 항원검사(PCR 및 ELISA) 결과, 전 농장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확인되었다.

나) 항체검사(ELISA) 결과, 11개 농장 중 9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확인되었고, 2개 농장은 항체 음성, 항원 양성으로 나타나 감염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초기감염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15〉 인천/경기지역 발생농장에 대한 돼지콜레라 항원 및 항체검사 결과

(양성건수/검사건수)

번호	축주명	발생일	항원 PCR	항체 ELISA	항원 ELISA	비 고	
1	노광우	10. 8	10/10	0/10	-		
			37/42	12/39	10/39	검역원2차	
			11/19	4/4	-	역학조사채혈	
2	한명섭	10.13	23/38	14/35	8/35	조직3점 포함	
3	천상열	10.15	16/16	5/15	6/16	조직1점포함	
4	유예근	10.22	8/8	4/7	-	혈액7, 조직1	
5	중석출	11. 2	15/16	9/14	-	혈액14, 조직2	
6	유찬원	11.16	6/12	0/10	4/12	혈액10, 조직2	
7	원정식	11.16	7/7	3/7	5/7		
8	최범식	11.26	1/11	1/11	-		
			3/32	3/32	-	혈액	역학 조사
			0/32	-	-	비즙	
			0/4	-	-	사료	
9	이현호	11.27	4/12	0/11	-	혈액11, 조직1	
			12/18	5/18	-	역학조사채혈	
10	김호창	12.15	6/7	0/7	6/7	혈액7	
11	송오범	12.22	1/16	15/15	-	혈액15, 조직1	

※ 발생농장의 보관된 돼지고기 [노광우(2점, 농장 인부 1점 포함), 한명섭(3점), 유예근(1점), 유찬원(1점) 등] 총 8점에 대한 돼지콜레라 검사결과 모두 음성 판정

2)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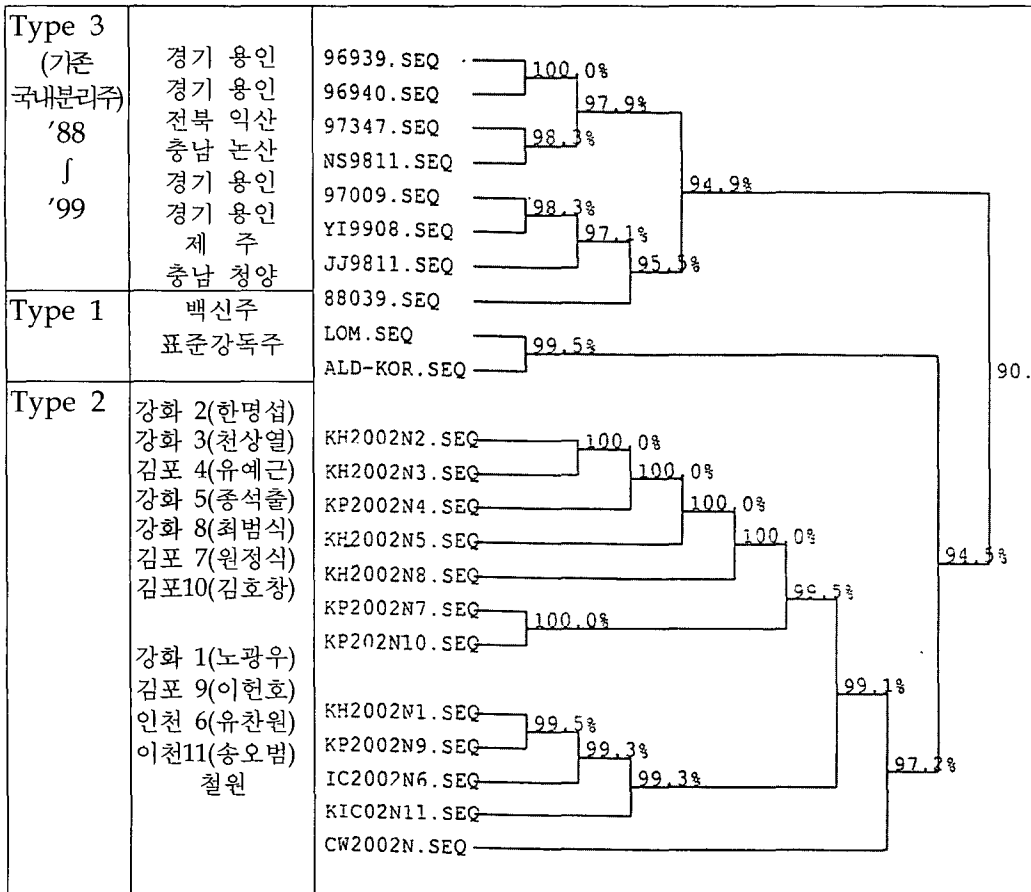
가) 11개 발생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모두 Group 2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확인되었다.

※ 2002년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도 Group 2임

나) 강화지역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번(노광우)과 2번(한명섭) 농장은 동일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아형(subtype)을 분류하는데 중요한 유전자부위(NCR, E2, NS5B 등)에서 일부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13).

※ 최초 발생농장 (노광우)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와 추가 발생농장(유찬원, 원정식, 이현호, 김호창, 송오범)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1~3 개의 염기서열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명섭 농장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천상열·유예근·종석출·최범식 농장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와 100% 일치

(그림 6-13) 인천 및 경기발생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 라. 최초 발생농장 발생원인 분석

### 1) 외부 유입 가능성 조사

#### 가) 외국여행 또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

##### (1) 발생농장(노광우농가)의 홈스테이 교환학생 축주집 거주

○ 기간 : 7월말 ~ 8.25 (필리핀 여대생, 22세)

##### (2) 발생농장(노광우농가) 주변 집사부부 태국방문

○ 기간 : 9.23 ~ 9.27 (태국 푸켓시, 피피섬에서 해수욕)

##### (3) 발생농가(노광우 및 한명섭농가) 소재면 (화도면·길상면) 목사부부 중국 방문 (17개 교회, 총 34인) ※ 노광우 및 한명섭은 교인임

○ 기간 : 7.1 ~ 7.6 (중국 북경, 서안, 대림)

##### (4) 농장근무 인부의 외국여행 : 중국 연길 방문(7.20~22)

##### (5) 발생농가(노광우농가) 인근 주변인물과의 접촉 가능성

○ 노광우의 동서 농장방문 (8월초)

※ 용달차를 이용 파렛트(목재) 15개 및 중국산 여행용가방 가져옴

※ 노광우 동서: 인천항 수입화물을 서울·경인지역에 배달하는 용달차 기사 → 주 취급 품목 : 중국산 수입품(버섯, 고사리, 옷, 기계류) 등

〈표 6-16〉 발생농장 인근농장의 외국인 근로자 현황

인력(농장수)

구 분	계	경기 김포			인천 강화		
		소계	소	돼지	소계	소	돼지
러 시 아	7 (5)	5 (3)	1 (1)	4 (2)	2 (2)	-	2 (2)
중 국	13 (11)	7 (6)	-	7 (6)	6 (5)	-	6 (5)
우즈베키스탄	2 (1)	2 (1)	-	2 (1)	-	-	-
우크라이나	5 (3)	-	-	-	5 (3)	-	5 (3)
계	27 (20)	14 (10)	1 (1)	13 (9)	13 (10)	-	13 (10)

※ 돼지농가(19) : 위험지역 6 (강화 4, 김포 2), 경계지역 12 (강화 6, 김포 6), 기타 1

※ 축산농가 이외에 식당종업원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다수 근무

#### 나) 야생 멧돼지를 통한 전파 가능성

- (1) 강화지역의 경우 '02년도에 상수리(도토리)가 10년만에 가장 많은 풍작을 이루었으며, 도토리를 줌을 사람이 많이 증가되고 강화 본도 등 많은 곳에서 야생 멧돼지 출현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과 접촉(분변 등)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2) 석모도(삼산면) 상주산에서 최근 수년동안에 야생멧돼지 출현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있었으며, 올해('02년)에도 멧돼지 출현 사실이 확인되었다.
  - 특히, 박OO 농가는 '01년에 야생멧돼지로 인한 피해 사실이 주민들에 의해 확인되었고, 금년도 9월말 중에도 큰 돼지 및 새끼돼지가 출현하였다고 한다.
  - ※ 강화지역 야생멧돼지 추적조사 실시
    - 포수를 동원, 삼산면 상주산지역과 강화 본도 고려산·혈구산 등 조사
    - 멧돼지를 포획하지는 못했으나, 상주산에서 야생멧돼지 분변 1점 수집 (수집 분변에 대한 돼지콜레라 항원검사 : 음성 판정)
- (3) 멧돼지들은 수영에 능하여 섬과 섬사이를 헤엄쳐 다니거나, 육지와외 왕래가 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탐문조사 결과 최근 삼산면 양오리, 상도리 등지에서도 멧돼지 분변을 봤다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 다) 밀수 또는 바닷가를 통한 해양전파 가능성

- (1) 강화지역 조업관련 밀수 또는 외국적 선박과의 접촉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해양경찰서 (지서·파출소), 인근 주민 및 지역 어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밀수 또는 바닷가를 통한 해양전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북위 37도 이상 조업시는 인천지역 해양방위사령부 및 인천지방해양경찰청에 24시간 전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운행이 가능한 접적(接賊: 북한과 대치한 상태) 지역으로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었다.
  - 불음도, 서금도는 15분이면 월북이 가능한 지역으로 500m간격으로 군 초소가 배치되어 있는 조건 등 작은 물체 하나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 외부로부터 밀입국·밀수가 가능하지 못하고,
  - 특히, 일몰후에는 군의 허가사항 없이는 자유로이 배를 움직일 수 없었다 (간첩침투 지역 이므로 야간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함)
- (3) 외항선이 항구로 접항할 수 있는 자연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지 못하고
- (4) 입·출항시 반드시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하므로 중국교포 등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고용하여 조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 (5) 주 조업은 강화도 인근 선수, 용유도, 조치, 만도리 어장 등이므로 외국 선박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공해상에서의 접촉 역시 불가능



- 조업기간도 3.1~10.31까지 가박(배를 정지한 후 작업)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야간이동시 발포 등 긴급 상황 발생
  - ※ 38선이 생긴 이후 강화에서는 단 1건의 밀수도 확인된 적이 없음
- (6) 인근 어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 결과 '01년 이후 장마나 태풍으로 인하여 떠내려 오는 짐승 및 사체 등도 없었다고 한다.(그 이전은 파주지역과 북쪽에서도 가끔 떠내려오기도 하였음)

## 2) 기존 국내에 존재하던 바이러스의 재발 가능성

### 가) 철원과 연계성 조사

#### (1) 철원도축장 수매 관련 조사

- 박 OO 등 3농가는 철원축협 축산물공판장에서 수매도축 후 철원군 관내 및 서울·춘천시 역으로 판매하였으며,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9농가)는 '02.10월 현재까지 출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7).

#### (2) 철원 3km 돈분 처리 현황조사

- 강원도 철원 돼지콜레라 발생일을 전후하여 축분의 타지방으로 이동(강화지역 유입 등) 처리현황 조사결과 '02.4월부터 '02.11.1 현재까지 타지방 이동 및 강화지역 유입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표13).

#### (3) 철원·강화 연계 중개상 조사 : 제보내용 (3명의 돼지 중개상이 강원도 철원지역으로부터 돼지를 입식하였다는 제보)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 여부를 조사하였다.

- 이 OO :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업을 하는 사람으로, 돼지중개는 하지 않고 이 □□(중개인)에게 돼지출하를 전담시켰음
- 이 □□ :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중개인으로 이 OO 농장 돼지출하를 제외하고는 강화지역 돼지담당으로 강원 철원지역에서 돼지 출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
- 오 OO : 인천 강화군 양도면 소재 돼지중개상으로 소재파악 안됨

#### (4) 탐문 조사 등을 통한 확인 결과 돼지 중개상을 통한 철원과 강화 지역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 3) 강화지역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잠복되었을 가능성 조사

### 가) 강화지역 양돈농가 중 최근 폐업한 농가 조사

- 2001년도 강화지역 양돈농가 현황과 최근 돼지콜레라 발생후 실제 사육농가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총 119개의 양돈농가가 폐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18).
- 이들 농가 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길상면(1), 내가면(1), 선원면(2)의 4개 농가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이 경제성, 축주의 고령, 환경문제 등으로 최근 8~9월에 폐업하였

으며,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사항을 나타내지는 않았음

- 최초 발생농장 인근의 최근 폐업 양돈농가는 3농가였으며, 폐업시점이 모두 2001년 초반으로 금번 돼지콜레라 발생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 남은 음식을 통한 발생 가능성

- 강화·김포지역에서 남은 음식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농장은 총 16개 농장으로 확인되었으나, 발생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사실이 없어 남은 음식을 통한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남은 음식물 급여농장
  - 강화지역(총 7농가) : 위험지역 1농가, 경계지역 4농가, 기타 2농가 폐업
  - 김포지역(총 9농가) : 위험지역 1농가, 경계지역 6농가, 기타 2농가

〈표 6-17〉 '02년 강원 철원 발생지역 돼지출하 및 축산폐수 처리 현황 조사

주소	성명	사육규모	조사 내용	
			돼지출하도축장	축산폐수처리
갈말읍 토성리	박OO	7,000두	철원축협 축산물공판장	축산폐수처리장 : 1,800톤 도창리 밭 살포 : 1,200톤
김화읍 도창리	오OO	400두	"	축산폐수처리장 : 30톤
김화읍 청양4리	전OO	500두	"	축산폐수처리장 : 60톤, 액비탱크 : 60톤
김화읍 청양1리	신흥열	354두(살처분)	출하돼지 없음	살처분 농장 분뇨처리계획에 의거 액비탱크저장(2,200톤) 및 축산폐수처리장(500톤)에서 처리
김화읍 청양1리	이OO	728두(살처분)	"	
김화읍 청양1리	허OO	1,000두(살처분)	"	
김화읍 청양1리	이OO	2,154두(살처분)	"	
김화읍 청양1리	이OO	158두(살처분)	"	
김화읍 청양1리	송운복	2,131두(살처분)	"	
김화읍 청양1리	이OO	722두(살처분)	"	
김화읍 청양1리	선OO	1,296두(살처분)	"	
김화읍 청양1리	조OO	380두(살처분)	"	

※ ① 살처분농가 돈분은 생석회 살포 및 비닐로 덮어 철원군 관내 논·밭에 쌓아두고 있음  
 ② 12농가 소유 논밭에 액비탱크(200톤 규모) 11개를 설치하여 저장중이며 2003년 봄에 철원군 관내 밭에 살포할 예정  
 ③ 철원군 축산폐수처리장에서는 액체부분은 화학제를 이용, 살균처리하여 방류,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무상으로 철원군 관내 신청농가에 기 공급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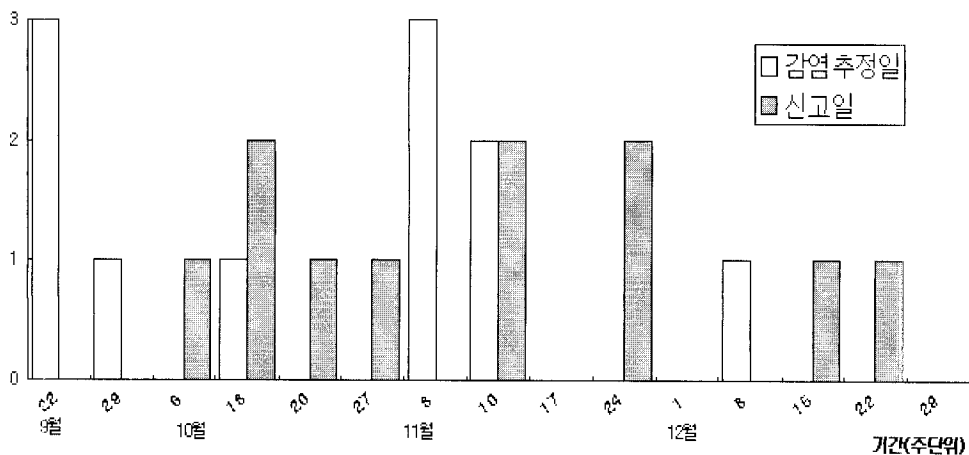
〈표 6-18〉 강화지역 양돈농가 현황조사 결과 ('02년 10월 현재)

읍면	기존 양돈장('01.12)	발생당시 양돈장	폐업 농장수
강화읍	24	18	6
교동면	4	1	3
길상면	25	14	11
내가면	16	12	4
불은면	58	38	20
삼산면	5	4	1
서도면	4	2	2
선원면	25	17	8
송해면	32	14	18
양도면	51	35	16
양사면	23	9	14
하점면	22	14	8
화도면	22	14	8
총 합계	311	192	119

마. 인근농장 전파양상 및 요인분석

1)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각 농장의 감염 시기를 추정할 때, 10월 8일 노광우 농장의 최초 발생보고 이전인 9월 하순경에 3~4개 농장(1~4차 발생농장)이 이미 오염되어 있었으며, 감염추정일과 타 발생농장과의 역학 관련사항으로 고려할 때 노광우 농가와 한명섭 농가가 원발농장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4).

(그림 6-14) 2002 인천경기지역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감염시기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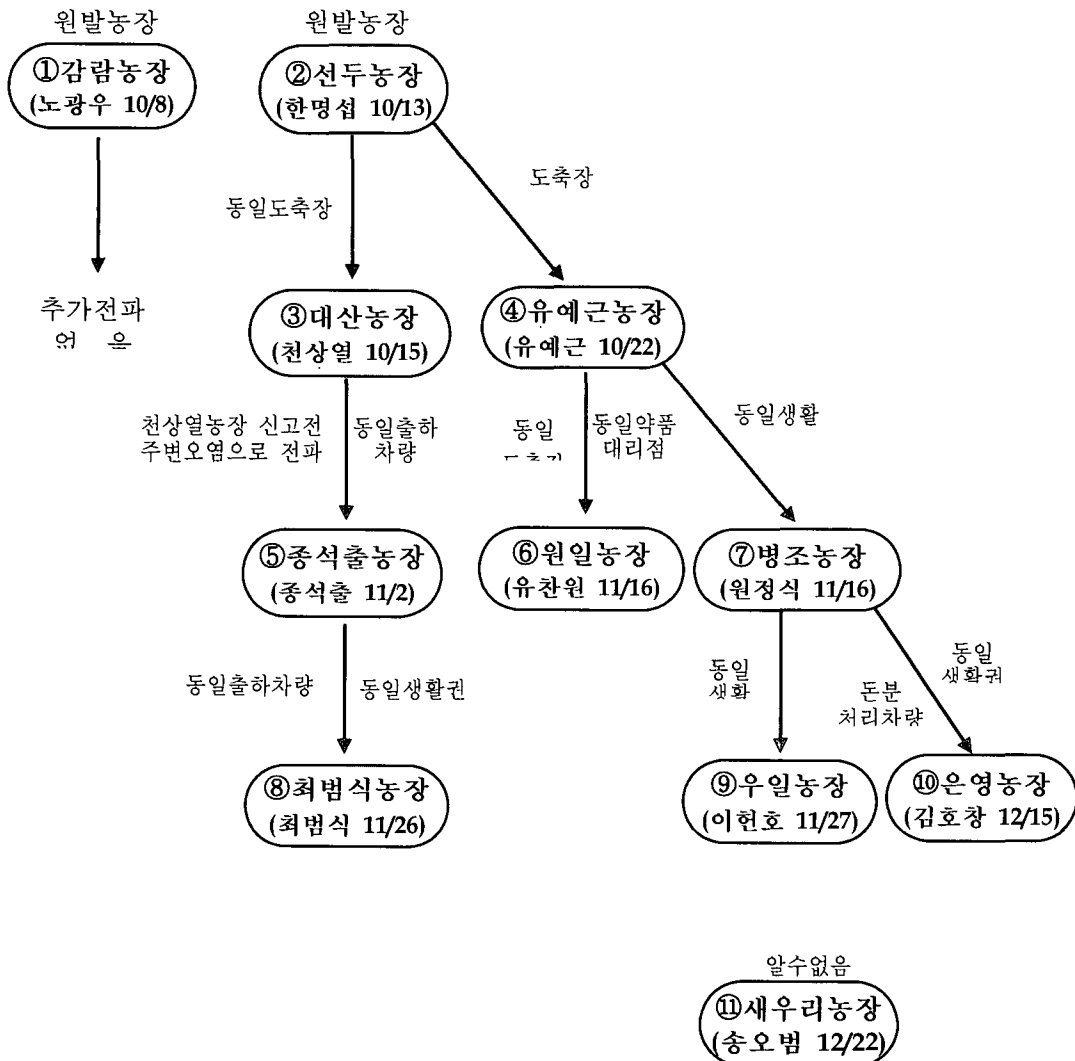
2) 노광우 농가와 한명섭 농가는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하여 비슷한 시기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원발농장에서 인근농가로의 전파는 오염된 사람·차량·물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15, 16).

가) 노광우 농가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발생이 없이 완료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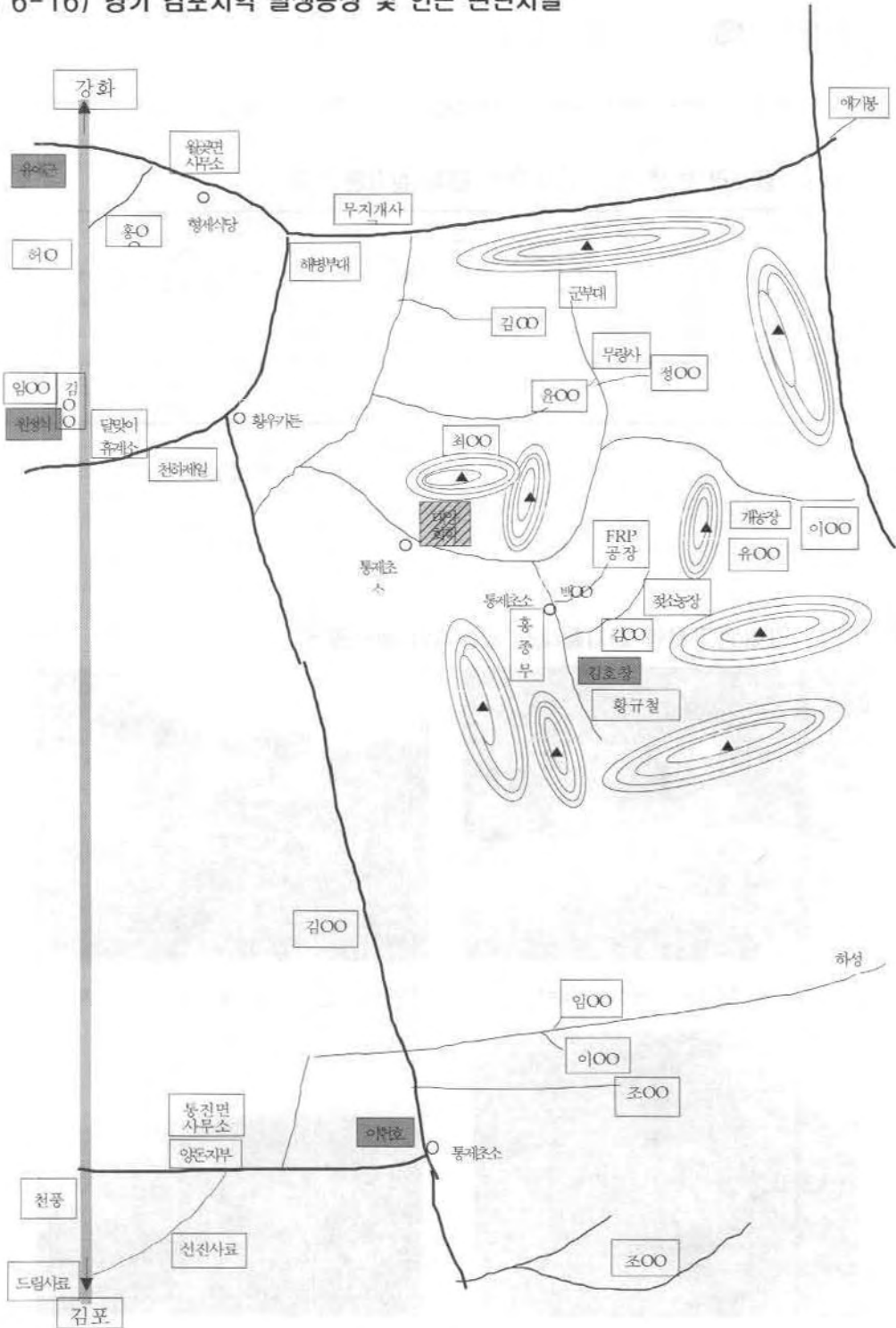
나) 한명섭 농가에서 천상열·유예근 농가로 전파되었고, 천상열 농가에서 종석출·최범식 농가로, 유예근 농가에서는 유찬원·원정식·이현호·김호창 농가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다) 이천지역 송오범 농장은 역학조사 결과 기존 발생농장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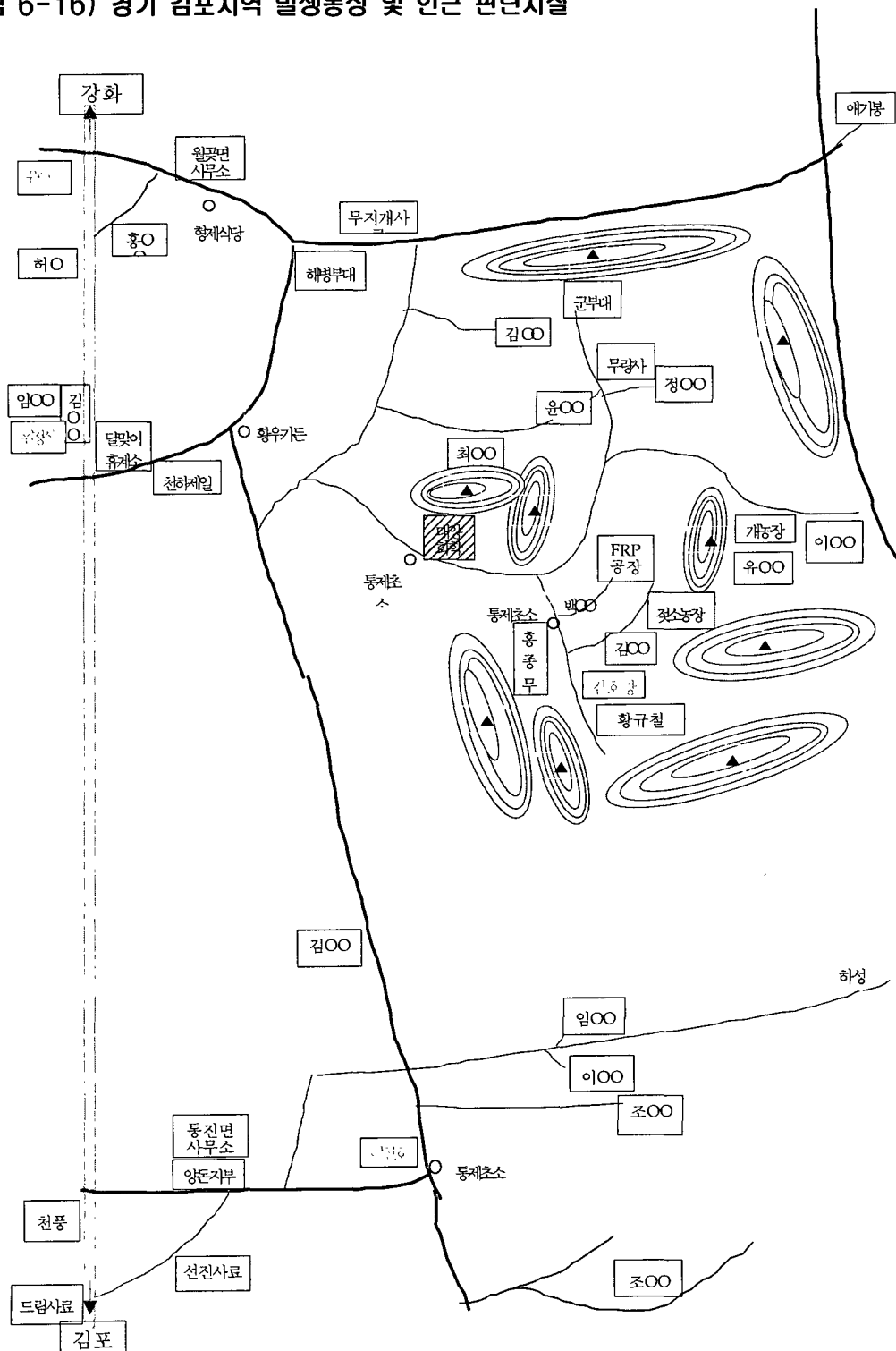
(그림 6-15) 역학조사를 통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전파경로 추정



(그림 6-16) 경기 김포지역 발생농장 및 인근 관련시설



(그림 6-16) 경기 김포지역 발생농장 및 인근 관련시설



## 바. 방역조치 사항

1) 발생농장 및 인근 농장에 대한 가축 살처분매물 : 24농가 30,241두

〈표 6-19〉 돼지콜레라 발생 및 인근농장의 돼지 살처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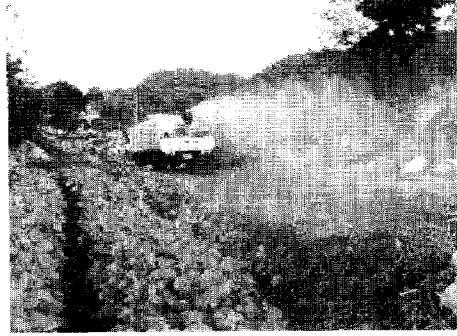
구분	발생농장		인근농장		비고
	농장수	살처분두수	농장수	살처분두수	
인천 강화	5	4,752	6	3,194	
인천 서구	1	1,160	-	-	
경기 김포	4	5,077	6	13,130	
경기 이천	1	1,786	1	1,142	
합 계	11	12,775	13	17,466	

2) 돼지콜레라 전파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실시 : 방역대(위험지역: 3km, 경계지역: 3~10km)를 설정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운영하여 가축이동, 출입차량·인원통제 및 소독을 실시하였다.

(그림 6-17) 강화경기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방역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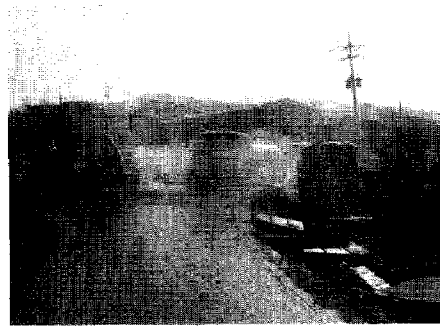
〈발생농장 출입구 1개소로 제한〉



〈발생농장 인근 도로에 대한 소독조치〉



〈살처분 동원 군인에 대한 소독조치〉



〈이동통제 초소 운영〉

### 3)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위험도 분석 및 방역조치

#### 가) 역학적 관련 농장 추적조사 현황

(1) 돼지콜레라 전파경로를 사전차단하기 위하여 11개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의 전파가 가능한 모든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 전파가능성이 있는 양돈농가는 총 2,392개로 파악되었으며(표 20), 이들 농장에 대한 위험도 분석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6-20〉 돼지콜레라 전파위험도 분석을 위한 발생농장별 역학관련 농장조사

구 분	발생농장 역학적 관련 농장(수)											
	노광우	한명섭	천상열	유예근	증석출	유찬원	원정식	최범식	이현호	김호창	송오범	합계
입식관련				1							39	40
도축장관련	58	146	444	48		96	4		56		950	1,802
도축 출하자 (중개인)관련	4	15	9	13		14			8		10	73
사료관련	31	30	1	15	10	8	2	7	38	22	85	249
동물약품관련	5	23		24		16	14				14	96
정액관련	20			1						1	20	42
임신진단 관련				6							59	65
농장근로자 관련												0
수의사 관련											8	8
돈분처리 관련									1	4		5
톱밥 공급									3		2	5
기타 관련					2				2	3		7
합 계	118	214	454	108	12	134	20	7	108	30	1,187	2,392

#### 나) 역학적 관련 농장에 대한 돼지콜레라 전파 위험도 분석

##### (1) 분석기준

- 고(高) 위험농가 : 발생농장을 오염가능 시기에 직접 출입하였던 출하기사·차량 및 지대 사료차량·기사 등이 방문한 농장
- 중(中) 위험농가 : 발생농장을 오염가능 시기에 단순 출입(단순방문)하였던 사람 및 차량이 방문한 농장 또는 도축장 출입후 출입한 차량이 돼지를 재 출하한 농가로서 연관성 요인이 2개 이상인 농장 또는 고위험도로 분류된 농가중 시기적으로 오염가능성이 낮은 경우
- 저(低) 위험농가 : 발생농장을 오염가능 시기에 단순 출입(단순방문)하였던 사람 및 차량이 방문한 농장 또는 도축장 출입후 출입한 차량이 돼지를 재 출하한 농가로서 연관성 요인이 1개인 농장



## (2) 분석결과

11개 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2,392개 농장을 대상으로 위험도 분석기준에 따라 고위험도 농가(124), 중위험도 농가(259) 및 저위험도 농가(1,886)를 각각 평가·분류하였고, 발생농장별 분석결과 중복되는 관련 농장을 고려하여 최종 1,586개 농가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표 21).

〈표 6-21〉 위험도 분류농장 현황

구 분		고위험농가	중위험농가	저위험농가	합 계
발 생 농장별 위험도 분석	노광우	15	25	57	97
	한명섭	10	35	152	197
	천상열	9	13	426	448
	유예근	11	15	54	80
	종석출	4	6		10
	유찬원	13	28	74	115
	원정식		4	12	16
	최범석			7	7
	이현호	11	11	69	91
	김호창	14	2	5	21
	송오범	37	120	1030	1,187
	합 계	124	259	1,886	2,269
종합 분석 결과		76농가	130농가	1,380농가	1,586농가

※ 돼지콜레라 발생초기에는 농장 입·출입하는 인적·물적자원 이동에 의한 예찰 농장이 많았으나, 4차 발생 이후에는 인근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이동제한 및 중복된 농장으로 예찰관련 농장이 줄어들음

※ 송오범 농장은 농장을 입·출입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 예찰농장 증가

## (3) 분석대상 농장 및 분석결과 관리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발생농장을 출입하였던 사료회사, 동물약품대리점 등의 축산 관련 기사 및 차량이 방문한 타 농장)에 대한 역학분석 기록을 컴퓨터에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관리, 상호 연관성을 분석 검토하였다 (그림 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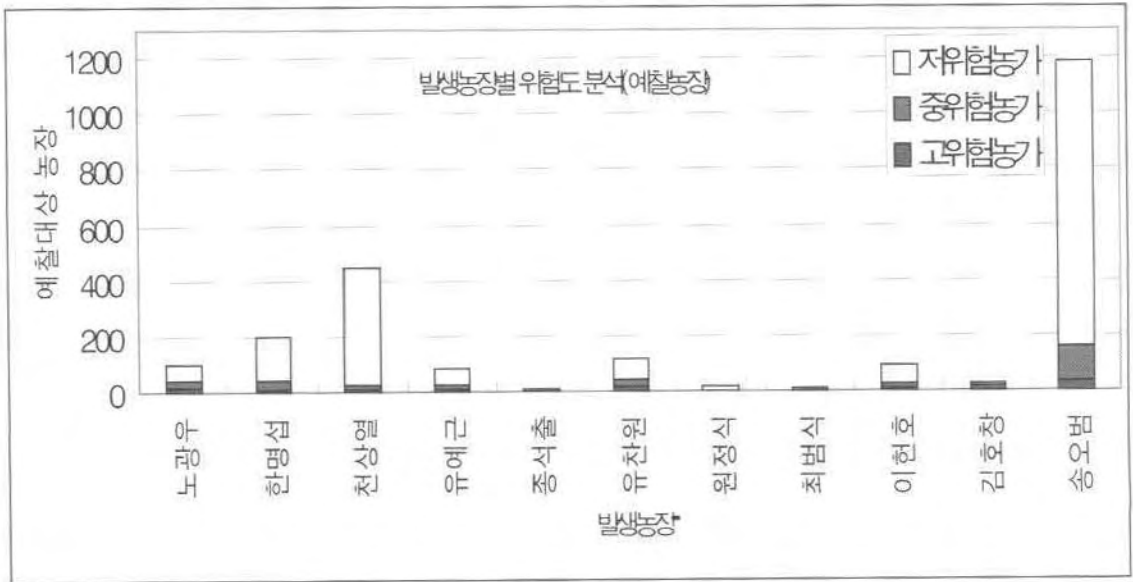
(그림 6-18) 발생농장별 역학 관련 농장 조사내용(예시)

	A	B	C	D	E	F	G	H	I
1	날짜	농장명	축주명	도	시군	읍면	리	전화번호	관련
2	11월 12일	새우리	송오범	경기	이천	백서면	내촌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3	11월 13일	주원	가나다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4	11월 14일	새우리	송오범	경기	이천	백서면	내촌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5	11월 14일	나이테	라마다	경기	여주군	강천면	적금2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6	11월 14일	신원	사아자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7	11월 15일	주원	차카타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8	11월 15일	태광	허파	경기	여주군	강천면	적금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9	11월 18일	푸른	김익각	경기	여주군	북내면	와룡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10	11월 18일	다담	서울로	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11	11월 18일	유화	지방시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1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12	11월 19일	푸른	가나다	경기	여주군	북내면	와룡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13	11월 20일	살현	나다라	경기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14	11월 20일	나이테	다라마	경기	여주군	강천면	적금2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15	11월 21일	이호	마바사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16	11월 21일	유성	아아아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1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17	11월 22일	유화	가나다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1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18	11월 22일	이호	오상식	경기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19	11월 25일	승채	양동이	강원	원주시	문막읍	후동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20	11월 25일	새우리	송오범	경기	이천	백서면	내촌리	016-454-4589	BB 동물약품
21	11월 25일	신원	봉이길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22	11월 26일	유성	김선달	경기	양평군	양동면	근석2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23	11월 27일	다담	이기탄	경기	양평군	양동면	근석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24	11월 27일	신원	로근가	경기	여주군	강천면	간매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25	11월 27일	유성	나야사	경기	여주군	능서면	신지1리	031-XXX-XXXX	BB 동물약품

(그림 6-19) 발생농장별 위험도 분류 역학 관련 농장(예시)

	A	B	C	D	E	F	G	H	I	J	K	L	M
1	번호	관련농장	농장명	축주명	도(광역시)	시	면(구)	리	전화번호	관련1	관련2	관련3	위험도
2	1	김호향		가나다	경기	김포	동진면	고정리	031-XXX-XXXX	도분처리			고
3	2	김호향	한아름농장	나다라	경기	김포	동진면	가현리	031-XXX-XXXX	지대사료차량	벌크차량	벌크차량2	고
4	3	김호향		다과과	인천	강화	선원면	간매리	031-XXX-XXXX	지대사료차량			고
5	4	김호향		라바바	인천	강화	선원면	거동대리	031-XXX-XXXX	지대사료차량	벌크차량1		고
6	5	김호향		마바사	경기	김포	대동면	거동대리	031-XXX-XXXX	지대사료차량			고
7	6	김호향	인진농장	바사바	경기	김포	동진면	갈산리	031-XXX-XXXX	도분처리			고
8	7	김호향		자자자	인천	강화	선원면	간매리	031-XXX-XXXX	지대사료차량	벌크차량1		고
9	8	김호향		아자차	인천	강화	선원면	간매리	031-XXX-XXXX	지대사료차량	벌크차량1	벌크차량2	고
10	9	김호향		자차타	경기	김포	동진면	갈산리	031-XXX-XXXX	도분처리			고
11	10	김호향		타차파	인천	강화	선원면	간매리	031-XXX-XXXX	지대사료차량	벌크차량1		고
12	11	김호향		하하	경기	김포	동진면	상대리	031-XXX-XXXX	지대사료차량			고
13	12	김호향	상림축산농장	이강남	경기	김포	동진면	갈산리	031-XXX-XXXX	인근농가	인근수출		고
14	13	김호향	김포농장	이강남	경기	김포	동진면	갈산리	031-XXX-XXXX	인근농가			고
15	14	김호향		김강화	경기	김포	동진면	갈산리	031-XXX-XXXX	인근농가			고
16	15	김호향	해원농장	이강남	경기	김포	동진면	양곡리	011-XXX-XXXX	벌크차량1	벌크차량2		중
17	16	김호향	불빛농장	이모모	경기	김포	동진면	조물리	031-XXX-XXXX	도분처리			중
18	17	김호향	두니농장	김김포	경기	김포	하성면	시암리	011-XXX-XXXX	벌크차량1			저
19	18	김호향		김인진	인천	강화	선원면	간매리	033-XXX-XXXX	벌크차량1			저
20	19	김호향		김아지	인천	강화	선원면	간매리	033-XXX-XXXX	벌크차량1			저
21	20	김호향	선평농장	송아지	경기	김포	동진면	석정리	031-XXX-XXXX	벌크차량1			저
22	21	김호향		송남	충남	당진	송송면	광천리	041-XXX-XXXX	벌크차량2			저
23	1	이현호	고정리	김포시	경기	김포	동진면	고정리	011-XXX-XXXX	지대사료	솔하기사	도축장	고
24	2	이현호	이순자	경기	김포	대동면	석정리	031-XXX-XXXX	솔하기사	도축장			고
25	3	이현호	순호장	경기	김포	동진면	가현리	031-XXX-XXXX	솔하기사	도축장			고
26	4	이현호	노유현	경기	김포시	대동면	거동대리	031-XXX-XXXX	지대사료	사료차량			고
27	5	이현호	김동중	경기	김포시	동진면	가현리	031-XXX-XXXX	지대사료	사료차량			고
28	6	이현호	이민사	경기	김포	동진면	석정리	031-XXX-XXXX	솔하기사	도축장			고
29	7	이현호	김포소원	경기	김포	동진면	가현리	031-XXX-XXXX	솔하기사	도축장			고
30	8	이현호	김포현	경기	김포	양동면	양곡리	031-XXX-XXXX	솔하기사	도축장			고
31	9	이현호	이서출	경기	김포	동진면	고정리	031-XXX-XXXX	솔하기사	도축장			고

(그림 6-20) 돼지콜레라 발생농장별 역학관련 농장 위험도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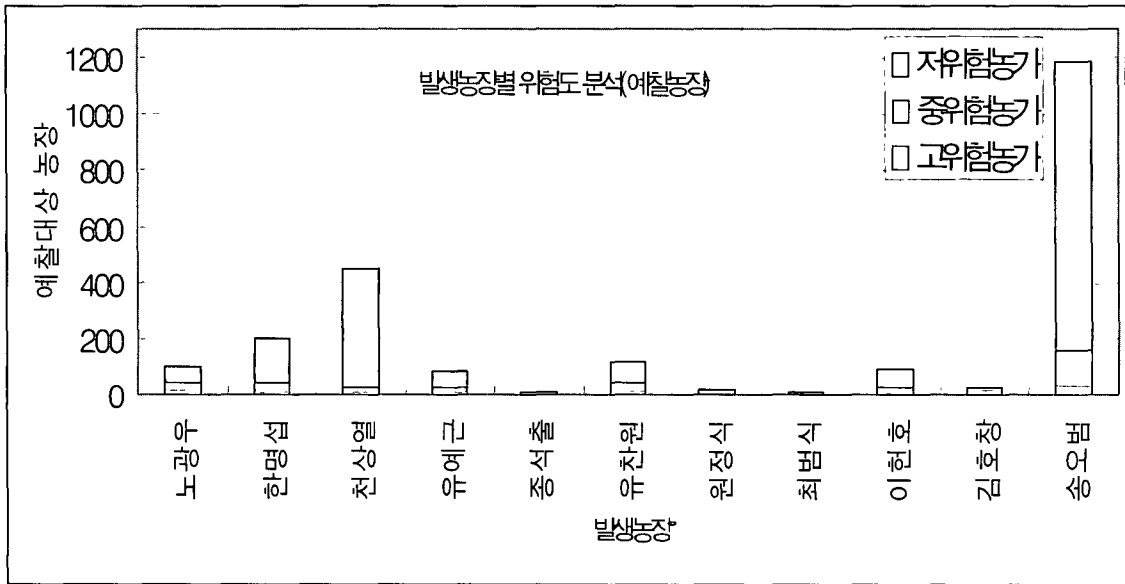
다) 위험도 분석에 따른 관련농장 방역조치

(1) 관할 시·도(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서 해당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구분	주기	방법	비고
고위험	1주간격 3회 임상검사, 3회 혈청검사	초기 1주일간은 축사내외, 진입로, 사료창고, 상차대 등에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집중적 소독 실시, 그 이후 8일간 : 2일에 1회 이상 소독실시	전담자 지정하여 매일 전화 예찰 등으로 방역 지도 및 이상유무 확인
중위험	1주간격 3회 임상검사, 1~10일간격 2회 혈청검사	초기 5일간은 축사내외, 진입로, 사료창고, 상차대 등에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집중적 소독 실시, 그 이후 10일간은 2일에 1회 이상 소독실시	
저위험	1주간격 3회 임상검사, 1회 혈청검사	초기 3일간은 축사내외, 진입로, 사료창고, 상차대 등에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집중적인 소독실시, 그이후 12일간 2일에 1회 이상 소독 실시	

\* 동 조치는 11.16 유찬원 농장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송오범 농장 역학관련 농장까지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의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1회의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농장의 오염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림 6-20) 돼지콜레라 발생농장별 역학관련 농장 위험도 분석결과



다) 위험도 분석에 따른 관련농장 방역조치

(1) 관할 시·도(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서 해당농장에 대한 임상검사, 혈청검사 및 예찰을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구분	주기	방법	비고
고위험	1주간격 3회 임상검사, 3회 혈청검사	초기 1주일간은 축사내외, 진입로, 사료창고, 상차대 등에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집중적 소독 실시, 그 이후 8일간 : 2일에 1회 이상 소독실시	전담자 지정하여 매일 전화 예찰 등으로 방역 지도 및 이상유무 확인
중위험	1주간격 3회 임상검사, 1~10일간격 2회 혈청검사	초기 5일간은 축사내외, 진입로, 사료창고, 상차대 등에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집중적 소독 실시, 그 이후 10일간은 2일에 1회 이상 소독실시	
저위험	1주간격 3회 임상검사, 1회 혈청검사	초기 3일간은 축사내외, 진입로, 사료창고, 상차대 등에 소독약이 흠뻑 젖도록 집중적인 소독실시, 그이후 12일간 2일에 1회 이상 소독 실시	

\* 동 조치는 11.16 유찬원 농장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송오범 농장 역학관련 농장까지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의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1회의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농장의 오염여부를 판단하였다.

(2) 역학관련 농장에 대하여 농장 관할 가축방역기관에서 실시한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오염된 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제한적 예방접종 실시

가) 기존 돼지콜레라는 김포·강화의 방역지역 내에서만 발생하다가 방역지역을 벗어난 이천에서 12.21일 발생하였다.

나) 이천지역은 돼지밀집 사육지역이며 교통차단 등 이동통제가 어려워 경기 이천의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타지역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적인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였다.

- (1) 대상지역 :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행정구역내(이천 전지역, 경기 김포·이천·여주) 및 인접 시·군(안성, 용인, 양평, 광주)
- (2) 접종시기 : 1차('02.12.25 ~ 12.31), 2차('03.1.15 ~ 1.20)

5) 이동제한 해제 : 긴급 방역조치 결과 12.21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고,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을 지역별로 해제하였다 (표 22).

〈표 6-22〉 지역별 경계-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일

발생지역	발생일	살처분	수매출하		이동제한 해제		비고
			경계지역	위험지역	경계지역	위험지역	
1차(강화)	10. 8	10.9	10.30	11.11	11.11	11.21	
2차(강화)	10.13	10.14	10.30	-	11.11	11.27	
3차(강화)	10.14	10.15	12.14	12.27	11.21 12.13	'03.1.7	8차발생 재설정 (경계 11.27)
4차(김포)	10.22	10.22	12.8	12.24	11.9 12.14	'03.1.4	9차발생 재설정 (경계 11.26)
5차(강화)	11. 2	11.2	12.14	12.27	11.21 12.13	'03.1.7	8차발생 재설정 (경계 11.27)
6차(이천)	11.16	11.17	12.5	12.17	12.4 12.7	12.28	
7차(김포)	11.16	11.19	12.7	12.24	12.14	'03.1.4	9차발생 재설정 (경계 11.26)
8차(강화)	11.26	11.27	12.9	12.27	12.13	'03.1.7	
9차(김포)	11.27	11.27	12.7	12.24	12.14	'03.1.4	
10차(김포)	12.15	12.16	'03.1.6	12.24	'03.1.4	'03.1.25	
11차(이천)	12.22	12.23	'03.1.14	'03.1.20	'03.1.14	'03.2.3	

## 6) 기타 방역조치 사항

- 가) 발생농장 방문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세척(세탁), 소독 및 일정기간 타농장 방문 금지 조치
- 나)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지도와 함께 ARS 홍보 실시
- 다) 겨울철 이동통제 초소에서 소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축운반 등 축산관련 차량 위주로 주황색 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선별 소독 실시
- 라) 발생농장 출하 도축물량 전량폐기(246kg, 10개 업소)
- 마) 중앙 가축방역관이 현지 상주하여 살처분, 소독, 사후관리 등 현장을 지도하였으며, 강화 및 김포지역 역학적 고위험 농가에 대하여 현지 상주 임상관찰 실시
- 바) 발생 및 인접지역 소재 도축장에 현지 상주하여 가축운반차량 소독 지도 실시('02.11.19~'03.1.14) : 강화·인천·부천·김포·파주·서울 소재 도축장

## 사. 결론

- 1) 강화김포지역에 발생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분석, 감염추정일 등을 고려하면, 노광우 농가와 한명섭 농가는 각각 다른 경로를 통하여 비슷한 시기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 2) 최초 발생농장의 질병 유입요인 분석 결과, 외국여행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야생 멧돼지를 통한 질병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 3) 추가 발생농장에 대한 전파요인을 분석한 결과, 최초 발생보고 (노광우 농장 10.8) 이전에 3~4개 농장이 이미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5차 발생 농가부터는 기 오염된 농장에서 다른 농가로 오염된 사람차량물품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23〉 역학관련 농장의 지역별 현황

지 역 별		위험도 분석(농장수)			
시/도	시/군	총 합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1,586	76	130	1,380
서울특별시		6	0	0	6
인천광역시		118	31	25	62
대구광역시		1	0	0	1
광주광역시		1	0	0	1
대전광역시		2	0	1	1
경기도	소 계	758	42	71	645
	안성시	36	0	2	34
	여주군	21	0	0	21
	용인시	54	0	2	52
	의정부시	1	0	0	1
	이천시	44	0	0	44
	포천군	42	2	5	35
	양주군	46	0	2	44
	양평군	9	0	9	40
	연천군	36	0	3	33
	파주시	63	1	6	56
	평택시	77	3	4	70
	가평군	8	0	0	8
	고양시	57	0	10	47
	광명시	2	0	0	2
	광주시	8	0	0	8
	김포시	116	33	26	57
	남양주시	26	0	1	25
	동두천시	4	0	0	4
	부천시	11	0	3	8
시흥시	5	0	1	4	
안산시	1	0	0	1	
오산시	6	0	0	6	
하남시	4	0	0	4	
화성시	79	6	70	46	
강 원 도		113	1	4	108
경상북도		11	1	0	10
충청남도		500	26	474	242
충청북도		45	1	3	41
전라남도		10	0	0	10
전라북도		23	0	0	23

## [ 참고 조사자료 ]

## ◇ 홈스테이 학생 관련 ◇

- 이름 : D OO(대학생)
- 금번 홈스테이 행사시 필리핀에서 약 20여명이 입국
- 입국시(7월말) 강화군·읍 B 교회에서 집결한 후 각자는 담당 교회 목사 안내로 홈스테이 해당 집으로 들어옴
- 입국시 가져온 물건은 옷, 책, 세면도구, 신발, 과자, 해바라기씨모양 건조음식물, 스프 등으로 1달여간 생활시 필요한 물건들로 고기나 축산물, 일반음식물은 없었음
- 홈스테이 학생 한국에 거주시 한국음식만 섭취
- 한국에서의 생활
  -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기도 참석
  - 1주일에 1번 단체(학생 및 담당 교회목사)로 관광지 구경
  - D OO와 노 OO(둘째딸)이 농장 앞 쌀건조장까지 1번 8월초 방문
  - 친구인 POOO 등 2명이 집으로 한번 방문
- D OO 귀국후 총 3회 편지를 받았으며, 소포 등 물건은 받지 않음
- 2001년 겨울방학시에는 D OO 집에 노 OO(둘째딸)이 다녀 왔음

## ◇ 교회 집사 관련 ◇

- M 교회 집사(허OO, 937-1xxx) 내외가 태국 푸켓시 방문(9.23~9.27까지)
- 아들이 서울소재 B 여행사(◇◇그룹 산하)에 근무하면서, 여행사 직원 및 가족만 갈 수 있는 여행package 이용, 아들과 허OO 내외 3명 여행
- 여행경로 : 주 관광지는 '피피섬'으로 해수욕을 하였으며, 호텔식이나 한식당을 이용함
- 농장 등 축산농가 방문은 없다고 함
- 고기, 축산물 등은 가져올 수 없어 마른 과일만 가지고 왔음
- 현재는 기도원을 다니고 있어 교인들을 자주 만나지 않음
- 여행시 휴대한 음식(열대과일 말린것)을 축주(노광우) 부인과 나눠 먹었음
- 축주는 10.6일 M 교회 예배시 교회 교인들을 만남

## ◇ 교회 목사 여행 관련 ◇

- 강화군 화도면 및 길상면 17개 교회 목사부부 중국 방문
- 지난 7월1일~6일까지 C 항공(서울 마포 소재)을 통해 목사부부 33인 및 가이드 1인 등 총 34



- 인이 중국 북경, 서안, 대림 등 여행
  - S 교회 최OO 목사, 화도면 M 교회(축주가 다니는 교회) 목사 김OO
- 현지에서 특별히 돼지고기 등을 먹은 적이 없으며, 입국시 진주목걸이, 한약재 등을 가져왔으나 육류 등은 가져오지 않았음
- O 중앙교회 김OO 목사 부부(조 OO 동서)
  - 추석(9.21, 돼지잡음), 아버님 생신(8.15)에 조 OO과 만남
    - ※ 조 OO는 노광우 농장의 종사자임
  - 평소에는 2~3주에 1번 정도 조OO 집으로 고추, 고구마 등 농산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자주 방문
  - 중국 여행후 귀국시 축산물 등 물건을 구입하지는 않음
  - 여행중 동물원(옹호관광지-곰·호랑이 쇼구경, 계림), 호텔 앞 야시장 등 관광도 함
  - 음식은 고기류를 많이 먹었고 돼지고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기억됨
  - 여행사에서 가이드가 안내하여 코스별 관광을 하였으나, 단독 행동이나 각자 행동은 없었음

#### ◇ 농장근무 인부의 중국여행 관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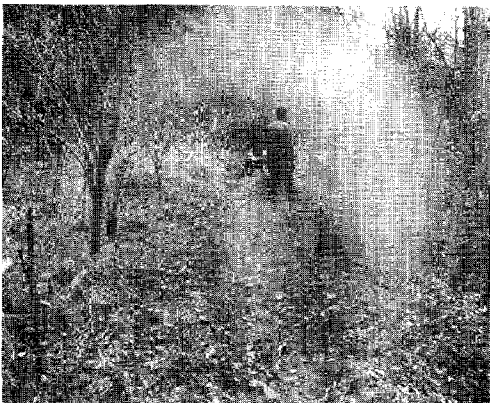
- 평소 선두농장(한명섭)에 돈분처리 및 돼지몰이(돈사별 리어카로 자돈 이동) 등 각종 잔일을 도와줌
- 선두농장 작업 일시(※ 일부 수첩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도 있음)
  - 8.13, 8.14(돼지몰이 및 돈분처리)
  - 10.9, 10.10, 10.11(개장수리, 한명섭 조사 당시 10.6~9로 진술)  
( 9.2~9.20까지 약 20일 동안은 선두4리 김OO씨(후배) 꽃게잡이 )
- 양돈장에 아는 사람이 없어 한명섭 농장 이외의 다른 양돈장에 가지는 않음
- 중국 여행 관련
  - 7.20~7.22까지 길상면 온수리에 거주하는 장 OO과 함께 중국여행
  - 주민등록번호 : 580205-1xxxxxx
  - 아는 전도사를 통해 중국 조선족 여자(연길 시골 여자, 36세)를 각각 소개받기 위해 중국 방문  
[ 인천공항(7.20) → 장춘도착 → 연길(1박, 7.20) → 장춘(1박, 7.21) → 인천 도착(7.22) ]
  - 여행시 연길에서 거리시장(생선, 물, 과일 등 판매하던 곳)을 구경하고 귀국시는 돈이 없어 물건은 사지 않았음(장OO은 시장에서 건조녹용, 상황버섯을 구입)
  - 7.19 친구 계 OO(길상면 장흥리, 전등사 근무) 집 초상이 있어, 초상집에 들렀다가 바로 7.20 09:00 출국시간이 되어 착용하던 신발(운동화)을 신고 출국하게 됨

### ◇ 발생농장 주변인물 관련 ◇

- 노광우 동서 차 OO(011-9083-0xxx, 47세)
- 감람농장 방문 : 7월말 ~ 8월초(11.2 감람농장 방문)
  - 용달차 이용 파렛트(목재) 15개 및 중국산 여행용 가방을 가져옴
  - 파렛트는 농장 공터 맨위에 적재하였고 8월 중순까지 농장에 있었음  
(중국산 여행용가방은 현재 비닐로 쌓여진 채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음)
- 인천항의 수입화물을 서울·경인지역에 배달하는 용달차 기사임(사무실은 연안부두의 보세창고에 있음). 그 동안 가축 사육 농장으로의 배달은 없었음
- 주 취급 품목 : 중국산 수입품(버섯, 고사리, 옷, 기계류)을 90% 취급하며 기타 일본, 베트남 제품(지퍼)

### ◇ 야생멧돼지 조사 관련 : 포획허가 포수의 진술 ◇

- 현재 강화군 전 지역에 약 30여두가 서식하고 있음
- 월구산 11두 추정 : 최근 발자국 흔적 등 확인
- 마니산 산자락에 있는 선수포구(후포항) 부근 산에 10두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마니산 사이를 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
- 석모도의 상주산에 6두 확인(발자국 확인)
  - 인근 미법도(석모도 상주산 인근 옆섬) 2두 이동 확인
  - 추적 초기(10.24일 수렵허가)에 상주산에 6두가 확인
- 석모도 보문사 산쪽에서는 7~10두 추정
- 봉천산(하점면) 오층석탑 있는 곳에는 3~4두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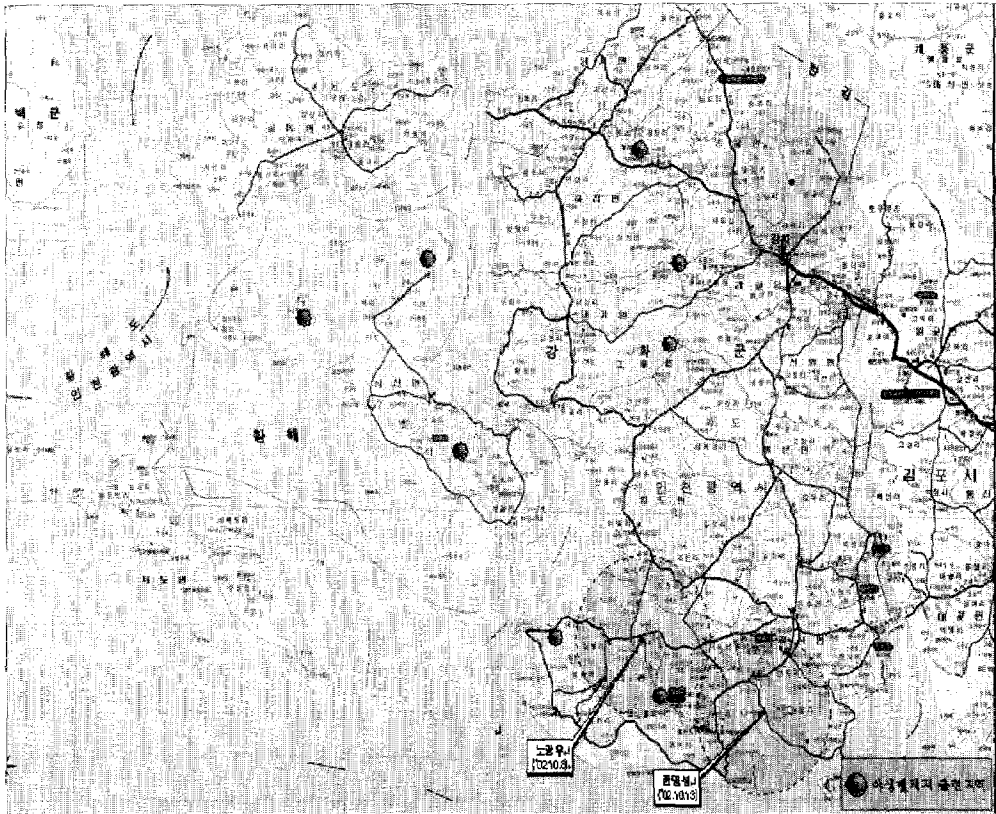


(1) 포수 멧돼지 추적(강화 삼산면 상주산)



(2) 야생멧돼지 발자국 흔적

(그림 6-21) 강화지역 야생멧돼지 출현지역



◇ D 화학산업(주) 조사 : 오염된 차량(압력박스)에 의한 전파 ◇

- 거래처(8) : 돼지농장(6농장), 부천축협공판장(1), 롯데제과(1)
  - ▶ 돼지농장의 돈분은 주로 이 OO(경기93구 7\*\*\*)이 수거를 하며, 바쁠때는 이 △△이 도와주기도 함
  - ▶ 부천축협공판장의 내장, 내장 내용물, 돈분을 수거(이OO, 경기93구 7\*\*\*호)
  - ▶ 롯데제과(인천 양평동 소재)의 汚泥(오니)를 수거하며 이△△(경기93구 7\*\*\*)이 담당
- D 화학 소독상태
  - ▶ 차량 입출입시 소독시설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소독약품 및 희석배율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현장 확인결과 약취제거제를 소독약으로 오인하여 사용중이었음
- 퇴비는 24시간 후에 반출되는 것은 200℃ 이상 건조되고 일반적인 퇴비는 6개월 정도 저장후 서울, 전남 등 채소농장으로 반출됨
- 농장 돈분 수거 현황(이OO, 이△△)

〈표 6-24〉 농장별 돈분 수거 현황

수거 일시	수거 농장명						수거순서
	김호창	안진(윤OO)	최OO	임OO	금성(김OO)	늘빏(이OO)	
11.1		○					
11.2			○				
11.4							
11.6		○		○			
11.7		○					
11.9	○	○			○		
11.11			○				
11.13		○				○	
11.16	○	○(이△△)		○			임OO→김호창
11.18			○				
11.19		○(이△△)					
11.20				○			
11.22		○		○			
11.23	○		○				최OO→김호창
11.25		○					
11.28		○					
11.29			○		○	○	늘빏→최OO→금성
11.30	○						
12.2		○					
12.4			○				
12.5		○					
12.7	○						
12.9		○					
12.10			○		○		금성→최OO
12.12		○					
12.14	○						

※ 차량은 항상 원정식 농장 앞에서 후진을 하여 임OO 농장으로 진입

※ 임OO 농장은 원정식 농장과 5~10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차량을 후진시켜 놓고 윽길 자리를 보기 위해 차량에서 내림

※ 별도의 방역복, 방역화 착용은 없었음

(그림 6-22)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 압물박스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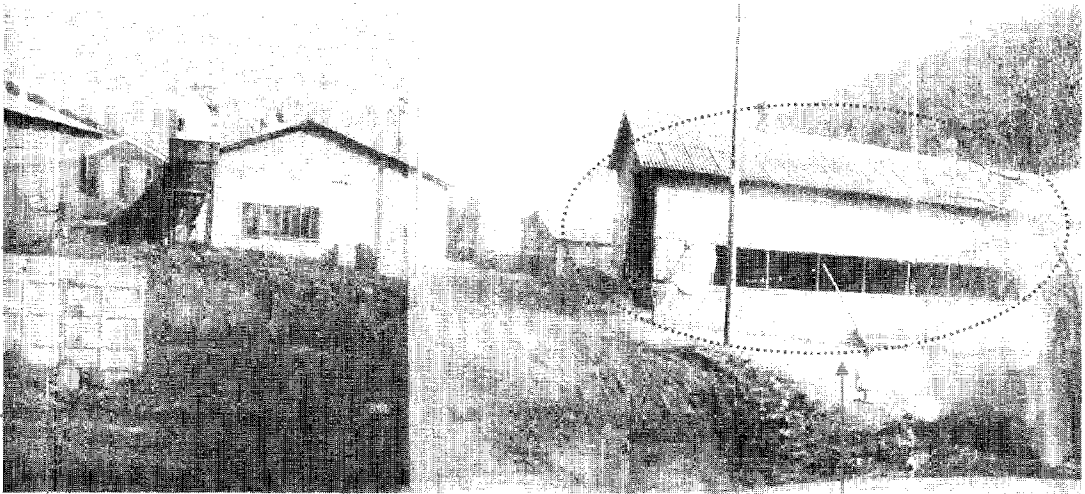
임OO 농장 압물박스  
(D 화학 처리)

발생농장(김호창)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원정식)



(그림 6-22)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및 인근농장 압록박스 위치



발생농장(김호창)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원정식)

임OO 농장 압록박스  
(D 화학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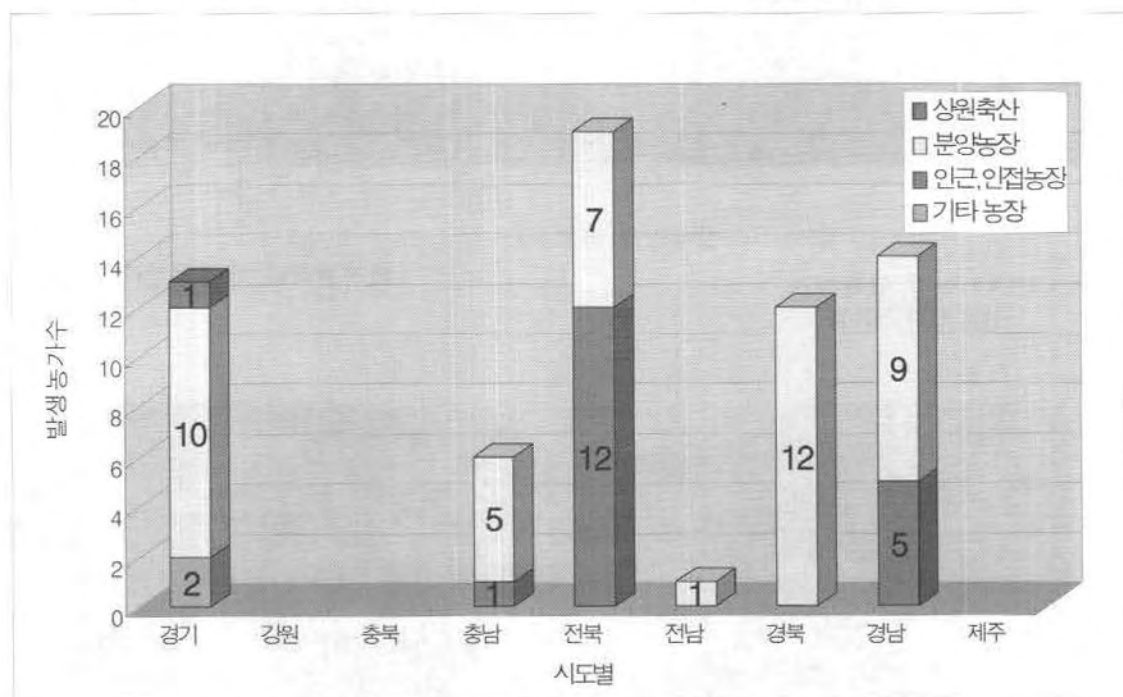
## 4. 2003년 돼지콜레라 전국적 발생(3~5월) 역학조사

### 가. '03년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 1) 전파요인별 발생농장 개요

2003년 3월 18일 ~ 5월 8일 사이 경기(13건), 충남(6건), 전남(1건), 전북(19건), 경남(14건), 경북(12건) 등으로 강원, 충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 6개도 25개 시·군에서 총 65건의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되었다.

(그림 6-23) 2003년 돼지콜레라 시도별 발생현황('03.5.8일 현재)



※ 상원 : 상원축산 제1농장, 분양 : 상원축산(상주축산 포함) 돼지 분양농장  
 인근·인접 : 돼지콜레라 발생 분양농장 인근 또는 역학적 관련 농장  
 기타 : 역학조사결과, 상원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농장

#### 2) 일자별 발생현황

2003년 3월 18일 전북 익산 왕궁면(송영민)에서 최초로 신고된 의심축이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판정된 이후, 목적학적 예찰 및 신고 등을 통하여 3월 43개 농장, 4월 18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되었고, 5.8일 익산 왕궁면에서 3건이 추가 발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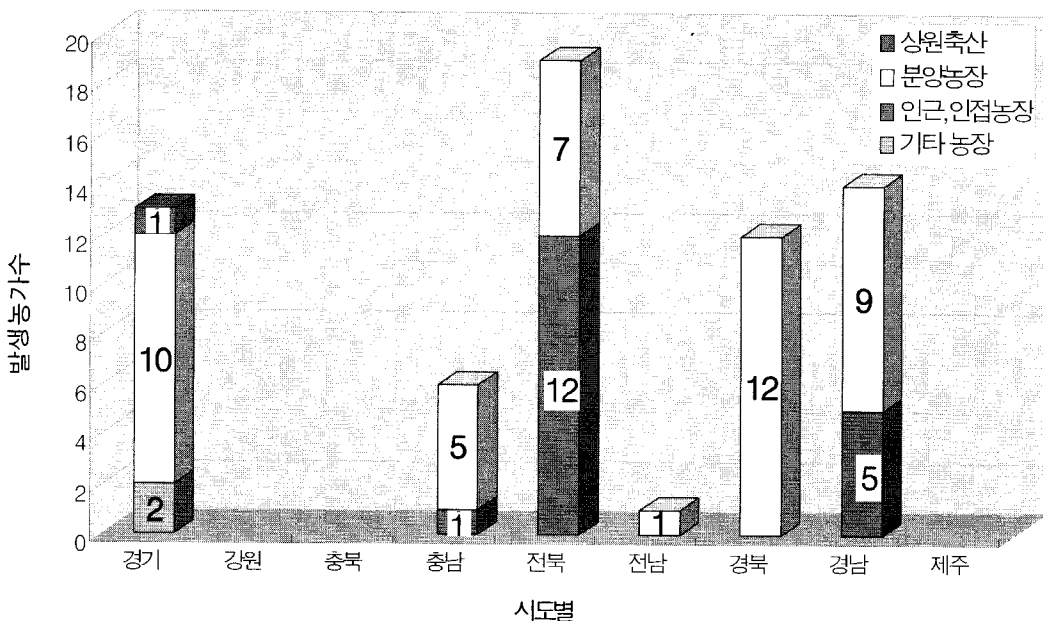
## 4. 2003년 돼지콜레라 전국적 발생(3~5월) 역학조사

### 가. '03년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 1) 전파요인별 발생농장 개요

2003년 3월 18일 ~ 5월 8일 사이 경기(13건), 충남(6건), 전남(1건), 전북(19건), 경남(14건), 경북(12건) 등으로 강원, 충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 6개도 25개 시·군에서 총 65건의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되었다.

(그림 6-23) 2003년 돼지콜레라 시도별 발생현황('03.5.8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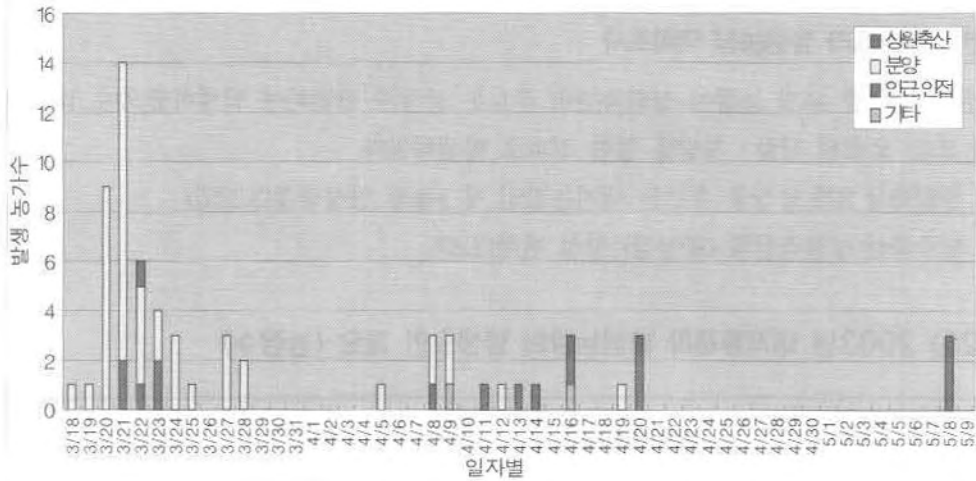
※ 상원 : 상원축산 제1농장, 분양: 상원축산(상주축산 포함) 돼지 분양농장  
 인근·인접: 돼지콜레라 발생 분양농장 인근 또는 역학적 관련 농장  
 기타 : 역학조사결과, 상원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농장

#### 2) 일자별 발생현황

2003년 3월 18일 전북 익산 왕궁면(송영민)에서 최초로 신고된 의심축이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판정된 이후, 목적학적 예찰 및 신고 등을 통하여 3월 43개 농장, 4월 18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되었고, 5.8일 익산 왕궁면에서 3건이 추가 발생되었다.



(그림 6-24) 2003년 돼지콜레라 일자별 발생현황('03.3.18~5.8)



## 2003년도 돼지콜레라 국내 발생상황

### 경기도

화성	성탄	1
안성	천안	2
이천	주포	3
김포	포천	3
포천	천	2

### 충청남도

당진	진산	3
아산	영성	1
보령	성	1
홍성	성	1

### 전라북도

익산	산주	14
진안	제수	1
김제	안	2
장수	안	1
파주	안	1

###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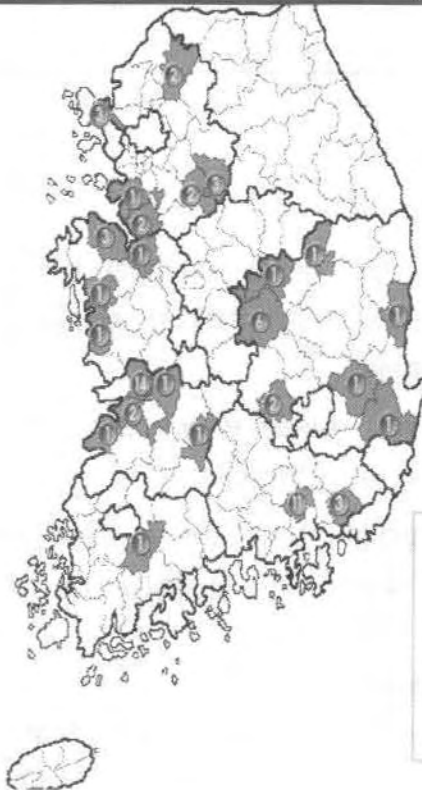
화순	순	1
----	---	---

### 경상북도

상주	주	5
성주	주	2
안동	주	1
영주	주	1
영양	포천	1
포천	천	1
영천	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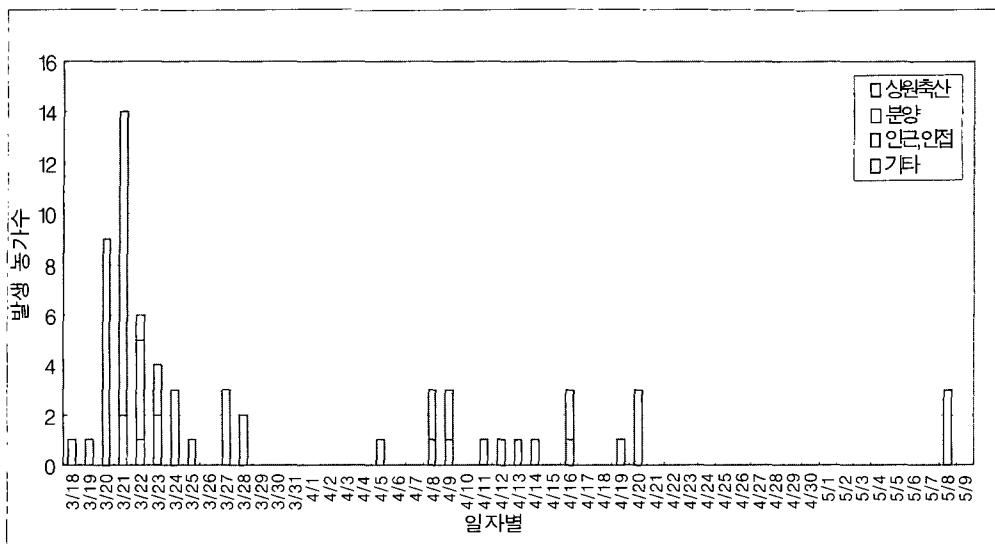
### 경상남도

김해	해	3
합안	안	11



**2003. 3.18일부터  
5.8일까지  
6개도 25개 시/군  
65개 농가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그림 6-24) 2003년 돼지콜레라 일자별 발생현황('03.3.18~5.8)



### 2003년도 돼지콜레라 국내 발생상황

#### 경기도

화성	1
성탄	2
평택	2
이천	3
여주	3
김포	3
포천	2

#### 충청남도

당진	3
아산	1
보령	1
홍성	1

#### 전라북도

익산	14
완주	1
김제	2
장수	1
안양	1

####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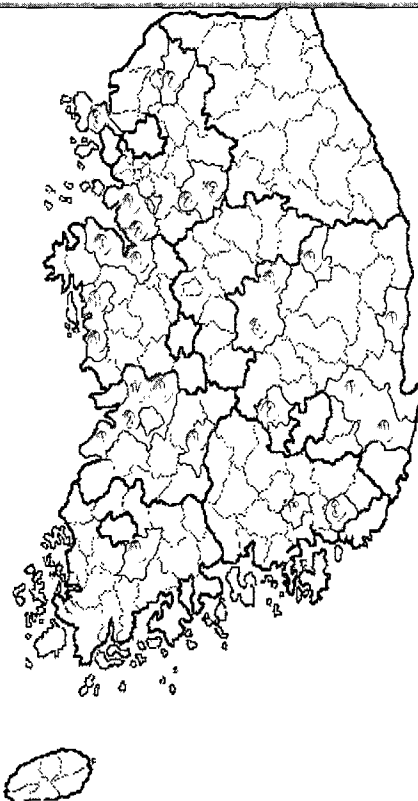
화순	1
----	---

#### 경상북도

상주	5
진주	2
포항	1
영주	1
영천	1
영동	1
영양	1

#### 경상남도

김해	3
안양	11



**2003. 3.18**일부터  
**5.8**일까지  
**6**개도 **25**개 시·군  
**65**개 농가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 나. '03년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역학조사 개요

### 1) '03년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역학조사

65개 발생농장 중 44개 농장이 상원축산의 후보돈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며, 18개 농장은 인근전파 또는 오염된 사람·차량을 통한 전파로 발생하였다.

- 상원축산 3개 농장중 후보돈 대기농장인 제 1농장 양성판정(3.22일)
- 상주축산(상원축산의 GP농장) 양성 판정(3.20)

〈표 6-25〉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의 발생요인 개요 (농장수)

합 계	상원축산	분양관련농장		인근 전파	오염차량·사람	기 타*
		상원축산 분양관련	상주축산 분양관련			
65	1	39	5	13	5	2

\* 기타 : 포천 지역 2개농장은 상원축산과 역학적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음

### 2) 상원축산 및 분양농장 조사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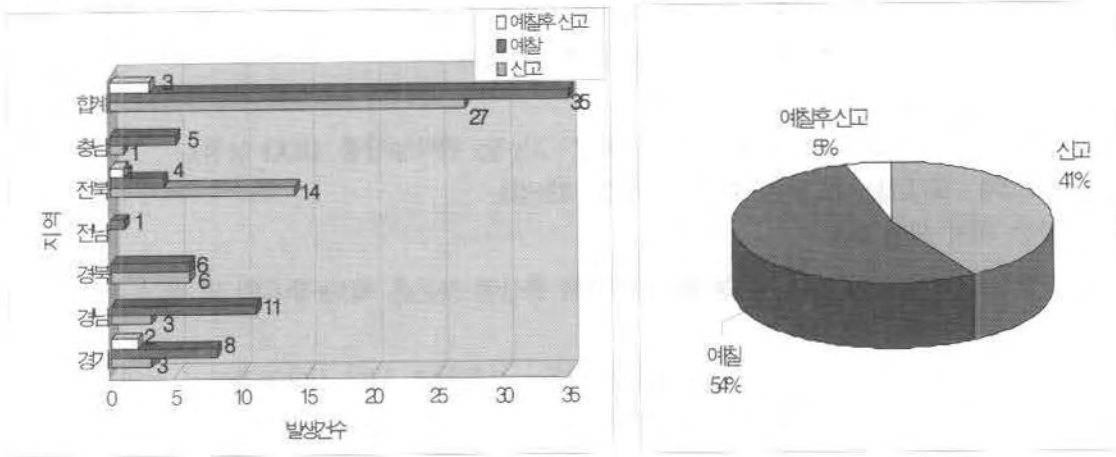
가) 3.18일 전북 익산 왕궁면 송영민 농장이 돼지콜레라 항원검사서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같은날 경남 함안(김외석), 경북 상주(박경화) 및 충남 당진(김진원)으로부터 돼지콜레라 의심축 신고와 검사가 진행되었다.

나) 4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경기 김포 소재 상원축산으로부터 2.18/2.19 일 양일간에 후보돈이 입식된 사실이 확인되어,

다) 상원축산(3개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3.20) 및 상원축산에서 2.1일 이후 돼지를 판매한 농장(81개 농장)에 대한 예찰(임상검사 및 정밀검사)을 건의하였다(3.20)

☞ 상원축산(상주축산 포함) 분양농장에 대한 목적학적 예찰(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실시 결과, 35개 농장(54%)에서 신고 이전에 돼지 콜레라 감염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5).

(그림 6-25)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 확인내역(예찰 신고·예찰후 신고)



## 다. 상원축산 및 분양농장 역학조사

### 1) 상원축산 역학조사

#### 가) 지리적 위치

(1) 상원축산은 제1, 제2 및 제3농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 농장 모두 '02년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기 김포 및 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 제1농장 : 이동제한지역 밖(김포 고촌)에 위치

(나) 제2농장 : 경계지역(인천 유찬원 농장)내 위치

(다) 제3농장 : 경계지역(발생농장 : 김포 유예근·원정식·이원호·김호창 농장)내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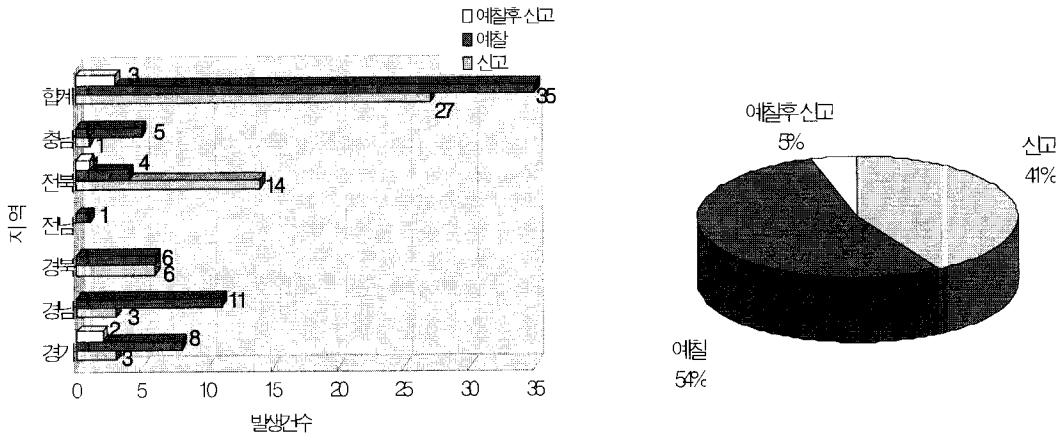
(2) 상원축산은 경기, 인천지역에 20개소의 위탁관리농장을 두고 있으며, 이중 12개소(60%)가 김포 등 이동제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포 9, 파주 3, 강화 2, 용인 2, 포천 1, 고양 1, 연천 1, 인천서구 1

#### 나) 농장별 기능 및 사육관리 체계

농장	기능	비고
제1농장 (고촌농장)	위탁사육농장에서 이동한 돼지를 최대 약 180일령까지(1~3주) 사육하면서 계약 또는 주문에 의해 분양농장에 분양	
제2농장 (검단농장)	GGP(核豚)농장으로 순종을 생산하여 GGP로 사용하거나 제3농장(GP농장) 공급	6,300두 규모
제3농장 (대곶농장)	GP농장으로 후보돈(F1)을 생산하여 약 65일 동안 사육후 위탁사육농장에 위탁	11,000두 규모
위탁농장 (20농가)	약 65일령 돼지를 공급받아 약 150일령까지 사육하면서 후보돈을 선발하여 제1농장으로 이동	

(그림 6-25)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 확인내역(예찰·신고·예찰후 신고)



#### 다. 상원축산 및 분양농장 역학조사

##### 1) 상원축산 역학조사

###### 가) 지리적 위치

(1) 상원축산은 제1, 제2 및 제3농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 농장 모두 '02년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경기 김포 및 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가) 제1농장 : 이동제한지역 밖(김포 고촌)에 위치

(나) 제2농장 : 경계지역(인천 유찬원 농장)내 위치

(다) 제3농장 : 경계지역(발생농장 : 김포 유예근·원정식·이원호·김호창 농장)내 위치

(2) 상원축산은 경기, 인천지역에 20개소의 위탁관리농장을 두고 있으며, 이중 12개소(60%)가 김포 등 이동제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김포 9, 파주 3, 강화 2, 용인 2, 포천 1, 고양 1, 연천 1, 인천서구 1

###### 나) 농장별 기능 및 사육관리 체계

농장	기능	비고
제1농장 (고촌농장)	위탁사육농장에서 이동한 돼지를 최대 약 180일령까지(1~3주) 사육하면서 계약 또는 주문에 의해 분양농장에 분양	
제2농장 (경단농장)	GGP(核豚)농장으로 순종을 생산하여 GGP로 사용하거나 제3농장(GP농장) 공급	6,300두 규모
제3농장 (대곶농장)	GP농장으로 후보돈(F1)을 생산하여 약 65일 동안 사육후 위탁사육장에 위탁	11,000두 규모
위탁농장 (20농가)	약 65일령 돼지를 공급받아 약 150일령까지 사육하면서 후보돈을 선발하여 제1농장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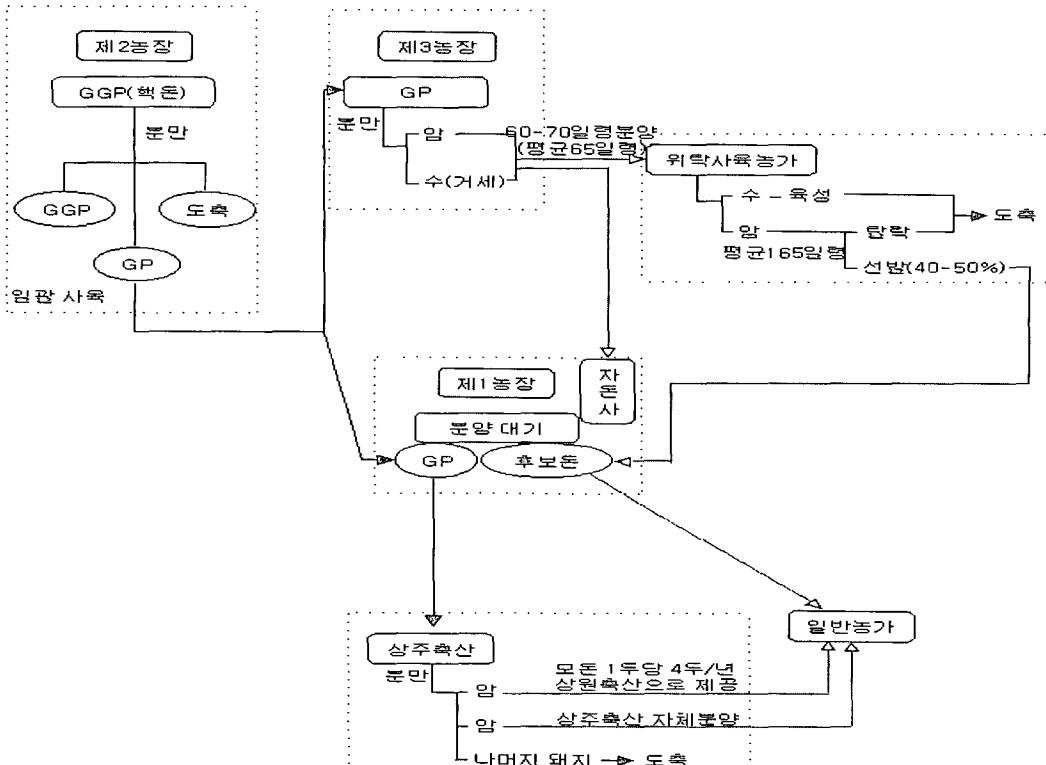
다) 상원축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현황

- (1) 상원축산 관계자에 따르면, 2002년 12월 백신접종 결정 후 제 2·3농장에서 5주령 이상의 거세돈을 위주로 백신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 (2) 백신 접종내역
  - (가) 1차 ('02.12.20~12.31) 9,770여두 (제 2·3농장, 위탁농장중 심OO 농장)
  - (나) 2차 ('03.1.11~1.22) 5,760여두 (제 2·3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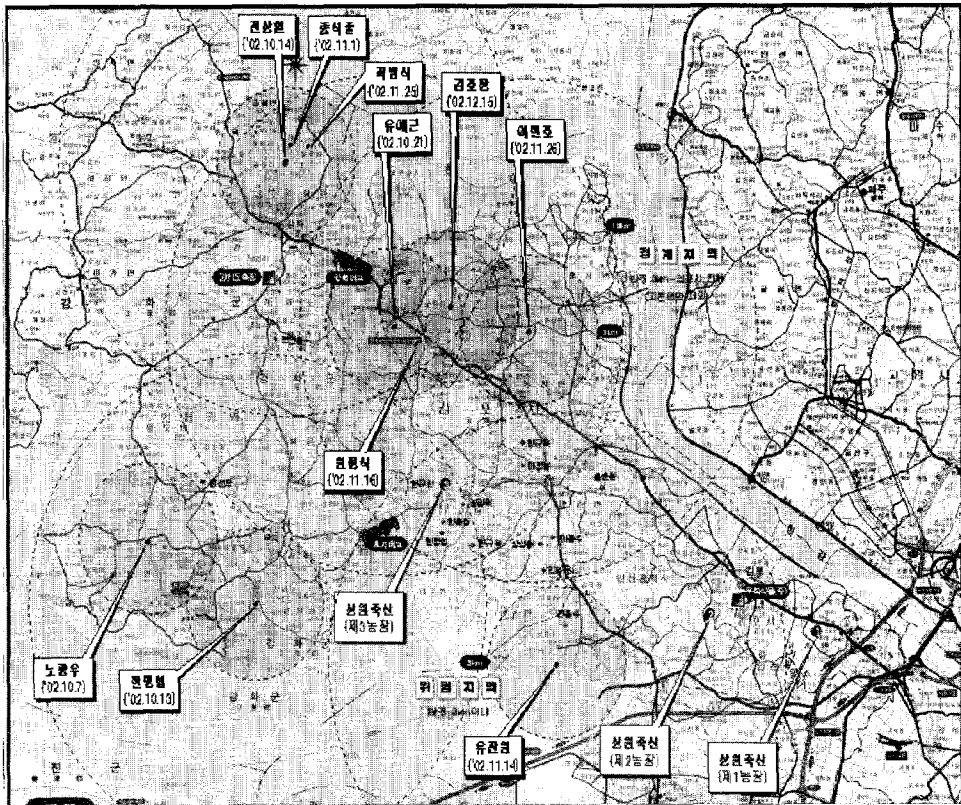
라) 농장간 돼지 이동경로

- (1) 그림 24의 흐름도와 같이 제2농장(GGP)에서 생산된 자돈은 제3농장(GP) 및 제1농장(일부)으로 이동하며,
- (2) 제3농장의 자돈(F1)은 위탁사육농장으로 이동·사육되고, 위탁 사육농장에서 선발된 후보돈은 다시 제1농장으로 이동되어 일정기간 대기한 다음 일반농가로 분양되었다.
- (3) 제1농장에서 상주축산으로 이동된 돼지는 대부분 일반농가로 분양되나 일부 선발돈은 상원축산으로 재이동하였다.
- (4) 이와 같이 상원축산 제1, 제2 및 제3농장과 위탁사육농장 및 상주축산은 돼지의 이동경로로 볼 때 하나의 농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26) 상원축산 생산체계 및 돼지 이동 흐름도



(그림 6-27) 상원축산 및 위탁사육농가의 지리적 위치도



농장명	주 소	사육두수
민 00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돼지 없음
김 00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700여두
이 00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800여두
심 00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돼지없음
정 00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1,100여두
전 0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745여두
이 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벽리	돼지없음
한 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400여두
한 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오니리 산	돼지없음
홍 00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600여두
한 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330여두
상원축산 (권00, 박0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4두

※ 김포 강화 지역 이외 위탁사육농장 : 경기 포천1, 파주3, 고양1, 연천1, 용인2

※ 2003.3월 현재

## 2) 상원축산 정밀검사 결과

## 가) 상원축산 (제 1, 2, 3농장) 정밀검사 결과

(1) 검역원 1차 검사결과(3.20일 채혈) 제 1농장에서 돼지콜레라 항원 양성(양성)이 2두에서 확인되었다.

〈표 6-26〉 상원축산 3개농장에 대한 돼지콜레라 정밀검사(1차) 결과

농장명	검사 두수	항원검사 (RT-PCR)		항체검사(ELISA)		항체역가 (ELISA8000배이상)	
		양성 두수	양성률 (%)	양성 두수	양성률 (%)	양성 두수	양성률 (%)
제1농장	100	2*	2.0	79	79.0	39	39.0
제2농장	60	-	-	40	66.7	2	3.33
제3농장	62	-	-	53	85.5	-	-

\* 2두 양성개체 백혈구감소증 (3,800, 7,000 /mm<sup>3</sup>)

## 나) 제1농장 확대 정밀검사 결과

(1) 검역원 확대(2차) 검사결과(3.23일 채혈)

(가) 돈사별 총 921두에 대한 검사결과 81두(8.8%)가 항원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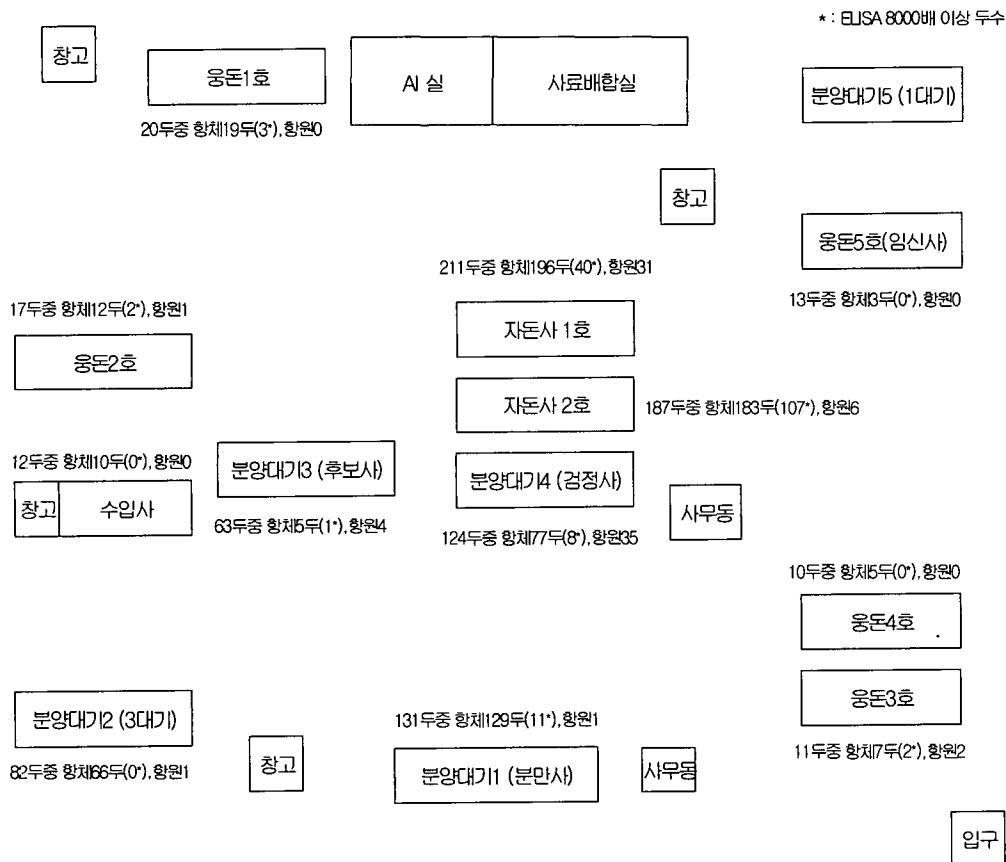
〈표 6-27〉 상원축산(제1농장) 돼지콜레라 확대정밀 검사(2차) 결과

구분	돈사	검사 두수	항원검사 (RT-PCR)		항체검사 (ELISA)		항체역가검사 (ELISA 8000배이상)	
			양성 두수	양성률 (%)	양성 두수	양성률 (%)	양성 두수	양성률 (%)
분양대기	분양대기1(분만사)	131	1	0.76	129	98.5	11	8.40
	분양대기2(대기3호)	82	1	1.22	66	80.5	0	0.0
	분양대기3(후보사)	63	4	6.35	5	7.94	1	1.59
	분양대기4(검정사)	124	35	28.2	77	62.1	8	6.45
	분양대기5(대기1호)	40	0	0.0	0	0.0	0	0.0
AI 웅돈	웅돈1호	20	0	0.0	19	95.0	3	15.0
	웅돈2호	17	1	5.88	12	70.6	2	11.8
	웅돈3호	11	2	18.2	7	63.6	2	18.2
	웅돈4호	10	0	0.0	5	50.0	0	0.0
	웅돈5호(임신사)	13	0	0.0	3	23.1	0	0.0
	수입사	12	0	0.0	10	83.3	0	0.0
비육돈	자돈사1호	211	31	14.7	196	92.9	40	19.0
	자돈사2호	187	6	3.21	183	97.9	107	57.2
계		921	81	8.8	712	77.3	174	18.9



(2) 상원축산 제 1농장은 13개 돈사에 돼지가 수용되어 사육되고 있었으며, 돼지콜레라 정밀검사 결과를 각 돈사별로 정리한 결과는 아래 (그림 28)와 같다.

(그림 6-28) 돈사별 돼지콜레라 정밀검사 결과



- 항원 검출(비율순)  
: 분양대기4 28.2%(35두) > 웅돈3호 18.2%(2두) > 자돈사1 14.7%(31두) > 분양대기3 6.35%(4두) > 자돈사2 3.21%(6두)

- 항체(ELISA 8000배 이상) 검출(비율순)  
: 자돈사2 57.2%(107두) > 자돈사1 19.0%(40두) > 웅돈1 15.0%(3두) > 분양대기1 8.40%(11두) > 분양대기4 6.45%(8두)

☞ 분양대기돈사는 돼지의 입식·분양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제1 및 제4 대기돈사는 사무동과 인접해 있어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돈사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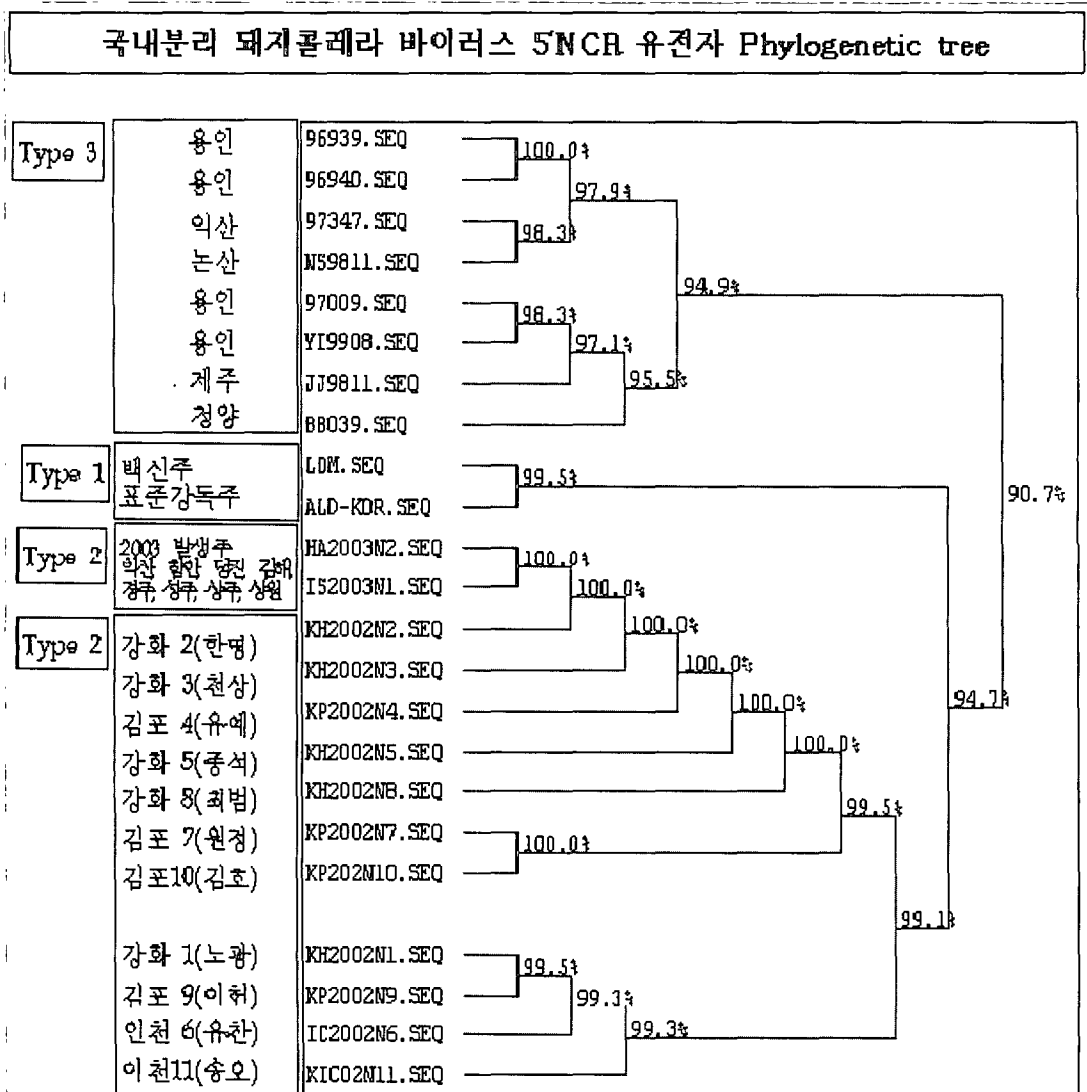
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1)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시료가 확보된 59개 농장중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상원축산(제1농장)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100% 일치하였다(그림 29).

※ 경기 포천(김철 농장)의 경우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상원축산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동 바이러스는 2002년 발생한 강화(한명섭, 천상열, 종석출, 최범식)와 김포(유예근)지역에서 분리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서열이 100% 일치하였다.

(그림 6-29) 국내 분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5' NCR) 염기서열 분석



### 3) 상원축산 분양농장 역학조사

가) 분양농장 돼지콜레라 발생상황(표 28~30)

(1) 상원축산 돼지 분양농장('03.2.1일 이후) 81개 중 38개 농장(46.9%)에서 발생

(2) 상주축산 돼지 분양농장('03.2.18일 이후) 9개 중 5개 농장(55.5%)에서 발생

※ 상주축산은 상원축산으로부터 2.18(11두), 3.13(11두) 돼지 구입

〈표 6-28〉 상원상주축산 후보돈 분양농장의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상 원 축 산		상 주 축 산		비 고
분양농장	발생농장	분양농장	발생농장	
81(82)	38(39)*	9	5	

(\*) : 39개 농장 중 1개 농장은 역학조사 결과 '03.1월(경기 조은섭)에 상원축산 돼지가 분양된 사실이 확인되어 상원축산 분양관련 농장으로 추가 분류하였다.

나) 분양농장(발생농장) 정밀검사 결과(표 29)

(1) 44개 분양농장의 입식돈 및 동거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입식돈 검사가 가능한 39개 농장 중 32개 농장(82.1%)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중 20개 농장(51.3%)은 입식돈에서만 양성으로 나타났다.

〈표 6-29〉 분양 발생농장의 입식돈 및 동거돈에 대한 돼지콜레라 정밀검사 결과

구 분	계	입식돈 양성	입식돈 양성	입식돈 양성	입식돈 음성*	검사시료** 구분불가
		동거돈 음성	동거돈 양성	동거돈 미검	동거돈 양성	
상원축산 분양농장	39	15	10	2	7	5
상주축산 분양농장	5	3	2	-	-	-
계	44	18	12	2	7	5

\* 입식돈 음성/동거돈 양성

- 5개농장의 검사 입식돈은 항체가 형성된 상태였으며,
- 2개농장은 생존 1두(1/5) 및 일부돼지(5/18)에 대한 검사 결과임

\*\* 검사시료 구분불가 : 입식돈 도태로 미검사(1) 및 검사시료의 입식돈 여부 구분 불가(4)

<표 6-30-1> 2003년 돼지클레라 발생농장 정밀검사 결과

번호	도	지역	축주	입식 두수	입식 일자	합계		입식돈		동거돈		입식돈 검사결과	비고
						검사 두수	양성 두수	검사 두수	양성 두수	검사 두수	양성 두수		
1	경기	이천	강노구	7	3.6	60	3	6	3	54	0	양성	
2	경기	평택	김혜자	4	2.26	60	3	4	1	56	2	양성	
3	경기	여주	원동학	40	1.16, 2.20, 3.14	60	3	34	3	26	0	양성	
4	경기	화성	이선구	22	2.20	60	3	22	3	38	0	양성	
5	경기	여주	이광래	10	3.6	60	3	10	3	50	0	양성	
6	경기	김포	이수인	10	3.5	60	1	4	1	56	0	양성	
7	경기	김포	정상문	12	3.4	60	2	12	2	48	0	양성	
8	경기	김포	한규진			100 921	2 81						상원축산 제1농장
9	경기	평택	남동우	9	2.20	18	2	16	2	2	0	양성	
10	경기	여주	조은섭	5	1.14	12	5	1	0	11	5	입식5두-3두 폐사, 1두출하, 1두검사-음성	
11	경기	포천	김 철	-	-	42	21	-	-	42	21	-	
12	경기	이천	박화양	15	1.14	32	11	10	1	22	10	양성	
13	경기	포천	김삼호	-	-							-	
14	충남	당진	김진원	15	2.19	46	5	10	0	36	5	10두 검사 음성	
15	충남	당진	김강수	10	2.19	15	3	9	0	6	3	9두 검사 음성	
16	충남	보령	강화규	59	2.26, 3.14	60	4	19	4	41	0	양성	
17	충남	아산	이성근	7	2.26	60	26	7	2	53	24	양성	
18	충남	홍성	김정숙	6	3.11	59	1	6	1	53	0	양성	
19	충남	당진	윤원영	-	-	24	1	-	-	24	1	-	
20	전북	익산	송영민	11	2.19,3.1 2	31	17	5	5	26	12	양성	
21	전북	익산	김영진	5	3.7	8	8	3	3	5	5	양성	
22	전북	익산	송두옥	-	-	10	10	-	-	10	10	-	
23	전북	익산	조인준	10	3.7	21	11	11	11	10	0	양성	
24	전북	익산	유영철	11	2.27	11	11	11	11	-	-	양성	
25	전북	완주	배명호	-	-	2	2	-	-	2	2	-	
26	전북	익산	이상태	13	12.14	22	6	-	-	22	6	3.20-입식돈검사음성 3.22-동거돈22두중 6두양성	
27	전북	김제	김기훈	-	-	55	3	-	-	55	3	-	
28	전북	김제	김기열	12	2.12	7	4	4	4	3	0	양성	
29	전북	장수	이화영	28	1.22,3.7	13	8	13	8	-	-	양성	
30	전북	익산	김삼복	-	-	23	15	-	-	23	15	-	
31	전북	익산	김영훈	-	-	5	5	-	-	5	5	-	
32	전북	익산	손정근	-	-	25	10	-	-	25	10	-	
33	전북	익산	신창식	-	-	36	15	-	-	36	15	-	
34	전북	익산	박강운	-	-	19	6	-	-	19	6	-	

〈표 6-30-2〉 2003년 돼지클레라 발생농장 정밀검사 결과(계속)

번호	도	지역	축주	입식 두수	입식 일자	합계		입식돈		동거돈		입식돈 검사결과	비고
						검사 두수	양성 두수	검사 두수	양성 두수	검사 두수	양성 두수		
35	전북	부안	이정우	6	2.12	16	7	3	0	13	7	입식6두중3두-폐사,도태 3.19-18두중입식3두 음성 4.6-10두중입식3두 음성 4.18-16두중입식3두 음성	
36	전북	익산	김성태	-	-	49	15	-	-	49	15	-	
37	전북	익산	유명길	-	-	16	16	-	-	16	16	-	
38	전북	익산	이병균	15	2.19	48	3	48	3	-	-	3.19-18두중입식15두 음성 4.6-17두중입식15두 음성 4.12-30두중입식15두 음성	
39	전남	화순	박의성	10	2.27	98	2	10	2	88	0	양성	
40	경북	상주	박경화	18	2.18,3.13	35	20	15	5	20	15	양성	
41	경북	경주	정상수	9	1.20,2.21	17	10	4	1	13	9	양성	
42	경북	성주	심태규	6	3.6	9	5	6	4	3	1	양성	
43	경북	상주	배태욱	17	1월중, 2.11,3.13	20	1	17	1	3	0	양성	
44	경북	성주	조경목	16	3.6	15	3	0	0	15	3	입식돈 모두 도태	
45	경북	영덕	조임치	2	2.21	30	6	10	6	20	0	양성	
46	경북	영주	박봉훈	8	3.13	20	3	8	3	12	0	양성	
47	경북	상주	황중영	8	3.12	20	5	8	5	12	0	양성	
48	경북	상주	이상태	11	3.12	39	17	10	4	29	13	양성	
49	경북	영천	하준도	29	2.11,3.12	30	18	10	0	20	18	입식 29두중 7두 반품 그외 돼지 양호	
50	경북	문경	권태중	38	2.22	30	12	10	7	20	5	양성	
51	경북	상주	이춘웅	11	2.14,3.12	28	6	6	6	22	0	양성	
52	경남	함안	김외석	16	2.6,2.18, 3.7	50	18	10	3	40	15	양성	
53	경남	김해	조성제	21	2.5,2.28	19	1	11	0	8	1	입식21두-2두도 태, 2.28일 장영재 와 같은차량 입식	
54	경남	김해	장영재	5	2.28	13	6	5	2	8	4	양성	
55	경남	함안	김영태	21	2.11,2.18, 2.21	33	9	-	-	-	-	검사 시료 구분 불가	

〈표 6-30-3〉 2003년 돼지클레라 발생농장 정밀검사 결과(계속)

번호	도	지역	축주	입식 두수	입식 일자	합계		입식돈		동거돈		입식돈 검사결과	비고
						검사 두수	양성 두수	검사 두수	양성 두수	검사 두수	양성 두수		
56	경남	함안	김종신	18	2.6,2.18, 2.28	40	10	5	0	35	10	3두 반품, 5두 김찬세 분양	
57	경남	함안	김대근	11	2.18,2.2 1,2.28	40	15	-	-	-	-	검사시료 구분 불가	
58	경남	함안	김정수	-	-	24	6	-	-	24	6	-	
59	경남	함안	김영실	5	2.6	11	3	-	-	-	-	검사시료 구분 불가	
60	경남	함안	김찬세	5	2.28	12	7	-	-	-	-	검사시료 구분 불가	
61	경남	함안	김기용	16	3.7	24	5	16	5	8	0	양성	
62	경남	김해	이병규	-	-	13	7	-	-	13	7	-	
63	경남	함안	김정우	-	-	10	2	-	-	10	2	인접	
64	경남	함안	진병화	-	-	50	9	-	-	50	9	-	
65	경남	함안	김재석	-	-	10	2	-	-	10	2	-	
합 계			65농가	643		2,96 6	560	429	125	1,420	318		

## 4) 발생농장의 전파요인 분석

발생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각 농장별로 전파요인을 분석하였다.

## 가) 전파요인 분류기준

- (1) 후보돈 분양 : 상원(상주 포함)축산의 오염 돼지가 분양농장에 입식되어 발생
- (2) 인근전파 : 발생농장 인접농장 및 동일 부락단위의 농장 전파
- (3) 오염된 사람과의 접촉 : 농장 관계자가 오염지역(감염 농장 포함)을 신고 전·후 방문하여 미 감염된 농장에 방문한 경우
- (4) 축산관련 차량 : 오염된 출하차량, 정액공급차량 등에 의한 농장 감염
- (5) 원인 미상 :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그 원인을 알 수 없음

〈표 6-31〉 2003년 돼지클레라 발생농장 전파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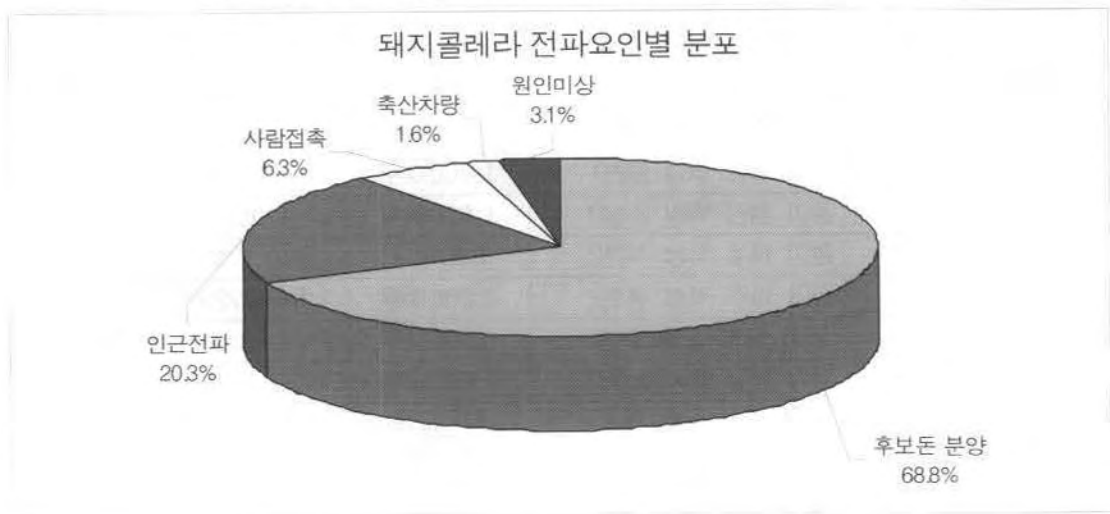
감염요인	발생분포	
	농장수	%
후보돈 분양	44	68.8
인근 전파	13	20.3
오염사람	4	6.3
축산관련차량	1	1.6
원인 미상	2	3.1
합 계	64	100

\* 상원축산(제1농장)을 제외한 발생농장의 전파요인 분석

### 나) 발생농장 전파요인 분석결과

상원축산(제1농장)을 제외한 64개 발생농장에 대한 전파요인 분석결과, 상원축산의 후보돈 분양을 통한 전파가 44개 농장(6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근전파(20.3%), 오염된 사람(6.3%), 축산관련차량(1.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30)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전파요인 분석도



## 라. 상원축산(제1농장) 돼지콜레라 유입요인 및 시기분석

### 1) 상원축산 위탁사육농장 추적조사

#### 가) 위탁농장 현황(표 32)

##### (1) 지역별 분포

(가) 20개 위탁사육 농장중 12개(60%)가 김포 등 이동제한 지역 내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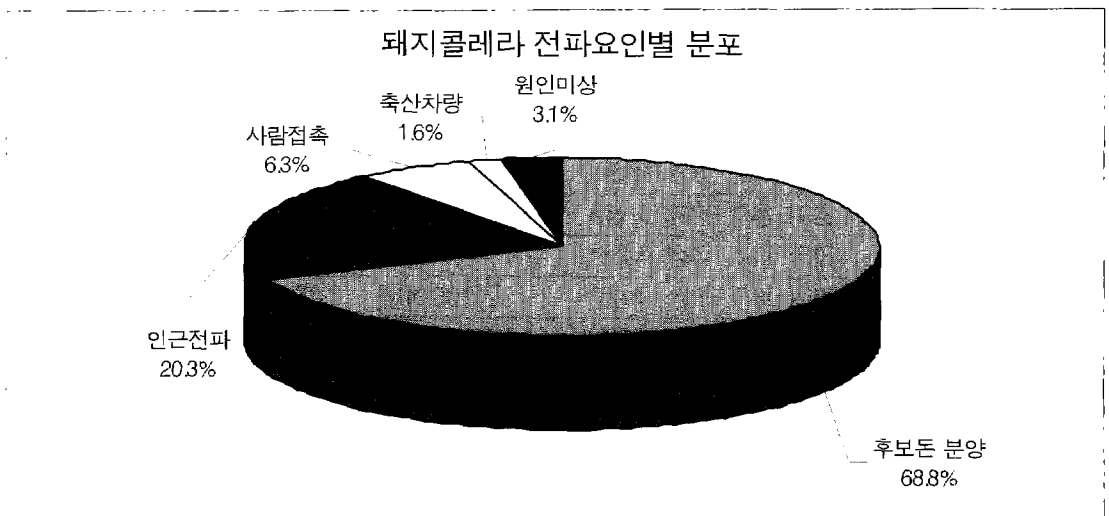
(나) 검역원 조사당시(3.20) 14개 농장에서만 돼지를 사육 중이었으며 나머지 6개 농장은 사육되고 있는 돼지가 없었다.

- 경기 : 김포(9), 파주(3), 용인(2), 포천(1), 고양(1), 연천(1)
- 인천 : 강화(2), 서구(1)

### 나) 발생농장 전파요인 분석결과

상원축산(제1농장)을 제외한 64개 발생농장에 대한 전파요인 분석결과, 상원축산의 후보돈 분양을 통한 전파가 44개 농장(68.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근전파(20.3%), 오염된 사람(6.3%), 축산관련차량(1.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6-30) 2003년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전파요인 분석도



## 라. 상원축산(제1농장) 돼지콜레라 유입요인 및 시기분석

### 1) 상원축산 위탁사육농장 추적조사

#### 가) 위탁농장 현황(표 32)

##### (1) 지역별 분포

(가) 20개 위탁사육 농장중 12개(60%)가 김포 등 이동제한 지역 내에 위치

(나) 검역원 조사당시(3.20) 14개 농장에서만 돼지를 사육 중이었으며 나머지 6개 농장은 사육되고 있는 돼지가 없었다.

- 경기 : 김포(9), 파주(3), 용인(2), 포천(1), 고양(1), 연천(1)
- 인천 : 강화(2), 서구(1)



〈표 6-32〉 상원축산 위탁농장(20개 농장) 사육현황

번호	축주명	주 소	사육두수	입식일	비고
1	한OO	경기 김포 대곶 상마	330여두	2/13	
2	한OO	경기 김포 대곶 상마	400여두	2/18	
3	홍OO	경기 김포 양촌 석모	600여두	3/03	
4	이OO	경기 김포 양촌 유현	800여두	1/8, 1/16, 3/15	
5	상원축산	경기 김포 대곶 송마	14두	1/14	상원축산 임대농장
6	정OO	인천 강화 선원 금월	1,100여두	1/7, 2/25	
7	김OO	인천 강화 양도 도장	700여두	1/21	
8	전OO	인천 서구 오류동	745여두	1/10, 1/11	
9	정OO	경기 용인 백암 용천1	1,000여두	1/11	
10	김OO	경기 용인 백암 근삼2	1,600여두	1/05, 1/07	
11	이OO	경기 파주 적성 객현2	600여두	1/13	
12	이OO	경기 파주 적성 객현2	2,200여두	2/04, 2/24, 3/09	
13	정OO	경기 포천 영종 영송	1,500여두	2/14, 3/03, 3/10	
14	이OO	경기 연천 백학 노곡2	1,500여두	1/25 2/18, 3/17	
15	민OO	경기 김포 양촌 학운	돼지없음		
16	최OO	경기 고양 일산 문봉	돼지없음		
17	심OO	경기 김포 양촌 유현	돼지없음		
18	이OO	경기 김포 대곶 대벽	돼지없음		
19	한OO	경기 김포 대곶 오니산	돼지없음		
20	박OO	경기 파주 월릉 덕은	돼지없음		

## 나) 위탁사육 농장 후보돈 선발(이동) 및 역학사항

## (1) 역학조사 내용

(가) 경기 김포, 인천 강화·서구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설정되어 동 지역으로부터 상원축산(제1농장) 으로의 돼지 이동은 거의 없었으나, 조사결과 일부 위탁농장(민 OO, 이 OO) 의 경우 돼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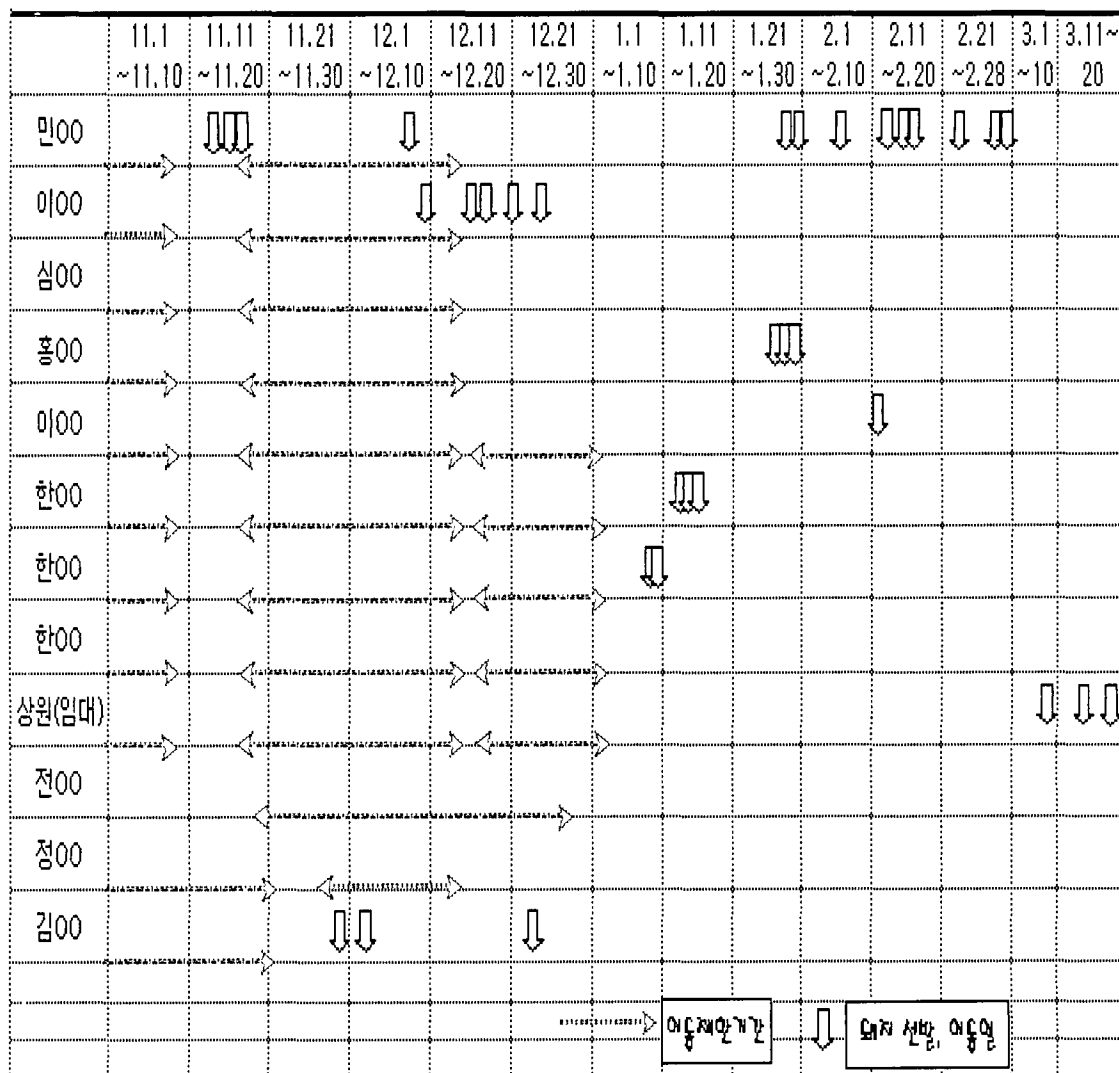
(나) 이동제한은 돼지 이동에 한해 이루어져 상원축산의 선발팀 (2명), 위탁관리팀(3명)은 후보돈 선발과 위탁농장의 관리를 위해 수시로 출입함으로써 이들(차량)을 통한 오염물질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았다.

(다) 상원축산 관계자의 위탁농장 출입시 소독실시 여부

- 상원축산 관계자에 대한 면담결과, 공통적으로 농장 출입시는 항상 1회용 방역복 및 방역화를 착용하며, 휴대용소독기를 이용하여 본인들이 철저히 소독을 실시한다고 진술하였다.

- ▷ 위탁관리팀 : 일반 관리시 평상 작업복, 돈사 출입시 방역복 · 비닐장화 착용
- ▷ 소독팀 : 위탁농장은 돈사내부까지 소독실시, 농장 이동시마다 자체 소독약으로 소독
- ▷ 출하팀 : 상원본장 및 위탁농장 출입시 반드시 소독실시하며, 위탁농장은 소독시설이 없는 곳이 많아 방역복 착용으로 소독 대체함
- 위탁농장 축주에 대한 역학조사팀 조사결과 (12농장) 상원축산 관계자 방문시 방역복 · 방역화 모두 착용 비율은 58%(7농장/12농장)였으며, 방역화 또는 방역복 일부만 착용은 42%(5/12농장)로 나타났다.
- ▷ 일부 착용농장 중 2개농장의 경우 출하기사는 작업복(우비)입고 돈사출입

(그림 6-31) 이동제한 지역내 위탁사육농장의 후보돈 선발이동현황



다) 위탁농장 정밀검사 결과(3.20일 채혈)

20개 위탁농장(위탁 19, 임대농장 1) 중에서 돼지 사육중인 14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모두 돼지콜레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표 33).

〈표 6-33〉 상원축산 위탁농장(14개)에 대한 돼지콜레라 정밀검사 결과

농장명	검사 두수	항원검사 (RT-PCR)		항체검사 (ELISA)		항체역가 (ELISA8000배 이상)		분양 두수	검사전 백신 접종 여부	사육돈 일령분포 (3.20일기준)
		양성 두수	양성율 (%)	양성 두수	양성율 (%)	양성 두수	양성율 (%)			
한OO	30	-	-	4	13.3	-	-	320(암)	<sup>1)</sup> 미접종	103-108
한OO	30	-	-	10	33.3	-	-	395(암)	<sup>1)</sup> 미접종	95-104
홍OO	21	-	-	8	38.1	-	-	620(암)	<sup>1)</sup> 미접종	82-90
이OO	41	-	-	23	56.1	-	-	1,026(암)	<sup>1)</sup> 미접종	64-71, 134-141, 161-166
상원축산 (박OO)	14	-	-	13	92.9	-	-	563(거세)	<sup>2)</sup> 접종	119-191
정OO	44	-	-	30	68.2	-	-	1,706(암)	<sup>2)</sup> 접종	89-97, 167-178
김OO	42	-	-	23	54.8	-	-	674(암)	<sup>1)</sup> 미접종	121-131
전OO	42	-	-	5	11.9	-	-	763(암)	<sup>1)</sup> 미접종	152-161
정OO	61	-	-	59	96.7	2	3.28	1,536(거 세)	<sup>2)</sup> 접종	131-147, 167-186
김OO	40	-	-	38	95.0	1	2.50	1,868(거 세)	<sup>2)</sup> 접종	144-169
	39	-	-	39	100	-	-			
이OO	40	-	-	10	25.0	-	-	637(암)	<sup>1)</sup> 미접종	143-149
이OO	60	-	-	35	58.3	-	-	총2,355두 1,281(암) 1,074(거 세)	<sup>1)</sup> 미접종 <sup>2)</sup> 접종	72-81, 91-100, 114-124
정OO	60	-	-	39	65.0	-	-	1,471(거 세)	<sup>2)</sup> 접종	72-77, 83-89, 104-113
이OO	60	-	-	38	63.3	-	-	1,472(거 세)	<sup>2)</sup> 접종	64, 71, 98-105, 119-126

주 <sup>1)</sup> 미접종 : 상원축산에서 입식전 접종사실은 알 수 없으나, 축주가 직접 접종한 사실은 없음

<sup>2)</sup> 접 종 : 상원축산에서 백신 접종 후 위탁 사육함

라) 미사육 위탁사육농장(미검사 6농장)에 대한 조사 분석

1) 조사 당시 돼지를 사육하고 있지 않은 6개 위탁농장에 대해서는 사육당시 사양관리 기록 등을 이용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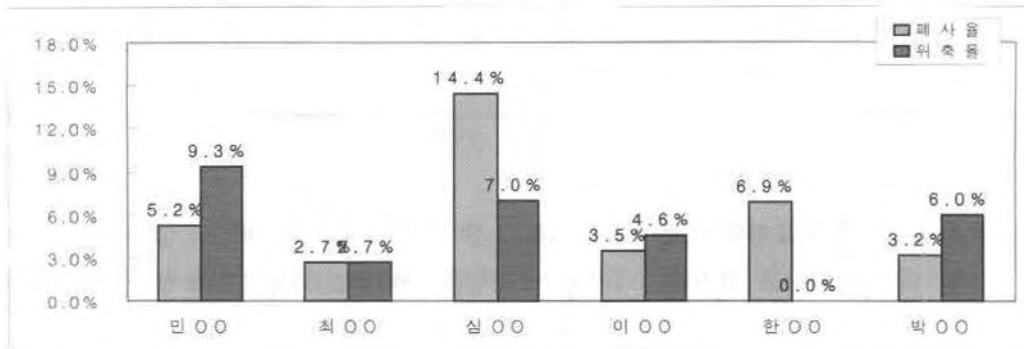
〈표 6-34〉 미사육 위탁농장(6개 농장)에 대한 주요 역학조사 현황

구분	민 OO	이 OO	한 OO	심 OO	박 OO	최 OO
주소	경기 김포	경기 김포	경기 김포	경기 김포	경기 파주	경기 고양
사육유무	없음 (2,500두 규모)	없음 (470두 규모)	없음 (700두 규모)	500두	없음 (1,000두규모)	없음 (800여두)
부업여부	농농사	벼농사, 과수원	농사	없음	논, 밭농사	없음
돼지사육 특기사항	5개동 중 2개동 에서 주로 폐사	입식 초기(2일 만)에 폐사	10월 이후 돈사 전반적 폐사	여름에 많이 폐사	입식 2개월째 건강한 개체 폐사	홍막폐렴 외 특기사항 없음
농장관리 (상원)	소독팀, 오OO	소독팀, 오OO	소독팀, 오OO (거의 매일) 방문	소독팀, 오OO (거의 매일)	상원팀이 1주일 1~3회 방문 관 리	송OO
도축출하	상원기사 (돈방 출입)	상원기사 (돈방 출입)	상원기사 (돈방출입)	상원기사 (돈방 출입)	상원기사 (돈방 출입)	상원출하팀 관리
평균폐사율 (실 폐사율)	500여두중 30두 (3.4 ~ 8.9%)	1~2 % (2.1 ~ 6.3%)	1~2 % (3.1 ~ 6.9%)	4~5 % (5.0 ~ 14.4%)	2 % (2.2 ~ 6.7%)	폐사가 적었음 (1.7 ~ 3.6%)
방역관리	출하기사 방역복 착용	1회용 장화, 방 역복 착용	방역복 착용	1회용 장화 착용	1회용 방역복, 신발	상원순회 소독
백신유무	미실시	미실시	잘 모름	03년초 상원에서 와서 접종	백신축 입식	잘 모름
농장소독	매일	매일	2일 1회	매일	-	상원순회소독

(2) 미사육 위탁농장 입식일자별 사육현황 분석 내역

(가) 사육기간별 위축 및 폐사율은 농장별로 차이는 있으나, 위축으로 인한 도축출하 및 폐사율이 3% 이상인 농장이 5개 농장이며 특히 민 OO, 심 OO 농장의 위축·폐사율이 높았다(그림 32, 표 35)

(그림 6-32) 미사육 위탁농장별 폐사율 및 위축율('02.10~'03.3월) 분석 결과



라) 미사육 위탁사육농장(미검사 6농장)에 대한 조사 분석

1) 조사 당시 돼지를 사육하고 있지 않은 6개 위탁농장에 대해서는 사육당시 사양관리 기록 등을 이용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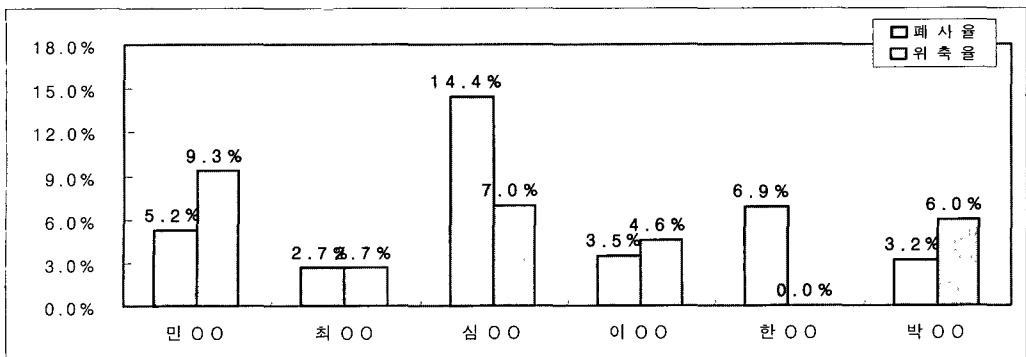
〈표 6-34〉 미사육 위탁농장(6개 농장)에 대한 주요 역학조사 현황

구분	민 OO	이 OO	한 OO	심 OO	박 OO	최 OO
주소	경기 김포	경기 김포	경기 김포	경기 김포	경기 파주	경기 고양
사육유무	없음 (2,500두 규모)	없음 (470두 규모)	없음 (700두 규모)	500두	없음 (1,000두규모)	없음 (800여두)
부업여부	논농사	벼농사, 과수원	농사	없음	논, 밭농사	없음
돼지사육 특기사항	5개동 중 2개동 에서 주로 폐사	입식 초기(2일 만)에 폐사	10월 이후 돈사 전반적 폐사	여름에 많이 폐사	입식 2개월 때 건강한 개체 폐사	홍막폐렴 외 특기사항 없음
농장관리 (상원)	소독팀, 오OO	소독팀, 오OO	소독팀, 오OO (거의 매일) 방문	소독팀, 오OO (거의 매일)	상원팀이 1주일 1~3회 방문 관 리	송OO
도축출하	상원기사 (돈방 출입)	상원기사 (돈방 출입)	상원기사 (돈방출입)	상원기사 (돈방 출입)	상원기사 (돈방 출입)	상원출하팀 관리
평균폐사율 (실 폐사율)	500여두중 30두 (3.4 ~ 8.9%)	1~2 % (2.1 ~ 6.3%)	1~2 % (3.1 ~ 6.9%)	4~5 % (5.0 ~ 14.4%)	2 % (2.2 ~ 6.7%)	폐사가 적었음 (1.7 ~ 3.6%)
방역관리	출하기사 방역복 착용	1회용 장화, 방 역복 착용	방역복 착용	1회용 장화 착용	1회용 방역복, 신발	상원순회 소독
백신유무	미실시	미실시	잘 모름	03년초 상원에서 와서 접종	백신축 입식	잘 모름
농장소독	매일	매일	2일 1회	매일	-	상원순회소독

(2) 미사육 위탁농장 입식일자별 사육현황 분석 내역

(가) 사육기간별 위축 및 폐사율은 농장별로 차이는 있으나, 위축으로 인한 도축출하 및 폐사율이 3% 이상인 농장이 5개 농장이며 특히 민 OO, 심 OO 농장의 위축·폐사율이 높았다(그림 32, 표 35)

(그림 6-32) 미사육 위탁농장별 폐사율 및 위축율('02.10~'03.3월)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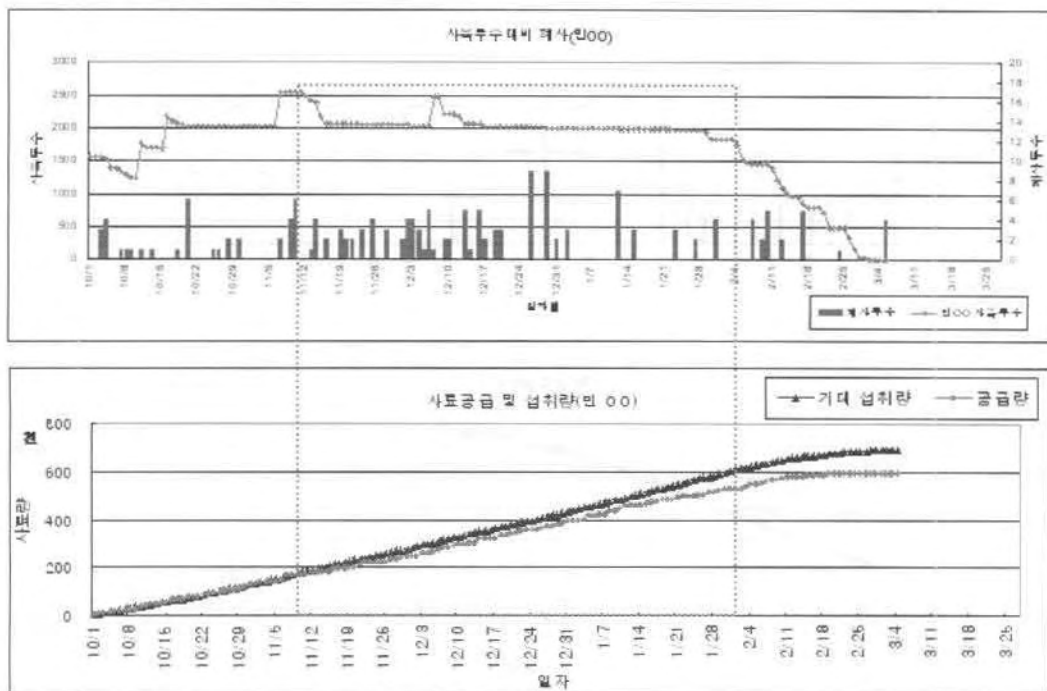
〈표 6-35〉 미사육 위탁농장 입식일자별 사육현황 분석

축주명	농장명	사육기간	위탁 두수	출하현황				위 축 (도축출하)		폐 사		병명
				도축출하		선발		두수	비율	두수	비율	
				두수	비율	두수	비율					
민OO	민OO	~ 12.17	261	200	76.63	34	13.03	10	3.83	17	6.51	스트레스, 급사, 위축, 호흡기
	천OO	~ 12.9	263	128	48.67	67	25.48	51	19.39	17	6.46	호흡기, 위축
	이OO	~ 10.9	261	125	47.89	92	35.25	34	13.03	10	3.83	
		10.16~10.29	263	0	0.0	0	0.0	0	0.0	0	0.0	
	민OO	~ 10.19	261	127	48.66	91	34.87	34	13.03	9	3.45	-
		11.7~2.2 4	524	372	70.99	57	10.88	48	9.16	47	8.97	위축, 호흡기, 살모넬라, 후구 마비
	이OO	~ 10.7	261	158	60.54	36	13.79	47	18.01	20	7.66	
		10.11~2. 7	522	244	46.74	210	40.23	38	7.28	30	5.75	위축, 급사, 호흡기, 살모넬라
	천OO	~ 11.21	263	127	48.29	106	40.3	15	5.7	15	5.70	위축, 급사
		12.7~3.5	520	349	67.12	106	20.38	41	7.88	24	4.62	후구마비, 위축, 호흡기, 씨코
천OO	~ 10.10	261	155	59.39	91	34.87	4	1.53	11	4.21	호흡기	
	10.16~2.1 5	526	344	65.4	126	23.95	25	4.75	31	5.89	호흡기, 위축, 후구마비, 급사	
민OO	~ 12.17	260	206	79.23	36	13.85	0	0	18	6.92	위축, 호흡기, 급사	
민OO	~ 11.12	260	119	45.77	86	33.08	46	17.69	9	3.46		
최OO	유OO	~ 1.25	301	157	52.16	139	46.18	0	0.0	5	1.66	위축, 호흡기
	최OO	~ 1.24	300	170	56.67	107	35.67	12	4.0	11	3.67	위축
	최OO	~ 1.24	205	189	92.2	0	0.0	10	4.88	6	2.93	위축
심OO	심OO	~ 11.15	500	393	78.6	0	0.0	35	7.0	72	14.4	위축, 호흡기, 급사, 탈항
		12.7~3.1 1	496	428	86.29	0	0.0	43	8.67	25	5.04	위축, 급사, 호흡기
이OO	이OO	11.8~2.1 4	270	177	65.56	74	27.41	2	0.74	17	6.3	호흡기, 급사, 살모넬라
		~ 10.2	240	234	97.5	0	0.0	1	0.41	5	2.08	
	임OO	~ 10.11	271	142	52.4	104	38.38	23	8.49	2	0.74	위축
한OO	한OO	~ 1.13	349	325	93.12	0	0.0	0	0.0	24	6.88	급사, 위축, 살모넬라
		~ 1.15	350	335	95.71	0	0.0	4	1.14	11	3.14	위축, 호흡기, 급사
박OO	박OO	~ 11.7	549	394	71.77	124	22.59	19	3.46	12	2.19	장출혈, 급성
		11.13~ 3.10	580	338	58.28	122	21.03	94	16.21	26	4.48	위축, 급사
	진OO	~ 11.7	400	195	48.75	149	37.25	38	9.5	18	4.5	위축, 급사
		12.15~ 3.10	403	196	48.64	177	43.92	3	0.74	27	6.7	위축, 급사, 폐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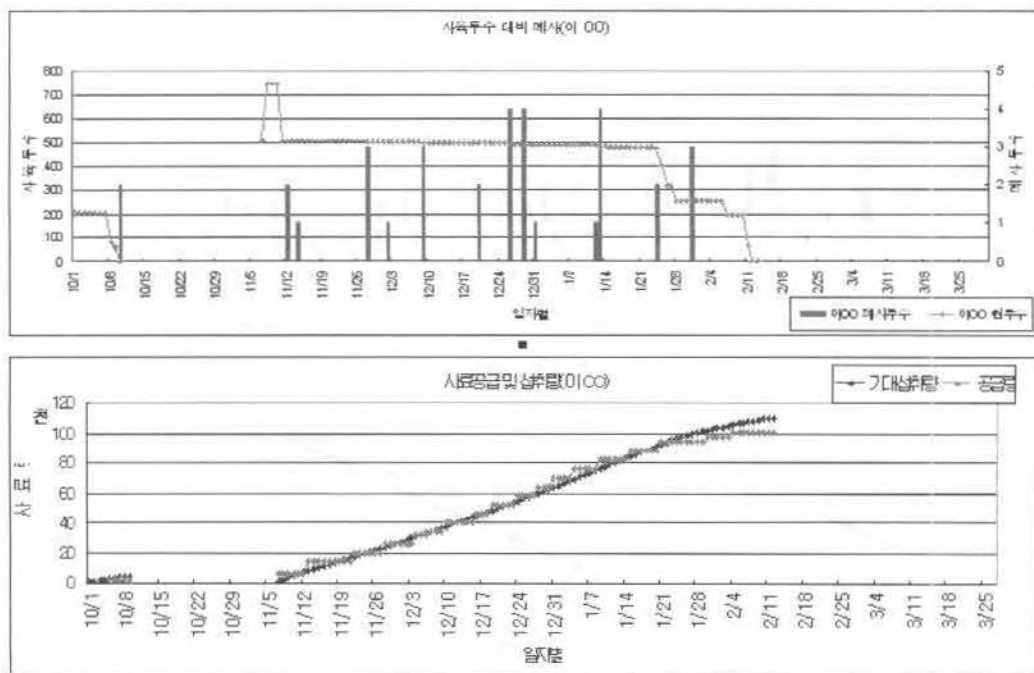
※ 병명은 위탁농가 사양일지 중 폐사 보고서의 내용을 기록한 것임

(나) 사육기간별 사료섭취율 분석결과, 4개 농장(이OO·한OO·최OO·심OO)은 사료공급  
량 대비 기대사료 섭취량이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2개 농장(민OO·박OO)은  
폐사가 증가하는 시점으로부터 기대사료 섭취량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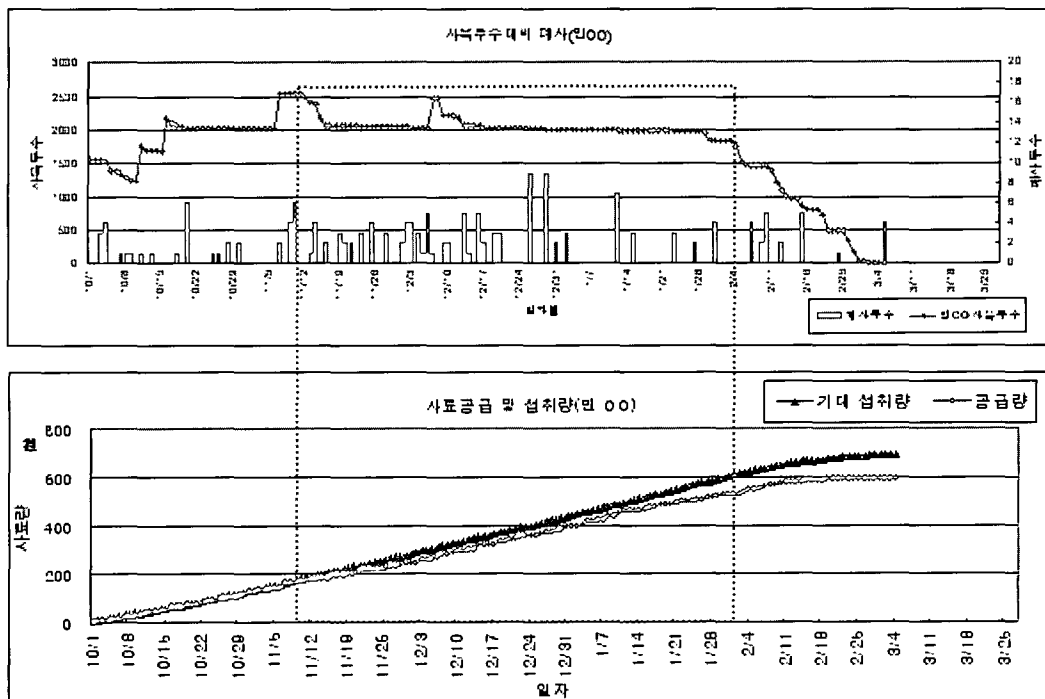
(그림 6-33-1) 미사육 위탁농장(6개 농장)에 대한 폐사율 및 사료섭취율 분석  
 〈 민 OO 농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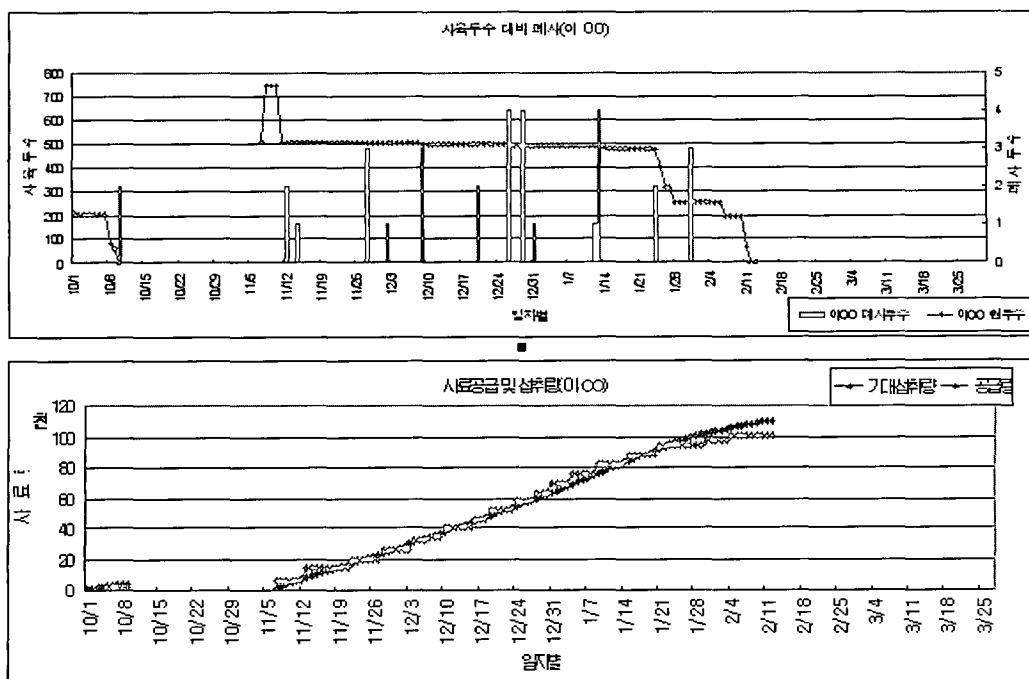
〈 이 OO 농장 〉



(그림 6-33-1) 미사육 위탁농장(6개 농장)에 대한 폐사율 및 사료섭취율 분석  
 < 민 00 농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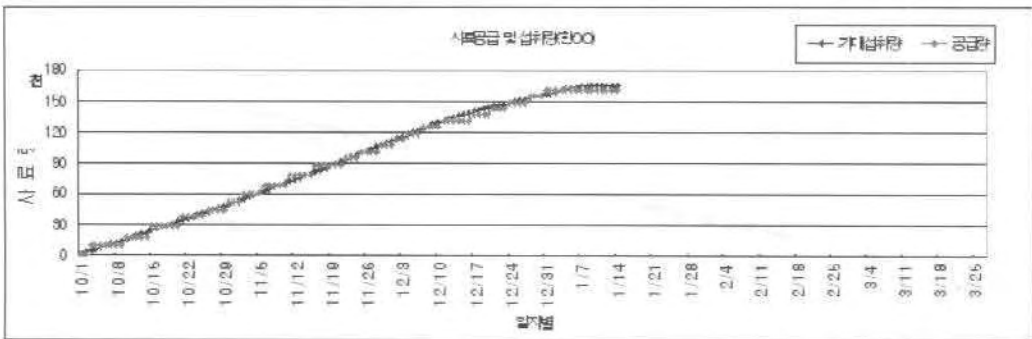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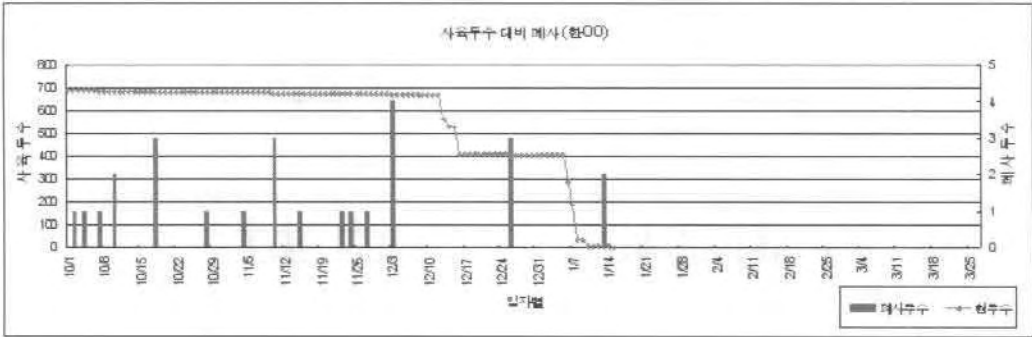


< 이 00 농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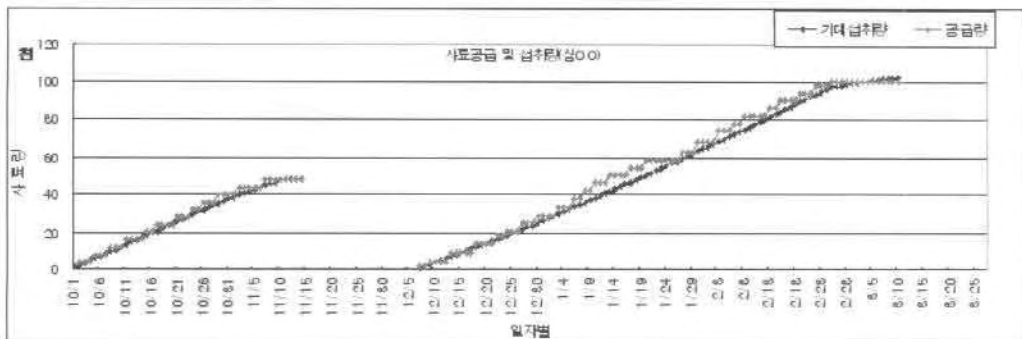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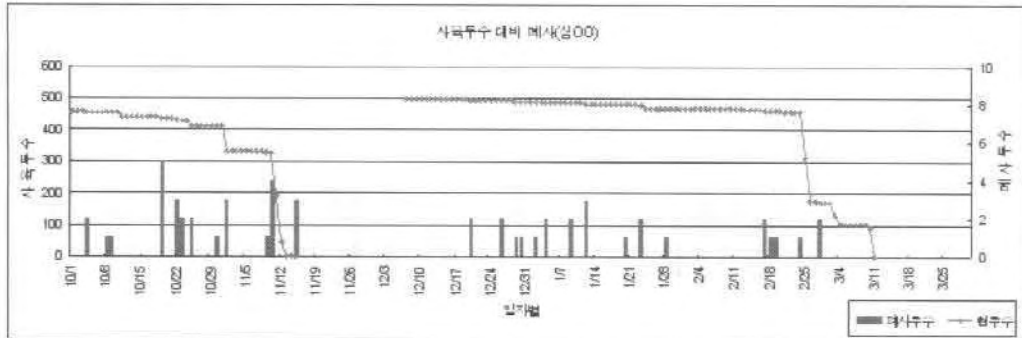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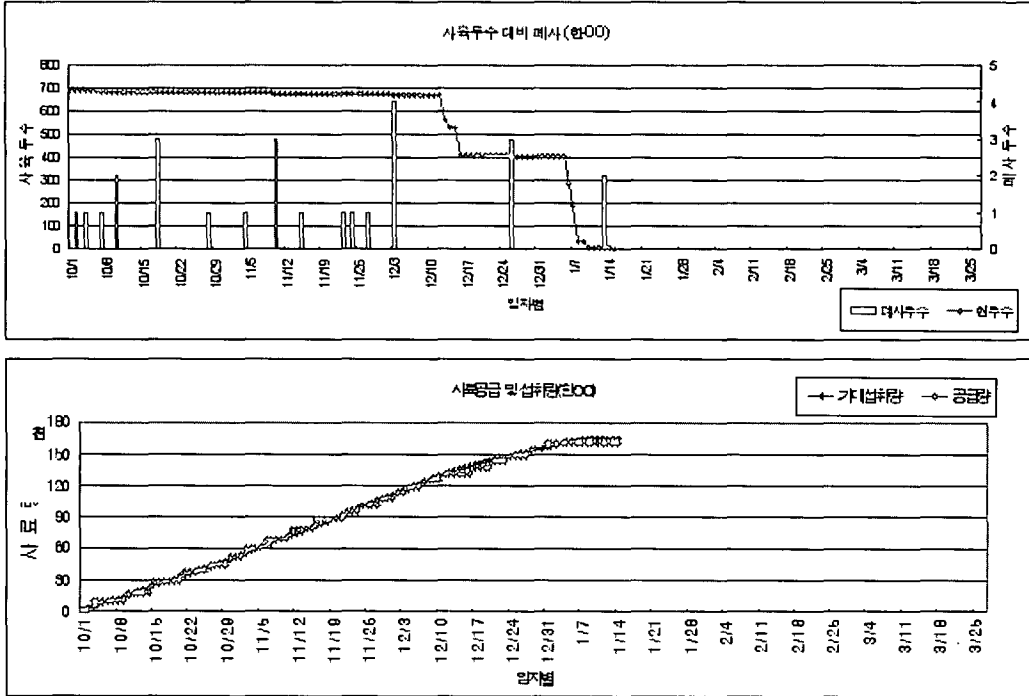
(그림 6-33-2) 미사육 위탁농장(6개 농장)에 대한 폐사율 및 사료섭취율 분석(계속)  
 〈 한 00 농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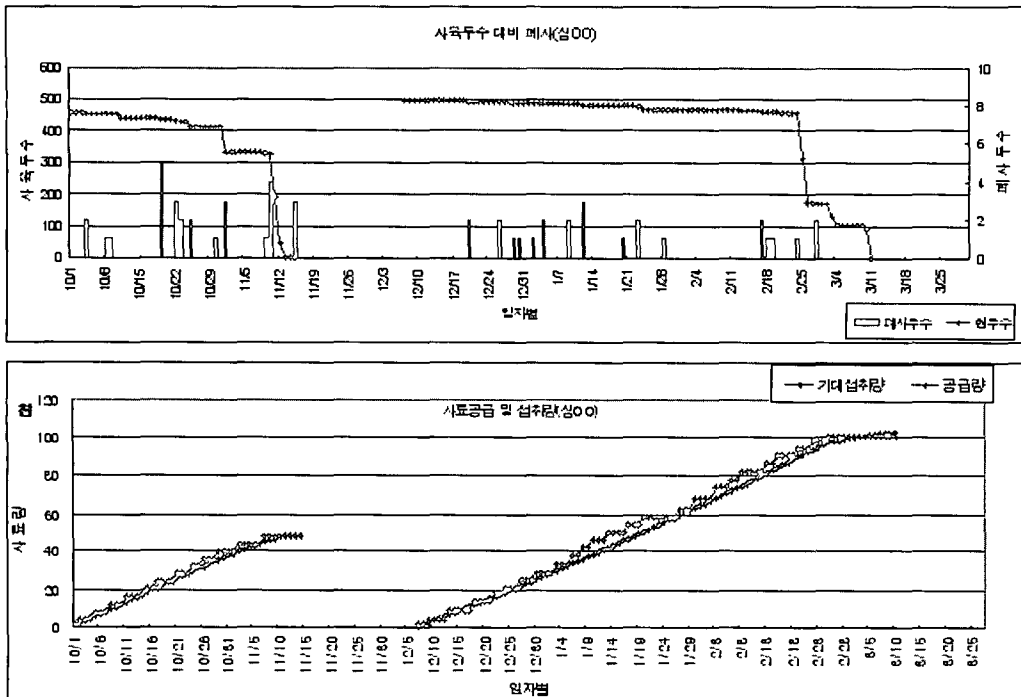
〈 심 00 농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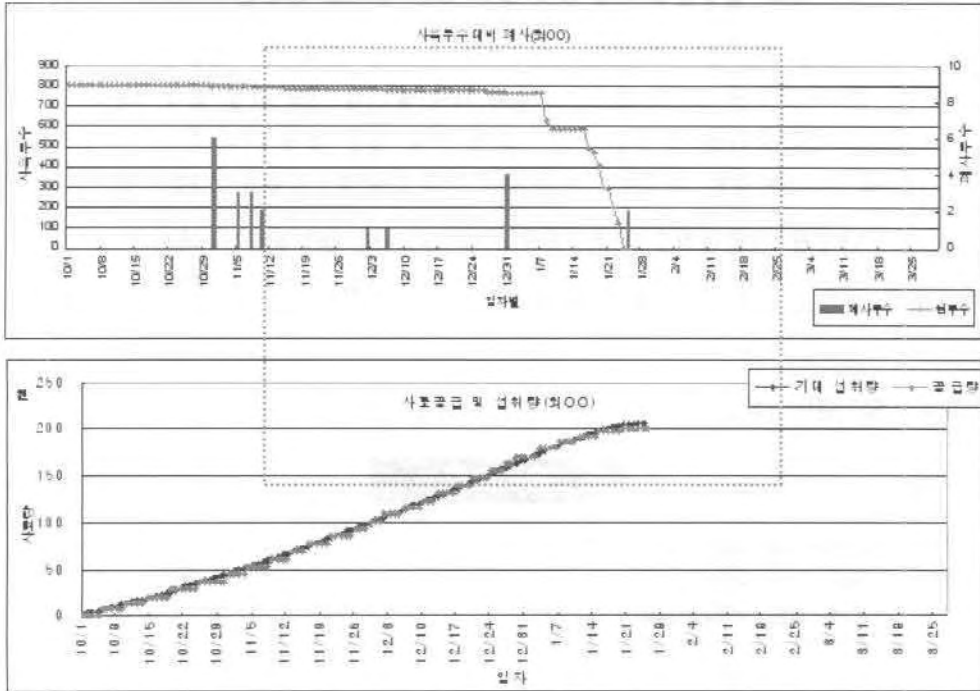
(그림 6-33-2) 미사육 위탁농장(6개 농장)에 대한 폐사율 및 사료섭취율 분석(계속)  
 < 한 00 농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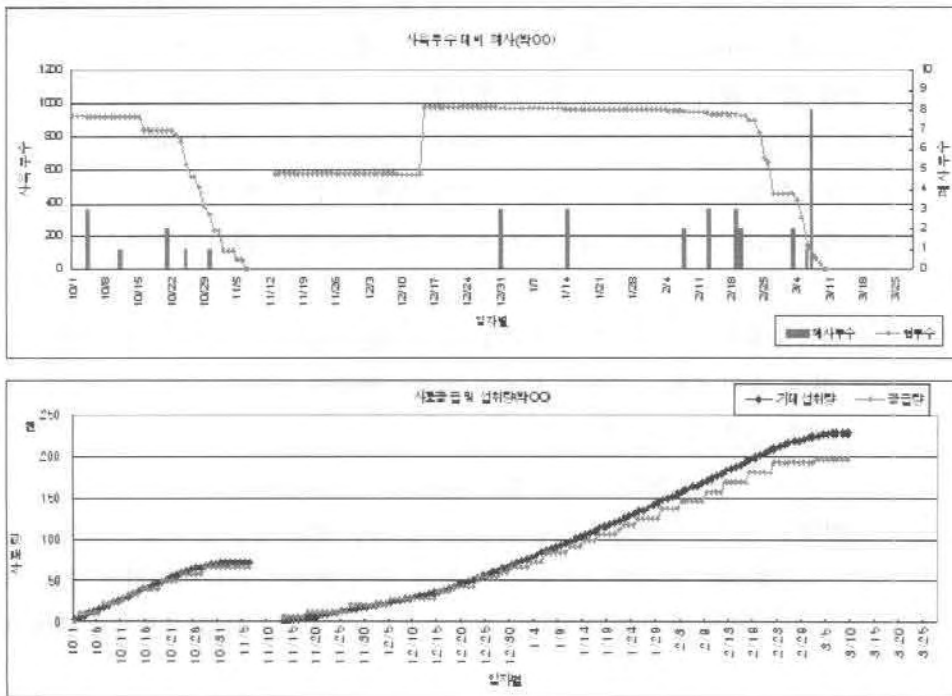
< 심 00 농장 >



(그림 6-33-3) 미사육 위탁농장(6개 농장)에 대한 폐사율 및 사료섭취율 분석(계속)  
 < 박 00 농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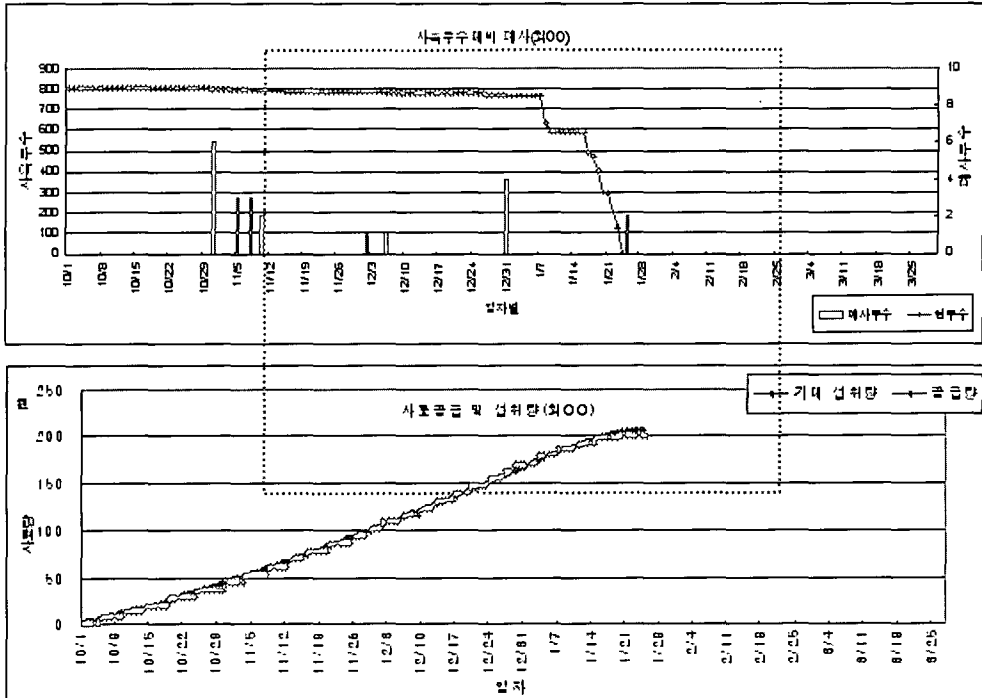


< 최 00 농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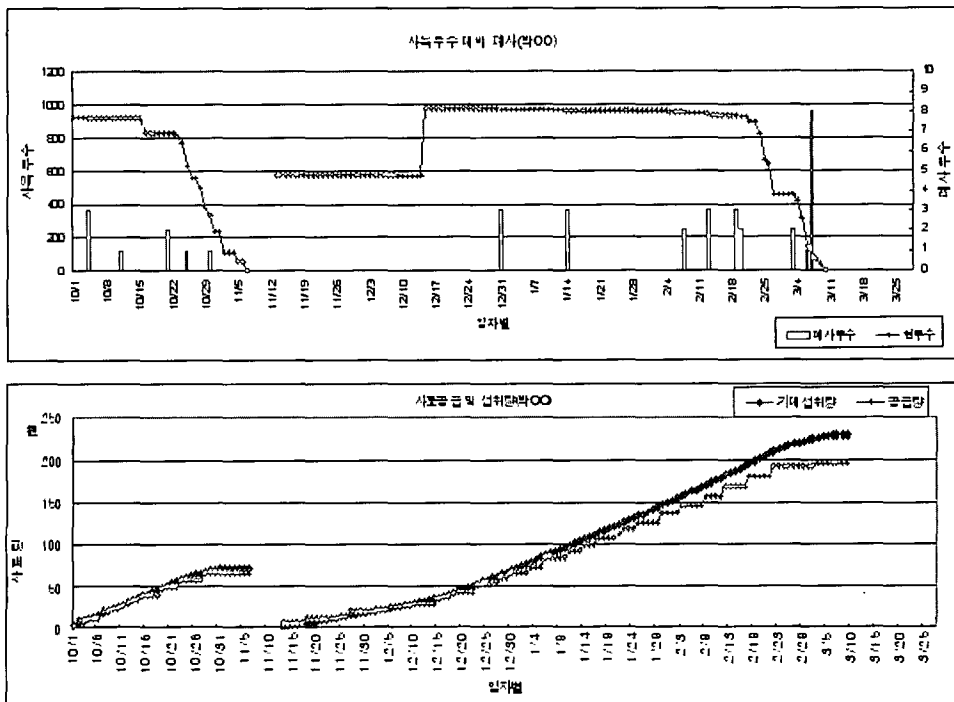


(그림 6-33-3) 미사육 위탁농장(6개 농장)에 대한 폐사율 및 사료섭취 분석(계속)

< 박 00 농장 >



< 최 00 농장 >



□ 미사육 위탁농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실험실 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폐사율 및 사료섭취율 분석결과 질병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미사육 위탁농장 폐사율 분석결과 : 총 29회 입식 중 23회 입식돈군에서 폐사율 3%이상 발생 (79.3%)하였으며, 20회 입식돈군에서 위축(출하율) 3% 이상 발생 (69%)
  - 폐사율 및 위축(출하율)이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 위탁사육 시 일반적인 폐사율 : 비육돈의 경우 1~2%, 위축율 : 3%
- 미사육 위탁농장 사료섭취율 분석 결과 : 민 00·박 00 돈군은 폐사가 증가되는 시점으로부터 사료 공급량 대비 기대 사료 섭취량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남

## 2) 돼지콜레라 유입요인 분석

### 유입요인

- ◇ 오염된 돼지 이동에 의한 유입가능성
- ◇ 오염된 차량에 의한 유입가능성
- ◇ 오염된 사람에 의한 유입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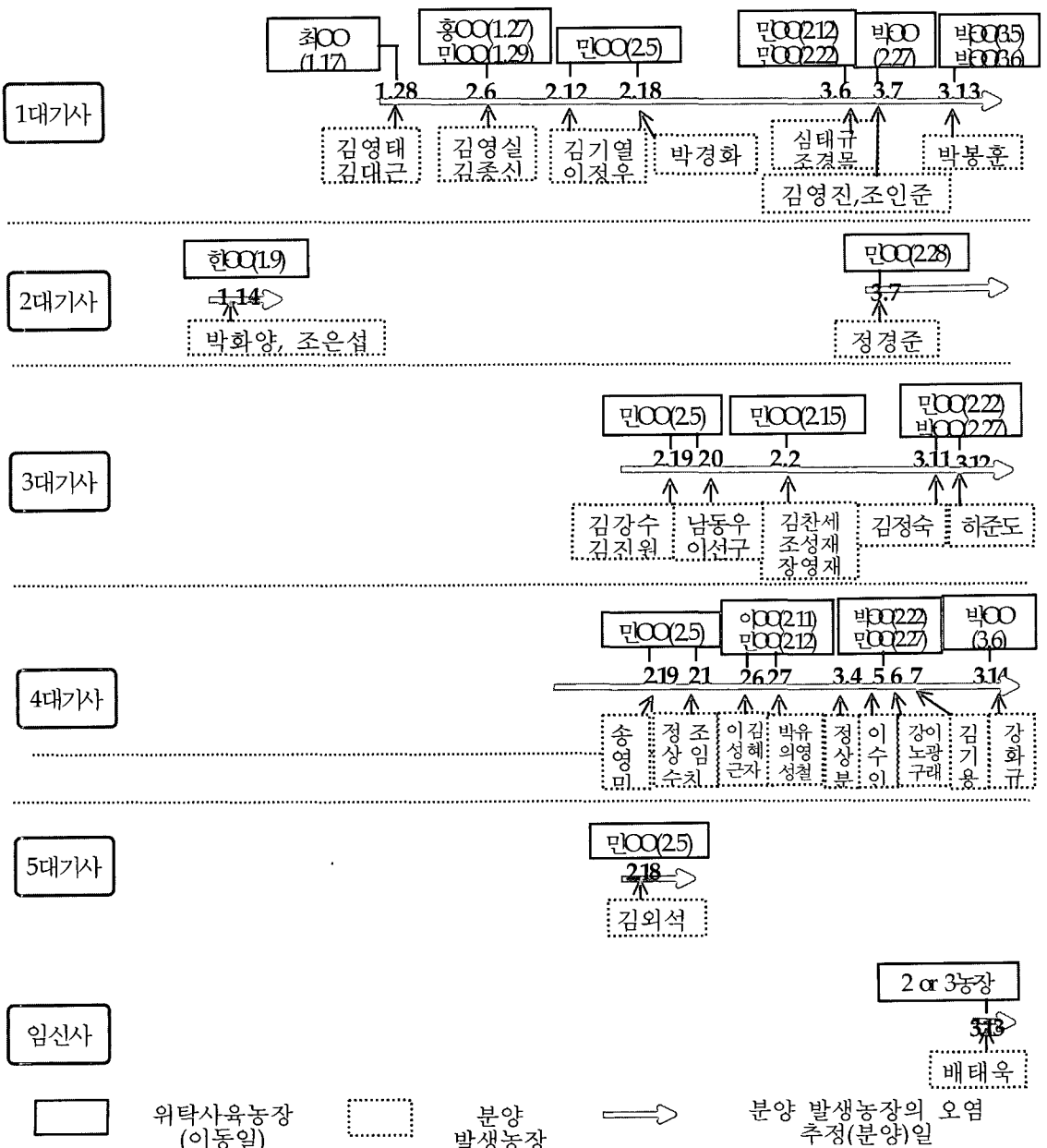
### 가) 오염된 돼지 이동에 의한 유입 가능성

- (1) 상원농장 제1농장은 자돈사(2개), 웅돈사(5개), 수입사 및 분양대기사(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양대기사는 위탁사육농장 선발 후보돈의 입식과 분양 농장 판매로 돼지의 이동이 많으며 사무동과 인접해 있어 돼지 운송과정 중 오염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가) 자돈사는 제3농장의 생산자돈(60~70일령)이 입식되어 사육되나, 제3농장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음성으로 판정되어 자돈 도입에 의한 직접 오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나) 웅돈사 및 수입사는 정액채취용 웅돈 등이 수용된 돈사로 돼지의 이동이나 외부 돼지의 입식이 거의 없어 웅돈 입식에 의한 직접 오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 (2) 상원축산과 위탁농장은 사육체계상 상원축산의 돼지만 이동·사육되고 있어 1개의 큰 농장단위로 보아야 하며, 만약 위탁농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상원축산(제1농장)도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 (가) 위탁농장 20개소 중 12개소가 김포 등 이동제한 지역내 위치 (김포 9, 강화 2, 인천서구 1)
    - ↳ 20개 위탁농장 중 당시 돼지 사육중인 14개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며, 당시 미사육 6개 농장은 검사당시 돼지가 없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양관리 성적 분석결과 폐사율 증가 등 질병피해로 추정되는 상황이 뚜렷하여 돼지콜레라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나) 상원축산 분양(발생)농장의 후보돈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대부분 6개 위탁농장(민00·이00·홍00·한00·박00·최00)의 후보돈이 제1농장을 거쳐 입식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4개 농장(민00, 이00, 홍00, 한00)은 김포 경제지역내 위치

(그림 6-34) 상원축산(제1농장) 돈사별 후보돈 이동(반입분양) 및 분양농장 오염추정일

돈사별	1.1~1.10	1.11~1.20	1.21~1.31	2.1~2.10	2.11~2.20	2.21~2.28	3.1~3.10	3.11~3.18
-----	----------	-----------	-----------	----------	-----------	-----------	----------	-----------



위탁사육농장 (이동일)



분양 발생농장



분양 발생농장의 오염 추정(분양)일

## 나) 오염된 차량에 의한 유입 가능성

### (1) 출하차량(기사)

(가) 상원축산의 출하팀(5명)은 돼지 입식·분양 및 출하를 위해 전용차량(5대)을 이용하여 상원축산(제1·2·3농장)·위탁사육 농장과 분양농장을 수시로 출입하고 있어 기존 발생 농장 경계지역 내에 있는 위탁사육농장 출입시 오염물질과의 접촉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 중개인을 통한 돼지출하시 별도의 계근장에서 중개인과 만나 돼지를 전달시켜 주고, 상원축산(제1농장)으로 되돌아오므로써 출하차량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다.

☞ 상원축산의 주거래 중개인은 권 OO, 양 OO, 김 OO 등 6명으로 권 OO은 유예근(경기 김포) 농장과, 양 OO는 이현호(경기 김포) 농장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돈분 운반차량

(가) 상원축산(제1·2·3농장)의 돈분은 농장 외부에 위치한 돈분적재장으로 이송된 후, 전담 직원이 매일 김포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D 화학(돈분처리업체)으로 처리하였으나,

(나) 김포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02.12월~'03.1월말까지 다른 지역(경기 김포 대곶)에 있는 돈분처리 업체로 이동·처리되어졌고,

▷ 돈분적재장이 농장 외부에 있으며 위험기간 내에는 타 업체에 처리함으로써 돈분차량을 통한 발생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경기 김포 김포창 농장(11.21일 발생)은 인근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옆 농장의 오염된 돈분 박스를 D 화학(돈분) 차량이 운송하는 과정에 의해 전파된 바 있다.

### (3) 사료공급차량

(가) 상원축산(제1농장)으로 공급되는 사료는 D 사료(주)의 전용차량(벌크)이 상원 축산과 위탁사육농장에 사료를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사료차량을 통한 유입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다.

## 다) 오염된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

### (1) 상원축산 위탁농장 관리팀

(가) 상원축산의 선발(2인) 및 위탁관리팀(3인)은 위탁 사육농장의 후보돈 선발과 사양관리 지도 등을 위해 전제 위탁사육 농장간 수시로 이동·출입하고 있었으며, 김포·강화지역의 이동제한기간 내에도 수시로 출입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기계적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2) 농장 근무자

(가) 현장관리팀(5명) : 사료공급·분변처리, 정액생산 및 배달, 농장 보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액배달자와 돈분처리자 이외에는 모두 타 농장 관계자 등과 직접 접촉사실이 없어 이들을 통한 유입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 정액 배달직원(1명) : 정액채취 보조 및 배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나, 돼지 출하 및 운송작업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어 정액배달 또는 출하과정 중 오염될 가능성도 있었다.
- ※ 정액공급처(대리점) : 김포(1), 강화(4)
- ※ 김포 정액배달 대리점은 김포발생(유예근, 원정식, 이현호, 김호창) 및 인천 발생(유찬원) 농장의 약품공급과 역학적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나) 관리팀(6) : 물품구입·관리, 일반 사무실관리, 회계, 컴퓨터 작업 등 업무가 돼지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이들을 통한 유입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 상원축산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입요인 분석 】

#### ▷ 오염된 사람에 의한 유입가능성

- 위탁농장 관리팀 : 상원축산의 선발 및 위탁관리팀은 위탁 사육농장의 후보돈 선발과 사양 관리지도 등을 위해 전체 위탁사육 농장간 수시로 이동·출입하고 있어 이들을 통한 기계적 전파 가능성이 높음

#### ▷ 오염된 돼지에 의한 유입가능성

- 20개 위탁농장 중 미사육 6개 농장은 사양관리 성적 분석결과와 분양발생농장과의 연관성으로 보아 돼지콜레라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 상원축산과 위탁농장은 사육체계상 1개의 큰 농장단위이므로 위탁농장의 문제 발생시 상원축산(제1농장)도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

#### ▷ 오염된 차량에 의한 유입가능성

- 경계지역내 위탁사육 농장의 출하·사료차량 등 출입시 오염물질과의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상원축산(제1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상원축산의 선발·위탁관리팀(차량) 또는 위탁농장과의 돼지 이동과정 중 기존 오염지역(김포·강화)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



### 3) 돼지콜레라 유입시기 분석

#### 가) 분양농장 발생상황에 따른 유입시기 분석

##### (1) 분석방법

(가) 돼지콜레라 발생 분양농장 중 상원축산(제1농장)으로부터 1회 입식하였고 해당 입식돈이 양성으로 판정된 16개 농장을 대상으로, 해당 농장의 돼지 입식일자를 바이러스 유입일자로 판정하였고 (표 36),

(나) 돼지콜레라 발생 분양농장 중 상원축산(제1농장)으로부터 2회 이상 입식하고 입식돈이 양성으로 판정된 농장은 11개 농장이며, 해당 농장은 임상증상 관찰, 입식돈과 동거돈의 정밀검사 결과 및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 유입일자를 판정하였다 (표 36).

#### ※ 유입시기 추정 참고자료

- ☞ 입식돈 양성/동거돈 음성 : 검사일 기준 4~19일 사이
- ☞ 입식돈 양성/동거돈 양성 : 검사일 기준 16 ~ 33일 사이
- ☞ 입식돈 음성/동거돈 양성 : 검사일 기준 19일 이전  
(입식돈 잠복기 4~6일, viremia 지속기간 9~13일, 동거돈의 viremia 시작 12~14일)

※ Laevens 등(Vet Quart 1998;20:41-45, Vet Quart 1998;20:46-49, Vet Rec 1999;145:243-248)

(2) 분석결과 : 분양 발생농장의 입식 발생시기가 '03년 1월 14일부터 3월14일까지로 나타나 최소 1월 14일 이전에 이미 상원축산의 분양대기사가 오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 나) 상원축산 정밀검사 결과에 따른 유입시기 분석

(1) 상원축산의 분양대기사(5개)는 위탁사육농장과 분양농장으로 돼지의 입식·분양이 수시로 이루어져 사람·차량을 통한 바이러스의 기계적 전파 가능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 특히 분양대기 1 및 4돈사는 사무동과 인접해 있어 외부인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 최초의 유입경로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돈사(2개), 웅돈사(5개) 및 수입사는 상원축산 제3 및 제2 농장에서 돼지 입식 외에 외부 입식돈의 유입이나 외부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1차 유입경로로 볼 수 없었다.

※ 추정전파경로 : 분양대기사 → 자돈사 → 웅돈사·수입사

(2)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한 돈사에 유입된 다음 타 돈사의 돼지에 전파되어 혈중에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데는 26~38일이 소요되므로 검사일자(1차:3.20)를 고려하여 2.10일 이전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 근거자료(Laevens 등. Vet Rec 1999;145:243-248)

〈표 6-36〉 상원축산 후보돈 분양농장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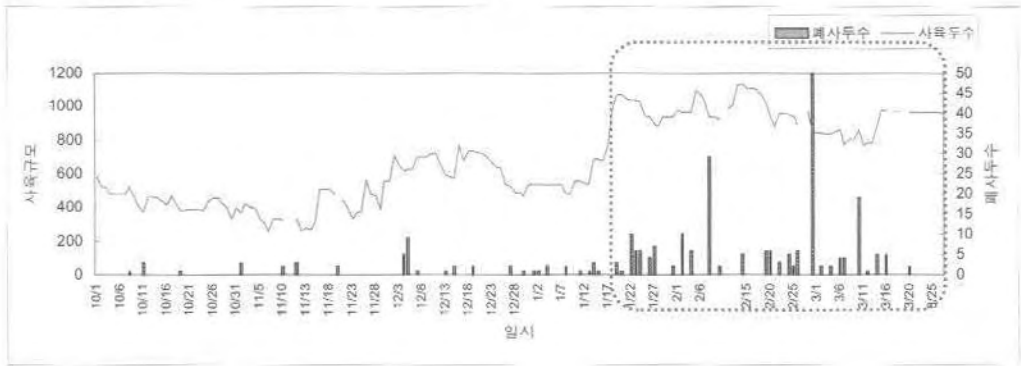
번호	도	지역	축 주	임상증상	입식돈		동거돈		검사 일	입식일			추정근거 (분양)
					검사 두수	양성 두수	검사 두수	양성 두수		1월	2월	3월	
1	경기	이천	강노구	3.15 입식돈(3.6) 폐사 3.18 식육부진, 고열, 기립불능	6	3	54	0	3.20			3.6	단일
2	경기	평택	김혜자	3.20 식육부진, 호흡기, 포개 짐, 정색증	4	1	56	2	3.20	1.31	2.2 6		복수
3	경기	화성	이선구	3.17 침울 증상 외 특이 증상 없음	22	3	38	0	3.20	1.10	2.2 0		복수
4	경기	여주	이광래	증상 없음	10	3	50	0	3.20			3.6	단일
5	경기	김포	이수인	3.14 호흡기 증상외 특이증 상 없음	4	1	56	0	3.20			3.5	단일
6	경기	김포	정상분	증상 없음	12	2	48	0	3.20	1.27		3.4 3.18	복수
7	경기	평택	남동우	3.24 식육결핍, 원기소실, 폐사	16	2	2	0	3.24		2.2 0		단일
8	경기	이천	박화양	4.6부터 1~2두씩 폐사 4.10 호흡기증상	10	1	22	10	4.10	1.14			단일
9	충남	보령	강화규	증상 없음	19	4	41	0	3.19		2.2 6	3.14	복수
10	충남	아산	이성근	증상 없음	7	2	53	24	3.19		2.2 6		단일
11	충남	홍성	김정숙	증상 없음	6	1	53	0	3.19			3.11	단일
12	전북	익산	송영민	2.25 식육부진, 호흡기, 기침, 위축, 눈꼽	5	5	26	12	3.17		2.1 9	3.12	복수
13	전북	익산	김영진	3.14 1두폐사, 식육부진, 미열	3	3	5	5	3.19			3.7	단일
14	전북	익산	조인준	3.20 식육부진, 기침, 호흡기	11	11	10	0	3.20	1.8		3.7	복수
15	전북	익산	유영철	3.18 식육결핍, 변비	11	11	-	-	3.22		2.2 7		단일
16	전북	김제	김기열	2.12 호흡기	4	4	3	0	4.6		2.1 2		단일
17	전북	장수	이화영	증상 없음	13	8	-	-	4.6	1.22		3.7	복수
18	전남	화순	박의성	증상 없음	10	2	88	0	3.20		2.2 7		단일
19	경북	상주	박경화	2.18부터 호흡기, 위축 3.10 포개짐, 발열	15	5	20	15	3.19		2.1 8	3.13	복수
20	경북	경주	정상수	3.18부터 식육부진	4	1	13	9	3.21	1.20	2.2 1		복수
21	경북	성주	심태규	증상 없음	6	4	3	1	3.19			3.6	단일
22	경북	상주	배대욱	증상 없음	17	1	3	0	3.19	1.28	2.1 1	3.13	복수
23	경북	영덕	조임치	증상 없음	10	6	20	0	3.24		2.2 1		단일
24	경북	영주	박봉훈	증상 없음	8	3	12	0	3.24			3.13	단일
25	경남	황안	김외석	3.16부터 모여 있고 안구출혈	10	3	40	15	3.18		2.6 2.1 8	3.7	복수
26	경남	김해	장영재	2.28부터 기침, 식육부진	5	2	8	4	3.19		2.2 8		단일
27	경남	황안	김기용	증상 없음	16	5	8	0	3.26			3.7	단일

#### 다) 상원축산 사양관리(자돈사) 기록분석에 따른 유입시기 분석

##### (1) 사육두수 대비 폐사율 동향 분석

전체적으로 사육현황 대비 폐사 두수가 '03.1.22일경 이후로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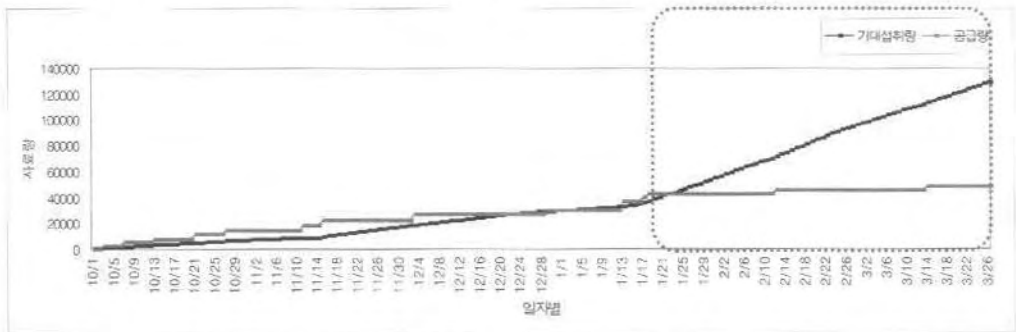
(그림 6-35) 상원축산(자돈사) 사육두수 및 폐사두수 현황



##### (2) 사료섭취량 동향 분석

폐사가 증가된 시점인 '03년 1월 하반기부터 기대 사료섭취량에 비해 사료공급량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6-36) 상원축산(자돈사) 사료공급 및 섭취량 현황



(3) 상원축산(제1농장) 폐사율 및 사료섭취량 동향 분석 결과, '03년 1.20일경을 전후하여 질병 피해로 추정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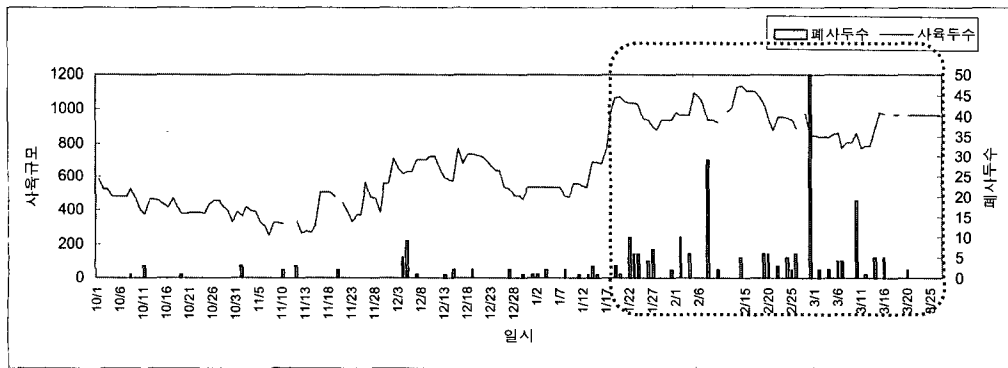
(가) 이를 돼지콜레라 감염으로 가정한다면 돼지콜레라의 야외감염시 농장의 임상증상 발현시기(2~4주)를 고려할 때 '02년 12월 중순 ~ '03년 1월 초순경에 감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다) 상원축산 사양관리(자돈사) 기록분석에 따른 유입시기 분석

### (1) 사육두수 대비 폐사율 동향 분석

전체적으로 사육현황 대비 폐사 두수가 '03.1.22일경 이후로 뚜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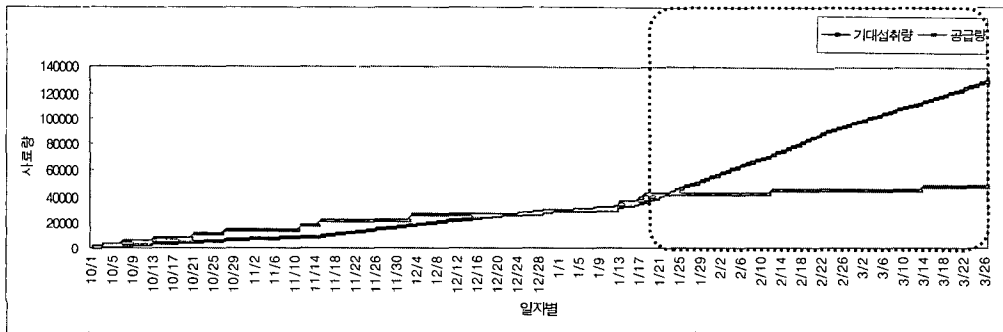
(그림 6-35) 상원축산(자돈사) 사육두수 및 폐사두수 현황



### (2) 사료섭취량 동향 분석

폐사가 증가된 시점인 '03년 1월 하반기부터 기대 사료섭취량에 비해 사료공급량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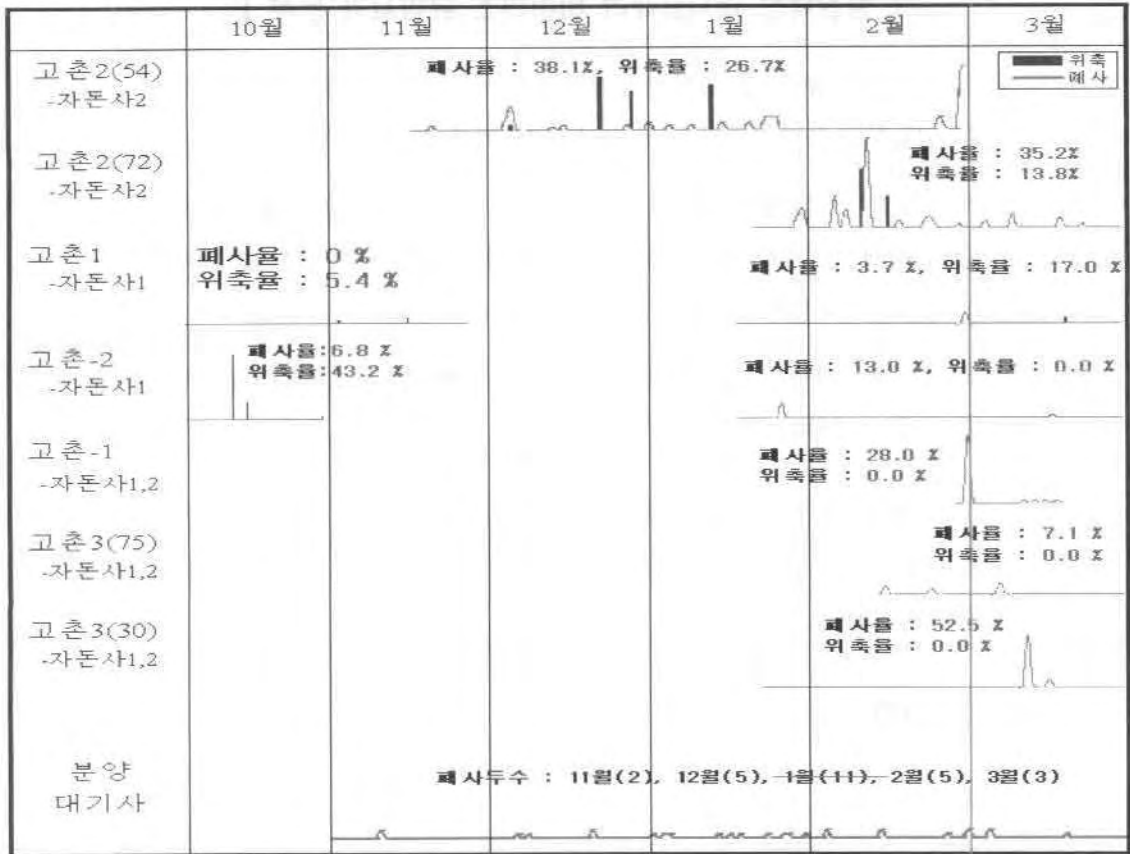
(그림 6-36) 상원축산(자돈사) 사료공급 및 섭취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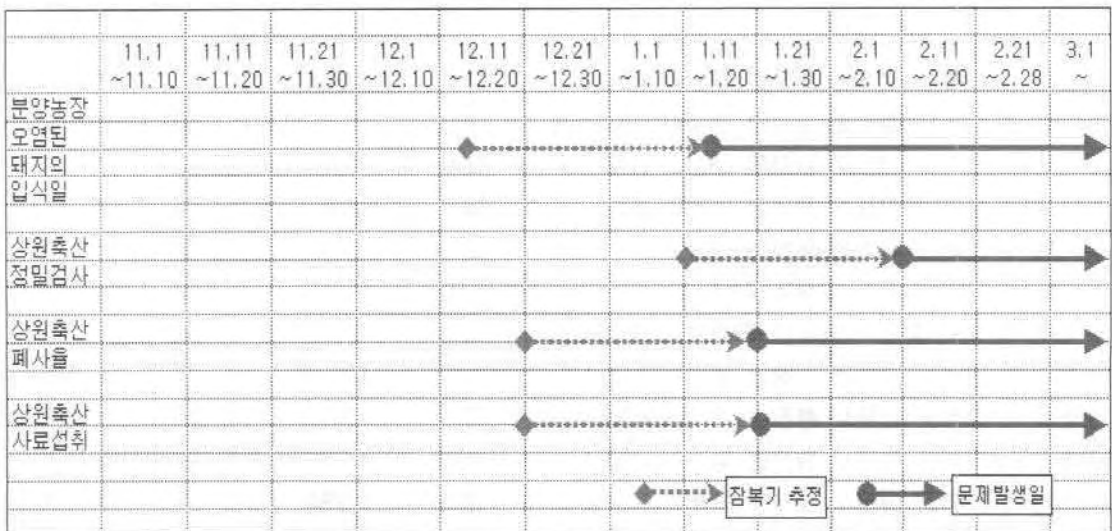
(3) 상원축산(제1농장) 폐사율 및 사료섭취량 동향 분석 결과, '03년 1.20일경을 전후하여 질병 피해로 추정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가) 이를 돼지콜레라 감염으로 가정한다면 돼지콜레라의 야외감염시 농장의 임상증상 발현시기(2~4주)를 고려할 때 '02년 12월 중순 ~ '03년 1월 초순경에 감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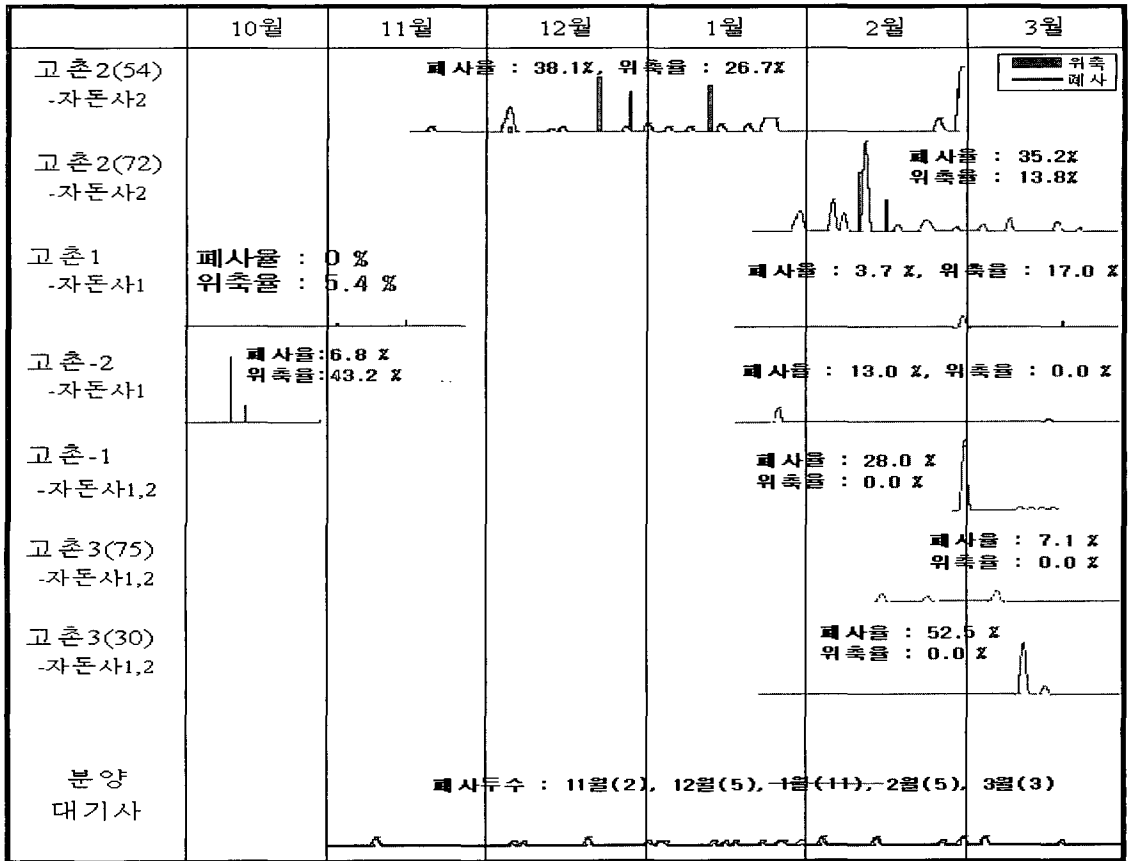
(그림 6-37) 상원축산(제1농장) 입식 돈군별시기별 폐사율 및 위축율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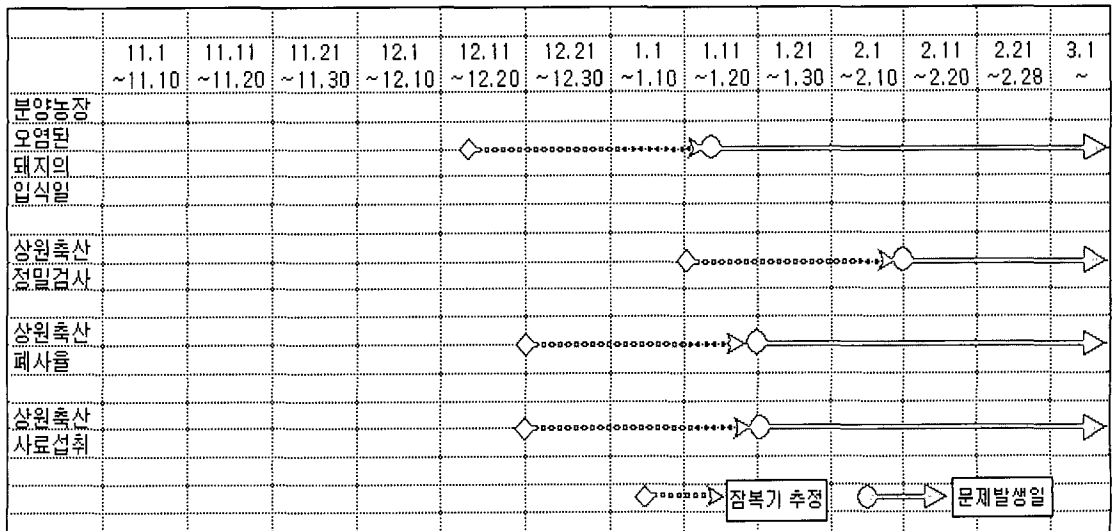
(그림 6-38) 돼지콜레라 유입시기 분석 요약



(그림 6-37) 상원축산(제1농장) 입식 돈군별시기별 폐사율 및 위축율 분석결과



(그림 6-38) 돼지클레라 유입시기 분석 요약



### 【 상원축산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입시기 분석 】

- ▷ 상원축산 분양(발생)농장 중 검사결과 입식돈에서 양성인 농장 분포 : 양성돈 입식 시기가 '03.1.14일부터 3.14일까지 이므로, 1.14일 이전 기 감염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 상원축산(제1농장) 정밀검사 결과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농장내 한 돈사에 유입된 후 타 돈사의 돼지에 감염시키는데 26~38일이 소요되므로 검사일(3.20)을 고려하여 2.10일 이전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추정
  - ▷ 상원축산(제1농장) 폐사율 및 사료섭취량 동향 분석 결과, 1.20일경을 전후하여 질병 피해로 추정되는 상황이 뚜렷하게 나타남
- 따라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야외농장 감염 시 임상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될 때까지의 기간(2~4주) 등을 고려할 때 '02년 12월중순 ~ '03년 1월 초순경에 감염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 마. 방역조치 사항

### 1) 발생현황 <표 6-37>

축주	주소	축종	사육규모	신고일	양성 판정일
노광우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854	돼지	1,326	10. 7	10. 8
한명섭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4리 847-5	돼지	1,374	10. 13	10. 13
천상열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987	돼지	153	10. 14	10. 15
유예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405	돼지	894	10. 21	10. 22
종석출	인천시 강화읍 대산1리 629	돼지	371	11. 1	11. 2
유찬원	인천시 서구 오류동 410-3	돼지	1,160	11. 14	11. 16
원정식	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돼지	1,158	11. 16	11. 16
최범식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 111	돼지	1,544	11. 25	11. 26
이헌호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귀전리 483	돼지	1,515	11. 26	11. 27
김호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5	돼지	1,520	12. 15	12. 15
송오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 32-2	돼지	1,788	12. 21	12. 22

## 2) 긴급방역 추진사항

- 비상방역체계로 전환 24시간 비상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의심축 신고 가축에 대하여는 24~48시간내 신속진단 수행
- 발생농가 및 인근농가에 대하여는 신속한 살처분(24농가, 30,241두)과 농장 진입로, 축사내외, 매몰지 등에 소독철저
- 발생농장 중심 위험(3km 내) 및 경계지역(3~10km 사이)의 이동제한 지역을 설정하고, 주요 길목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여 민관군경 합동으로 불법 이동가축 감시, 출입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실시
- 검역원장 및 중앙가축방역관이 현지 상주하여 살처분, 소독, 사후관리 등 현장 방역지도(발생 지역 소독차량 2대 상주 배치 소독지원)
- 발생농장 방문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세척(세탁)·소독 등 철저 및 타농가 방문금지 조치, 발생 시·도와 협조하여 긴급 혈청검사 실시
- 발생농장의 역학적 관련농장에 대하여 해당 시·도에서 긴급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실시(약 2,107농가), 강화 및 김포지역 역학적 고위험 농가에 대하여는 현지 상주 임상관찰 실시
- 강화 최범식 및 김포 이현호 농가 발생과 관련 위험지역내 농가에 대한 현지 방문 방역지도 및 홍보실시(47개 농가)
- 김포 이현호 농가와 바로 인접한 사료포대 공장에 대한 훈증소독 실시 및 납품처에도 소독조치(충북 음성 도드람 사료 및 당진 축협사료)
- 인천 강화 및 서구, 경기 김포·이천의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에 대하여는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지도와 함께 ARS 홍보실시
- 발생농장 출하 도축물량 폐기조치(246kg, 10개업소)
- 겨울철 이동통제 초소에서 소독이 어려운 점을 감안 가축운반 등 축산관련 차량 위주로 소독토록 주황색 스티커 제작배부(농림부)

## 3) 발생지역 인접 사군에 대한 방역조치

- 발생지역 인근 고양·파주·부천·시흥·광명 등으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방역교육 실시(2회)
- 강화·김포 및 그 인근지역 소재 도축장에 현지 상주하여 가축운반차량 소독지도 실시('02. 11. 19 ~ '03. 1. 14)
  - 대상 도축장 : 강화·인천·김포·부천·파주·서울 도축장
- 돼지콜레라 재발생 위험요인 분석 및 향후 방역대책 시·도 관계관 협의회 개최('03. 1. 27)



## 4) 이동제한 해제 추진 &lt;표 6-38&gt;

발 생 지	발생일	살처분	수매출하		이동제한해제		비고
			경계지역	위험지역	경계지역	위험지역	
1차(강화 노광우)	10. 7	10. 9	10.30	11.11	11.11	11.21	
2차(강화 한명섭)	10.13	10.14	10.30	-	11.11	11.27	
3차(강화 천상열)	10.14	10.15	12. 14	12.27	11.21 12.13	'03.1.7	8차발생 재설정 (경계 11.27)
4차(김포 유예근)	10.21	10.22	12. 8	12.24	11.9 12.14	'03.1.4	9차발생 재설정 (경계 11.26)
5차(강화 종석출)	11. 1	11. 2	12. 14	12.27	11.21 12.13	'03.1.7	8차발생 재설정 (경계 11.27)
6차(인천 유찬원)	11.14	11.17	12. 5	12.17	12.4(서구) 12.7(김포)	12.28	
7차(김포 원정식)	11.16	11.19	12. 7	12.24	12.14	'03.1.4	9차 발생 재설정 (경계 11.26)
8차(강화 최범식)	11.25	11.27	12. 9	12.27	12.13	'03.1.7	
9차(김포 이현호)	11.26	11.27	12. 7	12.24	12.14	'03.1.4	
10차(김포 김호창)	12.15	12.16	'03.1.6	12.24	'03.1.4	'03.1.25	
11차(이천 송오범)	12.21	12.23	'03.1.14	'03.1.20	'03.1.14	'03.2.3	

## 5) 입식시험 결과

- 전국적 재발생에 따른 예방접종 정책 추진으로 입식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

**<예방접종 실시지역 확대 및 전국적 재접종 실시>**

- 강원 철원 및 인천 강화·서구, 경기 김포 발생시 살처분 정책 유지
- 경기 이천 발생시 “살처분 + 인접지역 예방접종” 정책으로 전환
- '03. 3. 18. 전북 왕궁지역 발생시 “살처분 + 인접지역 예방접종” 정책 유지
- '03. 3. 23. 전국 확산(16개 시·군 34개 농장 발생) 이후 “예방접종” 정책으로 전환(제주도 제외)
  - 전국 예방접종에 따라 살처분 대상 및 이동제한 지역·기간 변경
    - 살처분 대상 : 발생농장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
    - 이동제한 지역 및 기간 : 발생농장에 한하여 40일 이상 이동통제

**바. 역학조사 결론**

- 1) '03년 3~5월에 발생한 돼지콜레라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상원축산 (제농장)의 후보돈 분양과

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

- 상원축산을 제외한 64농장 중 44농장이(69%) 상원축산 분양 관련 농장
  - 상원축산에서 분양된 후보돈(429두) 검사결과 125두에서 돼지콜레라 양성
  -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시료가 확보된 59농장 중 1개 농장(경기 포천 김철농장)을 제외하고는 상원축산(제1농장) 분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전자와 100% 일치하였다.
- 2) 기존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경기 김포 등)을 출입한 상원축산 관계지(차량) 또는 위탁농장과의 돼지 이동과정 중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상원축산(재농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상원축산(제1농장)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02년 강화(한명섭 농가 등)와 김포(유예근 농가)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와 유전자 염기서열이 100% 일치
  - 바이러스가 상원축산(제1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상원축산의 선발·위탁 관리팀(차량) 또는 위탁농장과의 돼지이동 과정 중 기존 오염지역(강화, 김포)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 ※ 상원축산 위탁농장 20개중 12개가 기존 발생 인근지역(강화·김포 등)에 위치
- 3) 상원축산(제1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시기는 '02.12월 중순 ~ '03.1월 초순사이로 추정되었다.
- 상원축산(제1농장)·위탁농장 사양관리 기록, 정밀검사 결과 및 분양농장 발생시기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02.12월 중순~'03.1월 초순에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
  - ※ 동 시기는 “살처분+인접지역 예방접종” 정책으로 전환('02.12.24)한 시기임
- 4) 향후 발생전망
- 현재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은 항체가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폭발적인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의 발생 예에서 보듯이 일부 농가의 예방접종 누락과 무분별한 떨어돼지의 구입 등으로 인해 산발적인 발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사. 평가 및 사후 대책

### 1) 평가

- 가) 예방접종 중단 후 8개월까지는 항체가 유지되고 구제역 특별방역기간(2~6월)에는 소독 강화로 돼지콜레라 재발 위험이 적으나 항체가 소실된 후에는 소독 등 방역 소홀시 발생위험이 상존

나) 돼지콜레라·구제역 발생사례를 보더라도 소규모 농가(300두 미만)는 정부에서 소독약 공급 및 소독을 실시해 줌으로써 어느정도 방역관리가 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율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여긴 대규모농장에서 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음.

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이후 양축농가 및 국민적 관심이 저조

- 철원 발생농가를 보더라도 소독·차단방역 등이 소홀하고 신고의식도 부족한 상태임.
- 일부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약 수거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강제 수거 지난

## 2) 향후 대책

가) 돼지콜레라 재발 가능성이 높은 연말까지 양돈농가 “특별방역 대책” 추진

- 농장 소독·예찰활동·혈청검사 강화
-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강화, 가축·사료·약품수송 차량의 소독관리 강화, 혈청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항체보유 모돈 등 조기도태 추진
- 과거 발생지역과 항체가 낮은 지역을 우선한 방역추진
- 질병발생 조기신고 체제 보강
  - 익명신고제 운영, 지역담당관제 재정비, 명예 가축방역감시원 임명·위촉, 양축농가 전염병 신고방법 등 홍보·교육 강화

나) 방역규정 위반자 등 법적 처분 철저 -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

다) 돼지콜레라 예방약 수급 등 관리 강화

- 예방접종 중단후 재발생 대비 돼지콜레라 생독 예방약 비축·관리
- 시중 유통·보관중인 돼지콜레라 예방약 유통금지 및 수거조치
- 약사감시 강화 : 제조업체 및 판매업소, 양돈농가

라) 정부·단체·농가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 정부 : 위험지역 항원·항체검사, 방역규정 위반자 처분 등
- 단체 : 농가홍보, 공공지역·시설의 소독지원 등

마)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결과 인터넷 공개

바) 남은 음식물 급여에 대한 점검 강화

사) 관련 제도 개선 등 검토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 보완·개정
  - 이동제한지역 돼지 도축 출하시 임상검사, 정밀검사 기준 및 이동통제 대상과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
  - 혈청검사 등에 의한 예방접종 실시농가 적발기준 등 보강

- 신고시점에 따라 살처분·예방접종·이동제한·도축출하 기준 조정
- “명예가축방역감시원운영규정(농림부고시)” 제정

## 5. 2003년 6월 이후 돼지콜레라 감염농장 역학조사결과

### 가. 경북 상주 발생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 1) 발생농장 개요

- 가) 경북 상주시 낙동면 유곡리 294번지(유림농장, 이상철 : 43세)
- 나) 사육규모: 총 900두
  - 모돈90, 후보돈10, 웅돈5, 비육·육성400, 이유자돈255, 포유자돈140
  - ※ 이상철농장: 지난 3.12일 상주GP에서 후보돈 5두 입식(상주GP는 3.20 돼지콜레라 발생)

#### 2) 방역조치 사항

- 가) 이상철 농가 방역조치사항
  - 구입돈 및 동거돈에 대한 살처분(8.9일 15:30~19:00) 완료
    - 살처분 두수 : 총 235두(남아있는 외부 구입돈149두, 자체생산 동거돈 86두)
  - 농장 내외부 소독 및 차단방역 실시

#### 3) 발생농장 역학조사 및 검사현황

- 가) 7. 7일: 상주시 화산면 소재 김 OO농가의 떨어돼지 160두(3~6주령) 입식
- 나) 7.28일: 식육결핍, 침울, 설사 등 증세 나타남
- 다) 8. 7일: 식육결핍, 포개짐 등으로 축주가 신고(경북 서부지소, 10:30분)
- 라) 8. 8일: 경북시험소에서 시료채취 검사결과 양성 확인(농림부 판정보고: 8.9일)
  - ※ 검역원에서 도축장 출하돈 검사과정중 동아 LPC로 출하(7.22)된 이상철 돼지 1두에서 양성 판정 →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에 이상철농가 돼지콜레라 검사 요청
  - ☞ 돼지 1두 양성건은 PCR 양성이었으나 백신주로 확인됨
  - ☞ 7/22일 동아LPC 출하돈 16두는 조사결과 상주시 중동면의 고 OO (800두 규모)이 이상철의 명의를 빌려 출하했음이 확인되어 해당농가 검사실시 : 20두 전두수 항원 음성

#### 4) 관련농장 역학조사 및 검사현황

가) 김 OO 농가 : 현재 폐업상태임

- 폐업전 사육두수 : 총 266두(모돈63, 웅돈3, 이유자돈160, 포유자돈40)
- 판매현황
  - 7.7일: 이유자돈(3~6주령) 160두 → 이상철
  - 7.12일: 모돈·웅돈, 포유자돈 106두 → 김 OO(경북 성주, 중개인 및 양돈업)

나) 김 □□ 농가

- 사육두수 : 60~140일령 비육돈 약 1,000두 사육
- 김 OO농가에서 구입한 돼지 보유현황
  - 입식모돈 54두 및 웅돈3두 → 대구 신흥도축장 출하(7.15, 8.5)
  - 현재 포유모돈 6두, 임신돈 3두 및 자돈 사육 중
- 검사결과
  - 임상관찰 및 예찰결과 : 특이증상 없음
  - 항원 및 항체검사 : 45두에 대한 검사결과 전두수 항원음성

#### 5) 이상철 농가 추가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가) 검사일자 : 8.18~8.21

나) 검사두수 : 108두(포유모돈 15, 후보돈·모돈 82두, 웅돈 11두)

다) 검사결과

- 항원검사(PCR) 1두 양성(모돈)
- 항체검사(ELISA) 8,000배 역가 11두(후보돈, 이중 16,000배 4두)

#### 6) 발생원인 추정

가) 김 OO 농가의 떨이돼지 오염 가능성(오염된 떨이돼지 입식으로 발생)

- 김 OO 농가의 타 분양농가(김 □□) 돼지 확인결과 특이 임상증상 없으며 45두 검사결과 음성 판정
- 7.7일 떨이 돼지입식 후 약 1개월경과 후 발생
  - ⇒ 입식 당시 해당돼지의 오염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

나) 이상철 농가의 돼지콜레라 잠복감염 상태에서 예방접종이 안된 새끼돼지의 입식으로 돼지 콜레라 발생 가능성(떨이돼지 입식 후 예방접종 지연)

- 추가 정밀검사 결과, 이상철농가에서 기존에 사육되던 모돈중 항원 1두 양성

7) 역학조사 결론

이상철 농가 돼지콜레라 발생은 지난 3월 상주지역 발생 당시 발생농장인 상주 GP의 후보돈 입식과정 등을 통하여 농장에 오염되었고, 그 이후 인근 주변의 긴급예방접종으로 masking되어 지금까지 특별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가 없었으나, 최근 예방접종이 안된 돼지가 입식됨으로써 발생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충남 당진

1) 발생농장 개요

구분	오수홍 농장	이경훈 농장
발생일	8.20	8.26
주 소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648-5번지	충남 당진군 송악면 도원리 19번지
사육규모	1,435두 (육성비육돈 1,435두)	686두 (모돈 79두, 웅돈 1두, 육성비육돈 545두, 자돈 61두)

2) 방역조치 사항

가) 오수홍 농가 방역조치 사항

- 감염축 및 감염 의심축에 대한 살처분 완료 (8.21일 03:00)
  - 살처분 두수 : 총 1,435두 (살처분장소 : 농장 옆 밭)
- 농장 내·외부 소독 및 차단방역 실시
- 발생농장 1~3Km 이내 48농가 38,500두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

나) 이경훈 농가 방역조치 사항

- 감염축 및 감염의심축에 대한 살처분(8.27일) 완료
  - 살처분 두수 : 총 529두
- 농장 내·외부소독 및 차단방역 실시

3) 발생농장 역학조사 및 검사현황

가) 오수홍 농장

- 돼지 입식 현황
  - 7.8일 이후 13개 농장에서 총 14회에 걸쳐 자돈 1,435두 입식
  - ※ 7.8일 : 256두, 7.10~7.20일 : 875두, 7.21~7.30 : 304두

※ 돼지 입식 시 특이증상은 없었음

○ 발생신고 경위

- 7.18일 돼지오제스키병 검사 (20두 검사 : 음성)
- ※ 7.8일 자돈 구입농장이 돼지오제스키병 발생농장
- 7.19일 오제스키병 예방접종 (1차, 2차 예방접종은 8.13일 실시)
- 8. 7일 돼지콜레라 전두수 예방접종 실시
- 8.13일 폐사 2두 발생 및 위축돈 18두 도태 (기침, 식욕부진, 설사 등 증상)
- 8.18일 폐사축 추가발생(5두) → 병성감정 의뢰(3두)
- 8.18~8.20일 돼지콜레라 정밀검사 진행
- ※ 정밀검사 실시 : 총 62두중 11두 양성 판정
- ※ 농장내 돼지 임상관찰 결과 : 후구마비, 기침, 식욕부진 및 발열 등
- ※ 감염 의심축 : 521두 (양성 11두 포함)

○ 최종 진단 및 판정

- 8.20일 돼지콜레라 최종 진단 및 판정

나) 이경훈 농장

○ 돼지 입식 현황

- 7.2일 ~ 8.23일까지 총 3회 199두 입식
- 남 00(50두), 박 00(64두), 최 00(85두)

○ 발생신고 경위

- 8. 22일경 설사병 5두 발생 (자가치료)
- 8. 25일 후구마비 및 폐사축발생 (5두)
- 8. 25일 병성감정 의뢰 (1두)
- 8. 25일 축산위생연구소 확대검사 실시 (채혈 : 46두)

○ 최종 진단 및 판정

- 8. 26일 돼지콜레라 양성 판정

4) 역학적 공통사항 및 관련농장 검사 현황

가) 돼지 입식 관련

축주명	오수흥 농장	이경훈 농장
돼지구입농장	20개농장(22회)	3개농장(남00 · 박00 · 최00)
중개상인	3명 (남 00 · 이 00 · 최 00)	

☞ 이경훈 농장의 돼지구입농장중 남 00는 오수흥농장 돼지중개상인인 남 00와 동일 인물임

## ※ 남순교에 의한 돼지 입식시기

구입농장(중개인)	오수홍 농장	이경훈 농장
남OO	7.8일, 7.14일, 7월중순(2회)	7.2일

## 나) 동물약품 구입관련

구입처	오수홍 농장	이경훈 농장
J 가축약품	7.11, 7.27, 7.30, 8.5일	8.18일

## 5) 관련농장 검사 현황

## 가) 오수홍 농장 관련

- 돼지 구입농장에 대한 검사결과 : 임상관찰 및 예찰결과 특이증상 없음
- 향원 및 항체검사 : 20개농장 566두에 대한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

## 6) 발생원인 추정

## 가) 중개상인을 통한 무분별한 돼지 입식 과정 중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

- 오수홍농장은 7.8~7월말까지 20개 농장으로부터 1,435두 입식
  - ※ '03.4월 이후 입식자금 부족으로 3개월 동안 축사를 비워둠
- 이경훈농장은 7.3~8.23일까지 3개 농장으로부터 199두 입식
  - ※ 오수홍농장으로 돼지를 운반한 중개상(남순교)에게 7.3일 돼지구입
- 바이러스의 유전자염기서열 분석 : 오수홍·이경훈 농장은 100% 일치
  - ※ 동 바이러스는 상원축산 분리 바이러스의 유전자염기서열과도 100%일치

## 7) 역학조사 결론

충남 당진지역 오수홍 및 이경훈 농가의 돼지콜레라 발생은 중개상을 통한 무분별한 돼지 입식과정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다. 울산 울주

## 1) 발생농장 개요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111번지(윤문준 : 49세)
  - 사육규모 : 829두(비육돈 372, 육성돈 457)



## 2) 발생신고 및 진단경위

- 9.3일 경북 영덕(예OO 농장)에서 구입한 돼지(180두, 60일령)에서 문제 발생
  - 9.12일경부터 식욕부진, 설사,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1~2두씩 폐사
  - 9월말까지 자가치료하였으나 효과는 없음 (10.8일까지 총 70여두 폐사)
- 10. 8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위촉돈 4두(9.3일경 입식돼지) 병성감정 의뢰
  - PCR 검사결과 4두중 2두 양성(10.10 의사환축 발생보고)

## 3) 역학조사 현황

가) 돼지 입식 현황: 경북 영덕지역에서 대부분 구입

- 5~6월(천OO 농장: 250~300두), 7~8월(박OO 농장: 100~200두)
- 8~9월(예OO 농장: 300두), 10.7일(김OO 농장: 24두)
  - ※ 모두 돼지중개인(정OO)을 통해 구입하였으며, 예OO 농장 구입 돼지는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실시사항을 확인하지 않음(예방접종 확인서를 주고받지 않음)

나) 윤문준농장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현황

- 구입 돼지는 이전 농장에서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본 농장에서 1회 접종 실시
- 예OO농장 구입 돼지(9.3)는 입식 후 1개월 경과 후 예방접종 실시(10.1)
  - ※ 백신수령 (관납백신) : 5.14일(600두분), 9.29일(700두분)
  - ※ 최근 백신접종일자 : 8.10일(150두), 10.1일(250두)

## 4) 발생원인 추정

기존 발생지역인 경북 영덕에서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돈을 구입하고, 구입 후 적시에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 ※ 기존발생농장(영덕 조임치 농장) : 상원축산의 후보돈 분양관련 3.27일 발생
- ※ 윤문준 농장의 돼지중개인(정OO)은 조임치 농장의 출하기사와 동일인임

## 라. 경북 경주

### 1) 농장 개요

가)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503 (이상태 :48세)

- 사육규모 : 747두 (비육전문농장; 자돈 89, 육성돈 552, 비육돈 106)

## 2) 발생신고 및 진단 경위

- 가) 10. 7일 입식돼지(50~55일령, 정OO농장 9.22)에서 식욕결핍, 설사, 폐사 등 증상
- 나) 10. 9일 경북시험소 동부지소 신고 → 농장예찰 후 채혈(45두)하여 본소로 송부
- 다) 10. 9~10일 경북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서 정밀검사 실시(25/45두 항원양성)
- 라) 10.11일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 확인 및 발생보고

## 3) 주요 역학조사 현황

가) 돼지 구입 : 영덕 및 경주지역에서 구입

- 영덕 : 천OO (8.20일 40두, 9.25일 90두), 차OO (9.14일 45두)
- 경주 : 정OO (8.23일 150두, 9.22일 150두)
  - ※ 천OO, 차OO 농장은 기존 발생(조임치, 3.27) 농장과 바로 인접
  - ※ 천OO 농장은 울산 울주 발생농장에도 자돈을 입식시킨 농장임

나) 예방접종 현황

- 구입농장 접종유무에 상관없이 입식 후 7~10일에 일괄 접종
  - ※ 9.22 구입한 돼지는 판매농장(정OO농장)에서 9.14일 1차 예방접종 실시

## 4) 역학조사 결론

경북 영덕에서 돼지구입 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본 농장으로 유입되었고, 그 이후에 항체가 불완전한 상태의 돼지가 입식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 축주는 정 OO 농장에서 1차 백신(9.14일)을 하였으나, 지난 태풍(매미)의 영향으로 정 OO 농장의 백신보관 냉장고가 정전되어 예방약에 이상이 생겨 항체형성이 불완전하게 되었을 것으로 주장

## 참고자료 : 돼지콜레라 발생(울산 울주, 경북 경주) 관련 역학조사 결과

### 1. 발생농장 역학조사 개요

구 분	윤문준(10.11 발생)	이상태(10.11 발생)	비고
주 소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1111	경북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503	
사육규모	829두(비육돈 372, 육성돈 457)	747두(자돈 89, 육성돈 552, 비육돈 106)	비육전문농장
역학사항 (돼지입식)	- 영덕 4개농장 (천OO, 박OO, 예OO, 김OO)	- 영덕 2개농장(천OO, 차OO) - 경주 1개농장(정OO)	

### 2. 돼지콜레라 발생농장간 공통사항

가. 울산 울주(윤문준) 및 경북 경주(이상태)농장 모두 비육돈 전문사육농장으로 자돈을 외부에서 입식하고 있으며, 그 지역이 경북 영덕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경북 영덕은 지난 3월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이며, 발생농장(조임치, 3.27발생) 인근주변에 천OO 및 차OO 농장 위치

나.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두 농장 모두 상원축산 바이러스와 100% 일치

### 3.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역학분석 결과 조치사항

가. 돼지콜레라 발생농장별 역학조사 현황보고 : 윤문준(10.10), 이상태(10.11)

나. 역학조사 분석결과 발생농장 돼지 입식관련 지역인 경북 영덕 등 일부농장이 돼지콜레라 오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긴급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실시요청(10.11) ※ 경북도에 상기 6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요구

다. 경북도 긴급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결과 : 2개농장(천OO, 차OO) 양성확인(10.15)

축 주	주 소	사육두수	검사두수	판정두수	살처분두수
천OO	경북 영덕 화수2리	322	27	2	44
차OO	경북 영덕 화수2리	163	15	5	9

\* 나머지 4개 양돈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

### 4. 역학조사 결론

경북 영덕지역은 상원축산 후보돈 분양과 관련 지난 3월 조임치농장(3.27일)의 돼지콜레라 발생 시 인근지역의 긴급예방접종으로 당시 양성으로 판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변농장 일부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천 OO 등 오염농장으로부터 돼지를 입식한 농장에서 그 이후 예방접종 미확인 돼지(예방접종 지연) 등을 입식하므로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마. 경기 안성

### 1) 발생농장 개요

가)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장암리 60-1 김귀숙(유일농장, 김귀숙 : 45세)

나) 사육규모 : 3,000여두

○ 모돈340, 후보돈10, 웅돈8, 비육·육성2,000, 이유자돈700)

### 2) 발생신고 및 진단경위

가) 11. 2일 비육·육성돈사에서 호흡기 증상 등으로 10여두 폐사

나) 11. 5일 수의사(지OO) 진료 및 검역원(위축돈 2두) 검사 의뢰

다) 11. 7일 돼지 콜레라 진단 및 발생보고(통보)

▶ 의뢰된 2두중 1두(70일령)에서 돼지콜레라 양성 확인

라) 11. 7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역학조사 실시 및 살처분(발병돈방 93두)완료

마) 11. 8일: 검역원 역학조사과 추가 역학조사 실시(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합동)

※ 추가 역학조사 실시에 따른 인근농장 정밀검사 등 조치사항 통보(경기, 충남, 방역 51580-1823; 11.10)

### 3) 역학조사 현황

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현황

○ 매주 토요일 주간단위 접종 : 1차(45일령), 2차(65~75일령)

▶ 발생축은 위축돈으로 2차 예방접종 시기가 늦춰져 미접종 상태였음

나) 돼지 입식현황 : 9월경 충남 당진 소재 M 농장에서 후보돈 10두 구입

○ 구입 후보돈 10두는 돼지콜레라 음성(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 '03년 이후 2회입식 (4월경 30두 및 9월경 10두 모두 M 농장에서 입식)

다) 농장 기왕력 :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 : 2001. 11월 ~ 2003. 6월(종식)

라) 인근 농가 현황 : 3농가

○ 위탁사육농장으로 발생농가와 100m이내로 극히 인접

## 4) 추가 역학조사에 따른 조치결과

가) 후보돈 입식농장(당진 M 농장)에 대한 추적 조사 : 충남 시험소 실시

구 분	항원검사(PCR)	항체검사(ELISA)	비 고
모 돈	0/15	15/15	* 고역가 검사결과 모두 음성
후보돈	0/30	30/30	
비육돈	0/ 5	5/ 5	
합 계	0/60	60/60	

나) 인근 3개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추가 역학조사 : 경기도 시험소 실시

구 분	항원검사(ELISA)	항체검사(ELISA)	고역가항체검사 (ELISA × 8,000)	돼지입식 관련
김OO	0/30	30/30(100%)	1/30 (3.3%)	중계상 통해 구입 (농장 확인 안됨)
이OO	0/20	18/20( 90%)	0/20 ( 0%)	이천 설성 김경OO장 구입 - 1·2차접종자돈 구입
최OO	0/30	24/30( 80%)	1/30 (3.3%)	안성 일죽 이OO농장구입(격주 간격 100두씩) - 1차접종자돈 구입

※ 3개농장 모두 비육돈 전문사육농장으로 자돈을 외부에서 입식하고 있음

다) 외부 유입요인(인공수정, 임신진단, 직원 전 근무농장 등) 추가 역학조사

## ○ 정액판매 AI 센터 관련

▷ 10.1일부터 11.5일까지 정액을 판매한 농장(총 117농장; 안성42, 용인21, 광주3, 화성8, 평택1, 진천2, 음성7, 괴산11, 충주9, 청원13)을 조사한 결과 기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과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음.

## ○ 임신진단 관련

▷ 사료대리점 관계자가 발생농장(김귀숙) 1곳만 임신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농장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음.

## ○ 발생농장 근무직원의 전 근무농장 관련

▷ 농장종사자(3명)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 기존 발생농장과 역학적 특이사항 없음

## 5) 역학조사 결론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차량 등에 의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된 후 예방접종이 지연되어 돼지콜레라 항체 형성이 부적절한 일부 위축돈 에서 발생

가) 발생축은 2차 예방접종이 지연된 위축돈 격리돈사에서 확인되었고(살처분 완료), 타 돈사는

임상관찰 및 추가 정밀검사 결과 이상없음

- 나) 발생농장은 금년 후보돈 입식(2회, 40두) 이외 돼지 구입사실이 없으며, 최근 구입 후보돈(10두)과 후보돈 구입농장(M 농장; 충남 당진 소재)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모두 돼지콜레라 음성으로 판정되어 오염된 돼지의 직접 이동에 의한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 인접 농장(3개농장)을 통한 간접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

## 바. 결론

### << 경북 상주 >>

상주 GP농장(박경화)의 후보돈 분양과정을 통하여 농장이 오염되었고, 그 이후 긴급 예방접종으로 잠복되어 지금까지 특별한 임상증상 등을 나타내는 돼지가 없었으나, 최근 예방접종이 안된 돼지가 입식되므로써 발생

### << 충남 당진 >>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새끼돼지 구입과 예방접종 소홀 및 무분별하게 증개상을 통한 돼지 입식과정을 통하여 농장에 유입되므로써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 울산, 경북 경주 >>

경북 영덕지역은 상원축산 후보돈 분양과 관련 지난 3월 조임치 농장(3.27일)의 돼지콜레라 발생 시 인근지역의 긴급 예방접종으로 당시 양성으로 판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변농장 일부가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천OO 등 오염농장으로부터 돼지를 입식한 농장에서 그 이후 예방접종 미확인 돼지(예방접종 지연) 등을 입식하므로써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 경기 안성 >>

발생농장을 출입하는 사람·차량 등에 의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농장에 유입된 후 예방접종이 지연되어 돼지콜레라 항체 형성이 부적절한 일부 위축돈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경북 상주, 충남 당진, 울산, 경주, 경기 안성 발생농장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상원축산 바이러스와 100% 일치하고 있음.

## 6. 종돈장 방역관리대책 발전방향

### 가. 종돈업-돼지정액처리업 현황

- 1) 종돈장은 '03. 3월 현재 133개소(662천두)로, IMF 영향으로 감소하였다가 '99.1.29 등록제에서 신고제 전환이후 ' 97 수준으로 증가
  - 축산법 규정에 의거 종돈 50두 이상 사육자가 일정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종돈업 신고, 지도·감독을 받음
  - 돼지정액처리업(등록업) : 60개소(2,640두), 종용돈 10두 이상 사육기준
- 2) 종돈개량 수준이 아직 낮고, 매년 혈통갱신용 종돈의 6~7%를 수입
  - 종돈장에서 매년 25만두(전체 사육모돈의 25%)의 후보 모돈을 생산, 농가에 공급, 농가는 3년 정도 사용후 교체

### 나. 종돈장 등 방역관리 실태

- 1)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에서는 **종돈장과 일반농장의 방역조치를 구분하지 않고 있음**
  -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에서는 종돈장의 검사, 검사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조치 등 양돈장 보다 강화하여 관리
- 2) '00년부터 매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거 매년 전체 농장별(종돈장 포함)로 **년 3회 이상 번식돈 중심 혈청검사 실시**
  - 농장채혈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종돈장은 대부분 농장수의사가 채혈)
  - 혈청검사(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종돈장 위생관리요령(농림부고시)”에 의거 관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주기적 임상검사·정밀검사 등을 실시토록 규정**
  - 미신고 종돈장을 제외한 대부분 종돈장에 대해 시험소 방역관이 년 2회 이상 주요 질병별 혈청검사 등을 실시
  - 돼지콜레라는 '01까지 전두수 예방접종 항체에 따라 혈청검사를 임상검사로 대체하고 예방접종 중단 이후부터는 혈청검사를 실시
- 3) '97부터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농림부 고시)”에 의한 질병 비발생농장 인증제도를 운영
  - 질병 종합검사 및 사후관리에 따른 종돈장 질병감염 사실이 공개되고 인증농장 인센티브가 없

어 참여율이 극히 저조(인증 종돈장 8개소)

### ※ 외국의 사례

- 캐나다 :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疾病 및 形質 인증제도” 운영, 양돈농가가 우수한 돼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
- 영국 : 종돈장에서 충분한 인원의 수의사를 고용하여 자율적 방역·위생관리를 하고 예방접종 없이 질병 감염돈을 색출, 도태
- 일본 : 법적으로 종돈장과 일반 양돈장 구분 없이 자유업종으로 관리.  
정부의 “종돈장 등 양돈시설의 위생대책지침”에 의거 농장주가 시설배치, 폐사돈 병성감정 의뢰, 농장소독 등 자율적 방역관리를 하고, 보건위생소와 위생지도협회(민간방역단체)가 질병별로 주기적인 혈청검사(농장·도축장)를 실시

### 다. 종돈장 관련 제도개선 추진사항

#### 1)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02.12.26개정, '03.6.27시행)

- 전체 종축업의 소독설비 의무화 및 소독실시 횟수, 방법 등의 일반양돈장과 차별화 규정 마련
- 질병관리등급 부여규정을 신설, 부령으로 인증제 운영조치
- 가축거래 기록·작성·보존 규정 신설, 고시로 가축(종돈) 거래시 질병 검사 내역을 기록토록 조치

#### 2) 축산법('02.12.26개정, '03.12.27시행)

- 종돈업 신고제를 등록제로 개선
- 등록자의 개량, 질병예방 등 준수 의무 부여

#### 가) 문제점

- (1) 종돈업(장)의 신고제 관리 및 사육단계별 분산사육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방차원의 제재조치 및 관리기능이 취약
  - 성장단계별 2~3 Site 분산 사육장의 종돈장 신고누락으로 관리 소홀
  - 신고업에 따른 방역조치, 시설기준 등 위반시 제재 수단이 미흡
    - 영업정지 처분 불가, 미신고 종돈장과 형평성 문제로 과태료 조치도 소홀
- ※ '99년 규제완화시 종축장 정기검사·소독설비·수의사 고용규정 삭제
- (2) 종돈장 방역수준을 과신하여 방역관리를 일반농장과 구별없이 관리함에 따라 질병 발생시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됨



- 소독, 예방접종, 혈청검사 등 방역사업을 영세사육농장·축산밀집지역 등 중심으로 추진
- 최근까지 종돈장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위험이 있는 돼지오제스키병, 호흡기질병 위주로 검사관리
  - 번식종돈 중심의 검사로 분양 후보모돈·육성돈이 검사에서 제외
- (3) 장기간 양돈업 호황으로 후보 모돈의 공급부족 현상에 따라 수요자(구입농장)의 우수종돈 선별 및 입식후 방역관리 의식이 결여
  - 방역관리가 소홀한 영세 또는 미신고 종돈장 돼지도 판매용이
- (4)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등 가축방역에 관한 행정 수요가 급증 하는데도 지자체 방역조직과 인력 증원은 미흡
- (5) 후보 모돈의 분양시 경영주 부담의 전염병 검사의무규정을 강화할 경우 분양 가격 상승, 입식 후 질병 발생시 책임한계 문제도 우려됨

## 나) 관리강화 대책

- (1) 종돈장 관리체제 강화
  - (가) '02.12.26 개정된 축산법('03.12.27시행)의 종돈업 등록제 규정에 의한 관리강화 추진(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나) 현재 신고기준 이하인 종돈 50두미만 소규모와 위탁사육농장도 종돈업으로 등록토록 규정
    - 출입통제시스템, 소독시설·장비, 격리사 설치 등 방역기준을 강화
    - 종돈장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등록기준을 종돈 품종당 100두(AI 센터는 50두) 이상으로 상향조정 추진(축산법 개정)
  - (다) 종돈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신설하여 종돈검정 강화 및 판매시 혈통증명서 발급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구매자에게 종축등록기관이 발급한 종돈의 농장명·개체 번호·혈통 등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도록 제도화
    -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후보돈의 혈통증명서발급요령을 제정, 시행
  - (라) 종돈장, AI센터의 오염차단을 위한 종돈장내 AI센터, AI센터내 일반농장을 분리하고 AI센터내의 생산·판매시설 기능도 분리 추진
  - (마) 종돈업 등록시 종돈장별 고유번호를 부여
    - 종돈의 개체별 표시제도는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 (2) 축산법 시행 및 하위법령 제정시까지 종돈업 일제정비 및 계도
  - (가) 시·군별 신고대상 정비, 미신고 종돈장 신고 유도 조치
    - 정비주관 : 관할 시·도, 실태확인 : 축산기술연구소
    - ※ 일제정비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시설 등도 점검

- (나) 종돈 관련단체의 신고 **종돈장의 검정결과 공포 등 홍보강화**
- 양돈협회 : 능력검정소 운영활성화(관할시험소 전염병 검사지원)
  - 종축개량협회 : 농장 검정시 혈통(능력)의 전염병 상황도 체크
- (3) 종돈업·정액처리업의 **등록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과 **방역시설 확충** 등을 위한 **시설비 용자지원**(‘04년 예산에 반영계획)
- (가) 단계별 분산사육 시설의 정비, 기존시설내 유사 사육시설 분리, 인접농장과의 차단 등으로 이전 또는 시설 확충이 필요한 농장 대상
- (나) 시설비, 방역장비 구입비 등의 **장기저리 융자**
- (4) 종돈장·AI센터 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 강화
- (가) 기본방향
- 일반농장과 검사·소독 등 **방역관리 차별화**
  - 종돈장 경영주 검사 의무 및 **비용의 단계적 부담 추진**
- (나) 검사대상 : 시·군에 신고(등록)된 종돈장, AI센터
- 위탁사육농장, 분양(계열)농장도 종돈장에 포함, 검사
  - ※ 축산기술연구소, 농협, 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축장 소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부루세라, 우결핵, 구제역” 등 주기적 검사 실시
- (다) 검사주기
- 종모돈·종용돈 등 번식돈군 : 반기 1회 이상 정기검사(현행)
  - 분양 후보 모돈 : 3개월 간격 정기검사(신규)
    - 위축돈, 이상 폐사돈 등 발생시 수시 의뢰검사
  - 기타 도축장 출하 비육돈 등 : 일반 혈청검사사업에 포함하여 실시
- (라) 검사대상 질병 :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 기타 질병은 **분양농장의 요구에 따라 종돈장 부담으로 검사**
  - ※ 돼지 부루세라병은 '03년도 일제조사, 감염실태를 파악한 후 검사 의무대상 포함여부를 결정
- (마) 농장·단위 검사물량
- 구제역 : 20~60두
  - 돼지콜레라(예방접종지역 기준)
    - 번식돈군 : 10두 이상
    - 육성돈군(분양·출하) : 분양직전 돼지 우선, 사육두수의 20% 이상
  - 돼지오제스키병(비접종지역 기준)
    - 번식돈군 : 25~30두(예방접종시 전두수 검사)

- 육성돈군(분양·출하) : 분양 직전 돼지 우선, 사육두수의 20% 이상
- ※ 예방접종 여부·사육규모·전염병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검사 기준두수를 검사 지침에 반영하고 “신규등록대상 종돈장은 기준두수 이상”을 적용

### 전두수 검사를 하지 않는 사유

- ◇ 돼지콜레라 전지역 예방접종, 오제스키병 감염항체 형성 지연, 구제역 임상관찰 가능 등 역학적 특성을 감안, 전두수 검사 불요
  - 국제기준 등을 고려한 통계학적 확률에 따라 표본검사 대체
- ◇ 검사비용 및 기간 소요, 검사 스트레스 과중시 사육장애 발생

#### (바) 검사기관

- 정부 : 시·도 소속 가축위생시험소 등 방역기관(44개소)
  - 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항원검사 및 판정 의심시 확인검사 실시
- 민간 : 수의과대학 등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17개소)

#### (사) 검사방법 및 절차

- 종돈장 관계자(관리수의사 등)가 검사기관에 혈청, 정액 등 검사 시료 및 종돈장 방역상황이 포함된 검사신청서 제출
  - 매년 1월중 관할 시험소 주관 “종돈장 등 검사계획” 협의·작성
  - 시험소(방역관) 또는 방역본부(방역요원)는 반기 1회 이상 농장방문, 채혈과정 입회 및 임상관찰을 실시
- 검사기관(정부/민간) 검사성적서 교부
  - 검사결과 전염병 확진시 해당농장 통보 및 관할 행정기관 신고철저
  - 성적서에는 전염병별 검사성적, 검사일시, 검사유효기간 등 명시
- 종돈장은 분양대상 농장에 혈통증명서 및 검사성적서 송부

#### (아) 검사비용 : 정부부담(“혈청검사수수료규칙”의 검사수수료 면제조치)

- '04년 하반기부터 유상검사 체제로 전환(사전 예고)
- 유상검사이시 분양가격 상승으로 양돈농가가 비용을 부담케 되고 소 종축장의 정부(무상)검사 체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 매년 방역사업계획에 의거 무상으로 실시해 왔던 혈청검사 비용은 종돈장 부담요인을 감안 '04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유상검사로 전환
  - ※ 유상검사이시 종돈장 비용부담 분석(600두 사육규모 기준)
    - 전두수 검사/분양돈 1두 : 50천원=27천원(검사비)+23천원(인건비)
    - 표본검사/분양돈 1두 : 15천원=3천원(검사비)+12천원(인건비)

- 마리당 비용에는 불합격·재검사 비용과 민간병성감정기관의 검사비용 제외
  - ※ 무상검사시 정부 부담(시료채취 재료비 및 채취 인건비 제외)
  - 전두수 : 77억원=[71천두(번식돈)+250천두(분양후보돈)]×24천원(검사비)
  - 표본검사 : 16억원=[분양돈 20%(50천두)]+[개소당 번식돈 64두×2회×133개소]×24천원(검사비)
- (5) 종축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보강
- (가)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사기능 확대로 검사인력 부족문제를 대체
- 진단기준 등 검사방법(메뉴얼)의 정비, 진단액 공유 등
    - 정부기관(가축위생시험소 등)과 민간병성감정기관(대학 등)의 검사방법, 사용 진단액의 공유 등 검사기준의 코드화 정착
  - 전염병 진단액류의 수급관리 강화 및 법정전염병 진단시 신고의무 이행조치로 전염병 발생사실 은폐행위 차단
    - 방역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구제역 진단액을 제외한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진단액(키트)류의 민간병성감정기관 판매 양성화 조치
    - 주요 진단액 품목허가사항 정비, 판매업체 및 사용기관(민간검사기관)의 사용실적보고 의무화, 농장 개별판매 금지조치 등 수급관리 강화
  - 민간병성감정기관 검사시설비 용자지원 및 진단액류 공급 추진
    - “혈청검사수수료규칙(농림부령)”에 준한 적정 검사비 징구 유도
- (나) 정부검사기관 등 방역조직 및 인력확충
- 가축위생시험소에 지원하는 방역보조원의 일용임금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실험실 검사인력 확충
    - ('03) 1,170백만원=176명×25천원/일×266일
    - ('04계획) 1,639백만원=176명×35천원/일×266일
  - “중양(로봇)질병검사센터” 설치·운영방안 검토 추진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정례적 검사물량을 (검역원)중양검사소에서 로봇(대당 2억원 상당)을 이용, 일괄검사로 전환, 검사인력 대체활용
- (다) 종돈장의 자율방역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 수의사 고용 또는 동물병원 개업수의사 계약 활용방안 권장
- 검사용 채혈, 임상관찰 기록 및 소독관리 등 자율방역 업무수행
  - 가축방역관 등의 농장방문 채혈·임상관찰 등 업무 협조
- (6) 관계법령 등 제도개선
- (가) '02.12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하위법령 개정('03.6까지)
- 시행규칙에서 농장·마을단위 질병관리등급제기준에 종돈업 기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구

## 체적 마련

## (나) 현행 고시 및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고시 제·개정('03.7)

- 종돈장위생관리요령 개정 : 검사질병, 검사두수, 검사비용 등
-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 개정 : 질병관리등급제 연계
- 종돈의 거래기록 규정 제정 : 예방접종·검사성적서 첨부 등
-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검역원 고시) : 민간병성감정기관 기능보완 등

## (다) 종축업 등록기준 상향조정 등 구조조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04년도)

## 다) 향후 추진계획

- (1) 관계규정 마련 이전까지 종돈장 분양 후보 모든 검사 및 예방접종 등 행정조치 및 점검 강화
- (2) 구제역·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 검사 및 돼지콜레라 100% 예방접종 실시 (제주도 제외)
  - 분양시 검사증명(성적)서 및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 휴대조치
  - 양돈농가에 전염병검사·예방접종증명서 의무규정 홍보
- (3) 종돈장위생관리요령(농림부 고시) 개정('03.5까지)
  - 전염병별·사육규모별 검사방법 등 세부지침 마련(검역원, '03.4까지)
- (4) 종돈장 질병관리등급제 조기 도입 추진
  -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안 기준마련('03.6까지)
  -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농림부고시) 개정('03.8까지)
    - 종돈장 질병관리등급 부여·관리 업무의 위탁단체 지정
    - 인증등급의 세분화(2등급→5등급) 및 배점기준을 질병외 소득·환경·위생·방역규정 이행실태로 구분
- (5) 개정법령에 근거한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검역원 고시) 제정('03.7)
  - 현행 농림부 훈령에 의거 지정된 민간기관 재정비
  - 검사방법 코드화, 진단액류 공유 등 규정마련
- (6) '04년도 종돈장·민간병성감정기관 시설비 지원방안 마련('03.4)
  - 사업수요조사 및 지원단가·기준 등 결정
- (7) “중양(로봇)질병검사센터” 설치·운영방안 검토(검역원, '03.5)
  - 사업 타당성, 외국사례 등 조사 및 예산반영 추진
- (8)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대책 홍보 실시
  - 농업전문지 보도
    - 양돈협회, 종축개량협회 등 축산단체 월간지 등 활용
  - 시·도 주관 관할 종돈장을 대상으로 강화대책 전달교육

## 7.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 고발경위

### <돼지콜레라 발생 및 경제적 손실분석>

- '03.3.18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서 발생한 이후 5.8일까지 총 6개도(25개시·군), 65개 농장에서 발생(상원축산 포함)
  - 경기도 김포 소재 상원축산 및 이곳에서 돼지를 분양 또는 재분양 받은 농가가 전체 65개 농장중 45개이고, 나머지 농장들도 대부분 발생농장에 인접한 농장임.
  - \* 발생 6개도 : 경기 13건, 경남 14, 경북 12, 전북 19, 충남 6, 전남1
  - 비발생 3개도 : 강원·충북·제주
  - 전북 익산 최초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원발농장인 상원축산(제1농장)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확인(3.22)
  - ⇒ 동 발생을 계기로 살처분정책에서 예방접종정책으로 전환
- 상원축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분석
  - 연간 3억 5천만불(4천억원) 대일 수출시장 잠식
    - '02.11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지역산 돼지고기 수입불가 방침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제주도에 한해서만 수출재개('04.4월)
  - '03.3~5월 발생으로 65농가 96천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 183억원, 예방약품 28억원 등 304억원의 방역비용 소요
    -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매년 31억원 소요(43백만두분)
- 돼지콜레라 발생에 의한 축산피해 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피해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4억원</li> <li>- 살처분 보상금 : 72</li> <li>- 소득약품·예방접종 등 : 12.6</li> <li>- 생활안정자금 : 0.9</li> <li>- 가축수매지원 : 38.5(42천두)</li> <li>- 입식자금·경영안정자금 등 : 9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4억원</li> <li>- 살처분 보상금 : 183</li> <li>- 예방접종 : 28</li> <li>- 생활안정자금 : 2</li> <li>- 가축수매지원 : 2</li> <li>- 경영안정자금 등 : 89</li> </ul>

##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조치

1) 위반자 : 농업회사법인 (주)상원축산(대표 : 한규진)

2) 위반내용

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후보모돈)를 전국에 분양하여 '03년 3~5월에 전국적 돼지콜레라 발생의 원인 제공

\* 가축전염병 신고의무 위반(1년이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체의 처분제한 위반(300만원 이하 벌금)

나) 고발자 : 김포시장

## 나. 주요 추진경위

1) 김포시청에서 김포경찰서에 고발조치('03.3.25)

○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04.1.30)

2)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3.8)

○ 상원축산 처분 관련 “사실과 이유”에 대한 의견 제출(6.29)

○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보(7.14)

3)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8.24), 항고기각(10.12)

4) 대검찰청에 재항고(11.4), 재항고 기각(12.2)

## 다. 헌법소원 및 구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제기 방안 검토

1) 농림부 자문변호사(김태욱)와 법률 상담('04.12.9)

○ 직접 법률사무소를 방문, 앞으로 대응방안 협의(김태욱 사무관의 1명)

○ 헌법소원 가능여부 및 민사상 구상청구 소송에 대한 승소 여부 검토

2) 상원축산에 대한 소송관련 관계자 협의회 개최('04.12.21)

○ 참석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주재) 외 2명, 수의과학검역원(질병방역부장, 역학조사과장), 경기도 주무계장, 김포시청 농산과장 외2명, 대한양돈협회 전무, 자문변호사(김태욱)

## ○ 주요 협의내용

- 헌법소원 및 구상청구에 대한 실익성 검토
  - 소송제기시 승소 가능성여부, 소 제기 관련 장·단점 분석 등
- 헌법소원 및 구상청구의 경우 대응방안
  - 소송 관련 자료보완, 소송 수행자 지정 등
  - 소 제기후 상원축산측에서 자율보상의사 표명시 취하여부 검토

**라. 관계자 협의결과 및 조치방안**

## 〈제기된 문제점〉

## 1) 최초 검찰의 불기소처리시 초기대응 미흡

- 경기도 및 김포시청에서 보고 지연으로 재정신청을 못하고, 결국은 대검찰청까지 항고절차를 받게됨.

\* 재정신청 :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독단적 횡포를 방지 하기위해 인정한 절차

## 2) 피고발인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및 정보공유 미흡

- 검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피고발인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소극적임.
- 검찰에 사실인증을 위한 검역원과 지자체간의 정보공유 미흡

## 〈 조치방안 〉

## 1) 헌법소원 제기방안 검토

- 배경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당성 제기(헌법소원 대상에 해당)
- 절차 :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기할 수 있음.  
심판수행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 ○ 검토의견

- 정부입장에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건에 대하여 헌법소원 제기가 다소 부담이 됨.
- 대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건이 헌법소원에서 번복되는 사례가 극히 적어, 승산이 별로 없음(자문변호사)

## 2) 구상금청구 소송 제기방안 검토

- 배경 : 형사소송건은 불기소처분 되었으며, 상원축산에서는 자기과실을 인정하지않고 있어 이에따라 민사상의 구상청구 제기
- 절차 : 소송 대리인 변호사 선임, 상원축산에 대한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기소 제기 지휘 요청 및 승인(해당 검찰청), 서울민사지방법원 민사합의부에 “소장” 제출



## ○ 검토의견

- 기소 제기 자체가 상원축산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자발적 보상 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
- 향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동일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송제기 필요
- 형사소송 건은 고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민사소송의 경우는 과실도 고의와 같이 인정
- 형사소송 건에서 무협의의 경우도 민사소송 건에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례가 많음. 충분히 승산이 있음(자문변호사)
- \* 관련 법조항 검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동법 제760조(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붙임 참조]

## 3) 구상금청구 소송시 소요비용

○ 재원 : 2005년도 축산발전기금

○ 예상소요비용 : 44,000천원

- 변호사 착수금 : 4,000천원
- 변호사 수입료(추정) : 30,000천원
- 법원 감정비용 : 10,000천원

\* 변호사 수입료의 경우 후불지급으로 회수금액의 10%를 지급토록 하고 있음.

**마. 향후 추진계획**

## 1) 소송 대리인(변호사)를 통하여 상원축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 상원축산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동산 등을 파악하여 장래 손해배상의 강제집행에 대한 대비

## 2) 서울고검에 상원축산에 대한 소제기 지휘요청

- 소장(안)을 작성하여 직접적인 피해액인 예산상 손실전액(304억원) 청구방안 검토

## 3) 서울고검에 소제기 승인시 서울지방법원에 정식 소제기

## 4)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시 초기대응 철저

- 증거자료 수집 및 지자체와의 정보공유 체계 구축

## ○ 제7장

# 종합평가 및 사후대책

# 여 백

## 1. 돼지콜레라 청정화 성공과 재발생으로 인한 예방접종 과정

### 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수립('96.7)

구 분	시 기	목 표	세부실시사항	성 과
1단계	'96.7~'98.6 (2년)	발생최소화	- 예방접종 확대 실시, 피해최소화, 감염돼지 살처분 - 발생농가에 한해 이동제한조치	- 발생상황 ('96)39건 4,498두 → ('98) 6건 985두
2단계	'98.7~'00.9 (2년)	청정화 준비	- 예방접종 100% 실시 - 발생농장 살처분 범위 · '99.3 이전까지는 “감염돼지+감염의심축”에 대해 살처분하고 청정화 최종단계인 그 이후부터 “전두수 살처분” 조치 - 혈청검사 확대 및 예방접종 미 실시 농가 중점관리 -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이동제한	- 면역형성률 ('96)76.1% → ('00년)96.1% * 예방접종 100% 증명
3단계	'00.7~'01 (1년)	근절 확인	- 예방접종 중지 후 청정화	- '01.12.1 청정화 선언

### 나. 돼지콜레라 청정화 성공('01. 12. 1)

- 일본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시점('01.10)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국가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98)함에 따라
- 일본의 예방접종 중단시점에 맞춰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99년부터 100% 예방접종 실시 농가 집중 관리
- '01.12.1일 예방접종 전면 중단 및 청정화 선언

#### <예방접종 중단 사유> 돼지콜레라 근절 확신

- ◇ 첫째 : 면역 항체가가 97%이상 유지되어 예방접종 100% 실시한 것이 입증
- ◇ 둘째 : 2년이상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어 OIE 청정국 인증기준에 부합

연도별 발생상황	'96	'97	'98	'99	'00~'01 (청정화시기)	'02	'03
두수(건수)	4,498두(39건)	1,912(20)	985(6)	1,683(5)	0(0)	406(13)	5,119(65)

※ 살처분 두수 : ('02) 39,056두, ('03) 95,822두

- ◇ 셋째 :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01.6~10월)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 우리나라에는 병원성 바이러스가 없다는 것을 입증
- ◇ 넷째 : 지역적 예방중단 결과 돼지콜레라 발생사실이 없음
  - 제주(중단 '98.2.1, 청정화 '99.12.18), 울릉(중단 '99.12.10, 청정화 '01.2.1), 강원(중단 '01.1.1, 청정화 '01.7.1)
- ◇ 다섯째 : 양돈협회에서 예방접종 전면 중단 건의('01.11.2)

## 다. 예방접종 정책 변화

- '02. 4. 16 : 강원 철원 발생(2건)시 살처분 정책으로 조기종식
  - 방역추진 상황(총10농가 8,815두 살처분)
    - 1차 발생 신흥농장의 잔여돼지(246두)를 전부 살처분·매몰(4.18~19)
      - 300m이내 인근 4농가 4,040두도 모두 살처분·매몰 완료(5.3~4)
    - 추가발생된 임송농장 잔여돼지(2,115두) 전부 살처분·매몰(5.1~2)
      - 300m이내 인근 4농가 2,414두도 모두 살처분·매몰 완료(5.2~3)
  - 이동통제 철저 및 지속적인 방역활동 추진
    - 군경·공무원·축협 합동으로 이동통제 철저
      - 위험지역(반경 3km이내)은 6.11일(40일간)까지 경계지역(반경 10km이내)은 5.17일(15일간)까지 생축 이동통제
    - 위험지역은 6.1(30일간), 경계지역은 5.9(7일간) 이후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도축장 출하 허용
- '02.10~12 : 강화·김포 및 이천 발생(11건)시 살처분과 병행하여 발생지 및 인접지역에 국한한 예방접종 실시
  - 지난해 10.7일 강화에서 발생한 이후 12.21일까지 강화(5건), 인천서구(1건), 김포(4건), 이천(1건) 등 총 11건 발생
  - ※ 철원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Type II, 중국 동북부, 몽고지역에서 발생)이며, 우리나라에 있었던 바이러스(Type III)와는 달라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임

- **살처분** : 24농가 30,241두(인근 13농가 17,466두 포함)
    - 발생농장 반경 3km내 위험지역은 40일간, 10km내 경계지역은 15일간 돼지 이동제한 및 출입차량 소독 실시
  - **긴급예방접종(2회)** : 1,286농가 1,041천두('02.12.25~'03.1.22)
    - 12.21일 밀집사육지역인 이천 발생에 따라 긴급예방접종으로 기존의 살처분정책을 보완
  - ※ **예방접종지역** : 인천광역시 전체 및 경기도 김포·이천·여주·안성·용인·광주·양평
  - ※ **종돈**은 예방접종 여부 축주자율, 모돈은 이동제한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이외의 경우 **접종 제외**
  - **이동제한 해제** : 강화(1.7일), 김포(1.26일)에 이어 이천(2.3)일도 최종해제
- '03.3.18~5.8 : 총 6개도(25개 시·군), 65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조기차단을 위해 **예방접종 실시를 결정(3.21)**
- ※ 경기 12건, 충남 6, 전북 13, 전남 1, 경북 12, 경남 11 / 미발생(강원·충북·제주)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사육돼지(모돈·종돈 포함) 예방접종**
    - 1차 : 10,299천두(3.19~4.17), 2차 : 11,293천두(4.12~5.10)
  - ※ 정부 예방약 지원, 축주 자가접종 실시 원칙, 축주 거동불편 등 불가피할 경우 시·군에서 예방접종 지원

## 2. 종합평가

### 가. 잘된점

####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추진 성과

- 돼지콜레라 청정화
  - 돼지콜레라 근절 분위기 조성으로 항체 양성율의 증가
    - 예방접종 면역형성율 : ('98) 76.1% → ('99) 91.4 → ('00) 96.1 → ('01) 96.4
  - '99. 8월 경기도 용인지역의 돼지콜레라 마지막 발생이후 27개월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음
  - 야생멧돼지에 대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항원검사로 음성 확인
- 체계적 방역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토대 마련
  - 양축농가·생산자단체·학계·정부·지자체 공무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박멸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제정운영 등 제도화
  -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이 방역모델로써 다른 가축전염병 근절사업 추진 기틀마련 계기
- 민간방역기구 발족의 계기 마련
  - 중앙/시·도 및 시·군 등 지역별 공동방역사업단 구성 및 운용
    - 예방접종, 농장소독, 이동제한 등 지역단위 공동 자율방역 활동
  -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설립 이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특수법인으로 법제화되어 민간 방역기구 발족 계기가 됨

'96년부터 단계별(3단계)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차원의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시행하였다. 그 일환으로 전국 162개 시·군을 180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역담당관을 지정하여 양돈농가에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임상검사 및 특별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붐을 조성하여 우리나라 방역역사상 전염병 근절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99년 발생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대내외적으로 근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01. 6월부터 10월사이 전국 299개 농장(4,788두) 대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대비 발생위험도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청정농장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지역별 청정화 단계를 걸쳐 '01년 12. 1일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청정화를 선포하게 이르렀다.

## 나. 잘못된 점

- '96년 6월부터 시작한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은 '01. 12. 1일 전국적 예방접종 중지와 함께 청정화를 달성하였으나, 청정화를 지키기 위한 국경검역, 농장단위의 방역, 이동가축에 대한 방역관리 등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 및 운용이 미흡하였음

'01. 12월 돼지콜레라 청정화 달성 이후 청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02년 4월 강원 철원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Genotype이 Group 2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분리(Group 3)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로 밝혀져 국내 재발이 아닌 동북아 등지에서 유입·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의 한계, 농장단위의 소독 등 차단방역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02년 10월부터 12월사이 인천 서구·강화, 경기 김포·이천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다시 발생하였으며, 이는 강원 철원지역 발생과는 별개로 해외에서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파원인으로는 오염된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사람·차량·물품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조사되어 소독 등 차단방역을 여전히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03년도의 전국적 발생원인은 종돈장에서 감염된 돼지의 분양으로 전파된 것으로 밝혀져 종돈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하고, 이동가축에 대한 방역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돼지콜레라 청정화 이후 전반적으로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이 부족하여 소독 등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체계적인 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문제점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 축산업이 점차 규모화되고 대형화됨으로써 돼지를 과밀하게 사육하는 등 사육여건이 열악하여 질병이 다발하였으며, 양돈농가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 농가별 방역실태가 제대로 파악 되지 못했다. 아울러 축산업등록제 도입이 늦어져 위생적인 사양관리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축주의 방역의식이 갖추어지지 않아 위축돈이 발생하거나 많은 두수가 폐사되어도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다. 가축 판매 등 거래시에도 기록을 하지 않았으며, 폐사가축을 개 사료로 공급하는 등 방역관리실태가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종돈장에서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돼지를 분양함으로써 인해 돼지콜레



라가 전국적으로 전파·확산된 사례가 발생하여 이동가축에 대한 방역관리 체계가 부실하였던 점이 지적되었다. 병성감정 체계가 미흡하여 양돈농가에서 가축방역기관이 아닌 수의과대학이나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실정이었으나 이들 병성감정기관의 부정확한 진단 등으로 방역조치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농장·도축장간의 피드백 체계가 없어 해체검사한 내용이 농장으로 피드백되지 않아 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에 활용되지 못한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남은 음식물을 열처리하지 않고 급여하는 농가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요구되었다.

## 4. 향후 돼지콜레라 근절추진

### 가. 돼지콜레라 근절 추진계획

#### 기본추진전략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강화로 근절 조성
  - 발생 최소화를 위한 농장단위에서의 예방접종 철저
  -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을 유지하여 근절기반 조성
- 지역별(시·군) 청정화 달성 및 확대로 국가 청정화 이룩

### 나. 돼지콜레라 근절기반 방역시스템 구축

#### 1) 위생적인 사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 축산업등록제를 정착시켜 위생적인 사양관리 시스템 구축
  - 과밀사육되지 않도록 적정 사육두수 유지 및 친환경적 사육여건 마련
- 축주, 민간방역기구등 방역주체별 역할 제고로 현장 방역시스템 강화
- 농가별 방역실태 파악으로 위협요인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지도

#### 2) 농장단위 방역 수준 제고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 양돈농가 스스로 소독 등 차단방역 생활화
- 축주의 자율방역 의식 함양을 위한 방역교육·홍보 강화

#### 3) 이동가축 방역관리 체계 구축

- 이동가축 방역관리의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확인시스템 운영 활성화
  - 지역별(시·도 또는 시·군 단위) 청정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이동가축 신고의무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이동가축 방역관리 확인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활성화 유도
- 가축증개상인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축산업등록제에 포함)

#### 4) 병성감정 체계 개선 및 도축장등과 연계한 정보공유 활성화

- 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가축방역기관의 지도·감독 등 관리체계 강화
  - 병성감정실시지정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강화
- 도축장 해체검사 결과를 농장에 통보하여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에 활용

#### 5) 사료 등 오염가능성 물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면역제제 및 혈장단백·혈분 등 사료첨가제의 현장사용 실태 파악 및 오염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방안 마련

#### 6) 전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가축방역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동가축 관리 등 전산화 필요
-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지속적 개선·보완

### 다. 역학조사위원회 방역조치 권고사항

#### 배 경

- ◇ '03년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라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대책(4.17)”, “종돈장방역관리요령(9.5)” 및 “돼지콜레라 방역강화 세부대책(9.9)” 등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내용을 역학조사위원회(돼지콜레라 분과위원회)에서 방역 권고사항으로 건의



#### 《 역학조사위원회(돼지콜레라 분과위원회) 방역 권고사항 》

- 돼지콜레라 유사질병에 대한 조기 신고(홍보) 방안 모색
- 종돈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돼지의 사후관리 대책 일부 보완
- 민간 및 생산자단체 주도적인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 양돈장의 각종 기록보존 및 돼지유통에 대한 제도정착 및 관리강화

## □ 돼지콜레라 유사질병에 대한 조기 신고(홍보) 방안 모색

### < 문제점 >

- 돼지콜레라와 유사한 증상의 질병이 있는 양돈장은 돼지콜레라 발생시에도 이를 기존에 있는 유사질병으로 판단 (신고 지연 등 질병 확산요인으로 작용)

### < 권고사항 >

- 돼지콜레라 유사질병(살모넬라, PMWS 등)에 대한 감별 등 질병 홍보강화 필요
- 돼지콜레라 유사질병 의심 시 병성감정 기관 등에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 병성감정지정기관(대학, 민간업체 포함)에 돼지콜레라 진단액 등 배부 검토

## □ 종돈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 문제점 >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하위규정에 종돈장(종축업)의 정의 및 범위가 명확 하지 않아 실제 종돈을 생산하는 종돈장에서 일반 양돈장(위탁사육농장) 으로 사육되는 등 종돈 방역위생관리에 문제점 노출
- 종돈장에서 방역상 위험을 이유로 방역기관 직원 등의 출입을 막고 있어 방역관들의 직접적인 채혈 및 예찰활동 불가

### < 권고사항 >

- 종돈장 돼지를 위탁 사육하는 양돈장의 사육돼지까지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로 간주(종돈장방역관리요령; 농림부고시, 9.5)함에 따라 그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 필요
- "종돈장방역관리요령"에 의거 종돈장의 방역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철저 이행 및 방역실태 감독 강화 필요

##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돼지의 사후관리 대책 일부 보완

### < 문제점 >

- 예방접종 정책으로 전환된 만큼 예방접종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가 가장 중요

## 〈 권고사항 〉

-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돼지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예방접종 확인이 가장 중요
  - 돼지 입식 시 예방접종 여부 철저 확인 및 특별관리지역 등 혈청검사 강화
  - 항체가 높은(고역가 항체) 돼지의 적극 도태 유도 등
- ※ 필요시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에 고역가 항체 검사요령 등을 보완 검토

## □ 민간 및 생산자단체 주도적인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강화

## 〈 문제점 〉

-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그 피해가 발생농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근 양돈장은 물론 양돈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양돈장의 개별적인 방역활동을 국가방역기관이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역부족임

## 〈 권고사항 〉

- 질병의 방역활동은 개별 양돈장의 자발적인 방역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축산농가의 재산과 생존권은 본인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는 시점임
- 소독, 신고, 홍보 등 방역활동에 특수 법인화된 방역지원본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며, 생산자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바람직할 것임

## □ 양돈장의 각종 기록보존 및 돼지 유통에 대한 제도정착 및 관리강화

## 〈 문제점 〉

- 양돈장의 방역·사육일지 미흡, 돼지 유통(입식·출하 등) 등과 관련된 차량, 중개인 등이 역학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출

## 〈 권고사항 〉

- “돼지콜레라 방역강화대책(’03.9.9)”등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강화 필요
  - 양돈장의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 기재, 돼지 입식·출하 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철저 등
- 가축질병 전파에 가장 큰 요소인 양돈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 강화
  - 가축운송차량, 사료차량, 약품차량 등 양돈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요령 제정
- 가축증개상에 대한 관리규정 검토(관계규정 마련 전까지 생산자 단체 중심의 홍보·지도 강화 필요)

## 5. 맺음말

### “돼지콜레라 근절 없이 우리 양돈 미래 없다”

우리나라 양돈업의 고질병인 돼지콜레라를 뿌리 뽑기 위하여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정부와 축산업계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근절대책을 수행하였다. 전국적으로 철저한 예방접종과 위생대책을 강화한 결과 1999년 8월 경기도 용인시 한 마을에서 발생된 이후 2년 이상 이 병이 발생되지 않아 위험도 평가사업과 양돈업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2001년 12월부터 어렵게 예방접종을 중단하였다. 그 결과 우리 양돈관련 업계의 숙원사업인 돼지콜레라를 근절할 수 있었으며, 2001년 12월에 청정화를 선포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청정화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출양돈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금자탑을 구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축방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되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느꼈던 기쁨과 보람은 아마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 2002년 4월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신흥열 농가에서 새로운 유전형의 돼지콜레라바이러스가 동북아지역에서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경험한 긴급방역지침에 따라 방역당국과 양돈업계의 신속 과감한 박멸대책을 실시한 결과 단기간에 이 병을 종식할 수 있었다. 이때 강원도 방역당국과 해당 지역 양돈인과 군·경 및 역학조사요원들이 수행한 빛나는 방역활동들은 타 지역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약 6개월 지난 10월부터 강화군에서 이 병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10월에는 김포시 여러 양돈농가로 전파되었으며 급기야는 한 종돈장의 종돈분양과정을 통하여 전국으로 전파되었다. 결과적으로 양돈업계와 방역당국의 살처분, 도태, 이동제한 및 소독 등 다각적이며 강도 높은 방역대책도 실효가 없자 전국적 백신접종실시로 후퇴하게 되었다. “십년 방역 나무아미타불” 양돈업계와 방역당국의 허탈감은 이루 말로서 표현하기 어렵게 되었다.

아직도 많은 양돈인들은 이 병의 재발생을 우려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 예방접종의 효과를 너무 과신하면 곤란하다. 왜냐하면 100% 접종이란 허구이고 접종된 개체라도 100% 면역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혹시 정밀검사서 누락된 잠복감염 농가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조기에 색출 도태해야 하며, 또한 이들 농장으로부터 돼지, 차량 및 사람 등에 의하여 타 농장으로 병원체가 전파되지 않도록 진정한 차단방역 조치와 소독을 생활화 하는 것이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첩경이며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돼지콜레라 청정국으로 재 인증 받으려면 예방접종된 돼지를 모두 도태

하고 이 병을 종식시킨 후 다시 30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만약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발생농장의 전 두수를 살처분하는 경우 이 병을 종식시킨 후 30일이 경과되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병이 일부 농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의 증거가 불분명할 시 예방접종을 계속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과 방역인력이 소요되며, 과도한 수매도축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근절소요기간도 훨씬 길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기간동안 수출도 포기해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혹자는 개방화 시대에 언젠가 이 병이 다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아예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수출은 포기하고 내수위주의 양돈산업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수출을 목표로 일부 지역에서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청정화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수년 후에 닥쳐 올 개방압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청정국 지위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우리 양돈산업이 질병이나 위생 면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개방 압력을 극복할 명분을 잃게 되며 또한 국내 소비자의 신뢰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내수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 상황에서 예방접종만 계속 고집할 때가 아니라 앞서 기술한 종합평가와 사후대책 및 역학조사위원회의 방역조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양돈업계는 백년대계를 스스로 지켜나갈 진정한 돼지콜레라 방역전략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일치 단합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돼지콜레라 청정화대책을 과감히 밀고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이 돼지콜레라 근절과 청정화 유지를 위하여 방역당국과 양돈업계 모든 분야 종사자들은 자발적인 책임분담과 역할을 설정하고 각자 어떠한 선택과 집중을 도모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여 백

**제8장****기관별 돼지콜레라 방역추진사항**



여 백

## 1. 농촌진흥청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상황(1999~2004)

### 가. 1999년도

#### 1)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배경(농림부)

- 일본은 2001년 4월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 계획
  - 일본은 '93년 이후 발생이 없으며, '00년 10월부터 예방접종 중단 예정
- 돼지콜레라 근절 못하면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 불가능
  - ※ '98 돈육수출 : 88천톤, 313백만불
  - 비중 : 농림축산물 수출의 19.1%, 농축산물 수출의 46.7%
- 돼지고기 수출 중단시 과잉생산 초래로 양돈업계 심각한 타격 예상
-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강화 요구 ('99. 3. 8)
  -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10km 이상 (현규정 2km 이상) 격리되고 40일 이상 발생이 없었던 지역의 농장, 가공공장에서 출하 된 것
  - 백신접종한 돼지고기는 돛도리항으로 수입을 금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연도별 돼지콜레라 발생 현황

구분	'96	'97	'98	'99. 3
두 수 (농가수)	4,498 (39)	1,912 (20)	985 (6)	1,553 (4)

※ '99. 2~3월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4건 발생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추진상 문제점
  - 노동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방접종을 잦을 때 한번만 실시(표준접종 : 생후 40 일령, 60일령 2회 접종) : '98 백신접종 실적 64% 수준
  - 소규모농가 예방접종능력 결여 및 관심 소홀 : 100두미만 농가 14,732호(전체농가의 59%), 50두미만 농가 : 12,780호(전체농가의 52%)
  - 일선공무원 및 양돈농가 돼지콜레라 근절에 대한 의지 부족
  - 예방약 보관관리 및 접종 후 약병 안전폐기 소홀

## 2)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협의회 개최(농촌진흥청 주관)

### 가) 개최개요

○ 농림부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 이명래 차장 지시로 관련 기관·단체 역할분담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일 시 : '99. 4. 22 16:00~18:00

- 장 소 : 농촌진흥청 제2회의실

- 참석인원 : 17명(농림부, 농촌진흥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경기도농업기술원, 육류수출입협회)

- 협의내용 : 관련 기관 및 육류수출입협회 역할 분담

### 나) 돼지콜레라 근절 협의회 개최 결과 농촌진흥청의 역할

#### □ 중앙단위

○ 전국의 양돈단지 89개소 지정담당관제 운영(농림부)

- 분청 및 축산기술연구소의 인력을 활용

- 1인당 2~3개 양돈단지 담당, 돼지콜레라 방역지도

-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담당 : 개소 수는 검역원과 협의해서 결정

- 축산연 : 양돈계열화 업체(GGP 5개, GP 31개) 전담

○ 축산연에서 종돈장(전문종돈업, 농가검정 및 능력검정소 출품종돈장)에 대한 돼지콜레라 방역지도 및 점검(검역원)

- 축산기술연구소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실무협의를 결정

○ 돼지콜레라 근절 교육(농림부, 검역원, 육류수출입협회)

- 중앙단위 교육 : 5월상순(농림부, 검역원 협의 결정), 전 시군 축산담당

- 시군단위 교육 : 농림부에서 계획수립 시달, 5월중 전달교육

※ 교육 후 접종지도 및 접종확인 등 사후관리

○ 사료 속 콜레라박멸제 첨가방안 연구 (농림부)

○ 육류수출입협회의 20개 도축장 중심 교육에 필요한 리후렛 10,000매 추가지원 요청

- 최근 농림부(검역원, 축협)에서 제작한 리후렛으로 지원

#### □ 도단위

○ 박멸대책본부 지방조직 결성에 도농업기술원 적극 참여

○ 돼지콜레라 근절 자료 제공 및 홍보활동 중점 전개

#### □ 시군단위

○ 영세 양돈농가 방역지도(농림부)

- 박멸대책본부 시군지부 요원에 시군농업기술센터 적극참여
- 영세농가 방문,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 및 방역기술 지도
- 양돈장 혈청검사 지원(농림부)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과 연계, 농업기술센터 지도요원 혈청검사 시료채취 협조
  - 혈청검사 장비를 갖춘 가축질병진단실에 대하여는 진단키트를 배정하여 검사 실시방안 검토
  - 가축위생시험소 연계 수의사면허 소지 가축질병진단실 담당자의 검사협조
- 사료·동물약품 수송차량 소독실시 상황 점검 협조 (농림부)
  - 대상 지도사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교육 후 참여
-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동제한 감시, 인근농가 혈청검사 등 협조
- 박멸대책본부 지방조직 결성에 시군농업기술센터 적극 참여
  - “공동방역사업단 운영요령”을 개정 (’99. 5) 농업기술센터 지도요원 참여 규정 신설
- 수의과학검역원의 180개구역 전담조직 운영에 농업기술센터 요원 참여
  - 현재 구역별 3명(검역원 1, 축협 1, 양돈협회 1)씩 편성
  - 시군 농업기술센터 약간 명을 참여시켜 전담조직 강화
  - ※ 현재 26천 농가 중 22천 농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관련 홍보, 100~500두미만 농가 예방접종 독려 및 지원
  - 검역원에서 180개구역 조사현황을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고 농업기술 센터에서는 사육두수 누락농가, 농가별 변동상황 조사 통보
- 양돈농가 실태조사(농림부, 검역원, 육류수출입협회)
  - 수의과학검역원 조사(180개 구역)로 일원화
- 시군 농업기술센터 돼지콜레라 방역 중점지도기간 설정 지도
  - 지도기간 : 2~3주간, 5월~6월 중 시군별 자율 설정
  - 지도반 편성 : 읍면별 전담요원 편성(시군, 축협 협조)
  - 주요내용 : 돼지콜레라 예방, 미 접종 시 규제내용 제도 및 홍보
- 의심되는 농장 및 발생농장의 방역관리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
  -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방역대상 농장 현황과 방역조치사항 등 농업기술센터에 통보
  -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농장에 대한 방역확인 등 사후관리 협조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단지 책임방역 지도
  - 43개단지 242농가 (200천두 규모)
- 돼지콜레라 100% 예방접종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 농업기술지, 방송, 부락앰프방송 등 활용

### 3)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방역교육 실시

#### □ 개요

- 일 시 : '99. 5. 7 (금요일) 09:00~16:20
- 장 소 : 농촌진흥청 농촌개발연수관
- 참석인원 : 230명(각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지도사, 축산기술연구소 양돈단지 전담요원 등)

#### □ 교육내용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현황 및 실시요령(농림부 축산위생과장)
- 돼지콜레라박멸 비상대책본부 출범과 향후 추진방안(박멸비상대책본부집행위원장)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수행상 문제점과 대책(수의과학검역원 바이러스과과장)
- 수출규격돈 생산을 위한 농가실천사항(축산기술연구소 정일병 연구관)
- 돼지고기 수출중단이 한국 양돈산업에 미칠 경제적 손실(한국육류수출입협회 김강식 회장)

### 4) 축산기술연구소 돼지콜레라근절대책 지역담당제 운영계획('99.5.24)

#### 가) 추진배경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협의회시('99. 4. 22) 역할분담 추진
- 돼지관련 연구사업결과 농가 지도

#### 나) 운영계획

#### □ 축산기술연구소 과 및 지소 단위로 기술지원 지역담당제 구성 운영

- 지역담당 기술지원팀 구성 : 과·지소당 2~3팀(27팀 55명)
- 대상지역 및 농가 선정(제주도 제외 전국 농가) : 전문종돈장, 양돈단지, 축산연 정액공급 시험농장 등
- 지역담당제의 역할 : 담당농가에 대한 교육·홍보물 배부 및 예방접종지도, 방역 기술지도 및 농가 현황조사, 사양관리 기술지도 및 시험연구사업 결과 기술보급, 반기별 1회 이상 농가방문 지도
- 추진일정(상반기) : 5월 7일 농진청 주관 근절교육 참석(기술지원팀 전원), 5월 중순~8월 농가방문, 9월 중순 중간평가 보고

## □ 대상지역 및 농가수

구 분	지 역	농가수
전문종돈장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31(5GGP)
양돈단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247(27단지)
정액공급	경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34
계	8개 지역	312

## □ 기술지원 대상농가

구 분	도별	농장수	시 군	담당부서	농가수
전문 종돈장	경기	5	이천, 여주, 안성, 용인	육종번식과 외2	
	강원	4	철원, 횡성, 춘천, 홍천	대관령지소	
	충북	6	청원, 진천, 충주, 청원	시설환경과 외1	
	충남	4	아산, 보령, 홍성	대기축과 외1	
	전북	2	장수, 김제	남원지소	
	전남	2	나주, 화순	중소가축과 외1	
	경북	4	상주, 청도, 칠곡, 경산	능력검정과	
	경남	4	산청, 양산, 김해, 합천	사천지소	
양돈단지	경기	7	이천, 용인, 여주, 양주, 고양	축산물이용과 외2	55
	강원	2	평창	대관령지소	12
	충북	3	음성, 괴산, 옥천	시설환경과 외1	28
	충남	4	당진, 홍성, 아산	중축관리과 외1	47
	전북	2	장수, 김제	남원지소	21
	전남	4	나주, 화순, 함평	대전지소 외1	46
	경북	2	안동	능력검정과	14
	경남	3	김해, 고성, 산청	사천지소	24
정액공급	경기	2	화성	능력검정과	
정액공급	충북	6	보은, 괴산, 진천	능력검정과	
	충남	16	천안, 논산, 금산, 부여	능력검정과	
	전북	4	정읍	능력검정과	
	전남	1	나주	능력검정과	

## 5) 넜넜지 예방접종기구 개발 보급

## □ 개발 목적

- 넜넜지는 대부분 방목식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성질이 난폭하고 동작이 민첩하여 접근이 어려우므로 예방접종이 매우 곤란하여 100%예방접종 달성에 장애가 되고 있어 기구개발에 착수

## □ 추진 사항

## ○ 멧돼지 사육현장 및 야생동물 사육장 방문 현장조사

- 시 기 : 7. 13~14 (2일간)
- 방문장소 : 멧돼지 농가(충북 괴산), 에버랜드·서울대공원 동물원
- 출장인원 : 3명 (농촌진흥청 1, 축산기술연구소 2)
- 조사결과 : 블로우건을 이용한 예방접종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

## ○ 블로

- 1회용 주사기(5ml)를 공기주입식과 가스주입식으로 개조하여 제작
- 예방접종과 동시에 예방접종 돼지를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연구(주사기 부착용 장치)
- 블로우건은 PVC파이프, 알루미늄 파이프 등 저렴한 가격의 자재 이용

## □ 멧돼지 예방접종기구 농가실증 시연회 개최

- 일 시 : 7. 29(목) 11:00~18:00
- 장 소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용양2리 채수근농가
- 참석인원 : 17명(농촌진흥청 4, 검역원 2, 충북도원 2, 기술센터 4, 농가 5)
- 내 용
  - 블로우건을 이용한 예방접종 요령
  - 블로우건 및 주사기 제작과정 설명
  - 예방접종 및 접종돼지 마킹 시연(접종두수 10두)

## □ 멧돼지 예방접종방법 교육 실시

- 일 시 : '99. 10. 13 (수요일) 13:30~16:30
- 장 소 :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
- 참석대상 : 123명
  - 도청(도 대책본부) 및 농업기술원 관계관 16명
  - 시·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요원 101명
  - 중앙 관계관 6명
- 교육내용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 및 방역요령(수의과학검역원 안수환 과장)
  - 멧돼지 예방접종 요령(축산기술연구소 손동수 과장)
  - 멧돼지 예방접종방법 연시 및 실습(축산기술연구소 진로팀)
  - 시군별 예방접종 기구 배부(축협중앙회)

## 6) 돼지콜레라 방역 주요 추진실적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홍보강화 당부(4. 9)
  - 전국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농축산물 수출확대 연찬회시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홍보 및 현장지도 공문시달(4. 15)
  - 시군농업기술센터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등 분위기조성
- 돼지콜레라 방제대책 협의회(4. 15) : 축산연 사천지소, 17명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홍보 협조(4. 17)
- 중앙단위 돼지콜레라 방역 현지 기술지도 : 4. 19~30일, 9명
  - 시군단위 예방접종 추진상황 및 문제점 파악 대책지도
-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도원장 및 특·광역시 소장회의 개최 (5. 14)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추진 지시
  - 각 도별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회의 개최 : 5. 19~20
- 돼지콜레라 100% 예방접종을 위한 중점지도기간 설정 지도
  - 중점지도 실적

중점지도기간	지도반편성		교육		좌담회		농가방문	
	읍면수	인원수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5 ~ 7월	1,542	2,781	860	25,314	1,968	13,465	14,353	28,493

※ 157개 농업기술센터의 중점지도기간(5~7월) 중 누계실적임

- 홍보실적(157개시군 합계)

- 방송 351회, 신문 232회, 앰프방송 8,477회, 기술지 게재 90회, 반상회보 게재 113회, 캠페인 61회, 유인물 제작 130천부

- 소규모농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참여현황

- 예방접종반 423개반 중 축산전문지도사 참여 117명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단지 책임방역 현황 (중앙 및 지방자체 사업)

단지수	예방접종계획		예방접종실적		예방접종방법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자율방역	지도사지원
55	314	288,235	312	262,415	50	5

- 예방접종실적 : 91% (나머지 9%는 4월이전 기 접종)



## ○ 멧돼지·흑돼지 사육현황 및 접종실태

사 육 현 황						예방접종실적			
멧돼지			흑돼지			멧돼지		흑돼지	
시군수	호수	두수	시군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126	768	25,522	118	3,012	64,305	634	17,868	2,963	58,791

- 사육규모별 시군수 : 50두미만 23, 50~99두 28, 100~299두 46, 300~499두 19, 500두이상 9(안동 45호, 2,200두)
- 접종실적(7월 1차접종) : 멧돼지 70%, 흑돼지 91%
- 100두이상 1,000두미만 중규모농가 실태조사
  - 총 사육현황(157개시군) : 8,301농가, 3,542,677두
  - 예방접종 실태 : 자가접종 5,980호(72%), 자가+접종지원 1,770(21%), 완전위탁 551(7%)
- 중앙기술지원단 돼지콜레라 방역 현지지도
  - 기간 : '99. 5. 31~6. 9 (기간중 3일)
  - 지원단 편성 : 17명 (1인당 3개시군 담당)
  - 내용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상황 파악 및 문제점 대책지도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 현지지도
  - 기 간 : 8. 23~9.1 (기간중 3일간)
  - 대상시군 : 24개 시군
  - 지 도 반 : 8명 (1인당 3개시군 담당)
  - 주요내용 : 소규모농가 대장작성 관리(사육현황 및 접종실태 파악) 100두이상 1,000두미만 중규모농가 예방접종지도 예방접종 현지활동 등에 대한 문제점 대책지도
-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집행위원회 참석 : 6회(원예축산과장)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지도·홍보 관련 공문시달 : 10회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리후렛 제작배부 (3. 15, 30천매)
- 돼지콜레라 예방 관련 지도자료 리후렛 재제작 배부 : 30천매
  - 예방약 보관관리 요령 및 적기 예방접종 방법 등 추가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시범단지 책임방역 지도
  - 43개단지 242농가 (200천두 규모)
- 중앙단위 농민 및 지도사 교육시 돼지콜레라 근절 교육홍보
  - '99년도 20개 과정 600명(지도사 395, 농업인 205)
- 돼지콜레라 100% 예방접종을 위한 홍보강화

- 돼지콜레라 예방 홍보 : 방송 6회, 농업기술지 게재 (3회, 225천부)

시 군	사 육 현 황				예방접종실적			
	멧돼지		흑돼지		멧돼지		흑돼지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계	770	25,523	3,011	63,466	636	17,769	2,961	57,933

○ 멧돼지 예방접종기구 추가지원 요구대상

- 사육현황 : 검역원 조사 61호 1,530두, 농진청 조사 83호 2,213두

## 나. 2000년도

### 1)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계획

□ 소규모 및 정착농원 양돈농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추진

○ 사업량 : 소규모 12,861호 551천두, 정착농원 2,106호 1,029천두

○ 사업비 : 2,756백만원 (방역장비, 멧돼지 접종기구, 시술비 등)

□ 시군단위 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농업기술센터 간부급 참여

○ 근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접종반 편성 등 공동방역사업 추진

○ 소규모농가 예방접종·농장채혈 실시 지원 및 평가, 개선방안 강구 등

□ 소규모 양돈농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

○ 주간단위 소규모농가 사육실태 조사 및 개별관리카드 작성 관리

- 예방접종반, 비대본 방역요원과 협력하여 사육두수 변동상황 파악

- 예방접종반별 담당농가 지정 및 예방접종에 누락이 없도록 수시 보완

○ 축산전문지도사 예방접종반 접종요원 참여 시술지원

- 접종대상 : 예방접종 신청농가 및 시군 분석 예방접종 필요 농가

- 예방접종 시기는 시군별로 정하되 2월 1차 접종과 9월 마지막 접종은 대상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 멧돼지 사육농가 예방접종 지도 및 채혈업무 참여

○ 멧돼지 사육농가 사육실태 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 멧돼지 사육두수 변동 및 접종상황 기록 관리

○ 부.우견 방식에 의한 예방접종방법 지도 및 시술 지원

- 접종대상 : 모든·후보돈을 제외한 60일령 이상의 멧돼지(연1회 접종)

- 부로우견 활용이 미흡한 시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술지도

- 자가도축 농가 명단 파악 및 채혈작업 참여
  - 자가도축시 채혈 또는 멧돼지고기 10~20g 채취
    - ※ 도축장 출하 돼지는 도축장에서 채혈 검사 실시
- 축산기술연구소 멧돼지예방접종 기술지원단 현지활동 협조
  - 멧돼지 사육농가 안내 및 예방접종지도, 채혈작업 등
-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지도 및 홍보 강화
  - 시군별 주요시기 중점지도기간 설정 지도 및 홍보
  - 내용 :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내용, 접종신청 요령 및 적기 예방접종, 돼지 입식시 예방접종 유무 확인 및 신고, 떨어돼지 구입 지양, 예방접종 중단시 철저한 차단방역 등
  - 방법 : 순회교육, 좌담회, 농가방문지도, 홍보매체 활용, 캠페인 등
- 중앙지원 및 지방자체 양돈시범단지 책임방역 지도
  - 중앙지원 단지 43개소, 지방자체 시범단지 12개소
  - 자율방역 실태 점검 및 문제점 파악으로 접종지원 등 대책지도
- 100두이상 1,000두미만 중규모농가에 대한 예방접종대책 지도
  - 자가 접종능력이 없는 농가 파악 및 접종반 등과 연계 접종지원
- 시군단위 농장채혈 및 방역관리실태조사 사업 참여
  - 가축질병진단실 담당자 비대본 방역요원의 농장채혈작업 지원
  - 면역형성을 80%미만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지도
- 백신접종 점검을 위한 검역원 및 축산연 전담요원 현지활동 협조
  - 검역원 전담지역 및 축산연 전담 27개 단지 등 312개 농장

## 2)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실적

- 100두미만 소규모농가 예방접종지원사업 참여실적

사육현황		예방접종실태 (누계)				예방접종 참여인원 (지도사)
농가수	두 수	계 획		실 적		
		농가수	두 수	농가수	두 수	
12,558	497,808	11,804	539,412	13,823	507,503	174

## □ 멧돼지 사육농가 예방접종실태 및 채혈업무 참여

사육현황		예 방 접 종				채혈작업		참여 인원(명)
농가수	두 수	계 획		실 적		농가수	두 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 수			
973 (104)	30,920 (3,083)	993	37,174	922	26,364	950	4,532	237

※ ( )내는 자가도축 농가 현황임

## □ 중규모농가(100두이상 1,000두미만) 예방접종대책 지도

접종계획		접종실적		예방접종실태(호)			접종알선,지원	
농가수	두 수	농가수	두 수	자가접종	위탁접종	자가+지원	농가수	두 수
8,113	8,889,817	8,203	8,705,114	28,000	577	3,538	531	213,336

## □ 양돈 시범단지 자율방역 실적 (누계 계획 및 실적)

예방접종계획		예방접종실적		
농가수	두 수	농가수	두 수	접종비율
393	746,037	393	767,365	810.2

## □ 교육 홍보실적

교 육		순회지도		좌담회		홍 보 실 적(회,부)				
횟수	인원	횟수	인 원	횟수	인 원	방송	지면	앰프	캠페인	유인물
757	28,039	10,595	39,093	942	8,809	416	441	10,251	73	230,178

## 다. 2001년도

## 1)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지도계획 시달( '01.1.12)

## □ 지역담당제 편성 운영

- 전 직원 대상 읍면별 1명이상 담당자 지정(예찰의무요원 편성포함)
- 정기적인 예찰, 일상업무 출장시 담당지역 예찰 및 탐문조사
- 가축사육 시범농가를 질병예찰 거점농가로 지정, 일일 점검

□ 중점지도기간 설정 지도

- 중점지도기간 : '01. 2. 1~4. 30(3개월간), 지역별 자율설정
- 주요지도내용 : 주기적인 농장소독, 악성전염병 예찰, 유사증상 신고, 구제역 예방접종가축 표시 및 사후관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및 접종중지 후 철저한 차단방역 등 사후관리 지도

□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교육 : 구제역 재발방지 및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방역기술 등에 대한 시군별 주요시기 및 축산관련 각종 교육시 양축농가 교육
- 홍보 : 신문, 방송, 기술정보지, 마을애프, 가두방송 등 홍보매체 활용 및 농가 방문, 좌담회, 리후렛(전단) 작성 배포 등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 주요시기 기술지원단 편성 운영

- 기술지원단 편성
  - 시군단위 :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방역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 합동
  - 중앙 및 도원 : 연구, 지도기관 관계관
- 운영시기 : 지역실정 감안 주요시기 및 요청시 현지 기술지원
- 활동내용 : 각급 단위기관·양축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현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지도

□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마무리 지도

- 소규모 및 정착농원 양돈농가 예방접종 지도 및 시술지원
  - 소규모농가 사육현황(변동상황) 파악 및 접종실태 조사로 누락방지
  - 축산전문지도사 예방접종반 접종요원 참여 및 방역요원 시술지원
- 멧돼지 사육농가 예방접종 지도 및 채혈업무 참여
  - 사육두수 변동상황 파악, 예방접종 지원 및 접종상황 기록관리
  - 자가도축농가 파악 및 자가도축시 채혈·고기(10~20g)채취
-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지도 및 홍보 강화
  - 접종신청 및 적기 예방접종, 돼지 구입시 예방접종 확인, 딸이돼지 구입 지양, 예방접종 중단시 철저한 차단방역 등
- 중앙지원 및 지방자체 양돈시범단지 책임방역 지도
  - 자율방역실태 점검 및 문제점 파악으로 접종지원 대책지도
- 100두이상 1,000두미만 중규모농가에 대한 예방접종대책 지도
  - 자가접종 능력이 없는 농가 파악 및 접종반 등과 연계 접종지원

## 2)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지도실적

## □ 100두미만 소규모농가 예방접종지원

소규모농가예방접종				멧돼지예방접종				예방접종 시술지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참여 인원	지원실적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13,584	621,543	17,209	637,590	801	20,477	837	18,835	1,113	8,155	352,113

※ 제주, 울릉도 제외

## □ 양돈단지 자율방역 및 중규모농가 접종대책 지도

양돈단지 자율방역					중규모농가 예방접종대책 지원				
단지수	계 획		실 적		예방접종실태			접종알선, 지원	
	호수	두 수	호수	두 수	자가접종	위탁접종	자가+지원	호수	두 수
92	1,121	1,256,528	2,460	1,581,516	15,980	451	945	1,382	318,231

※ 제주, 울릉도 제외

## □ 돼지콜레라 교육홍보

교 육		홍 보 활 동					유인물제작	
횟수	인원	방송	신문	기술지	앰프	기타	총	부
1,737	53,271	128	107	32,480	154,250	11,757	195	172,364

## 라. 2002년도

## 1)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지도계획 시달('02.1.15)

## □ 지역담당제 편성운영

- 전 직원 대상 읍면별 1명이상 담당자 지정(예찰의무요원 편성포함)
- 축산관련 및 다두사육농가 시범농가 등 대상 질병예찰 거점농가 활용
- 전국일제소독의 날 또는 일상업무 출장시 담당지역 예찰 및 소독지도

## □ 양축농가 상시방역 지도

- 양축농가 자가예찰 및 유사증상 발견시 신속한 신고 홍보강화
- 각종 전염병의 농장내 유입방지를 위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강화
- 대규모농가의 인근 부업농가 방역지원 및 생산자·학습단체 자율방역단 구성 운영 적극

## 유도

## □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교육 : 돼지콜레라 재발방지 방역기술 등에 대한 시군별 주요시기 및 축산 관련 각종 교육 시 양축농가 교육
- 홍보 : 신문, 방송, 기술정보지, 마을앰프 등 홍보매체 활용 및 농가방문, 좌담회, 리후렛 작성 배포 등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

## □ 주요시기 기술지원단 편성운영

- 기술지원단 편성
  - 시군단위 : 시군청, 농업기술센터, 방역단체 등 관련기관 단체 합동
  - 중앙 및 도원 : 연구, 지도기관 관계관
- 운영시기 : 지역실정 감안 주요시기 및 요청시 현지 기술지원
  - 중앙 및 도단위 기술지원단 상호 교대 기술지원 실시(월 1회 기준)
- 활동내용 : 각급 단위기관·양축농가 방역실태 점검 및 현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기술 지원

## □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대책 지도과제

- 예방접종 중단 이후 재발생 방지대책 지도 및 홍보 강화
  -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철저한 차단방역 지도
- 유사시 초동방역을 위한 질병예찰 및 신속한 신고체계 강화
  - 구제역과 병행한 정기적인 예찰 및 사육농가 자가예찰 지도
- 농장 임상검사 및 항체·항원검사 적극적인 참여
  - 시군단위 점검반 참여 및 항체검사 시료채취 협조
  - 남은 음식물사료 급여농가에 대한 방역지도 및 점검실시
- 돼지콜레라 예방약 유통금지 지도 및 수거조치 협조
  - 시군 예방약 수거반 편성 참여 및 개별접종 금지 계도

## 2) 돼지콜레라 방역 주요 추진실적

## □ 철원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지도대책 시달('02.4.18)

## □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긴급예찰 실시

- 예찰시기 : 2002. 4. 19~21(3일간)
- 예찰대상 : 시군별 관내 전 양돈농가
  - 기 편성된 지역담당제에 의한 질병예찰 실시
  - 농가방문, 전화 등으로 축주와의 대화를 통한 예찰 실시

- 양돈농가 방문시 방역복 착용,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입
- 예찰결과 보고 : 2002. 4. 22일한(붙임서식 참조)
  - ※ 이상증상 발견 및 신고사항이 있을 때는 신고내역 별첨
-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지도 및 홍보 강화
  - 돼지콜레라 긴급행동지침(농림부) 및 악성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지도지침에 의한 방역대책 지도
    - 각종 차량·방문객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후 출입 등 차단방역
    - 주기적인 축사내외부 소독 및 야생조수 구제
    -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의 현장방역대책 추진 참여 및 협조(철원)
  - 축주의 자가사육 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찰 및 신고 홍보
    - 이상증상 발견시 시군 및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토록 계도
      - ※ 신속한 신고만이 초동방역이 가능하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
-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지도 및 홍보 강화
  - 각종 차량·방문객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 축주의 자가사육 가축에 대한 세심한 관찰 및 신고 홍보
- 돼지콜레라 예찰 및 지도실적(2002. 10. 11~15)

예찰반		사육현황		예찰실적				홍보활동(회)		
읍면	인원	호수	두수	질병예찰		이상증상		마을 방송	순회 지도	기타
				호수	두수	호수	두수			
1,377	3,181	19,936	8,756,323	15,799	7,306,318	3	2,512	7,265	6,226	1,289

- 돼지콜레라 일제예찰 및 방역대책 지도강화 시달(10. 10)
  - 관련기관 단체 합동 기동방역반 편성 운영 및 일제예찰 실시
- 돼지콜레라 추가발생에 따른 방역지도대책 시달(10. 14)
  - 소독, 농장차단방역, 자가예찰 및 의심증상 신속신고 등 지도강화
  - 발생지역산 돼지가 각 지역 관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홍보
  - 강화군 관내 전 양돈농가 대상 담당자 지정 및 일일예찰(농업기술센터)
  - 남은 음식물사료 급여지양 및 80℃ 이상 가열급여 지도
  - 방역규제 해제시까지 각종 집회·행사 개최를 자제토록 협조
- 강화군 전 양돈농가(234호) 대상 일일 전화예찰 실시(10.15~현재)
  - 예찰담당 : 강화·인천 농업기술센터 직원 57명(1인당 4~5농가 담당)
- 돼지콜레라 방역 특별근무 실시(10.15부터)



- 지방농촌지도기관 방역추진상황 파악 및 농림부 일일보고
- 누계실적 : 예찰 41,741농가, 마을방송 18,083회, 순회지도 19,822회
- 김포시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지도 철저 시달(10.22)
- 강화군 돼지콜레라 추가발생에 따른 방역지도 철저 시달(11.02)
- 자가예찰·신속신고, 농장 차단방역, 발생지역 돼지 반입금지 등
  - ※ 새해영농설계교육 교관반 교육시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교육
  - 10. 14일, 시도 교관요원 43명(강사 : 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3) 지방농촌지도기관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실적

□ 100두미만 소규모농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실적

소규모농가				멧돼지 예방접종				예방접종시술지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참여 인원	지원실적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11,710	524,253	11,562	408,589	730	19,025	695	15,902	809	4,520	207,138

□ 양돈단지 자율방역 및 중규모농가 접종대책 지도실적

양돈단지 자율방역				중규모농가 예방접종대책 지원					
단지수	계 획		실 적		예방접종실태			접종알선, 지원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자가접종	위탁접종	자가+지원	호수	두수
101	1,134	1,045,899	1,159	809,588	10,315	441	604	1,406	378,933

□ 교육 및 홍보실적

교 육			홍 보 활 동			유인물 제작		
횟수	인원	방송	신문	기술지	앰프	기타	종	부
794	30,081	69	84	9,381	25,319	7,951	158	123,514

# 돼지콜레라 재발생을 막읍시다. 2002

농촌진흥청

##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하여

- 돼지콜레라 예방백신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 예방접종중단 : 2001년 12월 1일부터 계속
- 질병위험이 있는 딸이돼지를 팔거나 사지 않습니다.



감염시 귀에 나타난 청색증

## ■ 돼지콜레라의 위험성

- 돼지에 발생 폐사율이 매우 높은 전염병임
- 영국 등 유럽과 아시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음

## ■ 예찰 및 신고요령

- 발열, 변비후 설사, 뒷다리마비, 피부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방역기관에 신고
- 돼지콜레라 발생신고시 포상금 50만원 지급
  - 신고전화 : 1588-4060



뒷다리마비로 절뚝거림

## ■ 당부사항

- 방역기관의 농장 임상검사 및 항체·항원검사시 적극적인 협조
- 남은 음식물사료는 철저히 살균후 급여



감염에 의한 집단폐사 유발

## 마. 2003년도

### 1) 구제역돼지콜레라 재발방지 방역대책 지도계획 시달(2. 5일)

- 읍면별 지역담당(1,366지역 3,599명)에 의한 방역지도 강화
  - 양축농가 자율방역 및 질병 발견시 신속한 신고 제도
  - 중앙 가축방역 기술지원단 현지기술지도(5월) : 24시군
- 각종 전염병의 농장내 유입방지를 위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
  - 전국 일제소독의 날 현지지도 및 취약농가 소독지원
  - 농장출입구 자동소독시설 시범보급 : ('02) 95개소 → ('03) 135

### 2)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실적

- 해외여행 지도공무원·농업인 출국전 사전 방역교육 : 546명
-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차단방역 리후렛 제작·배포(2.27일 10만부)
- 긴급방역추진 농촌진흥청 악성전염병방역대책상황실 운영(3.1~)
  -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및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지도대책 추진
- 농촌진흥청장 방역현장 방문격려(3.24~25) : 홍성, 원주, 용인
- 가축방역 중앙기술지원단 현지지도(1.27~3.5) : 4회 23명 62시군
- 지방 농촌진흥기관 방역 추진사항
  - 지역담당 및 기술지원반 편성 활동
    - 지역담당제 편성 : 지역(읍면수) 1,326개소 3,697명
    - 기술지원단 활동 : 444반 1,379명 - 소독 기술지도 : 41천회 2,388천호
    - 영세농가 지원 : 7,592회 321천호 - 방제기 수리 : 2,097회 5,579대
  - 주요전염병대상 예찰활동 : 돼지사육 2,240농가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교육 및 홍보
    - 방역교육 : 4,504회 145천명 - 유인물 배부 : 1,010종 894천부
    - 홍보 : 방송 902회, 신문 378, 기술지 58,342, 앰프 134,216, 기타 92,597

## 바. 2004년도

### 1) 돼지콜레라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지도계획 시달('04.2.27)

- 지역 담당제 편성에 의한 질병예찰 및 방역지도
- 양축농가 평시방역체제 정착 지도강화

- 양축농가의 자율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강화
- 질병유입 차단을 위한 해외여행자 및 외국인 고용인 방역관리
- 주요시기 기술지원단 편성운영 등

## 2)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지도실적

- 지역담당 편성 및 지도실적

지역담당편성		기술지원단		소독지도		취약농가소독지원	
지역수	인원	반	인원	횟수	농가수	횟수	농가수
1,419	3,415	376	1,184	16,947	333,086	5,425	130,331

- 돼지콜레라 예찰실적
  - 예찰 거점농가 지정 활용 : 2,017농가
  - 예찰 누계실적 : 23,672농가 10,606천두
- 방역대책 교육 및 홍보실적

교 육		홍 보 활 동					유인물제작	
횟수	인원	방송	신문	기술지	앰프	기타	종	부
1,363	28,423	858	85	1,942	18,894	6,212	103	113,845

##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활동

### 가.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비대본) 설립

1999년

#### 1)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위원회 추진을 위한 조찬 모임

- 취지 : 돼지콜레라 근절문제는 양돈업계의 사활이 걸린 최대현안으로 정부방역당국, 양돈농가, 생산자단체, 수의사, 사료업계, 동물약품업계, 전문언론 등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를 통일되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효율성을 기할 수 없으므로, 전 양돈업계가 참여하고 통일된 계획하에 돼지콜레라근절대책추진을 위한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한국농어민신문 초청으로 관련각계 대표를 모시고 처음으로 (가칭)돼지콜레라근절대책위원회 결성을 논의하기 조찬모임을 갖게 되었다.
- 일시 및 장소 : 1999년 3월 24일(수) 07시~09시 : 팔레스호텔 12층(카네이션룸)
- 안건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위원회 구성 필요성과 기본방향, 역할과 대책위원회 구성계획
- 참석자 : 이우재 의원, 박창정 농림부차관보, 김옥경 수의과학검역원장, 유광상 축협상무, 이관용 농협상무, 최상백 양돈협회장, 이병석 사료협회장, 서정범 동물약품협회장, 김영석 동물약품유통협회장, 김동근 육가공협회부회장, 진길부 도드람양돈축협장, 황민영 농어민신문사장, 윤봉중 축산신문사장, 김창섭 농림부사무관, 이복영 사료협회상무, 김덕수 이우재의원보좌관, 김준영 도드람축협수의사

#### <주요 토론내용>

- 대책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하여 전 참석자들이 적극적 동의 및 동참의지 표명
- 대책위원회 명칭은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대책본부로 보완
- 사단법인화에 동의하고 우선 조직하여 활동 착수하기로 함
- 대책위원회 중심축은 대한양돈협회와 양돈축협조합장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
  - 대책위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과 실무집행위원회 구성 필요
  - 대책위 결성되어 귀도에 오를때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이 실무적 역할 담당
  - 대책위는 2년간 한시 기구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자조금위원회로 연계되도록 하는게 바람직 함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으로 양돈사료가격을 1% 인상하여 인상분을 기금화하는 방안 제시

### 〈주요 결정협의 사항〉

-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 공동대책기구 구성
  - 공동대책기구의 중심축은 대한양돈협회와 양돈축협조합장협의회
  - 양돈농가 일제 실태조사, 시·군단위 돼지콜레라감시단 운영
  - 양돈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돼지콜레라박멸기금 조성
  - 공동대책기구는 사단법인화 하되 선 발족 후, 법인화 추진
  - 공동대책기구 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 특히 사료가격을 일정정도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기금화하는 기금조성 방안이 제시돼 다양한 토론이 전개됐으며,
- 실무집행위원회를 3월 27일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갖기로 함.
- 계속 검토·논의 과제
  - 명칭문제 및 기금모금방안문제와 시·군단위 돼지콜레라 감시단 운영 문제는 추가 논의키로 함

### 2)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 제차 실무위원회

- 일시 : 1999년 3월 27일(토) 10시~12시
- 장소 : 대한양돈협회 회의실(역삼동)
- 참석자 : 김창섭 농림부사무관, 이병권 검역원수의사, 윤충근 축협과장, 진길부 도드람축협양돈방역협의회장, 박봉균 교수, 노영한 양돈협회전무, 이원철 수의사회상무, 김동훈 동물약품협회부회장, 황민영 농어민신문사장, 정호풍 양돈협회지도부장, 김준영 도드람양돈축협수의사, 윤주이 농어민신문부국장(이상 14명)
- 안건 : 대책기구 명칭, 기금모금방안, 시군감시단운영, 대책기구창립 일정 및 절차, 실무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 비용 및 사무국 구성

### 〈회의결과〉

- 대책기구 명칭은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로 결정
- 양돈사료가격에 일정액을 부과하여 돼지콜레라박멸기금으로 조성하는 문제는 사료업체와 양돈농가 양측이 적극 동조키로 하고 세부 내용은 비상대책본부 실무위원회에서 진행키로 함.
- 시·군단위 돼지콜레라 감시단 운영은 비상대책본부에 의해 직접 관리·운영하는 체제로 하

고 실무위원회에서 진행기로 함.

- 비상대책본부 준비위원회의 제반 사무와 역할을 담당할 사무국장으로 전 농림부 사무관 최홍열씨를 임명기로 결정
- 1차실무위원회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실무위원회 임원진을 구성
  - 위원장 : 황민영 한국농어문신문 사장
  - 부위원장 :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  
이복영 한국사료협회 상무  
진길부 도드람축협양돈방역협의회장  
윤충근 축협중앙회 축산건설팅부 과장  
안수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바이러스 과장  
박봉균 서울대 수의대 교수
  - 부위원장 6인은 기금조성계획 준비팀, 사업계획준비팀, 정관작성팀, 기획·홍보팀의 팀장 역할수행
  - 실무위원장, 부위원장 6인, 사무국장 1명 등 8인은 1주일에 2회이상 정기회의(8인회의) 개최기로 함
  - 비상대책본부 실무위원회 현판식 및 첫 8인 회의를 3월 29일 오후 5시 양돈회관에서 갖기로 결정
  - 실무위원회 소요비용은 경기동남부방역협의회기금과 한국농어민신문 출연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조성시 정산기로 결정
  - 비상대책본부 발족은 늦어도 4월 20일 이전에 하기로 하고, 4월 2일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 준비위원회” 발기 총회를 갖기로 결정
  - 한국농어민신문에서 제작예정인 캠페인차원의 홍보스티커 발행 명의를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로 하기로 함

### 3)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 실무위원회 현판식

- 일시 : 1999년 3월 29일(월) 17시
- 장소 : 역삼동 소재 양돈회관 정문(현관앞)
- 행사내용 : 참석자 내빈소개, 실무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 현판식 행사  
제2차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 실무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 사업계획준비팀, 정관작성팀, 기금조성계획준비팀, 기획·조직팀별 담당 업무

- 실무위원회 구성 보고
  - 위원장 :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 부위원장 : 노영한, 이복영, 진길부, 윤충근, 안수환, 박봉균
  - 사무국장 : 최홍렬
- 준비위원회 발기 총회 계획(안) 보고
  - 일시 : 1999. 4. 2. 12시~14:00
  - 장소 :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 회의실(안성)
  - 안건 : 비상대책위원회 추진계획 확정(명칭, 일정, 구성안)  
비상대책위원회 사업 및 재정계획기본방향 수립,  
준비위원회 임원 선출(위원장, 실무위원장, 간사)
  - 참석대상 : 준비위원 20명, 경기지역 양돈관련기관·단체·업계 대표 11명
- 실무위원회 제1차 8인(실무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회의
  - 일시 : 1999년 3월 31일
  - 장소 : 양돈회관
  - 회의내용 : 사단법인 정관(안) 준비  
돼지콜레라박멸기본계획 수립  
준비위원회 발기 총회 진행 계획 확정

#### 4)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 준비 위원회 발기총회 개최

- 일시 : 1999년 4월 2일 12:00~14:00
- 장소 : 축협중앙회 축산종합개발원 회의실(경기 안성)
- 회의진행 : 개회사, 경과보고, 주요사업 방향 설명, 발기취지문 채택, 임원선출
  - 최상백 준비위원(양돈협회 회장)이 낭독한 발기취지문을 만장 일치로 채택
  - 전체 양돈업계가 주체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모든기관 단체의 대표를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로 추대키로 결정
  - 실무위원회는 기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그대로 추인함.
- 창립일정은 4월 15일 창립총회를 갖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장소와 진행은 실무위원회에 일임키로 함



###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

한국양돈산업은 그동안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21세기를 지향하는 수출산업으로서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 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양돈산업은 IMF라는 국가적 재난속에서도 3억달러가 넘는 돼지고기수출실적을 올리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양돈농가를 비롯하여 정부와 생산자단체, 유통·가공·수출업체,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기자재업체, 관련 학계와 전문가그룹 등 양돈산업을 둘러싼 모든 주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력이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돈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최대수출국인 일본이 2000년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임을 선언하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나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일본은 이러한 계획을 앞당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돼지콜레라 청정화선언을 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돼지콜레라를 완전히 박멸하지 않으면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막대한 외화수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돼지고기 가격의 하락으로 양돈산업이 급격히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또다시 사료와 동물약품업체, 돼지고기의 유통·가공·수출업체, 양돈기자재업체 등 양돈관련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기간에 돼지콜레라를 박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 양돈농가, 생산자단체, 수의사회,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전문언론 등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돈업계의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어 통일성과 효율성, 강력한 추진력을 갖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온 돼지콜레라 박멸대책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하며, 강력한 규제수단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돼지콜레라 박멸문제는 농림부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양돈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된 지침과 계획에 따라 각각의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책임성을 갖고 수행토록 하는 공동대책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공동대책기구는 전반적인 가축질병 방역체계의 개혁에서부터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추진, 분야별 역할분담 부여와 관리 등 명실상부한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로서의 기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양돈산업관련 각 분야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공동대책기구를 결성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를 결성할 것을 발의합니다. 우리는 이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를 통해 방역체계의 개선과 전 양돈업계의 역량 결집, 이를 통한 돼지콜레라 완전 박멸의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고 21세기 밝은 양돈산업의 미래를 맞이하기를 희구합니다. 우리 양돈산업인들은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1999년 4월 2일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준비위원회 공동대표 일동**

김강식 한국육류수출입협회장/ 김동근 한국육가공협회 부회장/ 김영석 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장/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박창정 농림부 차관보/ 서정범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염 호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장/ 유광상 축협중앙회 상무/ 윤봉중 축산신문 사장/ 윤철원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 윤희진 전국GGP협회장/ 이관용 농협중앙회 상무/ 이길재 한구양돈연구회장(국회의원)/ 이병석 한국사료협회장/ 이우재 대한수의사회장(국회의원)/ 정선부 한국축산학회장/ 조천규 양돈축협조합장협의회장/ 진길부 경기동남부양돈방역협의회장/ 최상백 대한양돈협회장/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황창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이상 가나다순>

실무위원 회의

- 제2차 8인 회의개최('99. 4. 7. 양돈회관)
- 농업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 및 돼지콜레라박멸 사업계획 세부 검토
- “시·군 돼지콜레라 방역단” 명칭 조정

확대 실무위원회 개최('99. 4. 10. 양돈회관)

- 4월 15일 창립총회 준비 점검, 사업·예산·조직 계획(안) 검토, 행정협조를 받기 위해 농림부 차관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방안 논의

실무위원회 개최('99. 4. 14. 08시, 반포동 평창장국밥 조찬모임)

- 15일 창립총회 최종점검 및 사업·예산·조직 계획과 임원 구성방안 검토
- 비상대책본부 차원의 돼지콜레라박멸프로그램을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계획에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

5)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창립총회

- 회의명 :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창립총회
- 의 장 : 임시의장 박근식, 상임본부장 최상백
- 일 시 : 1999년 4월 15일 16:00

- 장 소 : 국회 본관 귀빈식당
- 참석인원 : 48명(준비위원 22명, 실무위원 7명 포함)

### 〈총회 결과〉

- 제1호의 안 :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정관(안) 채택
  -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중 공동본부장 4인을 5인으로 하고 감사 2인을 3인으로 하고, 각 조중 본부장을 상임본부장 또는 공동본부장으로 변경
- 제2호의 안 : 임원선임(안) 의결
  - 공동본부장에 이우재, 이길재, 박순용, 이병석을 선임하고 최상백 양돈협회장을 상임본부장으로 선임함
  - 감사는 사료협회, 동물약품협회, 양돈축협 조합장 협의회에서 각 1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3명으로 함
  - 집행위원장은 황민영, 이사는 회원기관, 단체, 업체 대표 전체를 추대한다.
  - 집행위원장의 추천으로 집행위원 11명을 선임함.(노영한, 배상호, 윤충근, 김영석, 이복영, 안수환, 진길부, 이주호, 박봉균, 윤희진, 이수철)
- 제3호의 안 : 돼지콜레라 박멸사업 계획 및 1999년 예산(안) 승인
  - 돼지콜레라 박멸사업 단계별 계획과 '99년 예산안 5,400백만원 원안대로 승인함

###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 창립 선언문

한국양돈산업은 수출산업으로서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여, 지난해 IMF 관리체제라는 국가적 재난속에서도 3억달러가 넘는 돼지고기 수출실적을 올리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특히 한국양돈산업은 유관산업 전체를 포함할 경우, 총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농축산업에서는 물론 전체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양돈산업은 이제 질병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청정화단계로 나아감으로써 WTO체제하에서 국제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돈산업이 현재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최대수출국인 일본이 2000년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임을 선언하고,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나라 또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박멸하지 않으면 돼지콜레라 청정국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간에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를 비롯한 양돈관련 전 산업계가 다양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21세기형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은 양돈산업의 주체인 양돈농가가 앞장서고 일선현장 중심으로 양돈산업인 전체가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체계여야 합니다.

또한 돼지콜레라는 제1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농림부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수단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강구돼야만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은 우리 양돈산업계의 중차대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양돈업계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통일된 지침과 계획에 따라 각각의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는 공동대책기구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공동대책기구가 전반적인 가축질병 방역체계의 개혁에서부터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추진, 분야별 역할분담의 부여와 관리 등 명실상부하게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안에 양돈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집중시켜야 합니다.

이에 우리 양돈산업 관련 분야별 대표자 일동은 오늘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결성을 결의하고 역사적 창립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1999년 4월 15일

## 〈임원선출〉

## □ 고문

김성훈 농림부장관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 □ 공동본부장

최상백 대한양돈협회 회장(상임 본부장)

이우재 대한수의사회 회장, 국회의원

이길재 한국양돈연구회 회장, 국회의원

박순용 축협중앙회 회장

## □ 이사

회원 기관·단체·업계 대표 전체를 이사로 추대

## □ 집행위원회

위원장 :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위 원 : 노영한 대한양돈협의회 전무

배상호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장

윤충근 축협중앙회 축산건설팀부 과장

김영석 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 회장

이복영 한국사료협회 상무

안수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바이러스과장

진길부 경기동남부양돈방역협의회 회장

이주호 농림부 축산위생과장

박봉균 서울대 수의대 교수

윤희진 전국GGP협의회장

이수철 농진청 원예축산 과장

## □ 법인 설립 허가·등기

○ 농림부장관에 법인 설립허가신청 : '99. 4. 27

○ 사단법인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 설립허가 : '99. 5. 13

- 법인설립허가증 : 제189호(농림부장관)

○ 법인설립등기 : 등기번호 2488(등록번호 : 11402-0024883)

- 등기일자 : 1999. 5. 27

- 고유번호증 : 220-82-03548('99. 6. 3)
- 도별 돼지콜레라 박멸 결의대회 및 교육(캠페인) 실시
  - 경기(4. 9), 경남(4.13), 전북(4.16), 충남(4.22), 충북(4.23), 전남(4.27), 강원(4.29), 경북(4.30)
- 비대본 제1차 집행위원회 개최
  - 일시 : '99. 4. 19(월) 16:00~18:30
  - 장소 : 양돈회관 회의실(11명 참석)
  - 내용 : 사무국장 업무보고, 도별조직보강건, 집행위원회 운영방안
- 4. 21 : 대책본부 지방조직 설립추진과 관련 각 도에 지원 요청(농림부, 4. 22.)
- 4. 23 : 축산관련 협회에 대책본부 협찬금 지원요청
- 돼지콜레라 박멸사업계획 조정 협의회 개최
  - 일시 : '99. 7. 5(월)
  - 장소 : 양돈협회 회장실(실무위원 9명)
  - 협의결과 : '99년 사업계획 조정안은 타당함
    - 기금 모금이 우선 시급하고, 우선사업시행 필요함
    - 집행위원장은 모금분위기 변화를 위해 위원장 사의 표명
    - 집행위원회를 7월 9일 조기소집키로 함
- 제8차 집행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99. 7. 9. 07:30~10:20, 반포동 평창 장국밥 조찬모임
  - 참석자 : 집행위원장 등 11명
  - 보고내용
    - 사료협회 이사진(5명)과 간담회 : '99. 6. 15. 18:30
      - 사료협회 5명, 대책본부 3명 협의
    - 양돈협회 이사회·임시총회('99. 6. 16. 14:00)
      - 양돈업계 중심으로 대책본부 계획 추진을 위해 사료업계 등 유관업계 협찬금을 받아 집행하기로 의결
    - 양돈연구회 주관 양돈포럼 참석 주제 발표('99. 6. 30)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문제점과 대책(방역계장 발표)
      - 토론자 : 박봉균, 안수환, 정현규, 최홍렬
    - 사료협회장과 협의모임('99. 7. 1. 11:00)
      - 협의안건 : 돼지콜레라 박멸사업 계획안 협의

## □ 대책본부 임시 총회 개최

- 일시 : '99. 7. 16. 11:00
- 장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회의실
- 심의안건 : 대책본부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변경에 관한 건
- '99 사업계획 변경사유
  - 기금조성방안 문제로 지연되어 사업추진계획 변경
  - 정부의 소규모양돈농가·정착촌 예방접종지원계획 시행('99.6.1)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 ※ '99년 사업계획 조정

## 〈당초계획〉

- 기금조성 : 양돈사료 판매가 0.5% 인상분을 사료업체에서 기부금으로 납입 추진('99. 6~12월 : 4,375백만원)
- 세입계획 : 5,400백만원(입회비, 기부금, 협찬금 등 포함)
- 사업시행시기 : '99. 6. 1일부터 도 대책본부, 시·군방역단 운영지원

## 〈변경계획〉

- 기금조성 : 양돈협회, 축협, 사료업체, 동물약품업체, 축산물위생처리업체, 육가공수출업체, 기타 유관단체의 자율적인 협찬·기부금으로 박멸대책 추진
- 세입계획 : 1,880백만원(입회비, 협찬지원, 기부금)
- 변경되는 주요내용
  - 세입·세출계획 : 5,400백만원 → 1,880백만원
  - 시·군 돼지콜레라 방역전담요원 배치 : 150명 → 123명
  - 사업시행시기 : '99. 8. 1일부터 도 대책본부 운영지원
    - 시·군 돼지콜레라방역단은 8.1일부터 대상 시·군을 단계별로 선별하여 방역단 지원 추진
- 황민영 집행위원장 사의 표명
  - 기부금 모금 추진이 진척이 없어 집행위원장 사임.
  - 정관 제12조에 의거 후임 집행위원장 추천·인준은 상임본부장이 협의후 선임토록 총회 의결로 위임

## □ 후임 집행위원장 선임

- 최상백 상임본부장이 본부장단, 이사진과 협의하여 후임 집행위원장 선임.
  - 신임 집행위원장 : 윤희진(전국GGP협의회장)
  - 선임일자 : 1999. 7. 22

- 집행위원장 인수인계 : '99. 7. 23. 18:00 제9차 집행위원회 회의시 인수·인계
- 제9차 집행위원회 개최
  - 일시 : '99. 7. 23(금) 18:30~20:30
  - 장소 : 양돈협회 회장실(11명 참석)
  - 집행위원장 변경선임 이·취임식
    - 최상백 상임본부장이 전임 황민영 농어민신문사장에게 공로패 증정 및 인사
    - 신임 윤희진 집행위원장(다비인티 대표) 업무인수인계
  - 협의안건 :
    - 기금모금은 사료업체 개별로 설명하여 협조·참여 요청키로 함
    - 기술 자문위원 운영 필요
    - 도 대책본부장 회의 추진키로 함
    - 시·군 방역요원 자격기준 협의
- 시·군 돼지콜레라 방역단장 및 방역요원 교육
  - '99. 8. 26. 10:30~15:30 (충남대 수의대 부속 동물병원) 152명
  - 대책본부 사업계획, 방역요원 교육, 방역단 성공사례 발표
- 돼지콜레라 근절 평가·결의대회 개최
  - '99. 11. 5. 13:00~11. 6. 13:00 (수원, 농업연수부)
  - 참석인원 299명(시·군공무원 190명, 방역요원 102명)
  - 근절대책 방안, 돼지콜레라 발생시 피해, 농가 방역관리 및 준수사항, 시군 방역단 운영, 일  
본동향 설명, 결의대회 등
- 돼지콜레라 근절 2단계 순회교육·홍보
  - '99. 11. 10.~11. 26 : 11개 지역, 1,518명 참석
  - 각 도별 양돈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농가 방역의식 제고 및 홍보
- 제13차 집행위원회 개최
  - 일시 : '99. 12. 21(화) 16:00~20:00
  - 장소 : 양돈협회 회장실(집행위원 등 12명)
  - 협의내용 : 비대본 활동 평가 방안 논의
  - 수과원 인수환 과장 : 제주도 12. 18 청정화 선언 설명
    - 일본 방문 설명 : 접종중단 현재 6개현 → 내년 4월중 20개현 추가 추진
    - 2000. 10월 : 예방접종 중단 예정
    - 2001. 10월 :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 예정
  - 기부금 부족에 따라 부득이 시·군 축협이 운영주체인 방역단에 12월부터 지원 중단방안



## 동의함

- 시·군방역단 운영지원비도 월 30만원으로 조정

## 2000년

## □ 제14차 집행위원회 회의

- 일시 : 2000. 1. 18. 11:00
- 장소 : 수의과학회관 회의실(집행위원 10, 사무국 2명)
- 비대본 정기총회 개최전 집행위원회 개최
- 회의결과
  - 1999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
    - 세입 : 1,248,877,143원
    - 세출 : 1,147,672,360원
    - 당기순이익 : 107,227,903원
  - 2000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 2000년도 예산(안) 조건부 승인
    - 12월까지 활동하는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9월까지 운영예산 승인
    - 세입 : 2,780백만원(정부보조 1,980, 박멸기금 800)
- 감사선임 선임 협의
  - 김동훈감사 사임에 따른 감사 선임
  - 동물약품협회에서 고려케미칼 김진구사장을 추천
  - 사료협회 감사 1인 추천
- 집행위원 보강
  - 대한양돈협회 노영한 전무 사임 → 신임 박중근 전무로 교체
  - 안수환 바이러스 과장 : 집행위원회 기술자문위원으로 계속 참석
  - 한국종돈업경영인회 한백용회장 신규 선임
  - 농진청 이수철과장 승진 전보로 신임 정규곤 원예축산과장으로 교체
  - (주)에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의 강세원 박사를 추가 선임

## □ 비대본 제1차 이사회 겸 정기총회

- 일시 : 2000. 1. 18(화) 14:00
- 장소 : 경기 분당구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비대본 감사 선임
  - 2000. 1. 18. 정기총회시 김동훈 감사사임

- 총회결의에 따른 사료협회, 동물약품협회의 추천에 의거 감사 2명 선임키로 함
- 감사 선임
  - 김대성 : (주)도드람사료 대표이사
  - 김진구 : (주)고려케미칼 대표이사
  - 박해준 : 대구·경북양돈축협조합장

## ○ 조직운영 상황보고

## 〈 대책본부 사무국직원 현황 〉

소 속	직 명	성 명	입 사 일	주 요 담 당 업 무
사 무 국	사무국장	최홍렬	'99. 4. 1.	사무국 운영 총괄
사 무 국	사 무 원	김은석	'99. 9. 1.	방역지도, 방역단 점검에 관한 사항, 컴퓨터 관리
사 무 국	사 무 원	강승화	'99. 5.12.	문서수발, 자료정리 업무
사 무 국	사 무 원	한연옥	'99. 4.12.	회계, 경리업무, 비품관리
도드람사료 (파견)	상무 (모금·홍보담당)	박동희	'99. 8.21.	기금모금, 홍보업무 지원
도드람양돈축 협(파견)	동물병원장 (기술담당)	정현규	'99. 8. 1.	교육, 훈련, 방역기술 지원

## 〈 대책본부 방역단 운영 현황 〉

- '99. 8. 2. : 8개도 대책본부 설치 완료
- 시·군 돼지콜레라방역단 운영지정
  - '99. 9. 9. : 53개소 (1차 지정)
  - '99. 9. 17. : 10개소 (2차 지정)
  - '99. 10. 1. : 30개소 (3차 지정)
  - '99. 10. 11. : 10개소 (4차 지정)
  - '99. 10. 30. : 2개소 (5차 지정 - 고양, 제천)
  - '99. 11~12 : 5개소 (포천, 화순, 강화, 연천, 용인)
- 현재 : 110개 시·군, 방역요원 113명 운영 지원

○ 시·군 돼지콜레라 방역단 지원현황 (2000. 1. 10. 현재)

도 별	대상 시/군수	방역단 지원 지정 시·군		비 고
경 기	14	14	안성, 여주, 평택, 김포, 화성, 양평, 이천, 파주, 양주, 시흥, 고양, 포천, 연천, 용인	시흥·안양시, 화성·수원·오산
강 원	5	5	철원, 강릉, 홍천, 춘천·화천, 원주·횡성	통합운영 화천·횡성군
충 북	9	9	진천, 보은, 음성, 청주·청원, 영동, 괴산, 충주, 옥천, 제천	통합운영
충 남	14	14	아산, 천안, 당진, 서천, 연기, 홍성, 공주, 예산, 청양, 부여, 금산, 보령, 논산, 서산·태안	서산·태안시 통합운영, 당진·홍성 : 방역요원 2명 지정
전 북	13	13	남원, 김제, 정읍, 전주·완주, 순창, 고창, 군산, 장수, 부안, 무주, 진안, 임실, 익산	남원·익산 : 방역요원 2명 지정
전 남	18	17(1)	나주, 보성, 무안, 구례, 영암, 진도, 영광, 강진, 함평, 장성, 담양·곡성, 순천, 장흥, (여수), 해남, 화순, 고흥	완도군 : 미지정
경 북	19	19	경주, 구미, 영주, 영천, 김천, 안동, 군위, 고령, 포항, 청도, 문경, 칠곡, 상주, 경산, 영덕, 의성, 예천, 봉화, 성주	
경 남	15	15	진주, 마산, 하동, 고성, 창녕, 함안, 밀양, 산청, 거창, 함양, 합천, 김해, 사천, 의령, 양산	(경남도본부)
부 산	1	1	기장군	(경북도본부)
대 구	1	1	달성군	(경남도본부)
울 산	1	1	울산시	(경기도본부)
인 천	1	1	강화	
합 계	111	110(1)	○ 시·군방역단 수 : 110개 ○ 방역 전담 요원 : 113명	

※ ( ) : 현재 방역전담요원 지원중단 시·군임

## ○ 돼지콜레라방역단 운영주체별 구분

(2000. 1. 10.현재)

방역단 주체구분	방역단 수	해당 시·군
축 협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 3 (인천, 연천, 용인)</li> <li>○강원 : 1 (원주)</li> <li>○충북 : 2 (옥천, 제천)</li> <li>○충남 : 2 (연기, 공주)</li> <li>○전남 : 7 (함평, 진도, 강진, 영광, 해남, 화순, 고흥)</li> <li>○경북 : 7 (구미, 구위, 고령, 경산, 예천, 달성, 성주)</li> <li>○경남 : 5 (함안, 함천, 김해, 사천, 의령)</li> </ul>
양돈협회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 12 (안성, 여주, 평택, 김포, 화성, 양평, 이천, 파주, 양주, 시흥·안양, 고양, 포천)</li> <li>○강원 : 2 (철원, 홍천)</li> <li>○충북 : 7 (진천, 보은, 음성, 청주·청원, 영동, 괴산, 충주)</li> <li>○충남 : 8 (아산, 천안, 당진, 서천, 홍성, 예산, 청양, 서산·태안)</li> <li>○전북 : 9 (남원, 김제, 정읍, 전주·완주, 고창, 군산, 장수, 부안, 익산)</li> <li>○전남 : 9 (영암, 나주, 보성, 무안, 구례, 담양·곡성, 순천, 장흥, 장성)</li> <li>○경북 : 11 (김천, 안동, 포항, 문경, 칠곡, 상주, 영덕, 의성, 영주, 영천, 청도)</li> <li>○경남 : 11 (진주, 마산, 하동, 고성, 창녕, 밀양, 산천, 거창, 양산, 울산, 부산)</li> </ul>
기 타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춘천양돈협의회 : (강원 - 춘천)</li> <li>○양 돈 동 우 회 : (충남 - 부여)</li> <li>○양 돈 연 합 : (충남 - 금산, 논산)</li> <li>○양 돈 연 구 회 : (충남 - 보령, 강릉)</li> <li>○양돈 영농 법인 : (전북 - 순창, 무주, 진안, 임실)</li> <li>○양 돈 회 : (전남 - 여수)</li> <li>○양 돈 계 : (경북 - 봉화)</li> <li>○농업 기술 센터 : (경남 - 함양)</li> </ul>
계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방역단 수 : 110개 (여수 : 지원중단)</li> <li>○방역전담요원 : 113명 (당진·홍성·남원·익산 : 각 2명)</li> </ul>

- 방역전담요원 자격구분
  - 수의사 48, 축산학 전공 41, 양돈업 경력 24 : 합계 113명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유공자 포상계획(비대본)
  - 대 상 : 공무원 2명(경남 축산과장 김차용, 경기 축위연 정준용, 정기총회시 수여)  
방역요원 8명(각 도본부 추천, 1.24. 교육시 수여)
- 시·군 돼지콜레라방역단 방역 연수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00. 1. 24. 11:00 ~ 1.25. 15:30 (1박2일)
  - 교육장소 : 수원소재 농업연수부(교육원)
  - 교육대상 : 도 본부 사무국장, 시·군방역요원 전원(약 120명)
  - 교육내용 : 근절대책, 사업계획, 일본의 박멸정책, 양돈현황과 전망, 양돈사양관리, 교양 강좌 등
  - 교육예산소요 : 약 2,800천원
- 돼지콜레라 근절 결의 및 예방접종시연회 개최
  - 일 시 : 2000. 3. 14(화) 10:30~12:10
  - 장 소 : 과천청사 운동장
  - 행사주최 : 농림부, 주관 : 비대본, 협조 : 검역원, 축기연
  - 참석자 : 약 1,000명
    - 공무원 : 500명(농림부, 검역원, 축기연, 시·도, 시·군)
    - 단체·농가 : 500명(농가대표 150, 방역요원 100, 공방단 50, 축산단체 등 200명)
  - 행사 : 경과보고, 김성훈장관대회사, 제주도사례발표, 결의문낭독, 접종·채혈시연, 돈사연막시연, 방역기자재 전시물참관
  - 사업비 : 18백만원(축발기금 교육홍보비)
    - 연단설치, 돈사시설설치, 비육돈 10두, 자돈 10두, 1000명 모자, 어깨띠, 방역기자재 전시
- 제16차 집행위원회 회의
  - 일 시 : 2000. 4. 3. 15:00~18:30
  - 장 소 : 역삼동소재 “성전” 회의실
  - 참석자 : 집행위원 10명, 사무국 2명
  - 회의결과
    - 비대본을 구제역 대책지원 활동으로 우선 전환
      - 법인변경전이라도 구제역 방역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조치 건의
      - 돼지콜레라 방역보조사업비를 구제역 긴급방역비로 사용토록 건의
  - 비대본 운영목표

- 생산자단체·축산관련단체 공동으로 방역대책지원기구 운영
  - 민·관합동으로 주요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 근절
  - 축산물위생수준향상 및 축산업발전에 기여
-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소·돼지 사육농가에 지속적인 소독 및 차단방역 지원, 홍보지도
- 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뉴캐슬병 청정화 집중 추진

#### 6) 구제역 발생이후 긴급방역 자원활동

##### □ 경기 파주지역 예방접종 지원

- 3. 29. ~ 4. 4. (7일) : 26명 투입
  - 3. 29 : 비대본, 도드람축협 5명 긴급 파견
  - 3. 30 : 방역요원 및 자원봉사 19명 파견
  - 숙박비, 차량 유류대·세차비, 예방약 운송·보관 냉장차량(11ton) 임차지원
  - 4.4~4.7 : 접종지원반 격리, 교육후 귀향조치

##### □ 충남 홍성지역 예방접종지원

- 4.4~4. 16 (12일) : 38명
  - 방역요원 5, 충남대 수의대 12, 홍성 수정사회 6, 사료업체 10, 기타지원자 5
  - 숙박비, 차량유류대·세차비 지원, 수의대생 1일당 2만원씩 지원
- 4.17~4. 22 (6일) : 55명
  - 방역요원 2, 사료업체 39, 동물약품 판매업 14
  - 숙박비, 차량유류대 지원
- 4.23~4. 30 (8일) : 48명
  - 숙박비, 차량유류대 지원
- 5. 8~ 현재 : 2차접종(18개조 50명)

##### □ 충남 보령지역 예방접종지원

- 4.4~4. 16 (12일) : 충남대 수의대 21명지원
  - 숙박비, 차량유류비, 1일당 2만원씩 지원(300만원)

##### □ 충북 충주지역 예방접종지원

- 4.12~4. 18 (7일) : 충북대 수의대 31명 지원
  - 방역지원비 300만원 지원

##### □ 방역기자재(주사기, 분무기, 비닐덧신 등) 긴급 지원

- 파주방역단 : 부로우건 3셋트, 연속주사기 50개
- 홍성방역단 : 분무기(6 l) 30개, 비닐슈즈 5,000개, 주사침 200박스, 주사연결셀 500개

- 충주방역단 : 연속주사기 41, 1회용주사기 20박스, 주사침 200박스, 비닐슈즈 2000매, 주사 연결셀 700개
- 음성방역단 : 연속주사기 50, 1회용주사기 25박스, 연결셀 90, 방역복 360셀
- 휴대용 분무기(6 l) 122개 : 시·군방역단 배정
- 초고속 자동주사기 : 186셀(각 시·군방역단 배정)
- LG화학 무상지원 : 1회용 주사침 16만개(각 시·군방역단 배정)
- 소독약 긴급지원 : 시·군방역단 배정
  - 라이프라인(18리터) 915통 - 고려케미칼
  - 버콘 S(1kg) 900봉 - 바이엘코리아
  - 킬사이드(18리터) 200통 - 녹십자수의약품
  - 고려케미칼 무상지원 : 라이프라인(5리터) 500개, 라이프자켓(1kg) 500봉
- 제17차 집행위원회 회의
  - 일 시 : 2000. 5. 29(월) 16:30~19:00
  - 장 소 : 양돈회관 5층 회의실
  - 참석자 : 집행위원 11명, 사무국 2명
  - 협의내용 : 비대본 조직 개편방안, 구제역 방역 및 돼지콜레라예방접종 중단시기
    - 명칭 : 가축방역대책지원본부 추진
    - 정관, 임원,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협의
    - 비대본 명칭(안) : 돼지질병근절대책본부

## 나.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 추진경위 : 비대본의 돼지콜레라 추진 및 구제역 긴급방역지원 실적을 평가 받아 민간방역 단체 운영 필요성 인정
- 양돈·양계·한우·낙농육우협회장 단체장 협의 : '00.5.10
  - 효율적인 방역지원을 위한 민간방역대책기구 공동 참여방안 논의
  - 명칭 : (가칭)“가축방역대책 지원본부”로 우선 협의
  - 4단체 및 수의사회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부절차 및 관련사항 협의·추진키로 함
  - 생산자 단체장 협의 : 5. 10.(한우, 낙농육우, 양돈, 양계협회장)
    - 비대본을 “가축방역대책지원본부”로 확대 개편 추진키로 함.
  - 생산자단체 전무, 수의사회, 비대본 실무회의 5.12, 5.25
  - 농림부에 추진계획 보고, 협의 완료

- 생산자단체장 협의 : (1차)6.12, (2차)6.13
- 비대본 제16차(5.29), 제17차(6.14) 집행위원회에서 확대개편 심의
  - 명칭, 정관등 허가사항 변경신청 : 비대본 정관을 보완 추진하여 정관 개정 추진
- 추진일정
  - 관련단체와 협의후 총회소집하여 의결키로 함
  - 총회소집일에 제18차 집행위원회 소집하여 논의키로 함
  - 6월말까지는 법인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등 행정절차 조속완료토록 추진

### 1) 사단법인 명칭 변경

- 제 18차 집행위원회 및 임시총회개최
  - 일 시 : 2000. 6. 14 10:00 집행위원회, 11:00 임시총회
  - 장 소 : 분당소재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참석자 : 13명
  - 회의결과 : 비대본 확대개편을 위한 심의
    - 제1호의 안 : 비대본 명칭변경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함
    - 제2호의 안 : 정관변경(안) --- 주요사업, 임원, 이사등 보강
    - 제3호의 안 : 공동본부장 5인을 8명으로 확대  
 상임본부장 : 이우재 국회의원  
 감사 : 도드람사료 김대성, 고려케미칼 김진구
    - 제4호의 안 : 사업목표 확정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사 모임
  - 일 시 : 2000. 6. 19(월) 16:00
  - 장 소 : 분당소재 수의과학회관 회의실
  - 참석자 : 이사 11명
  - 회의 내용 : 이우재 상임본부장 인사
    - 공동대표와 이사진 공동회의 필요
    - 약칭 : “방역본부”로 함
    - 이사 25인, 필요시 운영소위, 분과별 모임
- 법인정관 변경 승인
  - 신청일 : 2000. 6. 15
  - 승인일 : 2000. 6. 21



- 민간차원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및 지원 업무 총괄
-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뉴캐슬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 및 교육 홍보 사업 실시

□ 방역본부 방역요원 연수 교육 실시

- 일 시 : 2000. 6. 15
- 장 소 : 대전시 유성구 “유성유스호스텔”
- 참석자 : 사무국, 도본부, 방역요원 전원(137명)

□ 경북도 돼지콜레라 근절 결의 대회 개최

- 일 시 : 2000. 7. 18. 11:00~12:30
- 장 소 : 경북농업인회관
- 참석자 : 이우재 상임본부장, 상임이사 이의근 도지사, 관련기관·단체 방역요원등 450명 참석
- 박멸기부금 모금 : 1,020만원 기탁
  - 방역본부 경북도본부에 250만원 지정 기탁

2) 방역본부 사무실 이전

- 이전일 : 2000. 7. 28(금)
- 이전 사유 : 양돈회관이 매각되어 축산회관 3층으로 이전
- 사무실 면적 : 9평

3) 구제역 재발 방지 대책 순회교육 실시

① 시·도 순회교육 실시

- 주관기관 : 방역본부
- 참석대상 : 시·도 시험소 관계자, 축산단체, 방역요원 등
- 협 조 : 시·도, 검역원

구분	일 자	교육장소	참석자	교육내용
경기·강원	8.17.	경기도청 회의실	127명	○ 홍보비디오 상영
충북·충남	8.18.	대전축협 회의실	127명	○ 농림부 : 구제역 대책
경북·경남	8.29.	경북 농업인회관	232명	○ 검역원 : 구제역 교육
전북·전남	8.30.	전주시청 회의실	135명	○ 발생지역 방역경험
제주도	9. 4.	도 청 회 의 실	80명	(파주시 농축산과장)
5개 지역			701명	

② 구제역 CPX현지훈련 지원

- 일 시 : 2000. 8. 25. 10:30~17:00

- 장 소 : 전북 익산시청, 젓소 사육농가, 김제 목우촌
- 참 관 : 농림부장관, 전북도지사, 방역본부장, 축산단체장 등 100명
- 방역본부 주관 : 축발기금, 7,700천원 행사 지원
- ③ 구제역 방역홍보 추진 내용
  - 전국 소독의 날 (8월 25일, 9월 15일) 홍보
    - 리후렛 : 204천부 제작 배포
    - 구제역 교육책자 : 6만부 제작 배부
    - 신문광고 : 8~9월중 2회씩 홍보
- 돼지오제스키병 방역교육
  - 주관단체 : 방역본부, 양돈수의사회 공동주관
  - 일 자 : '00. 9. 4.(월) 15:00~17:30
  - 장 소 : 대전시 소재 파천연구소(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 참 석 자 : 111명(방역요원 90명, 양돈수의사 등 16명)
  - 강 사 : 미네소타대학교수 주한수 박사
    - 미국의 오제스키병 방역현황과 전망
    - 수의과학검역원 바이러스과 송재영 박사
    - 국내 오제스키병 발생현황 및 문제점
- 방역본부에 축발기금보조 지원
  - 인건비, 운영비, 기자재 지원 : 1,254백만원 보조
- 구제역 백서 제작 용역추진
  - 계약기간 : (당초) '00. 8. 1. ~ 9. 30.  
(변경) '00. 8. 1. ~ 12. 30.
  - 용역책임자 : 수의학박사 정종기외 7명
  - 용역비용 : 13,967천원
- 방역본부 -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 재경부 공고 : 제2000-132호 법인명칭 변경후 재지정
- 방역본부 제2차 이사회
  - 일 시 : '00. 11. 7(화) 16:00
  - 장 소 : 축산회관 회의실
  - 참석자 : 상임본부장 외 11명
  - 회의보고사항 : 11개 시·군방역단 설립 승인 및 방역요원 지정
    - 현재 116명 → 128명으로 증원

- 양돈농가 1,000호이상 시·군 지원대책
  - 충남 홍성군 : 현재 방역요원 2명을 3명으로 조정(1명 추가)
  - 충남 당진군 : 채혈 확대실시를 위해 채혈보조인력 활용 소요예산 지원(20일간, 일당 3~5만원)
  - 전북 익산·남원, 전남 나주 : 현지 조사후 필요시 채혈보조인력 활용 소요예산 지원

#### 〈방역요원 배치기준〉

홍성군 3명, 용인·당진·익산·남원 각2명씩 배치, 기타 방역단 1명

- 11개 시·군 방역단 추가 설립 승인함
- 심의안건
  - 직제규정(안) : 원안승인
  - 위임전결규정개정(안) : 원안승인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기술자문위원 추천(안) : 원안승인
  - 시·군방역요원 관리규정(안) : 원안 조정승인
  - 2001년 촉발기금 보조예산(안)

#### 4) 돼지오제스키병 근절기반 조성사업 추진

- ① 사업목적 : 돼지오제스키병 조기근절 기반조성 및 감염 모든 일제도태로 돼지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② 혈청검사를 위한 농장채혈 : 4,167농가 모든 약 224천원
  - 발생지역(4개도, 14개 시군) - 모돈·종용돈 전두수
  - 실시기간 : 11. 27. ~ 12. 12(15일간)
  - 채혈실시기관 : 방역본부 주관, 시·도 협조
  - 감염돼지 살처분 또는 도태 : 12. 1. ~ 12. 31.(1개월간)
  - 도태장려금 : 모돈·종용돈 1두당 150천원
  - 사업비 : 3,896백만원
    - 채혈실시비 : 224천두 \* 2천원 = 448백만원
    - 진단키트공급 : 224천두 \* 2천원 = 448백만원
    - 도태장려금 : 20천두 추정 \* 150천원 = 3,000백만원
- ③ 일제채혈 준비회의
  - 일 시 : '00.11.22. 14:00~16:30
  - 장 소 : 축산회관 회의실
  - 참석자 : 도 사무국장, 14개 시군방역단장 및 방역요원

- 채혈을 위한 방역요원 동원배치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협의
- 동원되는 방역요원은 11. 27일 오전까지 시군에 도착, 등록토록 함
- ④ 방역요원 동원
  - 14개 시·군방역요원 : 18명
  - 타 시·군, 타도 방역요원 : 95명
  - 동원인원 : 113명
- 방역본부 - 애그리브랜드퓨리나 축산사료연구 기술대상 수상단체로 지정
  - 지정기관 : 재단법인 애그리브랜드퓨리나 문화재단
  - 시 상 : 2000.12.21. (목) 18:30
  - 장 소 : 역삼동소재 르네상스호텔 4층 토파즈룸
  - 축산사료 연구기술대상 : 상금 1천만원(상금은 방역본부 상조기금으로 운영)

## 2001년

- 2001년도 제2차 이사회 및 제1차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2001. 2. 14. 14:00~16:20 (축산회관 소회의실)
  - 참석자 : 상임본부장의 회원 17명
  - 회의내용 :
    - 2000년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 승인
    - 200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
      - 구제역·돼지콜레라·오제스키병·닭뉴캐슬병 사업계획을 승인함
    - 급여규정·직제규정·위임전결규정 개정 승인
    - 상임이사 선임 안건을 총회 부의안건으로 삼(2차이사회)
    - 상임이사선임은 상임본부장이 윤희진 상임이사후임에 배상호이사를 추천하여 전원찬선으로 인준함(상임이사 인수인계서 작성)
- 시군방역요원 연수교육
  - 일 시 : '01. 2. 22 ~ 23 (1박2일)
  - 장 소 : 대전시 동구소재 "샤또 그레이스 호텔"
  - 참석자 : 사무국, 도본부, 방역요원 전원 153명
  - 소요예산 : 11,481천원
  - 2001년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뉴캐슬병 방역요령, 일본의 돼지콜레라 근절추진현황, 구제역 재발방지 및 BSE대책, 방역요원 활동방향, 농장방역관리교육

## 5) 전북왕궁단지 돼지오제스키병 특별대책추진

- 모니터링 채혈검사 : '01. 3. 3 ~ 3.13(10일간)
  - 사육규모 : 417호, 90,216두(모돈 10,958두)
  - 검사결과 : 140호 검사결과 3,953두 중 907두 양성
  - 지원액(국비) : 216백만원
    - 예방약공급 : 360천두(전두수 2회 접종)
    - 예방접종비 : 국비 50%, 지방비 50%

## ○ 모돈전두수 채혈검사 실시

- 동원기간 : 4. 25 ~ 5. 8 (10일간 합숙)
- 동원인력 : 전북 방역요원 15명, 민간보정인원 9명
- 채혈실적 : 323농가 8,787두(157농가, 1,579두 양성)
- 방역본부 예산지원 : 숙식비·세차비 등 8,300천원,

이표 5,000개, 장착기 등 1,780천원, 면장갑, 마스크 등 800만원

## □ 시군 방역단 방역차량지원

- 코란도벤 6대 : '01. 1. 24 지원
- 방역단 6개소 지원 : 화성, 청원, 익산, 순천, 칠곡, 산청
- 구입금액 : 88,856천원(기금 80%, 기부금 20%)

## □ 시군 방역단 운영 장비지원('01. 5. 17)

- 차량용 냉장고 : 123개 지원
  - 소요예산 : 28,290천원(기금 80%, 기부금 20%)
- 컴퓨터 지원 : 10대
  - 소요예산 : 18,975천원(기금 80%, 기부금 20%)

## □ 구제역 유공자 청와대 오찬 행사

- 2001. 6. 19 청와대 영빈관(대통령 참석)
- 방역본부(10명) : 상임이사, 사무국장, 방역요원 8명
  - 구제역 유공자 120명, 산불 유공장 80명

## □ 전국순회 양돈농가 방역교육

- '01. 8. 28 ~ 9. 4 (4개지역 630명 참석)
- 4개지역 순회 : 부산 부곡로얄호텔(150명), 충남 홍성군 홍주문예회관(150명)  
경기 안성 농협교육원(180명), 전북 익산시 왕궁중학교(150명)
- 소요예산 : 13,660천원(기금, 자부담)

□ 2001년도 입시총회 회의개최

○ 일 시 : '01. 9. 12(수) 16:00 ~ 18:00 (축산회관)

○ 참석자 : 상임본부장외 17명

○ 회의결과

- 개인·단체 포상 : 전 경북도 유진현 도본부장 공로패

농협 중앙회의 16개업체·단체에 감사패 증정

- 정관 개정안 심의·의결

· 임원 근무형태를 상근·비상근으로 구분 명시

· 현행 상임이사 선임은 “이사중에서 1인을 추천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함

· 상임본부장 유고시 공동본부장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을 정화되 1개월이내에 상임본부장을 총회에서 선출토록 함.

· 상임본부장·상임이사·비상근이사의 임기를 3년,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함.

· 이사회 의결사항에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및 차입금에 관한사항을 추가함.

· 부칙에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2000년 6월 15일부터 기산토록 함

□ 농림부에서 방역본부 정관 승인

○ 2001년 10월 12일 방역본부정관 승인

- 상임본부장 유고시 공동본부장이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토록 수정승인

2002년

□ 방역본부 운영개선 대책위원회 개최

○ 일 시 : '02. 2. 20(수) 15:00

○ 장소 : 종축개량협회 상담실

○ 참석자 : 김진구감사, 한백용이사, 안기홍이사, 박봉균이사, 배상호상임이사, 최홍렬사무국장

○ 개선방안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선 추진

- 방역본부의 법적·제도적 설치 운영 근거 마련

- 국비·지방비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조직 및 인력정비를 실질적인 방역업무 수행

- 하부조직(시군방역단) 운영 형태의 개선

· 시군방역단을 도본부관할 3~4개 지역별 출장소 형태의 독립운영

· 시군방역단 운영주체 정리

## 6) 구지역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추진 활동

- 동원 채혈 및 예찰 활동 담당 : 3개지역 134명 동원
  - 강원 철원 : 68명 동원 (4.16~5.17)
  - 경기 용인·안성 : 33명 동원 (5.4~5.6)
- 시군 방역요원 농가 채혈활동 일시 중단 조치 : '02. 5. 5
  - 전국적 차단방역 및 예찰활동, 소독지언 우선 실시토록 조치
- 소독약품, 방역기자재 현물기증물품 지원
  - RNL생명과학, 고려비엔피, 이화약품, 동방 등 10개업체에서 시가 87,716천원 상당 물품지원
- 홍보물 제작 배포 : 홍보리후렛등 20만부 배부
  - 방역활동 철저를 위한 축산국장·생산자단체장 서신 발송
- 방역본부직원 연수교육 실시
  - 실시목적 : 방역본부 업무활성화 및 직원간 유대 강화
  - 일시 : '02. 6.24~ 6.25(2일간)
  - 장소 : 충남 아산시 그랜드호텔
  - 참석자 : 22명 (본부 6명, 도본부 16명)
  - 교육내용 : 방역본부 운영활성화 방안 및 예산확보 방안
    - 02년 하반기 채혈 사업계획관련 토의
    - 도본부운영 문제점 및 개선대책회의
  - 도본부별 운영계획 발표 및 건의
- 공동본부장 조찬 간담회
  - 일시 : '02.08.14(수) 07:30(팔레스호텔)
  - 참석자 : 이우재 상임본부장과 공동본부장 6명
  - 회의 목적 : 이우재 상임본부장 당선축하 및 운영활성화 방안 협의
  - 회의 결과 : 이우재본부장이 국회의원 보선 당선으로 상임본부장 직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의 표명
    - 후임자를 조기 선임 요청하고 차기 임시총회까지 회의를 주재키로 함
- 방역본부 제3차 이사회 및 긴급 임시총회 개최
  - 일시 : 2002. 8.22(목) 15:00~17:00(축산회관)
  - 참석자 : 상임본부장외 20명
  - 부의안건 : 상임본부장 사의 표명에 따른 후임본부장 선출건,  
공동본부장 조정의 건

- 회의결과 : 후임 상임본부장에 정영채 한국축산환경협회장 선임  
공동본부장은 수의사 회장 대신 후임 상임본부장으로 선임
- 공로패 수여 : 상임본부장 이우재 의원에 공로패 증정
- 수해지역 긴급 소독약품 지원활동(방역본부)
  - 경남 김해 홍수 피해지역 긴급 방역지원활동('02. 8.19)
    - 고려비엔피, RNL생명과학 기증 소독약품 지원 : 소독제 27,000천원(시가)
  - 강원도 영동(북부지소) 수해지역 약품지원활동(9.11~14)
    - 동물약품판매협회, 녹십자 중앙가축, 한국미생물, 삼양약화학, 바이엘 등 6개업체 15종 기증 약품지원(시가 13,500천원)
  -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지원활동(9.14)
    - 제일바이오, 방역복 구매 2종 450Kg(시가 7,500천원)
-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일시 : '02.10. 7~10. 9(3일간)
  - '02.10.10~10.11 교육은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무기 연기
  - 장소 : 과천청사 대강당
  - 대상 : 전국 읍·면장 및 시군 축산담당 공무원

## 7) 방역본부 사무실 이전 추진

- 서면 결의 결재일 : '02.10.31

### 〈서면 결의 부의 안건〉

- 축산회관 사무실 협소하여 사무실 이전 불가피
  - 임대차 계약조건 : 실평수 37평, 보증금 3천만원, 월 240만원
  - 계약기간 : 2년
- 2002년 방역본부 운영비 예산내역 변경
  - 운영비 170,883천원에 예비비를 포함하여 각목별 예산액을 180,883천원으로 조정
- 서면 결의 결과 : 2개 부의안건에 이사 19명 전원 참석으로 원안 승인
- 방역본부 사무실 이전 및 현판식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16-5(축산회관)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4-37(우경빌딩)
  - 이전일자 : '02.11.13
  - 사무실 이전 현판식 : '02.11.14
    - 참석자 : 김영진 농림부장관, 정영채 상임본부장, 김옥경 검역원장의 축산관련단체장



## 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방역본부 설립근거 마련

- 제234회 정기국회('02.11.12)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
  - 법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설치 운영 근거조항 명시
  - 개정법률공포 : 법률 제6817호('02.12.26)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제9조)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①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 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방역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방역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축의 예방접종·약물목욕·임상검사 및 검사 시료채취
2. 축산물의 위생검사
3.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사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교육·양성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⑤방역본부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채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농림부장관은 방역본부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⑧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

### 2003년

- 2003년도 정기총회 개최
  - 일 시 : '03. 2. 18(화) 15:00~17:00
  - 장 소 : 건축회관 대회의실
  - 참석자 : 상임본부장외 17명

- 회의내용 : 감사패 수여(4명)
  - RNL생명과학, 고려비엔피, 베링거인겔하임, 종축개량협회 김윤식부장
- 의안심의 : '02년 사업실적·수입 지출 결산 원안승인
  - '03년도 사업계획안 원안 승인
  - '03년 수입·지출 예산 원안 승인
  - 도본부·출장소 운영규정 제정안 승인
- '03년 방역기자재 구매·배정

품 목	내용 수량	금 액	일 자
○ 방역차량	코란도 42대, 무쓰픽업 8대	726,625천원	'03. 4. 11
○ 방역복	97,000셀	260,524천원	'03. 3. 20, '03. 5. 26
○ 주사기	400,000개	28,000천원	'03. 3. 27
○ 휴대폰소독기	177대	6,230천원	'03. 4. 3
○ 컴퓨터	35대	43,697천원	'03. 3. 28

- 2002년 구제역 백신 제작 배부
  - 계약기간 : '02. 12. 20 ~ '03. 5. 5
  - 계약금액 : 14,992천원
  - 발행부수 : 300부
  - 배부처 : 농림부, 검역원, 시·도, 시·군, 시험소, 축산단체 등
- 대한양계협회 양계질병 순회세미나 보조지원
  - 일 시 : '03. 4. 30 ~ 5. 7
  - 장 소 : 전남 장성, 대구, 경기 용인(3개소)
  - 참석인원 : 540명
  - 사업비 : 7,330천원(보조 6,000천원, 자담 1,330천원)

## 라. 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 1) 특수법인 설립 추진과정

- '02. 11. 19 가축전염병예방법 전문개정 후속조치 추진 시달(농림부)
  - 이우재의원 대표발의로 상정된 개정법률안이 '02. 11. 12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개정안이 통과
  - 하위법령 후속조치 추진계획 추진일정
- '02. 12. 18 방역본부 특수법인화 추진 문서시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재편방안 검토보고(추진일정, 실무작업반 구성, 일정 등)
- '02. 12. 26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공포(법률 제6817호)
  - 시행일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03. 6. 27)

- '03. 2. 14 특수법인화 추진 협의회개최(농림부 축산국장 주재)
  - 협의내용 : 설립위원회 구성 및 실무작업단 보강 등
  - 참석자 : 농림부, 검역원, 방역본부, 농협, 협회관계자
- '03. 2. 18 설립위원회 위원 위촉(13명)
  - 위원장 : 차관보
  - 부위원장 : 축산국장
  - 위 원 : 검역원 이주호부장, 농협 조대영상무, 방역본부 상임본부장 정영채, 건국대 김순재 교수, 서울대 박봉균 교수, 수의사회 박수영 처장, 양돈협회장 김건태, 양계협회장 최준구, 한우협회장 이규석, 낙농육우협회장 김남용, 축산물위생처리협회장 장환달
- '03. 2. 24 설립추진위원회 제1차회의
  -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심의 및 향후운영방안 논의
- '03. 3. 4 설립작업단 구성 확정(단장 : 축산국장)
  - 기획반 8명, 내규정비반 8명, 실무위원회 11명
- '03. 3. 7 설립작업단 1차협의회 개최
  - 협의내용 : 특수법인화 관련 협의 및 개인별 업무분장
- '03. 3. 8 ~ 6. 9 실무작업단에서 정관 및 제규정(안) 검토
- '03. 6. 11 설립작업단 2차협의회 개최
  - 정관 및 제규정(안) 20건 검토완료 및 설립위원회 상정안건 협의
- '03. 6. 17 '03년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
  - 사단법인 해산('03. 6. 26 24:00) 의결
- '03. 6. 18 설립추진위원회 2차회의(농림부)
  - 정관, 제규정(안) 등 20건 확정
  - 당연직, 선임직이사 선임
- '03. 6. 23 방역본부 정간인가 및 본부장·전무이사 선임 승인(농림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관 확정
- '03. 6. 25 사단법인 해산 및 재산 등 포괄승계 승인신청
- '03. 6. 26 사단법인 해산에 따른 재산 및 권리·의무 포괄 승계승인
- '03. 6. 26. 24:00 사단법인 해산
  - '03. 6. 17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 의결에 의함
- '03. 6. 27 07:00 법인창립 제1차 이사회 조찬회의 개최(팔레스호텔)
- 창립기념식 : 6. 27. 13:00( 수원 농업연수부)
  - 참석자 : 축산국장, 축산관련단체장, 방역본부전체 임직원 205명

- 방역본부 임직원 연수교육 : 6. 27 13:30 ~ 6.28 13:30 (1박2일)
  - 참석대상 : 방역본부 전체 임직원 205명
- '03. 7. 1 14:00 ~ 15:00 방역본부 창립행사
  - 사당동 소재 방역본부 사무실 건물 : 경과보고, 기념촬영
  - 참석자 : 김영진장관, 김주수차관보, 축산국장, 방역과장, 이우재의원, 이길재 농수산방송대표 이사, 검역원장, 축기연소장, 농협축산경제대표, 축산관련단체장 8명, 축산신문사장, 농어민신문 사장, 농수축산신문사장, 기자단 10명, 시·도축산과장 3명(경기, 강원, 충남)
- '03. 7. 3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등기 완료
  - '03. 6. 26 임원 취임(착오발견) → 6. 27 취임으로 정정등기
  - '03. 7. 7 방역본부 설립등기 완료보고

## 2) 사단법인 해산

- '03년도 제2차 이사회
  - 일 시 : 2003. 6. 17
  - 장 소 : 사당동 건축회관 회의실
  - 참석자 : 상임본부장의 이사 명
  - 심의안건 :
    -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해산에 관한 사항
      - '03. 6. 26 24:00 해산
    -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재산과 권리·의무의 방역본부(특수법인) 포괄승계에 관한 사항
      -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방역본부가 포괄승계(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3조 각호에 의함)
- '03년도 임시 총회 개최
  - 일 시 : 2003. 6. 17. 17:00~18:00
  - 장 소 : 사당동 건축회관 대회의실
  - 참석자 : 정영채 상임본부장의 22명 참석
  - 의안심의 :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해산승인의 건 원인승인

## 3) 방역본부 임직원 연수교육

- 교육대상 : 방역본부 전환에 따른 임직원 및 방역요원 205명
- 교육일시 : '03. 6. 27 ~ 6. 28 (1박2일)
- 교육장소 : 농림부 교육원

- 소요비용 : 17,194천원(보조 7,390천원, 자담 9,804천원)
- 교육내용 :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  
구제역·돼지콜레라 특별방역대책, 농가 예찰 및 방역점검요령 등

#### 4) 방역본부 사무실 이전

- 사무실 임대차계약 ('03. 9. 25)
  - 소재지 : 농협 서울지역본부 5층(강동구 성내동)
  - 계약기간 : '03. 10. 1 ~ '04. 9. 30
  - 계약면적 : 70평(전용 49평, 공용 21평)
  - 계약금액 : 연 임차료 29,268천원(부가세별도), 보증금 없음
- 방역본부 사무실 이전행사
  - 일 시 : '03. 10. 7(화) 14:00
  - 장 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무실 (서울 성내동 소재)
  - 참석자 : 김주수농림부차관보, 정영채 본부장, 이우재 대한수의사회장, 한국농수산물방송대표이사 회장 이길재, 축산관련단체장 및 축산전문지대표, 도본부장 및 사무국장 등

#### 5) 농가방역 교육지원

- 양돈농가 방역교육
  - 기 간 : '03. 10. 17 ~ 10. 21
  - 교육대상 및 지역 : 양돈농가, 공무원 및 방역요원, 3개권역(중부, 호남, 영남)
  - 참석인원 : 500명
  - 총사업비 : 4,266천원(보조 3,761, 자담 505)
  - 교육내용 : 농림부 방역정책, 돼지콜레라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요령,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사례 및 예방대책

- 정착농원 양축농가 방역교육 지원
  - 기 간 : '03. 12. 11 ~ 12. 12
  - 교육대상 및 지역 : 양돈·양계농가(중부, 전남북, 경남북)
  - 주관단체 : 한성협동회
  - 보조금 지급액 : 10,140천원
  - 교육내용 : 농림부 방역정책, 돼지전염병예방 및 근절대책, 양계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대책 추진('04. 2. 14 현재)
  - 발생일시 : '03. 12. 10 ~ '04. 2. 4

- 발생상황 : 경기1, 충북6, 충남6, 전남1, 경북2, 경남1, 울산1 등 18건
- 추진내용 : 도본부 소속 방역요원 긴급동원 방역추진 및 농림부 일일대책회의 참석(전무이사 배상호)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원 가입 ('03. 12. 23)
  - 축산관련단체와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축산현안사항 해결과 긴밀한 협의를 위해 축단협 회원가입

**마. 방역본부 방역지원 활동실적**

- 비대본 방역활동 실적(1999. 9 ~ 2000. 12)

구 분	농가점검 예찰활동	돼지콜레라 채혈		예방접종지원		비 고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1999년	27,793	10,053	91,348	5,802	459,487	
2000년	115,553	31,710	347,901	21,377	1,113,633	
계	143,346	41,763	439,249	27,179	1,573,120	

- 2001년 이후의 방역활동실적(2001. 1 ~ 2004. 12)

(단위 : 호, 두)

구 분	농가점검 예찰활동	돼지콜레라	돼 지 오제스키병	구제역	닭뉴캐슬병	비 고
2001년	216,927	243,527	377,385	17,963	88,314	
2002년	235,036	284,382	215,595	17,199	88,585	
2003년	168,798	238,166	317,963	16,380	103,755	
2004년	179,722	178,504	365,444	16,036	106,916	
계	800,483	944,579	1,276,387	67,578	387,570	

## 바. 방역기부금 모금현황

○ 업계별 모금실적('99. 3 ~ '04.12.31일 현재)

(단위 : 원)

연 도	합 계	사료업계	양돈업계	동물약품업계	기관/단체 업계/개인
1999	1,194,510,000	748,900,000	341,260,000	77,000,000	27,350,000
2000	972,901,300	685,500,000	163,480,000	58,178,300	65,743,000
2001	380,235,700	136,000,000	99,729,700	72,110,000	72,396,000
2002	623,409,320	359,317,500	102,231,820	96,500,000	65,360,000
2003	334,634,100	223,500,000	16,534,100	39,000,000	55,600,000
2004	20,854,250	10,000,000	454,250	0	10,400,000
합 계	3,526,544,670	2,163,217,500	723,689,870	342,788,300	296,849,000

- 1999년 3월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기부금 모금부터 시작하여 구제역 등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방역본부의 방역기부금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사료·양돈·동물약품·축산관련업계 및 단체,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3.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돼지콜레라 방역활동

#### 가. 돼지콜레라 긴급방역 지원 실적

구 분	소독약품	방제장비	방역비
2002년	1,797	2,500	373
2003년	1,000	788	386
계	2,797	3,288	759

#### 나.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조치사항

##### 1) 발생에 따른 비상대책상황실 설치 운영

- 운영기간 : '02. 10.9 ~ 종료시까지, '03. 3.19~5.10
- 설치장소 : 319개소 (중앙본부 1, 지역본부 9, 시군지부 156, 조합 153)
- 농협 긴급방역반 가동 : 1,496개소

##### 2) 농가 방역 홍보 및 교육

- 농가 출입차량 "소독강화 지도카드" 제작 보급 : 1,700개
- 홍보리후렛 제작 배포 : 93만부(4회)
- 축산관련 전문지 방역광고 : 3회
- 전국 양돈농가 "가축방역 및 사육일지" 제작 보급 : 2만부
- 가축방역 교육 실시 : 345명
- 농협 "축산사이버컨설팅 홈페이지" 방역 홍보

##### 3) 방역당국 및 협회(단체)간 유기적인 방역 협조 추진

- 발생지역 이동제한 통제초소 운영 및 인력·장비 지원

구 분	2002년	2003년
방역인력	26명/1일	100명/1일
방역차량	100대	128대

- 방역추진 위문품 전달 : 122백만원(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 돼지콜레라 확산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촉진 추진
  - 돼지고기 시식회 및 무해성 홍보(전국 지역본부) : '03. 3.27~4. 2
  - TV 공익광고 방영(4.1~4.30) : 3개공중파 방송, 3개케이블 방송



## 4. 대한양돈협회 돼지콜레라 방역활동

### 가. 1999년

- 1999년 3월 3일 : 최 회장,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현지점검—강원도 철원  
양돈협회 최상백 회장은 1999년 3월 3일 회장 취임후 처음으로 강원도협의회(회장 원종억)와 철원지부(지부장 성시명), 포천지부(지부장 김상식)를 차례로 방문하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양돈농가들에게 당부했다.  
최회장은 이 자리에서 돼지콜레라 박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돼지콜레라 예방약은 접종시기와 부위, 접종량을 정확하게 주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회장은 철원군내 소재한 양돈장을 직접 방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태를 현지 점검하고, 양돈농가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1999년 4월 10일 : 돼지콜레라 박멸 전국 순회 캠페인 개최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전국 순회 캠페인(교육 및 결의)이 본회 등 양돈관련 단체의 공동 주최와 한국농어민신문사 등의 주관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됐다.
  - ▷ 4월 13일 14:00 : 경남 진주산업대 종합실험관
  - ▷ 4월 16일 14:00 : 전북 축협김제육가공공장
  - ▷ 4월 22일 14:00 : 충남 홍성문화예술회관
  - ▷ 4월 23일 14:00 : 충북 진천축산업협동조합
  - ▷ 4월 27일 14:00 : 전남 나주축산업협동조합
  
- 1999년 4월 10일 :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공식 출범—민간 차원  
민간 차원에서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전담할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가 공식 발족되었다.  
양돈협회 최상백 회장과 이길재 한국양돈연구회장(국회의원), 박창정 농림부 차관보,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박순용 축협중앙회장, 이병석 한국사료협회장, 서정범 한국동물약품협회장, 김영석 한국동물약품유통협회장, 진길부 경기동남부양돈방역협의회장, 윤희진 전국GGP협회장,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사장, 윤봉중 축산신문사장, 전정희 농수축산신문사장 등 23개 양돈관련 기관, 단체, 업체 대표들은 4월15일 오후 4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동 본부를 공식 발족시켰다.  
이날 참석자들은 창립선언문을 채택하는 한편, 동 본부를 사단법인으로 하고 돼지콜레라를 박

멸하는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기로 하는 내용의 정관(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참석자들은 공동본부장에 최상백 대한양돈협회장과 이길재 한국양돈연구회장, 이우재 대한수의사회장, 박순용 축협중앙회장, 이병석 한국사료협회장을 선출하고, 상임본부장에 최상백 회장을 선출했다. 집행위원장에는 황민영 한국농어민신문사장을 선출하고, 참여단체장 23명과 공동본부장, 집행위원장을 이사로 선출했다.

참석자들은 금년 5월30일까지 조직정비 및 실태조사 실시(1단계), 6월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00% 예방접종 실시 및 유지(2단계), 내년 9월1일부터 2001년 3월31일까지 예방접종 중단 및 청정화 확인(3단계)을 하는 사업계획(안)과 54억원의 99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동 대책본부는 돼지콜레라 백신 100% 접종을 목표로 각종 활동을 벌여나가게 되며, 특히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박멸 사업을 종합적으로 체계화 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1999년 10월 10일 : 양돈협회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1차로 5천만원 기탁

양돈협회는 9월30일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5천만원을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에 기탁했다. 협회는 지난 9월6일부터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두 2억5천5백만원의 박멸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중 5천만원을 1차로 돼지콜레라 비대본에 전달한 것이다. 또한 10월1일에는 우성사료(주)(대표 김영호)가 5천만원, (주)대상사료(대표 마재현)가 4천만원, (주)한국양돈진흥사업회(대표 전동용)와 메리알 코리아(주)(대표 이성희)가 각각 5백만원씩의 박멸기금을 돼지콜레라 비대본에 전달하는 등 양돈업계 각계 각층에서 크고 작은 정성이 답지하고 있다. 10월5일 현재 돼지콜레라 비대본에 접수된 박멸기금은 모두 6억4천6백28만원이다.

## 나. 2000년

#### □ 2000년 2월 20일 : "돼지질병 예방 프로그램" 포스터 제작·보급

양돈협회는 돼지 질병으로 인한 양돈농가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과 공동으로 '돼지 질병 예방프로그램' 포스터를 제작하여 지난 2월20일 전국의 양돈농가들에게 배부했다.

협회 88개 지부(지회)를 통해 전국으로 보급된 돼지질병 예방 프로그램 포스터에는 돼지콜레라 등 돼지의 주요 전염병 12가지의 예방약 접종시기와 방법 등이 성장 단계별로 표기되어 있다. 포스터에는 이외에도 '예방약 사용할 때 유의사항', '질병 발생시 조치요령', '차단방역 요령', '내 외부 기생충 구제요령'이 포함되어 있어 양돈장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협회는 포스터를 양돈장을 비롯, 지부 사무실 및 시·군청, 축협, 농업기술센터 등 양돈농가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부착하여 철저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강화하는 등 등

적극적인 질병예방 활동을 벌였다.

□ 2000년 4월 10일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시 농가보상대책 등 건의

양돈협회는 4월 6일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와 양돈농가들이 입는 피해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등을 종합한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시의 대책(안)”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 대책(안)에서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에 대해 집중관리자(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동제한과 출입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가격을 축협조사월보 기준에서 30kg이하 자돈은 두당 6만5천원(등기된 종돈용 자돈 : 13만원), 육성돈(31-60kg) 및 성돈은 시가 기준 100%9등기된 육성돈 : 20만원)로 해줄 것과 오세스키 양성 모돈은 25만원에서 후보모돈은 35만원, 8개월령 이상 모돈은 40만원(산차별 조정) ◆8개월령 이상 용돈은 50만원으로 ◆종돈장에 등록된 모돈은 별도 감정가로 해줄 것 등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는 등 현실화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살처분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함께, 각종 정책자금 상환연기(3년), 제도금융의 대출금 상환연기(3년), 각종 대출금의 이자납부 연기 및 감면(2년), 재입식 정책자금의 지원, 경영자금 추가지원(이동제한 지역내 농가)등의 지원을 해줄 것과 자조적 청정화기금 조성시 기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양돈협회 특별대책팀(Task Force : 팀장 한백용 부회장)이 마련한 (안)을 회장단 회의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건의한 것이다.

□ 2000년 6월 8일 : 구제역·돼지콜레라 청정화에 앞장설 것 등 5개항 결의

-양돈협회 임원·지부장 연수회에서

양돈협회회는 지난 6월8일과 9일 양일간 충남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20차 임원·지부장 연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국의 임원·지부장과 총무, 직원 등 1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수회는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돈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향후 양돈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체육대회 등을 통한 한마음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 연수회에서 전국의 임원·지부장 등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공동 방역 사업에 솔선수범할 것 ▲위생적이고 맛있는 돼지고기 생산에 힘쓸 것 ▲가축분뇨의 유기 비료화로 지역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 ▲축산 자조금제도의 입법화로 생업을 지켜 나갈 것 ▲협회를 중심으로 양돈인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 다. 2001년

### □ 2001년 5월 27일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을 위한 공청회

양돈협회는 5월 27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양돈방역대책위원회 및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시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월 1일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부는 예방접종 중단 대비 위험도 평가시험을 위해 전국의 302개 농가, 4,800두를 대상으로 감시돈 시험사업을 오는 9월 20일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중단 후, 재발시 살처분 보상금, 도태 보상금 이외에 대책 마련과 재발시 이동통제 등의 매뉴얼 작성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 라. 2002년

### □ 2002년 4월 19일 : 돼지콜레라 방역자조금 자율 조성·운영키로 양돈협회 이사회, 살처분·이동제한시 농가 영업손실 보상

모돈 두당 5천원, 자돈·비육돈 두당 500원 모금

협회는 지난 4월 19일 충남 소재 동학산장에서 김건태 회장 주재로 이사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이동제한시 양돈농가들이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본회 주관으로 “돼지콜레라 방역자조금”을 조성·운영키로 결정했다.

돼지콜레라 방역자조금 모금액 기준은 모돈(번식돈)은 두당 5천원, 자돈·비육돈은 두당 500원이며, 종돈장은 일관경영농장의 2배이다.

돼지콜레라 방역자조금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살처분되거나 이동제한으로 영업손실을 입었을 때 지급되며, 지급기준은 일관경영농장은 후보돈 입식자금으로 두당 35만원, 자돈을 구입하여 비육하는 농장은 자돈 구입비로 두당 3만5천원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동제한의 경우 30일 기준으로 사육 두당 5,000원씩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같은 안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며, 농림부와 협의의 거쳐 최종 안을 결정하게 된다. 방역자조금은 금년에 집중 모금하고, 내년에는 별도로 모금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긴급 이사회는 돼지콜레라 확산방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고 ▲4월 19일~21일 3일간 집중소독 실시 ▲홍수출하로 인한 돈가하락 방지 ▲방역단 업무 일원화 및 협조체계 강화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2002년 5월 13일 : 돼지 정상출하 및 방역철저 포스터 제작

농림부 · 농협중앙회 공동으로

협회는 5월13일 농림부 및 농협과 공동으로 구제역 발생에 따라 양돈농가들이 해야 할 일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 본회 각 시군 지부와 지역 축산농협 등에 긴급 배포했다.

협회 등은 포스터에서 양축농가들에게 소독 등 철저한 방역과 함께 홍수출하를 자제하고 돼지를 정상적으로 출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포스터에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의심축 신고 및 소독 문의 전화번호(1588-9060, 4060)가 표기되어 있다.

□ 2002년 6월 17일 : ‘돼지콜레라 방역 자조금 공제제도’ 도입 건의

협회는 6월17일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단후 재발시 양돈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림부에 “돼지콜레라 방역자조금 공제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협회는 당초 정부가 백신접종 중단시 발표했던 간접보상 부문에 대한 제도시행이 지연되고 있어 양돈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 2002년 10월 17일 : 돼지콜레라 청정화 위해 살처분 정책 적극 지지

- 전국양돈인들의 다짐 발표

협회는 10월 17일 최근 인천 강화지역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전국 양돈인의 명의로 살처분 정책을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의 전국양돈인들의 다짐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 국무총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총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 각부장관, 언론 등 총 208군데에 보내 전국 양돈인들의 뜻을 전했다.

‘전국양돈인들의 다짐’에서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정책을 적극 지지 ▲다시한번 방역과 위생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각인하여 ▲민·관·군이 모두 협력하여 국경방역을 강화하고, 농장 차단 방역 및 정기적인 소독 실시를 통해 반드시 청정화가 이뤄질 것을 다짐하는 한편 청정화를 통해 양돈농가의 방역과 위생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로 삼아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결의하였다.

□ 2002년 12월 24일 : “돼지콜레라 청정화 기조는 유지돼야”

-회장단, 경기도 지부장 긴급회의 개최

협회는 지난 12월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경기 이천지역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백신접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장단과 경기도내 임원, 지부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김건태 회장을 비롯, 협회 부회장 및 경기도 지부장, 안수환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부장, 윤자현 경기도축산과장 등 총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23일 중앙돼지콜레라방역협의회 결정사항인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강화, 김포, 이천의 발생농장 반경 10km 경계지역내 긴급 예방 접종실시에 대하여 추인하고, 돼지콜레라 청정화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했다.

또한 우선 급하게 강화, 김포, 이천 발생농장 경계지역의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예방접종 실시 후 경기도 지역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를 통한 백신 접종이 검토되어야 하며, 긴급하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나 추후 예방접종축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정부에서 세워주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 2002년 10월 17일 : 돼지콜레라 청정화 위해 살처분 정책 적극 지지

##### - 전국양돈인들의 다짐 발표

협회는 10월 17일 최근 인천 강화지역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전국 양돈인의 명의로 살처분 정책을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의 전국양돈인들의 다짐을 발표하고, 이를 청와대, 국무총리,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총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 각부장관, 언론 등 총 208군데에 보내 전국 양돈인들의 뜻을 전했다.

'전국양돈인들의 다짐'에서는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정책을 적극 지지 ▲다시한번 방역과 위생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각인하여 ▲민·관·군이 모두 협력하여 국경방역을 강화하고, 농장 차단 방역 및 정기적인 소독 실시를 통해 반드시 청정화가 이뤄질 것을 다짐하는 한편 청정화를 통해 양돈농가의 방역과 위생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기회로 삼아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결의하였다.

## 마. 2003년

#### □ 2003년 1월 12일 : 살처분용 돼지 전살차량 제작·운영

##### - 국내외 최초 제작, 10초당 1두 전살 가능

협회는 지난 1월 21일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 살처분 할 수 있는 돼지 전살 차량을 국내외 최초로 제작하고, 추후 전염병 발생시 현장에 즉시 투입토록 했다.

이번에 제작한 전살차량은 600볼트 이상의 고전압을 이용, 전기충격으로 전살시키는 방법으로 살처분 대상 돼지를 10초당 1두씩 전살하는 장치가 탑재되어 있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은 생매장 또는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이뤄져 시각적 거부감과 인력소모가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살처분 작업에 따른 시간 지연 등으로 인해 전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효율적인 살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 2003년 2월 7일 : 경기도,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 워크샵 개최

- 질병방역 및 청정화 위해 모두가 적극적 참여

경기도는 2월 7일 지난해 경기 김포이천지역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그 동안 추진해온 방역에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워크샵을 개최했다.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방역기관, 각 시도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샵은 그동안 구제역돼지콜레라 발생시 중앙과 지방에서 추진해온 방역 대책 업무의 이원화, 각 기관별 역할, 책임, 권한 등의 세분화와 보상금 지원방안 등의 일부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질병방역과 청정화를 위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 모두가 하나되어 철저한 사전준비와 방역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2003년 3월 22일 : KBS 등 언론사에 '돼지콜레라 인체 무해' 계도 요청

- 국회의원, 소비자 단체에도 적극 계도 및 소비확대 요청

협회는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해 지난 3월22일 KBS 등 방송사와 일간지에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돼지고기 섭취를 기피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계도해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협회는 KBS, MBC, SBS, 연합뉴스, 조선동아중앙 등 중앙지 방송통신사와 중앙 일간지에 '양돈농가들은 최근 8개월 이상 생산비 이하의 하락한 돼지가격으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돼지콜레라까지 발생해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양돈업계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돼지콜레라는 오직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가축전염병으로 감염돼지는 모두 살처분매몰하기 때문에 시중에 감염 돼지고기는 전혀 유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돼지콜레라는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해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한편 협회는 여야당 국회의원 270명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4개 소비자단체에도 서신을 보내 적극 계도 해줄 것을 요청했다.

□ 2003년 3월 21일 : 돼지콜레라 비상 대책상황실 근무자 파견

협회는 최근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 발생함에 따라 3월 21일 비상 근무자 1명을 농림부 돼지콜레라 비상대책상황실에 파견했다.

□ 2003년 3월 30일 :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 11대 수칙 홍보

1. 1일 1회 이상 돈사와 주변의 소독을 실시한다.
2. 농장 입구에 체인, 파이프 등으로 차단줄을 설치한다.
3. 농장 입구에 소독실을 상시 운영하고, 전 출입차량을 소독한다.
4. 모든 출입자는 방역복과 장화를 착용한다.
5. 농장 근무자는 별도의 작업복을 입는다.
6. 지정된 방역, 사양 프로그램으로 기본관리를 충실히 한다.
7. 적절한 온도, 습도, 환기 관리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한다.
8. 홍수 출하를 자제하고, 약속된 날짜에 출하한다.
9. 1일 2회 이상 모든 돼지를 관찰하고, 의심돈은 신고한다.
10. 지역 이기주의적인 언행은 삼가하고, 양돈산업 전체를 생각한다.
11. 양돈협회, 농림부 등에서 발표하는 공식정보를 활용한다.

▲ 신고전화 : 1588-9060

## 바. 2004년

□ 2004년 2월 3일 : 돈열 발생농가에 대해 고발 등 강력 조치키로

- 2월 19일 aT센터에서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3일 회의실에서 김건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제 1차 정기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돈열 발생농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 2004년 3월 10일 : 돈열 전파종돈장 철저한 재조사 요청

- 검찰 지난 2월 30일 '혐의 없음' 처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지난 2003년 3월 김포시청이 관내 돈열 발생과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전염병 신고의무'와 '사체의 처분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며 종돈장인 S축산의 사법조치를 요구한데 대해 혐의여부 조사 결과 지난 1월 30일 '혐의 없음'으로 처리했다.

이에 본회는 경기도에 대해 돈열 재발 방지를 통한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양돈업계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S축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수과원의 2002-2003 돈열 역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S축산 돼지 분양농장 81개중 38개 농장(46.9%)에서 발생했으며, 44개 분양농장의 입식돈 및 동거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입식돈 검사가 가능한 39개 농장중 32개 농장(82.1%)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이중 20개 농장(51.3%)은 입식돈에서만 양성이 나타나는 등 다수의 양돈장이 S축산의 돈열 감염 후보돈을 분양받음으로



써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S축산 고소고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정확한 재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 2004년 3월 10일 : 향후 돈열 발생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지도 철저 요청

협회는 최근 농림부에 돈열 발생농가에 대한 과태료가 철저히 부과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돈열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6일 충북 영동에서 돈열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수입을 추진중인 필리핀 정부가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돼지고기의 수입을 거부하는 등 한두 농가의 소홀한 방역과 예방접종 미비로 국내 양돈산업 및 전국 양돈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국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돈열 발생농장에 대해 철저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줄 것과, 해외로부터의 가축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돈열 항체율이 낮은 양돈농가와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해 돈열 예방접종 및 방역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도 및 시·군을 통해 지도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 2004년 2월 20일 : 철저한 차단방역! 질병예방의 시작입니다

- 양돈협, 방역 및 안전 돼지고기 생산 포스터 배부

양돈협회는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이 점차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시점에 맞춰 안전 돼지고기 생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와 함께 양돈산업에 있어서 축산업 방역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방역 포스터도 제작했다.

양돈협회는 포스터를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및 가축방역과, 113개 양돈협회 지부(회), 142개 지역축협양돈조합, 농협중앙회 양돈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양돈협회 12검정소 등 관련 단체 및 기관 등 축산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배부해 방역 및 안전 돼지고기 생산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특히 방역 포스터는 94개의 도축장에도 배부되었다.

## ○ 제9장

# 돼지콜레라 방역추진 미담 사례 등

# 여 백

## 1. 돼지콜레라 박멸 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김 봉 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돼지콜레라를 List A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의 청정국은 발생국의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이 2001년까지 이 병을 박멸하겠다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 일본 돼지고기의 수출이 국내 양돈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우리 나라도 돼지콜레라를 2001년까지 반드시 박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미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를 위시한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 돈육의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제정하여 '97년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돈의 돈육이나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의 농장이나 도축장에서 처리된 돈육은 수입을 금지할 것임을 최근 우리 정부 당국에 통고해 온 바 있다. 우리 정부나 양돈업계가 지향하는 수출주도형 양돈은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을 과감히 제거해야만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이 우리 수의 및 양돈분야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었으며, WTO 체제하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위생적인 돈육이 아니고서는

수출은 고사하고 내수용으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입장이 못된다.

최근에 일본 정부가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출용 돼지고기는 콜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10km 이상 격리되어 출하전 40일 이상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었던 농장의 돼지로서 돼지콜레라 백신을 맞지 않은 돼지에서 유래된 것이어야 한다. ② 수출돈육 가공장은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10km 밖에 위치하여야 하며 최소한 40일 이상 돼지 콜레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돼지를 반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③ 돈육가공품은 가열처리 또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살균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것을 더욱 직설적으로 요약하면 일본은 이제부터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 돼지 및 돈육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 돼지 콜레라가 박멸되었음을 선포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박멸된 것으로 자신하고 비발생국가에서 이미 취하고 있는 조치를 따를 것임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돼지콜레라를 돼지 구제역과 같은 맥락에서 다룬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하며 우리가 현재까지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감이 있었음을 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제정한 국제동물 위생규약(International Animal Health Code)에는“돼지콜레

라 비발생국으로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한다. 단,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과 살처분정책(Vaccination and Stamping-out Policy)을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최종발생 후 1년으로 하고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정책만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6개월을 적용한다(OIE Code: Article 2.1.13.2).”라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돼지콜레라에 관한 규정에 충족하기 위하여 제64차 국제수역사무국 총회(1996. 5. 20~24)에서“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이 필요없는 청정국임을 선언할 목적으로 1996년 4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박멸 5개년 사업을 착수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에 박멸사업 착수보고에 그치지 않고 그간 차질 없이 계획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3개 현에서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하는 단계에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보화시대에는 한 국가가 자국내에 돼지콜레라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소 라고 입으로만 선언한다고 해서 공인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시되어야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본은 1993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발생이 없으며 돼지콜레라 백신 접종율도 85%를 상회하고 있어 이미 돼지콜레라가 근절된 상태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없이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국임을 입증하기 위한 최종단계의 박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현 상태대로 진행된다면 2001년 4월부터는 돼지콜레라백신 필요 없는 비발생국의 조건을 완전히 갖추게 됨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돼지콜레라 청정국가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보인다.

## 1. 일본의 돼지콜레라 박멸 어디까지 왔나?

일본이 당초 계획대로 금년 4월부터 사정이 허락하는 몇몇 현에서 돼지콜레라백신 접종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내년 10월부터는 일본 전역에 돼지콜레라백신을 금지하고 6개월 후인 2001년 4월 1일을 기해 비발생국가 선언을 위한 사업을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약을 100% 그대로 충족하는 박멸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당국의 빈틈없는 계획 및 차질없이 계획을 준수하는 양돈인과 방역당국의 실천의지는 부럽기 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일본의 박멸성공은 필연적인 결과로 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2001년 4월 1일부터는 우리 나라에서 돼지 콜레라가 박멸되지 않는 한 일본에 돼지고기 수출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2000년 10월 1일을 기하여 일본이 전면적으로 백신금지조치를 발동하면서 백신접종돈육의 수입을 금지할 것도 예상되므로 2000년 10월 1일부터는 돈육의 대일수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전망된다.

현재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1992년말 이후 무려 6년 이상 없으므로 이미 돼

지콜레라 비발생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돼지콜레라백신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콜레라가 완전히 박멸되었다고 공식화할 수 없는 입장이다. 해서 당분간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약에 정한 위생조건을 그대로 요구하기는 무리가 따르므로 돼지콜레라 백신 비접종돈의 돈육만을 고집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발생지역 반경 10km 밖에 있는 양돈장에서 사육된 돼지와 발생지역 10km 이외 지역의 도축장에서 처리가공된 돼지고기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현재 우리 여건과 입장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크게 반발할 입장이 못되리라고 전망된다.

## 2. 우리도 돼지콜레라 박멸할 수 있다

이미 우리도 돼지콜레라 박멸을 2001년에 선언할 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2km 그대로하자, 아니 3km 정도로 하자는 등의 주장을 펴는 것이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사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쉽게 해답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본처럼 6년간 돼지콜레라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 백신비접종 선언을 한 시점에 돼지콜레라 발생국가의 돼지고기를 아무 조건 없이 수입해도 좋다고 어느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 과연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를 박멸할 수 있을까? 일본이 과연 돼지콜레라 발생국가의 돼지고기 수입금지조치를 2001년부터 취할까? 이러한 의문은 최근 일본의 수입돈육 위생조건 제시로 말끔히 해소(?)되었다고 생각된다.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예측하고 돼지콜레라 박멸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한 우리 방역당국의 안목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런 대비가 없이 오늘에 임하였더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은 대책수립 당시 상당수 양돈인들이 반신반의하였던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있는 대만이 일본에 가장 많이 돈육을 수출하지 않느냐는 어느 정책 당국자의 질문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계획대로 박멸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양돈업계와 방역당국에 일본이 느닷없이 제시한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난 한 예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양돈산업에 돼지고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생산량의 16~17% 정도임으로 돼지고기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그 파장은 아주 심각하게 돈가에 반영되게 되어 있다. 많은 양돈관계자들은 대일수출이 중단되면 공급과잉, 국내 돈가의 폭락, 이로 인한 투매현상으로 양돈산업의 몰락이 우려되는 사태로 진전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일본과 거의 같은 시기인 1997년 7월부터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수행하기로 대책은 수립하였으나 실행 예산부족, 양돈인들의 참여의식 결여 등이 점철되어 1999년 1월 현재 돼지콜레

라백신 접종율이 72.7% 수준이며 금년에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발생건수 및 두수가 일본에서 최종 발생보고가 있는 1992년 이전 5년의 발생 건수와 두수(88~92년에 3건 115두 발생)보다도 많으니 우리보다도 일본이 앞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무조치 없이 이대로 한국 돼지고기 수입을 하다가는 자국의 돼지콜레라 박멸계획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일본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던 대만이 구제역 때문에 한점의 돈육도 수출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일본이 돼지콜레라 박멸을 선언하면 그 날부터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의 돈육수입을 금지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분명함을 이번 수입돈육 위생조건 사건을 통하여 확인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 돈육을 수출하는 미국, 덴마크, 캐나다, 호주 등은 돼지콜레라 비발생국가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아무리 구호로만 외쳐보아야 소용없음을 하루 속히 인식하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돼지콜레라 박멸의 긴박성을 한번이라도 저녁 9시 뉴스시간에 홍보만 했더라면 돼지콜레라백신 접종율이 이렇게 낮지는 않았을 텐데. 양돈인 들의 단체인 양돈조합이나 협회에서 불협화음 없이 돼지콜레라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더라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을 텐데. 돼지콜레라 박멸 같은 국가방역사업을 자율방역이다 뭐다 해서 방역책임을 전가(?)한 사태가 없었다면 지금쯤은 많은 진전을 보았을 텐데. 시군공동방역사업단의 구성 및 활동개시가 바로 박멸사업의 시작인데 돼지콜레라 등 중요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일선 시군공동방역사업단의 구성을 1년에 몇 개씩 하도록 유도하는 정도의 근절대책을 수행한다면 승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때이다.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차원을 높여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이 살아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인 자조금제도를 양돈인 스스로 솔선하여 만들어 나간다면 이 과업이 더욱 보람있게 성공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돼지콜레라를 박멸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양돈산업으로 면모를 일신하던지 아니면 돼지콜레라의 위협부담을 안고 명맥유지에 급급한 사양산업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감당하는 길 밖에 없다.

우리가 단시간에 돼지콜레라를 박멸하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999년 말까지는 콜레라백신 접종율을 100% 선까지 기필코 올려야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두수 사양농가 돼지, 옥외사육 돼지, 부실경영농가 돼지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로 일제백신접종을 강력히 추진해야하며 부단한 홍보와 교육으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은 구호만이 아닌 실질적 의무접종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되어야 한다.

시군공동방역사업단이 한곳도 빠짐없이 구성되어 동시에 콜레라 근절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도록모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을 위하여 제작 배포한“우리 나라 양돈인의 간절한 소망 돼지콜레라 근절 요령”과“돼지콜레라 방역지침서”에 따라 수행하면 우리도 돼지콜레라를 박멸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00년 상반기는 돼지콜레라의 발생 추적 및 확인을 확대하여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으면 백신 금지 조치를 일본과 동일선상에서 취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도 일본에 뒤지지 않게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를 실질적으로 박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총 집결하여 이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돼지콜레라 박멸은 우리 양돈산업의 존폐를 가늠할 중대 현안이므로 방역당국과 우리 양돈인 모두가 시급히 총력 대응하여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해 내어야 한다.

그동안 여러모로 미진하던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이 금년 초부터 가속도가 붙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 사업을 이끌고 갈 주체가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아 관은 관대로 축협은 축협대로 양돈협회는 협회대로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감이 있었다. 수의과학검역원이 1999년도를 돼지콜레라근절 D-1년으로 설정하고 근절사업단 설치 및 지역담당제 도입 등 일련의 강도 높은 대책을 수행해오고 있어 큰 진전이 나타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지난 1월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율이 72.7%이던 것이 2월 75.0%, 3월 81.6%로 급상승하고 있음은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 현지점검반 활동 강화, 백신 비접종농가에 대한 과태료부과, 백신비접종농도 축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9월경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항체양성율이 90%를 상회할 것이 예상되므로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종식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 돼지 주사 놓기도 힘들어 빼먹기도 한다는데 그보다 몇 배 힘든 돼지 채혈하러 농장과 도축장을 누비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직원과 현장확인점검, 야외바이러스 추적조사, 항체가 측정을 위해 밤을 지새는 검역원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가 있기에 우리의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간 축적한 방역기술이 십분 발휘되어 차질 없이 현장에 접목될 여건이 마련되므로 앞이 보인다고 자신할 수 있다.

지역별 농장별 돼지콜레라 항체가 추이조사, 야외바이러스 유무확인, 멧돼지 등의 감염여부 확인 및 전파차단조치 등 박멸 확인 및 유지를 위한 제반 기술적 행정적 기반 구축은 물론 단기간 박멸에 따른 후속조치, 재발생을 대비한 긴급조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모든 일이 검역원 관계자 여러분과 방역관련 수의사 여러분의 몫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금년 말까지 우리 양돈인 모두는 규정대로 100%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하여 이 병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내년에는 우리도 일본과 같이 돼지콜레라백신 접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야 한다.

이런 시점에 양돈협회를 위시한 관련업계에서 돼지콜레라 박멸을 민간차원에서 전담할“돼지콜레



라박멸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하여 그간 미진하였던 양돈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읍면 단위까지 조속히 확산되고 있어 대단히 다행스럽다.

돼지콜레라박멸 비상대책본부의 출범은 우리 나라에서도 생산자들이 단결하여 관련업계와 더불어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쾌거이므로 이의 성공을 위해 우리 양돈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물러설 여지도 없으며 시간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비장한 각오로 돼지콜레라 박멸 전선에 임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우리의 저력을 과시할 때가 왔기에 더욱 분발하여야 한다.

(수의과학검역원 검역정보 제4호 : 1999. 6월 기고)

## 2. 돼지콜레라 근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 봉 환 교수

### 1. 머리말

“돼지콜레라 근절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우리 방역당국과 양돈인 모두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의 각오로 돼지콜레라를 이 땅에서 근절해 보고자 모든 노력을 다 쏟고 있다. '99년 초 75% 안팎이던 백신접종률이 '99년 말에는 95%로 급상승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와 노력이 양돈현장에서 가시화 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돼지콜레라 등 주요 가축 전염병 박멸계획이 1996년 4월에 성안되어 동년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으나 예산사정상 여의치 않았으며,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으나 방역주체가 뚜렷하지 않았고 농장 자율방역에 호소하였으나 큰 호응을 얻지 못하여 지지부진 하였었다. 일본의 돼지콜레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우리의 돈육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1997~98년에 구체적으로 드러남으로써 돈육수출 없이 우리 양돈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실도 피부에 와 닿게 되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린다더니 우리 정부 당국과 양돈업계도 1998년 말에 들어와서야 제법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내 놓게 되었으며, 일선 방역관계자들의 헌신적 노력이 점철되고 양돈인들의 협조가 순조로워 단시일내에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다.

돼지콜레라가 우리 나라에서 발생 확인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수 십년간 계속하여 발생하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100% 백신접종을 목표로 과감하게 추진한 1년여의 노력만으로 과연 돼지콜레라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김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면역형성률(또는 백신접종률)이 70% 수준에 머물던 것을 단기간 내에 95% 이상을 달성한 저력으로 필요 불가결한 조치들을 신중하게 계속하면 우리도 돼지콜레라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돼지콜레라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피력하고자 한다.

## 2. 돼지콜레라 근절의 필요성

왜 돼지콜레라를 근절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이미 널리 홍보되어 있기에 제삼 강조할 필요성이 없을지도 모르나,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양돈업계의 사활이 달린 문제이다. '96년에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당시만 해도 농림부 고위층과 양돈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수의계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사실은 대책(안)을 보고할 때에 나타난 반응으로 정부의 큰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과 관련 업계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당시 수의과학연구소 관계관과 필자는 큰 실망을 하였던 기억이 새롭다. “대만에서는 돼지콜레라가 근절되었습니까? 그리고 대만은 세계에서 돈육을 가장 많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돼지콜레라 근절과 돈육수출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가 하면 일본에서도 아직 돼지콜레라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돈육수출과 돼지콜레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양돈업계 일부에서 있었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대만의 구제역 사건, 네덜란드의 돼지콜레라 사건 등이 1997년에 터져 나오자 정부 당국과 식견있는 양돈인들이 정신을 가다듬은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강 건너 불이 지 소규모 양돈인에게는 심각하게 와 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일본이 우리 나라 돈육의 수입조건을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과 주변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처리된 돈육이 아니어야 하며, 반드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돈의 돈육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통보해 오후부터 수출양돈업계를 중심으로 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제는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하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과잉공급으로 돈육의 가격하락, 이에 따른 투매현상과 소비자의 국내산 돈육기피(?) 현상까지 겹치면 양돈산업이 붕괴의 위기로 몰릴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돼지콜레라는 돼지질병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의 하나이며 전파속도가 빨라 순식간에 널리 퍼지고 치료방법이 없어 발병농장의 돼지는 대부분 다 폐사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어 있다. 이렇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여 이의 발생과 피해를 막는 정책을 50여년간 계속 펴고 있었다. 선진 축산국의 경우 돼지콜레라를 근절하는 것이 백신접종 정책보다는 더욱 경제적이란 이유로 근절정책을 펴 성공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WTO 체제하에서는 국제교역

시 돼지 및 돈육의 위생조건으로 제시하여 청정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 자국의 양돈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돼지콜레라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하고 구제역 비발생국으로 계속 남아 있지 않는 한 대일돈육수출은 생각지도 말고 값싼 중국의 돈육이 우리 나라에 물밀 듯이 밀려온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국가방역당국과 우리 양돈인, 유관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돼지콜레라 근절과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 3. 돼지콜레라 근절은 수의학적 전쟁이다.

돼지콜레라 근절이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의 돼지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일한 숙주동물인 돼지에서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우리 나라 전체 돼지에서 이 바이러스를 몰라내는 방법은 봉이 김선달 꼽추고치는 식이 아닌 수의과학적인 접근으로만 가능한 선진과학기술의 정교한 현장접목 사업이다. 범국가적으로 돼지콜레라 박멸을 성공한 나라들의 면면과 현재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수의학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모두 뛰어난 국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주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구라파에서는 영국을 위시하여 덴마크, 수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제국을 포함한 서유럽 여러 나라들,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비 발생국들이다. 돼지콜레라가 가장 문제시 되는 대륙은 불행하게도 아시아국가이며,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다.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주로 알려져 있으며,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는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중에서 지난 수년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유일한 국가이며, 생독백신의 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발생을 근절한 모범 예로 인정되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돼지콜레라 근절은 같은 기술적 맥락에 기초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일본보다 단시일내에 소기의 성과를 올려야 하는 국가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과감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은 우리 나라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돼지가 백신접종 되어 면역이 형성되면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 1년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으면 우리나라 돼지에는 야외 바이러스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어 백신접종을 중단할 수 있고 백신접종 중단후 6개월 이상 발생이 없으면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종식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다. 100% 백신접종 및 면역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4060 작전이 나왔고 백신불성실 농가 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강화를 위한 지역담당제가 추진되었고 경기 용인지역 등 과거 2년간 발생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관리를 하는가 하면, 이것도 부족하여 양돈관계인과 단체가 주축이 되어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하여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으며, 농장 채혈검사를 강화하여 면역형성 상태를 점검하고 이의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캠페인

을 벌리고 있다.

방역당국과 양돈관련단체, 양돈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간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다.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돼지에 전신 감염함으로 중화항체가 방어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야외 바이러스의 감염은 불가능하며, 감염 회복돈 중에서 간헐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설하는 돈군에서 백신접종돈 중에서 중화항체가 감염방어 수준 이하로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항체가 소실된 아군(subpopulation)이 있다면 감염할 수 있어 바이러스를 계속 배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므로 소 두수 발병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현재 우리 나라의 돈군에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지만 만성적으로 감염하여 바이러스를 배설하고 있는 돼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이런 관점에서 항체검사와 더불어 항원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철저히 하여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정착할 기회와 여건을 뿌리채 없애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신접종 여부를 실험실에서 밝히며 백신접종 돈군에서 병원체 유무를 밝히는 데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일을 수행할 여건을 우리 방역당국이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아시아 국가중에서 이런 일을 무난히 해낼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며, 대만이 어느 정도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최첨단 기술과 무기는 확보되었지만 왜 우리가 배수진을 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양돈인이 더러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전국적으로 1,362호의 양돈노가에서 채혈한 13,693두에 대한 혈청검사에서 개체별 양성률은 95.8%에 달하지만 농장별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가 4.7%(67 농가)나 되었다. 일본과 같이 오는 10월에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농가의 돼지가 빠짐없이 백신접종 되어야 하는 데도 아직도 백신접종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경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항체양성률 80% 미만 농가가 나온 해당 시·군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각 시도에 지시하였다고 한다.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현지 점검과 항체양성률 80%미만 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4. 계획대로 오는 10월에 예방접종 중단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오는 10월 1일에 일본이 백신접종을 전면 중단하는 일정에 뒤지지 않게 백신접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 백신접종을 중단한 상태에서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돼지콜레라가 근절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돼지콜레라 발생국가 또는 지역에서 철저한 백신접종으로 발생을 최소화 하고 발병돈군에 대해서는 살처분 정책을 강력히 수행하여 병원소를 스탬핑 아웃(stamping out)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접종 중단이 쉽지 않다. 백신접

중 캠페인을 벌릴 때에는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다가 접종중지를 하자고 하면 더 열심히 백신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청개구리 양돈인이 있을 수 있다. 백신접종 중단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백신의 접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우리 나라 전역에서 최소 1년간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작년 8월에 경기도 용인지방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금년 8월 말 이전에 어느 한 곳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물 건너 간 것이다라고 생각해야한다. 항간에 노출되지 않은 발생 예가 있다느니 하는 의문점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유자돈 폐사율이 높거나 위약돈이 문제되는 농장이 노출되어 야외 바이러스가 없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 돼지콜레라 항체양성률이 최소 1년간 일정수준 이상(가능하면 95%) 유지되어 전 양돈농가의 백신접종률 및 항체양성률이 명실공히 완벽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육돼지와 야생 돼지에서 야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표본추출조사에서 우리 나라의 돼지에 백신바이러스 이외의 다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야생 멧돼지에 대한 항원검사는 여러 면에서 중요시 되며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애로가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두수의 표본채취를 위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돼지의 이동통제, 특히 광역 지자체간의 이동통제와 떨어돼지의 무분별한 이동이 차단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축장의 위생강화로 위생적 돈육처리 가공은 물론 도축장을 통한 질병의 전파차단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공항과 항만을 통한 돼지고기의 밀수 또는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해외 특히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국가로부터 돼지콜레라바이러스의 유입이 차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신접종 중단을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백신접종 중단을 위한 전제조건의 이행여부와 백신접종후에 취할 대책 등에 대한 평가가 방역당국, 관련단체, 양돈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중단 후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만반의 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 5. 백신접종 중지후 대책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한다고 했는데도 여기 저기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바 있는 지난 수년간의 우리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전업규모의 양돈인들은 백신접종 중단 후에 혹시나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것은 아닌가 하고 불안해 하고 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만약의 돌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의 하나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역대책이 수립되어 양돈인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백신접종 중단을 유도할 수 있다. 만약의 사태 발생시 살처분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새로 양돈을 경영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양돈인 스스로도 양돈업은 스스로 지킨다는 신념으로 자조금 제도의 도입 등 자립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돼지콜레라 근절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양돈업은 다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울 만큼 돼지콜레라에 대한 강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돼지콜레라의 근절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지 이것 자체가 양돈의 생산성 또는 돈육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생산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돼지콜레라 등 전염성 질병은 돼지의 이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돼지 질병의 방역은 돼지의 이동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 위생상태가 좋은 종돈장의 건강한 돼지만이 비육농장으로 이동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값싼 소위 떨어뜨리는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돼지질병의 전파 주범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팔지도 말고 사지도 않는 양돈인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돼지콜레라 근절의 여세를 몰아 일부 지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오제스키병의 근절을 추진하고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설사병과 호흡기복합증후군에 대한 방제대책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라인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돈육의 안전성 확보 및 전염성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축장 위생의 강화가 시급하다. 권역별로 현대화된 도축시설에서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도축 및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돈육의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모든 포크체인현장(from stable to table)에 접목되어야 한다.

## 6. 맺는말

일본이 계획대로 금년 10월에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중단하고 6개월 후인 2001년 4월, 또는 2001년 10월에 돼지콜레라 청정국 선언을 하면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돼지에 관련되는 OIE A급 질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 곧바로 일본은 이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는 해외악성전염병 발생국가로 지정하고 자국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로부터 돈육 및 돼지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가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하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의 국내 유입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된다. 만약 최대 불행한 시나리오인 돼지콜레라 근절 실패에다 구제역 국내유입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양돈과 젓소와 한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축산업의 기반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값싼 중국의 돈육과 우육의 수입을 막을 방패막이가 허물어져 물밀 듯이 몰려 올 중국의 돈육과 우육으로 우리 축산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 너무도 자명하게 보임은 필자만의 기우일까?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게끔 방역 당국, 관련단체, 학계는 물론 특히 우리 양돈인 들이 한 목소리로 돼지콜레라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양돈관련 단체에서는 양돈인들의 자활의지를 고양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돼지콜레라를 성공리에 근절하고 돼지오제스키병도 없애고 구제역의 유입도 차단하여 우리 양돈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 시대 양돈인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기필코 이 과업을 이룩합시다.

(양돈연구 2000. 4월호 기고)

### 3. 무너진 돼지콜레라 청정화 탐-아!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구관 문운경 박사

#### 1. 서론

돼지콜레라 청정화는 급속한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대적인 사업이었다. 대일 돈육수출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커나 큰 걸림돌로 작용되었고, 또한 향후 중국 등의 용단폭격에 양돈 산업을 지켜가기 위한 교육책이었기도 했다. 그렇게 시작하여 이룩했던 돼지콜레라 청정화 공든탑이 현재 무너져 버렸지만 돼지콜레라 청정화 승패과정에서 가축방역당국과 양돈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구제역,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돼지콜레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질병 발생시 현장에서 부검 및 진단,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면서 질병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를 하면서 병원체와 감수성숙주에만 주로 매달려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동안 전파경로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가축질병은 환축이 직접 말을 하지는 않지만 살아서는 임상증상으로 죽어서는 부검 및 병리학적 소견을 통해 말을 해왔었다. 그러나 질병유입 및 전파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파경로 파악은 축주 및 주변인들의 절대적인 협조 및 신뢰 하에 진실게임이 이루어져도 원인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2002년 강원 철원의 돼지콜레라 및 경기 안성의 돼지 구제역 발생 등으로 1년 넘게 현장 역학조사를 수행하면서 바라본 정책들은 현장과는 많은 괴리감이 있었다. 강원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1년 이상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를 위해 동분서주를 했지만 현장의 관계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전면적인 예방접종 결정 소식을 듣고 시·도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울분을 토했던 것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는 시점에서 가축방역지원본부로부터 돼지콜레라 백서에 수록 할 체험수기를 요청 받아 망설임 끝에 내린 결론은 가축방역분야에서 첫 시도된 청정화 사례가 실패로 된 만큼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계획 수립부터 발생시의 역학조사까지 산증인 중에 한 사람으로써 역사적 평가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향후 각종 가축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시 타산지석으로 삼기위해서라도 돼지콜레라 역학조사과정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가감 없이 솔회하고자 한다.

## 2. 제한적인 돼지콜레라 발생

### 가. 강원도 철원지역

2002년 2월 1일 역학조사과가 탄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설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 동안 현장 경험에서 나온 꼭 필요한 시급성을 요하는 연구라고 생각한 “국가가축질병에 철방역시스템(NAHIMS) 구축” 및 “웹 기반 가축전염병 통계관리시스템 개발”과 “국내 돼지콜레라 발생위험 평가모델 개발” 등 3과제를 제안하여 심사를 받고 있었다. 제안한 과제 중 “국내 돼지콜레라 발생위험평가모델 개발”이라는 제안 과제에 대하여 심사위원들과 많이 부딪혔다. 이미 돼지콜레라가 청정화 되었는데 그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쓸데없는 연구를 하려고 한다면서 막무가내로 몰아쳤다. 질병이 터지면 현장에 역학조사하려 갈 사람이 무슨 연구과제가 많으냐? 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돼지콜레라는 청정화 되었지만 구제역처럼 외국으로부터 새롭게 돼지콜레라가 유입되거나 혹은 국내 잠복해 있던 것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청정화이후라도 돼지콜레라 발생에 관한 위험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고 또한 고집을 피워서(?) 겨우 과제가 채택되었다.

그날로부터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2002.4.16일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고 있는데 방역부장님으로부터 강원 철원지역에서 돼지콜레라 의심축이 발생하였으니 빨리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왔다.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일반직원들은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였고 부장님과 일부 간부진들만이 알고 있었고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다. 원장님은 지원 초도순시 중에 급히 철원 발생 현장으로 가기위해 상경하는 중이었다. 출발할 준비를 갖추고 최단코스를 택해 연구부장님과 두분 과장님들과 함께 비상등을 켜 상태로 현지로 급히 내달렸다. 현장은 긴급 방역조치를 한다고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고, 강원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원장님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임상을 관찰해보니 아주 전형적인 돼지콜레라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질병경과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즉시 발생농장의 축주를 찾아 타고 간 차량 속에서 긴급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 예상했지만 발생지역은 경기 포천과 동일생활권으로써 예방접종중단이 1년 앞선 돼지콜레라 방역정책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인근농장들은 돼지구입을 포천과 철원지역에 구입하고 있었고, 특히 한 농장은 이들 두 지역의



여러 농장으로부터 자돈을 구입하여 육성비육을 하는 농장으로써 혈청검사에서 동일 돈사내에서도 항체 검출 또는 비 검출로 검사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중단시기가 다른 지역에서 구입된 현장의 특수한 여건이 감안되지 않을 경우는 분석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기본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나서 본격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마을회관에 설치된 현장통제소에 강원도청,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철원군청, 검역원 역학조사반이 합동 상주등 공조체제 구축으로 교육적인 긴급방역업무와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일단 역학조사반이 활동 할 상주 공간을 마련한 후 과원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대부분 과원들은 돼지콜레라를 한번도 직접 보지 않았고 역학조사 및 진단업무를 전혀 해 보지 않은 그야말로 외인구단이었다. 긴급 역학조사를 위해 직원에 대한 교육이 매우 급했다. 그 동안 필자가 경험했던 돼지콜레라 임상증상부터 시작하여 역학조사를 하는 방법과 사람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긴급 역학조사서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준하여 조사토록 하였고, 미흡했던 부분을 재조사하게 하는 등 현장 역학조사교육을 병행한 긴급역학조사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경기 안성 돼지 구제역 발생시 일사천리로 역학조사를 추진할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해 준 계기가 되었다. 역학조사반 현장교육으로 볼 때는 강원 철원의 돼지콜레라 발생이 고맙다(?) 라고 나 할까? 구제역이 먼저 발생하였다면...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속사정도 모르는 상부에서는 무조건 신속한 역학조사결과만을 요구하고 있었다.

역학조사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역학조사반의 활동도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되어가고 안정화 되어갔다. 몇해전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과정에서 시도 간 경계지역이 방역 상 문제점이 많은 곳으로 판단하여 6개월간 포천지역을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돼지이동 및 이곳의 축주들 방역의식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최초 발생농장의 위치는 방역조치를 하기가 아주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뒤로는 산으로 빙 둘러 쌓여있는 상태에서 군부대가 있었고 농장 앞은 군사격장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농장 반경 100m 이내의 4개 농장의 출입자를 통제하기가 매우 용이한 곳으로써 일반 주민들과의 격리된 장소였다. 그러나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 진입로 및 마을회관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납골당이 지역내에 들어선다고 하여 반대데모 등으로 붉게 얼룩진 벽과 현수막이 휘날리고 있고 민심도 나빴다. 역학조사 초기에 할아버지 및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마을회관을 점령군 마냥 차지해버린 우리들에 대하는 시선이 좋을 리 없었다. 그리고 돼지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3km 및 10km 이동통제초소 설치 시 절반은 강 건너 휴전선을 향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 방역 상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었다.

긴급 역학조사는 발생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바이러스 배출시기에 출입한 사람 및 차량들에 대한 추적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출하중개인, 사료 및 동물약품중사자, 수의사 등 출입자에 대한 조사 및 그들의 이동경로에 따라 위험요소별로 긴급 예찰, 채혈

등 특별방역관리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또한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발생농장을 비롯한 인근농장들에 대한 탐문조사 및 긴급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발생농장은 인근농장으로부터 구입한 후보돈으로부터 맨 처음 이상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여 이곳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다. 인근농장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기 전 유행성설사(?)로 많은 폐사로 자체 매몰처리 한바가 있었고, 또한 중국교포 및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또한 한 농장은 돼지콜레라 발생 1개월 전에 약 1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둔 중국교포 부부를 먼저 주목을 하고 추적을 실시하였지만 끝내 그분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 이들은 입국과 동시에 곧 바로 와서 근무를 하다가 나간 점과 돼지콜레라 발생시점과의 연관성, 그 동안 국내에서 없었고 중국 쪽에 나타나는 type2형의 돼지콜레라 발생 건과의 역학적 관련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가 뒷받침이 되었다면 돼지콜레라 원인규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으로 대부분 높은 항체역가를 보유하고 있던 시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양돈장으로 많이 들어온 시기였다. 돼지콜레라 발생 몇 년 전에 인천 강화, 경기 포천·김포 등 북부지역과 강원 철원지역 등에 이미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있었지만 높은 항체역가 유지로 임상증상이 발현되지 않다가 제일 먼저 항체역가가 낮아진 강원 철원지역에서 잠복감염된 것이 발병하였거나 아니면 아직도 높은 항체역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기 포천 등 지역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과 멧돼지 등에 의한 국내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언론에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type2라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양돈인들은 과거에 있던 것이 재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고, 그런 덕분에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관련성에 대하여 조용히 조사를 해 나갈 수 있었다.

철원 북방 휴전선의 비무장지대(DMZ)의 철책선을 통해 멧돼지가 남하할 가능성 조사는 군의 협조를 받아 여러 곳을 관찰한 결과, 우리군의 철저한 경비 하에 있는 철책선을 넘어온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였다. 과거 간혹 수해 등으로 철책이 망가졌을 때 강으로 떠내려 온다든지, 아니면 북쪽의 높은 절벽과 남쪽의 낮은 절벽사이로 월경할 가능성이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다만 동물들의 지상낙원인 비무장지대내의 멧돼지에서 돼지콜레라가 유행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배출한 오염된 침이나 분변 등이 들쥐나 야생조수류에 접촉되어져 남쪽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었다. 최근 들어 과거와 달리 멧돼지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민가를 공격하는 사태도 있고, 발생농장의 인근농장에서도 수년전에 모돈사의 발정기때 암내를 맡고 돈사 안까지 들어온 멧돼지를 잡아먹었다는 사실과 1년전 수해 때 인근마을의 멧돼지 사육장의 울타리가 파손되면서 도망쳐 나간 멧돼지들도 주위에 있다는 이야기 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특수성인 인접한 휴전선을 두고 총을 쏘아 멧돼지를 사냥할 수도 없고, 주위가 온통 지뢰밭이기 때문에 덮을 놓아서 잡기도 힘든 상황으로써 이 지역의 멧돼

지에 대한 혈청검사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중국고포부부를 백방으로 수소문해 찾아보았으나 현실적으로 잠적해 버린 상태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멧돼지마저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최근에 들어 온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type2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타 양돈장에 잠복해 있던 것이 발생농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아니면 타 농장에서 발생한 것이 은폐 또는 타 질병으로 오진되다가 이곳으로 유입되어져 왔을 가능성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발생농장의 인근 부대의 잔반관리실태 및 멧돼지 출현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군부대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간혹 멧돼지, 들고양이, 너구리 등 산짐승들이 출현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있었다. 철원도축장으로부터 수집해온 폐 등 내장장기를 개에게 먹이는 농장들에 대한 발생지역의 조사와 발생농장과 인근 3개 양돈장들과 관련성 있는 판매농장과 도축장, 중개인들에게서 조사과정에서 일부 의심스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신뢰성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아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최초 발생한지(신고일) 14일째 반경 3km이내의 전 양돈장에 대한 혈청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여 이동해제를 한다고 하루 전 언론에 배포한 다음날 같은 마을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신고가 들어와 현장 출동하여 확인결과 출하돈사의 50%이상이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부검결과에서 전형적인 돼지콜레라였다. 혈청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 한지 만 하루도 안 된 상태에서 2차 발생이 되었으니..., 한마디로 난리가 났었다.

2차 발생으로 인한 전파방지를 위해 긴급역학조사를 정신없이 수행하고 있는데, 불시에 철원 현장 방역상황실에 장관님이 직접 방문하였다. 앞선 방문 시와 다르게 첫 마디가 “원장과 부장이야기를 도저히 못 믿겠어, 직접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역학조사팀장에게 묻기 위해 왔다”라고 하시면서 혈청검사가 이상이 없었는데 왜 발생하느냐? 등 많은 질문을 하셨다. 순간! 원장님과 부장님 말씀을 부정하고 대노한 상태로 방문한 자리에서, 그것도 과장님을 제쳐두고 직접 물어 들어오시니 직원으로써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한참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재차 답변 요청을 하여 더 이상 답변을 미루기가 힘든 상태가 되었다. 이왕 답변을 한다면 소신껏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첫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써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다. 일순간 장관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체하고 생각한대로 이야기를 드렸다.” 혈청검사는 병원체가 침입해서 생기는 항체를 검사하는 것으로 그 항체가 형성하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실험돼지에게 바이러스를 직접 접종할 경우는 7~14일정도면 항체가 형성되겠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다. “왜냐하면 발생농장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전파된 병원체가 즉시 돼지에게 감염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바이러스를 체내에 직접 접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비강 또는 구강으로 침입했을 때의 바이러스 량도 고려해야 하고, 또한 실험조건처럼 몇 두 사육이 아닌 많은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현장인 양돈장에서는 어떤 돼지가 먼저 감염되어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전 두수가 아닌 일부 개체만을 채혈한 검사결과로 성급하게 이동해제를 하는 것 무리”라고 또 다시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또 다시 이런 경우를 예방하려면 시료채취 시 전혈을 받아서 항원과 항체검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동통제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다. 그 외 전반적인 역학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30분 정도 말씀드렸다. 그리고 나서 경기 포천군을 직접 방문하여 당부말씀을 드린다고 하여 포천군청까지 선도차로써 안내를 하였다. 포천으로 가는 중에 원장님과 부장님께 장관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급히 보고를 드렸다. 그날 이후부터 현장과 실험실은 채혈 및 검사하는 것이 몇 배로 힘들었지만 항원 및 항체검사를 동시에 검사하는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차 발생으로 인해 방역의 강도는 더욱 높아져 갔다. 2차 발생농장은 마을 한 가운데 있어 많은 두수를 살처분 매몰하기가 곤란하여 부득히 발생농장으로부터 1km정도 격리된 야산 아래로 돼지들을 모두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차량이동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지방도로였지만 봄철 행락객과 수학 여행단 차량이 계속 지나가는 상황에서 어린학생들과 여행객들에게 돼지가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축질병 및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차단하는 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길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철원경찰서와 이곳 파출소 등에서 난색을 표해 이분들을 설득하기까지 애를 많이 태웠다. 그러나 왜 도로를 차단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이유 설명과 상부기관의 협조 등을 받아 이들 차량들을 우회 시킨 후 신속한 살처분과 탑재한 화물칸을 투명하지 않은 두꺼운 비닐을 덮혀 이동시켰다.

2차 발생농장의 인근 농장에 대한 임상관찰결과 돼지콜레라 의심축이 추가 발생이 있어 신속히 긴급 예방 살처분을 실시토록하고 차관보님 등과 현지 지형과 동일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반경 3km 이내 전 두수를 살처분 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후 도로, 강 등 지형을 감안하여 강 건너편 대규모 농장에 대하여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 두수를 살처분 하였다. 그 이후로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후관리 및 역학조사를 계속 수행하던 차에 발생지역 현장에서 상주하고 있던 역학조사반에게 새벽잠을 깨우는 긴급전화가 울렸다. 경기 안성지역의 대규모 양돈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긴급 철수를 위해 발생지역을 관할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장님에게만 동 내용을 전달하고 긴급 철수를 하였다. 강원도청, 강원가축위생시험소 및 철원군청의 관계자들은 역학조사를 수행하다가 말고 신속히 철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모두들 의아해 했다. 우리가 급히 철수하는 것은 오늘 중으로 그 사실을 TV 등을 통해 알 수 있을테니까..., 철원 돼지콜레라 역학조사 및 사후방역관리 뒷일을 잘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 나. 인천 강화지역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를 목전에 두고 경기 안성지역에 발생한 구제역은 월드컵과 함께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구제역 역학조사 및 긴급 방역조치를 위해 현장을 밤낮없이 누비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로 돌아와 이제는 차분히 원인규명 등 역학조사보고서 작성 및 현장에 있는 바람

에 못했던 각종 업무를 늦었지만 추진한다고 동분서주 할 때였다.

2002년 10월 7일 인천 강화에 돼지콜레라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어 모든 업무를 중단한 채 긴급히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발생현장은 마니산 매표소로부터 좌측으로 300m지점에 있는 양돈장에서 발생하였다. 주위는 양돈장이 없었지만 마니산에 도토리를 줌을 등반객과 일부 관광객들이 진입로를 잘못알고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해 있었다.

강화도는 지형적이 섬으로 구성되어 방역상 안전지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국내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 과거 닭전염성후두기관염(ILT)나 사람의 콜레라도 강화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육·해·공의 위험요소가 있는 곳이다. 첫째는 휴전선 접경으로서 북쪽으로부터, 둘째는 바다를 통해 중국 및 북한 등 지역으로부터, 셋째는 인접한 인천공항이 있어 각국으로부터의 위험요소가 있는 곳으로써 방역상 굉장히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화조약 등으로 인해 개화문물을 빨리 들어온 지역으로써 기독교인들의 순교지역이 타 지역보다 많은 곳이기도 하였다.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로 가면 갈수록 밤 풍경은 붉은 조명이 들어 있는 교회 십자가들만이 곳곳에 눈에 띄는 마을들이 많고 발생지역도 마찬가지로였다. 또한 몽고 침입시 삼별초의 난을 겪었고, 고려와 조선시대에 왕족들의 귀향지로써 귀향 온 왕족과 수행했던 사람들에 의해 언어형태가 특이하게 형성되어져 강화지역의 토박이 일수록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및 언어가 존대도 아니고 낮춤말도 아닌, 진의가 분명치 않게 어쩡쩡한 형태의 표현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 과정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마음을 열고 서로 협조가 되어져야 신속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지역의 문화를 심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부로부터 역학조사결과만을 요구받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과의 잦은 접촉과정에서 신뢰가 형성되면서 차츰 마음의 문을 열면서부터 역학조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발생농장주의 친척 중에는 인천항에서 주로 중국화물을 배달하는 분도 있었는데 발생 전 중국화물을 싣고 온 목재 빠렛트를 발생농장에 가져다 놓는 등 빈번한 농장 방문이 있어 인천항의 중국 화물운반 경로를 조사를 하였다. 또한 강화지역은 시골이 특이하게도 모든 것이 교회 중심으로 정기적인 각종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그리고 정기적인 외국여행이 어느 시골보다 많은 곳으로써 발생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 직전에 동남아 여행을 집단으로 다녀온 예도 있었다. 그리고 강원 철원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와 같이 type 2였기 때문에 첫 발생된 강원 철원지역과의 관련성을 추적해 나갔다. 초기에는 이들과의 연관성을 알지 못하였지만 돼지콜레라에 대한 1년간의 역학 추적과정에서 관련성 하나는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및 경기 김포·포천지역 등의 돼지중개인과 평상시는 일반화물을 취급하다가 이들 지역의 돼지를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팀들에 의해 농장간 돼지운송과 출하돈을 인천 및 김포·포천·철원도축장으로 출하되고 있었다. 개인 차주제로 되어 있는 일반 화물차량이 도축장을 거치지 않고 농장 간 이동하는 돼지 전문운반 차량으로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

을 방역당국은 몰랐었고, 이들에 대한 차량 세차소독 등에 관한 가축방역관련 홍보를 한번도 받아 보지 않았던 사람들로서 소독 개념이 전혀 없는 방역의 사각지대였다.

강화지역 최초발생농장과의 인접된 마니산 침성단 대표소 입구와 인접한 관계로 발생시기와 맞물려있던 제주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을 위한 칠선녀들의 마니산침성단의 채화가 가축방역으로 인하여 체전사상 처음으로 이곳이 아닌 한라산 백록담에서 채화를 하였다. 이곳에서 역학조사를 하기위해 머무르면서 새벽 5시경에 마니산 침성단에 올랐다.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해 등반로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플랑카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마니산 대표소에만 있는 줄 알았던 것이 침성단 입구에도 부착되어 있을 줄이야... 많은 걸 의미한다고 여겼다. 새벽에 침성단에 올라보니 사방에 펼쳐져 있는 바다를 보면서 가슴속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氣)가 세다는 마니산 침성단의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이하면서 옷통을 벗고 무릎을 꿇고서 두 눈을 감고 온몸에 기를 불어넣은 후 하늘에다 고했다.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외쳤다. 그때 알 수 없는 기운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온 몸을 엄습해 왔다. 눈을 떠보니 밝은 아침 햇살이 천지개벽하듯이 마니산 단풍과 함께 붉게 물들여져 있었다. 그리고 마니산 침성단 입구의 돼지콜레라 긴급방역에 관한 플랑카드는 가축방역사의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져 다음날 새벽에 전날 생각하지 못하고 올라가는 바람에 못내 아쉬웠던 사진을 몇 장 찍었고, 우리 민족이 천·지·인에서 유래한 안정적인 3이라는 숫자를 좋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날도 연속 3회 올랐다.

강화지역 최초 발생이후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2차 발생 농장이 나타났다. 이 농장은 발생 며칠 전 자제분의 결혼식으로 인해 인천 사돈댁으로부터 제공된 1두분의 돼지고기가 반입되어 먹고 남은 냉동고기를 회수 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또한 농장주가 고령에다가 인부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 농장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었고, 근무하는 인부들은 농장주가 고령이라는 점으로 인해 인근에서 틈틈이 도와주는 형태로 농장의 분노 등을 치워주고 있었다. 발생 전후 근무했던 인부들은 일정하게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컸다. 한분은 발생 3개월전에 재혼을 위해 중국교포여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3일정도 방문한 바가 있었고, 또한 수시로 출입했던 심신장애자(?)였던 인부 한분은 타 농장 날품팔이 등을 하는 인부로 알려져 있었으나 경찰 협조를 받아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하지 못했다.

강화지역 가축방역상의 큰 문제점으로는 대부분 소규모 양돈장으로써 부부가 함께 양돈을 하며, 출하 및 입식 또는 사료운반 등 많은 사람들이 출입할 때 제대로 된 방역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소규모 양돈이다 보니 돼지 출하중개인들은 간혹 출하두수가 적은 경우에 3~4곳 농장으로부터 수집한 돼지를 도축장으로 운반하고 있었다. 이들은 출하 시 여러 농장을 출입하는 출하 중개인들이 평소 작업 시 입던 옷을 그대로 착용한 채로 직접 돈사내로 들어가 출하돈 선택을 위해 스프레이를 들고 출하개체를 일일이 표시하면서 전 돈사를 헤집고 다녔다. 또한 벌크사료보다 지대사료 구입이 타 지역보다 비중이 높다보니 이들 사료운반자들도 돈사 내 방문이 잦았지만 방역관리 없이 무방비

상태로 출입하고 있었다.

도축출하의 경우도 소규모 간이 도축장인 강화도축장과 대규모 도축장인 김포의 우석도축장, 부천 축협공판장 및 인천의 삼성도축장 등과 이곳으로 출하하는 중개인들이 역학적으로 불가분의 연관성을 맺고 있었고, 이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한 예로써, 제2발생농장과 제3의 발생농장간의 역학조사과정에서 소규모 간이도축장인 강화도축장에서 같은 날 간발의 차로 돼지가 출하되어 계류된 사실이 있었고, 2차 발생농장에서 의심축 15두가 출하되어 도축장 계류장에 머물고 있을 때, 몇 분 차이로 3차 발생농장에서는 도태모돈 1두 출하를 위해 도축장 계류장에서 축주가 돼지를 직접 몰아넣는 과정에서 먼저 온 돼지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고스란히 3차 발생농장으로 전파되어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2차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 및 해병대를 동원한 인근농장의 긴급 야간 살처분이 진행되는 현장에서 3차 발생농장의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어 긴급 출동하여 후렛쉬 불빛으로 임상증상을 관찰한 후 축주를 긴급히 수소문하여 밤 11시부터 새벽 2시경까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축주와 4~5명으로 구성된 콤파인 영농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다. 가을 추수를 위해 매일 간이미곡처리장에서 새벽 6시경에 만나서 밤 10시까지 추수를 하던 분들이었다. 이날도 간이미곡처리장에서 저녁식사를 겸해 반주를 가볍고 들면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던 분을 역학조사를 위해 집으로 호출하여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축주는 몹시 지쳐 있었다.

1차 역학조사결과를 무선 인터넷상으로 보고를 하고 축주를 주무시게 하고 나서려는 순간에 전화상으로 관련된 분들을 밤중에 찾아서 조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축주와 함께 있었던 3~4명에 대한 오늘밤중 이내로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몇 시간 후 이들이 미곡처리장에 집합을 할 것이고 이때 조사를 하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조사를 하라고 하였다. 피곤함이 녹 녹히 젖어있는 축주를 붙잡고 조사를 한 상태에서 또 다시 축주보다 더 연장자이고, 새벽 2시경 곤한 잠을 자고 있는 분들에게 조사하러 갔을 때는 오히려 역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한 밤중에 이들의 집을 찾기로 힘들었고 오늘 밤중 이내로 모두를 만난다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계속 조사를 요구하는 분들은 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나도 공직자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항명이라 하여 처벌을 받거나 공직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조사하면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거센 항의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어 버렸다. 아무리 역학조사도 좋지만 이분들과 조사자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나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별을 보면서 발생농장으로 나서는 “지금에서야 저녁밥을 먹지 못하고 긴급 투입되었기 때문에 배고픔이 밀려왔지만 새벽 2시경 음식점이 열린 곳도 없고 해서 통제초소에 있던 빵과 우유로 배를 채우고 나서 인근 여관으로 가서 몇 시간 전의 상황을 다시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다. 내가 힘든 상

황이라면 그래도 무리하게라도 조사를 추진을 할 수 있었지만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눈에서 늦은 추수를 하고 저녁을 겸해 반주를 한 상태에서 잠이 든 연세 많으신 분들을 한밤중에 깨워서 조사한다는 것이...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조사를 거부하였지만, 상황이 워낙 급하다보니 윗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잠시 2~3시간 정도 눈을 부치고 나서 약속장소인 새벽녘에 이들이 모이는 미곡처리장에서 한꺼번에 만나서 역학조사를 마쳤다.

3차 발생이 있는 지 1주일째 김포에서의 첫 발생 신고가 있었다. 강화대교를 넘어서 발생되어져 전국적인 확산우려를 금할 수 없었다. 강화지역의 3군데를 조사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그곳으로 급파되어져 조사를 하였고 그러던 중에 강화지역 4차 발생농장에서 신고가 들어왔다. 11월 2일 밤 12시경 발생농장을 겨우 찾았는데, 읍사무소에서 나온 산업계장님과 직원 한명이 차량으로 농장입구를 막고 있었다.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나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는데, 살처분 우려 등으로 축주는 술만 드시고 제대로 협조가 이루지 않아 혼자 드시지 말고 저도 한잔 주세요! 하면서 접근을 했다. 그 동안의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를 했던 이야기 등을 말씀드리면서 접근을 한 결과,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자기 이야기를 했다. 우리나라의 최북단 농장으로서 휴전선과의 직전거리로 100~200m 되는 곳으로써 과거 무장공비가 침투한 곳이었고, 또한 북쪽으로부터의 불온편자가 날려오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 측에서 풍선에 담아 북쪽으로 날려 보냈던 시계, 라디오 등이 역풍을 맞을 때 이곳으로 떨어진 시계, 라디오 등 과거에 많이 주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했다. 어느 정도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판단한 후 본격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한 결과 3차 발생농장 전후에 동네에 초상이 있어 방문했던 내용 등의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또한 소규모 농장이다 보니 발생농장에 출입한 사료대리점 종사자가 직접 돈사내까지 지대사료를 운반한 사례도 있었다. 새벽 3시경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니 흰눈이 가볍게 날리고 있었다. 출입구에서 소독차로 소독약을 분무를 하였더니 옷에 가볍게 살얼음이 얼었다. 이날로부터 24일후에 또다시 강화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인근농장이 발생되었다.

돼지콜레라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강화지역에 대한 멧돼지의 분변 및 멧돼지 혈액을 얻고자 멧돼지 출몰지역에 대한 역학정보 수집을 위해 석모도를 가기 위해 차와 함께 승선하였다. 몇 개월전에 출고된 테라칸을 타고 석모도에서 하선시 선착장의 급한 경사로 인해 앞서가던 짐을 가득 실은 대형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테라칸 앞부분을 완전히 덮쳐 반파되었지만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었다. 사고 수습과 사무실로부터 긴급 차량을 제공받은 후 멧돼지 포획허가가 난 며칠 뒤 다시 포수 2명과 함께 석모도에 있는 상주산으로 향했다.

상주산에서 바라 본 예성강과 개성포구가 있는 북녘땅은 지척에 있었다. 가을철까지는 북쪽에 먹이가 있어 머물다가 민둥산으로 변하는 겨울철은 먹이감을 찾아 멧돼지들이 바다로 헤엄쳐 오거나 결빙 시에 남하한다는 이야기를 지역민과 포수들이 이야기를 했다. 실제로 이 지역에 멧돼지 발자국을 쫓다가 바다로 향한 발자국들을 많이 보았다. 멧돼지의 증식은 6~7년 단위로 도토리 풍작을 이



루는 시기에 많다고 한다. 그해 도토리는 엄청난 풍작을 이루었지만 발자국을 통해 분석한 바로는 원인 모르게 전년보다도 멧돼지들이 서식 두수가 매우 적었다. 동물적 감각수준인 포수들과의 멧돼지 사냥은 우리들에게는 무척 힘들었다. 멧돼지는 6~8부 능선에 서식처가 있기 때문에 보통 60~80° 정도의 경사가 있는 곳을 뛰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메이크 등반화는 한달도 못가기 때문에 갯바위 낚시용인 쇠징이 박혀있는 장화를 신어야만 1년을 사용한다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6~8두로 구성된 사냥견들이 고라니나 노루를 보았을 때는 자신있는 소리를 내지만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개 역시 공포감을 갖기 때문에 사냥시는 개들의 소리를 노치면 안되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불면 멧돼지 사냥이 어렵다고 했다. 개들의 소리를 듣고 포수들은 원거리에서도 멧돼지인지 고라니인지를 파악한다고 했다. 하루종일 산을 헤메고 다녀 멧돼지의 서식처 확인과 분변 등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실제 멧돼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흔적들만 발견했었지만 포수들과의 1박을 겸한 멧돼지 사냥은 수의사로서 소중한 멧돼지에 대한 산교육을 받은 셈이 되었다.

강화지역의 발생 및 전파요인은 총체적으로 방역의식 매우 낙후되어 있고 소규모농장으로써 노년층에서 운영하는 재래식 농장이 많았고, 섬의 특성상 방사형의 동일생활권이 방역상 큰 허점이 되었다. 동일한 사료, 동물약품, 도축장, 인공수정, 정액공급 등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곳이 무너질 때 도미노현상처럼 강화지역 전체로 전파되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방역기술 제공처인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는 인천과는 원 거리상에 있고 전반적인 방역지도 세력이 미흡했다. 그러나 질병이 발생되고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와 강화군청, 강화읍사무소 및 발생지역 면사무소 전 직원들의 합심된 노력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존경스러웠다. 또한 장기화로 인해 민심이 이반되고 고통을 받던 강화군민들을 위해 교회입구에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100일 기도회”라는 플랑카드를 부처 놓았다. 사진을 찍어 둔 다는 것이 그 곳을 통과 때마다 긴급 출동으로 기회를 놓쳐 못내 아쉬웠다. 군관민들이 일치단결하는 것을 보고 피는 못 속인다고 생각해 보았다. 몽고란과 개항의 물결에 정면에서 싸워 이겼던 선조들의 피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준 곳이었다.

#### 다. 경기 김포이천, 인천 서구지역

김포지역의 첫 발생은 10월 22일경인 강화지역의 3차 발생이후 1주일 쯤 발생되었다. 현지 파견된 직원으로부터 보고된 역학조사결과에서는 특별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강화지역으로부터의 전파경로를 찾아보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소강상태에 있었다. 강화지역의 1·2차 발생농장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발생농장들에 대한 원인규명결과 역학적 연관성 가장 높은 것을 찾고 난 다음, 김포지역의 최초 발생농장에 대한 정밀역학조사차 한참 후에 방문하였다. 역학조사 진행중에 신고지연이라는 명목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은 날 방문이 되어져 그 화는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왔다.

역학조사 진행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기를 고려해야겠다.

9월 하순경 김포 모 종돈장으로부터 입식된 돼지와 발생돈사의 잦은 도축 출하과정에서 질병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모 종돈장에 대한 돼지콜레라 발생여부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그 동안 혈청검사결과 등을 통해 볼 때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가능성은 강화지역 2차 발생농장에서 9월말경 도축출하를 한 기사가 이곳 농장에 이틀후에 방문하여 출하 한 사실이 있었다. 도축출하과정에서 질병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이유는 강화나 김포지역에 활동하는 돼지 출하중개인들이 착용하는 복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미흡하고 출하 시에 대부분 출하 중개인들이 돈사내에 들어가 직접 출하돈을 선택하여 가져가는 형태는 어떤 위험요소보다도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출하돈방에서 발생이 시작된 것만 보더라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외는 방역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발생시 감염의 연결고리로 인해 도미노현상처럼 확산될 수 있는 위험요소인 지대사료공급, 동물약품구입, 가축방역요원, 정액공급 등이 동일생활권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위험요소로 인해 김포양돈지부를 중심으로 한 가축방역단에게 방역관리없이 농장접근을 하지 말도록 매일 핸드폰 문자메세지와 전화를 통해 예찰을 하도록 하였다. 지대사료 공급시도 혼연소독 후 제공, 동물약품 공급시에도 반드시 소독약품 및 일반약품에 대한 외부용기에 대한 소독을 한 후 공급하도록 하고, 도축장에 대해서는 차량세차소독을 비롯한 운전자가 소독통에 들어있는 소독수건으로 차량운전대를 닦게 한 후 손을 씻게 하고 운전석 내부를 소독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질병 발생시 역학조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과거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시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출하농장을 알 수 있듯이 도축출하자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출하차량 출입시 반드시 농장 출입사항을 작성토록 하였다.

그런 와중에서 인천 서구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또 발생하여 현장에 도착해 보니 발생농장을 제외하고는 주위가 가내 수공업수준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지역이었고 이들 공장에는 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역학조사를 위해 잠시동안 이 지역에 머물때, 외국에 온 기분이 들 정도로 야간에는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았던 지역이었다.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발생전후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강화로 전국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인천 서구와 김포지역의 농장 및 중소기업으로 숨어든 외국인근로자가 많았다고 했다.

그래서 왜 이곳이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많은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 배경에 대하여 잠시 조사를 한 결과 장기체류로 인해 자연히 형성된 성육(?)에 대한 해소를 저임금으로써 인천지역 사창가등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보니 자연 해결방안으로 외국인근로자 상대로 하는 전문시장(?)이 형성되면서 불법외국인 여성들도 많이 유입되었고, 이들이 단속을 피해 발생지역으로 대거 함께 몰렸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다. 발생농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출·퇴근로에 있어 지나가면서 돈사내부를 훑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도로와의 간격이

1m정도였다.

그러나 인천 서구지역의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김포 지역에서 2차 발생이 있었다. 이곳도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 애를 태우던 차에 그곳으로 간 직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다. 인천 서구 지역은 모 동물약품에서 김포 첫 발생농가에 10월말경에 출입한 사람이 11월 초순에 출입했던 사실과 발생전후 인천도축장에 지속적으로 출하한 사실이 타 발생지역과의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김포지역의 2차 발생농장은 1차 발생농장과는 거리상 직선거리로 1km이내에 있었고 동일한 생활권에서 오는 공통적인 상황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이 농장에 대한 정밀역학조사를 실시해보니 또 다른 위험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 김포 첫 발생농장에 살처분 등 긴급방역에 동원된 관계자들이 빈번히 방문하는 월곶면사무소에 2차례 직접 방문하여 소독약 등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질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다.

김포 2차 발생이 있는 지 10일후에 강화지역의 마지막 발생농장이면서 5차 발생농장이 나타난 다음날에 김포 통진지역에서 3번째 발생이 있었다. 이곳은 도축 출하과정과 채혈 및 예방접종과정에서 유입 가능성이 높았고, 그 다음은 축주가 타 농장 발생시기에 위험요소인 김포지역 발생농장의 출입자인 사료, 약품 및 방역요원 등과의 잦은 만남과정에서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있었다.

김포지역의 징검다리 형태의 산발적인 발생은 김포지역의 양돈농가에게 많은 어려움을 낳게 하였다. 이동해제시기가 가까워지면 출하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던 양돈농가들이 추가 발생에 의해 또 다시 이동제한 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질병예방 차원의 이동제한이 오히려 질병 발생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와 여러 형태로 농림부에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지 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방역관리상태에서 단계별 도축출하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런 와중에 대부분의 농장들은 빈 돈사 확보가 어려워 분뇨처리장등에 비닐 팬스를 설치하는 등 대책마련을 한다고 하였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이동제한 지역의 돼지들은 장기 이동제한에 따른 유희공간이 없어 돈방밖으로 넘쳐 나오고 있었다. 대책이 없는 원칙론 고수는 현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기위한 새로운 불씨로 둔갑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지금껏 질병이 종식되고 나면 모두 잘했다는 사람만 있고 잘못된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끝나고 나면 모두들 생각하기 싫지만 또 다른 원인제공의 실마리를 차단하기 위해 서라도 앞으로 질병에 대한 백서도 중요하겠지만 발생시 일어났던 각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정밀분석 및 평가가 따라야 하겠다. 그리고 본격적인 겨울철이 접어들면서 차량소독기들은 결빙되어져 제대로 가동할 수가 없었다.

3차 발생이후 18일만인 12월 15일 월곶지역에서 또 다시 4차 발생농장이 출현하였다. 마찬가지로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1차 조사에서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밤이 늦은 관계로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겨울철이고 하여 바이러스 보존상태가 더욱 좋기 때문에 여름철보다 더욱 더 철저한 소독을 하기 위해 농장 진입로에 있는 소독차량을 이용하여 소

독약을 이용하여 온몸을 샤워를 했다. 한마디로 겨울철 북풍과 함께 소독액이 온몸에 즉시 얼어버려 뻣속 깊이까지 스며드는 느낌이 왔다. 너무나 추워서 여관방에서 샤워를 하고 들었던 잠이 얼었다가 녹은 몸이 축 늘어져 늦잠을 잤고, 그 덕분에 심한 몸살감기와 콧물이 겹쳤다.

그러나 마저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정밀역학조사를 다시 시작한 결과, 이 농장은 김포 2차 발생농장에 있던 분노처리용 압록박스가 이 지역의 양돈장 분노처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환경자원회사가 발생농장에 있던 것을 살처분 할 당시 평소처럼 방역개념없이 자기재산을 가져간다는 개념으로 싼고 나갔고, 이동통제소 근무자들조차도 방역개념없이 그냥 소독만 생각하는 바람에 빈 압록박스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없이 그냥 통과시켰다. 이곳에서 나온 즉시 4차 발생농장의 발병돈사 입구에 놓여져 있다가 발생 직전에 분노를 싼고 나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압록박스를 이용하여 분노처리를 하는 양돈장에 대한 긴급 예찰 및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발생농장과 인접한 대규모 농장은 시험적으로 관찰하기로 하고 검역원 직원들을 농장내 상주시켜 조석으로 임상관찰을 하도록 하였지만 1주일 정도될 때 대규모 농장에서 임상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여 즉시 예방살처분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발생농장과 인접한 500m 정도에 있는 농장에 대한 예방살처분이 왜 필요한 지를 증명해준 사건이기도 하였다. 발생농장에 감염축은 모두 살처분되고 세척 및 소독 등이 이루어졌지만 그 농장에 서식하던 쥐나 야생고양이 등이 먹이가 부족하면서 인근 농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김포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정신없이 방역현장을 뛰던 월곶면 담당계장님이 이동초소앞 드림통안에 장작불을 피워가면서 밤중에도 살처분 매몰이 진행되고 있어 방역지원에 혼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동안 월곶면 직원들은 대선 준비로 타 지역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담당부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오늘 밤 모두들 나와 야간 살처분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직원없이 이리뛰고 저리뛰고하는 것이 하도 딱해서 모두들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야간 살처분을 하고 있을 시기에 담당계장만 제외시키고 모두들 망년회를 하려갔다는 것을 알고 분노가 치밀었다.

김포지역 발생이 있고 난 지 1주일째인 12.22일 동짓날 경기 이천지역에 발생 신고가 들어왔다. 눈길이었지만 마음이 몹시 급했다. 지도상으로 확인결과 인근지역들이 국내 굴지의 양돈장 및 종돈장이 즐비한 지역으로써 조기 차단을 하지 못할 경우 동 지역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써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천지역의 발생농장은 직선거리상 200m 이내에 2곳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그 동안의 경험상 역학조사를 고려한 채혈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즉시 임상조사 및 돈사별 채혈을 실시한 다음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축주 부부에게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 부인이 심하게 흐느껴 가슴이 아파 조사를 진행하기가 무척 난처했다. 항상 발생현장에서 역학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가슴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는 얼음장처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 역학조사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해를 구해 가면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곳도 김포지역과의 연관성은 농장근로자중에 김포에 계신 친척분이 잠시 동안 다녀간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질병 유입 가능성은 도축출하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돈분처리용 생균제계 공급업체, 사료, 동물약품, 인공수정 및 임신진단 등이 커다란 위험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원인규명을 위한 살처분 채혈은 농장내 질병상황을 조사하는 데 큰 몫을 차지했다. 항상 질병 발생시 보여지는 현상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이며, 그 원인은 그 보다 앞서있기 때문에 돈방별 주간이동 및 출하와 폐사 등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의 농장의 흐름과 임상증상 및 혈청검사 등을 통한 문제점과 역학조사는 최소한 1~2개월전까지의 농장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과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 살처분시에도 반드시 돈방별, 돈사별 일정규모의 채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경우는 수사가 시작되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현장 보존되지만 긴급 가축방역 관련한 증거물의 경우는 감염축 및 동거축에 대한 부검을 통한 각 장기 및 혈청의 시료가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처분 매몰 시 사라지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전파를 막는데 역학적 가치로써 매우 중요하다. 경기 이천지역 발생으로 인해 김포와 이천지역 발생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인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다.

### 3.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확산

#### 가. 전북 익산 왕궁단지 및 김제 등 지역

2003년 3.18일 경기 이천의 돼지콜레라 이후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던 돼지콜레라가 돼지오제스키병 상재지인 전북 익산 왕궁단지에서 새롭게 발생하였다. 상황실로부터 온 돼지콜레라 의심축 신고서를 신속히 훑어본 결과 김포지역에 있는 모 종돈장으로부터 돼지를 입식했다는 내용이 눈앞에 들어왔다. 김포지역 발생 당시 혈청검사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 종돈장이었지만 웬지 느낌이 이상하게 와 닿았다. 전북 익산 왕궁단지를 출발하기 전에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에게 만약에 이 종돈장이 문제가 있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김포지역 이동해제이후 출하된 종돈판매현황을 즉시 입수하여 이들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북 익산 왕궁단지로 향했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갈 무렵에 경남축산진흥연구소 본소에 있는 후배로부터 긴급연락이 왔다. 형님! 우리지역에 돼지콜레라 의심축이 함안에 발생했습니~ 더...그래...그러면 혹시 입식된 돼지가 경기 김포 모 종돈장이 아니냐? 맞습니~ 더... 알았다... 철저히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당부를 한 후, 즉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방금 통화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모 종돈장 판매농장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긴급 예찰을 실시하여 차단하지 않으면 전국 확산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전북도 방역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나와 있었다. 즉시 발생농장에 대

한 임상증상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발생개체가 경기 모 종돈장의 구입돈이었고, 그 외의 관련성은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역학조사결과 원인규명은 쉽게 끝날 수 있지만 질병 전파 차단이 가장 급선무였다. 과거 돼지오제스키병 근절을 위하여 수차례 방문을 했던 음성나환자 정착촌이면서 호남고속도로와 지방도가 단지 한복판을 통과하는 곳으로써 400여 농가가 반경 2~3km 이내에 10만두가 사육되고, 축주 한 사람이 단지 내 가정집과 양돈장의 경계가 불명할 정도로 여러 곳에서 소규모로 사육되고 있는 전북 최대의 양돈단지 중에 하나였다. 특히 이들 양돈지부는 4개지 회로 구성되어 통일된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다. 이곳의 민심은 다른 지역과 달리 조석으로 변화는 곳으로써 민원해결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돼지오제스키병 근절을 위해 그 동안 가슴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과거 방문시 서로를 이해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에서 국가적인 대형사건이 발생되니까 민심이 크게 요동쳤다.

모두들 붉은 머리를 두려고 마을회관에 몰려 와서 농림부장관님과 전북지사님의 방문만을 기다리면서 항의데모를 하고 있었다.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 긴급 파견된 농림부관계관님과 상의 끝에 장관님의 방문시기를 조금 늦추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모두들 지금까지의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은 반경 500m를 먼저 살처분하고 추가 발생에 따른 계속적인 살처분이 뒤 따른다면 이 지역의 여건상 모두 살처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살처분 반대 데모를 하고 있었다. 농림부 관계관님과 과장님에게 이곳의 상황은 누구보다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분들의 생각을 간파하고 전북도 관계관과 상의하여 제안을 했다. 과거 돼지콜레라 청정화 추진 이전에 수행했던 30두 미만 소규모농가는 살처분 조치하고 그보다 규모가 큰 농장은 이동제한 후 발생축만 살처분하고 나머지는 예방접종을 한 경우를 설명하면서 이 지역에 한해서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후 검사를 통하여 도축장으로 도태해 나가면 10만두 살처분에 따른 국고 낭비 예방과 살처분시 발생하는 새만금 수질오염방지와 관련된 많은 문제점을 조용히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날 정부는 필자의 의견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생각한 바대로 살처분을 하지 않고 이 지역을 이동통제하에 발생농장만 살처분하고 예방접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곳 양돈가들은 전날과 정반대로 살처분을 해달라고 아우성이었다. 역학조사과정에서 일부 양돈가 한분이 거세게 나에게 항의를 해왔다. “정부가 우리들에게는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항의를 했다.” 이들과의 논쟁을 벌이면서 “나는 지금껏 이곳을 수 차례 방문을 하면서 당신들을 특별하게 생각해본 바도 없었고, 특별하게 대접할 일도 없다.”라고 대답한 후, 연이어서 “당신과 당신의 자제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특별하게 대접을 받고 싶으냐?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특별히 대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어서 “앞으로 양돈은 과거와 다르다. 지금 계절이 봄인데 호남고속도로를 상춘객들이 차장을 열고 꽃냄새를 맡으면서 지나갈 때 돼지분뇨의 악취로 인해 눈살이 찌뿌러지고, 개울이 똥물로 변했을 때 양돈업이 과연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라고 이야기를 했다.

계속적인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꿀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항의를 하시던 분이 더 이상의 이야기는 없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예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장은 신속히 예방살처분을 해나갔다.

익산 왕궁단지의 질병 전개 상황 및 역학조사를 보면 추가 발생농장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 현지 역학조사팀을 구성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동안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역학조사과정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살려 전북축산진흥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 대하여 발생농장에 접근하는 요령 및 역학조사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도록 하였다. 그 이후 전북지역에 여러 곳에 발생은 하였지만 이미 전달된 위험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전북방역당국, 특히 축산진흥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역학조사 및 방역활동으로 추가 발생을 막아내었다고 여겨진다.

#### 나. 경북 상주, 문경, 경주 등 지역

전북 익산 왕궁단지에 대한 긴급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김포 모 종돈장의 상주 GP농장에서 발생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긴급히 상주로 이동하라는 연락이 왔다. 전북 익산에서 경북 상주로 가는 마땅한 동서 고속도로가 없어 헬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상주 GP농장은 몇 농장까지 판매를 하였을까?” 머릿속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 계속 아파왔다. 경북가축위생시험소 본소에 밤늦게 도착되었다. 경북 관계자들이 조사한 1차 역학조사 내용을 파악한 후 본소 관계자와 함께 발생농장이 있는 상주로 향했다. 새벽 1시경 도착하여 임상증상을 관찰한 결과 400여두 이상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면서 드러누워 있었다. 그 동안 질병 경과상황을 보니 이 지역의 곳곳으로 전파되었을 가능 매우 높았다. 긴급히 역학조사를 하고 위험요소가 전파된 양돈장에 대한 긴급 예찰 및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다음날 정밀역학조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 지역도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할 경북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전북과 마찬가지로 역학조사방법에 대하여 긴급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살처분 매몰지가 마땅하지 않아 하천가 옆에 매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주민들은 수질 오염을 염려하여 반대가 심하였다. 상주 부시장님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매몰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부시장님께서 제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자기 시의 문제인 만큼 돈이 얼마던지 들더라도 환경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서 매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본인에게 맡겨달라고 하였다. 나중에 사후관리실태 점검시 들은 이야기로부터 강가였기 때문에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와 몇 천만원을 들어서 환경단체를 입회시킨 상태에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완전 방수처리를 한 후 매몰조치를 하여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상주 GP농장의 종돈판매농장에 대한 역학추적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판매되었던 농장중에

문경지역의 모 양돈장의 입식돈에서 혈청검사상에서 양성이 나타나 경북가축위생시험소 본소 관계자와 긴급 역학조사를 위해 중앙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적인 예방접종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동안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해 쏟아 부은 시간과 정열, 그리고 인력과 예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으니..., 그분들이 돼지콜레라를 얼마나 알고 현장을 어떻게 알기에 현장을 직시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리 없는데., 이렇게 뛰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윗사람 몇분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쉽게 결정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이 보다 못한 것들에 대한 방역정책을 추진할 때 무얼 믿고 일을 해야 할지..., 이렇게 전환 했을 때 앞으로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것이 용두사미 격으로 전환되는 정부정책을 이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분명히 잘못 내려진 정책결정 이었다고, 2년 정도가 지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현장인 시·도, 시·군, 시도가축방역기관(시험소) 및 검역원관계자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확산이라도 전파경로가 규명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을 때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은 첫 발생부터 끝까지 대부분 모 종돈장 판매돈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예찰 및 검색과정에 찾아낸 수확(?)들이었다. 한눈으로도 보아도 이번 경우는 근절이 용이할 수 있었다. 일부 이들과 연관성이 없는 농장은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아 과거보다도 더 용이하게 감염돈을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마당에 이러한 호기를 백분 살려야함에도 거꾸로 가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던 경북관계자들과 함께 분통을 터트렸다.

구제역 발생시에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한 방역조치를 하는 열정을 가진 현장에 계시는 가축방역관계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윗사람 몇 분들에 의해 쉽게 의사가 결정되는 현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가축방역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 분명히 말하자면 양돈농가를 위해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중단 및 청정화였다. 현재 양돈인들은 청정화 추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예방접종 중단을 하지 않으면 다들 양돈 산업이 붕괴된다고 했는데..., 지금 붕괴가 되었는가? 모두들 묻고 있다. 누가 이들에게 답을 해줄 것인가? 연자는 개인적으로는 늦었지만 다시 청정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년 제주도 돼지콜레라 항체검출 사건으로 인한 대일돈육수출이 중단되고 앞으로 중국 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다면 과연 국내 양돈산업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할 때 효율적인 대책이 나올지 의문시된다.

문경지역의 역학조사를 마치고 내려와서 경북가축위생시험소 관계자들과 반주를 겸한 저녁식사는 오늘의 사태를 얼마나 안주삼아 성토하였으면 일잔으로 인해 생긴 취기만큼 열을 받았다. 그리하여 경북가축위생시험소 개소 50주년의 기념책자에 경북관계자의 체험수기를 통해 타임 캡슐내 고스란히 기록해 놓았다. 앞으로 50년후 개봉 시에 우리 후세들이 객관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다음세대로 넘겼다.

그리고 상주 GP농장 관련한 판매농장들인 성주의 음성나환자촌의 돼지콜레라 집단발생과 경주, 영주 등 경북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 후 초기에는 방역기술 부서와 정책부서간 현장을 보는 시각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간 이해도가 증진되면서 방역에 가속도가 붙었다.

#### 다. 기타 지역

돼지콜레라가 어느 정도 소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역학조사결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면서 직원 간 교차조사와 현장에 나가 조사했던 내용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북 익산과 동시에 발생했던 경남 함안의 음성 나환자 정착촌에 가서 재조사를 수행하였고, 충남 보령, 당진지역 등에 대한 현지 역학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전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역학조사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모 종돈장을 비롯한 역학적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던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콜레라 역학조사위원회를 통해 토의 과정의 거치면서 차츰 정리를 해 나갔다.

이번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사태를 불러온 김포의 모 종돈장에 대한 집중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첫 발생시 전북 익산으로 내려가면서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모 종돈장에 대한 역학조사결과를 놓고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나갔다. 모 종돈장에 현지역학조사를 그 동안 수행했던 직원들은 그곳을 계속 맡기로 하고, 나머지 위탁 종돈장에 대한 정밀역학조사 부분을 맡았다. 그 동안 전국적으로 현장 역학조사를 한다고 직원들 대부분이 현장에 나가느라고 인력이 모자라 이들 위탁농장에 대한 조사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한참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역학조사는 빈 돈사 또는 그때 그 돼지들은 이미 성장하여 도축장으로 사라져 버렸다.앞으로도 종돈장으로부터 위탁받아 할 입장에 있는 축주들 대부분은 종돈장에 대한 불만들이 내재되어 있었지만 병어리 냉가슴 앓듯이 실질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다. 답변이야 이미 입을 맞춘 것처럼 앵무새처럼 되풀이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위탁농장을 그만 둔 축주의 경우는 그 동안의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자기 농장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대체적으로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이들 위탁농장에 대한 조사는 관련된 주변인물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입장에서 수사차원에서 접근을 해 나가면서 서서히 베일을 벗겨 나갔다. 모 종돈장에 대한 농림부로부터 수사요청이 되어져 수사차원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이 자리에서 피하겠다.

그리고 모 종돈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산발적인 발생이 또 있었다. 그 중에 경기 포천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은 1년전 최초 발생지역인 철원지역과 경기 김포 및 포천과 동일한 생활권으로 인해 종돈장, 양돈인, 돼지중개인, 화물운반차량, 도축장, 사료 및 약품대리점 등 여러 형태로 역학적 관련성에서 유사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신뢰성 있는 답을 주지 않고 회피성 발언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돼지콜레라 발생 원인규명은 사실한 불가능하였다. 다만 추측되

는 내용은 돼지콜레라 역학조사과정에서 나왔던 많은 위험요소 들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4. 맺는말

2002년과 2003년 상반기까지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1년 이상 동안 역학조사를 위해 현장에 뛰어 다닌 기간 중 한해 출장일만도 300일이 넘었다. 이렇게 미치도록 현장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돼지콜레라를 살모넬라, 홍막폐렴, PDNS, PMWS등 오진으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초동방역 실패 초래와 또한 이동가축관리 및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 없이는 이러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아무리 방역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축주가 방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위험요소관리 없이는 가축방역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질병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 시점에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관리만으로는 질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질병 발생 3대 요인이 되는 병원체, 전파경로, 감수성숙주가 3위 일체가 될 때만이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거나 제거를 하고, 그러한 위험요소를 소독하는 위험요소관리를 통한 농가의 자율방역의지가 방역의 승패를 갈라놓을 수 있다. 돼지콜레라 역학조사보고서에 각 농장별 역학조사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짧은 지면에 필자가 겪었던 격동의 1년 반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압축파일로 정리하여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농가는 농가별로 각자 해당사항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소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고, 그 위험요소는 곧 바로 병원체가 있다면 그 곳에 가장 먼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여 어떠한 방역관리보다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험요소 차단 및 제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난후에 위험요소, 즉 Target(소독대상물)을 삼아 정조준 한 소독이 가장 효과적인 소독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돼지콜레라 발생현장에서 수없이 겪었던 내용들 중 일부 숨은 이야기가 정사보다 야사가 또다른 교훈을 주고 있다. 그리고 역학조사 협조와 살처분, 소독 및 이동제한 등의 방역활동과 각종 지원을 위해 수고 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어둠속에서도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빛이라는 희망을 갖고서 다시 출발합시다.

## 4. 경상북도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연구관 조 광 현 박사

### 가. 머리말

돼지 콜레라는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전염병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List A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병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의 돼지 및 돼지고기는 비발생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OIE의 국제동물 위생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근절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시점인 1997년 3월 20일 대만의 도원현과 신죽현의 20여개 양돈장에서 돼지 구제역(口蹄疫)이 발생하여 일본 등 전 세계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을 중단함과 동시에 감염농장의 돼지 50여만두를 소각처분 하는 등 대일 돈육창구인 대만산 돈육의 수입이 금지되어 우리나라의 대일 돈육 수출의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그러나 일본이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겠다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 일본 돼지고기의 수출이 국내 양돈산업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돼지 콜레라를 2001년까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이 양돈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위시한 돼지 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 돈육의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제정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돈육수출의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질병의 근절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되어졌으며 모든 양돈관련 단체들이 합심하여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에 앞장서게 되었고 1997년 이후 예방접종의 전국적 확대실시로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현격히 줄어들어 이 질병의 근절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지속적인 돼지콜레라 근절에 대한 독려로 1999년 8월 경기 용인의 5건을 제외하고는 발생이 없어 2001년 12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통보하였으나 2002년 4월 강원 철원, 2002년 10월 인천, 경기 일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고 2003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발생(6개도 25개시군 62호)되어 예방접종 실시정책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따른 혼란, 최단기간의 청정화 계획 및 백신중단정책에 대한 문제점, 정부 당국의 방역정책에 대한 신뢰성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일선 방역 담당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돼지콜레라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하나의 자극제로 생각하고 더욱 더 매진하여 과거의 시행착오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돼지콜레라 근절 일정이 어느 정도 연기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근절시키도록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양돈농가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비한 예찰과 혈청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며 최근 몇 년간의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향후 이 질병의 근절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이 지면을 통하여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및 추진사항을 기술하고자 한다.

## 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수립 및 추진

### 1) 돼지 콜레라의 역학적 특성 및 방역상 문제점

#### 가) 역학적 특성

돼지 콜레라는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단 감염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거의 100% 폐사하게 되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돼지 질병 중 가장 무서운 감염병(感染病)이라 할 수 있다. 이 병에 감염된 돼지의 임상증상은 갑자기 체온이 40 ~ 42℃로 오르며, 원기가 없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나중에는 전혀 먹지 않게 된다. 이후 점차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둔해지고 또한 오한증세 때문에 여름에도 병돈은 서로 포개어 누워 있게 된다. 발병초기에는 변비가 생기나 후기에는 설사를 하고 눈이 충혈되며, 눈곱이 낀다. 발병 후 수일이 지나면 뒷다리를 못쓰게 되어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한다. 피부 특히, 다리, 배, 귀 등은 암적색 또는 자색으로 변하며 피모는 거칠어진다. 말기에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죽게 된다. 발병 후 보통 10 ~ 20일에 죽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만성으로 진행되어 30일 또는 그 이상의 경과를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만성형에서는 전형적인 돼지 콜레라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다.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가 임신한 모돈에 감염될 경우 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 감염되므로 태아 일령에 따라 재흡수, 유산, 사산 등이 일어난다. 그러나 임신 후기에 감염될 경우 태아는 감염된 상태로 분만되어 신경증상을 나타내며, 분만 수일 후 죽거나 위축돈이 되기도 한다. 한편 면역능력이 충분치 못한 태아에 독력이 낮은 돼지 콜레라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출생 후에도 면역반응을 나타낼 수 없게 되고 이후 계속해서 감염된 바이러스를 배출하므로 다른 돼지에 전파시키는 중

요한 전염원이 되기도 한다.

발병돈이나 폐사돈을 부검해 보면 림프절이 상당히 커져 있으며, 출혈이 심하게 나타난다. 비장에는 암적색의 출혈성 경색이 나타나며 콩팥이나 방광 등 각종 장기에도 점상출혈이 나타난다. 간혹 결장점막에 단추모양의 궤양을 관찰할 수도 있다.

이 병은 주로 감염된 돼지의 구입 또는 입식에 의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 즉 중간 수집상, 가축 시장 또는 타 농장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할 때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한 돼지, 사료, 분뇨 등을 운반하는 수송차량(특히 도축장 출입차량), 그리고 사료, 약품, 질병 등과 관련된 서비스요원과 승용차 등이 병을 옮기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주된 감염경로(感染經路)는 병든 돼지와 접촉에 의한 접촉 감염과 병원체에 오염된 사료나 물을 먹음으로써 전염되는 경구감염(經口感染)에 의한다.

#### 나) 방역상 문제점

##### □ 원인 바이러스의 특성

○ 돼지 콜레라바이러스는 자연계에 노출되었을 때 상당한 저항성을 나타낸다. 즉 실온에서 2~5개월간, 냉동육에서는 6개월간,  $-10^{\circ}\text{C}$  에서 보존된 혈액에서는 15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독약품에는 쉽게 사멸된다. 이 병에 감염된 돼지의 비장, 허파, 임파절 등의 각종 장기에는 다량의 병원체가 함유되어 있어 장기 1 g 중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돼지 100여만 두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함유되어 있으며, 오줌이나 분변에도 바이러스가 배설되므로 전염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병든 돼지를 매매하거나 또는 출하하여 식육으로 공급하는 것은 병원체를 전국에 퍼뜨리는 결과가 되므로 돼지 콜레라 방역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 □ 차단방역(遮斷防疫)의 소홀

○ 돼지 콜레라바이러스가 양돈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요한 경로는 도축장 출하차량, 사료차량, 분뇨수거 차량, 돼지 수집상, 외부인의 양돈장 출입 그리고 감염상태에 있는 돼지(잠복감염돈)의 구입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기적인 소독과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이 병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양돈장에서는 년중 자돈을 생산하므로 모체이행 항체가 소실되어 병에 걸리기 쉬운 자돈이 계속 존재하게 되며 일단 한 농장에 발병하면 발병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규모가 큰 양돈장에서 이 병이 발병하면 근절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기간이 필요하다.

□ 백신접종 미실시 또는 접종시기 부적절

- 최근 양돈인력의 부족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아예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농장이 있어 이 병이 양돈장에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에 많은 농장에서 21~25일령에 이유를 할 때 돼지 콜레라 백신을 접종하고 이후 2차 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방역상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장은 이유자돈의 모체이행항체 수준이 너무 높아 백신접종 후 예방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이러한 농장에 돼지 콜레라가 전염되면 자돈과 비육돈에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

□ 백신 보관 및 취급 부적절

- 돼지 콜레라 백신은 생독백신이기 때문에 백신의 수송 및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백신은 5℃에서 냉장 보관하여야 하는데 실온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요인이 된다. 백신을 냉동고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고무마개와 유리병의 열팽창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진공상태가 깨어져 백신 효력이 떨어지는 수가 있다. 이러한 예는 대만에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돼지 콜레라 백신은 독력을 약화시킨 살아 있는 바이러스이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면역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의 사용은 백신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2) 우리나라의 돼지콜레라 발생현황

□ 연도별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는 1908년 이후 매년 발생이 보고되고 있으며 해방 후인 1947년 10월 서울 근교의 양돈장에서 발생된 후 1948년에는 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약 30만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방약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예방접종이 확대되어 매년 1,000두 내외의 발생을 보였으나 1982년에는 예방약 부작용 등에 의하여 9,801두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발생을 보이다가 1997년 이후 예방접종 확대시행 이후에는 발생이 현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경북의 경우에는 1989년 769두(3건), 1996년 칠곡에서 547두(6건)가 발생한 이후 예방접종을 중단한 2001년 말까지 이 질병이 발병되지 않았다(표 1).

〈표 9-1〉 우리나라의 연도별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연도별	전국	경북	연도별	전국	경북
'90	1,284두(36건)	-	'97	1,912두(20건)	-
'91	1,794(26)	141(2)	'98	985(6)	-
'92	1,327(24)	-	'99	1,683(5)	-
'93	1,353(24)	-	'00	-	-
'94	1,525(19)	-	'01	-	-
'95	1,037(14)	-	'02	1,089(13)	-
'96	4,498(39)	547(6)	'03. 6월 현재	785(65)	83(12)

\* 경북 '89년 769두(3건) 발생

\*\* '03년 발생두수는 가검재료에서 야외바이러스를 확인한 실적임

### 3)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추진시의 역학상황 및 추진방향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이 시작된 후인 '98 돼지 콜레라 혈중중화항체가 분포상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출하돈 총 8,615두를 검사한 결과 항체가 양성인 76.7%, 음성인 개체가 23.3%로 나타났으며 경북의 경우에는 1,502두의 출하돈 중 항체가 양성인 72.5%, 음성이 27.5%를 나타내었다. 특히 이들 중화항체의 분포조사에서 항체역가 16~64배 수준이 약 60%로 나타났으며 국내 양돈농가의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1998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률 60%내외), 모체이행항체가 충분히 소실되지 않은 시기, 즉 생후 20~25일령에 1차접종하고 2차접종을 하지 않는 등 접종시기와 방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농장내를 출입하는 차량(사료차량, 도축장 출입차량 등) 및 방문자(특히 수집상인)에 대한 통제가 미비 하고 돼지의 시장 또는 수집상인에 의한 구입이 빈발하여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의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 획득에 맞추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1단계(1996. 7 ~ 1998. 6 : 2년)에서는 돼지콜레라 발생 최소화 단계로서 예방접종을 확대실시하고, 감염돈군의 이동제한 및 감염돼지를 살처분하여 전염원을 제거하는 단계이며, 2단계(1998. 7 ~ 2000. 10 : 2년)에서는 청정화 준비단계로서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항체역가검사를 확대함과 함께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를 중점관리하는 등 전염원을 차단하고, 지역별 생독백신접종 금지 및 유사시 대비 유전자 재조합백신 비축(청정화 조성), 감염돈군의 도태 및 보상을 실시하는 단계이며, 3단계(2000. 10 ~ 2001. 11 : 1년)에서는 근절 확인단계로서 전국적 백신접종 금지 및 청정화 유지를 확인하고 검역강화로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거대한 국책사업을 중앙 가축방역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과 지방 가축방역기관인 가축위생시험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였으며, 전국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현장에서 채

혈, 항체역가검사 및 항원검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물론 그 이면에는 전국 가축위생시험소 직원들 및 여러 유관 기관 및 양돈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엄청난 정성이 내재돼 있음과 아울러 시험소의 각종 질병에 대한 대처능력도 한 단계 격상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정부주도의 근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주요 추진대책은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된 공동방역 사업 실시단 구성 및 운영과 함께 가축전염병 발생 조기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7년 5월에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하여 조기신고농가, 지체신고 농가, 미신고자, 검사 거부자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100%~40%)하도록 하였으며 1998년 2월에는 가축 수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을 제정하여 도축장·도계장 출입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고시하였다. 한편으로는 가축방역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전국에서 사육중인 모든 돼지는 1999년 12월 31까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1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령(농림부 고시 98-59 : 1998. 9. 1)하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국의 경우 1997년 900만두에서 1998년 1,100만두, 1999년 1,650만두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경북의 경우에는 1997년 110만두, 1998년 110만두, 1999년에는 210만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 4) 경상북도의 돼지콜레라 추진실적

대만의 구제역 파동 등 수출조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일수출실적이 약 80,000톤 3,760억원(경북 9,700톤 360억원)에 이르러 지속적인 돼지고기의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돼지콜레라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양돈농가 및 관련단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시험소 및 시·군 공무원 및 공수의 읍면별, 농장별 책임 담당자를 지정(306명: 시험소 61, 시군·농업기술센터 98, 공수의 147)하여 예방접종을 독려 하였다. 한편, 농가의 관급예방약에 대한 거부 또는 불신감 해소 방안 강구, 예방접종 시기의 혼란 문제 등에 대한 농가지도를 강화하였으며 도내 전 돼지 사육농가의 전산입력을 완료(2,115호, 90만두, 1999년 4월 현재)하여 양돈농가 현황 및 항체역가 수준을 확인하여 예방 접종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울릉군 돼지콜레라 청정화 사업

1999년 6월부터 도내 돼지 콜레라 근절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국적으로 2001년 말까지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를 목표로 근절사업을 독려하고 있으나 경북 울릉군의 경우 도서이며 사육현황이 4호 119두(멧돼지 1호 32두)인 점을 감안하여 2000년 7월에 청정화를 조기 선포하기로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위하여 1999년 8월말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999년 9월에 경북대 수의대와 합동으로 현지에서 사육중인 돼지에 대하여 역학 및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90두를 채혈하여 항체를 확인한 결과 95.6%의 양성률을 확인하였으며 야외바이러스검사에서는 전두수가 음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경북도에서는 육지에서 반입되는 돼지의 도축장내 철저한 격리 계류와 함께 1999년 12월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및 예방약 유통금지 조치(경상북도 고시 제 1999-290)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당초의 계획보다 약 6개월이 늦은 2001년 2월에 청정화를 선포(경상북도 고시 제 2001-17호)하게 되었다.

#### 6)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결과

비육돈에 대한 본격적인 돼지콜레라 항체검사가 실시된 1999년 1월의 전국의 항체양성률이 74.6%, 경북은 89.9%에서 1999년 8월에는 전국 및 경북에서 각각 95.7%로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2000년에도 지속적으로 항체양성률이 95%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2, 표 9-3). 특히 이 시기에는 1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한 백신의 접종을 독려했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체양성률이 80%미만인 농가에 대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1999년의 과태료 부과현황은 표 9-4에 있는 바와 같이 전국 193건의 부과건수 중 경북의 경우 36건을 부과하여 예방접종을 독려했었다.

〈표 9-2〉 1999년 월별 비육돈 항체검사 성적

구분	전국		경북		구분	전국		경북	
	검사 두수	양성률 (%)	검사 두수	양성률 (%)		검사 두수	양성률 (%)	검사 두수	양성률 (%)
1월	1,849	74.6	129	89.9	7월	39,045	93.3	6,560	94.4
2월	8,533	75.7	4,099	69.7	8월	53,948	95.7	7,414	95.7
3월	22,783	83.0	261	80.5	9월	74,408	95.4	7,326	95.5
4월	40,628	81.5	5,328	72.7	10월	52,887	94.7	10,033	94.3
5월	60,620	86.9	10,173	85.0	11월	73,395	93.7	10,686	94.8
6월	74,717	89.7	7,836	90.3	12월	54,816	95.4	5,397	95.9

〈표 9-3〉 2000년 월별 비육돈 항체검사 성적

구분	전국		경북		구분	전국		경북	
	검사 두수	양성률 (%)	검사 두수	양성률 (%)		검사 두수	양성률 (%)	검사 두수	양성률 (%)
1월	14,763	95.8	339	97.9	7월	44,595	96.2	5,359	95.3
2월	34,324	95.8	4,095	95.8	8월	50,720	96.2	3,655	97.1
3월	53,319	95.4	5,047	96.3	9월	49,592	96.0	5,456	98.3
4월	30,802	96.1	3,885	96.2	10월	55,202	96.6	5,086	97.9
5월	40,790	96.5	3,073	96.0	11월	41,844	96.4	4,805	96.5
6월	54,005	96.5	5,776	95.4	12월	71,782	95.4	4,919	95.4

\* 제주도 및 강원도 실적 미포함

〈표 9-4〉 1999년 항체양성률 80%미만 농가수 및 과태료 부과건수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국
항체양성률 80%미만 농가수	820	287	182	781	458	697	1,000	848	5,055
과태료 부과건수	59	18	12	11	5	12	36	36	193

### 7)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수행시 제기된 문제점

1999년 말부터 2000년에 접어들면서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1999년 8월 용인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5건 1,683두) 등의 여파로 농가 및 관련단체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되고 차단방역의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아직도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떨어뜨린 돼지를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근절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농가의 의지가 약해지고 있으며 도축장 및 농장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의 미실시로 병원체의 유입 및 확산의 우려가 상존하게 되었다.

한편, 예방접종 중지 이후의 방역대책이 불투명하여 2000년 10월 예방접종 중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야생멧돼지의 검사 부진으로 조사실적이 미진한 점이 지적되었고, 예방접종 중지 후의 야외바이러스로 인한 재발생시 방어능력이 없으므로 피해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였으며 돼지콜레라의 재발생시 이동제한 지역내의 농가 피해보상대책(도축장 출하지연, 종돈·자돈 매매 통제, 감염시 살처분 등), 예방약 비축 및 사용통제계획 미비가 지적되었다. 특히 접종중지 이후 타지역 반출입 돼지에 대한 검사·통제 미비, 접종 중지 후의 야외바이러스 감염 돼지와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보유 돼지의 신속감별을 위한 진단기술의 보급 등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일선방역기관 공무원들이 강도 높은 근절대책 추진으로 방역업무의 담당을 기피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기술직렬의 감소 추세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기술적 측면의 혈청검사 성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진단키트의 정확성과 민감도가 약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대학에서 검사방법의 적용과 검사결과 분석 및 전달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백신접종 강화에 따른 항체양성률의 향상을 보면 '99.1(74.6%)→'99.4(73.6%)→'99.6(83.9%)→'99.8(95.8%)→'99.10(92.7%)로 나타났고 1998년 12월 예방접종을 중단한 제주도의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은 '99.1(0.5%)→'99.4(6.1%)→'99.6(7.3%)→'99.8(0.8%)→'99.10(0.1%)로 나타났다.

한편, 1998년 11월에 발생한 제주도의 만성형 돼지콜레라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으로 돼지콜레라 진단결과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나 돼지콜레라의 진단은 임상증상, 발생역학과 품고외에

백혈구 감소증 등 혈액검사, 형광항체검사, 바이러스 검사, 유전자 진단(PCR 및 유전자분석검사 등) 등의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방역기관에서 홍보하였다.

예방약의 예방효과에 대한 불신도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으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신생자돈에 접종하여도 안전하며 면역효과가 우수하고, 일본(GPE-)백신과 국내 백신(LOM)의 안전성 및 면역효과 비교 시험결과 차이가 없으며, 최근 10년간 분리된 야외분리주는 모두 LOM 바이러스 항체에 잘 중화됨으로써 백신의 예방효과에 문제없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국내에 적용하여 만약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는 변종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야외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백신을 실시해도 발병한 농가의 모든 돈군에 발생하여야 하나 현재 국내의 발생상황을 보면 예방백신 비접종 개체 또는 돈군에서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백신의 효과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성형 또는 지연성 감염 개체가 병원체를 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일단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감수성 개체를 최대한 감소·유지시키면 자연히 병원체가 소멸될 것으로 기대되며 감염개체의 색출을 위한 대규모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BVDV와 HCV의 교차성에 대한 의문점도 검사과정에서 해소함과 아울러 야생 멧돼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하여 감염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으며 소규모 농가 예방접종이 미흡하여 근절대책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는 99. 7월 1차, 99. 8월 2차 예방접종, '99. 11월 3차, 12월 4차 일제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8)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중지를 위한 사업 추진

1999년 8월 경기도 용인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 이후 약 2년간 국내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별 항체 검사에서도 높은 항체 양성률(95%이상)을 나타내는 등 예방접종 중지를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었으나 공청회 개최 등에 의한 여론수렴,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등 현안사항을 감안하여 예방접종 금지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당초 2000. 10 → 2001. 3 → 2001. 10)하게 되었으며 2회에 걸친 예방접종 금지일정의 조정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근절정책에 대한 불신감 및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일부 지역의 청정화는 계획대로 추진되어 제주도의 경우 1998년 2월 1일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1999년 12월 18일에 청정화를 선포하였으며 경북 울릉군은 1999년 12월 10일에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2001년 2월 1일에, 강원도의 경우 2001년 1월 1일에 예방접종을 중지한 후 2001년 7월 1일에 청정화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를 위하여 2001년 9월까지 100%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홍보와 독려를 병행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협조를 받아 농장채혈을 철저히 하여 항체 및 항원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사육멧돼지, 흑돼지, 방역취약지역의 소규모 농가를 파악하여 집중적으

로 방역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시·도(시·군) 단위 돼지콜레라 방역추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관할지역내 대학, 생산자 단체, 개업수의사, 민간방역요원, 동물약품 및 사료판매상, 농가대표 등으로 돼지콜레라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제 소독의 날에는 예찰요원들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도축검사시 철저한 생체검사와 함께 위축돈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료를 채취하여 돼지콜레라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가축운송차량의 소독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전국 및 경북지역에서의 돼지콜레라 항체역가 추이를 보면 2000년 1월부터 11월까지 96% 전후의 항체양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2000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18개월 동안 경북지역내 총 188호 3,885두에 대한 검사에서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야생 멧돼지 5두에 대한 항체 및 항원검사에서도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와 항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바 있다(표 9-5, 표 9-6 참조).

이상의 결과에서 보면 경북지역에서는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그 동안 높은 항체양성률이 2 ~ 3년간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돼지콜레라가 해외에서 유입되지 않으면 당분간 재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표 9-5〉 2001년 월별 항체검사 성적

구분	전국		경북		구분	전국		경북	
	검사 두수	양성률 (%)	검사 두수	양성률 (%)		검사 두수	양성률 (%)	검사 두수	양성률 (%)
1월	12,799	96.7	4,027	96.1	7월	19,734	96.7	3,191	98.1
2월	18,656	96.5	5,098	94.9	8월	22,466	97.2	2,720	98.1
3월	22,160	95.0	3,593	95.3	9월	22,370	96.8	2,014	97.9
4월	20,253	95.7	6,620	95.6	10월	24,166	96.5	3,468	98.3
5월	22,228	96.4	5,718	96.9	11월	19,409	97.3	3,054	98.1
6월	19,963	97.0	3,442	98.3	12월	8,373	91.8	1,738	89.0

\* 제주도 및 강원도 실적 미포함

〈표 9-6〉 경북지역 월별 돼지콜레라 항원검사 결과

년 월	검사호수	검사두수	결과	년 월	검사호수	검사두수	결과
00년 6월	62	917	음성	01년 5월	3	229	음성
00년 7월	70	256	음성	01년 6월	4	222	음성
00년 8월	6	194	음성	01년 7월	5	264	음성
00년 9월	3	112	음성	01년 8월	3	194	음성
00년 10월	4	212	음성	01년 9월	2	80	음성
00년 11월	4	218	음성	01년 10월	2	120	음성
00년 12월	2	99	음성	01년 11월	4	183	음성
01년 1월	2	111	음성	01년 12월	4	201	음성
01년 2월	3	145	음성	02년 1월	2	42	음성
01년 3월	3	127	음성	02년 2월	2	17	음성
01년 4월	4	202	음성	02년 3월	1	30	음성

## 9) 예방접종 중지애 따른 문제점

예방접종을 중지할 경우 돼지콜레라가 재발되면 방어능력이 없어 확산속도가 빠르고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양돈농가 중 일부에서는 야외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내에 야외바이러스가 없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돼지콜레라의 재발생시 살처분 보상외에 이동제한 지역 돼지의 수매, 입식지원 등 기타 피해부분에 대한 대책이 불확실하다며 사후관리 종합대책을 요구하였다(표 9-7 참조).

또한, 출하·매매 돼지의 이동통제 시스템,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사용제한 등 정부시책에 대한 양돈농가의 협조가 불투명하며 예방접종 돼지와 미접종 돼지가 혼재되어 혈청검사 결과에 대한 혼동이 생기고 그 확인에 따른 인력소요에 대비하여 그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표 9-7〉 예방접종 중지 여건

중지기준(농림부 고시)	국내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이상 비발생</li> <li>· 6개월이상 예방접종 항체양성을 95%</li> <li>· 멧돼지 등 야외바이러스 음성</li> <li>· 예방접종 중지 후 재발생시 농가지원대책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 8월 마지막 발생</li> <li>· 1999년 12월부터 유지</li> <li>· 야생멧돼지 145두 및 사육돼지 62, 804두 검사결과 전두수 야외바이러스 음성</li> <li>· 살처분 및 인근농장 이동제한 등에 따른 지원대책 미흡</li> </ul>

### 10)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중지전 위험도 평가 사업 추진

양돈단체, 농가 등의 예방접종 중단에 대비한 시험사업 필요성의 제기에 따라 관계기관 및 단체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위험도 평가에 대한 시험방법, 기준, 절차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시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시·군별 시험농장을 선정하여 일부 신생 자돈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야외바이러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백신접종 중단에 대한 안전성 확인과 농가의 불안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군별로 시험농장을 선정한 후 해당농장의 신생자돈 중 일부를 예방접종을 중지하고 도축 출하전까지 주기적 검사를 하며 감시두수는 1개 농장당 11~22두로 농장 자체 생산 돼지를 이용하기로 하였으며 사업기간은 '01. 6~ 9. 20까지로 정하였다(서울특별시와 예방접종을 중지한 강원도, 제주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관리체제는 시·도별로 수의과대학 교수, 생산자 단체, 방역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돼지콜레라발생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며 시·도별 평가단은 시험사업 중간보고 및 시험사업 완료 후 종합 보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험사업 완료 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등 근절대책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 11)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지 및 청정국 선포

- 2000. 9. 23 :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접종 중단시기를 2000년 10월에서 2001년 3월로 연기
- 2001. 1. 29 : 시·도, 양돈단체, 학계등에 중단시기에 대한 의견조회(중단시기를 2001년 5월 이후로 연기)
- 2001. 2. 10 :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한 예방접종 중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1,023명 중 559명(54.6%)이 중단을 반대
- 2001. 2. 20 : 농림부 주관으로 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2001년 10월 이전에 단계적 예방접종 중단을 결정
- 2001. 5. 24 : 돼지콜레라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야외바이러스 존재유무 확인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 302농가 4,800두의 자돈을 예방접종을 하지않고 25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야외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 2001. 8~9월 : 시·도별 자체 설문조사 및 공청회 개최결과 2001년 10월에 예방접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
- 2001. 9. 20 : 공청회를 개최하여 예방접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희망농가에서는 예방접종을 허용하도록 생산자 단체에서 요구
- 2001. 9. 28 : 협의회를 개최하여 2001년 11월 말 예방접종의 중단에 찬성하고 지원대책을 요구

- 2001. 10. 24 : 돼지고기 수출대책 회의 개최
- 2001. 12. 1 : 전국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 및 청정국 선포

## 12) 돼지콜레라 청정국 선포 이후의 방역 추진사항

돼지콜레라의 예방접종이 중단되면서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별 방역대책상황실이 운용되고 각 시·도에서는 돼지콜레라 방역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지역돼지콜레라 방역추진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였으며 의심축 신고시 초동방역을 위한 신속진단반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였다. 한편, 시·군에서는 가축방역관, 공수의, 민간방역요원 등 농가별 일제 임상점검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함과 아울러 도축검사 강화로 의심축의 불법유통 방지 및 가축수송차량의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청정국 선포 이후에도 주기적인 항체·항원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공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해외에서의 돼지콜레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연계하여 유입방지를 위한 공·항만 검역을 강화하였다.

## 13) 경북에서 PMWS 및 PDNS 발생

경북에서도 예방접종 중지이후 돼지콜레라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예찰 등을 강화하였으며 돼지콜레라 항체역가 추이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거의 2년 동안 96% 전후의 항체양성률을 보였으며, 예방접종을 중지한 2001년 12월부터는 89%, 2002년 1월 83.4%로 완만히 항체양성률이 떨어지다가, 2002년 2월 53.6%, 3월 47.1%로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예방접종 중지에 따른 항체양성률의 저하로 추정되며, 한편,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22개월 동안 경북지역내 총 195호 4,175두에 대한 검사에서 야외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2월 4일 오후 5시경 경북 K시 S농장에서 75일령 돼지 3두를 병성감정 의뢰하였으며 발현증상은 설사를 주증으로 식욕부진과 위축을 보이고, 부검 소견에서는 심한 폐렴과 임파절의 부종 및 출혈, 신피질의 출혈 등을 동반하였다. 이상의 병력 청취와 부검소견으로는 Salmonella일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농장에서는 2개월 전에도 Salmonella에 의한 설사병이 발생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에는 부검한 폐, 장, 비장 등 실질장기에 대한 세균배양과 함께 혈액검사 및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까지만 해도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도 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예방접종에 의한 높은 항체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외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비록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9-8〉 병성감정 의뢰가검물 검사결과(2002년 2월 4일)

검사항목	No1 (75일령)	No2 (75일령)	No3 (75일령)
체온	38.8℃	40℃	37.8℃
백혈구 수( $\mu\text{l}$ )	17,410	5,080	3,420
HC 항체검사(ELISA)	+(0.170)*	-	-
HC 항원검사 (PCR : NCR primer)	-	+	-

\* : ELISA HC antibody S/P ratio

그러나 의뢰가검물을 검사한 결과(표 9-8), 2두에서 심한 백혈구감소증이 나타났으며, 항체검사에서도 3두 중 1두에서 돼지콜레라에 대한 항체가 나타났다. 따라서 돼지콜레라의 특이적인 증상의 하나인 백혈구감소증이 나타나고, 항체가 나타남으로서 비로소 돼지콜레라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농장에서도 정부의 근절대책에 따라 2001년 12월 1일로 예방접종을 중지하였다면 현재의 가검물 75일령 돼지는 전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가검물에서 돼지콜레라 항체가 나타날 이유가 없었다. 다만 돼지 개체에 따른 모체이행항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2월 6일에는 더욱 더 정밀한 검사의 한 방법으로 백혈구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RT-PCR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의뢰가검물의 백혈구내에서 항원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중지된 상황에서 75일령 돼지가 심한 백혈구감소증을 보이며 백혈구내에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또 다른 개체에서는 돼지콜레라 항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돼지콜레라의 야외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때부터 경북시험소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발병농장의 역학조사 결과 농장주는 사육경력이 15년 정도이고,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에 따라 2001년 12월 1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지하였다고 한다. 정부방침대로 예방접종을 중단하였다면, 2002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볼 때 농장의 돼지 중 105일령 이상은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돼지이며, 105일령 미만은 전혀 돼지콜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돼지들이다. 7,800두 규모의 돼지를 9동의 돈사에서 사육하는 양돈장으로서 분만 자돈을 20일령에 이유하여 자돈사에서 60일령까지 사육한 후 육성돈사로 이동하여 출하할 때까지 사육하고 있었다.

발병돼지는 육성돈사에 이동된 직후의 돼지로서 일령이 70~100일령 사이이며, 70일령 이전의 돼지와 100일령 이후의 돼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즉, 육성돈사로 이동하여 10일 이후부터 40일까지 질병이 발생하였다. 이런 증상의 돼지는 최초로 2월 1일부터 발생되었다고 하며, 비육돈사 C 돈사내의 10 돈방 중에서 3개 돈방의 450두 중에서 150두 정도가 부분적으로 식욕부진 및 설사 증상을 나타내고, 폐사률은 아주 낮아서 현재까지 전체 15두 정도에 불과하였다.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상황을 조사한 결과 호흡기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홍막페렴, 파스튜렐라 페렴, 위축성 비염)을 1차(4주령) 및 2차(7주령)에 걸쳐 실시하고, 돼지단독 백신은 8주령에 실시하며, 홍막페렴 단독백신은 1차(9주령) 및 2차(11주령)에 추가 실시하고 있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자돈 40일령과 60일령에 주간단위로 실시하였으나, 2001년 12월 1일부터는 중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임상검사에서는 약간의 침울 증상과 소수의 개체에서 설사 증상만 보일 뿐 뚜렷하게 돼지콜레라와 유사한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지출장 역학조사시에 보았던 임상증상과는 달리 돼지 가검물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또 다시 돼지콜레라와 유사한 병변이 나타나 시험소이 병성감정팀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돼지 3두를 시험소로 운반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신장, 방광의 점상 출혈, 인후두의 충출혈, 임파절의 종대 및 출혈 소견 등 돼지콜레라와 유사한 병변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현지 출장채취한 가검물을 새벽에 검역원에 송부하여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역원에서는 시험소에서 파견된 관계관 참석하에 대책을 논의한 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검역원 관계관을 현지에 파견함과 동시에 실험실에서도 곧바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오후 늦게 검역원에서 검사성적이 통보되었으며 그 결과는 돼지콜레라 항체 및 항원검사(RT-PCR)에서도 시험소 성적과 똑같았다는 연락이었다. 그리고 2월 7일 당일 검역원에서는 질병연구부장의 지휘하에 관계관들이 현지로 급파되어 가검물을 채취하여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시험소에서는 “의사 돼지콜레라” 발생보고를 하게 되었으며,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다음의 조치사항을 실시하고, 관계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하여 24시간 체류하면서 현장을 통제하게 하였다.

- 발생 양돈장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고 농장 소독실시
-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소 설치와 사람, 사료, 장비, 차량 등의 출입통제 및 소독실시
- 최근 돼지의 이동사항, 양돈장의 출입자, 출입차량 파악
- 당해 양돈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안의 양돈농가 현황 파악
-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의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 설치 준비
- 축산물검사관의 돼지 도축시 질병검사 강화

2월 7일부터는 의사 돼지콜레라 발생 상태로서 계속 이동통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 출하와 종돈 판매가 되지 않아 축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서 2월 14일자로 검역원으로부터 이 농장 가검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수신되었다. 그 결과는 “돼지콜레라 음성이며, PRRS, PMWS, Pasteurella 복합감염”이라는 답변이었다. 이후 역학적인 특성을 조사하고 예찰을 강화하면서 시험소에서는 2월 19일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가검물을 다시 송부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9-9〉 정밀 검사결과 내역(수의과학검역원)

구 분	검사 결과
형광항체검사	폐에서 PRRS 양성
병리조직검사	뇌- 국소적 혈관주위 단핵세포 침윤 림프절- 주연성 출혈, 다수의 다핵거대세포 침윤 폐- 기관지 간질성 폐렴 간- 담관염 신장- 비화농성 간질성 신장염
PCR 검사	임파절 등 장기- 돼지콜레라 백신 확인 돼지싸코바이러스 양성
최종 진단	PRRS, Circovirus, Pasteurella 복합감염 PCR검사에서 돼지콜레라 백신바이러스 확인(돼지콜레라 음성)

정밀검사를 위해 의뢰된 가검물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 검사결과는 표 9-9에 있는 바와 같이 1차 정밀검사에서도 동일하며, 분리된 바이러스는 백신바이러스인 LOM주이며, 이 농장에서의 질병은 PRRS, PMWS 등 면역기관을 침해하는 질병과 함께 여러 복합요인이 추가되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야외바이러스가 아닌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예찰 및 혈청검사를 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14) 전국적인 돼지콜레라 발생(2003. 3)

2003년에 접어들면서 예방백신을 접종한 경기도 지역은 돼지콜레라의 발생보고가 없었으나 2003년 3월 18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돼지콜레라는 2000년 3월~4월에 전국 6개도 25개 시군 62호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경북의 경우에는 2003년 3월 20일 상주시 1농가에서 돼지콜레라의 발생을 최초로 확인한 후 7개시군 11농가(상주 5, 경주 1, 성주 2, 영주 1, 영덕 1, 문경 1, 영천 1)에서 발생되어 총 12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사육되고 있던 전 두수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폭발적인 돼지콜레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생산자단체 대표와 수의방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돼지콜레라 중앙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다(2003년 3월 21일). 아울러 이같은 조치가 96년 이후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해 우리 양돈인과 정부에서 기울인 노력이 아쉽기는 하지만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한다는 심정으로 결정된 점을 강조하면서 돼지콜레라 청정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임이 분명하지만 우선 돼지콜레라의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후 보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청정화로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하였다.

2003년 3월 현재 예방약 재고는 약 500만두분으로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에 즉시 접종하는 데 충분한 물량이며 전국 예방접종 지역 확대에 따른 추가 물량 760여만두분은 4월초에 공급되었고 2차 예방접종을 위한 부족분 550만두분은 4월 하순에 추가 생산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 특히,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의 역학상황을 볼 때 경기도의 한 종돈장에서 씨돼지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국의 종돈장(129개소)과 돼지정액처리업체(58개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각 종 질병 발생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경북의 경우 종돈장(17개소), 돼지정액처리업체(8개소)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3년에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역학조사 중간분석 결과 경기도 김포 소재 상원축산 제1농장에서 분양된 돼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 17일부터 5. 6일까지 6개도 25개 시·군에서 발생한 총 62건의 돼지콜레라에 대하여 학계·관련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 돼지콜레라분과 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 상원축산 돼지의 분양대기소인 상원축산 제1농장이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판명되었으며, 발생농장 62개(5. 6일 현재)중 71%인 44개 농장이 상원축산 후보돈이 분양된 돼지농장이었고, 이중 21개 농장은 상원축산 후보돈이 분양된 돼지에서만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발생농장 62개소 중 19개 농장이 상원축산 제1농장에서 분리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유전자와 100% 일치(5. 6일 현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03년 5월 8일 3건이 추가 발생하여 돼지콜레라 총 발생건수는 65건으로 늘어났으며 발생농장 65개농장 중 1농장(경기 포천)은 상원축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대부분은 상원축산 돼지분양농장 또는 분양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상원축산 제1농장 및 위탁농장의 사육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사률이 일반농장의 평균치보다 높은 돈군이 많았고, 특히, 지난 1월 중순 이후 폐사률이 증가한 돈군이 많았으며, 이러한 돈군에서는 일일 평균 사료 섭취량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경북지방에서는 2003년 하반기에 3개시·군 4개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 상원축산에서 분리된 바이러스 유전자와 100%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전국적인 예방접종 실시 후 오염지역내의 예방접종 누락 농가와 무분별한 떨이돼지 입식 농가에서 산발적인 돼지콜레라 발생이 우려되었으나 지속적인 예방대책 수립 및 홍보로 2003년 12월 이후부터 2005년 3월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서는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2003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발생된 돼지콜레라는 질병근절 사업에서 종돈장의 역할과 질병이 발생한 돼지의 무분별한 분양이 우리의 양돈산업에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 다. 맺는말

주위에 돼지콜레라 상재국들이 존재하고 수출입 물량의 증가와 해외여행객들의 빈번한 교류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의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운 난관이 도사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5~6년간의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여러 정책, 우리 실정에 맞는 방역기술, 신속한 진단법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은 우리의 시행착오 속에서도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다.

한 농장이 발원지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2003년의 돼지콜레라 발생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일본 돈육수출”이라는 명제로 너무 조급한 백신 중단 결정이 급기야 엄청난 화를 자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다른 국가로의 수출길 마저 막히고 청정화는 수년 뒤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양돈인들의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향후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종축관리와 함께 종축업 등록제 도입과 연계하여 차량 소독시설 등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위생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종돈장 위주로 정예화 되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돼지콜레라의 청정화가 일부의 의욕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살처분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제 법령의 확립과 생산자 단체 및 양돈농가와 공동목표를 향한 합심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면서 맴돌던 지난 몇 일 간의 상념을 되새기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틀동안의 밤샘으로 눈꺼풀은 한없이 무겁고 눈은 별정계 충혈되어 있었다.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한다면 상주까지 1시간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핸들을 잡았다. 상원축산의 위탁사육농장에서 분양 받은 돼지가 돼지콜레라 양성반응을 나타냄을 RT-PCR 검사로 확인한 후의 역학조사를 위한 출장이었기에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현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농장주가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돼지의 양성판정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잡한 심정으로 운전을 하면서 상주로 가고 있을 즈음 농림부의 예방접종의 전국 확대실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제일 먼저 나의 불만의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동승한 검역원의 역학조사팀이었다. 왜 경기도에서의 백신접종 실시를 막지 못했느냐?, 백신접종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나 예측은 전문가들이 제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등 울분 섞인 항의 표시에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던 검역원의 역학조사팀에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감출 길 없다. 그들이라고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는가?

돌이켜 보면 경북의 경우 1996년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2003년 초까지만 해도 발병이 없었으므로 근절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 1998년 이후 야외바이러스의 확인을 위해 수해지역 등 예방백신의 적기를 놓친 돼지 및 위축돈에 대한 검사를 수없이 반복하여 실시해 본 결과 2001년 후반기에는 경북의 경우 야외바이러스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겨울 철곡의 한 포장마차에서 오가든 대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검역원의 돼지콜레라 근절팀장인 S 연구관이 우리나라의 돼지콜레라 발생현황과 근절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얘기를 꺼낼 때 내가 너무도 당당하게 우리나라 최초의 질병근절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분야에서 행운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근절될 것이라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자신감을 내비친 적이 있었다. 그렇게 결의를 다지면서 5년 이상을 버텨왔는데 과거로 되돌아가게 된 현실에 국가적 질병근절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인정하면서도 사기가 저하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다.

돼지콜레라 근절사업 초기에 초등학교생이던 아들 녀석이 벌써 고등학교 1년의 어엿한 청소년이 되었다. 2003년 3월~4월 사이의 새벽시간에 출장준비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을 때 시험공부에 열심인 아들을 만나 서로 여러 번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 2000년도에 경기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백신 접종을 위한 전국 시험소 인원의 차출 시 해외악성전염병과의 전쟁을 시작하려 떠난다며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큰소리치고 약 1주일 후 예방접종을 끝내고 더 이상의 확산이 없어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이 긴급 뉴스로 알려지고 있던 충남 홍성의 구제역 발생 소식은 나의 얼굴을 굳어지게 만들었다.

이번에도 돼지콜레라가 발생될 때 반드시 근절이 가능하다고 큰소릴 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던 모양이다. 급히 출장준비를 마치고 나오는데 현관까지 따라 나온 아들 녀석의 “아빠! 힘내세요. 라는 한마디는 나의 결의를 더욱 다지게 만들었으며 차가운 밤공기가 정신이 번쩍 들게 했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돼지콜레라 항체 및 항원검사, 농가지도 등에 동참하고 밤새워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수행하면서 고민하고 고락을 함께 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별 첨 : 2003년 3~4월 경북 돼지콜레라 방역일지 (경북가축위생시험소 50년사 게재원고)

## 2003년 3~4월 경북 돼지콜레라 방역일지

일 시	제 목	내 용
2003. 3.18(화)	돼지콜레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익산 왕궁 송00 돼지콜레라 발생</li> <li>○ 역학조사 결과 경기도 소재 상원축산에서 분양</li> <li>○ 도에서 상원축산 분양농가 임상관찰 및 채혈검사 지시</li> <li>○ 우리도 2.11 ~ 3.13까지 12호 102두 구입확인</li> </ul>
3.19(수)	상원축산 분양농가 예찰 및 채혈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원축산 분양농가 12호 채혈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0 동부지소 직원 소독의 날 점검관련 영덕군 담당자와 영덕읍에서 만남</li> <li>- 영덕방역요원(이00)과 채혈업무로 영덕읍 조00 농가에서 만남</li> <li>• 영덕군 관내 2호(조00, 천00)에 대하여 영덕방역요원·동부지소 합동 채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00 : 입식돈(♂)1두, 모돈, 육돈 등 14두 채혈</li> <li>- 천00 : 입식돈(♂)1두, 모돈 등 10두 채혈 (자돈생산 판매농가)</li> </ul> </li> <li>• 14:00 영주시 양00(20두), 박00(20두) 영주 방역요원(안00)·북부지소 합동 채혈</li> <li>• 14:43 상주시 서곡동 박00 질병신고 (접수: 서부지소)</li> <li>• 14:50 상주시 방역요원(안00) 박00 농가 15두 채혈, 서부지소 검사의뢰</li> <li>• 15:00 경주시 서면 정00농가 경주시 방역요원이 17두 채혈(모돈5, 육돈12)</li> <li>• 16:00 성주군 상원관련 농가 채혈출장(본소 2명)</li> <li>• 16:00 본소 2명 서부지소로 합동 질병조사차 출발</li> <li>• 16:30 상주시 이안면 배00농가 현지조사 및 채혈 20두(서부지소)</li> <li>• 17:30 성주군 초전면 심00(9두)·김00(1두)·조00(10두)·하00(10두) 채혈</li> <li>• 17:30 상주시 박00농가 역학조사 (본소2, 서부지소1명 합동실시), 의사돼지콜레라에 준하는 조치 실시 및 20두 추가채혈</li> <li>• 18:30 상주시 박00농가 채혈시료 본소 송부</li> <li>• 18:30 상주시 박00농가 이동통제 위해 서부지소 1명 현장투입</li> <li>• 19:00 상주시 배00농가 채혈시료 서부지소 검사 (항체검사·백혈구수 측정)</li> <li>• 19:00 경주시 서면 정00농가 역학조사(동부지소)</li> <li>• 20:00 본소 2명 성주군 초전면 4호 채혈 후 귀소</li> <li>• 20:20 영천시 방역요원 하00농가 채혈(22두)·검사의뢰</li> <li>• 23:00 배00농가 검사결과 20두중 항체양성 14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검사용 시료 준비 서부지소 1명 본소로 출발</li> </ul> </li> <li>• 23:30 영주시 양00·박00 북부지소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li> <li>• 24:00 배00농가 시료 정밀검사 실시</li> </ul> </li> </ul>

일 시	제 목	내 용
3. 20(목)	가검물 검역원 검사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 : 00 박00농가 돼지콜레라바이러스 확인 및 긴급방역 대책회의(소장실, 참석 8명)</li> <li>○ 09 : 00 박00 관련농가 2호 권00 50두(서부지소) 채혈, 이00 20두(상주방역요원) 채혈</li> <li>○ 09 : 30 4호(김00·조00·하00·하00)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li> <li>○ 10 : 00 3호(박00, 정00, 심00) 가검물 검역원 검사 의뢰(본소 1명)</li> <li>○ 11 : 30 포항 송라 광천 이00농가 신고, 동부지소(1명)·포항방역요원 농장방문 채혈(20두)</li> <li>○ 14 : 30 권00·이00농가 혈청검사 시작</li> <li>○ 15 : 00 돼지콜레라 방역 긴급영상회의(도청 영상회의실) : 전 시·군, 학계, 수의사회 등(소장, 담당자 참석)</li> <li>○ 15 : 30 검역원 역학조사반 방문(2명)</li> <li>○ 17 : 00 검역원역학조사반·본소(1명) 상주지역으로 역학조사를 위해 출발</li> <li>○ 17 : 20 상주 박00농장 이동통제 요원(서부지소 1명) 철수, 교대근무 서부지소(1명)</li> <li>○ 20 : 00 검역원 출장(본소 1명) 귀소</li> <li>○ 20 : 00 비상방역대책 회의 개최(소장실, 참석 10명)</li> <li>○ 20 : 30 검역원역학조사반·본소(1명) 상주시 박00농가 역학조사</li> <li>○ 21 : 30 이00농가 검사결과 음성</li> <li>○ 23 : 30 권00·이00농가 혈청검사 결과 전두수 음성</li> </ul>
3. 21(금)	돼지콜레라 발생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 00 상주시 배00 농가 양성판정</li> <li>○ 11 : 30 3.20 의뢰 3호(박00, 정00, 심00) 검역원의 양성 통보 회시</li> <li>○ 11 : 30 서부지소 관내 종돈장 3호 채혈(김00 64두·우00 60두·백00 63두)</li> <li>○ 12 : 20 경주 산수골농장 60두 채혈 검사의뢰</li> <li>○ 14 : 00 검역원역학조사반·본소(1명) 상주시 배00농가 역학조사</li> <li>○ 14 : 30 경주시 긴급방역대책회의 동부지소장 참석</li> <li>○ 15 : 30 성주군 부군수 주관 살처분관련 회의 참석 (본소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주군 살처분 매몰지 선정 및 물품 준비</li> </ul> </li> <li>○ 22 : 00 경주 산수골농장 60두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li> <li>○ 23 : 00 박00농가 서부지소 교대근무</li> </ul>

일 시	제 목	내 용
3. 22(토)	살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 : 30 서부관내 종돈장 3호(김00·우00·백00) 검사 결과 전두수 음성</li> <li>○ 09 : 00 경주시 정00농가 살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처분장소 : 서면 천촌리 49-2번지의 1필지 (사육농가 인접)</li> <li>· 사료 7톤, 톱밥3톤, 기타 오염 물건 포함</li> <li>· 동원인력 : 군인 27명, 공무원 2명, 도부 4명</li> <li>· 동원장비 : 굴삭기 2대, 덤프트럭 1대</li> </ul> </li> <li>○ 09 : 00 성주군 심00농가 살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원인력 : 군 병력 40명, 인근 상원입식 농가 2호 17두 자진 도태</li> </ul> </li> <li>○ 10 : 00 소장 성주군 발생지역 방문</li> <li>○ 14 : 00 소장·시험실장·서부지소장 김00 배00 방문</li> <li>○ 15 : 00 상주시청(부시장 주관)에서 소장·시험실장·본소 담당자·검역원역학조사반 배00관련 협의회 개최</li> <li>○ 15 : 00 농수산국장 본소 방문(축산과 축산담당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실에서 방역추진 사항 보고 및 시험검사실(2층) 혈청 검사 과정 관람 후 직원 위로</li> </ul> </li> <li>○ 17 : 30 박00 관련 4호 채혈(문경 변00 40두, 상주 이00 20두, 김천 최00 26두, 상주 이00 26두)</li> <li>○ 18 : 00 문경 AI센타 채혈(58두)</li> <li>○ 19 : 00 경주시 정00농가 살처분 완료(940두)</li> <li>○ 23 : 30 성주군 심00농가 살처분 완료(437두)</li> </ul>
3. 23(일)	살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00 박00관련 4호 및 문경 AI센타 가검물 서부지소 검사 결과 전두수 음성</li> <li>○ 08:00 본소 관리담당 성주 살처분지역 지원 (방역복 168벌, 비닐덧신 50켤레, 마스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주 발생농장(심00) 소독 - 군병력 30명</li> </ul> </li> <li>○ 14:00 검역원(김00)·소장 경주 매물지(정00) 현장점검</li> <li>○ 18:30 검역원 (김00) 경주지역 방문 마치고 본소 방문</li> <li>○ 19:00 박00관련 4호 가검물 본소에서 PCR검사</li> <li>○ 20:00 성주 심00농가 살처분완료</li> <li>○ 24:00 상주 박00농가 살처분 시작</li> </ul>
3. 24(월)	살처분 및 채혈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20 소장님 농림부장관 수행, 경주 정00농가 현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시장 돼지콜레라 방역상황 보고, 농림부장관 축산인과의 대화</li> </ul> </li> <li>○ 10:00 검역원(김00)·사업과장 성주·상주 방문</li> <li>○ 12:00 배00관련 예천군 김00농가 채혈(40두)</li> <li>○ 14:00 영주시 상원관련 2호 2차채혈 (양00, 20, 박00, 10)</li> <li>○ 14:30 성주군 초전면 조00 신고</li> <li>○ 15:00 포항시 장기면 임중2리 김00농가 신고 - 포항 방역요원 28두 채혈</li> <li>○ 15:30 본소(2명) 성주군 초전면 조00농가 역학조사 및 채혈 (15두)</li> <li>○ 17:00 영덕군 방역요원 천00농가 2차채혈(10두)</li> </ul>



일 시	제 목	내 용
3. 24(월)	살처분 및 혈청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00 영덕군 방역요원 및 동부지소 김00, 조00농가 2차 채혈(30두)</li> <li>○ 15:00 성주군 초전면 조00농가 2차채혈(15두)</li> <li>○ 20:00 영천시 방역요원 하00농가 2차채혈(17두)</li> <li>• 영천 하00농가 채혈 도중 축주 부상으로 추가채혈 불능 (축주입원)</li> <li>○ 20:00 성주군 김00·조00·하00 2차채혈</li> <li>○ 20:00 영주시 상원관련 2호 양00, 박00 본소에 검사의뢰</li> <li>○ 21:00 성주출장팀(2명) 귀소</li> <li>○ 22:00 상주 박00농가 살처분 완료(3,800두)</li> </ul>
3. 25(화)	혈청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00 성주군 초전면 조00농가 양성판정</li> <li>○ 14:00 경주시 건천읍 이동주농가 신고 - 동부지소(1명) 채혈(34두)</li> <li>○ 14:10 상주시 배00농가 신고 - 상주시 공수의 김00 확인 결과 콜레라 아님</li> <li>○ 15:00 포항시 장기면 임중2리 김00농가 검사결과 음성</li> <li>○ 17:00 상주시 이00농가 2차채혈 농가 협조 당부</li> </ul>
3. 26(수)	살처분 실시 및 채혈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30 성주군 초전면 조00농가 살처분(본소 2명) - 산불진화요원·공익요원·축협 직원 등 20명 동원 (방역복 4박스, 작업복 1박스, 마스크 등)</li> <li>○ 10:00 상주시 황00농가 신고</li> <li>○ 12:00 상주시 이00농가 질병 검사 의뢰</li> <li>○ 14:30 박00관련 2호 채혈(황00, 20, 이00, 39)</li> <li>○ 15:00 경주시 건천읍 이00농가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li> <li>○ 16:00 영주 안정 박00농가 역학조사(본소1, 북부지소1)</li> <li>○ 16:00 상주시 모서면 이00농가 2차채혈 39두(서부지소2)</li> <li>○ 17:40 상주시 화개동 황00농가 2차채혈 29두(서부지소1)</li> <li>○ 18:00 영주시 박00농가 의양성 통보</li> <li>○ 18:10 영주시 박00농가 역학조사(본소1, 북부지소1)</li> <li>○ 20:30 본소1명 영주에서 귀소</li> <li>○ 21:30 이00·황00 가검물 본소에 검사의뢰</li> <li>○ 22:00 성주군 조00농가 살처분완료 (618두)</li> </ul>
3. 27(목)	역학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 성주 살처분농가(조00) 및 매몰지 소독점검(본소2)</li> <li>○ 11:00 영덕군 조00농가 역학조사(본소1, 동부지소1)</li> <li>○ 12:00 전 축산과장 서부지소 격려차 방문</li> <li>○ 15:00 성주 살처분농가(조00) 소독확인 후 귀소</li> <li>○ 16:30 영덕군 조00, 영주시 박00 2호 양성발생 보고</li> </ul>
3. 28(금)	살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30 영주시 박00 살처분관련 영주시방역대책회의 참석 (북부지소장외 2명 참석)</li> <li>○ 10:00 영덕군 조00 살처분관련 영덕군방역대책회의 참석 (동부지소장)</li> <li>○ 16:00 영주시 박00농가 살처분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 농장내</li> <li>• 동원인력 : 군인10명, 공무원30명, 방역관2, 도부1명</li> <li>• 동원장비 : 덤프트럭 2대, 전살기 2대</li> </ul> </li> </ul>

일 시	제 목	내 용
3. 29(토)	살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 영덕군 조00농가 살처분 시작(입회방역관 : 동부지소1)</li> <li>• 살처분장소 : 발생농가내</li> <li>• 동원인력 : 공무원(군인) 22, 도부 4, 장비기사 2</li> <li>• 동원장비 : 굴삭기 1대, 덩크트럭 1대</li> <li>○ 09:30 상주시 배00농가 살처분 시작</li> <li>○ 13:00 검역원 송00 연구관 방문</li> <li>○ 14:30 검역원 송00 연구관 황00·이00 양성확인</li> <li>○ 19:00 조00농가 살처분완료(755두)</li> <li>○ 24:00 상주시 배00농가 살처분 완료(1,654두)</li> </ul>
3. 30(일)	살처분 후 사후관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역별 살처분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li> </ul>
3. 31(월)	살처분 및 채혈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00 상주시 이00농가 살처분 장소 물색 - 처음 매몰 장소는 1.5m 깊이에서 물이 새어나와 매몰지 변경</li> <li>○ 14:00 상주시 황00농가 살처분 장소 사전 물색</li> <li>○ 16:00 포항시 방역요원 울릉도반입돈 (포항 동해면 주00농장) 채혈 36두, 동부지소검사의뢰</li> </ul>
4. 1(화)	살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 상주시 이00농가 살처분 시작 (입회 : 서부지소3)</li> <li>○ 17:00 울릉도반입돈(주00) 검사결과 전두수 음성</li> </ul>
4. 2(수)	살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4:30 상주시 이00농가 살처분 완료 (1,260두)</li> <li>○ 13:30 지사님 상주시 매물현지(배00농가) 및 상주시 함창·이안면 통제초소 방문 격려</li> <li>○ 20:30 상주시 황00농가 살처분 시작 (입회 : 서부지소2)</li> </ul>
4. 3(목)	살처분 및 채혈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6:30 상주시 황00농가 살처분 완료(970두)</li> <li>○ 14:00 울릉도반입돈 2호(경주 서면 이00·박00농장) 채혈 80두, 동부지소검사의뢰</li> </ul>
4. 4(금)	혈청검사 및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00 울릉도반입돈 2호(경주 서면 이00·박00) 전두수 음성</li> <li>○ 17:00 전 검역원 질병연구부장 안00 박사 본소 방문</li> <li>○ 17:30-19:30 안00 박사 돼지콜레라 특강(참석 본소 20명)</li> <li>○ 19:30-21:00 돼지콜레라 간담회(삼보식당)</li> </ul>
4. 5(토)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30 영천시 하00농가 발생 신고(영천시 축산계)</li> <li>○ 09:00 하00농가 출장(본소2명), 역학조사 및 가검물채취 (이환돈 2, 채혈 30)</li> <li>○ 15:00 영천 현지 출장팀 귀소: 돼지콜레라 살처분 준비 시작</li> <li>○ 17:20 하00농가 가검물 검역원 의뢰(본소1)</li> <li>○ 23:00 검역원 도착</li> </ul>
4. 6(일)	역학조사 및 살처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3:00 검역원 출장(본소1명) 귀소</li> <li>○ 09:00 상주시 전살장비 영천 수송</li> <li>○ 11:00 검역원 하00농가 양성통보</li> <li>○ 11:30 검역원 역학조사반 방문(2명)</li> <li>○ 11:30 박00관련 농가 채혈(상주 이00·서00·이00·차00, 문경 변00, 김천 최00)</li> <li>○ 17:30 하00농가 역학조사(검역원 2명, 본소 2명) - 현장에서 부검 5두(폐사돈 4, 상원입식돈 1), 채혈 12두(상원농장 입식돈)</li> <li>○ 18:00 문경시 권00농가 채혈 30두(서부지소 1)</li> <li>○ 23:00 하00농가 역학조사반 귀소</li> </ul>

일시	제목	내용
4. 7(일)	살처분 및 혈청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30 영천시 하00 살처분 1,600두(입회 : 본2명)</li> <li>○ 09:00 돼지콜레라 방역관련 지소장회의 개최(본소회의실)</li> <li>○ 20:00 영천시 하00농가 살처분 철수 (본소 2명)</li> <li>○ 20:00 - 21:40 검역원(2명) · 시험소(10명) 방역간담회(웃골식당)</li> <li>○ 23:00-24:00 문경 권00, 상주 이00 혈청검사 보고차 축산과장 면담(본소 2명)</li> </ul>
4. 8(월)	살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 영천 하00 살처분(2일차) 1,056두</li> <li>○ 10:30 검역원 역학조사팀 도축산과장 방문 - 혈청검사 양성일 즉보 등 긴급조치 당부</li> <li>○ 13:00 검역원역학조사팀 경남 김해로 출발</li> <li>○ 16:30 상주 이00, 문경 권00 의양성 발생보고</li> <li>○ 16:30 - 17:30 농정국장께 방역추진 사항 보고(소장)</li> <li>○ 18:00 - 18:20 방역대책 등 간부회의(소장실)</li> </ul>
4. 9(화)	살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8:30 영천 하00 살처분 3일차</li> <li>○ 10:20 상주 이00, 문경 권00 양성 발생보고</li> <li>○ 24:00 영천 하00 살처분 완료(금일 500두), 개 4두</li> </ul>
4. 10(수)	살처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 상주시 이00농가 살처분관련 회의(발생농가)</li> <li>○ 13:00 이00농가 살처분 시작(입회 : 서부지소1)</li> <li>○ 20:00 상주 이00농가 살처분 완료 950두</li> </ul>
4. 11(목)	도축돈 백신항체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00 도축장 출하돈 44호 항체검사</li> <li>○ 16:30 도축장 출하돈 예방접종 증명서 지참 안내 (문자메세지)</li> </ul>
4. 12(금)	살처분 및 매몰지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00 문경 권00농가 살처분 시작(입회 : 서부지소 2)</li> <li>○ 10:00 - 14:00 살처분매몰지(성주) 방역실태 점검(본소 1)</li> <li>○ 10:00 - 14:00 살처분매몰지(영천) 방역실태 점검(본소 1)</li> <li>○ 17:30 문경 권00농가 살처분완료 3,500두</li> </ul>
4. 13(토)~ 15(월)	예찰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인 예찰 강화(시험소 방본요원, 공수의 등)</li> <li>○ 백신예방접종 강화 홍보 및 지도</li> <li>○ 도축돈 백신항체검사 실시</li> </ul>
4. 16(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30 - 15:00 농수산국장 본소 방문, 돼지콜레라 방역업무 담당 직원들 노고치하 및 격려</li> </ul>

**부 록**

여 백

## 〈부 록〉

### I. 방역관련규정

1.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제정(농림부 고시 제1999-34호 ; '99. 7. 1)
2.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1-72호 ; '01. 11. 30)
3.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2-23호 ; '02. 5. 8)
4.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3-44호 ; '03. 9. 24)
5.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명령(농림부 고시 제1998-59호 ; '98. 9. 5)
6.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명령(농림부 고시 제1999-8호 ; '99. 3. 5)
7.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명령(농림부 고시 제1999-33호 ; '99. 7. 1)
8.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1999-15호 ; '99. 4. 12)
9.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0-71호 ; '00. 11. 11)
10.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2-28호 ; '02. 5. 27)
11.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3-26호 ; '03. 5. 23)
12.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4-32호 ; '04. 5. 21)
13.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농림부 고시 제2005-4호 ; '05. 1. 10)
14.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955호 ; '98. 8. 31)
15.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3-3호 ; '03. 6. 27)
16. 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1998-5호 ; '98. 2. 2)
17.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농림부 고시 제2004-9호 ; '04. 3. 11)
18. 대 일본 돼지고기 수출위생조건
19. 일본의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
20. OIE 돼지콜레라 위생규약 및 년도별 변경사항

### II. 관련자료

1. 종돈업의 관리체계와 현행제도
2. 종돈업 및 정액처리업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인력 현황
4.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내역(2003. 3. 24)
5.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돼지콜레라 청정화 보고서

### III. 방역관련 보도자료

### IV. 사진 및 홍보자료

## I. 방역관련규정

### 1.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제정

농림부 고시 제 1999-3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7월 1일

농 립 부 장 관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주사·검사·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염지역”이라 함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돼지사육시설(이하 “양돈장”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경계지역”이라 함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2 장 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제4조(돼지콜레라방역추진위원회 설치) ①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광역시 또는 도

(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중앙협의회 운영) ①중앙협의회는 돼지콜레라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정부의 돼지콜레라 방역기본 계획 및 추진방안 협의
2. 오염지역 또는 경계지역안의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이동제한 등 방역실시 기준 설정
3.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 기준 설정
4. 국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전면금지 및 비발생국 선포
5. 정부와 시도, 시도간 방역 관련업무 중재 및 조정
6. 기타 돼지콜레라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②중앙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농림부 축산국장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의 원장 및 질병연구부장
3.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종축개량부장
4. 축산관련 기관·단체·학계·전문가 또는 지방협의회 위원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자

③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중앙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중앙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지방협의회 운영) ①지방협의회는 관할 구역의 돼지콜레라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관할지역안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향상 등 근절대책 추진방안
2. 예방접종 금지지역 지정
3.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경우 청정도 유지·양돈장 감시 등 방역실시상황 평가 및 이에 대한 협의
4. 돼지콜레라 발생 양돈장 돼지의 살처분 범위 및 방법 설정
5. 기타 관할지역내 돼지콜레라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 농정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양돈 관련단체 및 업계에 종사하는 자,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지방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지방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도 가축위생담당으로 한다.



### 제 3 장 돼지콜레라 발생시 방역요령

제7조(의사 돼지콜레라 발생시 조치) ①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한 자 또는 이러한 돼지를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돼지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동물병원·수의과대학·동물약품·사료업체 및 기타 병성감정기관 소속 수의사를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돼지콜레라 진단을 위한 병성감정용 시료를 채취토록하여 지체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군수는 즉시 의사돼지콜레라 발생 양돈장에 대하여 사육돼지의 이동제한 및 사람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최근 돼지의 이동사항·양돈장의 출입자·출입차량 내역과 당해 양돈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미터 이내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 지역안의 양돈농가 현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이를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도지사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돼지콜레라 발생시 조치) 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돼지콜레라로 판정된 때에는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살처분의 범위와 기준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경우에는 동 질병이 발생한 양돈장의 사육 전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검역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을 관할하는 도지사는 당해 양돈장을 중심으로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을 정한 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질병이 최종 발생한 날부터 돼지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지역의 지리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 등에 따라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도지사와 검역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제한 기간 등) ①제8조제3항의 이동제한 기간은 오염지역의 경우에는 최종 발생건에 대한 조치 후 최소 40일 이상,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최종 발생건에 대한 조치 후 최소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도지사는 오염지역 또는 경계지역안의 돼지에 대하여는 임상증상이나 혈청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방역상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오염지역 또는 경계지역안에 위치한 타농장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당해 돼지를 도축할 목적으로 이동을 허용하는 때에는 당해 농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

에 위치한 도축장을 출하도축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정도축장은 수출용돼지를 도축하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제10조(방역반 편성운영) 도지사는 돼지콜레라의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시군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 공수의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제한 해제 등) ①도지사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에 대하여 살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40일간 혈청검사·항원검사·소독과 오염제거 등의 방역을 실시하여 돼지콜레라에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가 없거나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등이 없어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농림부장관, 다른 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돼지콜레라 종식보고(통보)를 한 후 해당 양돈장에 대한 돼지의 입식을 허용한다.

②도지사는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안의 돼지에 대하여 이동제한 기간중 임상관찰, 항원검사, 혈청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동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 4 장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제12조(예방접종 시기 등) ①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끼돼지는 생후 40일(5~6주)째에 1차 접종을 하고 생후 60일(8~9주)째에 2차 접종
2. 종돈 또는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하되 모돈의 경우에는 종부 2~4주(21일 전후)전에 1회 접종
3. 수입되는 돼지는 수입검역 완료후 출고시에 1차 접종을 하고 1차 접종을 실시한 날부터 3주 후에 2차 접종

②양돈장 인근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돼지에 대하여는 반입 즉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3조(예방접종확인 등) ①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돼지와 특수 사육·판매 목적 등의 이유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돼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돼지의 확인은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농림부 고시 제1999-33호, '99. 7. 1)”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확인)서의 소지여부 또는 혈청검사 방법에 의한다.

제14조(예방접종 관련 행정조치 등) 돼지콜레라 예방접종과 관련 예방접종실시대장, 예방접

중 확인·지도 감독, 과태료 부과, 도축제한 등에 관하여는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항체보유상황 조사) ①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양돈장 : 과거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의 양돈장 또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미실시 의심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장당 최소 10마리 이상 검사
2. 도축장 : 축주가 발급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우선으로 검사하되 항체보유 비율이 검사두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돼지의 출하농장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

②검역원장은 전국의 돼지콜레라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도지사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돼지를 중심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야외바이러스 역학조사) ①도지사는 발열·식욕부진·원인불명의 설사 등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감염여부(야외 바이러스주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 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의 야외바이러스주 검사사항 확인 등 국내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방역관리 상황조사) 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양돈장의 축사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양돈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돼지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돼지콜레라 및 기타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수립) 도지사는 관할 지역내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 제 5 장 예방접종금지 및 지역별 청정화 단계 방역요령

제19조(예방접종 금지) 도지사는 관할 지역내에서 최근 1년(제2호의 경우에는 6월)동안 돼지콜레라 방역상황이 다음 각호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돈장 경영자에게 사육돼지에 대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하여 예방접종 금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 시군간의 방역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군 단위별로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할 것.
2.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율이 95% 이상이 되어야 할 것.
3.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
4. 예방접종 금지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동제한, 오염지역 및 경계지역내 돼지에 대한 검사, 살처분 및 도태보상, 돼지 재입식 자금의 지원 등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역 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제20조(청정화 선포 및 확인) ①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이후 6월이상 돼지콜레라의 발생사실이 없는 때에는 청정화 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관할 지역내 청정도 유지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정화 선포일부터 6월까지 3월마다, 6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매 6월이 경과할 때마다 도축장에 출하되는 관내 사육돼지를 대상으로 돼지콜레라 항체보유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두수 추출비율은 검사주기 동안 관내 양돈농가에서 출하된 도축두수의 1천분의 1(최소 300두 이상)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항체검사 결과 비육출하돼지에서 항체양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돼지를 출하한 양돈장의 사육 전두수에 대하여 신속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당해 양돈장에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하여 중점적인 혈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혈청검사 결과 항체양성 돼지가 발견된 때에는 출하농장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농장 육성돈 전체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조사결과 돼지콜레라 야외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된 때에는 당해농장 사육돼지 전체에 대하여 신속한 살처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청정화 지역 방역관리) ①도지사는 청정화지역내 방역관리를 위하여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야외바이러스검사 및 방역관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청정화지역내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 보유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의 야외바이러스 검사사항 확인 등 야외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선포한 도지사는 청정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양돈장 경영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돼지는 청정화 지역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입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역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사실확인

나. 입식돼지를 생산하였거나 사육한 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및 야외바이러스 존재 등 역학정보의 확인

다. 구입돼지를 양돈장에 입식한 날부터 40일간의 격리사육 및 임상검사 실시

2.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때에는 이를 70℃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후 급여

3. 자연종부 또는 인공수정은 청정화 지역의 종돈이나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

4.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역의 중돈 또는 해당 중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는 때에는 자연중부 또는 정액을 생산한 돼지에 대하여 예방접종 상황, 항체보유상황 및 해당 돼지 사육농장의 역학정보 확인 등

④도지사는 관내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판매·유통을 금지시켜야 하며,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회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청정화 지역에서 발생시 조치) ①도지사는 청정화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준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청정화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의 조기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도지사의 검사인력이나 기술지원 등의 요청 여부에 불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 6 장 비발생국 인정 및 전국적 청정화

제23조(비발생국 인정)농림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마지막으로 선포한 날부터 6월이상 돼지콜레라 발생사실이 없는 때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제수역사무국의 동물위생규약에 의거 비발생국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전국적 청정화이후 방역관리) ①농림부장관은 검역원장 또는 도지사로서 하여금 매년 전국 돼지사육두수의 1천분의 1이상의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돼지콜레라 항체보유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를 도축장 출하돼지를 중심으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국내 판매 금지조치 및 동 질병 발생시를 대비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별도 비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돼지콜레라 비발생국 인정이후 국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사실을 국제수역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981호, '99. 5. 18)”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7 장 보 칙

제25조(추진실적 제출) ①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의 금지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돼지콜레라 예방약 공급 및 접종실적
2.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및 과태료 처분실적
3. 양돈장 및 도축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적
4. 가축 및 동물약품·사료수송차량의 세척·소독실태 점검실적
5. 기타 교육·홍보 및 농림부장관의 방역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받은 검역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당해 실적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지도점검 등) ①검역원장은 도지사(도지사 소속 방역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농림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검역원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또는 검역원에서 실시한 시도별 혈청검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농림부장관 및 전국의 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가축수송차량의 소독, 종돈장의 위생, 병성감정,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가축수송차량 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1998-10호)”, “종돈장 위생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32호)”,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955호)” 및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15호)”을 적용한다.

제28조(벌칙) 이 요령에 의한 돼지콜레라 발생신고, 이동제한,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금지, 살처분명령 등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99.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당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제주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한 것으로 본다.

## 2.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1-7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돼지콜레라방역 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99-34호, '99.7.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 11. 30

농림부장관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주사·검사·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생지”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의 사육시설을 말한다.
2. “위험지역”이라 함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 “경계지역”이라 함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제4조(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설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광역시 또는 도에 지역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중앙협의회 운영) ①중앙협의회는 돼지콜레라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정부의 돼지콜레라 방역기본 계획 및 추진방안
2. 돼지콜레라 발생 시 예방접종 여부 등 효율적 방역 실시방안

3.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및 허용 기준 설정
  4. 정부와 시도, 시도간 방역 관련업무 중재 및 조정
  5. 기타 돼지콜레라 근절에 필요한 사항
- ②중앙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부 축산국장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의 원장과 질병연구부장
  3.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소장과 종축개발부장
  4. 축산관련 기관·단체·학계 전문가 또는 지방협의회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자
- ③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중앙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 ④중앙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지방협의회 운영) ①지방협의회는 관할구역의 돼지콜레라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협의한다.

1. 관할지역 안의 돼지콜레라 근절 및 청정화 추진방안
  2. 관할지역 안의 예방접종 금지 및 허용
  3.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경우 청정도 유지·양돈장 감시 등 방역실시 상황 평가 및 이에 대한 협의
  4. 돼지콜레라 발생시의 살처분 범위와 방법 설정
  5. 기타 관할지역내 돼지콜레라 근절에 필요한 사항
- ②지방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도 농정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양돈 관련단체 및 업계에 종사하는 자,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위원장은 지방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지방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 ④지방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도 가축위생담당관으로 한다.

### 제3장 돼지콜레라 발생시 방역요령

제7조(의사 돼지콜레라 발생시 조치) ①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한 자 또는 이러한 돼지를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돼지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동물병원·수의과대학·동물약품·사료업체 및 기타 병성감정기관 소속 수의사를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돼지콜레라 진단을 위한 시료를 채취토록 하여 지체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원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사돼지콜레라 발생 양돈장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고 농장 소독 실시
2.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소 설치와 사람, 사료·장비·차량 등의 출입통제 및 소독 실시
3. 최근 돼지의 이동사항·양돈장의 출입자·출입차량 파악
4. 당해 양돈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안의 양돈농가 현황 파악
5.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의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 설치준비

④축산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도축장에서 돼지콜레라 의심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도축작업 중지, 의심축 격리, 계류가축 및 도축물량의 이동제한, 도축장 출입통제 및 소독 실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현황 파악 등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돼지콜레라 발생시 조치) 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 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판정된 때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로 판정되거나 검역원장으로부터 동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생농장으로 반입된 돼지 및 발생농장에서 이동된 돼지의 사육 양돈장,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 생산농장 및 발생농장에서 정액을 공급한 농장에 대하여 우선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및 추적조사의 범위는 별표 1에 의한다.

④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 및 도축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견될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양돈장 및 도축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을 정한 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질병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돼지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지역의 양돈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 등에 따라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와 검역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시·도지사는 발생일 기준 3일 이내에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긴급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신속히 혈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 예방접종)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결과 3개 농장 이상에서 추가로 발생이 의심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즉시 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여부 및 예방접종 돼지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제한 기간 등) ①제8조제4항의 이동제한 기간은 최종 발생 건에 대한 살처분 조치 후 위험지역의 경우에는 최소 40일 이상,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위험지역 또는 경계지역 안의 돼지에 대하여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날부터 15일간 임상관찰 결과 의심증상이 없거나 혈청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방역상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위험지역 또는 경계지역 안에 위치한 타농장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당해 돼지를 도축할 목적으로 이동을 허용하는 때에는 당해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축장을 출하도축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정도축장은 수출용 돼지를 도축하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제12조(방역반 편성운영)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시·군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 공수의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이동제한 해제 등) ①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에 대하여 살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40일간 혈청검사·항원검사·소독과 오염제거 등의 방역을 실시하여 돼지콜레라에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가 없거나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등이 없어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농림부장관, 다른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돼지콜레라 종식 보고(통보)를 한 후 해당 양돈장에 대한 돼지의 입식을 허용한다.

②시·도지사는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안의 돼지에 대하여 이동제한 기간중 임상관찰, 항원검사, 혈청검사 및 역학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동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4장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제14조(예방접종 시기 등) ①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끼돼지는 생후 40일(5~6주)째에 1차 접종을 하고 생후 60일(8~9주)째에 2차 접종
2. 종돈 또는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하되 모돈의 경우에는 종부 2~4주(21일 전후)전에 1회

## 접종

3. 수입되는 돼지는 수입검역 완료 후 출고시에 1차 접종을 하고 1차 접종을 실시한 날부터 3주 후에 2차 접종

②시·도지사는 양돈장 인근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반입 즉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방접종확인 등) ①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콜레라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돼지와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돼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돼지콜레라예방접종실시대장이나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콜레라예방접종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에 의한다.

제16조(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 ①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희망농가의 예방접종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예방접종 실시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가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예방접종 승인을 받은 농장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에 대하여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표시를 명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④시·도지사는 예방접종 승인 농가의 모돈 두수 등 사육현황을 농림부장관 및 검역원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항체보유상황 조사) ①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양돈장 : 과거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의 양돈장 또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미실시의심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장당 최소 10마리 이상 검사

2. 도축장 : 축주가 발급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우선으로 검사하되 항체보유 비율이 검사두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돼지의 출하농장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

②검역원장은 전국의 돼지콜레라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도지사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돼지를 중심으로 혈청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야외 바이러스 역학조사) ①시·도지사는 발열·식욕부진·원인불명의 설사 등 돼지 콜레라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감염여부(야외 바이러스주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역원장은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 검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의 야외 바이러스주 검사사항 확인 등 국내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방역관리 상황조사) 시·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양돈장의 축사 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양돈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돼지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돼지콜레라 및 기타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장 예방접종금지 및 지역별 청정화 확인단계 방역요령

제21조(예방접종 금지 등)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안에서 최근 1년(제2호의 경우에는 6월) 동안 돼지콜레라 방역상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돈농가에게 사육돼지에 대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하여 예방접종 금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 시·군간의 방역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군 단위별로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수출제한·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할 것
2.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율이 95% 이상이 되어야 할 것
3.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
4. 예방접종 금지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동제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안의 돼지에 대한 검사, 살처분 및 도태보상, 돼지 재입식 자금의 지원 등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역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제22조(예방약 수급 및 관리) ①시장·군수는 분기별 돼지콜레라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 시작 전월 10일까지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당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 및 검역원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국적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체에 알려주어야 하며, 제조업체에서는 시·도별 소요 예방약을 적기에 제조·공급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검역원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예방접종 금지지역 방역관리) ①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운용
2. 지역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주기적 개최(예방접종 금지 후 분기별 1회 이상)
3. 농장 일제 임상검사 실시(예방접종 금지 후 2개월마다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4.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 실시사항 관리감독
5. 돼지콜레라 예방약 판매·유통금지과 회수
6.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실시

가. 항체검사 : 예방접종 금지 후 6개월까지는 예방접종 상황 및 항체소실 추이 등의 파악을 위해 무작위 시료채취 검사를 실시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표본채취 항체검사 계획 수립 실시

나. 항원검사 :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농가 사육돼지 무작위채취, 농장 예찰활동 및 도축검사시 위축돈(성장지연 돼지)은 채혈하여 검사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체검사 결과 양성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신속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혈청검사 결과 항체 양성 돼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 존재 유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된 때에는 당해 농장 사육돼지 전체에 대하여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검역원장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의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 보유검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의 야외바이러스 검사사항 확인 등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시 이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검사 및 기술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예방접종 금지지역 농가 지도)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양돈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돼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입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역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사실 확인

나. 입식돼지를 생산하였거나 사육한 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및 야외바이러스 존재 등 역학정보의 확인

다. 구입돼지를 양돈장에 입식한 날부터 40일간의 격리사육 및 임상검사 실시

2. 남은 음식물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때에는 이를 80℃(심부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 후 급여

3. 자연종부 또는 인공수정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종돈이나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

4.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역의 종돈 또는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는 때에는 자연종부 또는 정액을 생산한 돼지에 대하여 예방접종 상황, 항체보유상황 및 해당 돼지 사육농장의 역학정보 확인 등

제25조(지역별 청정화 확인 및 선포) 시·도지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동물위생규약의 규정이 정한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 과거 2년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예방접종과 살처분 정책 병행시 마지막 감염동물 도축 후 1년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과거 6월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제6장 전국적 청정화 유지단계 방역요령

제26조(청정국 선언)농림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마지막으로 선포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돼지콜레라 청정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27조(청정화 이후 방역관리) ①농림부장관은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항체 및 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항체검사는 분기별 연간 도축두수의 1/1000 이상 검사 실시

2. 항원검사는 농장 위축돈(성장지연 돼지), 항체 양성돈 위주로 검사 실시

②항체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항원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농림부장관은 국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사실을 국제수역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돼지콜레라 병성감정) ① 돼지콜레라 청정화 이후에 돼지콜레라 병성감정은 최소한 준차폐시설 이상의 시설을 갖춘 국가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만 실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를 실시하며, 돼지콜레라로 의심될 경우에는 검역원에 즉시 정밀검사 의뢰
  2. 검역원에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확진
- ② 민간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돼지콜레라 의심 가검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예방약 비축관리) 농림부장관은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국내 판매 금지조치 및 동 질병 발생 시를 대비하여 예방약 비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제30조(추진실적 제출) ①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돼지콜레라 예방약 공급 및 접종실적
2.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및 과태료 처분실적
3. 양돈장 및 도축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적
4. 가축·동물약품·사료수송차량의 세척·소독실태 점검실적
5. 기타 교육·홍보 및 농림부장관의 방역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등

②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시부터 전국적 청정화 선포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농장 일제 임상검사 실적
3.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
4. 돼지콜레라 예방약 수거실적
5.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③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 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도축검사·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
3.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제출 받은 검역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지도점검 등) ① 검역원장은 시·도지사(시·도지사소속 방역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농림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검역원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또는 검역원에서 실시한 시도별 혈청검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농림부장관 및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균독주 및 가검물 관리) ①검역원장은 국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의 보관실태를 파악하여 검역원 이외에서 보관하고 있는 균독주를 수거·폐기하여야 하며,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는 검역원에서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콜레라 예방약 제조용 균독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은 모든 돼지콜레라 의심축 가검물을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병성감정기관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의심축 가검물의 폐기처리사항 및 돼지 일반 가검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종돈장의 위생, 병성감정,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종돈장위생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32호),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955호) 및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농림부 고시 제2001-67호)을 적용한다.

제34조(벌칙)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및 사료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강원도, 제주도, 경상북도 울릉군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금지조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이후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농림부고시 제1999-33호)”중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관련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공포와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1999-34(1999.7.1)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돼지콜레라 발생시 살처분 및 추적조사의 범위(제8조제3항 관련)**

- 가. 발생농장 전두수 즉시 살처분
- 나. 발생농장의 인근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의 밀집정도, 산이나 강 등 지리적 여건, 질병 확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다. 발생농장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
  -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라.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의 생산농장
  -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마.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구입하여 입식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산 돼지를 입식한 농장은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바.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 사.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을 사용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은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아. 발생농장 종사자, 진료 수의사 등(환측과 직접 접촉한 자)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자가 방문한 타농장은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바.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타농장에 출입하였을 경우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타농장은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자. 발생농장에서 도축용으로 출하된 돼지 및 도축장 출입차량과 사람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돼지는 살처분, 도축된 지육 및 부산물은 폐기
  - 도축장이 최초 오염된 날을 기준으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타농장에 대하여는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별표 2]

예방접종 돼지의 표시방법(제16조 제3항 관련)

- 종돈·모돈 : 오른쪽 귀에 “○” 모양의 구멍을 뚫음
- 육성돈 :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팅

[별지 제1호서식]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신청서					
농 장 명		농장소재지			
		대표자주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육두수	계	번식모돈 (후보돈포함)	종용돈	자 돈 (60일령이하)	비육·육성돈
<p>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도지사) 귀하</p>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상 검사	<input type="checkbox"/> 식욕결핍 <input type="checkbox"/> 변비 <input type="checkbox"/>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input type="checkbox"/> 비틀거림 <input type="checkbox"/> 뒷다리마비 <input type="checkbox"/> 최근 15일 이내 폐사두수( )								
예방 접종	예방약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1차 예방 접종일자	2차 예방 접종일자							
매매 · 출하	농장매매 두 수	구 매 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농장 출하두수	출 하 처			전화번호				
	가족수집 (중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상기 가족은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V표시를 하고, 예방접종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절-----취-----선-----

제 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상 검사	<input type="checkbox"/> 식욕결핍 <input type="checkbox"/> 변비 <input type="checkbox"/>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input type="checkbox"/> 비틀거림 <input type="checkbox"/> 뒷다리마비 <input type="checkbox"/> 최근 15일 이내 폐사두수( )								
예방 접종	예방약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1차 예방 접종일자	2차 예방 접종일자							
매매 · 출하	농장매매 두 수	구 매 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농장 출하두수	출 하 처			전화번호				
	가족수집 (중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상기 가족은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V표시를 하고, 예방접종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절-----취-----선-----

제 호									
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상 검사	<input type="checkbox"/> 식욕결핍 <input type="checkbox"/> 변비 <input type="checkbox"/>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input type="checkbox"/> 비틀거림 <input type="checkbox"/> 뒷다리마비 <input type="checkbox"/> 최근 15일 이내 폐사두수( )								
예방 접종	예방약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1차 예방 접종일자	2차 예방 접종일자							
매매 · 출하	농장매매 두 수	구 매 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농장 출하두수	출 하 처			전화번호				
	가족수집 (중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상기 가족은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V표시를 하고, 예방접종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3.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2-2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2002-14호, '02.3.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 5. 8

농림부장관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주사·검사·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생지”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의 사육시설을 말한다.
2. “위험지역”이라 함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 “경계지역”이라 함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제4조(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설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광역시 또는 도에 지역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중앙협의회 운영) ①중앙협의회는 돼지콜레라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정부의 돼지콜레라 방역기본 계획 및 추진방안
2. 돼지콜레라 발생 시 예방접종 여부 등 효율적 방역 실시방안

3.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및 허용 기준 설정

4. 정부와 시도, 시도간 방역 관련업무 중재 및 조정

5. 기타 돼지콜레라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②중앙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부 축산국장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의 원장, 질병방역부장 및 질병연구부장

3.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소장과 종축개량부장

4. 축산관련 기관·단체·학계 전문가 또는 지방협의회 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자

③위원장은 중앙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중앙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일시, 장소 및 안전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④중앙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부 가축위생과장으로 한다.

제6조(지방협의회 운영) ①지방협의회는 관할구역의 돼지콜레라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협의한다.

1. 관할지역 안의 돼지콜레라 근절 및 청정화 추진방안

2. 관할지역 안의 예방접종 금지 및 허용

3.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경우 청정도 유지·양돈장 감시 등 방역실시 상황 평가 및 이에 대한 협의

4. 돼지콜레라 발생시의 살처분 범위와 방법 설정

5. 기타 관할지역내 돼지콜레라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도 농정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양돈 관련단체 및 업계에 종사하는 자,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지방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지방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위원에게 개최일시, 장소 및 안전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④지방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도 가축위생담당관으로 한다.

### 제3장 돼지콜레라 발생시 방역요령

제7조(의사 돼지콜레라 발생시 조치) ①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한 자 또는 이러한 돼지를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돼지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동물병원·수의과대학·동물약품·사료업체 및 기타 병성감정기관 소속 수의사를 포함한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돼지콜레라 진단을 위한 시료를 채취토록 하여 지체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 또는 검역원에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사돼지콜레라 발생 양돈장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고 농장 소독 실시
2.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소 설치와 사람, 사료·장비·차량 등의 출입통제 및 소독 실시
3. 최근 돼지의 이동사항·양돈장의 출입자·출입차량 파악
4. 당해 양돈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안의 양돈농가 현황 파악
5.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의 주요 도로에 이동통제 초소 설치준비

④축산물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이 도축장에서 돼지콜레라 의심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도축작업 중지, 의심축 격리, 계류가축 및 도축물량의 이동제한, 도축장 출입통제 및 소독 실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현황 파악 등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돼지콜레라 발생시 조치) ①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 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판정된 때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로 판정되거나 검역원장으로부터 동 사실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생농장으로 반입된 돼지 및 발생농장에서 이동된 돼지의 사육 양돈장,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 생산농장 및 발생농장에서 정액을 공급한 농장에 대하여 우선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및 추적조사의 범위는 별표 1에 의한다.

④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 및 도축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견될 경우 시·도지사는 당해 양돈장 및 도축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을 정한 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질병이 최초 발생한 날부터 돼지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지역의 양돈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 등에 따라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시·도지사는 발생일 기준 3일 이내에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전두수에 대하여 긴급 임상

관찰을 실시하고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 예방접종)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결과 3개 농장 이상에서 추가로 발생이 의심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즉시 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여부 및 예방접종 돼지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제한 기간 등) ①제8조제4항의 이동제한 기간은 최종 발생 건에 대한 살처분조치 후 위험지역의 경우에는 최소 40일 이상,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최소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최종발생건에 대한 살처분조치 후 위험지역안의 돼지에 대하여는 30일, 경계지역안의 돼지에 대하여는 7일 이후부터 임상관찰·항체검사·항원검사·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관의 감독하에 위험지역은 위험지역안에, 경계지역은 경계지역안에 위치한 타 농장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당해 돼지를 도축할 목적으로 이동을 허용하는 때에는 당해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축장을 출하도축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정도축장은 수출용 돼지를 도축하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제12조(방역반 편성운영)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시·군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 공수의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이동제한 해제 등) ①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에 대하여 살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40일간 항체검사·항원검사·소독과 오염제거 등의 방역을 실시하여 돼지콜레라에 감염이 의심되는 돼지가 없거나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등이 없어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농림부장관, 다른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돼지콜레라 종식보고(통보)를 한 후 시험입식을 거쳐 해당 양돈장에 대한 돼지의 입식을 허용한다.

②시·도지사는 최종발생건에 대한 살처분조치 후 위험지역은 40일 이후, 경계지역은 15일 이후 전두수에 대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고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항체검사·항원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동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4장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제14조(예방접종 시기 등) ①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끼돼지는 생후 40일(5~6주)째에 1차 접종을 하고 생후 60일(8~9주)째에 2차 접종
2. 종돈 또는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하되 모돈의 경우에는 종부 2~4주(21일 전후)전에 1회 접종
3. 수입되는 돼지는 수입검역 완료 후 출고시에 1차 접종을 하고 1차 접종을 실시한



날부터 3주 후에 2차 접종

②시·도지사는 양돈장 인근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반입 즉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방접종확인 등) ①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콜레라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돼지와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돼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돼지콜레라예방접종실시대장이나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콜레라예방접종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에 의한다.

제16조(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 ①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희망농가의 예방접종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예방접종 실시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가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예방접종 승인을 받은 농장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에 대하여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표시를 명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은 별표2에 의한다.

④시·도지사는 예방접종 승인 농가의 모든 두수 등 사육현황을 농림부장관 및 검역원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항체보유상황 조사) ①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양돈장 : 과거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의 양돈장 또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미실시의심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장당 최소 10마리 이상 검사

2. 도축장 : 축주가 발급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우선으로 검사하되 항체보유 비율이 검사두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돼지의 출하 농장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

②검역원장은 전국의 돼지콜레라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도지사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돼지를 중심으로 혈청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야외 바이러스 역학조사) ①시·도지사는 발열·식욕부진·원인불명의 설사 등 돼지 콜레라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감염여부(야외 바이러스주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역원장은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 검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의 야외 바이러스주 검사사항 확인 등 국내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방역관리 상황조사) 시·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양돈장의 축사 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양돈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돼지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돼지콜레라 및 기타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장 예방접종금지 및 지역별 청정화 확인단계 방역요령

제21조(예방접종 금지 등)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안에서 최근 1년(제2호의 경우에는 6월) 동안 돼지콜레라 방역상황이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돈농가에게 사육돼지에 대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하여 예방접종 금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 시·군간의 방역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군 단위별로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수출제한·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할 것.
2.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율이 95% 이상이 되어야 할 것.
3.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
4. 예방접종 금지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동제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안의 돼지에 대한 검사, 살처분 및 도태보상, 돼지 재입식 자금의 지원 등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역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제22조(예방약 수급 및 관리) ①시장·군수는 분기별 돼지콜레라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 시작 전월 10일까지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당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 및 검역원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국적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체에 알려주어야 하며, 제조업체에서는 시·도별 소요 예방약을 적기에 제조·공급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검역원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예방접종 금지지역 방역관리) ①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운용
2. 지역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주기적 개최(예방접종 금지 후 분기별 1회 이상)
3. 농장 일제 임상검사 실시(예방접종 금지 후 2개월마다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4.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 실시사항 관리감독
5. 돼지콜레라 예방약 판매·유통금지외 회수
6.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실시

가. 항체검사 : 예방접종 금지 후 6개월까지는 예방접종 상황 및 항체소실 추이 등의 파악을 위해 무작위 시료채취 검사를 실시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표본채취 항체검사 계획수립 실시  
나. 항원검사 :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농가 사육돼지 무작위채취, 농장 예찰활동 및 도축 검사시 위축돈(성장지연 돼지)은 채혈하여 검사

②시·도지사는 제1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체검사 결과 양성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신속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혈청검사 결과 항체 양성 돼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 존재 유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된 때에는 당해 농장 사육돼지 전체에 대하여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검역원장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의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 보유검사를 실시하고 시·도지사의 야외바이러스 검사사항 확인 등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시 이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검사 및 기술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예방접종 금지지역 농가 지도)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양돈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돼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입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역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사실확인

나. 입식돼지를 생산하였거나 사육한 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및 야외바이러스 존재 등 역학정보의 확인

다. 구입돼지를 양돈장에 입식한 날부터 40일간의 격리사육 및 임상검사 실시

2. 남은 음식물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때에는 이를 80℃(심부온도)에서 30분 이상 가

## 열 처리 후 급여

3. 자연종부 또는 인공수정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종돈이나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
4.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역의 종돈 또는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는 때에는 자연종부 또는 정액을 생산한 돼지에 대하여 예방접종 상황, 항체보유상황 및 해당 돼지 사육농장의 역학정보 확인 등.

제25조(지역별 청정화 확인 및 선포) 시·도지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동물위생규약의 규정이 정한 다음 각 호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 과거 2년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예방접종과 살처분 정책 병행시 마지막 감염동물 도축 후 1년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과거 6월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제6장 전국적 청정화 유지단계 방역요령

제26조(청정국 선언)농림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마지막으로 선포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돼지콜레라 청정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27조(청정화 이후 방역관리) ①농림부장관은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항체 및 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항체검사는 분기별 연간 도축두수의 1/1000 이상 검사 실시
  2. 항원검사는 농장 위축돈(성장지연 돼지), 항체 양성돈 위주로 검사 실시
- ②항체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항원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농림부장관은 국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사실을 국제수역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돼지콜레라 병성감정) ①돼지콜레라 청정화 이후에 돼지콜레라 병성감정은 최소한 준차폐시설 이상의 시설을 갖춘 국가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만 실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를 실시하며, 돼지콜레라로 의심될 경우에는 검역원에 즉시 정밀검사 의뢰
  2. 검역원에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확인
- ②민간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돼지콜레라 의심 가검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예방약 비축관리) 농림부장관은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국내 판매 금지조치 및 동 질병 발생시를 대비하여 예방약 비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의 2(과태료 부과 등) ① 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혈청검사에 의한 처분 : 농장 또는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예방접종 항체로 확인된 경우
2. 위반사항 신고 등에 의한 처분 : 예방접종 행위 현장 적발(제3자 신고 행위 포함)

## 제7장 보 칙

제30조(추진실적 제출) ①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돼지콜레라 예방약 공급 및 접종실적
2.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및 과태료 처분실적
3. 양돈장 및 도축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적
4. 가축·동물약품·사료수송차량의 세척·소독실태 점검실적
5. 기타 교육·홍보 및 농림부장관의 방역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등

②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시부터 전국적 청정화 선포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농장 일제 임상검사 실적
3.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
4. 돼지콜레라 예방약 수거실적
5.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③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 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도축검사·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
3.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제출 받은 검역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지도점검 등) ①검역원장은 시·도지사(시·도지사소속 방역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방역조치 위반사실

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농림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검역원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또는 검역원에서 실시한 시도별 혈청검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농림부장관 및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균독주 및 가검물 관리) ①검역원장은 국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의 보관상태를 파악하여 검역원 이외에서 보관하고 있는 균독주를 수거·폐기하여야 하며,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는 검역원에서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콜레라 예방약 제조용 균독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은 모든 돼지콜레라 의심축 가검물을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병성감정기관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의심축 가검물의 폐기처리사항 및 돼지 일반 가검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종돈장의 위생, 병성감정,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하여는 종돈장위생관리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32호),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농림부 훈령 제955호) 및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농림부 고시 제2001-67호)을 적용한다.

제34조(벌칙)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0조 내지 제44조 및 사료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강원도, 제주도, 경상북도 울릉군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금지조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이후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농림부고시 제1999-33호)”중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관련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공포와 동시에 농림부고시 제1999-34 (1999.7.1)호는 이를 폐지한다.

## 〔별표 1〕

## 돼지콜레라 발생시 살처분 및 추적조사의 범위(제8조제3항 관련)

- 가. 발생농장 전두수 즉시 살처분
- 나. 발생농장의 인근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의 밀집정도, 산이나 강 등 지리적 여건, 질병 확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다. 발생농장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
  -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라.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의 생산농장
  -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마.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구입하여 입식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산 돼지를 입식한 농장은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바.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 사.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을 사용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은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아. 발생농장 종사자, 진료 수의사 등(환측과 직접 접촉한 자)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자가 방문한 타농장은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바.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타농장에 출입하였을 경우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타농장은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자. 발생농장에서 도축용으로 출하된 돼지 및 도축장 출입차량과 사람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돼지는 살처분, 도축된 지육 및 부산물은 폐기
  - 도축장이 최초 오염된 날을 기준으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타농장에 대하여는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별표 2]

## 예방접종 돼지의 표시방법(제16조 제3항 관련)

- 종돈·모돈 : 오른쪽 귀에 “○” 모양의 구멍을 뚫음
- 육성돈 :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팅

##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의 2 관련)

##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사육두수는 과태료 처분당시 해당 가축사육시설 안의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 농가의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휴지 등으로 인하여 가축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당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의 금액은 최소 150만원 이상, 최고 300만원까지로 한다.

## 2. 사육규모별 세부 부과기준

사육규모	과태료금액
100두 미만	150~200만원 미만
100~500두 미만	200~250만원 미만
500두이상	250~300만원 이하

## [별표 4]

## 돼지콜레라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 기준

사육규모	검사두수
20두 미만	전두수
20두~100두 미만	20두
100두~500두 미만	30두
500두~1000두 미만	40두
1000두 이상	60두

※ 단, 채혈은 연령별, 돈사별 일정비율로 골고루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두수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b>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b>							
제 호							
농장 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임상 검사	<input type="checkbox"/> 식욕결핍 <input type="checkbox"/> 변비 <input type="checkbox"/> 여러마리가 한곳에 포개어져 있음 <input type="checkbox"/> 설사 <input type="checkbox"/> 피부청색증(귀, 복부, 사타구니) <input type="checkbox"/> 비틀거리기 <input type="checkbox"/> 뒷다리가 마비 <input type="checkbox"/> 최근 15일 이내 폐사두수( )						
예방 접종	예방약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1차예방 접종일자				2차예방 접종일자		
매매 · 출하	농장매매 두수	구매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농출하두수	출하처			전화번호		
	가족수집 (중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상기 가족은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div style="text-align: right;">확 인 자 : (인)</div>							
기재요령 : 임상검사 항목은 해당사항에만 V표시를 하고, 예방접종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돼지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돼지콜레라방역실태 농장 일제점검표(제23조제1항 관련)**

농장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점검일자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소독 실시사항	임상 검사결과	예방약 수거	점검자	
<p>&lt;특 기 사 항&gt;</p>							

## 4.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개정

농림부고시 제2003-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2002-23호, '02.5.11)”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9월 24일

농림부장관

###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주사·검사·돼지의 이동제한 등 방역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시켜 청정국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축”이라 함은 돼지콜레라에 걸린 돼지를 말하며, “의사환축”이라 함은 돼지콜레라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돼지를 말한다.
2. “발생지”라 함은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발생된 돼지의 사육시설을 말한다.
3. “위험지역”이라 함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4. “경계지역”이라 함은 발생지를 중심으로 하여 반경 3킬로미터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5. “발생일”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방역기관장이 실시한 정밀검사서에서 환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축에서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장 가축방역협의회 운영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운영) ①농림부장관은 돼지콜레라 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서는 지역별 가축방역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중앙협의회에서는 돼지콜레라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정부의 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돼지콜레라 발생시 예방접종 실시여부 등 효율적 방역 실시방안에 관한 사항
3.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 및 허용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돼지콜레라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③지방협의회는 관할구역의 돼지콜레라 방역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관할지역 안의 돼지콜레라 근절 및 청정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경우 청정도 유지·양돈장 감시 등 방역실시 상황 평가 및 이에 관한 사항
3. 돼지콜레라 발생시의 살처분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할지역내 돼지콜레라 근절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청정화 단계에서 발생시 방역요령

제5조(의사환축 발생시 조치) ①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를 발견한 자 또는 이러한 돼지를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돼지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동물병원·수의과대학·동물약품·사료업체 및 기타 병성감정기관 소속 수의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구청장·읍장·면장은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은 지체없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당해 가축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병성감정 의뢰를 받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즉시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시료를 채취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보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사환축 발생지 입구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와 사람, 사료·장비·차량 등의 출입통제 및 소독 실시

2. 최근 돼지의 이동사항 · 양돈장의 출입자 · 출입차량 파악
3.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안의 양돈농가 현황 파악
4.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의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준비
- ④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이 도축장에서 돼지콜레라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도축작업 중지, 의사환축 격리, 계류가축 및 도축물량의 이동제한, 도축장 출입통제 및 소독실시, 출입자 및 출입차량 현황 파악 등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돼지콜레라 발생시 조치) ①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 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돼지콜레라로 판정된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콜레라로 판정되거나 검역원장으로부터 동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가축의 소유자에게 사육돼지의 살처분을 명하여야 하며, 발생농장으로 반입된 돼지 및 발생농장에서 이동된 돼지의 사육 양돈장,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 생산농장 및 발생농장에서 정액을 공급한 농장 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관련 농장의 관할 시장·군수는 해당 농장의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하여 우선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관할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양돈장 또는 도축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견될 경우 당해 양돈장 또는 당해 도축장으로 당해 돼지를 출하한 양돈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을 정한 후 돼지콜레라 발생 확진 즉시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돼지, 정액, 수정란 및 분뇨 등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생지역의 양돈업 형태, 지형적 여건, 계절적 요인,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은 발생양상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위험지역 안에서 추가 발생시 최초 이동제한 지역을 그대로 적용한다.
2. 경계지역안에서 추가 발생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을 다시 설정한다.

⑤시장·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을 정한 후 역학적 사정 등으로 지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검역원장과 공동조사를 실시한 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도축장에서 돼지콜레라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 도축장내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을 명하고, 오염가능성이 있는 도체·내장 등 부산물은 모두 폐기하여야 하며, 도축장내 모든 시설·장비 등 소독조치 완료 후 24시간 경과 후 도축을 허용하고, 출하농장

역학조사,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⑦시·도지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와 검역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 임상관찰 및 혈청검사)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전두수에 대하여 긴급 임상관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죽거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돼지에 대해 돼지콜레라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 예방접종) 농림부장관은 살처분·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돼지콜레라를 효율적으로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예방접종 돼지의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제한 기간 등) ①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 기간은 마지막 발생지의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 완료 후 위험지역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경계지역의 경우에는 21일 이상으로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이동제한지역 안에서 추가발생으로 인해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되어 밀집사육 등으로 인한 질병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축장 출하허용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축장 출하 허용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도축장으로 한정하되 임상관찰 및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항체검사 및 항원검사와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방역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제2항의 지정도축장은 수출용 돼지를 도축하지 아니하는 곳이어야 한다.

제10조(방역반 편성운영)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의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수의 등으로 기동방역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역학조사) ①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역원장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축 또는 환축이 발생된 날로부터 21일전까지의 돼지 이동사항, 돼지와 접촉한 사람 및 물품 등에 대해 추적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해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대상 및 방역조치 내용은 별표 1에 의한다.

④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발생농장 사육돼지를 포함한 살처분 대상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 이전에 역학분석 용도의 채혈등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⑤검역원장은 역학조사에 의한 기술자문 또는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학계, 단체, 공무원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동제한 해제 등) ①시장·군수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 사육돼지에 대하여 살처분을 완료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 해제 이후 감수성동물을 시험 입식하여 40일 경과 후 혈청검사·항원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당 양돈장에 대한 돼지의 입식을 허용한다. 다만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의 경우는 이동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험 입식은 생략할 수 있으며, 살처분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입식하는 경우도 시험입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마지막 발생지의 사육돼지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경계지역은 21일 이후 전두수에 대하여 임상관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고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항체검사·항원검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동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 제4장 예방접종 강화단계 방역요령

제13조(예방접종 시기 등) ①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끼돼지는 생후 40일(5~6주)째에 1차 접종을 하고 생후 60일(8~9주)째에 2차 접종
2. 종돈 또는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하되 모돈의 경우에는 종부 2~4주(21일 전후)전에 1회 접종
3. 수입되는 돼지는 수입검역 완료 후 출고시에 1차 접종을 하고 1차 접종을 실시한 날부터 3주 후에 2차 접종

②시·도지사는 양돈장 인근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예방접종은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돼지를 구입하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반입 즉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방접종지역에서의 발생시 조치) ①시장·군수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경우 돼지콜레라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을 명하고, 발생농장 사육돼지 등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건들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의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 완료후 40일 경과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는 살처분 완료후 20일 경과후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③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콜레라의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이동제한중인 농장의 모돈에 대한 고역가 항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임상증상은 없으나 고역가 항체가 검출되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시장·군수는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지정도축장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예방접종확인 등) ①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금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콜레라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돼지와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돼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돼지콜레라예방접종실시대장이나 별지 제3호 서식의 돼지콜레라예방접종확인서 또는 혈청검사에 의한다.

제16조(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 ①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희망농가의 예방접종은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농가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예방접종 승인을 받은 농장의 소유자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은 돼지에 대하여 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표시를 명할 수 있으며,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④시·도지사는 예방접종 승인 농가의 모든 두수 등 사육현황을 농림부장관 및 검역원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항체보유상황 조사) ①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양돈장과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양돈장 : 과거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지역의 양돈장 또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미실시 의심 양돈장을 대상으로 농장당 최소 10마리 이상 검사

2. 도축장 : 축주가 발급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우선으로 검사하되 항체보유 비율이 검사두수의 80%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돼지의 출하농장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

②검역원장은 전국의 돼지콜레라 항체보유 상황조사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혈청검사 실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돼지를 중심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야외 바이러스 역학조사) ①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발열·식욕부진·원인불명의 설사 등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돼지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감염여부(야외 바이러스



스주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 검사를 실시하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의 야외 바이러스주 검사사항 확인 등 국내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9조(방역관리 상황조사) 시·도지사는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관내 양돈장의 축사 청소와 소독, 쥐 등 야생동물 구제, 양돈장 출입자 및 차량의 소독, 입식돼지의 일정기간 격리사육, 질병발생상황, 돼지콜레라 및 기타 가축전염병의 예방접종 상황 등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기본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장 예방접종금지 및 지역별 청정화 확인단계 방역요령

제21조(예방접종 금지 등)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안에서 최근 1년(제2호의 경우에는 6월) 동안 돼지콜레라 방역상황이 다음 각호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돈농가에게 사육돼지에 대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하여 예방접종 금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 시·군간의 방역추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군 단위별로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대하여는 수출제한·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한다는 전제하에 예방접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할 것.
2. 돼지콜레라 면역형성율이 95% 이상이 되어야 할 것.
3.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
4. 예방접종 금지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동제한,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 안의 돼지에 대한 검사, 살처분 및 도태보상, 돼지 재입식 자금의 지원 등 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역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제22조(예방약 수급 및 관리) ①시장·군수는 분기별 돼지콜레라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 시작 전월 10일까지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당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 및 검역원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전국적 예방약 소요량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제조업체에 알려주어야 하며, 제조업체에서는 시·도별 소요 예방약을 적기에 제조·공급한 후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검역원장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예방접종 금지지역 방역관리) ①시·도지사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운용
2. 지방협의회 주기적 개최(예방접종 금지 후 분기별 1회 이상)
3. 농장 일제 임상검사 실시(예방접종 금지 후 2개월마다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 작성)
4.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 실시사항 관리감독
5. 돼지콜레라 예방약 판매·유통금지와 회수
6. 항체 및 항원검사 지속실시

가. 항체검사 : 예방접종 금지 후 6개월까지는 예방접종 상황 및 항체소실 추이 등의 파악을 위해 무작위 시료채취 검사를 실시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표본채취 항체검사 계획 수립 실시

나. 항원검사 :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농가 사육돼지 무작위채취, 농장 예찰활동 및 도축 검사시 위축돈(성장지연 돼지)은 채혈하여 검사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체검사 결과 양성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에 대하여 신속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혈청검사 결과 항체 양성 돼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 존재 유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바이러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 존재가 확인된 때에는 당해 농장 사육돼지 전체에 대하여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하고,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준한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검역원장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방역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의 야생 멧돼지에 대하여 항체 보유검사를 실시하고 시·도가축 방역기관장의 야외바이러스 검사사항 확인 등 야외 바이러스 감염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예방접종 금지지역 안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시 이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검사 및 기술지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예방접종 금지지역 농가 지도) 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양돈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1. 돼지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 내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입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역에서 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사실확인

나. 입식돼지를 생산하였거나 사육한 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및 야외바이러스 존재 등 역학정보의 확인

다. 구입돼지를 양돈장에 입식한 날부터 40일간의 격리사육 및 임상검사 실시

2. 남은 음식물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는 때에는 이를 80℃(심부온도)에서 30분 이상 가열 처리 후 급여

3. 자연종부 또는 인공수정은 예방접종 금지지역의 종돈이나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

4. 부득이한 사유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역의 종돈 또는 해당 종돈에서 생산된 정액을 이용하는 때에는 자연종부 또는 정액을 생산한 돼지에 대하여 예방접종 상황, 항체보유상황 및 해당 돼지 사육농장의 역학정보 확인 등

제25조(지역별 청정화 확인 및 선포) ①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발생지역에서 청정화 획득을 위하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동물위생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 예방접종과 살처분 정책 병행시 예방접종 중단 후 1년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살처분 완료후 6월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②시·도지사는 청정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이후 청정지역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동물위생규약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1.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예방접종축 도축 완료후

2.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살처분 완료후 30일 경과

## 제6장 전국적 청정화 유지단계 방역요령

제26조(청정국 선언) 농림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마지막으로 선포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돼지콜레라 청정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제27조(청정화 이후 방역관리) ①농림부장관은 검역원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하여금 당해년도 혈청검사 사업계획에 의한 항체 및 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체검사 결과 양성 개체가 확인될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항원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야외 바이러스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농림부장관은 국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사실을 국제수역사무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돼지콜레라 병성감정) ①돼지콜레라 청정화 이후에 돼지콜레라 병성감정은 최소한 준차폐시설 이상의 시설을 갖춘 국가 및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만 실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시·도가축방역기관에서는 혈청검사 및 병리검사를 실시하며, 돼지콜레라로 의심될 경우에는 검역원에 즉시 정밀검사 의뢰
  2. 검역원에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확진
- ②민간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 돼지콜레라 의심 가검물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9조(예방약 비축관리) 농림부장관은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국내 판매 금지조치 및 동 질병 발생시를 대비하여 예방약 비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장 보 칙

제30조(과태료 부과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의무를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다음 각호의 경우로 구분한다.

1. 혈청검사에 의한 처분 : 농장 또는 도축장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이 금지된 지역에서 항체가 검출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예방접종 항체로 확인된 경우나 예방접종 명령 지역에서 예방접종 항체가 없는 경우(검사두수의 80% 미만인 경우)
2. 위반사항 신고 등에 의한 처분 :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예방접종 행위 현장적발(제3차 신고행위 포함)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소유자등이 혈청검사에 의한 예방접종사실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1조(추진실적 제출) ①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돼지콜레라 예방약 공급 및 접종실적
2. 돼지콜레라 혈청검사 및 과태료 처분실적
3. 양돈장 및 도축장 방역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적
4. 가축·동물약품·사료수송차량의 세척·소독실태 점검실적
5. 기타 교육·홍보 및 농림부장관의 방역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등

②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시부터 전국적 청정화 선포시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농장 일제 임상검사 실적
  3. 도축검사 및 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
  4. 돼지콜레라 예방약 수거실적
  5.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 ③시·도지사는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포후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월별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방접종 승인 농가내역(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2. 도축검사·가축운송차량 소독실태 점검실적
  3. 항체 및 항원검사 실적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검역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점검 등) ①검역원장은 시·도지사(시·도지사소속 방역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시장·군수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한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농림부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검역원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또는 검역원에서 실시한 시·도별 혈청검사 결과 등을 평가하여 농림부장관 및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균독주 및 가검물 관리) ①검역원장은 국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의 보관실태를 파악하여 검역원 이외에서 보관하고 있는 균독주를 수거·폐기하여야 하며,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균독주는 검역원에서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콜레라 예방약 제조용 균독주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가축질병병성감정기관은 모든 돼지콜레라 의사환축 가검물을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병성감정기관에 대하여 돼지콜레라 의사환축 가검물의 폐기처리사항 및 돼지 일반 가검물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벌칙)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6조 내지 제60조 및 사료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역학조사 대상 및 방역조치 내용(제11조제3항 관련)**

- 가. 발생농장 사육돼지 전두수 즉시 살처분
- 나. 발생농장의 인근농장에 대하여는 농장의 밀집정도, 산이나 강 등 지리적 여건, 질병 확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다. 발생농장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돼지를 판매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판매일을 기준으로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라.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의 생산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정액을 판매한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판매일을 기준으로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마.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구입하여 입식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산 돼지를 입식한 농장은 15일간 전두수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및 오염물건 소각 또는 매몰
- 바.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정액은 전량 폐기
- 사.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을 사용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정액을 사용한 농장은 발생농장으로 부터 마지막 구입한 날을 기준으로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아. 발생농장 종사자, 진료 수의사 등(환축과 직접 접촉한 자)이 출입한 농장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자가 타농장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농장의 마지막 방문일자를 기준으로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자. 발생농장에 출입한 차량이 타농장에 출입하였을 경우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타농장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해당농장의 마지막 방문일자를 기준으로 15일간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 감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
- 차. 발생농장에서 도축용으로 출하된 돼지 및 도축장 출입차량과 사람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출하된 돼지가 도축장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계류 돼지 전두수를 지체없이 살처분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출하된 돼지가 도축되어 지육 등 상태로 보관 또는 판

매중인 경우에는 발생농장과 같은 날 도축된 물량만 폐기(이 경우 일자별로 도축물량이 구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관 또는 판매중인 물량 전체를 폐기)

- 발생일 기준 과거 15일 이내에 출하돼지를 도축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15일 간 이상 전두수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증상 발견시 정밀검사 실시
- 다. 추적조사 대상 농장에 대하여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기간을 일부 연장하여 15일 이상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별표 2]

### 예방접종 돼지의 표시방법(제16조제3항 관련)

- 종돈·모돈 : 오른쪽 귀에 “○” 모양의 구멍을 뚫음
- 육성돈 :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팅

##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제30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는 사육두수는 과태료 처분당시 해당 가축사육시설 안의 사육두수(10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총사육두수 또는 모돈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 농가의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휴지 등으로 인하여 가축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당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나. 혈청검사 결과 과태료의 처분은 검사결과 항체양성을 80퍼센트 미만부터 적용한다.
- 다. 과태료의 금액은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금액과 사육규모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금액은 최소 250만원 이상, 최고 500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가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한다.
- 라. 예방접종금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사육규모별로 산출하되 최소 250만원 이상, 최고 500만원까지로 한다.
- 마.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사육규모별로 산출하되 최소 250만원 이상, 최고 500만원까지로 하고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와 별개로 적용한다.
- 바. 도축장에서의 예방접종확인서의 확인은 1차는 도축업영업자가 도축검사 신청시에, 2차

는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이 당해가축의 도축전에 행한다. 이 경우 도축업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 12]중 2. 도축업영업자의 준수사항 나. 목에 의거 도축의뢰자 및 돼지 출하농가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세부 부과기준

### 가.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 미실시

혈청검사		사육규모	
항체양성률	과태료 금액	사육두수	과태료 금액
50~80% 미만	120만원 이상	100두 미만	130만원 이상
10~50% 미만	200만원 이상	100~500두미만 (모든10~50두 미만)	200만원 이상
10% 미만	250만원 이하	500두 이상 (모든 50두 이상)	250만원 이하

### 나. 예방접종금지명령 위반자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의무 위반

사육두수	과태료 금액
100두 미만	250만원 이상
100~300두 미만 (모든 10~30두 미만)	300만원 이상
300~500두 미만 (모든 30~50두 미만)	350만원 이상
500~1000두 미만 (모든 50~100두 미만)	400만원 이상
1000두 이상 (모든 100두 이상)	4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별지 제4호 서식]

돼지콜레라방역실태 농장 일제점검표(제23조제1항 관련)

농장현황	농장명	주소		사육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점검일자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		소 독 실시사항	임 상 검사결과	예방약 수 거	점검자
〈특 기 사 항〉						

## 5.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명령

농림부고시 제1998-5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돼지 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실시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년 9월 5일

농 립 부 장 관

###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및 닭의 소유자에게 각각 돼지콜레라 및 뉴 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나 아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과 대상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돼지콜레라의 경우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로 한 다.

2. 뉴캐슬병의 경우 : 전국의 부화장에서 부화되는 병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예 방접종 실 시책임은 당해 부화장의 소유자등으로 한다.

②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돼지 사육시설에서, 뉴캐슬병 예방접종은 부화장에서 각각 당해 예방약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뉴캐슬 병의 2차 예방접종과 수입 병아리에 대한 예방접종은 당해 병아리를 입식한 소 유자등이 실시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유자등의 요구 가 있는 때 에는 해당지역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예방접 종을 지원하게 하거 나 해당 지역의 양돈·양계 등 생산자단체에게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한 사업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실시기간)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실시기간은 이 고시 시행 일부터 1999 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실시대장 등) ①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돼지콜 레라는 별 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뉴캐슬병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을 판매 또는 분양한 때에는 당해 가축의 예방접종 사실을 가축을 사거나 분양받는 농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화장의 경우 병아리 수송상자에 예방접종 내역과 2차 예방접종 예정일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때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접종 확인·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판매 돼지 사육농가 및 부화장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닭의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 한 소유자 등을 찾아낸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확인서. 다만, 소유 자등이 국가방역용 예방약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예방약을 구입 하여 접종한 경우에는 예방약 구입영수증을 추가한다.

2.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농림부훈령 제882호, '96.12.31.) 별지 제1호 서 식의 예방접종증명서

3.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교부한 수의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사접종증명서

5. 기타 도지사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혈청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방접종의 실시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③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필요시 돼지 사육농가·부화장 또는 도축장 출하가 축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소유자등이 예방접종사실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최종 판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실시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 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7조(적용의 예외)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축과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방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이 고시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예방접종실시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소유자등이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실시대장 등을 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예방접종실시대장 등은 이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으로 본다.



## 6.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명령

농림부 고시 제1999-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 3. 5.

농 립 부 장 관

### 돼지콜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및 닭의 소유자에게 각각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과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돼지콜레라의 경우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한다)로 한다.
2. 뉴캐슬병의 경우 : 전국의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부화장의 소유자등으로 한다.

②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돼지 사육시설에서, 뉴캐슬병 예방접종은 부화장에서 각각 당해 예방약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뉴캐슬병의 2차 예방접종과 수입 병아리에 대한 예방접종은 당해 병아리를 입식한 소유자등이 실시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유자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하거나 해당 지역의 양돈·양계 등 생산자단체에게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한 사업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실시기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실시대장 등)①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돼지콜레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뉴캐슬병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을 판매 또는 분양한 때에는 가축운반업자(돼지 수집상, 식육 판매업자, 식육가공업자, 도축업 영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또는 농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화장의 경우 병아리 수송 상자에 예방접종 내역과 2차 예방접종 예정일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때에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소유자 등은 교부일부터 1년간 예방접종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공동방역 사업실시단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 확인·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공동방역사업실시단으로 하여금 판매 돼지 사육농가 및 부화장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닭의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찾아낸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확인은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방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며, 혈청검사는 서류검사만으로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
2.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농림부 훈령 제882호, '96. 12. 31)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3.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교부한 수의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주사접종증명서

④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필요시 돼지 사육농가·부화장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등이 예방접종사실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최종판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실시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도지사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4조 제1항제2호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처분한 도지사는 당해 소유자등의 돼지 또는 닭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원인이 발생한 시점(예방접종 미실시 확인일자)부터 25일이 경과한 후에 혈청검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소유자등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방접종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유자등에게 축산경영

자금 등 정책자금 또는 국가방역용 약품 등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제7조(도축장 출하 돼지 조치)①가축운반업자 또는 소유자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돼지를 출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류(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도축업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업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
2. 제5조제3항제2호의 예방접종증명서
3. 제5조제3항제3호의 예방접종증명서
4. 제5조제3항제4호의 주사접종증명서

②검사원은 제1항의 증명서가 없는 돼지 또는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의심되는 돼지에 대하여는 도축을 제한하고 별표의 처리절차 및 방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은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의 출하 농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출하농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증명서 유효기간은 최종접종일(2차 접종일을 말한다)로부터 150일(종돈·후보돈은 1년)이내로 한다.

제8조(적용의 예외)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축과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199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

## [별표]

## 도축이 제한된 돼지의 처리절차 및 방법 (제7조제2항 관련)

## 1. 도축 제한사유 통보 및 혈청검사 실시

- 가. 검사원은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도축제한과 관련 해당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게 도축 제한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검사원은 도축이 제한된 돼지에 대하여 농가별 출하 두수의 10%(최소 3두이상) 범위 내에서 채혈을 실시하고, 가축운반업자 및 출하농가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검사원 소속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다. 혈청검사를 의뢰받은 가축방역기관은 24시간이내에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원과 해당 돼지를 출하한 농가 소재지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보고)하여야 한다.

## 2.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절차

- 가.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원은 혈청검사 결과(음성 또는 양성)와 관계없이 도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 나. 도지사는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농가의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도지사 관할구역외의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축방역기관은 해당 농가의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돈방별로 사육두수의 10%(최소 3두이상)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혈청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도지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치와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가축방역기관은 다목의 규정에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하여는 다목의 혈청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5일이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별지 1호서식]

## 폐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대장

농장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육규모	총 두 (모돈 : 두, 중돈 : 두, 육성돈 : 두)										
예방약				접종내역				시술자(확인자)			
구입처	약품명 (제조회사)	구입 일자	구입 물량	품종	일령	접종 일자	접종 두수	성명	서명		
			두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2호서식]

##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대장

부화장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예방약				접종내역				시술자(확인자)			
구입처	약품명 (제조회사)	구입 일자	구입 물량	품종	접종 일자	접종 수수	출하 예정일	성명	서명		
			수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7.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 명령

농림부 고시 제1999-3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 7. 1.  
농림부장관

###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명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및 닭의 소유자에게 각각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수출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등) ①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과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돼지콜레라의 경우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2. 뉴캐슬병의 경우 : 전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하며, 예방접종 실시책임은 당해 부화장의 소유자등으로 한다.

②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돼지 사육시설에서, 뉴캐슬병 예방접종은 1차는 부화장에서 분무접종방법으로, 2차는 닭 사육시설에서 각각 당해 예방약의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유자등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공동방역사업실시단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하거나 해당 지역의 양돈·양계 등 생산자단체에게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한 사업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실시기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기한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돼지콜레라 또는 뉴캐슬병의 예방주사의 금지를 명령하기 이전까지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 실시대장 등) ① 예방접종을 실시한 소유자등은 그 결과를 돼지콜레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뉴캐슬병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들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가축을 판매 또는 분양한 때에는 가축운반업자(돼지 수집상, 식육 판매업자, 식육가공업자, 도축업 영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또는 농가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화장의 경우 병아리 수송 상자에 예방접종 내역과 2차 예방접종 예정일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는 때에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한 소유자 등은 교부일부터 1년간 예방접종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공동방역 사업실시단의 사실확인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접종 확인·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가축방역관·공수의 또는 공동방역사업실시단으로 하여금 관내 돼지 사육농가 및 부화장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닭의 혈청검사를 실시 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들을 찾아낸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확인은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돼지콜레라의 혈청검사는 ELISA검사방법(효소면역항체법)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며, 혈청검사는 서류검사만으로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없거나 농가의 항체양성을 조사 등 방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실시대장 및 예방접종확인서
2.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농림부 훈령 제882호, '96. 12. 31)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3.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교부한 수의사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교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예방접종증명서

④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필요시 돼지 사육농가·부화장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소유자들이 예방접종사실 확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최종판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실시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처분한 도지사 또는 군수는 당해 소유자등의 돼지 또

는 닭에 대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원인이 발생한 시점(예방접종 미실시 확인일자)부터 25일이 경과한 후에 혈청검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소유자등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방접종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유자등에게 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또는 국가방역용 약품 등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제7조(도축장 출하 돼지 조치)①가축운반업자 또는 소유자등이 도축을 목적으로 돼지를 출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증명서류(이하 “증명서”라 한다)를 도축업 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축업 영업자는 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확인서
2. 제5조제3항제2호의 예방접종증명서
3. 제5조제3항제3호의 예방접종증명서
4. 제5조제3항제4호의 주사접종증명서

②검사원은 제1항의 증명서가 없는 돼지 또는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었다고 의심되는 돼지에 대하여는 도축을 제한하고 별표2의 처리절차 및 방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검사신청서의 출하 능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출하능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증명서 유효기간은 최종접종일(2차 접종일을 말한다)로부터 150일(종돈·후보돈·흑돼지·멧돼지는 1년, 초유전 예방접종돼지는 210일)이내로 한다.

제8조(적용의 예외) 동물용의약품의 제조를 위한 시험용·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한 가축과 특수 사육·판매목적 등의 이유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고시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예방접종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31일까지는 이고시에 의한 예방접종확인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별표1]

##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사육두수는 과태료 처분당시 해당 가축사육시설안의 사육두수(100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사육두수 또는 모돈 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 농가의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휴지 등으로 인하여 가축 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당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혈청검사는 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돼지의 경우 검사두수의 80퍼센트 미만부터 적용한다.
- 다. 돼지의 경우 과태료의 금액은 혈청검사 항체양성율의 과태료 금액과 사육규모별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금액은 최소 150만원 이상, 최고 300만원까지로 한다.

## 2. 축종별 부과기준

## 가. 돼지

혈청검사		사육규모	
항체양성율	과태료금액	사육두수	과태료금액
50~80%미만	70만원 이상	100두미만	80만원 이상
10~50%미만	100만원 이상	100~500두미만(모돈10~50두미만)	100만원이상
10%미만	150만원 이하	500두이상(모돈50두이상)	150만원이하

## 나. 닭

구 분	사육규모	과태료 금액
부화장 닭사육시설	-	300만원 이하
	10천수미만	150~200만원미만
	10천수이상	200~300만원이하



## [별표2]

## 도축이 제한된 돼지의 처리절차 및 방법 (제7조제2항 관련)

## 1. 도축 제한사유 통보 및 혈청검사 실시

- 가. 검사원은 도축업 영업자로 하여금 도축제한과 관련 해당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게 도축제한 사유와 조치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검사원은 도축이 제한된 돼지에 대하여 농가별 출하 두수중 최소 3두이상을 채혈한 후 가축운반업자 및 출하농가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 검사원 소속 가축방역기관에 혈청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다. 혈청검사를 의뢰받은 가축방역기관은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원에게는 24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고 관할 도지사에게는 48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혈청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절차

- 가.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원은 혈청검사 결과(음성 또는 양성)와 관계없이 도축을 허용하여야 한다.
- 나. 도지사는 가축방역기관의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심되는 돼지를 출하한 농가의 사육중인 돼지에 대하여 가축방역기관으로 하여금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도지사 관할구역외의 농가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가축방역기관은 해당 농가의 사육중인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혈청검사 대상 : 80일령 이상 육성비육 돼지
  - (2) 검사두수는 육성비육 돈방별 사육두수의 10%이상 범위내에서 농장 전체 최소 10두이상 검사
- 라. 혈청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도지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치(처분권자가 군수일 경우에는 군수가 처분조치)와 동시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가축방역기관은 다목의 규정에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하여는 다목의 혈청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25일이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1호서식]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대장

농장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육규모	총 두 (모돈 : 두, 중돈 : 두, 육성돈 : 두)								
예방약(두분)				접종내역				시술자(확인자)	
구입처	약품명 (제조회사)	구입 일자	구입 물량	품종	일령	접종 일자	접종 두수	성명	서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뉴캐슬병 예방접종 실시대장

부화장명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예방약				접종내역				시술자(확인자)	
구입처	약품명 (제조회사)	구입 일자	구입 물량	품종	접종 일자	접종 수수	출하 예정일	성명	서명
			수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예 방 접 종 확 인 서			
①농장·부화장명		②소재지					
③농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④가축의 종류							
⑤예방약 종류			제품명:			제조업체명:	
⑥접종방법	주사·분무·음수·기타		⑦접종두수	두수( )			
⑧1차접종일자	. . .		⑨2차접종(예정)일자	. . .			
⑩출하예정일	. . .		⑪출하처(수집상)	성명:	전화번호:		
<p>상기 가축은 돼지플레라및뉴캐슬병예방접종실시명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년 . . . . . 월 . . . . .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소유자등) : 성명 (인)</p>							

210mm×297mm < 일반용지 60g /m<sup>2</sup> >

##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 )예방접종 증명서			
농장명			농장소재지	(우편번호)							
농장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육두수	총	두수	접종두수	(1차)		(2차)					
접종년월일	(1차)	년	월	일	(2차)	년	월	일			
출하예정일	년		월		일 (예정두수	두)	접종실시자	성명			
<p>상기 농장의 가축에 대하여는 (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년 . . . . . 월 . . . . .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도지사, 특별·광역시장 / ○○시장·군수 (인)</p>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

## 8.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

농림부 고시 제1999-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8조, 제18조의2 및 제34조의규정에 의하여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 4. 12

농림부장관

###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살처분한 가축, 소각 매몰한 물건등(이하 살처분가축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살처분가축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가축전염병근절을 위한 도대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약물목록·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동물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
2. 법 제10조 및 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역·우폐역·구제역·비저·광견병·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 돼지콜레라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살처분한 가축
3.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 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소
4.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돼지
5. 추백리방역실시요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살처분한 종계(다만, 동요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결과 양성발생율이 확인검사 마리수의 1%이상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기타 법 제2조의 가축전염병 및 법 제38조의 가축전염성질병중 농림부장관이 가축방역상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살처분한 가축
7. 법 제14조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우유·계란을 포함하며, 이하같다)

제3조(보상금지급요율) ① 범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요율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요율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정한다

1. 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살처분한 가축의 경우 : (지소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충청남도는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전라북도·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 이라 한다)

2.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해당되어 살처분한 가축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지급요율을 정한 시험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요율 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 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2와 같다.

②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시 제1항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한 지급요율의 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보상금평가반) 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보상금평가반(이하 평가반 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인이내에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기관 소속 관계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을 취급 또는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충청남도는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전라북도·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을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동방역사업실시단운영요령(농림부훈령 제882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사업단원(공동방역사업실시단을 설치한 시군에 한한다)

제6조(보상금의 결정등) ① 살처분가축등에 대한 보상금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반원으로 위촉된 평가인 3명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평가반장은 평가시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해당살처분가축등의 산지거래가격·도매시장경락가격 등을 기준으로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제2호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를 발급하고 살처분 가축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 평균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보상금지급신청) ① 살처분가축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가축전염병시행규칙 별지 제1호내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주사·약물목록·투약증명서(제2조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2. 가축전염병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살처분명령서 사본(제2조제2호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3. 추백리방역실시요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험소장의 확인검사성적(제2조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가축방역관의 소각·매몰 확인서(일시·실시장소·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실시방법·소각 및 매몰두수 기재)
2.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요율 결정서 사본
3. 제2호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 사본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제3항에 의거 군수로 부터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전달받은 도시사는 보상금지급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보와 동시에 시도에 재배정된 보상금예산으로 살처분가축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의 조기도태 및 장려금 지급대상) ① 농림부장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도시사는 부루세라병 및 돼지오제스키병의 전파를 차단 하고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발생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을 조기에 도축장으로 출하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루세라병검사 결과 이환소 발생농장에서 이환소와 함께 사육한 소중 조기 도태할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소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혈청검사 양성 모돈중 조기도태할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

② 도태보상금의 지급기준액은 별표3과 같다

③ 도태보상금 지급대상 가축의 소유자는 관할검사기관으로부터 부루세라병 또는 오제스키병검사 결과를 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축장으로 출하 도태하여야 하며, 출하 예정일 3일전까지 시 군 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자에게 출하지역·일시 등 계획을 통보하여 해당가축 출하시 입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도태보상금지급 신청 등) ① 도태보상금 지급 대상가축의 소유자는 해당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도태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도태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농장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증명서(부루세라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 카드사본 또는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통보서 사본등)
2. 시·군·구의 가축방역담당자가 입회·확인한 도태 대상가축의 도축장 출하확인서(소유자의 주소·성명·농장명 및 도태출하일시 두수 출하도축장명과 소임신여부·나이 기재)
3. 도축검사신청서 사본
  - ② 제1항의 도태보상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이내에 해당가축의 도태사실을 확인한 후 관할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군수로부터 도태보상금지급 신청서를 전달받은 도지사는 시도에 재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시 도자체예산으로 도태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보상금을 지급하고, 별지제6호 서식에 의거 도태보상금 지급 내용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지급업무등의 확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살처분가축등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업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 지급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평가액의 상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등의 실시로 인하여 가축이 폐사하거나 가축의 태아가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와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의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폐지규정)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농림수산부고시 제89-46호(1989. 8. 1)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99·4·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보상금지급요율 (제3조제1항 관련)

## 1. 신고에 의한 경우

가. 적용대상질병 : 우역, 우폐역, 구제역, 비저, 광견병,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및 기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 나. 보상금의 범위

지 급 요 율	평 가 기 준
1. 평가액의 전액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가 해당 가축 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이나 나타나기 전에 법제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평가액의 5분의4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3. 평가액의 5분의3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4. 평가액의 5분의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고의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체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축의 가축전염 병 발생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경우

## 다. 확인방법

- (1) 신고시점의 확인 :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제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신고대상기관(시·군·구·동·읍·면 장·공개업수의사)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 (2) 발병시점의 확인 : 공개업수의사등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농림부훈령 제955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관의 병성감정대장, 가축전염병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등과 질병피해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 2. 검사에 의한 경우

가. 적용대상질병 : 우결핵, 소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추백리



나. 보상금의 범위

지 급 요 율	평 가 기 준
1. 평가액의 전액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성적(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가축전염병검사카드,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한 오제스키병검사증명서,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한 , 추백리검사성적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예방접종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대장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 유지</li> <li>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실시</li> <li>③ 축사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 업무수행 에의 협조</li> <li>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이동제한·격리등의 명령과 법제10조의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li> </ol>
2. 평가액의 5분의4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4개조치중 ④를 포함한 3개조치를 이행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유지</li> <li>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설치</li> <li>③ 축사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 업무수행에의 협조</li> <li>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이동제한·격리등의 명령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li> </ol>
3. 평가액의 5분의3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4개조치중 ④를 포함한 2개조치를 이행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유지</li> <li>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설치</li> <li>③ 축사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 업무수행 에의 협조</li> <li>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이동제한·격리등의 명령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li> </ol>
4. 평가액의 5분의2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4개조치중 1개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유지</li> <li>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설치</li> <li>③ 축사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 업무수행에의 협조</li> <li>④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이동제한·격리등의 명령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li> </ol>

3. 기타의 경우

- 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폐사한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한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검사·주사등의 실시 당시 당해 가축 및 가축태아의 평가액의 5분의 4를 지급한다.
- 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 당해 물건평가액의 5분의 2를 지급한다
- 다. 법 제8조 및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가축이 격리·역류되는 기간동안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할 당시 당해 생산물 평가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 【별표 2】

##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제4조제1항 관련)

## 1. 살처분한 가축

(단위 : 원)

종 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초유떼기 분유떼기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초임단계(임신3~7개월까지) 초임만삭(임신8개월이상) 초산우 초산우(임신만삭) 다산우(2 ~ 5산) 다산우(임신만삭) 노산우(6산이상)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 초임만삭 가격의 70%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 초임만삭 가격의 90%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 초임만삭 가격의 75%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	
육우	500kg을 기준으로 kg당가격 산정하여 지급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	
한우	송아지(5개월 미만) 299kg이하(25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300~ 399kg(35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400kg이상(50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	암수구분
돼지	새끼돼지(30kg 이하) 육성돈(31~60kg)·성돈 (61kg이상): 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 축협조사월보 산지가격 기준  250,000	
개	성 견	100,000	어린개는 시가평 가액 지급

종 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닭	초생추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종 계		
	- 산란용(21주령 기준)	12,250	
	- 육용(28주령 기준)	10,000	
	종 계(70주령 이상)	1,400	
	실용계		
	- 육 용	1,300/kg	
	- 산란용(21주령 기준)	3,500	
	- 산란용(78주령 이상)	900	
	종 란	초생추 가격의 1/2	
종란을 제외한 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은 해당가축 보상금 평가 당시 축협조사월보(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발행 월보) 및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할 것

비고 1. 돼지오제스키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중모돈,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비고 2. 종계와 산란실용계의 단계별 가격 산정

가. 산란용종계

- 초생추~2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1주령이상~70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나. 육용종계

- 초생추~28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8주령이상~70주령미만 : 28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다. 산란실용계

- 초생추~21주령 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환산
- 21주령이상~78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환산

비고3. 종계 및 종란기준

가. 종 계 : 축산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의한 씨암탉과 씨수탉

나. 종 란 : 종계에서 생산된 알

2. 가축의 태아,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 【별표 3】

## 도태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 원/두당)

축종별	구분	도태보상금기준액	비고
젖소	송아지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초임만삭	500,000	
	초산우	400,000	
	다산우(2-5산)	300,000	
	노산우기타	200,000	
돼지	모돈	100,000	축산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한 모돈

##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지급요율 결정서			
가축등 소유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발생 농장	④ 소재지		
	⑤ 농장명	⑥ 축종	
	⑦ 사육두수	⑧ 발생전염병명	
	⑨ 발생두수	⑩ 폐사두수	⑪ 살처분두수
지급 요율	⑫ 지급요율		
	⑬ 지급요율결정 근거 :		
<p>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율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지급요율을 결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군수 (인)</p> <p style="text-align: right;">도 가축위생시험소장</p> <p>○ ○ 군(시·구) 보상금평가반장 귀하</p>			

## 【별지 제2호 서식】

## 보상금 평가서

## 1. 평가대상

- 축 종 : ○ 전염병명 :  
 ○ 소유자성명 :  
 ○ 농장소재지 :

## 2. 평가일자 :

## 3. 평가장소 :

## 4. 평가두수 : 두( )

※ ( )내에는 별표2 보상금평가액상한선의 구분란에 의한 두수내역을 기재

## 5. 평가내용

개체번호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가자성명)	평균액
계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 ○ 군(시·구)평가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평가자 개별 평가조서 3부 (평가조서에는 축종, 품종, 개체번호, 연령, 생체량, 평가액이 기재되어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보상금지급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신청금액									
⑤ 신청사유									
⑥ 보상구분		살처분가축·죽은동물·유사산태아·소각매몰물건							
⑦ 세부내용									
축종	품종	개체번호	성별	연령(산자수)	생체량	평가액	신청액	비고	
계									
살처분	⑧ 일시								
	⑨ 장소								
⑩ 소각 또는매몰방법									
⑪ 이용물의 종류 및 수량									
⑫ 이용물의 공제액									
<p>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신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계좌 : 시 · 도지사 귀하</p>									
< 구비서류 >								수수료	
								없음	
<p>① 검사·주사·약육·투약증명서(제2조제1호의 경우에 한함)</p> <p>② 살처분명령서사본(제2조제2호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함)</p> <p>③ 소각·매몰 확인서(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p> <p>④ 보상금지급요율 결정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p> <p>⑤ 보상금평가서 사본(제7조제3항의 경우에 한함)</p>									

## 【별지 제4호 서식】

## 살처분등 보상금지급결정 결과보고서

1. 관련문서번호 :

2. 보상금지급대상자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3. 보상금 지급내역

축종	전염병명	지급두수	지급액	지급요일	살처분일시	살처분방법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특별·광역시장) (인)

농림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 사본

## 【별지 제5호 서식】

( 앞 면 )

도태보상금지급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④ 보상금신청금액					
⑤ 보상금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부루세라병 이환소와 함께 사육한 소의 조기 출하·도태 <input type="checkbox"/> 돼지오제스키병 항체 양성 모돈·조기출하·도태					
⑥ 세부내용					
축 종	품 종	개체번호	성 별	연 령	신 청 액
계		두			
⑦ 농장출하일			⑧ 도 축 일		
⑨ 도축장명			⑩ 도축장소재지		
<p>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태 보상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p>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① 사육농장 관할 가축위생시험소의 검사증명서 ② 도태 대상가축 도축장출하확인서(시·군·구 가축방역담당자의 입회·확인) ③ 도축검사신청서 사본					



**【별지 제6호 서식】**

**도태보상금지급결과보고서**

- 1. 관련문서번호 :
- 2. 도태보상금 지급 대상자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3. 도태보상금지급 사유 :
- 4. 도태보상금지급 내역 :

축종	품종	지급두수	지급액	지급일	출하도축장명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도태장려금을 위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 도지사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 도태보상금지급 신청서 사본

## 9.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고시

농림부 고시 제2000-71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가축등에 대한보상금지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0년 11월 11일

농 립 부 장 관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개정고시

제목을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으로 한다.

제1조중 “동법 시행령 제3조”를 “동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기준 및 방법, 살처분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를 “기준 및 방법과”로 하며, “도태보상금”을 “도태장려금”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우역·우폐역·구제역·비저·광견병·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 돼지콜레라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살처분한”을 “살처분한”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물건”을 “물건 또는 생산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제3조”를 “제11조”로 하고, 제2항제1호중 “광역시·충청남도”를 “광역시”로, “경기도·충청북도”를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제1항의”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시험소장은”을 “시험소장 및 군수는”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평가액의 상한선)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2항중 “4인”을 “5인”으로 하고, 제3항중 “기관소속 관계자”를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동항 제2호중 “축산물을 취급 또는”을 “축산물의”로 하고, 동항 제3호중 “광역시·

충청남도”를 “광역시”로 “경기도·충청북도”를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로 하며,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제6조제1항중 “평가인 3명”을 “평가반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평가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가축전염병시행규칙”을 “법시행규칙”으로 하고, 제3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며, 동항 제2호중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중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보와 동시에”를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제목중 “가축의 조기도태 및 보상금”을 “도태장려금”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도태보상금”을 “도태장려금”으로 “같다”를 “같다. 다만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이 정해지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루세라병 검사결과 이환소 발생농장에서 이환소와 함께 사육한 소중 조기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소
2.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혈청검사 양성 모돈·옹돈중 조기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옹돈
3. 기타 제1종 가축전염병 또는 제2종 가축전염병에 이환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중 농림부장관이 인정하여 조기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4. 도태대상 가축중 도축장으로의 출하가 곤란하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여 사료제조시설 또는 열처리시설(이하 “재활용시설”이라 한다)에 출하한 가축

제10조 제목을 “도태장려금 신청 및 지급 등”으로 하고, 제1항내지 제3항중 “도태보상금”을 “도태장려금”으로 하며, 제1항중 “제5호”를 “제4호”로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 서식에 의한 도태권고서”로 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하며, 제2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제3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도태보상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도태보상금 지급내용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제목을 “보상금등 지급업무의 확인”으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부장관”으로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3과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중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을 “살처분가축등에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으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평가액의 상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검사 등의 실시로 인하여 가축이 폐사하거나 가축의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의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도태한 경우의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 1】

## 보상금지급요율(제3조제1항 관련)

## 1. 신고에 의한 경우

가. 적용대상질병 : 우역·우폐역·구제역·아프리카돼지콜레라·돼지콜레라·부루세라병·돼지오제스키병·결핵병·광견병 및 기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 나. 보상금 지급요율

지 급 요 율	평 가 기 준
1. 평가액의 전액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이나 나타나기 전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2. 평가액의 5분의4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의 다음 날부터 4일이내에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3. 평가액의 5분의3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에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
4. 평가액의 5분의2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고의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가축방역관이 해당 가축의 가축전염병 발생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경우

## 다. 확인방법

(1) 신고시점의 확인 :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제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신고대상기관(시·군·구·동·읍·면장·공개업수의사)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의 확인 : 공개업수의사등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농림부훈령 제955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 대장, 가축전염병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등과 질병피해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 2. 검사에 의한 경우

가. 적용대상질병 : 결핵·부루세라병·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추백리

나. 보상금의 지급요율

지 급 요 율	평 가 기 준
1. 평가액의 전액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p> <p>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성적(결핵병및 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가축전염병검사카드,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에 의한 오제스키병검사증명서,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한 추백리검사성적,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에 의한 돼지콜레라검사성적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예방접종(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대장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 유지</p> <p>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설치</p> <p>③ 가축사육시설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업무 수행에의 협조</p> <p>④ 법 제8조(법 제18조의2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등의 명령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p>
2. 평가액의 5분의4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4개조치중 ④를 포함한 3개조치를 이행한 경우</p> <p>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유지</p> <p>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설치</p> <p>③ 가축사육시설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업무 수행에의 협조</p> <p>④ 법 제8조(법 제18조의2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 등의 명령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p>

지 급 요 율	평 가 기 준
3. 평가액의 5분의3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4개조치중 ④를 포함한 2개조치를 이행한 경우</p> <p>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유지</p> <p>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설치</p> <p>③ 가축사육시설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업무 수행에의 협조</p> <p>④ 법 제8조(법 제18조의2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등의 명령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p>
4. 평가액의 5분의2	<p>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음에 있어서 다음의 4개조치중 1개조치만을 이행하거나 모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① 당해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과거의 검사성적, 예방접종 및 이동사항에 관한 정확한 기록의유지</p> <p>② 가축을 붙잡아 매는 시설등의 설치</p> <p>③ 가축사육시설의 세척·소독이나 가축의 계류등 가축방역관의 검사업무 수행에의 협조</p> <p>④ 법 제8조(법 제18조의2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격리·역류 또는 이동제한 등의 명령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명령등의 이행</p>

### 3. 기타의 경우

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약물목록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한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검사 등의 실시 당시의 당해 가축 및 가축태아의 평가액의 5분의 4를 지급한다.

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인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한 당시의 당해 물건평가액의 5분의 2를 지급한다

다. 법 제8조(법 제18조의2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이 격리·역류되는 기간동안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소각 또는 매몰한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몰할 당시 당해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라. 법 제10조의 2(법 제18조의2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도태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태권고대상 가축이 당해 가축전염병에 걸리게 되어 살처분한 경우는 살처분 당시의 가축평가액의 5분의 2를 지급한다.

## 【별표 2】

## 보상금평가액 상한선(제4조 제1항 관련)

## 1. 살처분한 가축

(단위 : 원)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폐기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초유폐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분유폐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단계(임신3~7개월까지)	초임만삭 가격의 70%	
	초임만삭(임신8개월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임신만삭)	초임만삭 가격의 90%	
	다산우(임신 3~8개월까지)	초임만삭 가격의 60%	
	다산우(임신만삭)	초임만삭 가격의 75%	
다산우(2~5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노산우(6산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육우	유사산태아	젖소에 준하여 지급	
	50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송아지(5개월 미만) 299kg이하(25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암·수구분지급 암·수구분지급
	300~399kg(35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암·수구분지급
	400kg이상(50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암·수구분지급
돼지	유사산태아	새끼돼지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4.5개월	
	새끼돼지(30kg 이하) 육성돈(31~60kg)·성돈(61kg이상) : 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 하여 지급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웅돈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250,000	
개	성 견	100,000	어린개는 시가 평가액 지급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닭	초생추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종 계		
	- 산란용(21주령 기준)	12,250	
	- 육용(28주령 기준)	10,000	
	종 계(70주령 이상)	1,400	
	실용계		
	- 육 용	1,300/kg	
	- 산란용(21주령 기준)	3,500	
	- 산란용(78주령 이상)	900	
	종 란	초생추 가격의 1/2	
종란을 제외한 알	양계속보 산지가격 기준		

#### ※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

- 소,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계재(www.nonghyup.com의 농업정보-한우리정보)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 :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 1.** 돼지오제스키병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모돈·웅돈 : 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비고 2.** 종계와 산란실용계의 단계별 가격산정

#### 가. 산란용종계

- 초생추~2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1주령이상~70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나. 육용종계

- 초생추~28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8주령이상~70주령미만 : 28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다. 산란실용계

- 초생추~21주령 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환산
- 21주령이상~78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환산

## 비고 3. 종계 및 종란기준

- 가. 종 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씨암탉과 씨수탉
- 나. 종 란 : 종계에서 생산된 알

##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 【별표 3】

##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제9조제2항관련)

(단위 : 원/두당)

축종별	구 분	도태장려금 기준액	비 고
젓 소	송 아 지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초임만삭	500,000	
	초 산 우	400,000	
	다산우(2-5산)	300,000	
	노산우·기타	200,000	
돼 지	모 돈	150,000	
	웅 돈	150,000	

※도태장려금은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이행기간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앞 면)

도태장려금지급신청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장려금지급금액					
⑤ 장려금지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부루세라병 이환소와 함께 사육한 소의 조기출하·도태 <input type="checkbox"/> 돼지오제스키병 항체 양성 모돈·조기출하·도태 <input type="checkbox"/> 기 타					
⑥ 세부내용					
축종	품종	개체번호	성별	연령	신청액
계		두			
⑦ 농장출하일			⑧ 도축일		
⑨ 도축장명			⑩ 도축장소재지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계좌 :					
시·도지사 귀하					수수료
					없 음
<구비서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의한 도태권고서(도축장으로 출하한 경우 도태가축을 검사한 검사원이, 재활용시설로 출하한 경우 시·군·구 소속 가축방역관이 도태사실 확인)					

## 10.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개정

농림부고시 제2002-28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1-67호, '01.11.2)”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5월 27일

농림부장관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개정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살처분한 가축의 돼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종 별	구분	상한가격	비고
돼지	유사산 태아	새끼돼지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4.5개월	
	새끼돼지(30kg 이하) 육성돈(31~60kg)·성돈 (61kg이상) : 성돈을 기준으로 kg 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웅돈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중돈(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에 한함)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250,000  한국중축개량협회 또는 대한양돈 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중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중축개량 협회에 등록된 중돈 또는 한국 중축개량협회가 중돈으로 인정 한 것

###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개정

농림부고시 제2003-26호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2-28호, '02.5.27)”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23일

농림부장관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개정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살처분한 가축의 축종별란중 한우란 다음에 소종축란을 신설하고 한우란 및 돼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 표의 비고 3. 다음에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5개월미만) 299kg이하(25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300~399kg이하(350kg을 기준 으로 kg가격을 산정)	송아지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암·수 구분 지급  암·수 구분 지급 (임신우·거세우 별도)  암·수 구분 지급 (임신우·거세우 별도)
	400kg이상(500kg을 기준으로 kg가격을 산정)  임신우  거세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체중kg×체중구분별암소kg당 가격)+(송아지두당생산비× 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10개월) 체중kg×체중구분별 수소kg당 가격 ×1.2	암·수 구분 지급 (임신우·거세우 별도)  -체중구분kg당 가격은 299kg 이하·300~399kg이하·400kg 이상으로 하여 해당체중 kg 가격을 적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송아지생산 비를 적용
소종축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육우·한우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소종축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소종축 또는 한국종축개량 협회가 소종축으로 인정한 것

<p>돼지</p>	<p>유사산 태아</p> <p>새끼돼지(30kg 이하)</p> <p>육성돈(31~60kg)·성돈 (61kg 이상) : 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p> <p>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모돈</p>	<p>새끼돼지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4.5개월</p> <p>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p> <p>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p> <p>- 후보돈 외부구입시 : [중부전 후보돈 평가액(후보돈 구입비+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구입시부터 중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p> <p>- 후보돈 자체생산시 : [중부전 후보돈 평가액(육성 후보돈 시가+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후보돈 선정시부터 중부전까지 사육비) - 평균 감가상각비]</p> <p>- 임신태아 가격 : 자돈 생산비×평균이유두수 × 평균임신기간을 (50%)</p>	<p>가격산정 기준 및 방법은 비교 4.에 의함</p>
	<p>돼지오제스키병 항체양성 모돈·웅돈</p> <p>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거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종돈</p>	<p>250,000</p> <p>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대한양돈 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당해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p>	<p>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종돈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돈으로 인정한 것</p>

비교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종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시 발생년도 수매가격 적용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중부전까지 사육비) - 모돈 도태가격]×20%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 ÷ 365 × 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번식돈 사육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적용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든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든의 평균 사용년수(1년차 보유분이 평균 40% 점유)를 기준 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든 평균 사용년수(1년)

-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 - 노폐돈 가격) ÷ 모든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사. 자돈 생산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 적용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별표 3의 젖소란 다음에 한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우	임신우(초임단계이후)	400,000	
	300~499kg 이하(암·수)	2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299kg 이하(암·수)	3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액의 상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의 보상금 평가액의 상한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도태장려금 지급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법 제 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도태한 경우의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12.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개정

농림부고시 제2004-32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3-26호, '03. 5.23)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5월 21일

농림부장관

###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개정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4조”를 “제48조”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보상금지급대상)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지급기준의 적용 등) ①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하 “보상금지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와 같이 정한다.

1.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및 “추백리방역실시요령”에 의한 검사결과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 및 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지소의 장을 포함하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 또는 축산위생연구소장, 전라북도·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전라남도는 축산기술연구소장, 제주도는 축산진흥원장을 말하며 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이 살처분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가축중 제1호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이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살처분한 가축 또는 소각·매몰한 물건 등의 경우 : 살처분 대상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관할 시험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보상금지



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고시점 :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신고대상기관(시·구·읍·면장·개업수의사)에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신고를 접수한 시간
  2. 발병시점 : 공개업수의사 등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대장,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방법 및 소독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기재한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 및 비치
  4. 살처분한 가축 및 함께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록·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조치의 이행 :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주사·약물목록·투약 또는 주사·투약의 금지를 실시하여야 하는 가축에 대한 해당 조치의 이행사항. 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명서 휴대 또는 예방접종 표시의 명령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도 확인
  5.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역류 및 이동제한과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에 대한 이동제한 또는 소독조치의 이행 :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시험소장이 실시한 역학조사 내용
  6.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조치의 이행 :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발급한 살처분명령서에 의한 살처분의 이행기간 및 살처분 실시 장소제공·대상 가축의 이동 등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7. 가축의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이 발생한 시점 :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가축 또는 가축의 태아의 경우에는 해당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시험소장 또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결정서를 제5조의 보상금평가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중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서식에 의한 증명서(검사증명서, 주사·주사표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약물목록·투약증명서) 및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록·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가축방역관·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살처분명령서 사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추백리방역실시요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소장의 확인검사성적(추백리 발생으로

살처분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결정서 사본(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법 제34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11조제5항”을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법 제10조의 2”를 “법 제19조”로 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가축
2. “돼지오제스키병방역실시요령” 또는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권고를 받고 조기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모돈·용돈(축산법령에 의한 종돈장에서 구입한 후보돼지를 포함한다)

제9조제2항중 “별표 3과”를 “별표 2와”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8조·제10조중 “군수”를 “시장·군수”로 하고 제10조제1항중 “법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표 1 및 별표 2로 하며, 별표 1 제1호 살처분한 가축의 축종별란중 닭란 다음에 오리란 및 메추리란을, 사슴란 다음에 기타가축란을 각각 신설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지급요율”을 “지급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검사·주사·약육·투약증명서 및 검안서 또는 진단서(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함)
- ② 살처분명령서사본(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 부 칙 (2004. 5. 21.)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액의 상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의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보상금평가액 상한선(제4조 관련)

1. 살처분한 가축

축종별	구 분	상한가격	비 고
젖소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 분유떼기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초임단계(임신3~8개월까지) 초임만삭(임신9개월이상) 초산우 초산우(임신만삭) 2산우 2산우(임신만삭) 2산우(임신 3~8개월까지) 다산우(임신만삭) 다산우(임신 3~8개월까지) 다산우(3~5산) 노산우(6산이상) 고능력우(모든 착유우를 종축개발협회에 등록한 가축사육시설의 젖소로서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유능력검정을 필한 젖소)	초유떼기 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만삭 가격의 80%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만삭 가격의 90% 초산우가격의 90% 초임만삭 가격의 80% 초임만삭 가격의 70% 초임만삭 가격의 75% 초임만삭 가격의 60%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일반 젖소가격(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평균산유량 초과유대의 순수익금×이용잔여년수의 1/2)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최근 1개월간 지급한 원유대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산유량 확인
육우	유사산 태아 500kg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거세우	젖소에 준하여 지급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체중kg×수소 체중kg당 가격×1.2	거세우 별도
한우	유사산 태아  송아지(5개월미만) 250kg이하  250kg초과~350kg이하  350kg초과~500kg이하  500kg이상  임신우	송아지가격×유사산발생당시 임신개월수/14개월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송아지 가격과 250kg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250kg 가격과 350kg가격을 기준으로 kg단위로 산정)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350kg 가격과 500kg가격을 기준으로 kg단위로 산정)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500kg 가격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 (체중kg×체중구분별 암소kg당 가격)+(송아지두당생산비×살처분당시 임신개월수/10개월)	암·수 구분 지급 암·수 구분 지급 (임신우·거세우 별도)  암·수 구분 지급 (임신우·거세우 별도)  암·수 구분 지급 (임신우·거세우 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송아지생산비를 적용



	<p>육용실용계(재래닭 포함) - 육추(500g내외) - 출하단계</p> <p>산란용실용계 - 10주령 - 21주령 - 78주령 이상</p> <p>종란</p> <p>종란을 제외한 알</p>	<p>(사)한국계육협회조사가격 기준 (사)한국계육협회조사가격 기준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p> <p>(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 가격 기준(육성추 가격을 기준) 생산비+산란수(306개 기준)×계 란 평균가격×10%×50% 양계속보산지가격 기준</p> <p>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p> <p>(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 가격 기준</p>	<p>“브랜드란”은 상표등록된 알을 말하며, 그 생산닭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 에 기초하여 브랜드란 납 품가격과 일반란 시세와 의 차액비율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산란용 종계가 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브랜드란”은 계약서 및 최근 거래기록에 의한 납 품가격 인정</p>
<p>오리</p>	<p>종오리 - 병아리 - 25주령 - 78주령 이상</p> <p>육용오리 - 10일령 - 35일령 - 35일령 이상~출하단계</p> <p>종란</p> <p>종란을 제외한 알</p>	<p>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33,766원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p> <p>1,300원 3,000원 (사)한국오리협회 조사가격 기준 (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p> <p>병아리 가격의 1/2 -부화중인 종란의 경우 입란후 7일이내는 병아리가격의 2/3 및 그 이후의 종란은 병아리 가격 (사)한국오리협회 조사 산지가 가격을 기준</p>	
<p>메추 리</p>	<p>병아리</p> <p>9주령 62주령 이상</p> <p>알</p>	<p>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2,253원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 최근 거래기록(거래영수증 등)에 의한 거래가격</p>	

사 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녹용	“월간한국양육” 일반사슴 농 장분양가격표 기준  (사)한국양육협회 조사 전년 도 평균 도매가격	
기타 가축	산양·면양·노새·당나귀·토 끼·거위·칠면조 등	살처분한 날 이전의 최근 거 래가격(거래영수증 등을 통 해 확인) 기준	

### ※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적용

- 소,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http://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일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닭 : 양계속보(대한양계협회 발행 주보)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 사슴 : 월간한국양육(한국양육협회 발행) 최신호를 기준으로 한다.

**비고 1.** 돼지오제스키병 또는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종·모돈·웅돈 : 성돈을 기준으로 kg당 가격을 산정하여 지급

**비고 2.** 종계·산란실용계·종오리의 단계별 가격산정

#### 가. 산란용종계

- 초생추~21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1주령이상~70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나. 육용종계

- 초생추~28주령미만 : 초생추 상한가격과 28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28주령이상~70주령미만 : 28주령 상한가격과 70주령 상한가격을 주령단위로 산정

#### 다. 산란실용계

- 병아리~10주령미만 : 병아리 상한가격과 10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10주령 이상~21주령미만 : 10주령 상한가격과 2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1주령이상~78주령미만 : 21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라. 원종오리(GPS오리)·종오리

- 오리병아리~25주령미만 : 종오리 병아리 가격과 25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25주령이상~78주령미만 : 25주령 상한가격과 78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마. 육용오리

- 35일령 이내의 오리 : 각 구간별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령단위로 산정

## 바. 메추리

- 메추리병아리~9주령미만 : 병아리 가격과 9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 9주령이상~61주령미만 : 9주령 상한가격과 61주령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주령 단위로 산정

**비고 3. 종계·종오리 및 종란기준**

- 가. 종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씨암탉과 씨수탉
- 나. 종오리 :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오리
- 다. 종란 : 종계 또는 종오리에서 생산된 알

**비고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 가. 후보돈 구입비

- 살처분 당시 후보돈 시가(순중돈 등 사실확인시 당해가격 인정), 시가 불명시 발생년도 구매가격 적용
- 후보돈 구입은 종돈장 발급 증빙서류 등으로 인정

## 나.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추가 손실비

- 모돈 선발을 위한 후보돈 구입두수의 20% 인정
- [(후보돈 가격+중부전까지 사육비) - 모돈 도태가격]×20%

## 다. 육성 후보돈 시가 : 육성돈 출하시가

## 라. 중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시부터 중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번식돈 사육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적용
- 마. 평균 감가상각비(모돈 사용에 따른 가치 소모액)
- 감가상각비와 농가보유 모돈의 평균 사용년수(1년차 보유분이 평균 40% 점유)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모돈 평균 사용년수(1년)

- 감가상각비 = (종부전 후보돈 평가액-노폐돈 가격)÷모돈 내용년수(3년)
- 노폐돈 가격 : 살처분 당시 노폐돈 시가 적용
- 바. 평균 임신기간율 : 평균 임신기간(114일)의 중간(57일) 상태인 것을 적용
- 사. 자돈 생산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자돈 생산비 적용
- 아. 평균 이유두수 : 10두 적용

## 2.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 13.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일부개정

농림부고시 제2005-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1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4-32호, '04.5.2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10일

농 립 부 장 관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 일부개정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 본문중 “제48조”를 “제21조, 제48조”로 하고, “보상금”을 “보상금과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한 도태장려금”으로 하며, “방법과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도태장려금 지급”을 “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추백리방역실시요령”을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축산물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도태보상금”을 “도태장려금”으로 한다.

6.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고 조기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한 종계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결핵병·부루세라병 도태장려금 신청·평가 및 지급 등) ①“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 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도태 권고를 받은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을 상장·거래가 이루어지는 축산물도매시장에 출하·도태후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해당 가축의 도태 사실을 확인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평가반으로 하여금 별표 2의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액은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액을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의 도태장려금 평가액을 통보받은 도태 가축의 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도태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진달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배정된 보상금 예산 또는 시·도 자체예산으로 도태 가축의 소유자에게 도태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1] 보상금평가액 상한선중 1.살처분한 닭의 병아리 상한가격란중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산지가격(산란용)·(사)한국계육협회조사가가격(육용) 기준”을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산란용·육용) 기준”으로 하고, 육용실용계(재래닭 포함)의 육추(500g내외) 및 출하단계의 상한가격란중 “(사)한국계육협회 조사가가격기준”을 “(사)대한양계협회 조사가가격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 ※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적용중 소·돼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소·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vup.com](http://www.nonghv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도태 장려금 지급기준중 종계에 대한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 개정 규정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결핵병·부루세라병으로 도태한 가축의 도태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결핵병및부루세라병방역실시요령” 규정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별표 2】

##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제9조제2항관련)

## 1.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으로 도태한 가축

## □ 도태장려금 평가액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과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의 판매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 □ 산지가격 기준

- 해당 가축의 산지가격은 [별표 1]의 살처분한 가축중 젓소·육우·한우·소종축의 살처분보상금 상한가격 기준을 준용한다
  - 다만, 유사산 태아는 도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 도태장려금 산지가격 기준 적용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http://www.nonghyup.com))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도태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 축산물도매시장 판매대금 기준

- 해당 가축을 출하·도태한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발행한 정산서에 기재된 개체별 판매대금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해당 가축을 출하·도축·경매·등급판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은 판매대금

에서 제외

※도태장려금은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2.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이외의 질병으로 도태한 가축

(단위 : 원/두당)

축종별	구 분	도태장려금 지급기준액	비 고
젖 소	송 아 지	200,000	6개월령이상에 한함
	초임만삭	500,000	
	초 산 우	400,000	
	다산우(2-5산)	300,000	
	노산우·기타	200,000	
한우	임신우(초임단계이후) 300~499kg 이하(암·수)	400,000 200,000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임신우(초임단계이후) 제외
	299kg 이하(암·수)	300,000	
돼 지	모 돈	150,000	
	웅 돈	150,000	
소·종축· 종돈	축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소와 돼지	농림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축등록기관 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종계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업 등록을 한 종계장의 종계	5,000	
사슴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농림부장관이 도태장려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양록협회등과 협의, 결정한 금액	

※도태장려금은 도태권고서에 의한 도태 이행기간내에 당해 권고대상 가축을 출하하여 도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14.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농림수산부훈령 제718호(1990.12.19)

개정 농림수산부훈령 제795호(1994. 9.13)

개정 농림부훈령 제955호(1998. 8.31)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질병의 발생시 신속·정확한 검사,역학조사, 병성감정의 실시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대상) 가축질병병성감정(이하 병성감정 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대상으로 하며,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야생조수류에 대하여도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병성감정기관)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 이라 한다)
2. 특별시·광역시의 보건환경연구원, 도의 가축위생시험소·농축산사업소·축산기술연구소·축산진흥연구소·축산진흥원(지소·지원을 포함하며, 이하 가축위생시험소 라 한다)
3. 기타 농림부장관이 병성감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관련기관 또는 관련 민간연구소

제4조(병성감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병성감정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역원장은 신청기관의 병성감정의 실시에 적합한 실험기자재,기술인력 등에 대한 현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이 병성감정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병성감정기관의 소재지
3. 실험실 요원

⑤ 농림부장관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재교부 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방법) ① 가축질병의 병성감정은 역학조사, 임상검사, 혈액검사, 부검,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동물접종시험 등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병성감정용 시료채취 요령에 의거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역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발표에 의한다.

제6조(병성감정결과의 조치등) ① 병성감정기관은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으로 판명된 때에는 농림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발생지역의 현지조사, 소독,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출입통제 등 법 관계규정에 의한 긴급방역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병성감정기관은 제1항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병성감정결과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외의 질병중 농림부장관이 가축방역상 중요하다고 인정한 질병으로 판명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기타 가축전염병이 아닌 전염성질병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가축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호의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월별 병성감정 실적을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등) ① 검역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3조제3호에서 정한 실시기관의 실험실 요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역원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병성감정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외규정) 제5조에 의한 병성감정 실시결과 결핵병, 부루세라병, 돼지오제스키병, 추백리 및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등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방역실시요령에 의한다.

제9조(감정업무의 정지등) 농림부장관은 제3조제3호의 병성감정기관이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의 변경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병성감정 실시를 잘못하여 해당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병성감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하여 가축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때

##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199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제1호서식)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신청서		
신청자	주 소	
	상호(법인명)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타업무		겸업여부
실험실 요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학위소지여부	
	국가자격소지여부	
	기 타	
<p>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p>		

## ( 별지제2호서식 )

제 호

##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최초지정년월일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요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 립 부 장 관 (인)

## 15.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3-3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3. 6. 27.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병성감정실시요령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가축병성감정”이라 함은 병성감정실시 대상 가축 및 이와 관련된 가검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역학조사, 부검, 혈액검사, 혈청검사(병성감정에 수반하는 것에 한한다),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검진, 동물접종시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병성감정 대상) 가축병성감정은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의 의뢰가 있거나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하여도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가축병성감정은 다음 각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이라 한다)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된 가축방역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3.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제5조(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병성감



정실시기관지정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평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검역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및 변경) ① 검역원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교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 신청서를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은 변경신청서의 서류검토,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를 재교부하거나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병성감정 접수처리 등) 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담당자를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축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 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가축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병성감정 실시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은 별표 2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검역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질병진단이나 검사방법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가축병성감정용 시료채취 요령에 의거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역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실시중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 또는 검역원장에게 확인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검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수의사는 가축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농장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부검 및 가검물 채취후 남은 사체는 반드시 소각 또는 매몰 등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제10조(병성감정 결과의 조치 등) 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확인된 농장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추가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가축전염병이 아닌 기타 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가축(가검물)의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월별 병성감정 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과대학(수의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학장이 월별 병성감정 실적을 취합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진단한 경우에는 검역원의 가축전염병 발생자료 관리시스템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검물 관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모든 가검물을 소각 또는 매몰 등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검역원장이 보관하고 있는 가검물의 제출이나 처리사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감독 등) ① 검역원장은 수의과대학을 제외한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실험실 요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질병진단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방역에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과대학을 포함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역원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병성감정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검역원장은 국가방역상 필요한 경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으로 하여금 가검물의 접수경위, 가축전염병 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검역원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병성감정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진단액·검사재료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가축병성감정 업무의 정지등) ① 검역원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가축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병성감정을 잘못하여 해당 농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병성감정 결과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하여 가축방역에 혼란을 초래한 때
- ② 검역원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병성감정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 관련 지원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 통보의무를 위반한 때
  2. 대표자,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소재지, 병성감정 책임자 및 담당자의 변경사항을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때
  3. 검역원장이 실시하는 방역교육에 불참하거나 지시사항 불이행 또는 기타 이 요령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때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3. 6.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요령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③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가축질병감정기관지정요건에관한기준(검역원고시 제1998-3호 ; '98.10.23)은 이를 폐지한다.

## 〔별표 1〕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구비요건

## 1. 인력구성

구분	자격기준 등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수의사로서 병성감정업무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총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1인은 수의병리학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일 것을 권장한다.
병성감정보조원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임상병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2년 이상 병리조직표본 슬라이드 제작, 세균배양 또는 혈청검사 등에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시 설

가. 시설은 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나. 권장시설

시설	수량	비고
부검실	1실	
소각실 또는 소각로	1실 또는 1로	
병성감정 전용 실험실	1실	
형광현미경실	1실	

## 3. 실험기자재

## 가. 필수기자재

장비명	수량	비고
광학현미경(Microscope)	1대	
천평(Balance) 또는 전자저울	1대	
냉장고(Refrigerator)	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pH Meter)	1대	
원심분리기(Centrifuge)	1대	
고압멸균기(Autoclave)	1대	
배양기(Incubator)	1대	
증류수 제조기 (Distilled water maker)	1대	
조직처리기(Tissue processor)	1대	
조직포매기(Embedding center)	1대	
조직절편기(Microtome)	1대	
항온수조(Floating bath)	1대	
슬라이드건조기(Slide warmer)	1대	
파라핀 용융기 (Paraffin melting oven)	1대	
염색बाट드 또는 자동조직염색기 (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부검도구	1세트	
부검대(Necropsy table)	1대	
혐기배양기(Anaerobic jar)	1개	
혈구희석용피펫 (blood cell diluting pipette)	1대	
혈구계산판(Counting chamber)	1대	
알콜램프 또는 가스램프	1대이상	
세균배양용 백금이(루프)	3개이상	

## 나. 권장기자재

장비명	수량	비고
형광현미경 (Fluorescent microscope)	1대	
CO2 배양기(CO2 incubator)	1대	
냉동조직절편기(Cryotome)	1대	
혈액검사기 (Automatic blood cell counter)	1대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1대	
자동조직염색기 (Automatic slide stainer)	1대	
도립현미경 (Inverted microscope)	1대	
동혈청미량성분분석장치 (Automatic serum analyzer)	1대	
진공펌프(Vacumm pump)	1대이상	
HPLC system	1대	
효소면역법판독기 (ELISA reader)	1대	
중합연쇄반응기(PCR machine)	1대	

## 다. 필수 실험실 물품

물품명	수량	비고
에칠알콜(Ethanol)	검사업무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는 적정 수량	
메칠알콜(Methanol)	"	
크리스탈 바이올렛 (Crystal Violet)	"	
요오드(Iodine)	"	
사프라닌(Safranin)	"	
슬라이드글라스(Slide glass)	"	
커버글라스(Cover glass)	"	
파라핀(Paraffin)	"	
자이렌(Xylene)	"	
김사(Giemsa)	"	
에오신(Eosin)	"	
헤마톡시린(Hematoxylin)	"	
포르말린(Formalin)	"	
페트리디쉬(Petri dish)	"	
혈액배지(Blood agar)	"	
물러힌턴배지 (Muller hinton agar)	"	
맥콩키배지(MacConkey agar)등 세균분리동정용 배지수종	"	
기타 병성감정에 필요한 시약류등	"	

## (별표 2)

## 가축 병성감정 검사항목

## □ 주요증상별 검사항목

증상	축종	검사항목
돌연사	모든축종	아나플락시, 출혈, 외상, 감진, 보툴리즘, 패혈증, 열사병, 요소청산·농약중독증 등
	소	탄저, 기종저, 전염성 혈전 생성수막뇌염(infectious thromboembolic meningoencephalitis), 괴저병, 유방염, 저칼슘혈증, 아질산염중독증, 급성고창증, 일사병, 유열, 목초테타니증, 장독혈증, 패혈증, 독사교상 등
	돼지	부종병, 그래씨병, 흉막폐렴, 스트렙토코커스 스위스(Streptococcus suis) type 2 감염증, 돼지스트레스증후군(PSS), 뇌심근염, 비타민 E 셀레늄결핍증, 위궤양, 돼지콜레라, 돼지단독, 살모넬라감염증, 중독증 등
	산양	파스튜렐라성폐렴 등
	면양	구리중독, 클로스트리디움장독혈증, 파스튜렐라성폐렴 등
	개	폐수종, 후두허탈, 위염전, 급성췌장염, 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파보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
	말	대동맥 파열, 위 파열, X-결장염, 영양성근증 등
	조류	닭괴사성장염, 닭보툴리즘, 닭곰팡이성폐렴, 닭봉입체간염, 류코사이토준병, 가금콜레라, 저혈당증, 농약중독증 등
호흡기 증상	소	파스튜렐라성폐렴, 열사병, 폐기종, 소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소유행열, 파라인푸루엔자바이러스3형감염증 등
	돼지	돼지콜레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흉막폐렴, 위축성비염, 열사병, 오제스키병, 특소플라즈마병, 돈단독, 폐충증, 돼지인플루엔자, 돼지스트레스증후군(PSS) 등
	개	기관지염, 기관지폐렴, 전염성기관지염, 폐수종, 개사상충증, 개디스토펜 등
	말	흉막폐렴, 말바이러스성폐렴, 말인플루엔자 등
	조류	뉴켓슬병, 가금인플루엔자, 계두, 닭전염성기관지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전염성코라이자, 대장균증, 닭뉴모바이러스감염증, 닭곰팡이성폐렴 등



증상	축종	검사항목
설사 등 소화기 이상 증상	소	살모넬라감염증, 요네병, 소바이러스성설사점막병(BVD/MD), 소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염전위충증 등
	돼지	돼지콜레라, 살모넬라감염증, 대장균설사병(자돈), 돼지전염성위장염(TGE),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적리, 돼지편충증, 로타바이러스감염증, 클로스트리듐장염, 오제스키병, 증식성회장염 등
	산양	위장염, 염전위충증, 장결절충증, 콕시디움증 등
	개	위장염, 급성대장염, 살모넬라감염증, 파보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디스토퍼, 구충증 등
	말	살모넬라감염증, 클로스트리디움감염증, X-결장염, 보통원충증 등
	조류	신장형 닭전염성기관지염, 뉴캐슬병, 닭전염성F낭염, 닭괴사성장염, 케양성장염, 선충증, 콕시디움증,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추백리, 닭보틀리즘, 전염성코라이자, 닭백혈병, 살모넬라병 등
유산(사산)	소	부루세라병, 소전염성비기관염(BHV-1), 소바이러스성설사병(BVD/MD), 소아카바네병, 네오스포라병 등
	돼지	일본뇌염(JE), 파보바이러스감염증(PPV), 오제스키병, 돼지호흡기생식기증후군(PRRS), 부루세라병, 돼지인플루엔자, 톡소플라즈마병, 렙토스피라병 등
	면양	클라미디아감염증, 보더병(border disease) 등
	개	부루세라병, 개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CHV) 등
	말	말바이러스성비폐렴(EHV-1), 말바이러스성동맥염(EVA), 스트렙토코커스감염증(Streptococcus zooepidemicus), 대장균감염증 등
신경증상	소	악성카탈열, 리스테리아증, 목초테타니, 요소중독, 유열, 저혈당증, 파상풍, 부제병, 열사병, 유행열, 타이레리아병, 바베시아병, 소해면상뇌증, 뇌염, 광견병 등
	돼지	저혈당증, 철분중독, 연쇄상구균뇌막염,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콜레라, 돼지텃센병, 일본뇌염, 부종병, 납중독, 소금중독, 흉막폐렴, 열사병, 파라믹소바이러스 감염증 등
	조류	뉴캐슬병,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닭뇌척수염, 닭뇌연화증, 살모넬라증(가금티푸스), 마랙병, 리보플라빈결핍증, 닭보틀리즘,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닭포도상구균증 등
	기타 축종	광견병, 개디스토퍼, 말뇌척수염, 스크래피,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매디-비스나, 산양관절염뇌염, 보더병 등
질병별 기타 세부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한다.		

**(별표 3)****가축 병성감정용 시료채취 요령****1. 병리조직검사용 시료채취**

- 조직채취
  - 조직의 소편(두께는 1cm내외)을 병변부위와 정상부위가 포함되도록 절취한다.
- 고정
  - 중성 10% 포르말린액이 채취한 조직의 20배 이상 되도록 하여 고정한다.
  - 조직이 두꺼우면 1시간 간격으로 세절하거나 진탕하여 고정이 되도록 한다.

**2. 미생물검사용 시료채취**

- 검사할 장기를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무균 페트리디쉬나 가검채취용 용기에 담아 실험실에서 배양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냉동고(-20℃)에 보관한 후 의뢰한다.

**3. 혈액 및 혈청채취**

- 혈액
  - 전혈을 채취할 경우에는 혈액응고 방지제(헤파린, EDTA 등)가 들어있는 용기에 혈액을 2cc정도 담아 8자로 흔들어 응고 방지제를 끌고루 퍼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한 후 검사하고 5℃냉장고에 보관한다.
- 혈청
  - 혈액응고 방지제가 없는 용기에 혈액 10cc 내외를 용기에 비스듬히 세워놓고 응고되기를 기다린 후 응고되면 37℃ 배양기에 넣어 잘 유리되도록 한다.

**4. 미량물질 분석용 가검채취**

- 가검물을 채취한 후 가급적 빨리 냉동고(-20℃)에 동결시켜 조직내의 미량성분이 분해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다른 실험실로 병성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가급적 신선한 시료를 채취하여 의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가검물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5. 병성감정 의뢰 가검시료**

- 혈액 및 혈청, 분변
- 흉수 및 복수, 피모
- 장기조직 또는 사체
- 폐사되기 전의 환축(검사에 가장 적합)

## 6. 독물검사에 필요한 가검재료(중요한 순서)

### 1) 독물종류별 가검재료

- 비소(급성) : 간, 신장, 위 및 위내용물
- 비소(만성) : 피모, 오줌, 간장
- 사염화탄소 : 위, 내용물, 각종 실질장기(간, 신장, 심장, 폐 등)
- 청산 : 위, 내용물, 간장, 혈액 및 급여사료나 식물
- 수은 : 신장, 간장 및 위내용물, 피모
- 납 : 신장, 간장, 혈액, 위내용물
- 무기산 및 알카리 : 위내용물, 간장, 신장 및 오줌
- 질산나트륨 : 위내용물, 혈액
- 스트리키닌 : 위내용물, 간장, 오줌
- 요소(urea) : 수산염첨가한 혈액 또는 전혈 및 사료

### 2) 독물검사에 필요한 가검재료량

- 혈액 : 10~30ml
- 뼈 : 250g
- 사료 : 500~2,500g
- 신장 : 양쪽 신장 전부
- 간장 : 소나 돼지는 1kg
- 피모 : 약 5g
- 혈장 및 혈청 : 10ml
- 위내용물 : 대동물은 800~1,000ml, 소동물은 전량
- 오줌 : 방광내의 전량 혹은 500ml

##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주 소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병성감정 정책입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학위소지여부	
	국가자격소지여부	
	기 타	
<p>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p>		
<p>※구비서류</p> <p>1. 가축병성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원 및 사무분장표 사본 1부.</p> <p>2. 가축병성감정책임자, 병성감정담당자 및 보조원의 이력서 각 1부.</p> <p>3. 동 요령 별표1의 시설 및 실험기자재내역 1부.</p>		<p>수수료</p> <p>없음</p>

##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소재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최초지정년월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4항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및병성감정실시요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인)

(뒷쪽)

년 월 일	구 분	당초지정사항	변경지정사항	확인









(별지 제6호 서식)

가축 병성감정 실적(년 월)

기관명 :

(축종 : ) 병성감정 실적

병성	질 병 명	진단 건수		발생 상황			발생시·군별 농가수	비고
		농가수	검사 두수	사육 두수	발생 두수	폐사 두수		
바이러스성								
세균성								
기생충성								
곰팡이성								
종양								
기타								
합 계								

※검사실적은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역원 또는 타기관 의뢰시에는 최종 검사기관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검진 실적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한함)

검진대상 질병명	발생농가 수	사육두 수	발생두 수	폐사두 수	발생시·군별 농가수	비고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의한 검진 대상 질병중 양성 실적을 작성한다.

## 16. 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

농림부고시 제1998-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8. 2. 2

농림부장관

### 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여 축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독시설 설치대상등) ①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장 도계장등 작업장(이하 작업장 이라 한다)
2.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축산단지(돼지 또는 닭을 기르는 축산단지에 한하며, 이하 같다)
3. 기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가축사육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가축시장 등
  - ②도지사는 제1항의 소독시설 설치대상자에게 법제7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소독설비 명령을 하여야 한다.
  - ③소독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차량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작업장에 출입하는 가축수송차량 (이하 가축차량 이라 한다)
    2. 축산단지에 출입하는 가축·사료 동물약품 달걀 축산기자재·축산분뇨 운반 차량과 동물진료차량(이하 기타차량 이라 한다)
    3. 어리장(가금수송용기)

제3조(실시장소) ①가축차량 및 어리장(이하 가축차량등 이라 한다)의 소독은 차량소독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한다

②도지사는 관할 작업장의 소독시설이 부족하여 가축차량등에 대한 소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량소독시설을 갖춘 가축시장등을 차량소독실시 장소로 지정하여 소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소독시기등) ①가축차량등과 기타차량의 소독 실시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차량등 : 가축을 내린 직후에 실시한다.
  2. 기타차량 : 축산단지의 소독시설에서 축산단지 진입시에 실시한다.
- ②작업장경영자 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차량소독실시장소로지정받은 자 (이하 소독시설경영자 라 한다)는 가축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후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원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운전자는 가축사육농장 또는 가축시장에 도착할 때까지 발급받은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 ③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축차량의 운송업자에게 소독을 명하거나 가축방역관 또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전향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독방법) 가축차량등과 기타차량에 대한 소독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소독시설 설비) 소독시설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차량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장비(고압세척기를 포함한다)
2.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장비(소독약품을 혼합시킬 수 있는 소독약 보관탱크를 포함한다)
3. 어리장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세척·소독장비(도계장에 한한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 (작업장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인입시키는 연결배관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기타 도지사가 가축차량등의 소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비

제7조(소독실시비용의 징수) ①소독시설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가축차량 및 기타차량의 소독실시비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차량세차비 (자동차등 운수장비 세차시설의 세차요금에 준한다)
2. 소독약품비
3. 수질환경보전등을 위한 공해방지 경비

②도지사는 차량소독실시비용의 적정징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비용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차량소독실시증명서 확인등) ①가축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농장내 진입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농장경영자는 가축차량운전자가 제시한 차량소독실시증명서의 발급일자등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차량소독실시증명서가 허위로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증명서에 자기농장에서 해당 차량에 상차한 가축마리수와 상차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작업장경영자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차량소독실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가축차량에 대하여 작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소독관련 규정 위반시 제재) 도지사는 본 요령에 의한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과 축산단지 경영자,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가축을 수송하는 차량의 운송업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소독관련 규정 위반시 제재)는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서식】

제 호					
차량소독실시증명서					
①차량번호		②차고지			
③운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④세차여부	실시 미실시	⑤소독약품명		⑥실시일자	년 월 일
⑦실시자	성명: 서명(날인)			⑧비고	
상기 차량은 가축수송차량등에 대한 소독실시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소독시설업체명:      경영자 :					
농장경영자 확인란					
1차	농장명 :	축종:	상차일시: 월 일 시	상차두수:      두	서명 또는 날인
2차	농장명 :	축종:	상차일시: 월 일 시	상차두수:      두	서명 또는 날인
3차	농장명 :	축종:	상차일시: 월 일 시	상차두수:      두	서명 또는 날인

## 【별표1】

## 가축차량 및 기타차량에 대한 소독방법과 소독약제

## 1. 소독방법

구 분	소 독 방 법	비 고
가축차량 등 기타차량	1. 반드시 오물을 제거하고 세차를 실시한 후 소독을 실시한다. 2. 차량전체를 소독하되 차량의 바퀴를 포함한 하부, 측면, 상부와 적재함이 적실정도(분무입자 100~200nm 정도)로 한다. 차량전체를 소독하되 차량의 바퀴를 포함한 하부, 측면, 상부와 적재함이 적실정도(분무입자 100~200nm 정도)로 한다.	
어리장 (도계장에 한함)	반드시 차량에서 분리세척하여 오물을 제거한 후 소독하되 어리장이 적실정도(분무입자 100~200nm정도)로한다.	

## 2. 소독약제

석탄산수, 포르말린수, 크레졸비누액, 크레올린수, 크레신수, 가성소다등 알카리수제, 울소페실페니산 나트륨 용액, 4급 암모늄제, 이산화염소제 및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독약제

## 【별표2】

## 소독관련 규정위반시 제재 조치기준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조치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위반횟수별 조치기준		
		1회	2회	3회 이상
1.세척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는 작업장 및 축산단지				
가. 제2조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작업장	법제7조 및 제44조	경고	과태료50만원	과태료50만원
나.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단지	법제7조 및 제44조	주의	경고	축산정책자금 지원
다.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축시장 등	법제7조 및 제44조	경고	과태료50만원	과태료50만원
2. 제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독 명령에 불구하고 세척 소독을 하지 아니하는 가축차량의 운송업자	법제6조 및 제44조	경고	과태료30만원	과태료50만원

## 17.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농림부고시 제2004-9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운영 및소독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3월 11일

농 립 부 장 관

## 소독설비의운영및소독요령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의 운영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독”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소독목적물별·소독대상별 소독방법에 따라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약물·훈증·증기·물끓임·발효·자외선 등의 방법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독설비”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 1의 개별시설별로 갖추어야 할 터널식·고정식소독시설, 분무소독시설, 고압분무기, 연막소독기, 소독조 이외에 세척시설, 소독약보관용기·희석용기, 탈의실, 샤워장, 소독실 및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등을 포함한다.

## 제2장 소독설비의 운영 및 관리

제3조(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설치하고 당해 시설·가축·출입자·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점검) ①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시설·도축장 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여부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여부 등 소독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태 점검결과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관련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소독요령

제6조(적용범위) 이 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제한을 실시한 지역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에 적용한다.

제7조(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사육시설(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여건이 소유자등에 의한 효과적인 소독이 어렵거나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발생농장내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여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소독조, 샤워장 및 소독기구 등 기본적인 소독설비와 소독실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동통제초소의 운영) ①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동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가축 등 이동제한 대상물건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동제한지역내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통행차량중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소독의 효율성과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서행을 유도할 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겨울철 결빙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 ①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소독실시기록부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요령의 고시와 동시에 “가축수송차량등에대한소독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1998-5호, '98.2.2)”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점검요령(제5조제1항관련)

1. 소독설비대상별 소독설시기준

소독설비 대상	설치기준		소독실시 기준
	공통기준	개별기준	
가축사육시설 (300㎡이상)	○차량 출입구에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300~1000㎡ 가축사육시설은 출입구 전용 이동식 고압분무기 설치로 대체 가능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고압분무기	○차량·사람 출입구 소독조 -1000㎡이상 가축사육시설은 사람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관리사무실·사료창고·축사출입구 소독조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300㎡미만 가축사육시설 포함) 계류장·작업실 등 도축작업과 직접 연관되는 장소는 매일 청소·소독 실시
도축장		○가축·식육 운반차량 세척·소독시설 ○소독약 보관용기·연결파이프의 동파방지장치(전기열선장치)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가금류 수송용기 세척·소독시설(가금류도 축장에 한함)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집유장		○원유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2대이상)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사료공장		○사료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2대이상) ○외부인 출입구 소독조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가축시장		○출입자 소독조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가축집합 전·후 시설 소독
가축검정기관		○출입자 소독조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가축집합 전·후 시설 소독
중축장		○차량·사람 출입구 소독조 ○출입자 옷 세척·소독을 위한 탈의실·샤워장·소독실 ○관리사무실·사료창고·축사출입구 소독조 ○시설소독을 위한 고압분무기(2대이상)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부화장		○출입자 소독조 ○부화용 알 및 난좌 소독시설 ○부화실·병아리방 출입구 소독조 ○고압분무기 또는 연막소독기	알 부화 전·후 소독
축분비료공장		○가축분뇨·축분비료 수송차량 세척·소독시설 혹은 고압분무기(2대이상) ○출입자 소독조	주1회 이상 시설·장소 소독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분뇨 운반차량			가축사육시설 등 출입시 차량 소독

<비고> 소독실시 공통기준 : 소독설비대상별 소독설시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각 시설은 출입자 및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한 소독 실시

## 2. 소독점검대상 및 점검요령

점검대상	점검범위		점검주체	점검요령
가축사육시설	소	사육규모 50두 이상	시장·군수	점검대상 사육시설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연간 1회 이상 점검
	돼지	사육규모 1,000두 이상		
	닭	사육규모 20,000수 이상		
도축장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도축장 점검
집유장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집유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집유장 점검
사료공장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체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사료공장 점검
가축시장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가축시장 점검
가축검정기관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검정기관		종축검정기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종축장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종축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종축장 점검
부화장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부화장 점검
축분비료공장	비료관리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부산물비료 생산시설		시장·군수	분기별 1회 이상 전 축분비료공장 점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분뇨 운반차량	도축장·집유장·사료공장·축분비료공장 등이 운영하는 해당 목적의 차량		시장·군수	도축장·집유장·사료공 장·축분비료공장 등 점검시 해당 시설별 관련차량 점검

<비 고> 상기 점검대상 이외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차량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가축방역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점검 실시

## [별지 제1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시 설 명		대 표 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 재 지	(전화 : )					
소 독 실 시 상 황						
연월일	소독실시대상 (차량번호)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소 독 실시자	비 고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차량의 종류		차량의 소유자				
차량의 용도		차 량 번 호				
차고 소재지	(전화 : )					
소 독 실 시 상 황						
연월일	소독장소	소독종류	소독약품	소독장비	소 독 실시자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18. 일본으로 수출되는 육류의 위생조건 개정 사항

- 1999. 6. 30. 대일 수출돼지고기 등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결과 개정내용(99.7.1.부터 적용)  
농장, 가공장은 돼지콜레라 이동제한 지역내에 있어서는 안된다.(2km→10km 변경)
- 2002. 4. 19. 위생조건 개정 내용  
(일반조건) “과거에 백신접종을 받은 우제류의 동물은 표식이 되어, 다른 동물과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을 것” 추가  
(별첨 1 지정시설의 조건)(일본행 식육 등의 조건) “과거에 구제역의 예방접종을받지 않은 것” 추가  
(BSE에 대한 조건)이 (TSE에 대한 조건)으로 바뀜 : 소에 대한 조건이 사슴, 면양, 산양육에도 적용  
(돼지콜레라에 대한 조건)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는, 제주도에서만 일본에의 수입이 인정된다 등 신설.  
(기타) “도축용 동물이 사양되고 있었던 농장의 명칭, 소재지를 기록하여 보관할 것” 추가  
(검사증명서의 발행) 도살년월일 명시추가  
(별첨 4 돼지고기 등에 관한 추가조건) 신설
- 2004년 4. 26. 일본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동물위생 조건 제정 내용  
18. 승인시설의 관리사의 기록사항 추가 : 도축/가공일자, 매 선적물량 및 선적일자  
19.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은 최소 6개월마다 승인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함” 추가  
24. 검사증명서의 발행 : 가공 년 월 일, 수출항의 명칭 및 선적연월일 추가

### 대일수출 중단 및 재개 과정

- 2000. 3. 24. : 구제역 발생, 수출검역 잠정중지
- 2002. 4. 19. : 우제류동물 식육 등 대일본 수출재개위한 위생조건 확정
- 2002. 4. 29. : 일본수출재개
- 2002. 5. 3. : 구제역의심돼지 발생에 따른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출검역 잠정중지
- 2004. 4. 26. : 일본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동물위생조건 제정
- 2004. 5. 12. : 일본수출 재개
- 2004. 11. 29. : 제주도 중돈장에 대한 돼지콜레라 정기 혈청검사 결과 일부농장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일본의 잠정수입검역중단조치

### 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1. 이 수입위생조건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정의한다.
2.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돼지는 돼지와 멧돼지를 말한다.
  - (2) 돼지고기 등은 돼지의 고기, 지방 및 내장과 소시지, 햄, 베이컨 등과 같이 고기 및 내장으로 만든 육제품을 말한다.
  - (3) 일본 가축위생당국은 농림수산업 식품안전소비안전국 위생관리과를 말한다.
  - (4) 제3청정국들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일본 가축위생당국이 승인하는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첨부1에 나열된 곳을 말한다.
    -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었다.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금지되어 있다.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동물의 수입과 도입이 금지되어 있다.
3. 돼지고기 등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구제역, 우역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2) 구제역, 우역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 (3) 구제역, 우역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예방접종을 한 우제류 동물의 수입과 도입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과거 예방접종을 한 우제류 동물은 표식이 되고 다른 우제류 동물과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4.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은 제주도 또는 제3청정국에서 생산, 가공 및 보관되어야 한다.
5. 돼지고기 등을 일본에 수출할 때, 제주도는 다음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제주도는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 (2) 제주도는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이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 (3) 제주도는 제3청정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등의 수입이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 (4) 제주도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한 돼지의 수입과 도입이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 (5)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기타 지역으로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등의 도입이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 (6) 제주도에는 돼지콜레라를 불활화 시키도록 처리한 잔반 이외 잔반의 사료급여가 금지되어야 한다.
6.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 (1) 돼지고기 등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돼지에서 유래하였을 경우는,
    - ①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는 제주도에서만 출생하여 사육되

- 어야 한다.
- ②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 ③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는 7조에 기술된 승인된 도축시설에서 대한민국정부검사원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가축 전염성 질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 (2)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이 제3청정국에서 수입된 돼지에서 유래한 경우는,
- ①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은 제3청정국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돼지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 ②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는 제3청정국 이외의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제주도로 직접 수입되어야 한다.
  - ③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는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되지 않아야 한다.
  - ④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는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에서 실시한 수입검사 결과 가축 전염성 질병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 ⑤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는 7조에 기술된 승인된 도축시설에서 대한민국정부검사원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가축전염성 질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 (3)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이 제3청정국에서 수입된 돼지고기 등에서 유래한 경우
- ①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고기 등은 제3청정국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돼지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 ②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고기 등은 제3청정국 이외의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제주도로 직접 수입되어야 한다.
  - ③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고기 등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돼지에서 유래되어야 한다.
  - ④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고기 등은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이 실시한 수입검사결과 가축 전염성 질병의 증거가 없어야 하고, 검사가 완료된 돼지고기 등은 8조의 승인시설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7.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생산을 위한 돼지가 도축된 도축시설(이하 “승인도축시설”이라 한다)은 6조 (1)①, ② 및 (2)①, ②, ③에서 기술한 조건을 충족 하는 돼지를 취급하는 곳으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하여야 한다.
8.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을 가공 및 보관하는 가공시설(이하 “승인가공시설”이라 한다)은 7조에서 기술한 승인도축시설에서 생산된 돼지 또는 6조 (3)에서 기술된 조건을 각각 충족하는 돼지고기 등을 취급하는 곳으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하여야 한다.
9.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은 돼지고기 등을 승인도축시설 또는 승인가공시설(이하 “승인시설”이라 한다)에서 도축, 가공 및 보관한 이후 선적시까지 깨끗하고 위생적인 포장지 또는 용기에 담아 가축 전염성 질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다루어지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10. 돼지고기 등이 제3국 또는 제주도 이외의 대한민국 영토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수송되는 경우,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일본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은 밀폐된 용기에 포장되어야 한다.
  - (2) 동 용기는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이 봉인하여야 한다.
  - (3) 봉인지는 제3국의 봉인지와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 (4) 봉인지는 사전에 일본 가축위생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일본 도착후 검사시 10조에 기술한 봉인지가 고의로 파손되었거나 탈락된 것 등으로 확인된 경우, 일본으로 수출된 문제의 돼지고기 등은 일본으로의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12. 대한민국에 구제역, 우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 돼지콜레라가 발생되면(돼지콜레라는 제주도에 한함), 일본 가축위생당국은 즉시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한다. 일본으로 운송중인 수출돼지고기 등은 당해 질병의 발생과 역학적으로 명백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13. 대한민국에 구제역, 우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 돼지콜레라가 발생되면(돼지 콜레라는 제주도에 한함),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은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등의 선적을 중단하여야 한다.
14. 구제역, 우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또는 돼지콜레라가 제3국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당해 국가로부터 수입된 우제류 동물 및 돼지고기 등을 취급하는 승인시설로부터의 돼지고기 등의 일본 선적을 중단하여야 하고 동 중단조치를 일본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당해 작업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 일본으로 운송중인 수출 돼지고기 등은 당해 질병의 발생과 역학적으로 명백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본으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15. 제13조의 선적중단 조치는 일본 가축위생당국이 해당 제3청정국에 대하여 해당 질병의 청정성을 확인하였거나, 대한민국정부가 해당 제3청정국에서 유래된 우제류 동물 및 그 고기 등을 승인시설로의 반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일본 가축위생당국에 통보할 때에 철회할 수 있다.(당해 질병의 발생과 역학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조건)
16.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은 가축 전염성 질병(구제역, 우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및 돼지콜레라를 포함)의 발생상황을 매월 일본 가축위생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7.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은 일본에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의 원료에 제공되는 돼지가 사육된 농장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하여야 하고, 일본 가축위생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8. 승인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돼지 / 돼지고기 등의 수량
  - (2) 승인시설이 제3청정국에서 수입된 돼지/돼지고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제3청정 국가명
  - (3) 도축 / 가공 일자
  - (4) 매 선적물량 및 선적일자

19.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은 최소 매 6개월마다 승인시설을 방문하여 이 수입위생조건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20.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은 제19조에 의한 방문결과 승인시설이 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돼지고기 등의 선적을 중지하고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일본 가축위생당국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1. 일본 가축위생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시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승인시설들이 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22. 일본 가축위생당국은 승인시설이 이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시설로부터의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즉시 중지한다.
23.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은 승인시설(승인도축시설, 승인가공시설 및 승인케이싱시설)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를 일본 가축위생당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4. 대한민국 가축위생당국은 일본에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영문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3조, 6조 및 9조에 부합되는 내용
  - (2) 케이싱이 사용된 경우 케이싱의 종류(인공, 천연), 축종, 생산지
  - (3) 승인된 도축시설과 가공장의 명칭, 주소, 승인번호
  - (4) 도축, 가공일자
  - (5) 봉인번호
  - (6) 선적일자와 선적항
  - (7) 검사증명서의 발행 년 월 일, 발생장소 및 발행자의 성명과 직
25. 이 위생조건은 2004년 2월10일 이후에 도축된 돼지에서 유래한 일본 수출용 돼지고기 등에 적용한다.

(첨부)

대한민국(제주도에 한함),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덴마크, 이탈리아(사르디니아섬 제외), 네덜란드, 벨기에(레이지와 룩셈부르크 지방 제외), 프랑스(아르데네스, 메우스, 메루르테에모셀레 및 바스린 제외), 오스트리아,(버젤랜드, 네이더로슈테레치와 웨이엔 제외) 영국(Great Britain, 북아일랜드) 스페인,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미국(미국본토, 하와이 및 괌), 멕시코(소노라, 치와와 및 유카탄), 벨리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칠레, 북마리아나군도, 뉴질랜드, 바누아투, 뉴칼레도니아, 호주



### 나. 수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케이싱을 사용한 가공품에 대한 부가적인 수입위생조건

일본으로 수출되는 케이싱을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케이싱은 다음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소, 양 또는 염소에서 유래된 케이싱의 경우 :

1. 케이싱은 첨부에 기술된 국가이외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동물에서 유래하여야 한다.
2. 케이싱은 수출국의 정부검사원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가축전염성 질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수출가공품의 가공을 위한 케이싱이 제3국에서 수입된 경우 케이싱은 수출국에서 실시한 수입검사결과 가축전염성 질병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3. 케이싱은 item1과 2에서 기술된 케이싱만을 취급하는 곳으로서 수출국 정부가 승인한 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한다.(이하 승인케이싱시설)

(제3국에서 수출가공품의 가공을 위한 케이싱이 수입된 케이싱인 경우 이 조건은 제3국의 고기가공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수출국의 가축위생당국은 승인케이싱시설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를 일본 가축위생당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5. 수출국의 가축위생당국은 일본에 수출되는 케이싱을 사용한 수출가공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영문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1) item 1, 2
- 2) 케이싱의 종류(천연, 인공), 축종 및 원산국명
- 3) 승인케이싱시설의 명칭, 주소 및 등록번호

□ 돼지에서 유래된 케이싱의 경우;

1. 케이싱은 수출국의 정부검사원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 결과 가축전염성 질병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수출가공품의 가공을 위한 케이싱이 제3국에서 수입된 경우 케이싱은 수출국에서 실시한 수입검사결과 가축전염성 질병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2. 수출국의 가축위생당국은 일본에 수출되는 케이싱을 사용한 수출가공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영문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1) item1
- 2) 케이싱의 종류(천연, 인공), 원산국명

(첨부)

영국(Great Britain,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포르투갈,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네덜란드, 리히텐슈타인, 독일,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슬로베니아, 폴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 19. 일본의 돼지콜레라 방역대책요령

### 1. 기본방침

돼지콜레라 방역에 대하여는 최근 발생상황, '96년도 이후 실시해 온 돼지콜레라박멸대책의 성과 등을 감안하여 '00년 10월 1일 이후 원칙적으로 전국적인 백신접종을 중지하고, 방역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동 백신을 가축전염병예방법('51년 법률 제16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그 사용에 대하여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동물용생물학적제제로서 지정했다. 앞으로 국가 및 도도부현은 가축위생단체, 양돈관계단체 및 양돈경영자(이하 「양돈경영자 등」이라 한다)의 협력하에 조기에 전면적인 백신접종이 중지되어 국내에서 돼지콜레라박멸이 달성되도록 다음의 대책을 실시한다.

- (1) 농장에의 출입검사, 이상돈의 적발과 당해 돼지의 병성감정 및 정기적인 항체보유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촌(市町村) 및 양돈경영자 등으로부터의 이상돈의 조기통보체제 확립한다.
- (2) 돼지콜레라 발생시에는 돼지(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살 또는 살처분(이하 「살처분 등」이라 한다)에 의한 만연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긴급 백신접종은 돼지콜레라의 잠재화 방지에 충분히 배려한 후 만연방지에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속하게 실시한다.
- (3) 박멸을 향한 구체적인 추진방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양돈경영자 등에게 방역대책의 주지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단계에 학식경험자, 양돈관계단체, 가축위생관계단체, 도도부현, 국가관계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돼지콜레라박멸전국검토위원회(이하 「전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도도부현단계에 같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돼지콜레라박멸도도부현검토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원활한 방역의 추진에 대하여 기술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위원회에 학식경험자, 국가관계자, 기타 전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기술검토회를 설치한다.

### 2. 돼지콜레라 박멸 추진방책

도도부현은 본 요령에 의하여 도도부현돼지콜레라방역대책요령을 정하고 당해 요령은 아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돼지콜레라 발생 예방조치 및 만연방지조치를 정한다.

### 3.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 등

#### (1) 청정성 유지 확인조사

도도부현은 다음의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

가. 임상검사에 의한 이상돈(異常豚)의 적발과 병성감정

원칙적으로 매년 1회, 모든 양돈농가에서 임상검사에 의한 이상돈(異常豚)의 적발 및 당해 돼지의 병성감정을 실시한다.

나. 항체보유상황조사

(가) 일괄경영농장 및 비육경영농장에 관한 조사

매월, 임의 추출한 별도로 정하는 두수의 도축장 반입전후의 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상황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백신의 접종상황이 불명한 항체양성돈을 확인한 경우는 당해 돼지의 백신접종력을 확인하고, 필요시 동거돈의 임상검사, 항체검사 및 병성감정을 실시한다.

(나) 번식경영농장 및 종돈장에 관한 조사

최소한 6개월에 1회, 임의 추출한 10두의 돼지에 대하여 항체보유조사를 실시한다. 또, 가축개량증식법('50년 법률 제209호 제4조제1항에 의한 종축검사가 실시되는 돼지에 대하여는 검사를 위해 채혈되는 혈액을 이용한 항체보유상황 조사를 실시한다.

(다) 야생멧돼지에 관한 조사

관계기관, 관계단체 등의 협력도 얻어서 가능한 한 항체보유상황 조사를 실시한다.

(2) 발생예방을 위한 지도 등

도도부현은 다음의 지도 및 확인을 실시한다.

가. 양돈농장에 있어 위생관리 철저 등

(가) 양돈경영자에 대하여 가축방역대책요령('99년 4월 12일자 11축S제467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의 별기 4의 종돈장 등 사양시설에 있어 위생관리대책 지침에 의한 위생관리의 철저를 도모하고, 돼지의 출입 및 도입, 농장에의 사람 및 차량의 출입 등을 기록한 위생관리부를 정비하여 보존하도록 지도한다.

(나) 법 제51조에 의한 출입검사, 순회지도, 진료수의사로부터의 보고 등에 의하여 위생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나. 관계장소에서의 위생관리 철저

(가) 사료관계시설

사료공급관계자에 대하여 사료제조시설, 사료중계기지 등 사료관계시설에서의 출입시 차량 등의 소독에 노력하고, 차량 운행기록부를 정비하여 보존하도록 지도한다.

(나) 도축장 및 가축시장

도축장관계자 및 가축시장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시설에서의 출입시 차량 등의 소독, 출하돼지 승하차 장소 및 계류장소의 소독에 노력하고, 출하 또는 상장 돼지의 기록을 정비하여 보존하도록 지도 할 것

#### 다. 잔반 등의 가열처리

잔반 등을 급여하고 있는 양돈경영자에 대하여 급여전에 가열처리(70℃ 30분 이상 또는 80℃ 3분 이상)하도록 지도한다.

#### 4. 만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도도부현은 다음의 만연방지조치를 실시한다.

##### (1) 발생에 대비한 방역체제 정비

발생시의 만연방지조치의 실시체제 사전점검과 긴급 연락망 정비 및 본 연락망의 양돈경영자 등에의 주지철저를 도모한다.

##### (2) 이상돈의 통보

양돈경영자 등에 대하여 사양돈에 발열, 식욕부진, 설사, 이상산 등의 이상이 인정된 경우에는 우선 돼지콜레라를 의심하여 즉시 가축보건위생소(이하 「가보」라 한다)에 통보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한다.

##### (3) 통보를 받은 경우의 조치

즉시, 통보가 있는 농장에 출입하여, 사양두수의 확인 및 병성감정지침('98년 10월 22일자 축A제1937호 농림수산성 축산국장 통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또, 병성결정까지의 동안 당해농장의 사양 돼지 전두수를 격리, 소독하고, 사람 및 차량의 출입 자속을 지도하고, 3의 (2)'가'의(가)의 위생관리부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비한 초동방역 조치에 실시에 대하여 검토한다.

##### (4) 병성결정시의 만연방지조치

발생도도부현에 돼지콜레라 중앙대책본부(현청) 및 돼지콜레라발생현지역책본부(가축보건위생소)를 설치하고, 도도부현 관계기관 및 시정촌에 연락한다. 또, 다음에 열거하는 만연방지조치의 실시에 있어서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대를 취하여 실시할 것

#### 가. 환축, 의사환축의 범위

##### (가) 환축

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환축은 다음의 돼지로 한다.

- a. 병성감정지침에 의해 돼지콜레라에 걸려있다고 진단된 돼지
- b. a의 돼지와 동거하여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돼지

##### (나) 의사환축

법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의사환축은 다음의 돼지로 한다.

- a. 환축과 동일농장(사양관리형태 등에 의해 가축방역원이 돼지콜레라의 환축 또는 의사환축이 사양되고 있는 축사와 방역상 구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돈사

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양되고 있는 돼지

- b. 과거(환축이 이상을 나타낸 날을 기산일로 한다. 이하 같다) 14일간에 발생농장에서 사양되고 있었던 돼지
- c. 환축으로부터 과거 14일간에 채정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한 돼지

(다) 환축으로 될 우려가 있는 돼지

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환축으로 될 우려가 있는 가축(의사환축을 제외)은 다음의 돼지로 한다.

- a. 사양관리형태 등에 의해 가축방역원이 돼지콜레라의 환축이 사양되고 있는 축사와 방역상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축사에서 사양되고 있는 돼지
- b. 의사환축과 동일농장에서 사양되고 있는 돼지 및 과거 14일간 의사환축과 동일농장에서 사양되고 있었던 돼지
- c. 과거 14일간에 의사환축과 동일농장에서 사양되고 있었던 돼지와 동거하고 있는 돼지
- d. 의사환축으로부터 14일간에 채정된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한 돼지
- e. 과거 14일간에 발생농장에 돼지를 출하한 농장의 돼지 및 과거 14일 동안에 환축에 인공수정을 실시한 정액을 채정한 돼지
- f. 기타 가축방역원이 돼지콜레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돼지

나. 공시, 보고 또는 통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보고 및 통보를 실시하고, 가축위생관계단체, 양돈관계단체 등과 연대를 도모해 가면서 돼지콜레라 발생에 관한 정보를 주지한다. 또한, 병성결정시까지에 시간을 요하고 또한 돼지콜레라의 의심이 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공시 및 통보에 앞서 국가에의 보고를 실시하고, 그 취급에 대해 협의한다.

다. 역학관련농장 등에의 출입검사

가축위생관계단체, 양돈관계단체, 관계도도부현 등과 연대를 도모해 가면서 역학관련농장,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 관계장소 등의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라. 이동 제한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대략 반경 3km의 구역 및 10km의 구역을 방역구역 및 감시구역(방역구역에 접하는 구역으로 방역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하여 시기를 잃지 않게(맞추어)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구역의 설정에 있어서는 지리적 조건, 돼지 사양조건 등을 고려한다. 또, 이동제한 기간은 최종 발생예에 대한 조치후 방역구역에 대하여는 40일간, 감시구역에 대하여는 15일간으로 하고, 당해 기간중에 새로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에 의해 가축방역원이 방역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돼지는 최종발생예에 대한 조치후 방역구역에 대하여는 21일째 이후 감시구역에 대하여는 7일째 이후 도축장

에의 출하를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허가시에는 도축장 출하허가서를 교부한다.

#### 마. 긴급백신접종

방역구역내의 돼지(발생농장을 포함한다) 및 역학관련농장을 대상으로 하여 축산국 위생과(이하 「위생과」라 한다)와 협의한 후, 원칙적으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사양돼지 전두수에 접종하고, 접종한 돼지에는 이표 등으로 표식한다. 접종돼지에 대하여는 다른 종장에의 이동자숙을 지도하고, 접종돼지에서 출산된 돼지(도축장에 직접 출하하는 돼지를 제외한다)에는 이표 등으로 표식한다.

또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에 의해 가축방역원이 방역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돼지는 긴급예방접종후 21일째 이후 도축장에의 출하를 허가할 수 있고, 허가시에는 도축장출하허가서를 교부한다.

#### 바. 살처분 등

환축 및 의사환축의 살처분 등은 만연방지의 관점에서 발생시의 병세, 역학적고찰 등에 의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때에는 환축 및 의사환축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살신고를 즉시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당해 신고가 즉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을 실시한다.

폐사돈 및 살처분 등이 실시된 돼지에 대하여는 돼지가 사양되고 있었던 농장부지내에서 가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51년 농림성령제35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 기준에 따라서 매몰처분한다.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폐식 차량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 운반하고, 동 기준에 의해 소각 또는 매몰 하던가 또는 규칙 제1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방법에 의해 화제한다.

#### 사. 격리 등

이동제한구역 이외에서 사양되고 있는 환축으로 될 우려가 있는 돼지('가'-(다)-b 및 c에 한한다)는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10일간 농장외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지시한다. 또한, 격리시킨 농장에서 사양되고 있는 돼지중 가축방역원이 그 사양관리형태 등에 의해 의사환축이 사양되고 있는 돈사와 방역상 구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돈사에서 사양되고 있는 돼지 및 '가'-(다)-c의 돼지에 있어서는 도축장에 출하를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기타의 환축으로 될 우려가 있는 돼지는 자주적인 격리를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격리를 지시한다.

#### 아. 사양돈의 도태 등의 지도

가축방역원 또는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원 등」이라 한다)은 (가), (나) 및 (다)의 돼지에 있어서는 도태한 후 소각, 매몰하도록 하고, 또, (라)의 돼지에 있어서는 소각, 매몰 또는 소독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미리 위생과와 협의한다.

(가) 방역구역내에 존재하여, 가축방역원 등이 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도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돼지

- (나) 방역구역내 및 감시구역내에 소재하여, 가축방역원 등이 출하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돼지
- (다) (가) 및 (나) 이외의 돼지로서 가축방역원 등이 돼지콜레라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등 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도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돼지
- (라) 가축방역원 등이 돼지콜레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 등의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건

자.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 역학관련농장, 관계장소에 있어 방역조치

- (가) 이동제한지역내의 농장, 역학관련농장에 대하여 농장에의 사람 및 차량의 출입제한의 철저, 출입차량의 소독 철지를 지도한다.
- (나) 이동제한구역내의 농장, 역학관련농장에 사료를 배송하는 사료공급관계자에 대하여 배송차량의 소독철저(차체 소독을 포함한다), 돼지콜레라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한 배송 루트의 개선을 지도한다.
- (다) 이동제한구역내의 도축장에 있어서는 출입차량 소독(차체소독을 포함한다)의 철지를 지도한다.
- (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역구역에서의 가축시장(돼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한한다)의 개최를 중지한다. 또한, 감시구역내에서 가축시장을 개최하는 경우는 출입차량의 소독철지를 지도한다.

## 5. 기타

(1)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있어 돼지의 재도입

도도부현은 이동제한 해제후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돼지가 도입되는 경우는 당해 돼지의 도입후 약 40일째에 항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청정성을 확인한다.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돼지콜레라백신의 사용에 관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은 농장 등에서의 청정성의 확인

가. 도도부현은 원칙적으로 허가 기준중 최소한 1회, 허가를 받아있는 농장에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의 사용상황의 청취, 이상을 나타내는 돼지의 발생상황 청취, 혈액 채취 등을 실시하여 농장의 청정성을 확인한다.

나. 도도부현은 양돈경영자 등에 대하여 돼지의 도입시에 도입원 농장의 돼지콜레라 백신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백신접종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백신을 사용한 내용의 이표에 의한 표식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관할 가보에 연락하도록 지도하고, 백신접종돈을 도입하는 농장에 대하여는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1)과 같이 농장의 청정성을 확인한다.

## 20. OIE CODE for CLASSICAL SWINE FEVER

### 국제수역사무국 돼지콜레라 위생규약

#### Article 2.6.7.1.

The pig is the only natural host for classical swine fever (CSF) virus. The definition of pigs includes all varieties of *Sus scrofa*, both domestic breeds and wild boar. A distinction is made between farmed and permanently captive pigs, and free-living pigs. Farmed and permanently captive pigs of any breed will hereafter be referred to as domestic pigs. Free-living pigs of any breed will hereafter be referred to as wild pigs. Extensively kept pigs may fall into either of these categories or may alternate between the two.

돼지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유일한 자연 발생적 숙주이다. 돼지의 정의에는 사육 또는 야생돼지와 모든 *Sus scrofa* 종류가 포함된다. 가축화된 돼지, 영구 포획 돼지와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돼지로 구분된다. 모든 품종의 가축화된 돼지와 영구 포획 돼지는 이후 사육 돼지(domestic pig)로 지칭되며, 모든 품종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돼지는 야생 돼지로 지칭된다. 광범위하게 사육되는 돼지는 두 분류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두 분류사이에 선택되어야 한다.

Pigs exposed to CSF virus prenatally may be persistently infected throughout life and may have an incubation period of several months before showing signs of disease. Pigs exposed postnatally have an incubation period of 7-10 days, and are usually infective between post-infection days 5 and 14, but up to 3 months in cases of chronic infections.

출생 이전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돼지는 평생 동안 감염이 지속될 수 있고 증상을 나타내기 전 수개월 동안의 잠복기를 거치게 된다. 출생 후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돼지는 7-10일간의 잠복기를 갖게 되고 감염 후 5-14일 사이에 대개 감염성이 있으며, 만성적인 감염인 경우에는 3개월까지 감염성 있다.

Standards for diagnostic tests and vaccines are described in the Terrestrial Manual.

진단학적 검사 및 백신에 대한 기준은 육상동물 매뉴얼에 기술되어 있다

#### Article 2.6.7.2.

The CSF status of a country or zone can only be determined after considering the following criteria both in domestic and wild pigs:

국가 또는 지역의 돼지콜레라 지위는 사육돼지와 야생돼지의 다음 분류기준을 고려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1. a risk assessment has been conducted, identifying all potential factors for CSF occurrence and their historic perspective;

1. 위험평가는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한 모든 잠재적인 요인과 이러한 과거 내력을 확인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CSF should be notifiable in the whole country and all clinical signs suggestive of CSF should be subjected to field and/or laboratory investigations;

2. 돼지콜레라가 국가 신고대상 질병이어야 하며, 모든 돼지콜레라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 현장 및(또는) 실험실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an on-going awareness programme should be in place to encourage reporting of all cases suggestive of CSF ;

3. 운영하고 있는 경보 프로그램은 돼지콜레라의 의심건이 보고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4. the Veterinary Administration should have current knowledge of, and authority over, all establishments containing pigs in the whole country;

4. 수의당국은 전국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the Veterinary Administration should have current knowledge about the population and habitat of wild pigs in the whole country.

5. 수의당국은 전국의 야생돼지 서식처 및 서식두수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Article 2.6.7.3.

For the purposes of this Terrestrial Code :

본 육상동물 규약을 위한 용어의 정의

'CSF infected establishment' means a domestic pig holding in which the presence of the infection has been confirmed by field and/or laboratory investigations.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시설'이란 현장 및 실험실 조사에 의해 감염이 확인된 돼지를 보유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Country or zone with CSF infection in domestic pigs' means a country or zone containing a CSF infected establishment.

'사육 돼지에서의 돼지콜레라 감염 국가 또는 지역'이란 돼지콜레라에 감염된 시설을 갖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

The size and limits of a CSF domestic pig control area must be based on the control measures used and the presence of natural and administrative boundaries, as well as an assessment of the risks for disease spread.

사육돼지의 돼지콜레라 방역구역의 범위와 한계는 질병 전파에 대한 위험도 평가뿐 만 아니라 자연·행정 구역의 경계와 사용되는 방역조치에 기초하여야 한다.

#### Article 2.6.7.4.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야생돼지와 사육돼지에서의 돼지콜레라 비발생 지역 또는 국가

##### 1. Historically free status

##### 1. 역사적인 비발생 지위

A country or zone may be considered free from the disease in domestic and wild pigs after conducting a risk assessment as referred to in Article 2.6.7.2. but without formally applying a specific surveillance programme (historical freedom) if the country or zone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3.8.1.2.

국가 또는 지역이 제 2.6.7.2조에 언급된 위험평가 후 야생돼지 및 사육돼지의 돼지콜레라 비발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국가 또는 지역이 제 3.8.1.2조에 부합된다면 공식적인 특정 예찰 프로그램(역사적 비발생)에 적용되지 않는다.

##### 2. Free status as a result of an eradication programme

##### 2. 박멸 프로그램 결과에 의한 비발생 지위

A country or zone which does not meet the conditions of point 1 above may be considered free from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after conducting a risk assessment as referred to in Article 2.6.7.2. and when:

1항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는 제 2.6.7.2조에 의해 위험평가 실시 후 다음 사항의 경우 사육돼지 및 야생돼지 돼지콜레라 비발생 지역 또는 국가로 간주될 수 있다.

##### a. it is a notifiable disease;

a. 돼지콜레라가 신고대상 질병이다.

b. domestic pigs are properly identified when leaving their establishment of origin with an indelible mark giving the identification number of their herd of origin; a reliable tracing back procedure is in place for all pigs leaving their establishment of origin;

b. 사육돼지는 유래 축군의 식별 번호를 비식용 마크로 표시하여 유래 농장에서 출하될 경우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c. the feeding of swill is forbidden, unless the swill has been treated to destroy any CSF virus that may be present, in conformity with one of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3.6.4.1.;

c. 제 3.6.4.1조 기준에 따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사멸 처리하지 않은 남은 음식물은 급여를 금지한다.

d. animal health regulations to control the movement of commodities covered in this Chapter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introduction of the infection into the establishments of the country or zone have been in place for at least 2years;

AND EITHER

d. 국가 또는 지역의 시설로 질병감염의 유입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장(chapter)에서 언급된 물품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동물위생규정이 최소 2년 동안 운영되어 왔다 그리고

e. where a stamping-out policy without vaccination has been practised for CSF control, no outbreak has been observed in domestic pigs for at least 6 months; or

e.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하지 않고 살처분 정책이 실시된 지역의 사육돼지는 최소 6개월간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는

f. where a stamping-out policy combined with vaccination has been practised, vaccination against CSF should have been banned for all domestic pigs in the country or zone for at least one year, unless there are validated means of distinguishing between vaccinated and infected pigs;

if vaccination has occurred in the last 5 years, a serological monitoring system should have been in place for at least 6 months to demonstrate absence of infection within the population of domestic pigs 6 months to one year old, and no outbreak has been observed in domestic pigs for at least 12 months; or

f. 예방접종 돼지와 감염돼지를 구별하는 타당한 방법이 없을 경우 예방접종과 살처분정책이 실시된 지역은 사육돼지의 예방접종이 최소 1년간 국가 또는 지역에서 금지된다. ; 과거 5년 내에 예방접종이 실시되었을 경우 6개월~1년령의 사육돼지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았으며 과거 12개월간 사육돼지에서 질병 발생하지 않았 음을 증명하기 위해 혈청학적 모니

터링 시스템이 최소 6개월간 운영되어야 한다. 또는

g. where a vaccination strategy has been adopted without a stamping-out policy, vaccination against CSF should have been banned for all domestic pigs in the country or zone for at least one year, unless there are validated means of distinguishing between vaccinated and infected pigs; if vaccination has occurred in the last 5 years, a serological monitoring system should have been in place for at least 6 months to demonstrate absence of infection within the population of domestic pigs 6 months to one year old, and no outbreak has been observed in domestic pigs for at least 12 months;

AND

g. 살처분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예방접종이 실시된 지역은 감염돼지와 예방접종 돼지를 구분하는 타당한 방법이 없을 경우 최소 1년간 국가 또는 지역의 사육돼지에 예방접종 실시를 금지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이 과거 5년내 실시되었을 경우 6개월~1년령의 사육돼지가 감염되지 않았으며 과거 12개월간 사육돼지에서 질병 발생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혈청학적 모니터링 시스템이 적어도 6개월간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h. CSF infection is not known to occur in the wild pig population and monitoring of wild pigs indicates that there is no residual infection.

h. 야생돼지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이 알려지지 않아야 하고, 야생돼지의 모니터링으로 감염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 Article 2.6.7.5.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domestic pigs but with infection in the wild pig population

야생돼지는 감염되어 있으나 사육돼지는 돼지콜레라 비발생인 국가 또는 지역

Requirements in point 2.6.7.4.2. of Article 2.6.7.4., as relevant, are complied with, but CSF infection is known to occur in wild pigs. Additional conditions for the free status are that in the country or zone:

제 2.6.7.4조의 2.6.7.4.2항을 충족하지만 야생동물에서 돼지콜레라 감염이 알려져 있다. 국가와 지역의 비발생 지위 추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programme for the management of CSF in wild pigs is in place, and CSF wild pig control areas are delineated around every CSF case reported in wild pigs, taking into

account the measures in place to manage the disease in the wild pig population, the presence of natural boundaries, the ecology of the wild pig population, and an assessment of the risk of disease spread;

1.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관리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야생돼지 관리 지역은 야생돼지의 질병 관리 방법, 자연적 경계의 존재, 야생돼지 축군의 생태, 질병 전파의 위험 평가 등을 고려하여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발생 보고 지역을 나타내야 한다.

2. biosecurity measures are applied to prevent transmission from wild pigs to domestic pigs;

2. 차단방역조치(biosecurity)는 야생돼지에서 사육돼지로의 질병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3. clinical and laboratory monitoring (under study) is carried out in the domestic pig population, with negative results.

3. 사육 돼지군에서 임상 및 실험실 모니터링(연구중)을 적용하여 음성이어야 한다.

#### Article 2.6.7.6.

Recovery of free status

비발생 지위 회복

Should a CSF outbreak occur in an establishment of a free country or zone (free in domestic and wild pigs, or free in domestic pigs only), the status of the country or zone may be restored at least 30 days after completion of a stamping-out policy which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measures: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사육돼지와 야생돼지에서 비발생 또는 사육돼지에서만 비발생)내의 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될 경우 국가 및 지역의 지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살처분 정책 수행 후 최소 30일이 지난 후 회복된다.

1. A CSF domestic pig control area (including an inner protection area of at least 3-kilometre radius and an outer surveillance area of at least 10-kilometre radius) should be delineated around the outbreak, taking into account the control measures applied, the presence of natural and administrative boundaries, and an assessment of the risk of disease spread;

1. 사육돼지의 돼지콜레라 관리지역(최소 반경 3km내의 보호지역과 적어도 반경 30km외의 예찰지역)은 질병 통제방법, 자연·행정적 경계의 존재, 질병 전파의 위험 평가를 고려하여

발생지 주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all the pigs have been killed and their carcasses destroyed, and disinfection has been applied within the establishment;

2. 모든 돼지는 살처분하여 사체는 폐기하고, 시설 내에는 소독을 해야 한다

3. in the protection area around a CSF outbreak:

3. 돼지콜레라 발생지 주변의 보호지역

a. a risk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CSF infection in neighbouring establishments; when a significant risk is indicated, a stamping-out policy of all domestic pigs within a radius of at least 0.5kilometre may be applied;

a. 위험 평가는 인근 시설의 돼지콜레라 감염 개연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 ; 중요한 위험성이 나타날 경우 최소 반경 1.5km내 사육농장에 대해 살처분 정책이 적용된다.

b. an immediate clinical examination of all pigs in all pig establishments situated within the protection area has been carried out;

b. 보호지역내 위치한 모든 돼지 사육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4. in the surveillance area around a CSF outbreak, all sick pigs should be subjected to laboratory tests for CSF;

4. 돼지콜레라 발생지 주변 예찰지역내의 병든 돼지는 돼지콜레라 실험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an epidemiological examination including clinical examination, and/or serological and/or virological testing has been carried out in all pig establishments that have been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tact with the infected establishment and in all pig establishments located within the CSF domestic pig control area, demonstrating that these establishments are not infected;

5. 감염 농장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돼지농장과 사육돼지의 돼지콜레라 방역 지역내 돼지 농장에 대해 농장이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임상 검사 그리고 /또는 혈청학적 검사 그리고/또는 바이러스검사를 포함한 역학조사가 수행된다.

6. measures aimed at preventing any virus spread by live pigs, pig semen and pig embryos, contaminated material, vehicles, etc. have been implemented.

6. 돼지와 돼지 정액, 돼지 수정란, 오염물질, 이동수단에 의한 바이러스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가 수행된다.

If emergency vaccination has been practised within the CSF domestic pig control area, recovery of the free status can not occur before all the vaccinated pigs have been slaughtered, unless there are validated means of distinguishing between vaccinated and infected pigs.

감염돼지와 예방접종축을 구분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 없다면 사육돼지의 돼지콜레라 방역지역내에서 긴급예방접종이 적용되었을 경우 모든 예방접종된 돼지가 도축되기 전에는 비발생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다.

#### Article 2.6.7.7.

#####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wild pigs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

A country or zone may be considered free from CSF in wild pigs when:

다음의 경우에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비발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the domestic pig population in the country or zone is free from CSF infection;

1. 국가 또는 지역내 사육돼지의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았음

2. a monitoring system (under study) has been in place to determine the CSF status of the wild pig population in the country, and in the country or zone;

2. 모니터링 체계(연구중)가 국가 또는 지역, 그리고 국가내의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a. there has been no clinical nor virological evidence of CSF in wild pigs during the last 12 months;

a. 과거 최소 12개월간 야생돼지에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학적 및 임상학적 증거가 없었다.

b. no seropositive wild pigs have been detected in the age class 6-12 months during the last 12 months;

b. 과거 최소 12개월간 6~12개월령의 야생돼지에서 혈청학적 양성축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3. there has been no vaccination in wild pigs for at least 12 months;

3. 과거 최소 12개월간 야생돼지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4. the feeding of swill to wild pigs is forbidden, unless the swill has been treated to destroy any CSF virus that may be present in conformity with one of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3.6.4.1.;

4. 제 3.6.4.1조 기준에 의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사멸 처리를 하지 않는 남은 음식물의 급여는 금지 되어야 한다.

5. imported wild pigs comply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present chapter.

5. 수입 야생 돼지와 관련한 요구조건이 전 장에서 기술되어 있다.

A zoning approach can only be adopted if there is a wild pig population that is isolated from other wild pigs.

야생돼지 축군이 다른 야생돼지로부터 격리되어 있다면 지역적인 접근이 적용될 수 있다.

#### Article 2.6.7.8.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사육돼지 및 야생돼지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 행정기관은 다음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domestic pigs

사육돼지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animals:

동물의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showed no clinical sign of CSF on the day of shipment;

1. 선적일에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2. were kept in a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since birth or for at least the past 3 months;

2. 출생한 이래 또는 과거 최소 3개월간 사육돼지와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비발생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육되었음

3. have not been vaccinated against CSF, nor are they the progeny of vaccinated sows, unless there are validated means of distinguishing between vaccinated and infected pigs.



3. 예방접종 돼지와 감염돼지를 구분하는 타당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고 예방접종을 받은 어미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음

#### Article 2.6.7.9.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free of CSF in domestic pigs but with infection in the wild pig population,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야생돼지는 돼지콜레라에 감염되고 사육돼지는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행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domestic pigs

사육돼지에 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animals:

동물의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were kept in a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domestic pigs since birth or for at least the past 3 months;

1. 출생한 이래 또는 과거 최소 3개월간 사육돼지와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비발생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육되었음

2. have not been vaccinated against CSF, nor are they the progeny of vaccinated sows, unless there are validated means of distinguishing between vaccinated and infected pigs;

2. 예방접종 돼지와 감염돼지를 구분하는 타당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았고 예방접종 받은 어미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음

3. come from an establishment which is not located in a CSF wild pig control area as defined in Article 2.6.7.5., and has been regularly monitored to verify absence of CSF;

3. 제 2.6.7.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돼지콜레라 야생돼지 관리지역내에 위치하지 않은 시설에서 사육되었고, 돼지콜레라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왔음

4. have had no contact with pigs introduced into the establishment during the past 40 days;

4. 과거 40일간 시설에 유입된 돼지와 접촉하지 않았음

5. showed no clinical sign of CSF on the day of shipment.

5. 선적일에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 Article 2.6.7.10.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with CSF infection in domestic pig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사육돼지 돼지콜레라 감염 국가 또는 지역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행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domestic pigs

사육돼지에 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animals:

동물의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have not been vaccinated against CSF nor are they the progeny of vaccinated sows, unless there are validated means of distinguishing between vaccinated and infected pigs;

1. 예방접종 돼지와 감염돼지를 구분하는 타당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 하지 않았고 예방접종 받은 어미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음

2. were kept since birth, or for the past 3 months, in an establishment not situated in a CSF domestic or wild pig control area as defined in Article 2.6.7.5. and in Article 2.6.7.6.;

2. 제 2.6.7.5조에서 정의한 돼지콜레라 야생돼지 관리 지역내에 위치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되었고 돼지콜레라의 부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왔음

3. were isolated in a quarantine station for at least 40 days ;

3. 최소 40일간 검역장소에 격리되었음

4. were subjected during that period of quarantine to a virological test, and a serological test performed at least 21 days after entry into the quarantine station, with negative results;

4. 검역장소 입고 후 최소 21일내 실시된 바이러스학적 및 혈청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함

5. showed no clinical sign of CSF on the day of shipment.

5. 선적일에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 Article 2.6.7.11.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사육돼지와 야생돼지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행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wild pigs

야생돼지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animals:

동물의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showed no clinical sign of CSF on the day of shipment;

1. 선적일에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2. have been captured in a country or zone free from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2. 야생돼지와 사육돼지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에서 포획되었음

3. have not been vaccinated against CSF, unless there are validated means of distinguishing between vaccinated and infected pigs;

and, if the zone where the animal has been captured is adjacent to a zone with infection in wild pigs:

3. 감염돼지와 예방접종 돼지를 구분하는 타당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동물이 포획된 지역과 야생돼지 감염 지역이 인접할 경우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음

4. were kept in a quarantine station for 40 days prior to shipment, and were subjected to a virological test, and a serological test performed at least 21 days after entry into the quarantine station, with negative results.

4. 선적전 40일간 검역장소에서 계류되고 검역시설 입고후 21일내 실시된 혈청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를 받아야 되며, 검사 결과 음성임

**Article 2.6.7.12.**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사육돼지와 야생돼지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행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semen of domestic pigs

사육돼지 정액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사항이 증명된 국제 수의검역증명서의 제출

1. the donor animals:

1. 공정동물

a. were kept in a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since birth or for at least the past 3 months;

a. 출생한 이래 또는 과거 최소 3개월간 사육돼지와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비발생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육되었음

b. showed no clinical sign of CSF on the day of collection of the semen;

b. 정액채취시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2. the semen was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ppendix 3.2.3.

2. 부록 3.2.3조항에 의거 정액이 채취, 가공, 저장되었음

**Article 2.6.7.13.**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free of CSF in domestic pigs but with infection in the wild pig population,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야생돼지 축군은 돼지콜레라 감염되고 사육돼지는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할 경우 정부수의기관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for semen of domestic pigs

사육돼지의 정액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the donor animals

1. 공정동물

a. have been kept in an artificial insemination centre which is not located in a CSF wild pig control area and is regularly monitored to verify absence of CSF;

a. 야생돼지 돼지콜레라 관리 지역내 위치하지 않은 인공수정센터에서 사육되고 돼지콜레라 부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받았음

b. were isolated in the artificial insemination centre for at least 40 days prior to collection;

b. 정액채취전 최소 40일간 인공수정센터에 격리되어 있었음

c. showed no clinical sign of CSF on the day of collection of the semen and for the following 40 days;

c. 정액채취일부터 40일간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음

2. the semen was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ppendix 3.2.3.

2. 부록 3.2.3조항에 의거 정액이 채취, 가공, 저장되었음

#### Article 2.6.7.14.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considered infected with CSF in domestic pig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사육돼지가 돼지콜레라 감염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행정기관은 다음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

for semen of domestic pigs

사육돼지의 정액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the donor animals:

1. 공정 동물

a. showed no clinical sign of CSF on the day of collection of the semen and for the following 3 months;

a. 정액채취일부터 3개월간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음

b. have not been vaccinated against CSF, and were subjected to a serological test performed at least 21 days after collection, with negative results;

b.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액채취 후 최소 21일내에 혈청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이었음

2. the semen was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ppendix 3.2.3.

2. 별표 3.2.3의 조항에 의거 정액이 채취, 가공, 저장되었음

#### Article 2.6.7.15.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사육돼지와 야생돼지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행정기관은 다음사항을 요구하여야한다.

for in vivo derived embryos of pigs

돼지 생체에서 추출된 수정란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the donor females showed no clinical sign of CSF on the day of collection of the embryos;

1. 수정란 채취시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2. the embryos were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ppendix 3.3.1.

2. 부록 3.3.1조항에 의거 수정란이 채취, 가공, 저장되었음

#### Article 2.6.7.16.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free of CSF in domestic pigs but with infection in the wild pig population,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야생돼지는 돼지콜레라 감염되고 사육돼지는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행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in vivo derived embryos of pigs

돼지 생체에서 추출된 수정란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the donor females:

1. 공난동물

a. were kept for at least 40 days prior to collection in an establishment which is not located in a CSF domestic or wild pig control area and is regularly monitored to verify absence of CSF;

a. 사육 또는 야생돼지의 시설이 돼지콜레라 관리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돼지콜레라 부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채취 전 최소 40일간 사육되었음

b. showed no clinical sign of CSF on the day of collection of the embryos;

b. 수정란 채취시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

2. the embryos were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ppendix 3.3.1.

2. 부록 3.3.1조항에 의거 수정란이 채취, 가공, 저장되었음

#### Article 2.6.7.17.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considered infected with CSF in domestic pig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사육돼지 돼지콜레라에 감염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행정기관은 다음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in vivo derived embryos of pigs  
돼지 생체에서 추출된 수정란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the donor females:

1. 공난동물

a. were kept for at least 40 days prior to collection in an establishment which is not located in a CSF domestic or wild pig control area and is regularly monitored to verify absence of CSF;

a. 사육시설이 사육 또는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방역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돼지콜레라 부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채취 전 최소 40일간 사육되었음

b. showed no clinical sign of CSF on the day of collection of the embryos and for the following 21 days;

b. 수정란 채취시부터 21일간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c. have not been vaccinated against CSF and were subjected, with negative results, to a serological test performed at least 21 days after collection;

c.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고, 채취 후 21일내 실시된 혈청학적 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 음성이었음

2. the embryos were collected, processed and stored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Appendix 3.3.1.

2. 부록 3.3.1조항에 의거 수정란이 채취, 가공, 저장되었음

#### Article 2.6.7.18.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사육돼지 및 야생돼지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행정기



관은 다음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fresh meat of domestic pigs

사육돼지의 육제품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entire consignment of meat comes from animals which:

모든 운송된 육류가 원료동물의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have been kept in a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since birth or for at least the past 3 months;

1. 출생한 이래 또는 과거 최소 3개월간 사육돼지와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비발생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육되었음

2. have been slaughtered in an approved abattoir, have been subjected to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s and have been found free of any sign suggestive of CSF.

2. 승인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감염 증상이 없었음

#### Article 2.6.7.19.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free of CSF in domestic pigs but with infection in the wild pig population,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야생돼지는 돼지콜레라 감염되고 사육돼지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행정기관은 다음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for fresh meat of domestic pigs

사육돼지의 육제품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entire consignment of meat comes from animals which:

모든 운송된 육류가 원료동물의 다음사항을 증명하는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were kept in a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domestic pigs since birth or for at least the past 3 months;

1. 출생한 이래 또는 과거 최소 3개월간 사육돼지와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비발생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육되었음
2. were kept in an establishment which was not located in a CSF wild pig control area and had been regularly monitored to verify absence of CSF;
2. 돼지콜레라 야생돼지 관리 지역에 위치하지 않고 돼지콜레라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설에서 사육되었음
3. have been slaughtered in an approved abattoir not located in a CSF control area, have been subjected to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s and have been found free of any sign suggestive of CSF.
3. 돼지콜레라 통제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승인된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감염 증상 없었음

#### Article 2.6.7.20.

When importing from countries or zones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Veterinary Administrations should require:

사육돼지와 야생돼지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수의행정기관은 다음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fresh meat of wild pigs

야생돼지의 육제품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다음사항이 증명된 국제 수의검역증명서의 제출

1. the entire consignment of meat comes from animals which:

1. 모든 운송된 육제품의 원료동물이 ;

a. have been killed in a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a. 사육돼지와 야생돼지의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되었음

b. have been subjected to post-mortem inspection in an approved examination centre, and have been found free of any sign suggestive of CSF ; and, if the zone where the animal has been killed is adjacent to a zone with infection in wild pigs:

b. 야생돼지 감염지역과 인접한 장소에서 돼지가 죽을 경우 승인된 검사센터에서 사전검

사 및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돼지콜레라 감염 증상 없었음

2. a sample has been collected from every animal shot, and has been subjected to a virological test and a serological test for CSF, with negative results.

2. 죽은 동물로부터 채취된 샘플은 돼지콜레라 바이러스학적 및 혈청학적 검사 결과 음성 이었음

#### Article 2.6.7.21.

Veterinary Administrations of importing countries should require:

수입국의 수의행정기관은 다음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meat products of pigs (either domestic or wild), or for products of animal origin (from fresh meat of pigs) intended for use in animal feeding, for agricultural or industrial use, or for pharmaceutical or surgical use, or for trophies derived from wild pigs

사료용, 공업용, 제약 또는 수술용, 야생동물 트로피 생산용의 돼지육제품(사육돼지, 야생돼지의 것) 또는 동물성 생산물(돼지생육으로부터 생산)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products:

생산물의 다음사항이 증명된 국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have been prepared:

1. 다음 사항이 제공되어야 한다.

a. exclusively from fresh meat meeting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s 2.6.7.18., 2.6.7.19. or 2.6.7.20., as relevant;

a. 제 2.6.7.18조, 제 2.6.7.19조 또는 2.6.7.20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신선육에서 생산되었음

b. in a processing establishment:

b. 가공장은

i. approved by the Veterinary Administration for export purposes;

i. 수의행정기관으로부터 수출가공장으로 승인받았음

ii. regularly inspected by the Veterinary Authority;

- ii. 수의당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사되었음
- iii. not situated in a CSF control area;
- iii. 돼지콜레라 관리 지역에 위치하지 않음
- iv. processing only meat meeting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s 2.6.7.18, 2.6.7.19. or 2.6.7.20., as relevant

OR

iv. 제 2.6.7.18조, 제 2.6.7.19조, 제 2.6.7.20조 관련조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육류만으로 가공하였음

또는

2. have been processed in an establishment approved by the Veterinary Administration for export purposes and regularly inspected by the Veterinary Authority so as to ensure the destruction of the CSF virus in conformity with one of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3.6.4.2.

2. 수의당국에 의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되고 제 3.6.4.2조에 의거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사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의당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사되는 작업장에서 가공되었음

#### Article 2.6.7.22.

Veterinary Administrations of importing countries should require:

수입국 수의행정기관은 다음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products of animal origin (from pigs, but not derived from fresh meat) intended for use in animal feeding and for agricultural or industrial use

공업용 또는 농업용, 사료용 동물성 생산물(돼지의 것, 생육은 제외)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products:

다음사항이 증명된 수의검역증명서의 제출

1. have been prepared:

1. 다음사항을 제공되어야 한다.

a. exclusively from products meeting the conditions laid down for fresh meat in Articles 2.6.7.18., 2.6.7.19. or 2.6.7.20., as relevant;

a. 제 2.6.7.18조, 제 2.6.7.19조 또는 2.6.7.20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생산물로부터 생산되었음

b. in a processing establishment:

b. 가공장은

i. approved by the Veterinary Administration for export purposes;

i. 정부수의기관에 의해 수출가공장으로 승인되었음

ii. regularly inspected by the Veterinary Authority;

ii. 수의당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사되었음

iii. not situated in a CSF control area;

iii 돼지콜레라 관리 지역에 위치하지 않았음

iv. processing only products meeting the conditions laid down in point a) above;

OR

iv 제 2.6.7.18조, 제 2.6.7.19조, 제 2.6.7.20조의 관련조항을 충족하는 생산물로부터 생산되었음

또는

2. have been processed in an establishment approved by the Veterinary Administration for export purposes and regularly inspected by the Veterinary Authority so as to ensure the destruction of the CSF virus in conformity with one of the procedures referred to in Article 3.6.4.2.

2. 제 3.6.4.2조에 의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사멸을 증명하기 위해 수의당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사되고 수의당국에 의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작업장에서 가공되었음

### Article 2.6.7.23.

Veterinary Administrations of importing countries should require:

수입국의 수의행정기관은 다음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bristles (from pigs)

돈모(bristle)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products:

다음사항이 증명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come from a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or  
1. 사육돼지와 야생돼지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2. have been processed in an establishment approved by the Veterinary Administration for export purposes and regularly inspected by the Veterinary Authority so as to ensure the destruction of the CSF virus.  
2.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사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의당국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사되고 수의당국에 의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작업장에서 가공되었음

#### Article 2.6.7.24.

Veterinary Administrations of importing countries should require:

수입국의 수의행정기관은 다음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for litter and manure (from pigs)

돼지새끼, 돼지 분변에 대하여

the presentation of an 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attesting that the products:

다음사항이 증명된 수의검역증명서 제출

1. come from a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domestic and wild pigs; or  
1. 사육돼지와 야생돼지에서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됨
2. come from establishments situated in a country or zone free of CSF in domestic pigs but with infection in wild pigs, but not located in a CSF control area ; or  
2. 사육돼지에서는 돼지콜레라 비발생국가 또는 지역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유래하였지만 야생돼지가 돼지콜레라 감염된 지역 또는 국가에 위치하나 돼지콜레라 관리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유래하였음 ; 또는
3. have been processed in an establishment approved by the Veterinary Administration for export purposes and regularly inspected by the Veterinary Authority so as to ensure the destruction of the CSF virus.  
3. 수출목적으로 수의행정기관에 의해 승인된 작업장에서 가공되고,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사멸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의당국에 의해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졌음

돼지콜레라 동물위생규약(OIE) 연도별 주요내용

정책	'01년	'02년	'03년	'04년
돼지콜레라 청정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콜레라 청정국가</li> <li>- 최소지난 2년 동안 돼지콜레라가 존재하지 않을 때</li> <li>- 살처분 정책과 예방접종을 같이 시행할 때 마지막 감염축 살처분 후 1년 경과</li> <li>- 살처분 정책만 시행할 때 마지막 감염축 살처분 후 6개월 경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 및 야생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청정국가 또는 지대</li> <li>○ 역사적 청정상황</li> <li>- 국가 또는 지역은 제2.1.13.2조에 따른 위험도분석 실시한 후 동 질병에 대한 청정상태 인정될 수 있음. 그러나 제3.8.1.2조의 규정에 적합하다면 특별한 감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청정상태로 인정</li> <li>○ 박멸프로그램 결과에 따른 청정상황</li> <li>- 상기의 역사적인 청정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국가 및 지역에서의 비발생 상태는 제 2.1.13.2조에 언급된 위험분석 수행을 실시하고 다음의 조건 충족에 따른 비발생 상태</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정전염병(신고대상질병)일 것</li> <li>2. 사육돼지는 출하시 원산농장의 고유번호가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 적절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원산농장에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추적이 가능해야 함</li> <li>3. 남은 음식물사료의 급여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는 처리(제3.6.4.1)가 되지 않는 한 금지되어야 함(연구중)</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육 및 야생 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청정국가 또는 지대</li> <li>○ 역사적 청정상황</li> <li>- 좌동</li> <li>○ 박멸프로그램 결과에 따른 청정 상황</li> <li>- 좌동</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좌동</li> <li>2. 좌동</li> <li>3. 좌동(연구중 삭제)</li> </ol>	좌동

정 책	'01년	'02년	'03년	'04년
돼지콜레라 청정 조건		<p>4. 제2.1.13.8에 있는 품목(생돼지·돼지고기·돼지정액·돼지수정난/난자·돼지고기 부산물·사료용·산업용·의약품 돼지산물·야생돼지에서 유래된 기념품)의 이동을 관리하기 위하여는 국가나 지역으로 돼지콜레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관련 제품의 이동을 통제하는 법규(동물위생규정)가 시행되고 있을 것</p> <p>5. 돼지콜레라 방역정책상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살처분 하는 곳에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사육돼지에서 발생이 없을 것 또는</p> <p>6. 예방접종과 살처분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곳은 예방접종을 전면중단하고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야 함. 만약 지난 5년간 예방접종이 시행되었다면 6개월령 이상 1년 이하의 돼지에 대하여 6개월 이상 혈청학적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감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 아울러 지난 1년간 발생이 없을 것, 또는</p> <p>7. 살처분 정책 없이 예방접종 정책만 시행하는 곳은 적어도 1년간 국내 모든 돼지에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여야 함. 만약 지난 5년간 예방접종이 시행되었다면 6개월령 이상 1년 이하의 돼지에 대하여 6개월 이상 혈청학적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감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 아울러 지난 1년간 발생이 없을 것, 그리고</p> <p>8. 야생돼지에서 발생이 없을 것</p> <p><input type="checkbox"/> 야생돼지 집단에서는 감염이 인정되나 사육돼지에서의 돼지콜레라 청정국가 또는 지대</p> <p>○ 제2.1.13.4의 2의 조건과 같으나 야생돼지에서는 돼지콜레라 발생이 알려져 있는 곳에서의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은 다음의 부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1. 야생돼지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시에는 발생된 각각의 건수별로 방역지대 설정</p> <p>2. 야생돼지에서 사육돼지로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수행되어야 함</p> <p>3. 사육돼지 집단을 대상으로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함</p>	<p>4. 이 장에서 다룬 품목...(좌동)...</p> <p>5. 좌동</p> <p>6. 예방접종돼지와 감염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면... (좌동)...</p> <p>7. 예방접종돼지와 감염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면...(좌동)...</p> <p>8. (좌동)그리고 야생 돼지 모니터링이 잔류감염이 없다는 것을 나타낼 것</p> <p><input type="checkbox"/> 야생돼지 집단에서는 감염이 인정되나 사육돼지에서의 돼지콜레라 청정국가 또는 지대</p> <p>○ 좌동</p> <p>1. 좌동</p> <p>2. 좌동</p> <p>3. 좌동</p>	좌동



정 책	'01년	'02년	'03년	'04년
돼지콜레라 청정 조건	-	<p><input type="checkbox"/> 야생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청정국가 또는 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야생돼지에 대한 돼지콜레라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으로 간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역내의 사육돼지에서 돼지콜레라 감염이 없음</li> <li>2. 국가 또는 지역내의 야생돼지 집단에 대한 돼지콜레라 상태를 결정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유지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2개월간 야생돼지에서 임상증상이나 바이러스 존재가 없어야 함</li> <li>- 과거 12개월간 6-12개월령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혈청학적 양성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li> </ul> </li> <li>3. 과거 12개월간 야생돼지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음</li> <li>4. 야생돼지에 음식물찌꺼기(남은 음식물, 잔반)급여는 의무적으로 금지되어있어야 함. 다만,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사멸할 수 있도록 열 처리한 음식물찌꺼기는 급여 가능(연구중)</li> <li>5. 수입된 야생돼지의 경우에도 이 장에 명기된 관련규정에 부합됨</li> </ol> </li> </ul> <p><input type="checkbox"/> 청정상황의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정국가나 지역(야생 및 사육돼지에서 비발생 또는 사육돼지에서만 비발생)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는 살처분정책이 완료되고 최소한 30일이 경과되면 비발생국 또는 비발생지역 지위 회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방역대(3km 보호지역, 10km 감시지역) 설치</li> <li>2. 발생농장의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 폐기 및 소독 실시</li> <li>3. 보호지역내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근농장에서 발생이 있는지 평가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 반경 0.5km내 모든 돼지에 대해 살처분 적용</li> <li>- 보호지역내 모든 농장의 모든 돼지에 대한 즉각적인 임상검사 실시</li> </ul> </li> <li>4. 감시지역내 모든 환돈은 돼지콜레라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받을 것</li> <li>5. 발생농장과 직·간접적으로 접촉이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한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바이러스학적 검사를 포함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방역지역(10km이내)내의 모든 돼지는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li> <li>6. 생돈, 돼지정액, 돼지수정관, 오염물건, 차량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는 조치가 수행될 것</li> </ol> </li> <li>○ 돼지콜레라 방역지역내 긴급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경우 예방접종 돼지와 감염돼지를 구분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예방접종 받은 돼지를 도살하기 전까지는 청정 지위가 되지 못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야생돼지에서 돼지콜레라 청정국가 또는 지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좌동</li> <li>2. 좌동</li> </ol> </li> <li>-좌동</li> <li>-좌동</li> <li>3. 좌동</li> <li>4. 좌동(연구중 삭제)</li> <li>5. 좌동</li> </ul> <p><input type="checkbox"/> 청정상황의 회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좌동</li> <li>2. 좌동</li> <li>3. 좌동</li> </ol> </li> <li>- 좌동</li> <li>- 좌동</li> <li>4. 좌동</li> <li>5. 좌동</li> <li>6. 좌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ul>	좌동

□ 제2.1.13.2조(2004년에는 제2.6.7.2조로 바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돼지콜레라 상태는 사육 및 야생돼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 다음 결정됨

- 1) 돼지콜레라 발생의 모든 잠재적인 요인 분석 및 역사적인 상황 등에 따른 위험분석이 수행되어야 함
- 2) 돼지콜레라는 해당 국가의 법정전염병이어야 하며, 돼지콜레라에 대한 야외 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가 수행되어야 함
- 3) 진행중인 인식 프로그램은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4) 중앙 수의 당국은 전국의 모든 돼지농장에 대한 현황파악 및 권한을 가져야 함
- 5) 수의당국은 전국의 야생돼지 서식지 및 집단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 제3.8.1.2조(2004년에도 동일 조항)

국가 또는 지역이 감염상태로부터 청정상태를 선언하기 위한 요구조건

1) 역사적인 청정 상태

관련질병 chapter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다음의 경우 공식적인 특별예찰 프로그램 적용없이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으로 인정될 수 있음

- a) 질병(돼지콜레라) 무발생(Never reported) 또는
- b) 적어도 지난 10년전부터 현재까지, 질병 감염이 적어도 25년 동안 일어나지 않거나 박멸이 되어 있어야 함
- c) 법정전염병일 것
- d) 조기검출 체계 구축
- e) 질병 및 감염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마련
- f) 동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 미실시
- g) 감염이 야생동물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함

2) 과거 10~25년 기간에 마지막 발생한 경우

과거 10~25년 사이에 질병근절(질병/감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 성취된 국가 또는 지역은 상기 1)의 조건뿐만 아니라 항원의 없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적절한 특별예찰이 적용되어야 함

3) 과거 10년 이내에 마지막 발생한 경우

지난 10년내 질병근절(질병/감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 성취된 국가 또는 지역은 규약에 명기된 특별질병예찰을 위한 일반적 지침(guidelines)을 따라야 함

□ 제3.6.4.1조(2004년에도 동일조항)

남은음식물 사료(swill)에서 존재할 수 있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의 불활화를 위하여 다음 과정중 1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 1) 남은음식물은 최소 60분동안 최소 90℃의 온도로 계속해서 휘저어면서 유지하여야 한다. 또는
- 2) 잔반은 3bar의 절대압력에서 최소 10분동안 최소 121℃의 온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 II. 관련자료

### 1. 종돈업의 관리체계와 현행제도

#### 축산법

- 신고기관 및 법적근거 : 시장·군수에 신고(법제20조제1항)
  - 종돈업 신고기준(시행규칙제24조제1항) : 종돈 50두이상
- 종돈업 신고기준(법제20조제2항, 시행규칙제24조제2호)
  - ① 방역 및 위생을 위한 다음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것
    - 사업장의 정문 및 돈사의 출입구에는 소독조시설
    -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시설 및 소독위생장비
  - ② 종돈장은 사육중인 종돈에 대한 관할 가축위생담당기관의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질병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 곳일 것
  - ③ 종돈사육시설은 일반돈 사육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할 것
  - ④ 양돈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분만·포유·육성·종돈 선발을 위한 독립된 시설을 갖추어 것
- ※ 개정 축산법에 의하여 종돈업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종돈장에 대한 지도·감독(축산법제22조)
  - 지도·감독기관 : 시장·군수
  - 대상업무
    - 시설개선 및 신고기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시정명령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 위반자 벌칙 : 300만원이하 과태료(축산법제47조제1항)
    - 종돈업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4호)
    - 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5호)

## 2. 종돈업·돼지정액처리업 현황('03.3월말 기준)

## 가. 종돈업(신고업체)

(단위 : 개소)

시도	업체수	종돈사		총사육 두수(두)	총사육두수중 혈통등록종돈수(두)			종사자수 (명)	월평균 분양실적 (두)
		동수 (동)	면적 (m <sup>2</sup> )		우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2	8	7,324	6,000	1,190	210	1,400	9	240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5	104	57,970	53,102	6,672	969	7,641	114(1)	3,576
강원	9	72	52,120	31,461	11,345	368	11,713	76	1,622
충북	10	72	45,895	36,590	4,234	210	4,444	75(2)	6,820
충남	26	162	101,086	155,443	10,282	548	10,830	262(3)	3,548
전북	9	41	26,542	43,208	3,271	613	3,884	73(1)	1,284
전남	16	157	90,468	84,550	7,737	408	8,145	150(2)	2,678
경북	18	73	46,993	104,300	5,693	369	6,062	171(1)	1,784
경남	22	134	112,859	101,780	8,845	2,021	10,866	192	2,367
제주	8	55	47,871	46,050	3,190	241	3,431	68	670
계	135	878	589,128	662,484	62,459	5,957	68,416	1,190(10)	24,589

※ ① 업체수에는 충남 1개소, 경남 1개소 휴업업체가 포함됨

② 종사자수란의 ( )내서는 수의사 수입

## 나. 돼지등정액처리업(등록업체)

시도	업체수	종돈보유두수 (두)	인력보유(명)			
			일반	수정사	수의사	계
서울						
부산						
대구	1	91	10	2		12
인천						
광주	1	32			2	2
대전						
울산	1	11	1	2		3
경기	9	499	36	14	4	54
강원	2	117		4		4
충북	4	179	6	4	5	15
충남	17	958	24	35	6	65
전북	7	264	12	12	3	27
전남	2	73	4	3	2	9
경북	8	142	42	11	3	56
경남	6	157		12	1	13
제주	2	117	1	2	1	4
합계	60	2,640	136	101	27	264

※ 업체수에는 충북 1개소, 전북 1개소 휴업업체가 포함됨

다. 국·공립 및 농협 종축장 종축현황 ('03. 4. 5 현재)

구 분			개소수 (개소)	주요 종축 사육현황(두·수)								
				소			돼지	양	사슴	닭	기타	합계
				한우	젖소	계						
국립	축산연	축산기술부	1	363	57	420	1,238			2,769		4,427
		종축개발부	2		482	482	709		174	8,822	590	10,777
		대관령지소	1	989		989		75				1,064
		남원지소	1	759		759		169				928
		소 계	5	2,111	539	2,650	1,947	244	174	11,591	590	17,196
도립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1	89	52	141	225			290	31	687
		강원도축산기술연구센터	1	252		252				1,300		1,552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1	333		333	62	176			36	607
		충청남도축산위생연구소	1	270		270	300			200	17	787
		전라북도축산진흥연구소	1	152	62	214	209					423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	1	92		92	67	22		1,384		1,565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1	278	24	302	385			2,389	3	3,079
		경상남도첨단양돈연구소	1				85					85
		제주도축산진흥원	1	308		308	2,810			109	88	3,315
	소 계	9	1,774	138	1,912	4,143	198		5,672	175	12,100	
농협 중앙회		가축개발사업소	2	1,649	83	1,732						1,732
		중돈사업소	1				4,026					4,026
		소 계	3	1,649	83	1,732	4,026					5,758
합 계			17	5,534	760	6,294	10,116	442	174	17,263	765	35,054

### 3. 지방자치단체 방역인력 현황

#### 가. 시·도 가축방역기관 (가축위생시험소 등)

- 개소수 : 44개소 (특별·광역시·제주도 : 1개소, 도 : 4~5개소)
- 기능 : 시·도지사 소속기관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
- 현원 : 710명 (정원대비 96.6%)
- 시·도별 인원 현황 ('03.1월현재)

(단위:명)

	정원(A)				현재인원(B)				결원(B-A)			
	수의직	연구직	기타	계	수의직	연구직	기타	계	수의직	연구직	기타	계
서울	20	4		24	19	4		23	△1			△1
부산	10	7	7	24	11	5	7	23	1	△2		△1
대구	5	8		13	5	7		12		△1		△1
인천	3	10	6	19	4	9	6	19				
광주	8	5	2	15	8	5	2	15				
대전	4	8		12	6	5		11	2	△3		△1
울산	1	10	3	14	5	5	4	14	4	△5		△1
경기	68	23	41	132	78	10	41	129	10	△13		△3
강원	35	14	13	62	34	12	13	59	△1	△2		△3
충북	23	10	12	45	23	10	12	45				
충남	40	19	15	74	37	18	14	69	△3	△1	△1	△5
전북	30	28	23	81	30	28	19	77			△4	△4
전남	27	26	24	77	26	25	24	75	△1	△1		△2
경북	43	14	15	72	39	15	15	69	△4	1		△3
경남	26	15	21	62	26	14	21	61		△1		△1
제주	7	2		9	7	2		9				
계	350	203	182	735	358	174	178	710	8	△29	△4	△25

※ 시험소 방역인력 결원은 '01년부터 구제역·돼지콜레라 방역대책 추진 관련하여 대부분 충원된 상태임

- 가축방역의 특성을 감안, 지자체 구조조정시 감원조정은 거의 없었음

## 나. 시·도 및 시·군·구

- 현원 : 1,211명(정원대비 94.6%)
- 인원현황 ('03.1월현재)

(단위:명)

구 분	정원(A)			현재인원(B)			결원(B-A)			수의직 배치	
	수의직	기타	계	수의직	기타	계	수의직	기타	계	배치 시·군 (개소)	확보율 (%)
서울	31	23	54	29	20	49	△2	△3	△5	23	92
부산	9	14	23	8	14	22	△1		△1	7	44
대구	11	9	20	12	7	19	1	△2	△1	8	100
인천	5	21	26	2	14	16	△3	△7	△10	4	40
광주	11	7	18	11	7	18				5	100
대전	3	10	13	4	9	13	1	△1		1	20
울산	1	10	11	2	17	19	1	△7	8		
경기	26	220	246	23	215	238	△3	△5	△8	18	58
강원	9	140	149	5	140	145	△4		△4	4	22
충북	5	53	58	2	49	51	△3	△4	△9	5	45
충남	22	85	107	15	82	97	△7	△3	△10	12	80
전북	11	127	138	8	130	138	△3	3		6	43
전남	22	98	120	18	91	109	△4	△7	△11	17	77
경북	16	135	151	29	117	146	13	△18	△5	9	39
경남	15	105	120	18	87	105	3	△18	△15	10	50
제주	6	20	26	6	20	26				3	75
계	203	1,077	1,280	192	1,019	1,211	△11	△58	△69	132	57

1. 시·군 방역인력은 수의사 근무 기피로 대부분 축산직렬로 대체되었으며, 그 동안 결원충원은 이루어졌으나 인력증원은 미흡한 실정
2. 수의직 배치중 “수의직정원 확보율”은 전체 시·군중 수의직렬이 있는 시·군 비율을 말함



## 4. 가축질병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내역('03.3.24현재)

지정 번호	기 관 명	대표자	최 초 지정일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우편 번호
제1호	(주)중앙백신 연구소	윤인중	'94.12.21	대전 유성구 화암동 59-3	042-863-9322	305-348
제2호	대상사료(주) 축산과학연구소	박진국	'95.01.04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북리 273-4	031-670-2852	456-840
제3호	제일사료(주)	김영옥	'95.03.04	대전 대덕구 대화동 40-36	042-624-4104	306-020
제4호	바이엘코리아(주)	마르크스 고메즈	'95.04.14	서울 강서구 가양동 257-1	02-657-6845	157-725
제5호	대한제당중앙 연 구 소	권혁명	'95.06.13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6-14	032-764-2600	400-201
제6호	(주)한국미생물 연 구 소	양용진	'95.12.15	경기 시흥시 정왕동 1라 107	031-498-2121	429-450
제7호	(주)제일제당 사 료 본 부	최명옥	'96.01.31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64	032-881-2733	400-103
제8호	건국대 축산대학	김태종	'96.09.20	서울 광진구 모진동 93-1	02-450-3715	143-701
제9호	강원대 수의학과	윤여성 (한정희)	'96.09.20	강원 춘천시 효자2동 192-1	033-50-8657	200-701
제10호	전남대 수의과대학	강문일	'96.09.20	광주 북구 용봉동 300	062-520-6536	500-757
제11호	경북대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	장인호 (김봉환)	'96.09.20	대구 북구 산격동 1370	053-950-5953	702-701
제12호	제주대 수의학과	강순선 (배중희)	'96.09.20	제주 제주시 아라1동 1	064-54-3364	690-756
제13호	충남대 수의과대학	진무형	'96.10.07	대전 유성구 궁동 220	042-821-6700	305-338
제14호	전북대 수의과대학	임병무	'96.12.11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063-270-3777	561-756
제15호	충북대 수의과대학	강신영	'97.04.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48	043-261-2396	361-763
제16호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홍식	'97.05.06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03	031-290-2713	441-744
제17호	경상대 수의과대학	김중수	'97.05.06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055-751-5805	660-701
제18호	(주)제일바이오	심광경	'01.01.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56-2	031-494-8406	425-100
제19호	(주)네오딘	성동제	'01.06.07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73-15 우영테크노센터 2층	02-461-0036	133-831

※정부 병성감정기관 : 45개소(수의과학검역원 1,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44)

5. 국제수역사무국에 제출한 돼지콜레라 청정화 보고서

1st December 2001

# Declaration of freedom from Classical swine fever in Korea

**Lee, Joo - Ho** chief veterinary officer

Permanent Delegate of the Republic of Korea,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REPORT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1, Joongang-Dong, Kwachon-Si, Kyunggi-Do, 427-719 Republic of Korea  
 Tel: 82-2-500-1930 Fax: 82-2-504-0908 E-mail: leejh@maf.go.kr

## Declaration of freedom from classical swine fever in Korea

### 1. Introduction

#### A. The number of pigs raised in Korea

Number	Dec. 1996	Dec.1997	Dec.1998	Dec.1999	Dec.2000	Sep.2001
Farm	33,276	27,131	27,002	24,444	23,841	20,141
Head	6,515,773	7,095,852	7,543,777	7,863,655	8,214,369	8,767,298

#### B. Outbreaks of classical swine fever in Korea

There were outbreaks of classical swine fever (CSF) in the Republic of Korea every year since it was first reported in 1947 until 1999. However,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al CSF eradication programme by the Government in 1997, there has been a gradual reduction in the number of outbreaks. The last case of CSF was in Yongin County of Kyonggi Province in August 1999, and since then there has been no reported cases. A summary of the CSF outbreak situation during past 6 years is as follows:

#### *CSF outbreaks in Korea between January 1996 and October 2001 :*

Number	1996	1997	1998	1999	2000	Jan. to Oct. 2001
Farm	39	20	6	5*	0	0
Head**	4,498	1,192	985	1,683	0	0

\* All outbreaks were restricted to Yongin County during March and August 1999

\*\* All pigs were destroyed with compensation

### 2. CSF eradication programme in Korea

The nationwide CSF eradication programme was first implemented in 1997, and has been supported by the necessary legislation and organisation for the effective control of CSF. The programme was composed of three stages. The objective of the first stage was to reduce the number of outbreaks through the use of mass vaccination (The vaccine used was a bovine kidney adapted tissue

culture live vaccine, using LOM strain provid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Health in Japan, which were then further attenuated in NVRQS, Korea). The objective of the second stage was the mandatory vaccination of all pigs through a nationwide CSF vaccination campaign. The objectives of third stage were to terminate the use of vaccination and to identify regions free from CSF. The basic steps for CSF eradication were to complete the immunization of all pigs, stamp-out the infected herds and enforce regulations to stop the movement of non-vaccinated pigs outside farms. Pig owners were required to provide certificates declaring that all pigs were vaccinated, and if a certificate was not provided, animals would be rejected for slaughtering. Along with these regulations, serological tests were performed to monitor vaccination compliance. If owners were found not to have performed vaccinations, they would receive a financial penalty.

Tests were performed continuously to look for the presence of CSF virus. Wild boars were also tested for CSF antibody and antigen.

A nationwide clinical surveillance for CSF was performed.

From June to October 2001, risk evaluation to determine the probability of CSF virus being present in the field was performed in non-vaccinated groups.

### 3. Summary of CSF eradication programme

#### A. Results of Surveillance

1) Since September 1999, no case of CSF has been diagnosed by National and Provincial diagnostic laboratories.

2) Monitoring the immune response of pigs to enforce mandatory vaccination.

Methods :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neutralising peroxidase linked assay (NPLA)

ELISA : Indirect sandwich ELISA using CSFV E2 protein expressed by recombinant baculovirus. This test was developed in Korea in 1995 and used for the detection of antibody against CSFV (sensitivity 95%, specificity 95%).

NPLA : Used for the determination of antibody titre with the specific monoclonal antibody against CSFV E2 protein. The test procedure is similar to the OIE recommended standard method.

## Antibody response of pigs during nationwide vaccination programme\*

	1997	1998	1999	2000	Jan. to Oct. 2001
No. of tested farms**	980	1,650	55,192	47,190	21,922
No. of tested pigs	22,725	10,117	557,629	541,738	204,795
Positive rate (%)	68.7	76.1	91.4	96.1	96.5

\* First vaccination given to piglets at 40 days of age and second vaccination at 60 days of age.

\*\* The cumulative total

## 3) Surveillance to detect CSF infection in the field

Methods : virus isolation, indirect fluorescent antibody (IFA), reverse-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for detection and characterization of 5'NCR, E2 and NS5B genes of CSFV.

## No. of tested farms and tested pigs

Year item	No. of tested farms	No. of tested pigs	Infected farms and pigs with CSFV	Remarks
1999	2,313	27,739	Confirmed CSF Infection of 15 pigs in 5 farms	Stamped out all 1,683 pigs in CSF infected farms
2000	4,041	31,650	0	-
2001 (Jan ~ Oct)	2,084	21,048	0	-

4) Monitoring CSFV antibody and antigen from wild boars and domesticated wild boars

	1999					
2000	Antibody detection(%)	Antigen detection(%)	Antibody detection(%)	Antigen detection(%)	Antibody detection(%)	
Wild boars	70.4 (743/1,055)	0.0 (0/731)	90.4 (378/ 418)	0.0 (0/62)	0.0 (0/58)	
Antigen detection(%)	Domesticated wild boars*0.0 (0/58)				0.0 (0/71)	
					0.0 (0/71)	
					0.0** (0/28)	
					0.0*** (0/28)	

\* Vaccinated, \*\* Percent

\*\*\* (No. of positive pigs/No. of tested pigs)

B. Clinical surveillance

In 1999, official veterinarians from the provincial veterinary services and NVRQS visited every farm across the country to perform clinical examinations, and to educate farmers on the vaccination and prevention measures for CSF.

In 2000, more than 2348 surveillance personnel performed nationwide clinical examination in every farm. No cases of CSF were identified during these examinations.

C. Risk evaluation in sentinel pigs (June-October 2001)

A total of 4788 pigs in 299 farms located across the country was selected to evaluate the risk of CSF in the field by placing non-vaccinated pigs as sentinel animals in the farms. Serological tests, antigen tests, and clinical examinations were then conducted for 5 months. No evidence of CSF was found on the sentinel farms.

#### 4. Declaration of free status of CSF in some regions

The following areas have been declared as CSF free:

Cheju Province: banned vaccination 1 February 1998 ? Declaration of CSF free status 181999;

Uleung County, Kyongbuk Province: banned vaccination 10 December 1999 ?Declaration of CSF free status 1 February 2001;

Kangwon Province: banned vaccination 1 January 2001 ? Declaration of CSF free status 12001.

#### 5. Prevention measures of CSFV from foreign countries

The importation of live pigs, their meat and meat products from countries with CSF infection is prohibited.

Swill from ships and airplanes are disinfected and incinerated.

Under the Act for Feedstuffs Control and Classical Swine Fever Control Guideline, domestic swill is allowed for feed only after heating at 80C (internal temperatures) for over 30minutes. However, swill feeding is rarely performed in the field.

Toll free emergency call: 1588-4060.

#### 6. Conclusion

Korea has successfully performed the CSF eradication programme and there has been no reported outbreak of CSF since August 1999.

All CSF vaccination has been banned since 1 December 2001. Surveillance and risk evaluation data support the view that pig population in the country is free from CSF.

Therefore, Korea (Rep. of) submits the declaration of CSF free status in accordance with the OIE *International Animal Health Code* (Article 2.1.13.2).

(0/20)95.9

(301/314)

### Ⅲ. 돼지콜레라 방역관련 보도자료

## 설명자료

- 제공일 : 1998. 11 .
- 제공자 : 농림부 축산위생과
- 과 장 : 이홍길
- 전 화 : 504-9438/9439

#### 제 목 : 제주도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 '98. 11. 23 제주도 북제주군 소재 1개 농장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농림부와 제주도는 긴급방역조치와 원인규명 조사를 실시하였다
  - 발생농장 :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고주홍” 농장
    - 인근 양돈장 5km, 도축장 28km에 위치한 독립 양돈장임
  - 발생내역 : 사육두수 1,300두중 13두 발생, 8두 폐사
  - 진단기관 : 제주도 축산진흥원(11.20)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11.23)
  - 긴급방역조치 : 이동제한, 출입자통제, 축사·차량소독 및 주변 농장 예찰강화 등
- 제주도는 돼지콜레라가 '87년 발생이후 아직까지 발생사실이 없어 '99년부터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등에 대한 청정화지역을 선포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됨에 따라 청정화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 ※ 국내 돼지콜레라 발생상황 : ('97) 20농가 1,912두, ('98) 4농가 702두
- 이에 따라 제주도는 청정화 목적으로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발생농장 전두수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키로 하고 '98. 2부터 시행하여온 제주도에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금지정책의 유지와 육지에서 반입되는 돼지의 전염병검사를 강화키로 하는 반면 발생원인 규명과 주변농장의 감염여부 확인검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 '98. 11. 23 농림부 및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 현지출장, 대책협의 및 역학조사실시 등
  - 제주도는 청정화유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있어 동 질병 발생시 인근 농장에 빠르게 전파될 위험이 있음
  - 육지의 경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질병 발생시 감염돼지에 국한하여 살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 ※ 돼지콜레라란 : 돼지의 급성열성전염병으로서 전파성이 극히 강하고, 고열(40~41℃)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높아 감염시 농가에 경제적 손실이 큼



## [참 고]

## □ 제주도 방역대책 추진사항

## ○ 발생농가 방역

- 돼지 전두수 살처분 후 농가보상
- 양돈장 폐쇄조치(2개월)
- 축사 내외부 소독 : 일반 및 훈연소독 병행(3일간격) 실시

## ○ 양돈농가 방역

- 차량, 외부인 출입통제
- 철저한 소독실시
- 종돈 구입시 믿을 수 있는 종돈장에서만 구입하고 타도에서 돼지 반입시는 반드시 검역후 입식토록 조치
- 돼지 수출을 위한 외국 바이어 등 양돈장 출입통제

## ○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개최 : '98. 11. 25(축산진흥원)

## ○ 시·군공동방역사업단 활동강화 : 대대적 소독실시

## ○ 발생농장에 사료(해표사료), 약품(태홍약품) 거래 양돈농가의 돼지 혈청 표본조사 : 축산진흥원

## ○ 차량(사료운반차량, 돼지수송차량, 분노운반차량, 약품운반차량)소독강화

- 각 농장별 소독시설 설치운영 : 반드시 소독후 출입허용

## ○ 양축농가에 대한 방역요령 홍보

- 행정기관, 제주 양돈축협, 남제주축협, 양돈협회 등

## 보도자료

- 제공일 : 1999. 3.3
- 제공자 : 농림부 축산위생과
- 과 장 : 이주호
- 사무관 : 김창섭
- 전 화 : 504-9438~9

### 제 목 :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맞지 아니하면 도축 제한

- 농림부는 돼지콜레라를 근절하기 위하여 '99. 3. 2 “돼지콜레라예방 접종실시명령”고시를 개정하여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돼지의 도축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 돼지콜레라는 2000년까지 근절을 목표로 금년까지 100%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국내 발생을 최소화 하기로 하고 예방약 지원, 보상제도의 개선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돼지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연도별 발생상황 : ('96) 39건 4,498두 ('97) 20건 1912 ('98) 6건 985
- ※ 돼지콜레라는 예방접종을 제대로 할 경우 감염을 100%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의 예방주사 실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에 따라 앞으로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는 가축방역기관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발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돼지는 혈청검사 판정시 까지 도축이 보류될 뿐만 아니라 미접종으로 판정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아울러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농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입안예고 ('99. 1) 및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농가 스스로 발행한 “예방접종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도축을 허용하되, 이 경우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접종사실을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였음
  - 또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도축·유통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예방주사 미접종 돼지의 도축제한과 위반 영업자의 처분규정은 3달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99. 6. 14 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금번 예방주사 미접종 돼지의 도축제한 제도의 도입은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돼지콜레라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 질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일본은 '93년 이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2000년 청정화 목표를 달성할 경우 동 질병이 발생하는 나라로부터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므로 국내에서의 근절은 무엇보다도 절박한 실정이다.

## 보도자료

- 제공일 : 1999. 8. 3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주호
- 사무관 : 김창섭
- 전 화 : 504-9438/9439

제 목 : 경기 용인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 < 보 도 요 지 >

- 돼지콜레라 발생 개요
  - 발생농장 : 경기 용인시 포곡면 신원2리 (농장주 : 김용기, 38세)
  - 발생내역 : 사육두수 1,013두, 발병 130(새끼돼지), 폐사 50
  - 발생원인 : 일부 어미돼지의 예방접종 누락
- 주요 방역조치사항
  - 발생농장 : 이동제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살처분 실시 등
  - 발생농장 반경 10km내의 돼지 이동제한 및 수출금지 : 15~40일간
  - 기동방역반 및 이동제한 점검반 편성 운영 : 10개반, 30명
  - 발생농장 반경 10km내의 양돈농가(180호)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 농림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이 경기 용인지역 돼지농장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사실을 '99.8.2 일 최종 확인함에 따라 일본과 돼지수출위생조건 협의회 7.1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발생농장에 대한 진단 경위는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돼지콜레라 의심 질병 발생이 신고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현장조사와 실험실 정밀진단 등을 통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8.2 최종 확인되었으며, 발생 농장은 지난 3월초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된 농장과 인접한 곳이었다
  - 발생원인은 예방접종시 일부 어미돼지(96두중 12두)에 접종을 잘못하였거나 빠뜨린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발생지역의 돼지콜레라 조기근절과 타 지역으로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농장 돼지를 신속히 살처분토록 조치함과 동시에 발생지역(발생농장 반

경 10km내)의 양돈농가 전체돼지(180호, 11만두)에 대하여 15~40일간씩 이동을 제한하고 수출도축을 금지하도록 경기도와 수의과학 검역원에 지시하였다.

<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

- 이동제한, 출입자 통제, 소독실시, 역학조사 등은 기초치하고 살처분 실시 계획

< 발생지역 주변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

- 발생농장 반경 3km내(오염지역) 및 3~10km내(경계지역)의 돼지 이동제한 및 수출 금지 : 오염지역은 40일, 경계지역은 15일간
  - 오염지역에 위치한 농가 : 160호, 96천두
  - 경계지역에 위치한 농가 : 20호, 13천두 (수출농가 3호)
- ※ 이동제한 지역에서 도축 목적으로 출하되는 돼지에 대하여는 검사후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을 허용하고 수출농가 3호는 15일간 수출금지 조치. 단, 오염 및 경계지역내에 내수 및 수출도축장은 없음
- 경기도 공수의, 가축방역관, 행정 공무원을 중심으로 기동방역반 및 이동제한 점검반 편성 운영 : 총 10개반, 30명
  - 경기도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발생지역 농가의 이동제한 준수 여부 단속 및 위반자 고발 (벌금 300만원)
- 발생농장 반경 10km내의 양돈장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
  - 미접종 판정시 해당 농가에 대한 과태료(300만원) 처분계획
- 용인지역 양돈농가 교육, 홍보 실시
  - 방역조치 추진사항, 이동제한 준수 및 위반자 처벌내용 등

□ 농림부는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이 예방접종 여부의 확인없이 새로 구입한 돼지에서 연유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양돈농가에게 외부에서 돼지 구입시 반드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돼지콜레라 발생시 일본 수출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이웃농가에도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준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 아울러 농림부는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하여 일본국과협의된 “한국산 돼지고기 등의 수입위생조건” 규정에 의거, 금번 용인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 및 방역조치 추진상황을 일본국에 신속히 통보하였으며,

- 앞으로 6개월동안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 추진상황을 일본정부에 주기적으로 통보할 계획

## 보도자료

- 제공일 : 1999. 12. 23.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주호
- 사무관 : 김창섭
- 전 화 : 504-9438/9439

### 제 목 : 일본 돼지콜레라 박멸 성공단계, 국내 돼지고기 수출비상

-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국인 일본은 돼지콜레라 박멸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0월에 예방접종을 전면 중지하고 2001년도에 청정화 선언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주 일본의 돼지콜레라 박멸 동향을 조사하고 귀국한 김옥경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일본이 '93년부터 돼지콜레라가 한건도 발생이 없고, 금년들어 47개 시도부현중 6개현이 예방접종을 중지하였으며, 내년도 10월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중지할 것이 확실해 짐에 따라 앞으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나라로부터 돼지고기의 수입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제주도가 지난 12월 18일 청정화 선언을 하였으나 금년 2월과 8월에 경기 용인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돼지콜레라 근절이 시기적으로 매우 절박한 실정이다.
  - 현재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중지한 곳은 제주도(98.2)울릉군('99.12)이며, 기타 남해군과 거제군이 내년 상반기에 예방접종을 중지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돼지고기의 지속적인 일본 수출과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내년도 10월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지를 목표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방접종, 살처분보상, 혈청검사 등 사업비 1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장·군수 책임하에 행정 및 민간방역단체의 기능을 총괄하여 농가의 100% 예방접종, 농장단위의 혈청검사 확대, 예방주사를 맞지 아니한 돼지의 도축제한과 과태료(300만원) 처분 등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한편,
  - 예방접종 중지 여건이 형성된 시군 또는 시도단위로 예방접종 중지지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또한 단기간내 청정화 목표달성을 위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사법경찰관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전염병 발생시 시도지사의 격리·억류·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거나 농장 폐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 가축방역관 570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를 적발하였을 때 현장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내년도부터는 예방주사를 하지 않거나 전염병 발생사실을 숨기는 농가를 신고한 사람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 민간방역단체 소속직원을 방역보조원으로 임명하여 정부의 방역사업에 협조토록 하고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운반해 주거나 도축해준 영업자에 대해 6월이내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등 탈법적인 이동과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농림부는 일본국과의 기술교류와 전문가 협의 등 우호관계를 계속해 나감과 동시에 일본의 동향을 신속하게 입수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사전에 강구해 나가면서
  - 우리나라 근절상황에 대한 대일본 홍보강화로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으로 인해 일본 정부 및 생산자단체가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도자료

- 제공일 : 2000. 3. 13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주호
- 사무관 : 김창섭
- 전 화 : 504-9438/9439

### 제 목 :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전국 농가 결의대회 개최

- 농림부는 3. 15일 정부 과학청사 운동장에서 전국의 돼지사육농가·관련단체 및 공무원 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김 성훈 농림부장관의 대회사와 농가대표의 근절 결의문 낭독에 이어 운동장에 임시로 설치한 돼지우리안에서 돼지콜레라 예방주사, 질병검사를 위한 채혈 및 소독작업을 시범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부의 근절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 돼지고기 생산량의 11.4%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은 금년 10월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전면 중지하고 내년 4월에 돼지콜레라의 청정화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
  - 돼지콜레라는 돼지만 감염되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우리나라가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하여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 전면 중단될 경우 돼지가격 폭락, 사료감산, 수출액 손실, 양돈장 폐쇄 등의 요인으로 양돈농가는 물론 사료·약품·도축·가공업계 등이 입는 직간접 피해액은 4조 3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 돼지콜레라 근절은 우리 양돈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므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의 근절계획에 맞추어 정부와 양돈단체가 협력하여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 우리나라는 작년도 347백만불 어치의 돼지고기를 수출하여 농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냉장육의 수출비중을 높여 작년보다 25% 증가한 수출액 435백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다.
  - '99 농축산물 수출총액 : 1,412백만불
- 김성훈 장관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위해 노력한 일선 공무원과 양돈단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돼지고기 수출전략을 제시하면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금년 10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지와 내년도 청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자의 맡은바 임무에 충력을 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참고자료**

- 돼지고기(부산물 포함)수출 : ('98) 99천톤, 319백만불 ('99) 107, 347
- 국내 돼지콜레라 발생 : ('96) 39건 ('97)20 ('98)6 ('99)5 <경기용인>
  - 일본은 '93년부터 비발생, 제주도는 '99.12 청정화 선포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률 : ('99.1)76%, ('00.1) 95.8%



## 설명자료

- 제공일 : 2001. 8.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장 이주호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바이러스과장 권준헌
- 사무관 : 김 태 웅, 송 재 영
- 전 화 : (02)500-1930, (031)467-1782

### 제 목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해도 재발위험 낮아

- 예방접종 중단대비 위험도 평가시험 중간결과 -

□ 농림부는 금년 10월 돼지콜레라 예방주사의 전국적 중단에 대비하여 실시중인 『위험도 평가 시험사업』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험농장(299농가 선정)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음이 확인되어 예방접종을 중단하여도 돼지콜레라가 재발생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8.30일 밝혔다.

- 동 시험사업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할 경우 그동안 농가가 우려해온 돼지콜레라 재발생 염려를 덜어주고자 지난 6.28일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서 전국 299개 농장에서 새로 태어난 자돈 4,788두에 대해 예방주사를 하지 않고 주기적(도축 출하전 4~5회)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 1차 어미로부터 물려받은 항체량(모체이행 항체) 소실 여부를 측정한 결과 항체수치가 정상적(16~32)으로 나타남으로서 이는 양돈장내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 바이러스 감염시에는 항체량이 4,000 이상으로 높아짐

□ 이에 따라 농림부는 위험도 평가시험 최종결과와 예방접종 중단이후 방역대책안에 대해 9.20 일경 양돈단체 등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국적 예방접종 중단일정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중단하지 못할 경우 구제역이 청정화 되더라도 일본 돼지고기 수출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농가나 양돈관련단체에게 알리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이 늦어도 금년 11월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보도자료

- 제공일 : 2001. 11. 12
- 제공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원 장 : 김옥경
- 바이러스과장 : 권준현
- 전 화 : 031-467-1703, 1781

### 제목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해도 발생 가능성 희박

= 예방접종 중단을 대비한 위험도 평가시험 최종결과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 김옥경)은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의 전국적 중단을 대비하여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도 평가 시험사업』 최종성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방접종을 중단하여도 재발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11월 12일 밝혔다.

- 위험도 평가시험은 예방접종 중단시 농장내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있을 경우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접종중단으로 인한 농가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전국의 299개 농장에서 새로 태어난 자돈 4,788두에 대해 예방주사를 하지 않고 주기적(도축장 출하전 5회)으로 혈청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한 것이라고 검역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 아울러 시험농장의 돼지는 농장에 출입하는 돼지수송차량을 비롯한 사료·약품·분뇨운반차량과 사람들로 인해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었을 뿐더러 바이러스 및 유전자 검사결과 야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기 예방접종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림부는 이 사업에 검사비, 시험농장 사례비 등 59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음

□ 한편, 이 시험결과에 따라 농림부는 계획대로 11월말 전국적인 예방접종 중단을 추진할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돼지콜레라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며, 일본과의 돼지고기 수출협상에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고자료 :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도 평가시험 결과 1부

##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 최종결과 요약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1. 6~'01. 11. 5
- 시험방법
  - 시·군별로 시험농장(299농가 4,788두)을 선정한 후 해당농장의 신생자돈 중 일부를 예방접종 중지, 도축출하 전까지 감염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항체 및 바이러스 검사
- 사업주관 : 시·도지사(가축위생시험소)
  - 협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한양돈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사업물량
  - (당초) 302농가 4,800두 → (선정) 299농가 4,788두

## □ 1~5차 항체 및 항원 검사 결과

구분	채혈 차수	검사 농가수	검사두수	양성두수	양성율 (%)	항체역가범 위
항체검사	1	299	4,766	3,201	67.2	16-32
	2	297	4,712	1,472	31.2	2-8
	3	293	4,590	563	12.3	2-8
	4	273	4,254	287	6.7	2-8
	5	261	3,940	90	2.3	2-8
항원검사	1	299	4765	0	0	해당없음
	2	297	4743	0	0	
	3	293	4590	0	0	
	4	290	4480	0	0	
	5	272	4075	0	0	

## □ 결과분석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대비 위험도평가지험 분석결과 전국에 분포한 299개 시험농가에는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청정농장으로 확인됨.
- 시험농장내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요인(돼지이동, 사료운반차, 분뇨운반차, 출하차량, 농장방문자 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시험농장 및 주변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향후계획

- 발생위험도 평가사업 최종결과를 양돈농가·관련단체에 홍보
- 예방접종 일제중단 및 사후관리방안일정 확정 추진

## 보도자료

- 제공일 : 2001. 11. .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 주 호
- 사무관 : 김 태 응
- 전화 : 02)500-1942

### 제목 : 12.1일부터 예방접종 전면 중단, 돼지콜레라 청정국 선언키로

= 일본 정부와 돼지고기 조기 수출 본격 추진 =

- 농림부는 돼지고기의 수출재개와 국내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그동안 실시해 오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오는 12월 1일부터 전면 중단하고 우리나라를 돼지콜레라 청정국으로 선언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 예방접종의 전면중단 결정은 지난 9.20일 공청회에서 금년 11월말에 예방접종을 중단하되 희망농가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접종을 허용키로 하였으나
  - 한·일간 실무협의를(10.14~17) 일본정부는 한국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일부 허용시 돼지고기 수입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10.24일 농가대표, 관련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돼지고기 수출대책회의에서 동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 후 대한양돈협회에서 예방접종 전면 중단을 찬성한다는 건의(11.2)가 있었으며
  - 지난 9.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구제역 청정국 인정, 최근 2년간 돼지콜레라 재발생이 없고, 면역형성율이 95%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 결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미 예방접종을 중단한 제주도·강원도·울릉군에서 청정화가 유지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전면중단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농림부는 일본 돼지고기 수출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돼지콜레라의 청정화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예방접종 100% 실시, 미접종 농가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방역사업을 추진하여
  - 당초 '00.10월에 예방접종을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00.3월 구제역이 발생하여 돼지콜레라가 청정화 되더라도 돼지고기 수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예방접종 중단을 연기에 왔다면서 이제는 예방접종을 중단하더라도 재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 아울러 농림부는 예방접종 중단 후 이를 위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가 적발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며,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통해 청정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 양돈농가에서 우려하던 돼지콜레라가 재발생될 경우 적·간접 지원을 통해 양돈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 주기적인 일제 임상검사와 항체·항원 검사 실시 및 도축검사·소독 등 국내방역 강화와 돼지콜레라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청정국 선언 사실을 국제기구 및 관련 교역국에 통보하여 앞으로 돼지콜레라 발생국가산 돼지·돼지고기는 수입을 금지함과 아울러
- 대표단을 2차례(10,11월) 일본에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구제역 청정국 인정,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일정과 고급육 생산 상황 등을 설명하고 돼지고기 조기 수입을 촉구한 바 있으며, 금년 12월 초순에 실무협상단을 재차 일본에 파견하여 돼지고기 조기수출을 위한 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농림부는 일본이 지난 10월 한·일간 실무회의시 한국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을 하더라도 항체가 소실되는 6개월 이후에나 수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므로 양돈농가에서 돼지고기 수출이 조기에 이루어 질 것을 예상하여 돼지사육을 늘리는 것을 자제해 줄 것과
- 돼지콜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출입자·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실시는 물론, 만약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참 고 자 료

### 돼지콜레라란 ?

- 돼지콜레라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지정한 List A 질병이자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서 돼지에만 감염되고, 연령·성별·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감염돼지는 모두 죽게됨

### □ 예방접종 중단 여건

- 연도별 발생상황

구 분	'96	'97	'98	'99	'00~'01.8
두 수	4,498두	1,912	985	1,683	0
건 수	39건	20	6	5	0

※ '99년도 5건은 모두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

- 면역형성률(혈청검사에 의한 예방주사 항체반응 비율)

구 분	'97년말	'98	'99	'00	'01.9
免疫형성률	68.7%	76.1	95.5	96.1	96.8

### □ 그동안 추진 경위

- '00.9.23 : 당초 중단시기를 '00.10월로 하였으나 구제역 발생으로 '01.3월로 연기
- '00.1.29 : 구제역 청정화 일정에 맞추고, 재발우려를 감안 5월 이후로 연기
- '01.9.20 : 공청회에서 금연 11월말 중단 합의

#### ※ 지역별 청정화 추진현황

- 제주도 : '98.2.1 중지, '99.12.18 청정화,
- 울릉군 : '99.12.10 중지, '01.2.1 청정화
- 강원도 : '01.1.1 중지, '01.7.1 청정화

### □ 돼지콜레라 재발생시 농가 지원대책

-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을 전액지급하고 현행 보상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종돈가 격을 인정
- 폐사돈은 살처분 가격의 50%를 지원하고 이동제한 지역의 도축 출하돼지 수매

- 이동제한에 따른 양축농가 피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 대한양돈협회를 운영주체로 하는 등 농가 자체적으로 방역기금을 조성해 놓은 금액에 비례하여 연차적으로 차등지급

□ 청정국 선언조건 : 국제수역사무국(OIE) 관련규정

- ① 과거 2년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혹은
- ② 예방접종과 살처분정책 병행시 마지막 감염동물 도축 후 1년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혹은
- ③ 예방접종 없이 살처분 정책만 수행시 과거 6월간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1. .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김 태 응
- 전화 : 02)500-1942

### 제목: 5.1일부터 돼지콜레라 혈청검사에서 항체검출시 과태료 처분키로

-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한 방역행동지침(SOP) 마련 -

-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1일 전국적 예방접종을 중단한 데 이어 이를 어기고 접종을 한 농가에게는 금년 5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 검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기로 하였다
- 금년 5월 1일부터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예방약에 의한 항체가 소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농장 또는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예방 접종에 의한 항체가 검출될 경우와
- 농가에서 예방접종행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5월 1일 이전이라도 전 양돈농가 보호를 위해 과태료 부과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 농림부는 지난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이후 양돈농가 및 동물약품판매업소에 대한 예방약 수거조치를 실시하였으나 몰래 예방접종을 하는 농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 만약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혈청검사에서 반드시 항체가 검출되어 불이익 (과태료 300만원 이하)을 받게 되고, 어렵게 이룩한 청정화 유지가 어려워 돼지고기 일본 수출 길도 막히는 만큼 현재 예방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는 즉시 시군에 반납하여 줄 것과
- 돼지콜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 출입자·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실시, 남은음식물사료의 경우 가열하여 급여함은 물론,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 발견시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농림부는 돼지콜레라가 청정화 되었더라도 돼지콜레라 재발에 대비하여 양축농가와 가축방역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 모두가 유사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 돼지콜레라 근절단계별 방역주체의 긴급 조치 사항과 세부행동지침을 담은 「돼지콜레라 방역행동지침(SOP)」을 마련, 시도·가축방역기관·관련단체 등에 배부하여 돼지콜레라 방역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2. 4. 22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김 태 웅
- 전 화 : 02-500-1940~2

### 제목 : 강원도 철원 돼지콜레라 발생 조기 진정된 듯

- 인근지역 돼지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

- 농림부는 지난 4.18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에서 발생한 돼지 콜레라의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18~22까지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의 59농가 1,133두의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해당 농장의 살아남은 돼지 246두는 4.19일 오전 8시까지 모두 죽여 매몰하였으며
  -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의 돼지는 이동을 금지하고 주요도로 15개소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해 왔었다.
- 수의과학검역원 관계관은 돼지콜레라의 확산여부 검사를 위한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지만 이동통제는 동 질병의 잠복기(최장 40일간)를 감안하여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의 규정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10km이내)은 5.4일까지, 위험 지역(반경 3km이내)은 5.29일까지 이동이 금지되지만 도축용 돼지는 4.30일까지는 정밀검사를, 5.1일부터는 임상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을 경우 지정도축장(철원축협도축장)으로 출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농림부는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양돈농가로 하여금 축사의 소독과 농장출입자·차량의 통제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의심돼지 발견시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돼지콜레라 조기근절로 청정양돈 지켜갑시다

### □ 발생지역 긴급방역 조치

-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신흥농장은 4.18~19일까지 전두수 살처분
-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이동제한지역으로 설정, 확산여부 검사
  - 주요도로 15개소에 통제초소 설치하여 돼지 이동을 금지하고.
  - 이동제한 지역내 59농장 1,133두 임상·혈청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음
- 그러나 이동제한 지역내 돼지는 위험지역(반경 3km이내)은 5월 29일까지, 경계지역(반경 3~10km이내)은 5월4일까지 이동금지
  - 출하적기에 도달한 돼지는 철원축협도축장에 출하를 허용하되 4.30일까지는 정밀검사를 5.1일부터는 임상검사를 받은 후 도축·유통
- ※ 발생신고를 아니한 수의사, 폐사돈을 개사료로 이용케한 농장주는 사법기관 고발조치

### □ 최근 돼지 가격동향

- 산지가격은 전년 4월평균 178천원보다 높은 208천원을 유지
- 앞으로 소비성수기 도래, 월드컵 등 소비증가 요인으로 돼지콜레라 발생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

### □ 돼지고기 수출

-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은 4월 29일 첫 수출선적 예정
  - 첫 수출물량 : 냉동육 80톤(306백만원, 235천\$)
- 기타지역 수출은 약 6개월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
  - ※ 4.25~27 우리측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여 긴급 방역조치 등 설명

###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청정국 인증 조건

-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살처분 할 경우 살처분 완료후 6개월 경과시 수출재개협상 개시
- 예방접종과 살처분 병행시는 살처분후 1년 경과시 협상 개시
  - ※ 일본은 예방접종 중단 후 6개월 이상 경과 요구

### < 농가 당부사항 >

- 농장 출입 가축·사료·약품차량과 사람의 출입통제 및 소독 철저
- 의심돼지 발견즉시 방역당국에 신고(신고전화번호 : 1588-4060)
- 떨어지돼지는 사지도 팔지도 말고 적발시 방역당국에 신고

##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5. 1.
- 제공자 : 농림부 가축위생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김 태 웅
- 전화 : 02-500-1942

### 제목 : 강원 철원에서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

- 농림부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소재 신흥농장(대표 : 신흥렬)에서 돼지 콜레라가 지난 4.16일 발생(4.18일 확진)된 이후 4월 30일 발생농장에서 약 1km 떨어진 임송농장(대표 : 송운복)에서도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확인(5월 1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 확인은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농장 주인이 철원 군청에 전염병 의심돼지 발생을 신고함에 따라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직원과 철원에서 활동중인 검역원 역학조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임상관찰과 부검을 실시하고
  - 시료를 채취하여 검역원과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합동으로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되었으며, 신고당시 발생농장의 돼지 2,131두중 8두가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어 폐사된 상태였다.
- 이에따라 농림부는 강원도에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및 “발생시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방역 조치토록 하고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된 원인 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임송농장에 대하여는 4.19~20일에 30두를 정밀검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었고, 4.24일 도축장 출하를 위해 30두를 추가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어 지정도축장인 철원축협도축장에서 181두(4.25일 151두, 4.26일 30두)가 도축되었다.
  - 농림부는 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지정 도축장에서 도축된 돼지 고기는 이상이 없지만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차원에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잔여고기를 전량 수거·폐기키로 하였다.
- 이번 돼지콜레라는 지난 4.16일 처음 발생 당시 돼지의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진 위

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이내)안에 있는 농장에서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동 제한 지역의 변동은 없으나

- 당초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은 5.4일, 위험지역은 5.29일로 예정되었던 돼지의 이동제한 기간 적용은 발생농장 돼지의 살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경계지역은 15일, 위험지역은 40일이 지날 때까지로 각각 연장된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농림부는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 위원장을 차관보에서 차관으로 격상하여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돼지콜레라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5.1일부터 6월말까지를 「돼지콜레라방역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소독·예찰강화 등 특별방역을 추진키로 하였음을 밝혔다.
- 아울러 돼지콜레라 발생을 조기에 진정시키고 효율적 대책 추진을 위해 5.2일 제3차 방역추진협의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 전문가에 의하면 돼지콜레라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며, 사람의 세균성 전염병인 콜레라와 전혀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 다른 동물에도 감염되지 않는 질병이다.

※ 돼지콜레라란 ?

- 고열·식욕결핍·설사나 변비·피부청색증 및 비틀거리는 증상 등을 나타내며, 한번 발생하면 치료방법이 없고 감염된 돼지는 대부분 죽게되는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List A,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임

##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2. 10. 8
- 제공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이 희우
- 사무관 : 김 태웅
- 전 화 : 02-500-1940 ~ 1

### 제목 : 인천 강화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 농림부는 10월 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소재 양돈장(대표 : 노광우)의 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돼지콜레라 발생은 10월 7일 오후 돼지콜레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당일 인천광역시 가축위생시험소의 1차검사에 이어 10월 8일 검역원의 실험실 정밀검사 결과 최종 확인된 것이다.
  - 발생농장은 돼지 1,300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발생농장을 포함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의 돼지는 이동이 제한된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인천광역시에 발생농장 사육돼지 전두수를 신속히 살처분·매몰하는 등 긴급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돼지의 이동제한, 주요도로 소독, 통제초소 설치 등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지시하였다.
  - 아울러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돼지 이동 및 농장출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은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단계에서 예방접종을 중단함에 따른 산발적인 발생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 ※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부터 그동안 실시해 왔던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중단한 이후 금년 4월 철원에서 2건이 발생하였으나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로 조기에 종식시킨 바 있음.
-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의 위험지역은 최소 40일 이상, 3~10km까지의 경계지역은 최소 15일 이상 돼지의 이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 한편,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상 “발생농장 반경 500m까지의 돼지를 살처분 후 30일 경과시 청정화 회복조건”에 충족되므로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이 당초 계획한 돼지 고기 일본수출재개 일정('03.3월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에는 사육돼지 없음

#### 【돼지콜레라 방역 추진사항】

- '97. 1 :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수립(5개년 목표)
- '98. 2 : 제주도 예방접종 중단('99.12 청정화 선언)
  - '99. 8 : 경기도 용인 1건 발생
- '01. 1 : 강원도 예방접종 중단('01. 7 청정화 선언)
- '01.6~10 : 전국적 예방접종 중단대비 발생위험도 평가사업 실시
- '01.12 : 전국적 예방접종 중단 및 국제수역사무국(OIE) 통보
- '02. 4 : 강원도 철원에서 2건 발생

#### 【돼지콜레라란?】

-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으로 고열·식욕결핍·설사나 변비·피부청색증 및 비틀거리는 증상 등을 나타내며, 한번 발생하면 치료방법이 없고 감염된 돼지는 대부분 죽게 되는 질병임. 국제수역사무국(OIE)의 List A,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악성가축전염병임

## 보도자료

- 제공일 : 2002. 10. 15.
- 제공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김 태 웅
- 전 화 : 02-500-1940

### 제목 : 돼지콜레라 추가발생

- 농림부는 10.14(월) 돼지콜레라 의심돼지로 신고된 강화군 강화읍 대신리 소재 양돈장 (농장주:천상열) 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10.15(화) 돼지콜레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군병력 및 전살기 등을 투입하여 10.15일중 이 농장 사육돼지 74두에 대한 살처분·매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난 10.7(월)이후 강화지역에서 모두 3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됨에 따라 농림부는,
  - 강화 전지역에 대한 돼지 이동제한 조치, 임상관찰 실시 확인 등 특별방역대책을 강화하고
  - 농림부 상황실을 확대 개편하는 한편,
  - 김포 등 접경지역과 전국 26개 취약지역에 대하여도 방역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농림부는 10.15(화) 오후에 중앙돼지콜레라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설 명 자 료

- 제 공 일 : 2002. 11. 2.
- 제 공 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 무 관 : 김 태 웅
- 전 화 : 02-500-1940

### 제목 : 인천 강화군 위험지역내 돼지콜레라 추가확인

- 농림부는 11.1(금) 돼지콜레라 의심돼지로 신고된 강화군 강화읍 대신리 소재 양돈장(농장주 : 종석출) 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11.2(토) 돼지콜레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동 농장은 강화지역 3차 발생농장(농장주 : 천상열)에서 북쪽으로 약 1km 거리에 위치한 농장으로 그 동안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지역)으로 설정하여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 돼지콜레라 방역추진상황

#### 1. 발생 및 신고사항

- 금일 신고사항 : 1건(돼지콜레라로 판정)
  - 신고경위 : '02.11.1, 16:05(전화예찰중 이상증상 파악)
  - 주소 및 농장주 : 경기 강화읍 대신리 , 종석출 농가
  - 발생두수 : 6여두( 317두 사육규모)
  - 판정일시 : '02.11.2, 07:30
  - ※ 10.7일 최초발생 이후 총 7건 신고 중 5건(강화 4, 김포 1) 돼지콜레라 양성 판정

#### 2. 주요 추진사항

-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긴급 시달
  - 이동통제, 사람·장비·차량등 소독 실시 및 역학조사 실시
  - 강화지역 수매도축 가공물량 유통잠정 중단 조치 등



- 살처분 농장·매몰지 사후관리 점검
- 이동통제초소 운영상황 및 근무실태 점검

### 3. 향후계획

- 강화지역 추가발생 농장 돼지 살처분·매몰 작업 실시
- 김포·강화지역 양돈농가 예찰 확인
- 강화·김포지역 농장 예찰 및 이동통제초소 점검(계속)
- 살처분 농장·매몰지별로 사후관리 및 순회점검 실시

## 보도자료

- 제 공 일 : 2002. 11. 28.
- 제 공 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 무 관 : 김 태 응
- 전 화 : 02-500-1940

### 국무총리 주재 돼지콜레라 비상방역대책 관계장관회의 개최

- 농림부는 최근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병함에 따라 11.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는 “돼지콜레라 비상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농림부는 이번 “돼지콜레라 비상방역대책회의”에서 돼지콜레라의 추가적인 확산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앞으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항공기, 선박 등을 통한 동물, 축산물, 불법반입 단속이 강화되고, 소독 미실시 등 방역위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엄격하게 적용된다.
  - 통제초소운영을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 살처분 농가에 대한 오염물건 보상금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지자체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지원 방안도 논의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돼지농장에 대한 예찰활동,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상 취약농가에 대한 특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 비상방역대책회의에는 올 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였던 강원도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에서도 참석하여 인천, 김포지역의 방역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돼지콜레라는 10.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인천과 김포지역에서 9건이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그동안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돼지콜레라가 김포·강화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발생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던 시기인 '96년부터 '99년까지 매년 5건~39건이 발생하였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00~'01년에는 발생이 없었으며, '01.12월 예방접종 중단과 청정국선언 이후 금년에 다시 발생하였다.

- 지난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고, 5월에도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나,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조기 종식을 한 경험이 있다.
- 대부분의 양돈 선진국들도 돼지콜레라 청정국 선언후 돼지콜레라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네덜란드의 경우 '80년대에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였으나 '97.2월부터 '98.4월까지 429건이 발생하여 11백만두를 살처분 하였다.
  - 또한, 영국도 '66년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였으나 '00.11월 16건이 발생하여 75천두를 살처분 하였다.
- 농림부는 축산농가와 함께 범정부차원에서 합심하여 차단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면 돼지콜레라의 추가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살처분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조기차단을 위해 그 동안 농림부를 비롯한 관련 시군에 “비상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긴급방역조치를 추진중이다.
  - 발생농가는 물론 감염위험이 높은 인근 양돈농장의 사육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주요도로에 24개소의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장비 104대를 투입하여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장 단위에서의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중이다.

## 보도자료

- 제 공 일 : 2002. 12. 22.
- 제 공 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 무 관 : 김 태 웅
- 전 화 : 02-500-1940

### 제목 : 경기 이천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최종판정

- 농림부는 12.22일(일)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소재 양돈장(농장주 : 송오범) 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은 12.21일(토) 검역원의 1차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나 해당농장이 과거 폐렴 등 일반 질병이 자주 발생하였던 농장인 점을 감안하여 이동통제하에 전두수(2,000여두)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추가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것이다.
- 이에 따라 농림부는 경기도로 하여금 발생농장 사육돼지 전두수를 신속히 살처분(殺處分)·매몰하는 등 긴급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어제부터 취해온 돼지의 이동제한, 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지시하였다.
  - 돼지콜레라 발생농장 반경 3km까지의 위험지역은 최소 40일 이상, 3~10km까지의 경계지역은 최소 15일 이상 돼지의 이동이 제한된다.
- 아울러 농림부는 이제까지 강화·김포지역의 이동제한지역 안에서만 발생하였던 돼지콜레라가 이천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12.23일(월) 16:00 중앙돼지콜레라방역추진협의회(위원장 : 농림부차관)를 긴급 소집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심도있는 확산방지대책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설 명 자 료

- 제공일 : 2003. 3. 19.
- 제공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김 태 웅
- 전 화 : 02-500-1940

### 제목 : 돼지콜레라 조기차단을 위해 긴급예방접종 실시

- 농림부는 지난 3.18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금일 10:00 농림부 차관주재로 “돼지콜레라중앙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다.
  - 농림부는 지난해 12.21일 경기도 이천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기존 살처분정책을 긴급예방접종으로 보강하여 강화·김포에서 시작된 돼지콜레라 상황을 진정시킨바 있다.
- 예방접종 대상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전북 익산시와 인접 4개 시·군(김제·전주·완주, 충남 논산)에서 사육중인 돼지 657천두이며 내일(3.20)부터 1차 예방접종에 착수하여 3일안에 접종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농가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시·군에 신청을 하면 예방접종반을 편성, 접종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 한편, 오늘 돼지콜레라 의심 증상으로 신고된 경남 함안군의 경우에도 오후 늦게 돼지콜레라로 판명이 되면
  - 전북 익산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에 한정하여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 이번 돼지콜레라 발생에 긴급예방접종으로 대처키로 결정함에 따라
  - 살처분 대상은 발생농장 사육돼지 800여두에 한정될 전망이다
  -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이내)은 40일동안, 경계지역(3~10km)에 대해서는 15일 동안 돼지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 보도자료

- 제공일 : 2003. 3. 21.
- 제공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김 태 응
- 전 화 : 02-500-1940

### 제목 : 돼지콜레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예방접종 실시

- 농림부는 지난 3.18일 전북 익산시 왕궁면에서 시작된 돼지콜레라가 불과 사흘만에 6개도, 13개 시·군, 21개 농가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 오늘 11:00 농림부 차관주재로 생산자단체 대표와 수의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돼지콜레라 중앙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지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돼지콜레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긴급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다고 21일 발표했다.
- 이와 같이 농림부가 발생농장 중심의 살처분과 제한적 예방접종에서 전국적인 예방접종으로 방역정책을 바꾸게 된 배경은
  -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익산과 함안지역의 8개 농가 외에 오늘 11개 시·군 13개 농가에서 추가 발생이 최종 확인되는 등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 발생농장과 접촉했던 사람과 차량에 대한 그간의 행적을 예측하기 어려워 타 농장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 지난 '01.12월 예방접종 중단 후 돼지콜레라 항체역가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봄철을 맞아 야외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감염 위험이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농림부는 지난 3.18일 이후 오늘까지 2차례 돼지콜레라 중앙방역협의회를 포함해서, 총 5차례에 걸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재의 발생상황과 전개양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 기존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에 대한 제한적 예방접종 만으로는 현재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콜레라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아울러, 종래 살처분 정책으로 일관했던 EU에서도 최근 환경·동물복지·농촌관광 문제 등을 고려해서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도 참고 하였다.
-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96년 이후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해 우리 양돈 농업인과 정부에서 기울인 노력이 아쉽기는 하지만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한다는 심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 돼지콜레라 청정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임이 분명하지만 우선 돼지콜레라의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후 보다 철저한 준비를 거쳐 청정화로 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 앞으로 축산업등록제 등을 통해 질병관리를 강화하고 증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간다면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 예방접종 지역은 이미 접종을 시작한 익산과 함안지역은 인접한 9개 시·군에 대해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추가로 발생한 11개 시·군은 우선 발생 시·군에 한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 앞으로 돼지콜레라의 발생과 전개양상을 보아가면서 인접 시·군, 발생 위험이 높은 시·군 순으로 점차 넓혀나가되 수의과학검역원,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익산지역은 이달 24일까지, 함안지역은 25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7개 시·군은 이달 말까지 1차 접종을 마치고 20~30일이 경과한 후에 2차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돼지가 살처분된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돼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시·군의 보상금평가반에서 평가한 금액을 지급함과 동시에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농림부는 3.21일 현재 예방약 재고는 약 500만두분으로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에 즉시 접종하는 데 충분한 물량이며 전국 예방접종 지역 확대에 대비해서 추가로 760여만두분을 조속히 생산, 4.7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며 2차 예방접종을 위한 부족소요 550만두분을 추가 생산하여 4월하순 예방접종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한편, 농림부는 현재 돼지콜레라 발생원인과 경로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경기도의 한 종돈장에서 씨돼지를 구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 전국의 종돈장(129개소)과 돼지정액처리업체(58개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돼지콜레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종축업 등록제 도입과 연계하여 차량 소독시설 등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방역·위생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종돈장 위주로 정예화되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농림부는 돼지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미 체내에 잠복된 바이러스가 발병될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매몰할 방침이며 예방접종을 마친 가축이라도 이동제한 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 내에서는 이동이 통제되고 소독 등 농장 차단방역도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 이동제한 해제 : 살처분 조치후 위험지역은 40일, 경계지역은 15일
- 이와 함께,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전국 예방접종 실시로 인해 일선 농가의 방역의식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 3.20일 농림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돼지콜레라방역대책상황실을 확대·개편하면서 돼지콜레라뿐 아니라 구제역 특별대책을 포함하여 전 두수 임상관찰, 조기 신고체제 구축, 소독철저 지도 등 전국적인 방역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하였다.
- 또한, 돼지콜레라는 돼지에게만 전염되고 사람에게는 전혀 해가 없으며 예방접종을 맞은 돼지고기의 품질과 안전성에도 영향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 소비자 여러분께서 예전과 같이 안심하고 우리 돼지고기를 애용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우리 양돈농가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발생 상황

□ 지난 3.17일 이후 6개 시·도 13개 시·군 21개 농장에서 발생 확인

구분	주소	축주	사육 규모	의심축	분양일	상원축산 관계
발생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 69-51	송영민	583	34	2.19	분양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27-2	김영진	167	-	3.7	분양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학호	송두옥	375	-	-	발생농장 인근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740-1	김외석	874	-	2.6	분양
	" 754	김영태	1,100	-	2.6/2.18 2.21/3.12	분양
	" 276-2	김종신	983	-	2.18/2.28	분양
	" 1193	김정수	367	-	-	발생농장 인근
	" 727	김대근	1,418	-	2.18/2.21 2.28/3.2	분양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236	장영제	887	90	2.28	재분양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145	조성제	2,000	14	2.5/2.28	분양
	충남 당진군 신평면 상오리 276	김진원	877	100	2.19	분양
	당진군 신평면 상오리 283	김강수	523	200	2.19	분양
	보령군 천북면 신중리 15	강화규	3,400	22	2.26	분양
	아산시 신창면 행목2리 45-1	이성근	885	10	2.26	분양
	경북 상주시 화개동 330-1	박경화	3,200	100	2.18	분양
	성주군 초전면 용봉3리	심태규	746	3	3.6	분양
	경주시 서면 천촌리 537	정상수	906	20	2.21	분양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577-4	박의성	1,150	-	2.27	분양
	경기 여천시 장호원읍 외현리 49-1	강노구	1,500	-	3.6	분양
	화성군 남양면 신남리 228-1	이선구	4,000	-	2.20	분양
	평택시 안중면 학현리 산102	김혜자	3,900	-	2.26	분양
6개 시·도 13개 시·군	21농가	29,841	593			
검사증	충남 보령군 천북면 신덕리 293	유종영	2,900	31	3.11	분양

## 보도자료

- 제공일 : 2003. 3. 23
- 제공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무관 : 김 태 용
- 전 화 : 02-500-1940

### 제목 : 씨돼지 공급 종돈장 돼지콜레라 발생 확인

- 농림부는 익산, 함안 등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에 씨돼지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 상원축산 종돈장(농장주 : 한규진) 3개소의 돼지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제1농장(경기 김포소재) 사육 2마리가 양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해당농장 돼지 935두 전체를 살처분키로 하고 돼지콜레라 병원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우려가 높은 해당 종돈장 종업원에 대하여도 농장안에서 숙식을 하도록 하고 가축방역관을 상주시켜 농장밖 출입을 통제키로 하였으며,
- 이에 앞서 해당 종돈장 돼지에 대하여는 지난 3.18일부터 이동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 보도자료

- 제공일 : 2003. 4. 4.
- 제공자 : 농림부 축산정책과
- 과 장 : 최 형 규
- 서기관 : 노 수 현
- 전 화 : 02-500-1896

### 제목 :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생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종합지원 착수

- 농림부는 지난 3월 18일 이후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농가지원에 착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 농림부가 이날 밝힌 농가 지원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라 사육하던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 첫째, 살처분돼지와 폐기된 사료 등 오염물건에 대해 살처분 당시 가격(성돈기준 150~160천원)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구성된 보상금평가반에서 평가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어미돼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당시 살처분 모돈가격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지급키로 하였다.
  - ※ 모돈가격 산출방식 = 모돈가격(모돈 생산비 - 감각상각비) + 임신중인 자돈가격(자돈 생산비의 50%)
  - 둘째, 돼지 살처분에 따라 돼지 재입식 및 출하 전까지 주요 소득원이 상실되는 점을 감안하여, 농가당 6개월분 가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살처분두수에 따라 차등지급 하되 500두 이상 살처분시 최고 10백만원까지 지급키로 하였다.
  - ※ 50두미만 1백만원, 50~199두 2백만원, 200~299 4백만원, 300~399두 6백만원, 400~499두 8백만원, 500두이상 10백만원 (중앙정부 50%, 지방비 50%)
  - 셋째, 살처분 농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재입식 허용일부터 6월이내에 돼지를 입식하는 경우 살처분 돼지두수 범위내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입식비를 용자 지원키로 하였다.

※ 지원조건 :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 재입식은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40일 경과후 40일간 시험입식기간을 거쳐 이상이 없을 때 허용

○ 넷째, 농가에 기지원된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 농축산경영자금의 경우 살처분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상환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며,

- 농특회계·축산발전기금 및 부채대책자금도 살처분일로부터 1년간 상환 기간이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상환도래일 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살처분일로부터 2년 동안 상환이 도래되는 이자를 감면키로 하였다.

※ 농특회계에는 농업종합자금 등의 이차보전대상자금 포함

○ 다섯째, 살처분 돼지의 가액이 총 자산의 30%이상일 경우 자산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액을 공제하고, 각종 세금의 납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징수도 유예하며, 중·고생자녀를 둔 경우 1년간 학자금을 면제해 준다.

□ 아울러, 발생농장 인근지역의 이동제한(10km 범위)으로 인해 발생한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는 과체중 부분(120~140kg)에 대해 kg당 생산비(1,560원)를 지원하여 출하지연에 따른 농가소득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이다.

□ 농림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등 4개 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 이번 대책에 따라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의 생계와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가축질병방역에 대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설명자료

- 제 공 일 : 2003. 4. 6.
- 제 공 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이 희 우
- 사 무 관 : 김 태 응
- 전 화 : 02-500-1940

### 제목 : 경북 영천, 상원축산 분양농가에서 돼지콜레라 추가 발생

- 농림부는 4.6(일) 경북 영천시 청룡면 계포리 소재 양돈장(농장주 : 하준도)의 돼지콜레라 의심축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돼지콜레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동 농장도 경기도 김포의 상원축산에서 2.11일과 3.12일 22두의 씨돼지를 분양 받은 농장으로서 그 동안 이동통제 등 특별관리를 받아왔다
- 농림부는 지난 3.27일 동 농장 반경 3km이내지역의 예방약 소요량(70천두)을 공급, 3.28일 동 농장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 예방접종을 실시하더라도 이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발현한다고 설명하면서, 마무리 과정에서 돼지콜레라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농장주소 : 경북 영천시 청룡면 계포리 210
    - 사육규모 : 3,200여두(모돈 290두)
- 이에따라 경상북도에서는 발생농장의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함과 동시에 발생농장 반경 3km(위험지역)에 대해 가축 및 사람·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현장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 보도자료

- 제 공 일 : 2003. 8. 27.
  - 제 공 자 : 농림부 가축방역과
  - 과 장 : 김 창 섭
  - 사 무 관 : 김 태 응
  - 전 화 : (02) 500-1940
- 

### 제 목 : 충남 당진에서 돼지콜레라 추가발생, 방역조치 강화키로

- 농림부는 충남 당진군 송악면 소재 양돈장(농장주 이경훈, 65세)에서 8.26일 밤 돼지콜레라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은 지난 8.20일 발생농장과 14km 떨어진 곳(3월 발생농가와는 7km)으로 외부에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를 구입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농림부는 8월 들어 발생한 돼지콜레라 3건(경북 상주 1, 충남 당진 2) 모두가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8.28일 전국 시·도, 양돈단체 등 관계관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예방접종 100% 실시 등 긴급방역대책을 시달할 계획이다.

###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 ① 정부지원 예방약(41백만두분, 28억원) 적기공급으로 양돈농가 예방접종을 100% 목표 추진
  - '03. 7월 예방접종율 : 평균 85%
- ② 예방접종 미실시 또는 예방접종확인서 미첨부 농가 적발, 과태료 처분 강화
  - 새끼돼지 분양 또는 육성돈 도축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 첨부 의무화
  - 농장·도축장 모니터링 혈청검사 결과 접종율 80% 미만 농가는 미접종 농가로 간주, 과태료 처분
- ③ 중앙합동점검반 편성, 일제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과거 발생지역(25개 시·군) 및 돼지 밀집사육지역
  - 점검반 : 10개반, 20명(농림부, 검역원, 축기연)
  - 점검내역 :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확인 및 혈청검사 결과 처리 실태 등
 ※ 기간 : '03. 8. 29 ~ 9.2
- ④ 전국 양돈농가 대상 방역홍보 강화
  - 검역원 자동응답전화(ARS) 시스템을 이용한 홍보실시
  - 홍보리후렛 2만부 작성·배포

#### ※ 발생농장 방역조치 내역

- 발생지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도원리
- 발생내역 : 총사육두수 686두중 18두 발생(폐사 5두)
- 감염 또는 감염의심축(529두) 살처분·매몰(8.27일 새벽)
- 발생농장 돼지 이동제한(40일간) 및 주변 3km이내 농장(98호, 22천두) 예찰 강화

# 돼지콜레라 특이병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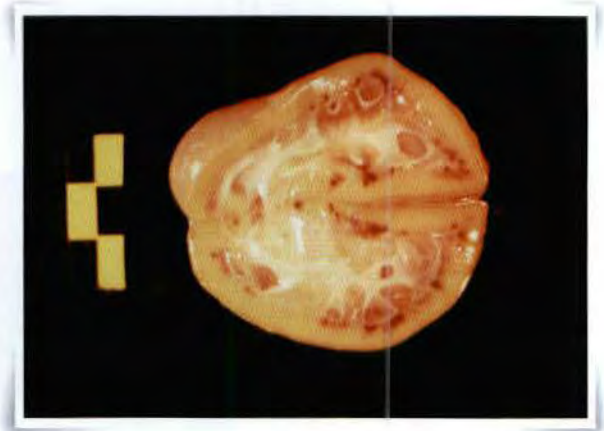
▲ 비장의 출혈성경색



▲ 대장의 단추양궤양



▲ 악하림프관의 출혈충대



▲ 신장의 피질과 수질의 연접부출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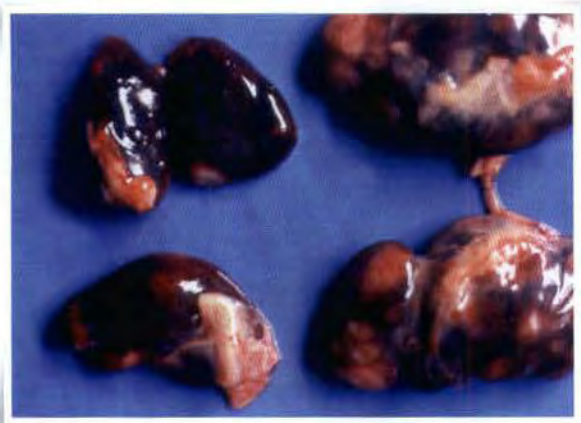


▲ 인후두 부위의 괴사·출혈



▲ 신장의 점상출혈





▲ 임파절의 주연성 중출혈



▲ 급성패혈증 소견을 보인 폐사돈



▲ 방역요원 채혈장면



▲ 방역요원 채혈장면



▲ 방역요원들의 채혈장면

## 돼지 채혈 이모저모



▲ 방역요원 채혈장면



방역요원 채혈장면 ▲

▼ 채혈장면



채혈장면 ▲



▲ 살처분후 매몰



매몰장소 경고문 ▲

# 소독장면



▲ 멧돼지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시연(부로우견)



▲ 족사의 연막소독



▲ 발생지역 통제소



▼ 차량 소독



▲ 차량 소독



▲ 차량 소독

# 비상대책본부 출범



▲ 비상대책본부 실무위원회 현판식(1999. 3. 29 양돈회관)



▲ 비대본 준비위 발기총회(1999. 4. 2 축협축산종합개발원)



▲ 발기총회후 차랑스티커 부착



▲ 방역단장·방역요원 교육(1999. 8. 26)



▲ 돼지콜레라 근절 2단계 방역교육(윤희진 집행위원장)



▲ 2단계 방역교육·홍보활동(서울대 박봉균 교수)



▲ 천하제일사로 김영옥 대표가 윤희진 집행위원장에게 기부금전달 (1999. 10. 19)



▲ 농협중앙회 정대근회장이 상임본부장 이우재의원에게 기부금전달 (2000. 3. 14)



▲ 시·군방역단 연수교육(최성백 상임본부장) (2000. 6. 22~23)



▲ 방역본부 시·군방역단 연수교육(2000. 6. 22~23)



▲ 경기도 축정과장(이대현) 참석하에 축산위생연구소직원들의 결의문 낭독



▲ 정착농원 양축농가 방역교육(2001. 11. 15)



돼지콜레라 근절 결의대회에서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차사(2000. 3. 14) ▲



▲ 돼지콜레라 근절 결의대회 및 예방접종시연회 (2000. 3. 14 과천 정부청사 운동장)



돼지콜레라 근절 결의대회 참석자들의 결의문 낭독 ▲



▲ 방역기부금을 지원한 애그리브랜드퓨리나와 도드람 대표에게 감사표시  
(좌로부터 김성훈장관, 퓨리나사료 최상백 상임본부장, 도드람사료 대표)



▲ 돼지콜레라 근절 결의대회 신서(2000. 3. 14 과천청사 운동장)



▲ 최상백 본부장에게 도드람사료(김대성 사장) 방역기부금 전달  
(2000. 3. 14)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시연(2000. 3. 14)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비상대책본부 확대개편을 위한 이사회 개최(2000. 6. 14 수의과학회관) ▲



▲ (사)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설립 총회(2000. 6. 14 수의과학회관)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상임본부장 이우재의원의 취임인사 ▲ (2000. 6. 14)





▲ 애그리브랜드퓨리나문화재단이 2000년도 축산·사료연구 기술대상 수상단체로 방역본부를 선정, 수상(2000. 12. 21)  
(사진 우로부터 윤희진 상임이사, 김기용 퓨리나회장, 최홍렬 사무국장)



▲ 방역본부 제1차정기총회(2001. 2. 14 축산회관)



▲ 방역본부 운영실적평가보고회(2001. 2. 18) ▲



◀ 돼지콜레라 근절 공청회 (2001. 2. 20 수의과학검역원)



▲ 돼지콜레라 근절 공청회 개최(2001. 2. 20)



돼지콜레라 근절 공청회 개최(2001. 2. 20) ▲



▲ 소독방제차량 발대식(농림부 지원)(2001. 3. 9)



양돈농가 방역관리 순회교육(2001. 9. 4) ▲

## 돼지콜레라 방역홍보물



▲ 돼지콜레라 박멸캠페인 홍보책자(비상대책본부의 최초 홍보책자)

###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모금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출범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사료업체·동물약품업체와 양돈업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대책본부가 각 시·도·시·군지역별로 돼지콜레라 방역지원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급 늦었지만 앞으로 1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또 발생되어 걱정되지만,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청정화 할 수 있겠다는 자신과 희망이 보입니다.

민간단체가 앞장서는 박멸사업 기금모금에 꼭 동참해 주십시오.

앞장서서 참여하는것이 양돈업계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입니다.

#### 돼지콜레라 박멸기금 모금안내

- 대상 : 양돈농가, 양돈관련산업계, 뜻을 같이하는 개인·단체
- 모금기간 : '09. 9. 22일까지
- 계좌번호 : 농협 098-01-110004 (돼지콜레라비대본)
  - 축협 035-11-13570-216 (돼지콜레라비대본)
- 영수증발급, 기부금영 손비처리가능, 모금내은 전문지 게재(대주)
- 지정기탁가능(특정 도대해본부, 시·군방역단 지정기탁)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TEL : (02)553-3940, 3942-6, FAX : (02)552-8530  
 E-mail : hecco@ctollam.net

방역기부금 홍보 안내문 ▲



▲ 비상대책본부의 돼지콜레라 퇴치방법 홍보책자(2000. 3)

**쉽고 확실한**  
**돼지콜레라 퇴치 방법**



40일령에 1차  
 60일령에 2차  
 모든은 1년에

▲ 쉽고 확실한 돼지콜레라 퇴치방법 홍보책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합시다!**

2002년 12월 23일 현재 강원 철원 현천 관화 및 서구 경기 김포에 이어 경기 여천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지 역	강원 철원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기 서구 김포시	경기 안산시
발생건수	2	5	1	4

1. 돼지콜레라가 주위로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2. 겨울철에는 소독 및 살처분 등이 어렵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소독제 및 소독장치가 없어서 실질적인 소독에 어려움이 있고, 살처분 정책만으로는 전파원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3.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면 돼지콜레라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40일령에 1차, 60일령에 2차 접종을 하면 100% 면역 형성을 시킬 수 있습니다.

4. 철저한 긴급예방접종으로 조기에 근절합시다!  
 돼지콜레라 긴급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질병의 전파·확산을 막아, 농장 피해를 조기에 달성합시다.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광역시·경기도

**돼지콜레라 방역홍보물**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로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목표일 홍보용 로고 ▲



**돼지콜레라**  
2000년까지  
꼭! 근절합시다.



예방접종만 정확히 하면  
**돼지콜레라**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농 립 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 협 중 앙 회

3월 15일부터 정통중지 목표일 10월 일까지 꼭 200일 남았습니다.

철고 확실한

**돼지콜레라  
퇴치 방법**

-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신고합니다.
- 100% 예방접종하여 100% 항체 형성을 확인 합니다.
- 자돈은 40일령에 1차접종  
60일령에 반드시 2차 접종을 합니다.
- 소독은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역관리 수단입니다.
- 출입차량과 사람의 차단방역이 중요합니다.
- 청정화의 이득은 모두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2000.3.15.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사)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돼지콜레라 방역홍보물**

# 설 연휴에도 방역은 쉴 수 없습니다

돼지콜레라를 겨울철에도 발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1. 설 연휴 기간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 경기도 지역은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현재도 이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지역농가는 예방접종 돼지 사후관리 잘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돼지를 죽이 또는 타동장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하고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토록 합니다.
- 3. 외국인 근로자 가족 및 동료와 귀와의 농가에 모이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가족 및 외국인 근로자는 타동장 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 귀를 후 귀가 시에는 농장 밖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 후 출사 출입
- 4. 돼지콜레라로 가족의 아픈이 제한 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에 사는 사람이 고향에 갈 경우에는 소독을 하고 축사출입은 자제 합니다**
- 5. 농가의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 「관리일지」를 공급할 예정 이오니 매일 기록에 철저히 기마시기 바랍니다**
  - 축산농가는 소독장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소독을 자주 실시하여야 하며, 말로 소독장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6. 확산방지차량 소독 및 「소독강화카드」를 성실히 기장합니다**

 농림부 · 수의과학검역원

## 2001년 12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됩니다!

더는 희망하는 농가는 3백미리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왜 중단해야 하는지?**

- 예방접종을 계속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청정화 인정이 어렵고 따라서 수출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된 만큼 농가 부담은?**

- 돼지고기 수출로 국제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 돼지콜레라 발생확산 수입금지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는지?**

- 1999년 8월 마지막 발생후 재발생이 없습니다.
-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면역형성율이 2년 넘게 95%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돼지콜레라 발생 위험도 평가시험'결과,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중단한 제주도, 강원도, 울릉군에서 청정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수처에 관한 문의처: 대청양돈협회, 관연동 안진리 · 관계기관과의 협회, 동물 거래 중단장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시/도**

## 돼지콜레라 방역홍보 리플렛

### 돼지콜레라 방역을 철저히 합시다!

**금년 봄철이 돼지콜레라 방역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2001년 12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양재양성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분	2001년 11월	2001년 12월	2002년 1월
비확진 양재양성률	97.3%	91.8%	77.1%

- 이미질에 의한 양재는 60~80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소실되므로, 금년 봄철이 돼지콜레라 방역에 있어 중요한 고비입니다.
- 농가에서 봄철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할 경우, 돼지콜레라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 방역수행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불법적 예방접종이 확인될 경우, 2002년 5월 1일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가에서의 방역조치 요령은?**

- 1.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2. 폐사 내외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3. 사육하는 돼지에 대하여 세심한 임상관찰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돼지콜레라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관계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돼지콜레라의 주요 임상증상 ●



● 설사(변량 증가, 변색)



● 발열(체온 상승)



● 기침(호흡 곤란)



● 피부 발진(발진)



● 괴사성 피부 병변(괴사)



● 출혈성 피부 병변(출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농림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시/도**

## 구지역 재발생을 방지합시다!

**급변 상황이 구지역 재발방지에 중요한 시점입니다!**

- A** 구지역이 다 떨어진 계절이 봄이며, 특히 급변 상황은 월드컵·연말도축계백합과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연백·백합교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지역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B** 우리나라 주변국 (일본 제외)은 구지역 상재국이며, 동절에는 이들 국가에 단체여행객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유입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 C** '전국 열대 소독의 날' 12-4일/매주 수요일(매) 안 농가도 배심원이 철저히 소독합니다.
- D** 농장 임상관찰 중에 아래와 같은 임상증상 발견시에는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의 특징적 증상**

열, 기침, 콧물, 눈물, 인후염, 폐렴, 설사, 구토, 구강염, 피부염, 발진, 부종, 탈수, 식욕부진, 체중감소, 사산, 폐사



**돼지의 특징적 증상**

열, 기침, 콧물, 눈물, 인후염, 폐렴, 설사, 구토, 구강염, 피부염, 발진, 부종, 탈수, 식욕부진, 체중감소, 사산, 폐사

**누구든지 의심증상을 보이는 가축을 발견한 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국 (02)121-49158-4060 또는 (0)1588-9060  
 국립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청 가축위생방역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축방역대역성실팀 (031)467-1851, 1852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안하면 도축제한"

● 법적근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실시명령고시(99. 3)

**시행일정**

- 계도기간: 99. 3. 15 ~ 99. 6. 13
- 도축제한착용: 99. 6. 14부터
- \*접종 안한 농가는 100만원 과태료 계도기간 중에도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도축이 제한되는 돼지**

-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돼지
-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되는 돼지

● 도축제한 절차

도축제한대상 돼지 → 할의채취 → 할침검사(24시간내)  
 검사결과 및 수 → 도축(출하농장 확인검사)

● 접종증명서(또는 확인서) 제출시기 및 제출처

1. 상인에게 판매 또는 농가 분양시: 가축운반업자, 분양받은 농가에게 제출
2. 농가가 직접 출하시: 도축장 영업자에게 제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 발행기관, 공통방역사업단, 공수의 등이 발급하면 증명서가 되고 농가가 작성하면 확인서가 된다**

● 확인서 양식: 양돈협회, 축협, 방역기관에 비치됨  
 \*기재내용은 주소, 성명, 접종일자, 두수, 예방의 제조업체명 등

**돼지콜레라 근절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

**대한양돈협회**

## 돼지콜레라 홍보 리플렛

### 한 농가라도 예방접종을 하게되면 추출길이 막힙니다!

**농장의 안전, 생산, 양돈농가에서는 시·군청 돼지콜레라 예방의 최우선적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돼지콜레라 예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합시다!**

- 농가**
  - ▶ 농장 출입자 -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 실시
  - ▶ 남은 음식물 사료는 심부온도 80℃에서 30분 이상 끓여서 급여
  - ▶ 돼지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 발견시 신속한 신고 (☎1588-4060)
- 정부**
  - ▶ 주기적인 일제 임상검사와 항체·항원검사 실시
  - ▶ 도축검사·가축운송차량 및 소독 강화
  - ▶ 돼지콜레라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 ▶ 설치분보성금·도태장려금 전액지급(통근가격 인정)
- ▶ 이동제한 지역의 출하금지 수해
- ▶ 폐사분은 설치분 가격의 50% 지급
- ▶ 이동통제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대한양돈협회** 운영 주체로 하는 농가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방역기금 금액에 비례한 **원차의 차등지급**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이후
분 배	90 %	70 %	50 %
분 배	10 %	30 %	50 %

\* 운영주체: 운영위원회, 지원위원회 등에 대하여는 대한양돈협회 등과 협의수신

**돼지콜레라 의심환자 발견시엔, 신고전화는 ?**

- ▶ 전국 어디서나 ☎1588-4060 또는 ☎1588-9060
- ▶ 원할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청 가축위생방역부서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병 역 과 ☎031-467-1851-3
- ▶ 바이리쓰과 ☎031-467-1782



## 돼지콜레라 청정국 선언!

2001년 12월 1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 되었습니다.



이름 위만하는 농가는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은 왜 중단해야 하는가?

- 예방접종을 계속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청정화 인정이 어렵고 따라서 수출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및 청정화로 인한 농가 이득은?

- 돼지고기 수출로 국제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가 가능합니다.
- 돼지콜레라 발생국산 수입금지로 안정적 생산기반이 구축됩니다.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해도 문제가 없는지?

- 1999년 8월 마지막 발생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면역형성률이 2년 넘게 95%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 돼지콜레라 발생위험도 평가시험, 결과, 우리나라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미 예방접종을 중단한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청정국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 한 농가라도 예방접종을 하면 수출길이 막힙니다!

양돈농가에서는 시군 행정기관의 돼지 콜레라 예방약 회수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 농 가
  - ▶ 무조건 출입차 출입차량의 철저한 청정화 교육 이수
  - ▶ 양돈 농가별 사육은 50마리 이하로 30마리 이하로 하여서, 30마리 이하로 돼지콜레라 발생되는 돼지 발견시 신속한 신고(☎1588-4060)
- 농 협
  - ▶ 가축위생시험소 청정화 대책기간(운영 주선)01.12.1 ~ 02.3.31
  - ▶ 지역축협 돼지콜레라 전담직원 운영, 소독, 예방활동 강화
  - ▶ 가축위생시험소·시군농민지원 센터·제3차방역 동안 소독 강화
- 정 부
  - ▶ 국가적인 일에 항상인사와 함께 동참하시길
  -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위한 국공유역 정비



### 돼지콜레라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는 이렇게 합니다!

- ▶ 사육농가에게 예방접종 전역 지원(종돈가격 인당)
- ▶ 이동제한지역의 철저한 소독
- ▶ 돼지수출 금지(수출가액의 50% 지원)
- ▶ 자돈출생에 따른 양돈농가 피해에 대응하는 비용 지원(양돈농가 조성을 위한 양돈농가 구역에 대한 면허증 지원)

### 돼지콜레라 의심돼지 발견시에 신고전화는?

- 전국 어디서나 ☎1588-4060 또는 ☎1588-9080
- 관할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청 가축위생담당부서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851~3, 467-1782

## 돼지콜레라 방역홍보 리플렛

# 돼지 콜레라 근절합시다

돼지콜레라 근절없이 돈육수출 없고 돈육수출 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

● 콜레라 무수한 보이는 양돈농가의 출혈보통

● 콜레라 무수한 보이는 양돈농가의 출혈보통

● 콜레라 무수한 보이는 양돈농가의 출혈보통

● 콜레라 무수한 보이는 양돈농가의 출혈보통

● 콜레라 무수한 보이는 양돈농가의 출혈보통

● 콜레라 무수한 보이는 양돈농가의 출혈보통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특!

**2002년 5월 1일부터  
항체검사! 항체검출(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면?**

- 돼지 열정검사에서 항체가 검출됩니다.

**항체검사는 어떻게 합니다!**

- 1 도축장 출하돼지 및 농장 사육돼지를 대상으로 열정검사
- 2 항체 검출시 정밀검사
- 3 예방접종으로 인한 항체 여부 확인

**이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열정검사 결과 항체가 검출될 경우
- 예방접종 행위 현장 적발시(제3차 신고행위 포함)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방접종하는 농가를 신고합니다!**

- 예방접종을 하는 농가를 신고할 경우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시/도**

## 돼지콜레라 항정확 추진 2002 CALENDAR

**1. JANUARY**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 FEBRUARY**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 MARCH**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4. APRIL**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 MAY**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6. JUNE**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돼지콜레라는 어떻게 예방되는가?**

● 돼지콜레라는 감염돼지의 비듬, 자분, 육신도구, 사물(선물·의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전파됩니다!

**완전방역을 필수삼으세요!**

1. 예방접종 2. 소독/소독약 3. 방역 4. 격리 5. 폐기물 처리

**돼지콜레라의 임상증상은?**

- 1) 발열(39.5~41.5℃, 40.0~41.0℃, 40.5~41.0℃, 40.0~41.0℃)
- 2) 발진(발진: 1~2cm, 2~3mm, 3~4mm, 4~5mm)
- 3) 발진(발진: 1~2cm, 2~3mm, 3~4mm, 4~5mm)
- 4) 발진(발진: 1~2cm, 2~3mm, 3~4mm, 4~5mm)

**돼지콜레라의 방역수칙은?**

- 1) 농장 출입차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 합니다!
- 2) 농장 출입차(차량) 운전자 포함는 출입시 해당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3) 축산물감시원은 돼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도축장입장시 기록물송달장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여 합니다!

**돼지콜레라 항정확 추진 / 수송양돈 인센티브!**

수송양돈 인센티브 300만원 지급  
방역수칙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7. JULY**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AUGUST**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9. SEPTEMBER**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OCTOBER**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1. NOVEMBER**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2. DECEMBER**

9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돼지콜레라 방역홍보용 카렌다

돼지콜레라 방역홍보 리우렛 ▲

## 돼지콜레라백서 발간 편집후기

그동안 “돼지콜레라 근절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란 캐치프레이스 아래 근절대책과 방역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온 방역당국과 관련단체, 양돈업계와 축산관련업계 및 학계 등 많은분들의 활동내용을 담기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근절대책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양돈인들의 숙원인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을 조속히 달성하고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빌면서 이 백서를 편집·발간하였습니다.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자료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5. 2. 28.

### 책임연구원 및 참여자

책임연구원 : 수의학박사 안수환

연구원 : 경북대 수의대교수 김봉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과장 위성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바이러스과장 송재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사무관 김도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업국장 최홍렬

연구보조원 : 농협중앙회 방역위생팀장 김기양

대한양돈협회 전무 김동성

보조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정승·이형익 과장